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0-01

---

##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6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6)

---

2012. 9.



- 목 차 -

1. 성종실록 <3> 기사자료집 : 성종 17년 1월 ~ 성종 21년 2월 ..... 1



# 1. 성종실록 <3> 기사자료집



# 성종실록 <3> 기사자료집 : 성종 17년 1월 ~ 성종 21년 2월

날 짜	내 용	원 문
<p>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2일 (기유) 2번째기사</p>	<p>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을 불러 별헌(別獻)하는 물건의 수량을 감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을사년(1698)에 진헌(進獻)한 수에 의하고 봉(封)하여 올리는 식물(食物)은 적당히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치형(韓致亨)이 가지고 온 물목(物目)은 성지(聖旨)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지라고 칭하였으니 어길 수 없다. 그 준비하기 쉬운 물건은 마땅히 수에 의하여 봉진(封進)하고, 비록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도 전연 감할 수는 없다.” 하였다. 정창손 등이 말하기를, “비록 준비하기 쉬운 물건이라도 동팔참(東八站)에서 운반하는 폐단이 적지 않으니, 마땅히 감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p>	<p>○命召領議政鄭昌孫等， 議減別獻物數。 昌孫等啓曰：“當依乙巳年進獻數封進， 食物則量減爲便。” 傳曰：“韓致亨齋來物目， 雖不的知爲聖旨， 然稱聖旨， 則不可違也。 其易備之物， 當依數封進； 雖難備之物， 亦不可全減也。” 昌孫等曰：“雖易備之物， 東八站轉輸之弊不貲， 在所當減。” 傳曰：“可。”</p>
<p>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3일</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사전춘추(四傳春秋)》를 강(講)하다가 ‘공(公)이 용(戎)과 잠(潛)에서 모였다.’는 데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p>	<p>○御晝講。 講四傳《春秋》， 至‘公會戎于潛’， 侍讀官趙之瑞啓曰：“《春秋》始書‘公會戎于潛’， 繼書‘公及戎</p>

(경술) 3번째기사

“《춘추(春秋)》에 처음 ‘공이 용과 잠에서 모였다.’고 썼고, 이어서 ‘공이 용(戎)과 당(唐)에서 맹세하였다.’고 썼고. 《춘추》의 끝에 또 ‘공이 진후(晉侯) 및 오자(吳子)와 황지(黃池)에서 모였다.’고 썼으니, 성인(聖人)이 경(經)을 지을 적에 처음과 끝을 용적(戎狄)을 대접하는 데에 뜻을 둔 것은 중국과 이적의 분변을 엄하게 하고 중국을 어지럽히는 계제를 금한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건주(建州)의 야인(野人)이 곧 평안도(平安道)를 경유하여 내조(來朝)한다고 하는데,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인이 정성으로 귀순하여 따르는 것을 참으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사람 얼굴에 짐승과 같은 마음이어서 반복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 어찌 영구히 근심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평안도는 중국 사신이 경유하는 곳이니, 중국 조정에서 만일 우리 나라가 야인과 교통(交通)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견책(譴責)을 가할 것입니다. 조종조에서 건주 야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영안도(永安道)를 경유하여 내조하게 한 것은 뜻을 둔 데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의 자손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오랜 원한이 있어 항상 보복할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곡진하게 은수(恩數)를 더하는 것은 위로하여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평안도의 길을 열어 주었다가 이내 또 폐쇄하면 혐의와 틈이 반드시 생겨 변방 백성이 해를 입을 것이다.”

하였다. 조지서가 말하기를,

“평안도 백성이 노고가 대단히 심합니다.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들이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 일대에서 쌀 등의 물건을 구(求)하여서는 역로(驛路)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고, 동팔참(東八站)에 이르면 군인을 시켜서 실어가는 데, 이 때문에 사람이 피곤하고 말이 죽습니다. 우리 나라의 쌀을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므로, 사신이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다만 조석(朝夕)의

盟于唐’, 而《春秋》之終又書 ‘公會晉侯及吳子于黃池’. 聖人作經, 終始致意於待戎者, 所以謹華夷之辨, 禁猾夏之階也. 今聽建州野人直由平安道來朝, 臣以爲不可. 野人款附, 固不可拒而不納. 然人面獸心, 反覆無常, 安能永保無虞乎? 況平安道, 天使經由之, 天朝若聞我國交通野人, 則必加譴責矣. 祖宗朝, 建州野人必使由永安道來朝, 意有在焉.” 上曰: “李滿住子孫, 於我國有宿怨, 常懷報復之心, 予之曲加恩數, 慰悅之耳. 既開平安之路, 而旋又閉關, 則嫌隙必生, 邊氓被害矣.” 之瑞曰: “平安之民勞苦太甚. 赴京使臣於黃海、平安一路, 求索稻米等物, 使驛路轉輸, 至東八站則令軍人馱載, 以是人困馬斃. 我國稻米, 中國人甚嗜之. 使臣之多齋者, 非但爲朝夕之供, 欲市中國異物也. 臣嘗以質正官赴京, 李克墩爲使, 謂從者曰: ‘赴京使臣求請食物, 使軍士馱載, 吾所痛疾. 官給糧米八十斗, 亦足以供行李之資, 何必別有需索乎?’ 乃令只齋官米八十斗而去, 路費未見其不贍. 請自今禁不得別齋糧米, 以祛



공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특이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질정관(質正官)으로 북경에 갔는데, 이극돈(李克墩)이 사신이 되었었습니다. 종자(從者)에게 이르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들이 식물을 청구하여 군사를 시켜서 실어가는데, 내가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관에서 식량으로 준 쌀 80두면 또한 족히 행리(行李)16991)의 자료로 이바지 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따로 요구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단지 관미(官米) 80두만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도 노비(路費)가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따로 양미를 가져가지 못하게 금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소서. 또 신이 팔도하(八渡河)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물으니, 혹은 말하기를 대대로 황주(黃州)에 살았다 하고, 혹은 대대로 정주(定州)에 살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네가 무슨 일로 인하여 여기에 왔으며, 지금 도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중국 법에는 한 집에 장정이 식구가 비록 많더라도 가장(家長)만 부역을 시키는데, 본국에서는 집에 숨은 장정이 없고 모두 군적(軍籍)에 편입시키므로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하여 역사를 도피하여 왔으니, 어찌 반드시 되돌아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장차 장성(長城)을 쌓을 것인데, 신은 아마도 어리석은 백성이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큰 역사가 장차 일어나서 노고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 하여 서로 거느리고 저 지경으로 도망하여 들어간다면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이르기를, ‘오랑캐 말[胡馬]은 북풍(北風)을 의지하고, 월(越)나라 새는 남쪽 가지에 깃든다.’ 하였는데, 내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어찌 본심이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요역(徭役)이 번거롭고 과중하여 노고를 이기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장성을 쌓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니 급히 글을 보내어 백성들을 효유(曉諭)하는 것이 좋겠고, 북경에 갈 때에 짐을 싣는 폐단 같은 것은 책임이 사신에게 있으니 엄하게 금하는 것이 옳다.”

民弊。且臣至八渡河，問其居人，則或言世居黃州，或言世居定州。臣謂曰：‘汝因何事而來此？今可還歸也。’

答云：‘中國之法，一家雖多丁口，只役家長；而本國則家無隱丁，皆編軍籍。不堪其勞，逃役而來，何必還歸？’

今國家將築長城，臣恐愚民不知遠慮，以爲大役將興，不堪勞苦，相率而逃入彼境，則誠非細故。”

上曰：“古人云：‘胡馬依北風，越鳥巢南枝。’棄吾土而就他國，夫豈本心哉？是必徭役煩重，不勝勞苦而然耳。長城之築，在所不得已也，可令馳書，曉諭人民。若赴京時馱載之弊，責在於使臣，痛禁之可也。”

<p>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4일 (신해) 1번째기사</p>	<p>하였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이 아뢰기를, “어전(魚箭)은 가난한 백성에게 주고 세(稅)를 거두는 것이 예전의 법인데, 한명회(韓明澮)가 건의하여 또 면포(綿布)를 받게 하였으니, 이것은 두 번 어세(魚稅)를 거두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백성은 세금이 무거운 것을 꺼려 어살[箭] 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니, 사재감(司宰監)에 바치는 세금이 아마도 넉넉하지 못 할 것입니다. 청컨대 그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은 한정승(韓政丞)이 아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국가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니, 우선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辛亥/受常參，視事。戶曹判書李德良啓曰：“魚箭給貧民收稅，乃舊法也。韓明澮建議又納綿布，是再收魚稅也。若爾則民憚稅重，不願結箭，司宰監所納之稅恐不贍。請仍舊。” 上曰：“卿不解韓政丞所啓之意耳。必利國便民故言之，姑試之可也。”</p>
<p>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7일 (갑인) 2번째기사</p>	<p>명하여 홍문관(弘文館)과 병조(兵曹)·도총부(都總府)의 입직(入直) 당상관을 승정원(承政院)에 모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각각 인일(人日)16995)의 율시(律詩)를 짓게 하였다.</p>	<p>○命弘文館及兵曹、都總府入直堂上，會承政院饋之，令各製‘人日’律詩。</p>
<p>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9일 (병진)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어세겸(魚世謙)·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유인(李有仁)·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신준(申浚)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무릇 매를 바칠 때에 매를 받쳐들고 오는 응사(鷹師)가 매의 먹이라 하여 민가(民家)의 닭과 개를 침탈한다. 지금 조종조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연로(沿路)의 각 고을과 역(驛)으로 하여금 병아리와 집비둘기를 많이 기르게 하여 매의 먹이로 삼아서 민간을 침탈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다만 관리가 이것을 빙자해서 민가에 나누어 기르게 하여 소요(騷擾)를 일으킬까 염려된다. 그러니 나의 뜻을 몸받아서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京畿觀察使魚世謙、江原道觀察使李有仁、永安道觀察使申浚曰： 凡進鷹之時，臂來鷹師稱爲鷹食，至侵奪民家雞犬。今依祖宗朝故事，令沿路各官及驛儲養雞兒家鴿，以爲鷹食，除民間侵奪之弊。第慮官吏藉此分養民家，以致騷擾，其體予意，毋令貽弊於民。</p>

<p>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10 일(정사)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박송질(朴崇質)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옥과(玉果)의 죄수인 사노(私奴) 무리질동(無里叱同)이 명화 강도(明火強盜)17005) 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장물의 증거가 없으니, 사형은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공조 참의(工曹參議) 손비장(孫比長)이 아뢰기를, “고려(高麗) 때에 거란(契丹)이나 홍군(紅軍)이 모두 평안도를 경유하여 들어와 도둑질하였는데, 지금 건주 야인에게 이 도를 경유하여 내조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므로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저 사람들이 자세히 알 것이니, 후회를 남길까 두렵습니다. 또 야인에게 잔치하는 데에 여악(女樂)을 썼는데, 조종조의 고사가 아닙니다. 지금 정전(正殿)에서 접견하고 여악까지 썼으니, 자목 이적(夷狄)을 대접하는 체모를 잃었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삼위(三衛)의 야인이 분을 품고 노여움을 쌓아 좀도둑질하는 것이 없는 해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수한 은혜를 보이고자 하여 평안도를 경유해서 내조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또한 중간에 변경시키면 이것은 바깥 오랑캐에게 신용을 잃는 것이다. 또 우리 나라에서 여악을 쓴 것이 오래 되어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는 데에도 쓰는데, 야인을 접대하는 데에만 쓰지 못하겠는가?” 하자, 손비장이 말하기를, “정전에서 접견할 때에는 여악을 썼지마는 예조(禮曹)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 남악(男樂)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丁巳/受常參，視事。右副承旨朴崇質將刑曹啓本啓：“玉果囚私奴無里叱同明火強盜罪，律該斬不待時。”上曰：“無贓證，可減死。”工曹參議孫比長啓曰：“高麗時契丹、紅軍皆由平安道入寇。今建州野人許由此道來朝，山川險夷，彼得詳知，恐貽後悔。且宴野人用女樂，非祖宗故事。今接見正殿，至用女樂，殊失待夷之體。”上曰：“三衛野人含憤積怒，鼠竊狗偷，無歲無之。故國家欲示殊恩，許由平安道來朝。若又中變，是失信於外夷也。且我國之用女樂久矣。宴中朝使臣尚用之，獨於野人接待不可用乎？”比長曰：“正殿接見時雖用女樂，如禮曹饋餉則用男樂爲便。”不聽。</p>
<p>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사정전(思政殿)에서 주연(酒宴)을 베풀고, 야인(野人) 왕사리(王沙里) 등을 인견(引見)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p>	<p>○壬戌/上幸景福宮，置酒思政殿，引見野人王沙里等，仍賜物有差。</p>

<p>(成化) 22년) 1월 15 일(임술) 1번째기사</p>	<p>려 주었다.</p>	
<p>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22 일(기사) 2번째기사</p>	<p>좌부승지(左副承旨) 윤은로(尹殷老)가 의금부(義禁府)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덕성군(德城君)의 처 구씨(具氏)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성(姓)이 다른 삼촌질(三寸姪) 이인언(李仁彦)이 일찍이 내 집에 우거(寓居)하면서 옆방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이 지난 뒤에 시비(侍婢)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와 간음하고자 하기에, 내가 거절하기를, 「네가 성명(成名)17024) 하고자 하면서 어찌 큰 죄를 범하려 하느냐?’ 하니, 이인언이 옷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간음하였습니다. 그 뒤로 매양 은밀한 곳에서 서로 간음하였으며, 인하여 아이를 배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인언은 처음에는 숨기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이 없었고, 다만 구씨의 삼촌질(三寸姪) 안계로(安繼老)가 항상 구씨 집에 출입하였는데, 지난 갑진년(17025) 10월에 나는 안계로가 구씨의 손을 잡고 희롱하는 것을 보았으니, 저 사람이 실로 구씨를 간음한 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형벌을 하며 문초하자, 그제서야 공초(供招)하기를, ‘내가 일찍이 허벅지에 종기가 나서 누워 있는데, 구씨가 와서 아픈 곳을 묻고 인하여 종기를 문지르면서 음욕(淫慾)의 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또 와서 종기를 만지다가 드디어 음근(陰根)에 미치기에 내가 발로 찼습니다. 그 뒤 내 병이 나은 어느 날 어두운 밤중에 구씨가 나를 불러 밀과(蜜果)를 주어 먹게 하고 인하여 침방(寢房)으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어우동(於宇同)이 되어 죽더라도 정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므로 드디어 간음하였고, 그 뒤에는 매양 틈을 타서 간음하였습니다. 하루는 구씨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월경이 없으니, 아마도 임신이 된 것 같다.’ 하므로, 내가 그 말을 듣고 곧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처음에 안계로가 구씨를 희롱하였다고 말한 것은 내 죄를 면하려</p>	<p>○左副承旨尹殷老自義禁府還啓：“德城君妻具氏招云：‘異姓三寸姪李仁彦嘗寓吾家，隔房寢處。一日曉漏後，乘侍婢出外，卒入欲奸。我拒之曰：「汝欲成名，而何犯大罪?’ 仁彦以衣掩吾面，遂奸焉。自後每於密處相奸，因而懷孕。’ 問仁彦則初諱之云：‘予無是也。但具氏三寸姪安繼老常出入具氏家，去甲辰十月予見繼老執具氏手戲弄，彼實奸具氏者也。’ 及刑訊，乃招云：‘我嘗腫腿而臥，具氏來問痛處，因捫腫，似有慾色。翌日又來捫腫，遂及陰根，我以足踢之。後我病愈，昏夜間具氏呼我，與蜜果令食之，因挽入寢房，曰：「吾寧爲於宇同而死，情不能忍也。’ 我遂奸焉。後每乘隙輒奸之。一日具氏語我曰：「我久無月事，慮恐懷孕。’ 我聞之，遂還家鄉。我初云安繼老戲弄具氏者，欲免己罪詐言耳。”</p>

	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23 일(경오) 1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치계(馳啓)하기를, “전에 본도(本道)가 실농(失農)하였으므로 명하여 삭선(朔膳)17026) 을 감하 시었는데, 본도가 비록 흉년이 들었으나 연해(沿海)의 백성으로 해산물에 의 하여 사는 자들은 주리고 곤궁한 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해산물은 채취하기가 매우 쉬워서 다른 노루나 사슴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청컨대 전 과 같이 봉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 말미(末尾)에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을 받드는 뜻이 비록 중하나,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는 정이 어찌 가볍겠는가?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庚午/慶尙道觀察使孫舜孝馳啓曰： “前以本道失農，命減朔膳。 本道雖云 失稔，沿海人民資海錯而生者，不至飢 困，況海物採取甚易，非他獐鹿之比。 請依舊封進。” 御書其尾曰：“臣子奉 上之意雖重，人君卹下之情豈輕哉？勿 進。”
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27 일(갑술) 2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이 관가의 쌀·콩·누룩·보리·유기(鑰器)를 도둑질하고서 스스로 죄가 중한 것을 알고 도망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니, 청컨대 먼저 장안(贓案)에 기록하고 나타나도록 독촉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憲府啓：“陽智縣監李仲善盜官中 米、豆、麴、麥、鑰器，自知罪重，逃 隱不現。 請先錄贓案，督現定罪。” 從之。
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월 27 일(갑술)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수성도 찰방(輸城道察訪) 김수천(金守仵)이 둔전(屯田)에서 수확한 콩 4 석(碩)으로 사사로운 말을 기르고, 또 해채(海菜)를 쌀 10석과 바꾸어 데리고 간 기생과 종[奴子]에게 공급하며, 기생에게 홍화(紅花) 3두(斗)와 자초(紫草) 5두를 준 죄는, 율(律)이 장(杖) 80대, 도(徒) 2년에 해당합니다. 《대전》에 의하여 장안(贓案)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憲府啓：“前輸城道察訪金守仵以 屯田所收豆四碩養私馬，又以海菜買米 十碩，供帶率女妓及奴子，贈女妓紅花 三斗、紫草五斗罪；律該杖八十、徒二 年，依《大典》錄贓案。” 從之。
성종 18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공주(公州) 사람 강효순(康孝舜)이 진언(陳言)하기를, “조정에서 대신을 위임하여 보내어서 주린 백성을 진휼하는데, 진휼관(賑恤	○公州人康孝舜陳言曰：“朝廷委遣大 臣，賑恤飢民，而賑恤官等不能盡心救

<p>(成化) 22년) 1월 29일(병자) 4번째기사</p>	<p>官) 등이 마음을 다하여 구휼하지 않으므로 궁촌(窮村)과 벽항(僻巷)에서 굶주려 죽는 백성이 몇 천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발각되어서 죄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개천 구렁에 시체를 처넣고 솔가지와 풀잎으로 덮어서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고, 굶주린 백성이 없는 것으로 진휼사와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조정에 보고합니다. 또 사채(私債)를 내어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라고 명하였는데도 곡식을 거만(鋸萬)이나 쌓아 놓고 있는 자는 땅을 파고 깊이 감추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신(內臣)을 보내어 적발한다면 신이 마땅히 지적해 보이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이 말과 같다면 대신을 보내어 구휼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장차 조관(朝官)을 보내어 허실(虛實)을 조사하겠다. 이 뜻을 진휼사와 관찰사에게 하유(下諭)하라.”</p> <p>하였다.</p>	<p>之，窮村僻巷民之飢死者，不知幾千。恐其事露被罪，而轉屍溝壑，覆以松枝草葉，使人不知，以無飢民報于賑恤使及監司，申報于朝廷。且命發私債以救飢民，而積穀鉅萬者，掘地深藏，使不得發。若遣內臣糾擿，則臣當指示之。”傳曰：“果如此言，則遣大臣調救之意安在？將遣朝官，以按虛實，其以此意，下諭賑恤使、觀察使。”</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2일 (무인)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講)하다가, ‘선종(宣宗)이 간(諫)함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이르자, 시독관(侍讀官) 유희인(兪好仁)이 아뢰기를, “어제 신 등이 봉보 부인(奉保夫人)에게 재목을 내려 주지 말 것을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경악(經軛)에서 가까이 모시므로, 생각한 바를 논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잘못 행하는 바가 있으면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주관하는 곳이 있어서 그대들과는 상관이 없고, 또 관작(官爵)으로 준 것이 아닌데, 무엇이 해롭겠는가?”</p> <p>하므로,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p>	<p>○戊寅/御經筵。講《資治通鑑》，至宣宗納諫，侍讀官兪好仁啓曰，昨臣等請勿賜奉保夫人材木，教云，非爾等所知也。’臣等昵侍經軛，非但論思而已。苟有過舉，不敢不言。”上曰：“予不使爾等不言也。此事有主者，無與於爾等。且非官爵與之何妨？”領事尹弼商啓曰：“弘文館不識大體而言耳。”講至宣宗修創佛寺，知事李坡曰：“天地之間，有邪有正，理之常也。武宗好道家之說，欲卒革佛氏，是以邪去邪，故終不能去也。”上曰：</p>

	<p>“홍문관(弘文館)에서 대체(大體)를 모르고 말한 것뿐입니다.”</p> <p>하였다. 강(講)하다가, ‘선종(宣宗)이 불사(佛寺)를 수창(修創)하였다’는 데에 이르자, 지사(知事) 이과(李坡)가 말하기를,</p> <p>“천지(天地) 사이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있으니, 이는 이치의 당연한 바입니다. 무종(武宗)은 도가(道家)의 설(說)을 좋아하여 불씨(佛氏)를 마침내 혁파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하려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무종(武宗)이 승니(僧尼)를 바로잡은 것은 매우 옳았다.”</p> <p>하였다.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말하기를,</p> <p>“이과(李坡)의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말은 매우 그릇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바가 있으면 마땅히 빨리 혁파해야 합니다.”</p> <p>하니, 이과가 말하기를,</p> <p>“저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양립(兩立)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도(正道)로써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臣)의 말이 아니라 선유(先儒)가 논한 것입니다.”</p> <p>하였다. 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이 아뢰기를,</p> <p>“이극규(李克圭)는 승문록(承文錄)에 참여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황해 전라도 도사(黃海全羅道都事)가 되었을 때에는 제조(提調)가 한마디 말도 없더니, 이번에 영안도 도사(永安道都事)로 제수되자 그제서야 청(請)을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정실(情實)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p> <p>“문신(文臣)으로서 승문록(承文錄)에 참여한 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간혹 외관(外官)을 면하려고 이름을 고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19명을 세밀히 간택하였는데, 이극규는 해자(楷字)를 잘 쓰는 것으로써 참여할 수 있었습</p>	<p>“武宗之沙汰僧尼，甚善矣。” 執義姜居孝曰：“李坡邪正之言，甚非也。有邪則當急革也。” 李坡曰：“余非謂邪正兩立也。不以正道去之，故有此弊，此非臣言也，先儒之論也。” 大司諫韓堰啓曰：“李克圭得與承文錄已久。前爲黃海、全羅道都事，而提調無一言；今拜永安道都事而乃有請，是必有情矣。” 弼商曰：“文臣與承文錄者至六十餘人，間有窺免外官而竄名者。故去年精揀十九人，克圭以善(措) [楷] 字得與焉。 臣等之請遞都事以此也。” 上曰：“然。” 堰又請改鄭錫堅、金良典職。 上曰：“將改正。” 上又謂左右曰：“具氏之罪不足道，寧仁君猶不奉養具氏，使不免飢寒，縱使失道，以陷大罪，寧仁君不可繼德城君後。” 李坡曰：“臣聞醫女曰：‘今纔免乳，不可薄衣，婢出一衣覆之曰：「此外無衣。」 具氏欲食萍酒，令其婢買之，則曰無米可買也？’ 具氏之飢寒，乃猶所爲也，豈宜繼德城君後？” 執義姜居孝曰：“德城君奴婢幾至六百，必盡奪之，故如此飢寒也。”</p>
--	---	---

	<p>니다. 신 등이 도사(都事)를 체직(遞職)시킬 것을 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한언이 또 정석견(鄭錫堅)·김양전(金良堧)의 관직을 고쳐 줄 것을 청  하였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개정(改正)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좌우에게 이르기를,  “구씨(具氏)의 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楮)은 구  씨를 봉양하지 않고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게 하여 제멋대로 도리(道理)를  잃고서 대죄(大罪)에 빠지게 하였으니, 영인군은 덕성군(德城君)의 후사(後嗣)  를 이을 수 없다.”  하니, 이과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의녀(醫女)가 말하기를, ‘이제 겨우 해산을 했으니 얇게 입을  수 없습니다.’하니, 계집종이 옷 한 벌을 내어다 덮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  외에는 옷이 없습니다.’ 하였고, 구씨가 술지게미를 먹고 싶어 그 계집종으로  하여금 사 오게 하였더니, 곧 말하기를, ‘사 올 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구씨가 기한(飢寒)에 면 것은 바로 이순(李楮)의 소위인데, 어찌 덕성  군(德城君)의 후사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말하기를,  “덕성군(德城君)의 노비(奴婢)가 거의 6백 명이나 되었으니, 필시 모두 빼앗  았기 때문에 이처럼 기한(飢寒)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였다.</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3일</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講)하다가, ‘회남(淮南)  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유망(流亡)하였다.’는 데에 이르자, 동지사(同  知事) 채수(蔡壽)가 아뢰기를,</p>	<p>○己卯/御經筵。講《資治通鑑》，至  “淮南饑荒，民多流亡。”同知事蔡壽  啓曰：“臣因觀親往忠清道，饑餓者相</p>



(기묘) 1번째기사

“신이 어버이를 뵈러 충청도(忠淸道)에 갔는데, 굶주리는 자가 서로 바라보일 지경이었는데도 진제장(賑濟場)에 먹으러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말하기를, ‘진제관(賑濟官)이 진휼사(賑恤使)에게 규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유민(流民)들에게 위협하기를, 「너희들이 먹는 곡식은 내년 가을에 다시 징수할 것이다.」하고, 또 행장(行狀)을 검사하기 때문에 유민(流民)은 나아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비록 진휼(賑恤)한다 하더라도 수령(守令)이 삼가서 봉행하지 않고 진휼사도 반드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컨대 조신(朝臣)을 보내어 규찰(糾察)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뜻을 진휼사(賑恤使)와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유(下諭)하고, 또 조신(朝臣)을 보내어 규찰하여서 적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간(司諫) 허황(許堇)이 아뢰기를,  
“지금 춘궁(春宮)이 영조(營造)되지 않았는데 그 재목(材木)을 봉보 부인(奉保夫人)에게 내려 준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작(官爵)이 외람된 것은 말해도 괜찮지만, 이와 같은 일은 대간(臺諫)이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장령(掌令) 이의(李誼)가 아뢰기를,  
“나무를 베어서 운반하는 것은 민폐(民弊)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부인(夫人)이 집이 없다면 내려 준다고 해도 괜찮겠지만, 이미 큰 집이 있으니 춘궁의 재목을 내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흉년이 들어 춘궁의 역사(役事)를 정지하였으므로 재목이 반드시 썩을 것이기 때문에 준 것뿐이다.”

望，而無一人就食於賑濟場者。問之則曰：‘賑濟官恐爲賑恤使所糾舉，恐嚇流民曰：『汝等所食之穀，明秋還徵。且檢行狀。』故流民不得就食。’國家雖賑恤，而守令不謹奉行，賑恤使亦必不知也。請遣朝臣糾察。”上謂承旨曰：“其以此意下諭賑恤使及觀察使，且遣朝臣糾摘。”司諫許篈啓曰：“今春宮未營，而以其材木賜奉保夫人，甚不可。”上曰：“官爵猥濫則言之可也，如此事，非臺諫所當言也。”仍問左右，掌令李誼啓曰：“伐木輸轉，民弊不貲。若夫人無家，則賜之猶可也；既有大家，不必以春宮之材而賜之也。”上曰：“今因年凶，停春宮之役，材木必致腐朽故與之耳。”蔡壽又啓曰：“具氏淫行，無足道也。寧仁君插旣繼德城，具氏乃其母也，安有子告其母乎？具氏貧甚，賣資產以祭德城，而插不顧。及具氏臨產，令其妻及乳媪守之；產兒後，具氏之母乞棄其兒欲掩之，而插又令乳母奪兒，陰嗾其父躋以聞，其志慘矣。請問具氏奴婢以懲插。”上曰：“予聞玉山君言，卽令安仲敬往視其狀，躋以兒

	<p>하였다. 채수(蔡壽)가 또 아뢰기를,  “구씨(具氏)의 음행(淫行)은 말할 것도 못됩니다만,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揆)은 이미 덕성군(德城君)을 계승하였으니 구씨가 바로 그 어미인데, 어찌 자식으로서 그 어미를 고할 수 있겠습니까? 구씨는 매우 가난하여 자산(資産)을 팔아서 덕성군(德城君)을 제사하였는데 이순(李揆)이 돌아보지도 않았고, 구씨가 해산(解産)하기에 이르자 그 아내와 유모(乳母)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구씨의 어미가 그 아이를 내버려 달라고 빌면서 감추어 두고자 하였는데, 이순(李揆)이 또 유모로 하여금 아이를 빼앗게 하고서 몰래 그 아버지 이제(李躋)를 시켜 아뢰게 하였으니, 그 뜻이 흑독합니다. 청컨대 구씨의 노비(奴婢)를 국문(鞫問)하여 이순(李揆)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옥산군(玉山君)17034)의 말을 듣고 즉시 안중경(安仲敬)으로 하여금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제(李躋)가 아이를 내어다 보여주었다고 하니, 그 의도한 바가 있었다. 다만 구씨의 가인(家人)은 이순(李揆)에 대하여 종[奴]과 주인의 분수가 있으므로, 국문하기 어렵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만약 이순(李揆)이 덕성군(德城君)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구씨의 가인을 비록 국문하더라도 혐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p>	<p>出示，其意有在焉。但具氏家人，於揆有奴主之分，鞫之爲難。” 蔡壽曰：“若揆不繼德城君，則具氏家人雖鞫之無嫌也。” 上曰：“然。”</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2월 5일 (신사)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봄에는 가물 징조가 있으니, 청컨대 백성들로 하여금 높고 건조한 땅에는 콩·피·기장·보리를 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p>	<p>○戶曹啓：“今春有旱徵，請令民於高燥之地種豆、稷、黍、麥。” 傳曰：“戶曹憂民至矣。然孔子曰：‘吾不如老農。’ 知農事者，莫如農夫。 農夫</p>

	<p>“호조(戶曹)에서 백성을 염려하는 것은 지극하다. 그러나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나는 늙은 농부(農夫)만 못하다.’고 하였듯이 농사(農事)를 아는 것은 농부만한 자가 없다. 농부는 마땅히 지질(地質)의 마땅한 바에 따르고 절기(節氣)의 빠르고 늦음을 보아서 오곡(五穀)을 파종(播種)한다. 그러니 만약 호조에서 의논한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밭갈고 씨뿌리기를 독촉한다면, 밭갈고 씨뿌리는 것이 시기를 잃어서 도리어 해(害)가 될 것이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은 무신(武臣)으로서 매사를 참판(參判) 김승경(金升卿)에게 많이 이끌렸다. 김승경은 성질이 자질구레하여 다스리는 대체(大體)에 통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릇 아뢰는 바가 자못 강직하여 굳세었으나 실제로 멀리까지 도모하는 뜻이 없었다. 이덕량과 함께 일을 아뢰는 때에도 문득 이덕량을 앞서서 말하였으므로, 이덕량은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하였다.</p>	<p>當隨地之所宜、觀時之早晚，播種五穀。若如戶曹之議而督民耕種，則耕種失時，反爲有害矣。”</p> <p>【史臣曰：“戶曹判書李德良，武臣，每事多牽於參判金升卿。升卿性細碎，不能通於治體，凡所啓頗侃侃如勁直，實無經遠之意。與德良啓事，輒先德良言之，德良拾枝裔焉。”】</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2월 6일 (임오)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p> <p>“신이 듣건대, 경상도 진휼사(慶尙道賑恤使)가 관곡(官穀)이 너무 적어서 농사 지을 때에 진구(賑救)하려고 한다 하면서 부종(浮腫)이 있는 자만 진휼(賑恤)한다고 하는데, 굶주린 백성이 만약 부종에 이르게 된다면 비록 구제하여도 미칠 수 없습니다. 또 백성 가운데 우마(牛馬)가 있는 자는 비록 온 가족이 굶주리고 궁핍하여도 이에 말하기를, ‘그 우마를 팔면 족히 스스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진휼하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굶주리고 곤궁함이 날로 심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백성들이 진실로 굶주린다면 모두 구제하여야지 어찌 부종(浮腫)이 있어야만 진휼하겠는가? 즉시 이러한 뜻을 진휼사(賑恤使)에게 유시하도록 하라.”</p>	<p>○御經筵。講訖，同知事金宗直啓曰：“臣聞慶尙道賑恤使以爲官穀甚少，欲於農時賑救，而只賑浮腫者。飢民若至於浮腫，則雖救之無及。且民有牛馬者，則雖舉家飢乏，乃曰：‘賣其牛馬，足以自救。’略不賑之。由是民之飢困日甚。”上曰：“民苟飢也則皆救之，豈待浮腫而賑之？卽以此意諭賑恤使。”</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6일 (임오) 6번째기사</p>	<p>하였다. 경상도 진휼사(慶尙道賑恤使) 한치형(韓致亨)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道內)의 굶주린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경(卿)을 바라보는 지극함이 마치 어린아이가 유모(乳母)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비록 굶주리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종(浮腫)에 이르지 않았다면 진휼(賑恤)하지 않고, 만약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다 판 연후에야 바야흐로 진구(賑救)할 것을 허락하므로, 이로써 많이들 굶어 죽기에 이른다고 한다. 경이 어찌 한갓 관곡(官穀)을 아껴서 백성들의 목숨을 구제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도내에 저장한 곡식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짐작하여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기근(飢饉)으로 절박한데도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어찌 진구(賑救)하는 뜻이 있겠는가? 경은 내 뜻을 몸받아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도랑이나 골짜기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慶尙道賑恤使韓致亨曰： 道內飢民嗷嗷待哺，望卿之至猶赤子之望乳母。今聞雖有飢餓者，非至浮腫則不賑；若有財產，則必待盡賣然後方許賑救，以此多致餓殍。卿豈徒爲靳惜官穀不恤民命哉？必因道內儲置不敷，斟酌爲之耳。然迫於飢饉而未蒙其惠，豈賑救之意歟？卿體予意，毋使吾赤子轉于溝壑。</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7일 (계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이거(李瑠)가 아뢰기를, “성인(聖人)이라도 생각이 흐리면 미혹(迷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미혹할 리야 없겠지만, 그러나 생각이 흐리면 미혹하게 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즈음 성상께서 송골매[松鵲]를 좋아하셨는데, 응사(鷹師)가 이를 놓치면 밤에도 궁문(宮門)을 열고 금군(禁軍)17046) 을 내어서 찾습니다. 또 창고의 곡식으로 그 군사를 먹이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귀하므로 창고의 곡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송골매를 잃은 것이 나라에 무슨 손상이 되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물건을 애호(愛好)하면 본심(本心)을 잃게 된다는 말을 경계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평(持平) 반우형(潘佑亨)이 말하기를, “응사(鷹師)와 내관(內官)이 매[鷹]를 날릴 때마다 거리에서 말을 달려 동서(東西)로 달리면서 부딪치니, 인물(人物)을 상하게 할 듯합니다. 익(益)17047)</p>	<p>○御經筵。講訖，正言李瑠啓曰：“惟聖罔念作狂，聖無作狂之理，然罔念則狂之理在是。近者上好尙松鵲，因鷹師放逸，夜開宮門，發禁軍尋之，又以倉穀饋其軍。今年凶穀貴，倉粟不可濫費，一鷹之逸，何損於國而如是乎？玩物喪志，可不戒乎？”持平潘佑亨曰：“鷹師、內官每於放鷹，馳馬街巷，奔突東西，恐傷人物。益戒舜曰：‘罔遊于逸，罔淫于樂。’如此喪志之物，不宜玩好。”上問左右，領事李克培對曰：“臺諫非以上爲耽玩也，慮其漸而言之耳。”上曰：“松鵲，非易得之物，</p>

	<p>이 순(舜)임금에게 경계하기를, ‘방탕하게 놀지 말고 지나치게 즐기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심을 잃게 하는 물건은 애호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p> <p>“대간(臺諫)은 성상께서 지나치게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짐을 염려하여 말한 것뿐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송골매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조련(調練)하여 길들이기도 어려우며 일반 매처럼 기를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려서 찾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항상 매를 날려 사냥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한 번 날리는 것을 구경하였을 뿐이다. 비록 애호하는 물건이 본심을 잃게 한다고는 하였으나, 사람이 짐작하여 하는 데 달려 있을 따름이다.”</p> <p>하였다.</p>	<p>調馴亦難，不可以常鷹畜之。其失而求之，何以爲非？予未常爲放鵝遊獵，但一觀放耳。雖云玩物喪志，在人斟酌爲之耳。”</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2월 15일(신묘)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참판(參判) 김승경(金升卿)이 와서 아뢰기를,</p> <p>“지난 가을에 비가 오지 않았고 금년에 또 가물었으니, 보리가 장차 말라 죽을 것입니다. 청컨대 도랑을 수리하고 밭둑을 정비하여 명산 대천(名山大川)에 기우(祈雨)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재상(宰相)이 모두 그 직책에 부지런히 힘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한이 없게 하면 한재(旱災)가 없을 것이다. 사무는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겉치레만 한다면 옳겠는가? 아직 기우(祈雨)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임금께서는 천의(天意)에 응하는 실상을 깊이 아시</p>	<p>○辛卯/戶曹判書李德良、參判金升卿來啓曰：“去秋不雨，今年又旱，麥將槁死。請修溝壑，淨阡陌，禱雨于名山大川。”傳曰：“宰相皆恪謹乃職，使民無冤，可無旱災矣。不修人事而但修虛文可乎？姑勿祈雨。”</p>

	<p>고서 바야흐로 자신을 반성하고 덕행(德行)을 다듬었는데, 이덕량 등은 이에 걸치레만을 들어서 우러러 신총(宸聰)을 번독하게 하였으니, 힘을 바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2월 19일(을미) 4번째기사</p>	<p>전라도 진휼사(全羅道賑恤使) 이극돈(李克墩)이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번에 충청도 감사(忠淸道監司)가 아뢰 바에 의하여, 전라도(全羅道)의 곡식 8만 석과 황해도(黃海道)의 곡식 2만 석을 충청도로 수송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배에 짐을 싣는 역사(役事)가 자칫하면 수개월이 걸릴텐데, 8만 석이 모두 군·현(郡縣)의 목은 곡식이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배에 싣는 곳까지 운반하게 한다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리(官吏)가 숫자에 맞추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독촉한다면, 필시 사사로운 곡식을 가지고 변상할 것이니, 폐단을 끼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1만 석을 더 청하였으니, 만약 다시 배에 짐을 싣어서 운반하게 한다면, 4개월이 지나야 겨우 충청도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보리와 밀이 반드시 익어서, 구황(救荒)하는 데에 무익(無益)하게 됩니다. 하물며 충청도에는 비축한 곡식이 35만 석이므로, 전라도와 황해도의 10만 석을 합치면 곧 45만 석입니다. 그러나 25만 석은 헤아려서 남겨 두고 20만 석으로 진휼(賑恤)한다면, 비록 더 운반하지 않더라도 족할 것입니다. 또한 신이 근래에 들건대, 강효순(康孝順)이 상언(上言)하기를, ‘각도(各道)의 진휼사(賑恤使)가 능히 진구(賑救)하지 못하여 가난한 마을과 궁벽한 곳에는 굶어 죽은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소나무 가지와 나뭇잎으로 그 시체를 덮어 가렸습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용렬(庸劣)하나 마을을 순행(巡行)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두루 진휼하였으나, 굶어 죽은 사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강효순을 본도(本道)에 보내어 굶어 죽은 자를 적발하게 한다면, 수령(守令)의 숨긴 것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p>	<p>○全羅道賑恤使李克墩馳啓曰：“曩因忠淸道監司所啓，命以全羅道穀八萬石、黃海道穀二萬石輸于忠淸道。臣謂裝船之役，動經數月，八萬碩皆郡縣陳腐之穀，令民轉輸于載船之所，必多耗損，官吏照數督納，必以私穀償之，貽弊不貲。而又加請一萬碩，若更裝船漕轉，則四月已過，僅到忠淸道。其時兩麥必熟，無益於救荒。況忠淸道蓄穀三十五萬碩，而并全羅、黃海十萬碩，則乃四十五萬碩也。量留二十五萬碩，而以二十萬碩賑貸，則雖不加漕轉足矣。臣比聞康孝順上言云：‘各道賑恤使不能賑救，窮村僻巷飢死之徒，不知幾乎，松枝木葉掩覆其屍。’臣雖庸劣，巡行村落，盡心周救，不見餓死人。請送孝舜于本道，擿發餓死者，則守令之掩匿自露矣。”傳曰：“加漕運便否，問於戶曹。”</p> <p>【史臣曰：“克墩雖或勤於王事，常以辯言務掩己過。今此馳啓，亦易於言</p>

	<p>“더 운반하게 하는 것의 편부(便否)를 호조(戶曹)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극돈은 비록 임금이 명령하는 일에 근실하기는 하였으나, 항상 변명을 하여 자신의 과실을 힘써 숨기려 하였다. 지금 이처럼 치계(馳啓)한 것도 말을 쉽게 한 것이다. 이때에 기근을 당하여 못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모두 관아를 바라보았는데 한정이 있는 곡식을 가지고 기근이 든 백성을 두루 구제하여야 하였으니, 이는 능히 하기 어려웠다. 관리가 된 자는 사자(使者)의 행차를 살피고 있다가 먼저 마을을 순시하여, 여위고 곤궁한 자를 보게 되면 구차스럽게 무양(撫養)하여 명예를 바랐으며, 거의 죽게 된 자를 만나면 궁벽한 골짜기에 내다 버려 형적을 없애어서 그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극돈이 비록 어질다 한들, 어찌 능히 그 늙어서 몸이 쇠약해진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p>	<p>矣。時當飢饉，衆口喁喁，咸仰於官，以有限之穀，遍救飢饉之人，是難能也。爲官吏者，候使者之行，先巡閭巷，見瘦困者，則苟且撫養以要譽，遇垂死者，則投諸窮壑，滅去形迹，以避其責。克敏雖賢，安能盡活其老羸哉?”】</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2월 19일(을미) 5번째기사</p>	<p>전(前) 평양 판관(平壤判官) 이식(李植)이 상서(上書)하여 자책(自責)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이식 등은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와졌으므로, 이조(吏曹)로 하여금 서용(敍用)하게 하였으니, 이것을 말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식은 성품이 본래 탐욕스럽고 간사하여 일찍이 전주 판관(全州判官)이 되었을 때 폐단을 끼친 것이 많았으므로, 그 일에 관련되어 과직을 당하게 되었다. 추핵(推覈)하는 관리가 장차 이르게 된다는 말을 듣고 부윤(府尹) 김관(金權)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반드시 다른 고을에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니, 부디 쌀을 적당히 헤아려 내보내어서 매우 궁핍한 것처럼 대비하도록 하시오.’ 하였으므로 즉시 쌀을 내보내었는데, 거의 2백 석에 이르렀다. 전임(田霖)이 그 직임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사고(私庫)에 남아 있는 바를 점고하니, 겨우 2석 정도 되었다.” 하였다.</p>	<p>○前平壤判官李植上書自訟。傳于承政院曰：“李植等改過自新，已令吏曹敍之，其以此語之。”</p> <p>【史臣曰：“李植性本貪譎，曾爲全州判官，致弊多端，坐事當罷。聞推官將至，謂府尹金權曰：‘我等必被囚於他邑，請量出米糶，以備甚窘。’卽出米穀，幾至二百碩。田霖代其任，闕私庫所餘，纔二碩許。”】</p>
<p>성종 188권, 17년</p>	<p>의영고 영(義盈庫令) 윤파(尹坡) 등 5명이 윤대(輪對)하였다. 윤파가 아뢰기</p>	<p>○義盈庫令尹坡等五人輪對。坡啓曰：</p>

<p>(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20 일(병신) 3번째기사</p>	<p>를,  “함흥(咸興)은 바로 국가의 풍패(豊沛)17098) 의 고향으로서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이시애(李施愛)의 변(變)17099)으로 인하여 읍호(邑號)를 강등(降等)시켜서 군(郡)을 삼아 다른 고을과 같게 하였습니다. 또 관찰사영(觀察使營)의 노비(奴婢)와 여기(女妓)들이 모두 함흥(咸興)에 살고 있어 영흥(永興)에서 일하려면 양식을 가지고 왕래하면야 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읍호(邑號)를 승격시켜 영(營)으로 환원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정해년(17100)의 변(變)에 함흥(咸興)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을 죽이고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에게 호응하였으므로, 이로써 읍호(邑號)를 강등시켜 군(郡)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겨우 20년이 되었는데 만약 다시 읍호를 승격시킨다면 악(惡)을 징계하는 것이 엄하지 않을 것이니, 가볍게 의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함흥의 백성들이 비록 이시애의 악함에 편당하였으나, 이에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이 있고 또 성곽(城郭)이 견고하며 도로(道路)가 평평하여, 세조(世祖)도 읍호를 강등시키지 않았습니니다. 청컨대 관찰사영(觀察使營)을 복구시켜 영노비(營奴婢)가 왕래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咸興乃國家豊沛之郷， 祖宗陵寢所在。 曩因施愛之變， 降號爲郡， 有同列邑。 且觀察使營奴婢女妓等， 皆居咸興， 而役于永興， 贏糧往來， 其弊不貲。 請升號還營。” 命議于政府。 鄭昌孫、尹弼商議：“丁亥之變， 咸興人民擅殺監司、守令， 應逆賊李施愛， 以此降號爲郡， 今纔二十年。 若復升號， 懲惡不嚴， 不宜輕議。” 金謙光議：“咸興人民雖尙惡於施愛， 乃祖宗陵寢所在， 且城郭堅固， 道路均適， 世祖亦不降號。 請復觀察使營， 以除營奴婢往來之弊。” 從昌孫等議。</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22 일(무술) 3번째기사</p>	<p>처음에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의 백성 강효순(康孝舜)이 대궐에 나아가 상언(上言)하기를,  “공주 사람 손익수(孫益秀)·김윤(金允)·이정근(李貞根)은 곡식을 많이 쌓아 두고서 깊이 간직하고 내어놓지 않았으며, 정병(正兵) 김산(金山)의 아들이 굶어</p>	<p>○初， 忠淸道公州人康孝舜詣闕上言曰：“公州人孫益秀、金允、李貞根積穀多而深藏不發， 正兵金山之子飢死， 詐稱病死。 賑恤使往從事官宋遙年家，</p>



	<p>죽었는데도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 일컬었습니다. 또 진휼사(賑恤使)가 종사관(從事官) 송요년(宋遙年)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주연(酒宴)을 베풀었습니다.”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홍문관 부교리(弘文官副校理) 조지서(趙之瑞)에게 명하여 가서 적발하게 하였다.</p>	<p>終夜宴飲。”至是，命弘文館副校理趙之瑞往撻之。</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2월 22일(무술) 4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성근(鄭誠謹)이 와서 봉명(奉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백성으로서 폐단을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았으나, 모두 신이 받은 사목(事目) 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곳이 너무 멀어서 비록 원한을 품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펼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이 그 소장(訴狀)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소장을 받아들여도록 하라. 내가 장차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영안도 한 도는 본래부터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이 있으니, 구황(救荒) 이외의 일은 모두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외람되게 받아 가지고 와서 아뢰었으니 명성을 얻기 위한 것에 가까웠으므로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였다.  정성근(鄭誠謹)이 글로 아뢰기를,  “1. 육진(六鎭)의 군사와 말은 본래 정강(精強)하다고 일컬었는데, 오늘날에는 점점 감소되고, 여러 진(鎭)의 군사와 한량인(閑良人)17101)의 대부분은 절도사영(節度使營)의 이졸(吏卒)로 투숙하였습니다. 대개 진군(鎭軍)은 성(城)을 지키고 척후(斥候)하여 밤낮으로 수고롭지만, 영군(營軍)은 3번(番)으로 나누어 진(鎭)을 지키므로 그 역(役)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고을에서도 영(營)에 속한 사람들을 감소시켜 역사(役使)시키지 않고, 비록 사변(事變)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정역(征役)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로써</p>	<p>○御晝講。永安道敬差官弘文館典翰鄭誠謹來奉命。仍啓曰：“本道人民陳訴弊瘼者甚衆，然皆非臣所受事目內事也。但彼土遐遠，雖有抱冤者，無由自伸，故臣受其訴狀而來。”傳曰：“其以狀入，予將處之。”</p> <p>【史臣曰：“永安一道，自有觀察使、守令，救荒外事，皆在所不受也。而冒受來啓，近於取名，人嗤之。”】</p> <p>鄭誠謹書啓曰：</p> <p>一。六鎭士馬，素號精強，今日就減耗。諸鎭軍士及閑良人，多投屬節度使營吏卒。蓋鎭軍則守城、斥候，晝夜勞役；而營軍則分三番立鎭，其役已歇，而所居官以營屬人，不(減) [敢] 差役，雖有事變，安居而不從征。以此爭賂色吏、軍官，求屬營軍。臣意諸鎭將各以軍馬臨機應變，不必節度使</p>

	<p>색리(色吏)17102) 와 군관(軍官)에게 다투어 뇌물을 바치고 영군(營軍)에 속하기를 구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진의 장수는 각기 군사와 말을 가지고서 시기에 따라 번에 대응해야 할 것이지 절도사(節度使)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내지(內地)에 거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컨대 이와 같이 투속(投屬)한 자들을 쇄환(刷還)하여, 감소되는 인원을 채우도록 하소서.</p> <p>1. 무릇 군보(軍保)는 갑사(甲士) 5명, 기병(騎兵) 3명, 보병(步兵) 2명인데, 갑사는 산관(散官)이 되면서 기병이 되고, 기병은 또 말이 없어서 보병이 됩니다만, 보인(保人)17103) 은 예전대로 지급해 줍니다. 이는 수령(守令)이 원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여 이로 인해서 빼앗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절도사(節度使)와 진장(鎭將)이 그 현역(現役)을 헤아려서, 법에 의하여 보인(保人)을 주도록 하소서.</p> <p>1. 마현손(馬賢孫)은 병을 핑계대고 경성(鏡城)에 물러가 살고 있으면서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시애(李施愛)의 일을 귀감(龜鑑)으로 삼을 만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마현손은 비록 늙은 아버지가 있으나 조정(朝廷)에서 시위(侍衛)하도록 명령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1. 북도(北道)의 군사는 방수(防戍)하기를 꺼려서, 부조(父祖)에게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으면 충찬위(忠贊衛)로 이속(移屬)합니다. 그러나 번상(番上)을 해도 녹(祿)이 없고 또 도로가 먼데도 병조(兵曹)와 본진(本鎭)에서 번상하도록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도피하는 자가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 북도는 바로 방어해야 하는 곳이니, 충찬위를 면하고자 원하는 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방수하게 하소서.</p> <p>1. 남도(南道)·북도(北道)의 군정(軍丁)이 대부분 호강(豪強)한 집에 숨어 있으므로, 군액(軍額)이 이로써 날로 감소됩니다. 청컨대 군호적(軍戶籍)을 참고하여, 본역(本役)으로 쇄환(刷還)하게 하소서.</p>	<p>擁衆兵居內地。請刷此投屬者，充諸減耗之額。一。凡軍保，甲士五，騎兵三，(保)[步]兵二。甲士作散爲騎兵，騎兵又無馬爲步兵，而保人依舊給之，是守令欲不取怨，因仍不奪耳。臣意節度使與鎭將攷其現役，依法給保。一。馬賢孫稱疾，退居鏡城，多占良民，徒衆日廣，李施愛之事可鑑。臣意賢孫雖有老親，命令侍朝，以防未然。一。北道之軍殫於防戍，父祖有原從之功，則移屬忠贊衛。然番上無祿，且道路阻脩，兵曹與本鎭督令番上，由是逃避者多。臣意北道乃防禦處也，其求免忠贊衛者，從其願使之防戍。一。南北道軍丁多隱於豪強之戶，軍額以此日縮。請憑考軍戶籍，刷還本役。一。端川以南各官軍人，立防於南道節度使營，以防禦不緊，故以縣布雇役，退處其家。節度使亦利其貨而聽之，故防戍疎虞。臣請革節度使，而使觀察使總治南道。不然則開諭此弊，使之知懼。一。六鎭諸將受野人贈遺，視以爲常。彼人雖外修交際之禮，如有却之者，心服其請。臣意凡受野人贈遺者，痛繩以法。</p>
--	--	--

	<p>1. 단천(端川) 이남 각 고을의 군인은 남도(南道)의 절도사영(節度使營)에서 방수하는데, 방어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면포(綿布)로써 역인(役人)을 고용하고 자신의 집에 물러가서 삽니다. 절도사 역시 그 재화(財貨)를 이롭게 여겨 그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방수가 소홀합니다. 신은 청컨대 절도사를 혁파하고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남도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폐단을 알아듣도록 말해 주어, 그것을 알고서 두려워하게 하소서.</p> <p>1. 육진(六鎭)의 여러 장수가 야인(野人)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피인(彼人)이 비록 길으로는 교제(交際)의 예(禮)를 돈독하게 한다고 하나, 물리치는 자가 있어야만 그 청(請)에 심복(心服)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무릇 야인의 선물을 받는 자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p> <p>1. 장사하는 사람들이 혹은 금하는 물건을 가지고 변경에서 매매하며, 인하여 성 밑에 사는 피인(彼人)과 교통(交通)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청컨대 금방(禁防)을 엄하게 더하도록 하소서.</p> <p>1. 여러 진장(鎭將)이 스스로 군관(軍官)을 천거하여 진(鎭)으로 데리고 가는데, 오래 되지 않아서 체임(遞任)되면 군관도 따라서 체임됩니다. 그리고 신관(新官)이 또 군관을 데리고 가게 되니, 역로(驛路)가 부산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진장이 비록 체임된다고 하더라도 군관은 기한에 준하여 그대로 머무르게 하소서.</p> <p>1. 당하관(堂下官)인 진장(鎭將)이 부임할 때 도로가 멀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의복(衣服)이 매우 많아서 품마(品馬)17104)로는 다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길가에서 말을 빌리니, 군사나 백성의 말이 또한 이로써 죽기에 이릅니다. 신의 생각에, 당하관에게는 품마 이외에 또 1필을 더 주어서 짐을 싣고 가는 데 편리하도록 하소서.</p> <p>1. 각 진보(鎭堡)의 군기(軍器) 가운데 각궁(角弓) 같은 것은 부러지거나 파손되어서 못쓰게 된 것이 많습니다. 청컨대 쓸 만한 것은 골라서 수리하고, 그</p>	<p>一。興利人或齋禁物買賣邊境，仍與城底彼人交通者，亦或有之。請嚴加禁防。一。諸鎭將自薦軍官帶率之鎭，未久而遞，軍官亦從而遞，新官又率軍官而去，驛路驟然。臣意鎭將雖遞，而軍官則準期仍留。一。堂下官鎭將其赴任之時，因道路復遠，所齋衣服甚多，以品馬未能盡輸，沿路借馬軍民之馬，亦以此致斃。臣意堂下官於品馬外，又加一匹，以便馱載。一。各鎭堡軍器，如角弓，折毀不用者多。請擇其可用者而修補，其餘破折者，減錄會計，勿使虛張其數。一。長箭、片箭又如神機箭，破碎不用者頗多，而道內無竹可修。例送箭竹，節度使視爲己有，不分諸鎭。臣意自慶尙、江原漕運之路，通於永安，輸此兩道箭竹，分藏諸鎭，錄於會計，隨毀隨補。一。北道節度使兼鏡城府使，每於合水之後，在鍾城行營。鏡城有營田，而又於傍近諸鎭俱有營田，足以供之，而米淸酒饌之需，使六鎭每十日相遞而供。一經支供，則官中蕩盡，其弊不費。六鎭軍民皆欲以節度使兼穩城府使，使之移鎭，以除輪次供億之弊云。</p>
--	---	--

	<p>나머지 파손되거나 부러진 것은 회계(會計)에 감소시켜 기록하여서 그 숫자를 헛되이 과장하지 말게 하소서.</p> <p>1. 장전(長箭)·편전(片箭)17105) 과 또 신기전(神機箭)17106) 같은 것은 파손되어 쓰지 못하는 것이 자못 많습니다. 그런데 도내(道內)에 수리할 대나무[竹]가 없으면 예(例)대로 전죽(箭竹)을 보내 주는데, 절도사(節度使)가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서 여러 진(鎭)에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에, 경상도·강원도로부터 조운(漕運)하는 길이 영안도로 통하니, 이 두 도의 전죽을 운반해다가 여러 진에 나누어 간수하게 하고 회계(會計)에 기록하여 두고서 파손되는 대로 수리하게 하소서.</p> <p>1. 북도(北道)의 절도사(節度使)는 경성 부사(鏡城府使)를 겸임하는데, 매년 얼음이 언 뒤에는 종성(鐘城)의 행영(行營)에 있습니다. 경성에 영전(營田)이 있는데 또 부근의 여러 진(鎭)에도 모두 영전이 있으므로 공봉(供奉)하기에 족합니다. 그런데 쌀과 주찬(酒饌)의 수요(需要)를 육진(六鎭)으로 하여금 10 일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공봉하게 하니, 한 번 제공하고 나면 고을 안의 것을 다 쓰게 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육진의 군사나 백성들은 모두 절도사가 온성 부사(穩城府使)를 겸하여 진을 옮기도록 하여서 윤차(輪次)로 공봉하는 폐단을 덜고자 한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진을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도사가 혼자 쓰는 영전에서 제공하게 하소서.</p> <p>1. 영안도(永安道)의 여러 고을은 향리(鄉吏)가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군사를 아전(衙前)으로 삼는데, 평소에 관청의 장부와 문서를 익히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각 고을의 문적(文籍)은 착오된 곳이 많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하삼도(下三道)의 향리로 옮겨 가서 사는 자는 여러 진읍(鎭邑)에 속하여 문서를 관장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토관(土官)17107) 인 지인(知印)·주사(主事)의 무리를 모두 아전(衙前)으로 소속시키되, 군액(軍額)에는 포함시키지 말도록 하소서.”</p>	<p>臣意雖不移鎭，而節度使專用營田支供。一。永安道諸邑有鄉吏處少，故以軍士爲衙前，素不閑簿書，由是各官文籍，多致錯誤。臣意下三道鄉吏徙居者，屬諸鎭邑，以掌文書，如又不足，土官知印、主事之徒，皆屬衙前，使不隸軍額。</p> <p>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鄭昌孫、沈澹、尹弼商、李克培、盧思慎、尹壕、鄭佶、李崇元等議：“第一條：兩界節度使營衙前各六百名，曾有定法。若又違法加定，則不爲無弊。下諭節度使，數外移屬衙前者，竝刷還本官，以充軍役。第二條：甲士、騎·步兵給保之法，載在《大典》，請令節度使依《大典》檢察。第三條：馬賢孫多占人丁役使，其來已久，國家非不知也。然一朝盡刷充役，勢亦難行。且此人爲養母下鄉，其使侍朝爲難。第四條：忠贊衛番上防斷便否，令該曹擬議施行。第五條：永安道之人雖土族，本無奴婢，多占良民爲雇工，此風已久，難以卒變。令觀察使、節度使漸次革之。第六條：南道節度使之議已</p>
--	--	---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정괄(鄭恬)·이승원(李崇元) 등은 의논하기를,

“제1조의, 양계 절도사영(兩界節度使營)의 아전(衙前) 각 6백 명은 일찍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법을 어기고서 더 정한다면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절도사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숫자 이외에 아전으로 소속된 자는 모두 본관(本官)에 쇄환(刷還)시켜 군역(軍役)을 보충시키도록 하소서.

제2조의, 갑사(甲士)·기병(騎兵)·보병(步兵)에게 보인(保人)을 지급하는 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청컨대 절도사로 하여금 《대전》에 의하여 검찰하게 하소서.

제3조의, 마현손(馬賢孫)이 인정(人丁)을 많이 점유하여 역사(役使)시키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므로 국가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다 쇄환(刷還)하여 역사에 보충시키는 것도 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미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있으므로, 조정에서 시위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4조의, 충찬위(忠贊衛)가 번상(番上)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막자는 것에 대한 편부(便否)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의(擬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제5조의, 영안도(永安道) 사람들은 비록 사족(士族)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노비(奴婢)가 없었으므로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여 고공(雇工)으로 삼는데, 이러한 풍조는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점차 혁파하게 하소서.

제6조의,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에 대한 의논은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혁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포(綿布)로 역인(役人)을 고용하는 폐단은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엄하게 금하도록 하소서.

제7조의, 육진(六鎭)의 변장(邊將)이 야인(野人)의 선물을 받는 것과, 제8조의

定, 不可革也。 但以縣布雇役之弊, 下諭節度使, 痛加禁斷。 第七條六鎭邊將受野人贈遺, 第八條行商互市野人事, 國家已立法禁止。 令觀察使、節度使申明痛禁。 第九條: 諸鎭將各以腹心及子弟爲軍官, 乃人之常情, 仍舊爲便。 第十條: 鎭將品馬, 載在《大典》, 驛馬加給, 不可舉行。 第十一條: 折毀軍器, 減錄會計。 若以折毀而減, 則軍器日減, 不可舉行。 第十二條: 兩界箭竹, 每年傳遞陸轉, 已有定法, 下諭節度使, 均分各鎭。 水運之策, 則海路險遠, 舟楫不通, 不可舉行。 第十三條: 節度使營, 在祖宗朝商確以定。 今以一人言, 不可更改。 但支持之事, 則下諭節度使, 從簡以除其弊。 第十四條: 衙前若有變, 從軍防禦, 其來已久。 請依舊施行。” 韓明澮議: “第一條: 北道兵卒素富盛, 以守以戰, 敵不敢窺。 近來軍卒或移居南道, 或投屬營軍, 守令謾不致意, 皆不刷還, 從此六鎭虛弱, 賊有輕我之心, 誠爲可慮。 請酌定營軍。 富寧、慶興各十名, 慶源等四鎭各四十名, 永爲恒額, 而使不得投屬。 又令監司刷

	<p>상인들이 야인과 서로 흥정하는 일은 국가에서 이미 법을 정하여 금지하였으니,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소서.</p> <p>제9조의, 여러 진장(鎭將)이 각기 심복(心服)과 자제(子弟)를 군관(軍官)으로 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인정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제10조의, 진장(鎭將)의 품마(品馬)는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역마(驛馬)를 더 주는 일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p> <p>제11조의, 부러지거나 파손된 군기(軍器)를 회계(會計)에 감소시켜 기록하는 일은, 만약 부러지거나 파손되었다고 하여 감소시킨다면 군기가 날로 줄어들 것이니, 거행할 수 없습니다.</p> <p>제12조의, 양계(兩界)의 전죽(箭竹)을 해마다 차레로 전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법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으니,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각 진(鎭)에 고르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수운(水運)의 계획은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서 배가 통할 수 없으니, 거행할 수 없습니다.</p> <p>제13조의, 절도사영(節度使營)은 조종조(祖宗朝)에 확실하게 정하였으니, 지금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대(支待)하는 일은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간략한 데에 따라서 그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p> <p>제14조의, 아전(衙前)이 만약 변(變)이 있으면 종군(從軍)하여 방어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시행하소서.”</p> <p>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제1조의, 북도(北道)의 병졸은 본래 많아서 지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므로 적(敵)이 감히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군졸이 혹은 남도(南道)로 옮겨가 살기도 하고, 혹은 영군(營軍)에 투속(投屬)하는데, 수령(守令)이 또한 주의하지 않고서 모두 쇠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육진(六鎭)이 허약해졌</p>	<p>還流移南道者，以實邊備。 第三條：馬賢孫多占良民以爲雇工，甚不可。請命召授兼司僕，使之侍衛。 第四條：世祖以永安道道途遙遠，人心頑愚，不識王化，故令本道忠贊衛、親軍衛或授兼司僕，使輪番侍衛，以習朝儀，今不可遽改也。其餘與昌孫等議同。”從昌孫等議，惟馬賢孫事，從明澮議。領議政尹弼商、右議政李克培啓曰：“國家疑賢孫多聚良民，命大臣議其處置，賢孫若聞則必生疑懼。況鏡城境連野人，逃還本土亦不難。今欲召賢孫以爲司僕，然賢孫有老母，強欲歸養，則國家將何以處之？賢孫母死，則無因退居，國家雖不召而自來矣。臣意以爲賢孫兇惡桀驁，國家急之，則不無生變之理，不可不善待之也。請勿下書以生疑慮。”傳曰：“卿等之言是矣。然賢孫既爲臣於我，當施我國之法。若疑其生變，不加糾察，則國無紀綱矣。”弼商等啓曰：“我國二品宰相母得退居之法，載在令甲。若賢孫母亡，則何緣退居乎？”傳曰：“已降書于賢孫，其來未可知也。賢孫若來，則曉諭此意，使知國家之法，而不至濫</p>
--	---	---

으니, 적(賊)이 우리를 넘보는 마음이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영군(營軍)을 배정하여, 부령(富寧)·경흥(慶興)은 각기 10명, 경원(慶源) 등 4진(鎭)은 각기 40명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일정한 액수(額數)로 삼아서, 투속(投屬)하지 말게 하소서. 또 감사(監司)로 하여금 남도로 유이(流移)한 자를 쇄환하게 하여 변방의 방비를 충실하게 하소서.

제3조의, 마현손(馬賢孫)이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여 고공(雇工)으로 삼은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청컨대 명소(命召)하여 겸사복(兼司僕)을 제수하고서 시위(侍衛)하게 하소서.

제4조의, 세조(世祖)께서는 영안도(永安道)가 도로가 멀고 인심(仁心)이 완고하며, 어리석어 임금의 교화(教化)를 알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본도(本道)의 충찬위(忠贊衛)·친군위(親軍衛)17108)에게 간혹 겸사복(兼司僕)을 제수하여 돌려가면서 시위하여 조정의 의식(儀式)을 익히게 한 것이니, 지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창손 등의 의견과 같습니다.”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르고, 오직 마현손의 일만은 한명회의 의논에 따랐다.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마현손이 양민(良民)을 많이 모았다는 것을 의심하여 대신(大臣)들에게 명해서 그 처리를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마현손이 만약 듣게 되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며, 더욱이 경성(鏡城)은 경계가 야인(野人)과 연결하였으므로 본토(本土)로 도망하여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마현손을 불러서 사복(司僕)을 삼고자 한다 하나, 마현손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으므로 굳이 돌아가서 봉양하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마현손의 어머니가 죽게되면 물러가 살 이유가 없어지므로, 국가에서 비록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마현손은 흉악하고 드세므로 국가에서 급작스럽게 하면 변(變)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좋게

占良民可也。” 誠謹所啓永安道人民訴狀，命曾經本道觀察使、節度使者議之。 魚有沼、鄭文燭、吳純等議：“一。 柔遠鎭，兀狄哈往來要衝之地，只有土城，形勢未固。 請待年豐，依五鎭築石城，以嚴邊備。 一。 明川、古城距永興觀察使之營甚遠，凡進上物膳，抄縣民私馬輸納，其弊不貲。 請以驛馬輸之，以祛民弊。 一。 慶興人民欲以撫安倉及慶源吾弄草以下居民屬于阿吾地堡，以隸慶興。 然撫安倉及阿吾地堡則距慶興不遠，移屬可也；吾弄草之地則遠於慶興，而軍民亦多，似難割屬也。 一。 阿吾地堡傍近居民爲節度使衙前者，竝屬此堡，以實防戍。 非獨此堡，他堡軍士有屬營衙前者，亦依此施行。 一。 豐山堡單弱，宜以會寧軍士循環防戍。 然會寧，防禦極繁之地，軍士比前太減，不可分戍。 請令節度使以南道軍士量宜分定以戍之。 一。 高嶺鎭屬軍卒，其戶首則防戍高嶺，而其率丁則立役于會寧。 大抵永安道軍士，家無奴婢，專賴率丁，以應防戍，其率丁請於貢賦外勿役。 以寬其力。 一。 造山軍民等憚

	<p>대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교서를 내려서 의심을 일으키지 말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 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마현손은 이미 우리 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 나라의 법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변을 일으킬까 의심하여 규찰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기강(紀綱)이 없는 것이다.”</p> <p>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p> <p>“우리 나라의 2품 재상(宰相)이라도 퇴거(退居)할 수 없다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만약 마현손의 어머니가 죽는다면 무슨 연고로 퇴거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미 마현손에게 교서를 내렸으나, 그가 올지는 알 수 없다. 마현손이 만약 온다면 이러한 뜻으로 타일러서 국가의 법을 알게 하여, 양민(良民)을 외람되게 접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정성근이 아뢰 영안도 백성의 소장(訴狀)을, 일찍이 본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이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어유소(魚有沼)·정문형(鄭文炯)·오순(吳純) 등이 의논하기를,</p> <p>“1. 유원진(柔遠鎭)은 울적함(兀狄哈)이 왕래하는 요충지(要衝地)인데 단지 토성(土城)만 있으니, 형세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오진(五鎭)에 의하여 석성(石城)을 쌓아서 변방의 방비를 엄하게 하소서.</p> <p>1. 명천(明川)·길성(吉城)은 영흥관찰사(永興觀察使)의 영(營)과 거리가 매우 먼데, 무릇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고을의 백성과 사마(私馬)를 뽑아서 운반하여 바치게 하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역마(驛馬)로 수송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p> <p>1. 경흥(慶興)의 백성들은 무안창(撫安倉)과 경원(慶源) 오롱초(吾弄草) 이하에 사는 백성들을 아오지보(阿吾地堡)에 속하게 하여서 경흥에 예속시키고자</p>	<p>於出入，欲留戍鹿屯島。然野人出沒無時，且遇大水，慮恐漂沒，不可仍居。”李季全議：“一。柔遠鎭土城，每遇霾雨，輒至崩頽，非徒修築之弊不費，亦非所以威示遠人。請依所言築石城，一。造山軍民春而入耕于鹿屯島，既穫而還戍本堡，其往來必用舟楫，民甚苦之，皆欲留居防戍。然此島土無粘泥，其堡壁皆用草稽，和沙以塗，一經風雨，頽落無餘，倘遇賊變，何以戍之？且有大水，則必至漂沒，不可使民留居也。一。明川、吉城等官物膳，給驛馬輸轉便否，令觀察使商議以啓。一。慶興撫安倉距阿吾地僅十里，其人民等合冰之時，不入阿吾地堡以避賊兵者，以其堡屬慶源，不相營攝也。且阿吾地距慶源四十里，而其所屬軍民未滿百戶，其於慶源不甚緊切。且慶源之民多至千戶，而慶興僅百餘戶。今以慶源吾弄草以下阿吾地所屬軍民則割與慶興，且使撫安倉民輒入阿吾地堡，則防戍有實，而慶興亦得富實矣。一。豐山堡勿論冬夏，防戍視他堡最緊。然會寧軍士不多，加給戍卒爲難。令南道節度使抄當番軍，</p>
--	--	--



	<p>합니다. 그러나 무안창과 아오지보는 경흥과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이속(移屬)시켜도 좋지만, 오룡초 지역은 경흥에서 멀고 군사와 백성도 많은데 나누어서 소속시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p> <p>1. 아오지보(阿吾地堡) 부근에 사는 백성으로서 절도사의 아전(衙前)이 된 자는 모두 이 보(堡)에 소속시켜 방수를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堡)뿐만 아니라 다른 보의 군사로서 영(營)의 아전에 소속된 자가 있으면 또한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p> <p>1. 풍산보(豊山堡)는 고립되고 약하여 마땅히 회령(會寧)의 군사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령은 방어가 매우 긴급한 지역이고 군사가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므로 나누어서 방수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절도사로 하여금 남도(南道)의 군사를 적당히 헤아려서 나누어 정하게 하여 지키게 하소서.</p> <p>1. 고령진(高嶺鎭)에 속한 군졸은, 그 호수(戶首)는 고령을 방수하고 그 술정(率丁)17109 은 회령(會寧)에 역사(役使)시킵니다. 대저 영안도의 군사는 집에 노비(奴婢)가 없어 오로지 술정(率丁)에게 의뢰하여 방수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술정은, 청컨대 공부(貢賦) 이외에는 역사시키지 말아서 그 힘을 넉넉하게 하소서.</p> <p>1. 조산(造山)의 군사와 백성들은 출입하기를 꺼려서 녹둔도(鹿屯島)에 머물러 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인(野人)들이 아무 때나 출몰(出沒)하고 또 홍수를 만나면 물에 떠내려갈까 두려우니, 그대로 거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계동(李季叟)은 의논하기를,</p> <p>“1. 유원진(柔遠鎭)의 토성(土城)은 흄비[霾雨]가 올 때마다 바로 붕괴되어서, 수축하는 폐단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도 없으니, 청컨대 말한 바대로 석성(石城)을 쌓게 하소서.</p> <p>1. 조산(造山)의 군사와 백성들은 봄에 녹둔도(鹿屯島)에 들어가서 농사짓고,</p>	<p>量宜加給。一。高嶺軍卒之保，常供會寧繇役，未得從戶首赴防。請保人貢賦外，勿差雜役。”命更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沈澮、尹弼商、李克培、盧思慎議：“邊民利害，難以遙度。令其道觀察使、節度使議啓後，更議。”從之。</p>
--	---	---

수확하고 나면 본보(本堡)로 돌아와서 방수하는데, 그 왕래에 반드시 배를 사용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생스러워, 모두 섬에 남아 살면서 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섬에는 땅에 진흙이 없어서 그 보(堡)의 벽을 모두 풀이나 지푸라기를 쓰고 모래와 섞어서 바르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무너져서 남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적변(賊變)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방수하겠습니까? 또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물에 떠내려갈 것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머물러 살게 할 수 없습니다.

1. 명천(明川)·길성(吉城) 등 고을의 물건은 역마(驛馬)를 주어 수송하는 일의 편부(便否)를,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1. 경흥(慶興)의 무안창(撫安倉)은 아오지(阿吾地)와의 거리가 겨우 10리인데, 그 백성들은 얼음이 얼었을 때 아오지보에 들어가 적병(賊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보가 경원(慶源)에 속해 있어 서로 겸하여 주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아오지는 경원과 거리가 40리이고 소속된 군사와 백성이 1백 호(戶)도 되지 않는데다가 경원에 있어서는 그리 긴급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경원의 백성은 1천 호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경흥은 겨우 1백여 호입니다. 지금 경원 오룡초(吾弄草) 이하와 아오지에 소속된 군사와 백성을 나누어서 경흥에 붙이고, 또 무안창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오지보에 첩입(輒入)17110) 하게 되면, 방수가 충실해지고 경흥도 부실(富實)해질 것입니다.

1. 풍산보(豊山堡)는 여름과 겨울을 막론하고 방수해야 하니, 다른 보(堡)에 비해 가장 긴급합니다. 그러나 회령(會寧)의 군사가 많지 않아서 수비하는 군졸을 더 주기는 어렵습니다. 남도(南道)의 절도사로 하여금 당번군(當番軍)을 뽑아 적당히 헤아려서 더 주게 하소서.

2. 고령(高嶺) 군졸의 보인(保人)은 항상 회령(會寧)의 요역(繇役)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호수(戶首)를 따라서 부방(赴防)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보인은 공부(貢賦) 이외에 잡역(雜役)을 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p>하였다. 다시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심희·윤필상·이극배·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변방 백성들의 이해(利害) 관계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 도(道)의 관찰사·절도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25  일(신축) 2번째기사</p>	<p>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이파(李坡)가 졸(卒)하였다. 조희를 철퇴하고 조제(弔祭)하고 예장(禮葬)하기를 예(例)와 같이 하였다. 이파의 자(字)는 평중(平仲)이고 자호(自號)를 송국재(松菊齋)라 하였으며, 본관은 한산(韓山)으로서,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계전(李季甸)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달라서 나이 겨우 15세에 여러 사서(史書)를 널리 읽었다. 경태(景泰) 경오년(17117) 17세 때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신미년(17118)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교서관 저작랑(校書館著作郎)에 뛰어올려 제수되었다가 집현전 박사(集賢殿博士)로 전직(轉職)되었다. 누차 천직(遷職)되어 응교(應教)에 이르렀고,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세자 보덕(世子輔德)·판내자 예빈시사(判內資禮賓寺事)를 두루 거쳤다. 천순(天順) 계미년(17119)에 통정 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승직(陞職)되었고,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발탁되어서 임명되었다. 성화(成化) 을유년(17120)에 도승지(都承旨)로 승직되었으나 일로써 임금의 뜻을 거슬러서 첨지중추원사로 천직(遷職)되었다.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옮겼다가 얼마 안되어 가선 대부(嘉善大夫)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승직되었다. 병술년(17121)에 발영시(拔英試) 17122)에 합격하였고, 정해년(17123)에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가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옮겼다. 무자년(17124)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제수되었고, 기축년(17125)에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승직되었다.  일찍이 집을 짓는 역사(役事)에 근수(根隨) 17126)가 언덕을 파 가면서 터를</p>	<p>○議政府左贊成李坡卒。輟朝、弔、祭、禮葬如例。坡字平仲，自號松菊齋，韓山人，領中樞院事季甸之子。少聰異，年纔十五，涉獵諸史。景泰庚午年，十七中進士試，辛未中文科，超授校書著作郎，轉集賢殿博士，累遷至應教。歷知承文院事、司憲府執義、世子輔德、判內資禮賓寺事。天順癸未陞通政僉知中樞院事，擢拜承政院右承旨。成化乙酉陞都承旨，以事忤旨，遷僉知中樞院事，移工曹參議。未幾陞嘉善漢城府尹，丙戌中拔英試。丁亥戶曹參判，移中樞府同知事，戊子拜成均館大司成，己丑陞嘉靖同知中樞府事。嘗作室役，根隨掘去斷岸，以廣基址，二人壓死，坐罷，甲午授中樞府同知事，尋陞知事。乙未拜吏曹參判，丁酉陞資憲爲平安道觀察使，徙民多流亡，坐失於撫字罷，尋拜知中樞府事。如京賀正，回至八站，雪深數</p>

넓히다가 2명이 압사(壓死)하였으므로 파직되었다. 갑오년(17127)에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제수되었다가 곧 지사(知事)로 승직되었으며, 을미년(17128)에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제수되었다. 정유년(17129)에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승직되어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는데, 사민(徙民)한 자들이 대부분 흩어지고 도망하였으므로 무육(撫育)을 잘못된 것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가 곧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북경(北京)에 새해를 하례(賀禮)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팔참(八站)에 이르렀는데, 눈의 깊이가 수척이나 되었다. 이과는 사로잡힌 군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뜻밖의 일에 놀라서 어찌할 줄 몰랐으나 서장관(書狀官) 박삼길(朴三吉)의 도움으로 사졸(士卒)들이 흩어져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눈오는 것을 무릅썼기 때문에 얼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경자년(17130)에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임명되었다. 임인년(17131)에 임금이 자주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재상들과 성리학(性理學)을 논하였는데, 이과가 분석하여 대답하였으므로, 임금이 현명하게 여겨 특별히 서대(犀帶)17132)를 내려 주고 승정 대부(崇政大夫)로 뛰어올려 품계를 더하였다. 을사년(17133)에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임명되었고, 얼마 있다가 우찬성(右贊成)으로 승직되었으며, 좌찬성(左贊成)으로 전직(轉職)되었다. 이과는 젊어서부터 술을 즐겨서 이로 인하여 병이 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갑자기 졸(卒)하였으며, 나이는 53세이다. 시호는 명헌(明憲)인데, 생각하는 바가 과단성있고 멀리 내어다보는 것이 명(明)이고, 건문이 넓고 다재 다능한 것이 헌(憲)이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과는 사람됨이 활달하고 시원스러우며, 용모가 아름답고 담론(談論)하기를 좋아하였으며, 풍류(風流)와 문아(文雅)가 한 시대에서 추앙(推仰)받았다. 의리(義理)의 학문에 널리 통하였고, 문장의 화려함이 그 장점은 아니었으나 자못 문장과 경제(經濟)로써 자부하였다. 총명함이 남

尺。坡聞有虜兵，錯愕罔措，賴書狀官朴三吉士卒不散走，然冒雪凍死者甚多。庚子拜禮曹判書，壬寅上累御宣政殿，與宰相商論性理之學，坡剖析以對，上賢之，特賜犀帶，超加崇政。乙巳拜議政府左參贊，俄陞右贊成，轉左贊成。坡自少嗜酒，因此成疾，至是暴卒，年五十三。諡明憲：思慮果遠‘明’，博聞多能‘憲’。

【史臣曰：“坡爲人豁達開爽，美容儀，善談論，風流文雅，見推一時。涉獵義理之學，辭華非其長也。然頗以文章經濟自負。聰明絕人，凡國人仕宦履歷、氏族世代，無不記憶，朝廷典故，多所詳悉。但議事之際，多務迎合，性又豪奢誇誕，廣營財利。嘗爲經筵官，與臺諫侍從將進講，會坐殿門，方講論經義，坡忽言曰：‘今年米價甚廉，不能多貿綿布。’四坐默然，坡亦面頰發赤。胸中商計產業，故不覺發言至此。”】

	<p>달리 뛰어나, 무릇 나라 사람들 가운데 벼슬한 자의 이력(履歷)과 씨족(氏族)·세대(世代)를 기억하지 못하는 바가 없었으며, 조정(朝廷)의 전고(典故)를 상세히 아는 바가 많았다. 다만 일을 의논할 때 영합(迎合)하려고 많이 힘썼으며, 성품이 또한 호사스럽고 허황되어 재리(財利)를 널리 경영하였다. 일찍이 경연관(經筵官)이 되어 대간(臺諫)과 함께 시종(侍從)하였는데, 장차 진강(進講)하려고 전문(殿門)에 모여 앉아 바야흐로 경전(經傳)의 뜻을 강론(講論)하려 하였다. 그 때 이파가 홀연히 말하기를, ‘금년은 쌀값이 매우 싸니 면포(綿布)를 많이 살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온 좌중이 잠잠하였고 이파도 얼굴과 목이 붉어졌으니, 마음속으로 산업(產業)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2월 29일(을사)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이승건(李承健)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내승(內乘) 3명 가운데 1명은 사복시 정(司僕寺正)이 겸임하고 2명은 외관(外官)으로서 물망(物望)이 있는 자가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석경을 내승에 임명하였으므로 반드시 교만해져 좌우의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니, 그 동류(同類)들이 어찌 스스로 편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동반(東班)의 예(例)가 아닌데, 제수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이미 제수한 자들은 모두 정당한 사람들인가? 겸사복(兼司僕)은 말을 잘 알지 못하는 자인데 강석경은 말을 잘 알고 또 내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다.” 하였다. 이승건이 말하기를,  “어제 신이 길에서 무리를 지어 대오(隊伍)를 이룬 자들을 만났는데, 좌우로 말을 달리고 있기에 물어보니, 모두 내응방(內鷹房) 사람들이었습니다. 성(城) 밖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성 안에서 어찌 이처럼 방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御經筵。講訖，獻納李承健啓曰：“《大典》內乘三人，其一則以司僕寺正兼之，其二則以外官有物望者兼之。今拜碩卿爲內乘，必生驕傲，凌蔑左右，其同類豈自安乎？”上曰：“非東班之例，授之何害？其已授者皆正人乎？兼司僕無識馬者，碩卿識馬而且解我意，故差之。”承健曰：“昨日臣道遇成群作隊者，馳突左右，問之皆內鷹房人也。城外則已矣，城中豈可爲此放恣？”上曰：“松鵬失之甚易，故其習放也。內禁衛十人、正兵十五人、司僕五人從之，是何咎也？”承健曰：“臂鷹者五人，奔馬而過，略無難色。臺諫，人君之耳目，朝廷皆尊敬之，非爲其人</p>

“송골매[松鵞]는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매 날리는 것을 연습한 것인데, 내금위(內禁衛) 10명, 정병(正兵) 15명, 사복(司僕) 5명이 쫓아간 것이니, 이것이 무슨 허물이겠는가?”

하였다. 이승건이 말하기를,

“팔뚝에 매를 받친 자 5명이 말을 달려 지나갔는데, 거의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간(臺諫)은 임금의 이목(耳目)이 되므로 조정(朝廷)에서 모두 존경하는데, 이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기강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에서 내리지 않은 것은 대간(臺諫)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매[鷹]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임금이 부리는 바라면 비록 말[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하는데, 만약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어찌서 그 때 응사(鷹師)를 때려 주고 매[鷹]를 쳐 죽이지 않았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知事) 서거정(徐居正)이 대답하기를,

“지금부터 법을 세워서, 길을 다니는 자로 하여금 비록 매나 개[犬]라고 할지라도 모두 말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같은 법을 세워야만 옳겠는가?”

하자, 이승건이 말하기를,

“내응방(內鷹房)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믿는 바가 있어 이와 같이 방자한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내응방 제조(內鷹房提調)로 하여금 추궁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승건이 또 아뢰기를,

也，重朝綱也。請鞫之。”上曰：“其不下馬，非慢臺諫也，恐驚鷹也。人君所御，雖馬必下，如有敬我之心，豈如此乎？何不其時毆鷹師而搏殺鷹耶？”仍問左右，知事徐居正對曰：“自今立法，使行路者雖鷹犬皆下馬可也。”上曰：“豈可以此而立法也？”承健曰：“內鷹房之人，心有所恃，橫恣如此，甚不可。”上曰：“將使內鷹房調提〔提調〕問之。”承健又啓曰：“忠清道賑恤使柳洵被推，而巡行爲難，請改差。”上問左右，領事盧思慎對曰：“豈窮日夜宴樂乎？宋遙年家在路邊，幸與遙年同入而飲酒，人人所可爲也。”上曰：“凡毀人者，言必過當，豈可以一人之言而改之乎？”承健曰：“京中稱士族而行乞者有之，窮村豈無餓死者乎？請遣內臣按問。”上又問左右，思慎曰：“新菜已生，民可救飢。既遣大臣以賑濟之，又遣內臣檢察，則非委任大臣之意也。”上曰：“然。”

【史臣曰：“大抵人主有玩物之癖，爲大臣者，固當力爭，使納於無過之地。”

	<p>“충청도 진휼사(忠淸道賑恤使) 유순(柳洵)이 추국(推鞠)을 당하여 순행(巡行)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고쳐서 임명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어찌 밤낮으로 내내 연회하여 즐겼겠습니까? 송요년(宋遙年)의 집이 길가에 있어 우연히 송요년과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셨을 것이니, 이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을 헐뜯는 자는 말이 반드시 지나친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말로써 고쳐 임명하겠는가?”</p> <p>하였다. 이승진이 말하기를, “경중(京中)에도 사족(士族)이라고 칭하면서 구걸하는 자가 있는데, 가난한 촌락에 어찌 굶어 죽는 자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내신(內臣)을 보내어 조사하여서 묻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또 좌우에게 물었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새로운 채소가 이미 났으니, 백성들은 기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신(大臣)을 보내어 진제(賑濟)하게 하고서 또 내신(內臣)을 보내어 검찰한다면 대신에게 위임한 뜻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대저 임금이 물건을 애완(愛玩)하는 버릇이 있으면 대신(大臣)이 된 자는 진실로 힘써 간(諫)하여 허물이 없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마땅한데, 서거정은 ‘어찌서 매를 쳐 죽이지 않았느냐’는 전교에 겁을 먹었으니, 바르게 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를 보면 말에서 내리도록 하는 새 법을 세우자고 청하였으므로, 그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하</p>	<p>而居正劫於 ‘何不搏殺鷹’之教，非惟不諫正，至以見鷹下馬請立新法，其希旨苟合甚矣。上之待諫臣之言，亦未得其道也。”】</p>
--	---	---

	기를 바라는 것이 심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간신(諫臣)을 대하는 말도 바른 도리가 되지 못하였다.” 하였다.	
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29 일(을사) 5번째기사	권감(權臧)·이숭원(李崇元)·김순명(金順命)이 와서 아뢰기를, “어젯밤 신 등이 술을 마셔서 금법(禁法)을 범하였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근의 재상(宰相)에게 문병(問病)하느라 서로 왕래하다가 함께 마시면서 술을 즐긴 것이므로 모여서 마셨다고 할 수는 없으니, 대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權臧、李崇元、金順命來啓曰：“昨夜臣等飲酒犯禁，請待罪。”傳曰：“隣近宰相問病，相往共飲藥酒，不可謂會飲，其勿待罪。”
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29 일(을사) 6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반우형(潘佑亨)이 와서 아뢰기를, “화천군(花川君) 권감(權臧) 등은 사리를 아는 대신으로서 모여 가지고 술을 마셨으니,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모여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 내가 듣건대, 권감이 병이 났는데 이 숭원과 김순명이 이웃 마을에 함께 살기에 그 병을 위문하러 갔더니, 마침 권감이 기운을 순조롭게 하는 약술[藥酒]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잠시 서로 마셨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추문(推問)하지 말도록 하라.” 하자, 반우형이 또 아뢰기를, “대신(大臣)은 추문하지 말게 하면서 소민(小民)을 죄준다면, 징계되는 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持平潘佑亨來啓曰：“花川君權臧等以識理大臣而會飲，請鞠之。”傳曰：“此非會飲也。予聞權臧有病，李崇元、金順命共居隣里，往問其病，適權臧服順氣酒，而暫相與飲耳。其勿問。”佑亨又啓曰：“大臣則勿問，小民則罪之，恐無以懲戒也。”不聽。
성종 18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2월 29 일(을사) 8번째기사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차자(笱子)를 올려 말하기를, “권감(權臧)·이숭원(李崇元)·김순명(金順命)은 모두 사리를 아는 재상으로서 밤에 법을 어기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대신으로서 법을 두려워하고 법을 받드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금지시	○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笱子曰：  權臧、李崇元、金順命俱以識理宰相，冒夜過從，違法會飲，殊無大臣畏憲奉法之意。此而不治，無以禁戢細民。



	<p>킬 수 없습니다. 또 안으로부터 적발하여 도읍(都邑) 전체를 징계하려고 하였는데, 법을 처음으로 행하는 데에 재상이 먼저 범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높이는 예(禮)로써 특별히 너그럽게 용납하고 추핵(推覈)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전하의 법이 단지 서민(庶民)에게만 시행되고 귀근(貴近)에게는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범한 바는 비록 작으나, 실로 대체(大體)에 관계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엄단(嚴斷)을 내려서 밝게 추핵하여 죄를 결정하도록 하소서.</p> <p>또 내승(內乘)은 임금[輦轂]을 가까이 모시므로 무신(武臣)의 선임(選任)으로서는 그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근일에 조극치(曹克治)·전임(田霖)과 같은 무리가 모두 여기를 거쳐서 특별히 발탁되었는데, 강석경(姜碩卿)은 겸사복(兼司僕)으로서 시위(侍衛)하고 있으므로 비록 제수할 만하다고는 하나 물망(物望)에는 실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승(御乘)·외양(喂養)·조습(調習)은 본래 어려운 일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강석경이라야만 능히 그 직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해조(該曹)에 명하여 문무(文武)의 재주를 겸전(兼全)한 자를 선발하여서 그 직임을 제수하도록 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且自內擿發，欲肅都下，而法之初行，宰相首犯之，殿下以尊禮大臣，特加優容，不令推覈。是則殿下之法只行於庶民，而不行於貴近，所犯雖小，實關大體。伏望特賜嚴斷，推明定罪。且內乘，密侍輦轂，武臣之選，無出其右。且近日有如曹克治、田霖輩，皆由此進，特蒙拔擢。姜碩卿以兼司僕侍衛，雖若可授，然於物望實爲未協。且御乘喂養調習，本非難事，豈必待碩卿然後能堪其任？伏望特命該曹，選文武全才者，俾授其任。</p> <p>不聽。</p>
<p>성종 189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3월 1일 (병오)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全)이 아뢰기를,</p> <p>“금령(禁令)이 내리자 권감(權監) 등이 맨 먼저 이를 범하였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임금이 사람을 시켜 법에 어그러지는 짓을 살피게 하는 것은 번거롭고 잔단 듯하나, 법령(法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는데, 화천군(花川君)17142 이 와서 말하기를, ‘병 때문에 약술[藥酒]을 마시는데 이웃에 사는 이승원(李崇元)·김순명(金</p>	<p>○御經筵。講訖，大司憲李瓊全啓曰：“禁令纔下，權監等首犯之，請鞫之。”上曰：“人主使人伺察非法，似煩碎，然慮有不畏法令而縱飲者，遣人察之。花川君來言：‘因病服藥酒，隣居李崇元、金順命適至，共飲一盃而罷。’此非會飲，不可鞫也。”瓊全曰：“小民隨所犯罪之，而大臣特貸之，是法之不行，自貴近始。”上問左右，領事李克</p>

	<p>順命)이 마침 왔으므로 한 잔을 함께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하였다. 이것은 회음(會飲)이 아니니 국문하여서는 안되겠다.”</p> <p>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p> <p>“소민(小民)은 범한 대로 죄주고 대신(大臣)은 특별히 용서하면, 법이 행하여 지지 않는 것이 귀근(貴近)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p> <p>“이것은 회음이 아니나, 약술은 새벽에 마셔야 할 것인데 이제 권감은 밤에 남과 함께 마셨으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한 마을의 재상(宰相)이 병문안하러 왔으므로 주인(主人)이 한 잔을 권하는데 객(客)이 어찌 구태여 사양하겠는가? 다 인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p> <p>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p> <p>“내승(內乘)17143)의 벼슬은 무사(武士)들 중에서 높이 뽑히는 것이므로 병조(兵曹)에서 가려서 씁니다. 강석경(姜碩卿)은 겸사복(兼司僕)이 되어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것만도 족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내승을 제수(除授)하여야 하겠습니까? 청컨대 같으소서.”</p> <p>하고, 정언(正言) 황정(黃汀)도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강석경은 궁마(弓馬)17144)를 알고 또 내 뜻을 알므로, 차임(差任)하라고 명하였다. 너희들은 반드시 강석경이 봉보 부인(奉保夫人)17145)의 아들로 집안이 미천하니 사사로운 은혜를 입히는 뜻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므로 말한 것이겠으나, 내가 사사롭게 한다면 &lt;그 아비&gt; 강선(姜善)을 먼저 썼을 것이다.”</p> <p>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p> <p>“듣건대, 유생(儒生)이 벼슬을 바라서 다들 충찬위(忠贊衛)17146)·충순위(忠</p>	<p>培對曰：“此非會飲也。然藥酒當晨服，今權城夜與人飲，不得無罪。”上曰：“同里宰相來問疾，主人勸一酌，客何敢辭？皆人情所不得已也。”瓊全曰：“內乘之職，武林高選，兵曹擇而用之。姜碩卿爲兼司僕，近侍足矣，何必授內乘乎？請遞之。”正言黃珩亦啓之。上曰：“碩卿解弓馬，且解予意，故命差之耳。爾等必以碩卿爲奉保夫人之子，本係微賤，出於私恩故言之耳。予若私之，則當先用姜善矣。”上又曰：“聞儒生希望官爵，皆投屬忠贊衛、忠順衛，居館者少。士風不美，莫此爲甚。”瓊全曰：“不特此也。生員進士不試才授官，自此法之立，儒生爭慕效之，因緣請托，以求爵祿，此宜痛禁也。”上曰：“爲士者平居勵志，將以有用也。今其志趣如此，何足取乎？其痛禁之。”</p>
--	--	--

	<p>順衛)17147) 에 들어가고 거관(居館)17148) 하는 자가 적다 하니, 선비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p> <p>하매, 이경동이 아뢰기를,</p> <p>“이뿐이 아니라, 생원(生員)·진사(進士)는 재주를 시험하지 않고 벼슬을 주는데, 이 법이 세워지고부터는 유생이 다투어 본떠서 연줄을 따라 청탁하여 벼슬과 녹(祿)을 구하니, 이것은 엄히 금하여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선비가 된 자는 평소에 뜻을 돋우어 장차 쓰일 데가 있게 되려는 것인데, 이제 그 뜻이 가는 데가 이러하니, 어찌 취할 만하겠는가? 엄히 금하라.”</p> <p>하였다.</p>	
<p>성종 189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3월 6일 (신해) 7번째기사</p>	<p>전(前) 사인(舍人) 이감(李堪)이 상(喪)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고 오로지 사방을 구걸하려 다니는 것을 일삼아, 달콤하게 말하고 아첨하여 웃으며 함부로 공청(公廳)에서 술마시고는, 여기에서 재물을 얻으면 관가의 짐신은 말까지 빌어 차차로 날라 가서 산업(產業)을 영위하므로, 상림(喪笠)과 쇠복(衰服)17186) 이 죄다 길에서 헤어지니, 사람들이 팔도 도순찰사(八道都巡察使)라 지칭하였다.</p>	<p>○前舍人李堪遭喪不憂，專以行乞四方爲事。甘言諂笑，縱飲公廳，得財於此則并借官馱，次次遞輸以營產業，喪笠衰服盡破於道路，人目之曰‘八道都巡察使。’</p>
<p>성종 189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3월 9일 (갑인) 2번째기사</p>	<p>명하여 후추[胡椒]를 대군(大君)에게 1석(碩) 10두(斗), 1품(品)인 종재(宗宰)17189)·의빈(儀賓)17190)에게 각각 1석, 2품에게 각각 10두, 당상관(堂上官)·승지(承旨)에게 각각 6두, 대간(臺諫)에게 각각 3두,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과 주서(注書)·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에게 각각 2두,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시강원(侍講院)의 낭청(郎廳)과 상서원(尙瑞院)·상의원(尙衣院)·사옹원(司饗院)·내약방(內藥房)·자문감(紫門監)·선공감(繕工監)·군기시(軍器寺)·전연사(典涓司)·전설사(典設司)의 관원과 내관(內官)·내승(內乘)·선전관(宣傳官)·충의위(忠義衛)·승정원 검률(承政院檢律)·도총부 의원(都摠府醫員)·금루관(禁漏官)에게 각각 1두, 사약(司鑰)·사알(司謁)·서방색(書房色)에게 각각 8승(升)씩 내리고, 또 성균관(成均館)에 10석, 사학(四學)에 각각 5</p>	<p>○命賜胡椒：大君一碩十斗，一品宗宰、儀賓各一碩、二品各十斗，堂上官、承旨各六斗，臺諫各三斗，弘文館·藝文館官員、注書、兼司僕、內禁衛各二斗，兵曹、都摠府、侍講院郎廳、尙瑞院、尙衣院、司饗院、內藥房、紫門、繕工、軍器寺、典涓司、典設司官員、內官、內乘、宣傳官、忠義衛、承政院檢律、都摠府醫員、禁漏官各一斗，司鑰、司謁、書房色各</p>

	<p>석, 제향소(祭享所)에 각각 1두 5승씩 내렸다.</p>	<p>八升。又賜成均館十碩，四學各五碩，祭享所各一斗五升。</p>
<p>성종 189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3월 10일(을묘) 2번째기사</p>	<p>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김흔(金訢)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공릉(恭陵)의 정자각(丁字閣) 서영(西楹)에 베풀었다 하여 허물을 지고 자신을 책망하고 하교를 내려 직언(直言)을 구하셨으니, 그 두려워하며 자신을 닦고 살피 하늘의 꾸중을 그치게 하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신들이 듣건대, 우(禹)임금과 탕(湯)임금이 자기를 죄책하였으므로 그 흥(興)한 것이 성대하였다 하며, 또 우리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는 재변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방문을 닫고 고요히 생각하며 깊이 스스로 몹시 책망하셨다 합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거룩하시되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과실이 있을까 염려하여 곧은 의논을 맞아들이시니, 그 우임금이나 탕임금이 자기를 죄책하고 태종께서 몹시 자책하신 일과 일치하여 상도(常道)에 맞습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국가에 장차 실도(失道)하는 어그러짐이 있으려 하면 하늘이 먼저 재변을 내어 견고(謹告)하고 또 괴이(怪異)를 내어 경구(警懼)하니, 크게 무도(無道)한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죄다 부지하여 안전하게 하려 한다.’ 하였는데, 미더운 말입니다.</p> <p>예전 노(魯)나라 애공(哀公) 때에 견고를 내리지 않았고, 수(隋)나라 양제(煬帝)가 재위(在位)한 14년 동안 재변이 없었는데, 대개 화(禍)가 크고 악(惡)이 극진하여 바로잡아 멈추게 할 수 없으므로 하늘도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것이 초(楚)나라 장왕(莊王)은 하늘이 요괴(妖怪)를 보여 계구(戒懼)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상곡(桑穀)17192) 이 뜰에 두 손으로 싸잡을 만큼 크고 평이 정이(鼎耳)17193) 에서 온 일은 요괴가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태무(太戊)17194) 는 엄격하고 공경하며 삼가고 두려워하고, 고종(高宗)은 감히 한가하고 편안히 하지 아니하여 다 덕을 닦아 재변을 그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은(殷)나라의 도(道)가 중흥(中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재변이 없는</p>	<p>○弘文館直提學金訢等上疏曰：</p> <p>臣等伏觀殿下以雷震恭陵丁字閣西楹，引咎責躬，下教求言。其所以恐懼修省，欲弭天譴之意，至矣！臣等聞禹、湯罪己，其興也勃焉。又聞我太宗恭定大王每遇災變，必閉室靜思，深自剋責。今殿下聖不自聖，慮有過失，以延讜論，其與禹·湯之罪己、太宗之剋責，可謂同符合轍矣。先儒云：“國家將有失道之敗，天乃先出災異而譴告之，又出怪異以警懼之。自非大無道之世，則天盡欲扶持而全安之。”信哉，言乎！昔魯哀公時，天不降譴；隋煬帝在位十四(斗) [年] 間，無災異之變。蓋禍大惡極，不可救止，天亦無如之何。此楚莊王所以天不見妖爲戒懼者也。桑拱于庭，雉雠于鼎，妖莫大焉。大戊則嚴恭寅畏，高宗則不敢違寧，皆能修德弭災，殷道中興。然則國無災，未必爲福；國有災，未必爲禍，在人主修省之如何耳。傳曰：“動民以行不以言，應天以實不以文。”所</p>

것이 반드시 복이 되지 않고, 나라에 재변이 있는 것이 반드시 화가 되지 않으며, 임금이 닦고 살피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백성을 감동시키는 데에는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지 않으며, 하늘에 응답하는 데에는 실속으로 하고 겉치레로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행동과 실속이라는 것은 경덕(敬德)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궁중(宮中)에서 반드시 경(敬)에서 하고 외정(外庭)에서도 반드시 경에서 하며, 한 번 나가고 들어올 즈음이나 한 번 움직이고 쉴 때에도 경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면, 하늘에 어찌 감통(感通)하지 않겠으며, 재변이 어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경덕의 실속에 네 가지가 있는데, 조목으로 아뢰겠습니다.

첫째는, 기호(嗜好)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옛 성명(聖明)한 제왕(帝王)이 즐기는 것은 도덕(道德)이고 좋아하는 것은 인의(仁義)인데, 그 마음이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가축이 제 입을 즐겁게 하는 것만 할 뿐이 아니니, 어느 겨를에 다른 것을 그리워하겠습니까? 후세의 임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인의를 추구(芻狗)17195) 로 여기고 도덕을 거저(籬籬)17196) 로 여기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하를 마름질하고 만물을 움직이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고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을 것이며, 이러한 형세에 의거하였으니 해서 안될 것이 없을 것이므로, 모여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낮을 밤으로 삼을 수 있고, 들짐승 사냥에 빠져서 10순(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재화(財貨)를 탐내고 보배를 사랑하여 마음대로 욕심 부려 만족할 줄 모를 수 있고, 토지를 넓혀 백성을 피폐하게 할 수 있고, 토목 일을 궁극히 하여 천문만호(天門萬戶)를 이룰 수 있다.’ 하여, 한낱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여 음란하고 방자하니, 이렇고서도 임금 자리에 오래도록 안정하려 한들 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예지한 자질에다가 갈수록 밝아져 마지않는 학문으로 하루에 세 번 경연(經筵)에 나가 도리의 근원을 강론하시니, 참으로 옛

謂行與實者，不過敬德而已。宮中必於敬，外庭必於敬，一出入之際、一動息之頃，無非所以敬德，則天焉有不格，變焉有不消乎？臣等竊謂敬德之實，有四焉，請得而條陳之。其一曰節嗜好：古之聖帝明王所嗜者道德，所好者仁義，其心好之嗜之，不啻若芻豢之悅口，何暇他慕？後世之主則不然，以仁義爲芻狗，以道德爲籬籬，自以謂裁制六合，運動萬類，所言必應，所欲必得。據如此之勢，無所爲而不可。故可以崇飲沈酗，俾晝作夜；可以淫于原獸，十旬不返；可以殉貨愛寶，慢欲無厭；可以廣土闢地，糜爛百姓；可以窮極土木，千門萬戶。縱一己之好，淫放自恣如此，而欲久安天位，得乎？今殿下以聰明睿智之資，加緝熙不已之學，日三御經筵，講論道腴，誠無讓於古之聖帝明王矣。然近者頗留意鷹(準) [隼]，貂璫之輩多領健卒，馳騖城中，呼鷹之聲不絕，駭人觀聽，莫此爲甚。殿下借諉之曰：“畜鷹爲兩殿物膳也。”則殿下於前日不喜珍禽，盡放松鶻，當時奉養三殿，八珍無闕，今豈必如此而後可也？雖殿下非真心好之，

성명한 제왕보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자못 매[鷹隼]에 뜻을 두시므로 환관(宦官)의 무리가 건장한 군졸을 많이 거느리고 성안에서 말을 달리며 매를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사람의 눈과 귀를 놀랍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매를 기르는 것은 양전(兩殿)17197)의 물선(物膳)을 위해서이다.’라고 핑계하신다면, 전하께서 전일에 진기한 새를 좋아하지 않아서 송골매를 죄다 놓아 보내셨으나, 그 때에 삼전(三殿)17198)을 봉양하되 팔진(八珍)17199)에 빠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하고서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참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기호를 절제하신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는, 명기(名器)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못 벼슬을 폐지하지 말라.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관(官)을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지 말아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작(爵)을 악한 덕을 지닌 사람에게 미치지 말아서 어진 사람으로 하라.’ 하였는데, 대개 임금이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관을 두고 직(職)을 나누는 것은 천위(天位)를 함께 하여 천직(天職)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니, 워낙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이나 악한 덕을 지닌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세의 임금은 내가 빈천(貧賤)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부귀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작상(爵賞)을 한낱 자기가 은택을 주는 자료로 삼으므로, 조하양(寵下養)17200)의 중랑장(中郎將)인 자가 있고 완탈(盪脫)17201)의 교서랑(校書郎)인 자가 있어, 명기(名器)가 크게 참람하여 진흙처럼 천하였으니, 이렇고서도 치평(治平)을 바란들 되겠습니까? 대저 천하가 태평한 때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고차(高車)17202)를 타고 사마(駟馬)17203)를 부리며 한가롭게 돌아다니며 놀고 가만히 손을 모으고 하는 일이 없어도 끝내 무사하기를 보장할 수 있겠으나, 비태(否泰)17204)가 서로 있고 치란(治亂)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찌 한때 무사한 것을 믿고 뒷

其不可謂之節嗜好也，明矣。其二曰重名器：《書》曰：“無曠庶官，天工人其代之。”又曰：“官不及私昵，惟其能；爵罔及惡德，惟其賢。”蓋王者代天理物，設官分職，所以共天位、治天職也。固不可以私昵惡德，濫處之也。後世之主則以爲：“我可以貧賤人也，富貴人也。”以爵賞爲一己恩澤之資，寵下養中郎將者有之，盪脫校書郎者有之。名器大濫，賤如泥土，如此欲求治平得乎？大抵當天下昇平之時，雖以昏庸無識之人，可以乘高車御駟馬，回翔容與，陰拱無爲，而終保其無事矣。然否泰相承，治亂無常，豈可恃一時之無事而不慮後日之患也？在平世不能用賢，而及國家多事，始有無人之歎，抑亦晚矣。此古今之通患也。《書》曰：“惟治亂在庶官。”今庶官之中，莫重於三公論道、六卿分職，而政院管樞機之任，監司專黜陟之權，一有非人參廁其間，則瘵曠之譏興而禍患之兆形矣。臣等願殿下勿以昇平爲恃，當慎簡賢能，以處其位可也。且姜碩卿本是庸賤，徒以阿保之子，得除內乘。夫內乘者，陪侍乘輿，職莫

날의 환난(患難)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태평한 때에 어진 사람을 쓰지 못하고 국가에 일이 많을 때에 가서 비로소 인물이 없다는 한탄을 하는 것은 또한 늦습니다. 이것은 고금을 통한 걱정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치란이 못 벼슬에 달려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못 벼슬 가운데에서 삼공(三公)17205) 의 도(道)를 논하는 것과 육경(六卿)17206) 이 직(職)을 나눈 것보다 중한 것이 없으며, 승정원(承政院)은 추기(樞機)17207) 의 직임을 맡고 감사(監司)17208) 는 출척(黜陟)의 권한을 전담하니,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 그 사이에 섞인다면 직임을 게을리 한다는 비평이 일어나고 화환(禍患)의 조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들은 원하건대 전하께서 태평을 믿지 말고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삼가 가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강석경(姜碩卿)은 본디 어리석고 천한데 아보(阿保)의 아들이라 하여 내승(內乘)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대저 내승이란 승여(乘輿)를 따라 모시므로 직무가 매우 친근하니, 조반(朝班)의 좋은 벼슬이고 우림(羽林)의 중한 선임인데, 어찌 강석경이 모람되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漢)나라 원제(元帝)가 백영(伯榮)을 지나치게 총애하였으므로, 천년 뒤까지 비평받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셨으나, 또한 명기(名器)를 아끼신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세째는, 형법(刑法)을 삼가는 것입니다. 대저 법이란 임금으로서 하늘에서 받은 것이므로, 사사로운 뜻으로 더하거나 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쁜 것을 억눌러야 하고 내가 분한 것을 막아야 하며, 법을 굽혀서는 안됩니다. 성제(成帝)는 원제(元帝)의 아들인데 임금이 다니는 문을 넘거나 임금이 다니는 길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였고, 광무제(光武帝)의 누이도 노비를 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자의 아들과 누이도 유사(有司)의 의논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법을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한 번 어지러워지면, 비록 성인(聖人)일지라도 어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구중(九重) 안에 있

親近，朝著之華秩，羽林之重選，豈容碩卿之冒據也？昔漢元帝過寵伯榮，千載譏之。殿下雖未必至此，亦不可謂之重惜名器也。其三曰謹刑法：夫法者，人主所以受於天，不可以私意輕重低昂之也。是故我喜可抑，我忿可窒，而法不可枉。文帝，元帝之子，不得越王門絕馳道；光武之妹，亦不得保臧獲。以天子之子之妹，不能逃有司之議者，法不可得以亂也。法一亂，則雖聖人，何能善治？人主處九重之內，口傳召號而四方響應，意諭色授而六服振動者，豈有他哉？誠以謹守其法，而下不敢犯也。今殿下克遵成憲，守之如金石，信之如四時，不以私恩而容貸，不以私怒而濫加。然於其間，不無可議。今遇災而懼，誕布德音，有事干國家者，不在原例。而任士洪以近臣，交結朋黨，濁亂朝政，王法所不赦；而特給告身，復齒朝著。劉從生市井一小民也，直以醜詆一二卿相，而獨不免，是何赦令不信而刑法之不衷也？其四曰納諫爭：“無若丹朱傲！惟慢遊是好，傲虐是作。”此禹之所以戒舜也。重華協帝者，舜也；明四目、

으면서 입으로 명호(名號)를 전하여도 사방이 향응하고 뜻으로 색수(色授)17209) 를 일러도 육복(六服)17210) 이 진동(振動)하는 것은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삼가 그 법을 지켜서 아랫사람이 감히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성헌(成憲)17211) 을 잘 따라 금석(金石)처럼 지키고 사시(四時)처럼 믿으며 사사로운 은혜로 용서하지 않고 사사로운 분노로 함부로 더하지 않으시나, 이따금 의논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여 덕음(德音)을 널리 퍼신 데에 ‘일이 국가에 관계된 자는 용서하는 예(例)에 들지 않는다.’ 하신 것이 있으나, 임사홍(任士洪)은 근신(近臣)으로서 서로 붕당(朋黨)을 맺어 조정(朝政)을 어지럽혔으므로 왕법(王法)이 용서하지 않을 바인데도 특별히 고신(告身)을 주어 조반(朝班)에 다시 끼게 하였고, 유종생(柳從生)은 시정(市井)의 한 소민(小民)인데 곧바로 한두 경상(卿相)17212) 을 혈뜬었다 하여 홀로 면하지 못하니, 이는 어찌하여 사령(赦令)이 미답지 않고 형법이 알맞지 않습니까?

네째는, 간쟁(諫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주(丹朱)17213) 처럼 오만하지 말으소서. 단주는 게을리 놀기를 좋아하며 오만하고 포악한 짓을 합니다.’ 이것은 우(禹)가 순(舜)임금을 경계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거듭 이어서 빛남이요(堯)임금과 어울려 맞는 이가 순임금이요, 사목(四目)17214) 을 밝히고 사충(四聰)17215) 을 통달한 이가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어찌 단주와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순임금은 우의 말을 심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한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뜻을 따르며 친근(淺近)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여 태평한 정치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순임금의 위대한 까닭인데, 어찌하여 말세의 임금은 이치의 역순(逆順)과 말의 시비(是非)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단처(短處)를 감싸고 과실을 숨기며 그 신하에게 이기려고 힘씁니까? 장구령(張九齡)17216) 은 우선객(牛仙客)을 재상(宰相)으로 삼을 것을 간쟁하였으나 현종(玄宗)이 ‘별열(閥閥)17217) ’의 말로 꺾었고, 간관(諫官)은 유필(柳泌)이 자사

達四聰者，舜也。舜豈有如丹朱之理也？而舜不以禹之言爲甚，而方且舍己從人，好察邇言，以臻泰和之治。此舜之所以爲大也。奈何季世人主不顧理之逆順、言之是非，護短諱過，務勝其臣？張九齡諫相仙客，而玄宗折之以閥閥之語；諫官論柳泌爲刺史，憲宗拒之以長生之語。終致覆國亡身之禍，可勝痛哉？蓋人主之於下也，其尊如天，其威如雷霆；虛襟而納之，和顏而受之，猶恐其不盡，況懷務勝之心，逞拒諫之術乎？是故直臣結舌，奸佞得志，投間抵隙，依阿狐媚，比德堯、舜，擬功湯、武，使人主侈然自大，神怒而不知，民怨而不悟，此豈國家之福也？今殿下天縱多能，卓越前古，智出庶物，思周萬機。有進言於殿陛之下者，雖有一得之愚，視以爲尋常，不垂採納，或動神機，示天威以詰責之。人臣愛身者多，徇國者少，誰肯出萬死以批逆鱗乎？恐非大舜舍己察言之道也。臣等俱以無狀，職奉論思，凡有所懷，不敢含默，妄以此四者爲當今修德敬天之實。伏惟殿下勿以言之淺近而忽之，國家幸甚。



	<p>(刺史)가 된 것을 논하였으나 헌종(憲宗)이 ‘장생(長生)’의 말(17218)로 물리쳤는데,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 몸을 망치는 화(禍)를 가져왔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대개 임금의 아랫사람에게는 그 높기가 하늘과 같고 그 위엄이 천둥과 같으므로, 속을 털어놓고 받아들이고 낫빔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들여도 극진하지 못할세라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이기려고 힘쓰는 마음을 품고 간쟁을 물리치는 방법을 부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곧은 신하가 혀를 묶어 두고 간사한 자가 뜻을 얻어 틈을 타서 치고 여우가 홀리듯이 아첨하며 덕(德)을 요임금과 순임금에 견주고 공(功)을 탕왕(湯王)·무왕(武王)에 비겨, 임금이 거만하게 스스로 위대하게 여겨 신(神)이 노하여도 모르고 백성이 원망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복이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천품이 재능이 많은 것이 예전 임금들보다 뛰어나서 지혜가 만물 위에 특출하고 생각이 만기(萬機)에 두루 미치시니, 전하께 진언(進言)하는 자가 한 가지 우직(愚直)한 말을 하더라도 예사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기(神機)를 움직이고 천위(天威)를 보여 힐책하시니, 신하 중에는 제물을 아끼는 자가 많고 나라에 몸바치는 자는 적은데, 누가 꼭 죽을 데에 나서서 역린(逆鱗)17219)을 건드리려 하겠습니까? 아마도 위대한 순임금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말을 살핀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몸으로 직분이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무릇 품은 생각이 있으면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망령되게 이 네가지 일이 지금으로서 덕을 닦고 하늘을 공경하는 실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말이 천근(淺近)하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셨으면, 국가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p>	<p>不報。</p>
<p>성종 189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3월 11</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원보륵(元甫崙)이, 임사홍(任士洪) 등에게 직첩(職牒)을 도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논하고, 이어서 아뢰기를,</p>	<p>○御經筵。講訖，持平元甫崙論任士洪等不可還給職牒。仍啓曰：“外居公賤身貢，請以米直納州倉，以備凶</p>

<p>일(병진) 2번째기사</p>	<p>“외방(外方)에 사는 공천(公賤)의 신공(身貢)17220) 은 쌀로 주창(州倉)에 곧 바로 바치게 하여 흉년에 대비하소서.” 하고는, 임금이 미처 답하기 전에 원보륜이 황급히 자리에 앉았다.</p>	<p>荒。”上未及答，甫崙遑遽就坐。</p>
<p>성종 189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3월 11 일(병진) 3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지평(持平) 원보륜(元甫崙)이 아침 경연(經筵)에서 임사홍(任士洪)의 일을 논 하고서는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문득 자리에 앉았고, 또 공천(公賤)의 신공(身貢)을 쌀로 주창(州倉)에 바치기를 청하고서 내가 미처 답하기 전에 문득 다시 물러가 앉았으니, 어찌하여 경솔하게 이처럼 절차를 잃는가? 원보 륜에게 말하라.” 하였다. 원보륜이 명(命)을 듣고 피혐(避嫌)17221)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 다.</p>	<p>○傳曰：“持平元甫崙於朝經筵，論任士洪事，不待予言而遽就坐。又請公賤身貢，以米納州倉，予未及答，遽更退坐，何輕率失次如是？其語甫崙。”甫崙聞命，避嫌，不許。</p>
<p>성종 189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3월 11 일(병진) 6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소(疏) 가운데의 말은 매우 절실하나, 내응방(內鷹坊)의 설 치로 말하면 내가 물건을 완상(翫賞)17223) 하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양전 (兩殿)을 봉양하고자 한 것인데, 너희들이 말한 까닭은 반드시 송골매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어찌 이것으로 유련황망(流連荒亡)17224) 하겠는가? 임사홍(任士洪)은 죄받은 지 이미 오래 되었거니와, 천도(天道)가 10년이면 변하는데, 임사홍인들 어찌 스스로 새로와지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대신(大臣)에 게 의논하여 고신(告身)을 도로 주었다. 강석경(姜碩卿)은 내승(內乘)이 된들 무엇에 방해되겠는가? 유종생(柳從生)은 시정(市井)의 소민(小民)으로서 대신 을 욕하였으니,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자를 옹기한 것은 호조 판 서(戶曹判書)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품(稟)한 것인데, 욕하여도 되겠는 가? 이 사람은 매우 가멸한데, 재물을 뿌리면 면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 여, 한 해가 지나도록 승복하지 않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니, 시독관(侍讀官) 신종호(申從濩)가 대답하기를, “응방(鷹坊)이 없을 때에도 양전의 찬선(饌膳)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반</p>	<p>○御晝講。講訖，上曰：“弘文館疏語甚切。若內鷹坊之設，予非翫物而爲之，欲以奉養兩殿也。而爾等言之者，必以松鵲也，予豈以此流連荒亡也。任士洪坐罪已久，天道十年而變，士洪其無自新之心乎？故議諸大臣而還給告身。姜碩卿爲內乘，何所礙乎？劉從生以市井小民，辱罵大臣，非關國家乎？移市，非戶曹判書所爲，皆稟於我也，而罵之可乎？此人豪富，自謂散財可免，經歲不服，其可赦乎？”侍讀官申從濩對曰：“無鷹坊時，兩殿之膳，無有欠缺，不必畜松鵲而後可也。任士洪無狀小人，濁亂朝政，不可給職牒。姜碩卿賤隸之微者，亦不可擢拜</p>

드시 송골매를 길러야 할 것은 없겠습니다. 임사홍은 무상(無狀)한 소인(小人)이며 조정(朝政)을 어지럽혔으니, 직첩(職牒)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강석경은 하찮은 천한 노예이니, 또한 발탁하여 청반(淸班)에 제배(除拜)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유종생은 죄가 있기는 하나, 일이 국가에 관계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예전에 정(鄭) 나라 사람 중에 ‘누가 자산(子産)17225) 을 죽이지?’ 라고 한 말이 있었으나 자산은 노여워하지 않았고, 우리 나라의 허조(許稠)는 혈뜬 자가 있어도 태연하여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의 체모는 워낙 이러하여야 마땅한데, 이덕량(李德良)은 익명서(匿名署)의 일로 위에 아뢰기까지 하였는데, 어찌 이 때문에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은 내가 간쟁을 물리친다고 말하나, 대간(臺諫)이 말하는 것일지라도 어찌 시비를 가리지 않고 죄다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니, 신중호가 아뢰기를,

“임금의 위엄은 천등보다 더하므로, 진언하는 신하가 밤낮으로 생각하였어도 임금 앞에 이르게 되면 열 가운데에서 일여덟을 잊으니, 낮빛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들이더라도 죄다 말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위엄을 보임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의 소(疏)에 그 이름을 지적하지 않았으나,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어찌 누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겠는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어려워하였고, 어진 구양수(歐陽脩)17226) 도 왕안석(王安石)17227) 을 천거하였는데, 간사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정대(正大)하다면 누구라고 지적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는 범연히 말하여 조정의 신하가 다 인혐(引嫌)하여 제 벼슬에 불안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淸班。劉從生雖有罪，不可謂事關國家。昔鄭人有‘孰殺子産?’之語，子産不怒。我朝許稠有謗毀者，怡然不以爲忤，大臣之體，固當如是。今李德良以匿名書，乃至上聞，豈可以此致民於死也?” 上曰：“弘文館謂我拒諫，雖臺諫所言，豈可不分是非而盡聽耶?” 從濩曰：“人君之威，過於雷霆，人臣之進言者，晝思夜度，及至君前，什喪七八，雖和顏受之，猶恐不盡言，況示之以威乎?” 上曰：“弘文館疏不指摘其名，而有匪人參廁之語，予何知某爲匪人耶? 知人則堯、舜其難之，以(歐陽脩) [歐陽修] 之賢，猶薦王安石，不知奸故也。爾等若正大，則當摘指某也，今乃泛言之，使朝廷之臣皆引謙而不安其職，此豈美事也?” 從濩曰：“知臣莫如君，殿下豈不知乎? 其不指名而言之者，臣等雖言之，殿下不取故也。殿下欲問，則臣當歷舉而陳之。” 上終不問。

	<p>하니, 신중호가 아뢰기를,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는 것인데, 전하(殿下)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이름을 가리켜 말하지 않은 까닭은 신들이 말하더라도 전하께서 취(取)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물고자 하신다면 신이 두루 들어서 아뢰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묻지 않았다.</p>	
<p>성종 189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3월 30  일(을해) 3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어전(魚箭)17285) 을 국가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도록 허락 하였으나 힘이 미약하여 스스로 지르지 못하므로, 가까이 사는 호강(豪強)한 백성이 질러서 그 이익을 나누는데, 한 해에 얻는 면포(綿布)의 수량이 매우 많으나 받아들이는 세(稅)는 매우 가볍습니다. 이제 흉년으로 인하여 국용(國用)이 넉넉하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어전(魚箭)의 세(稅)는 어물(魚物)로 거두고 나서 또 면포를 받아들이게 하면, 거의 편익(便益)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면포를 더 거두면 폐단이 있을 듯하나, 어전의 이익이 매우 많으므로 백성들은 다 즐거이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규획(規畫)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호조에서 아뢰기를,  “어전마다 벼슬이 있는 사람 3인을 따로 정하여 감고(監考)시켜 잡은 물고기의 수량을 적어서 본고을에 알려서 장부에 적어 두게 하고, 또 가을에 제언사(堤堰司)로 하여금 어물을 도합하여 세어 면포를 배정하되 세 몫으로 나누어 두 몫은 어전을 지른 사람에게 주고 한 몫은 사섬시(司贍寺)에 상납(上納)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안산 군수(安山郡守) 조문숙(趙文淑)이 상소(上疏)하기를,  “지난 해의 가뭄으로 온 나라 안이 그 재앙을 입었으나, 연해(沿海)의 고을이</p>	<p>○先是, 上黨府院君韓明澮啓: “各道魚箭國家許貧民給之, 然力微不能自結, 傍近豪民結之而分其利, 一年所得綿布之數甚多, 所納之稅則甚輕。今因凶歉, 國用不敷, 臣意魚箭之稅既收魚物, 又令縣布納之, 則庶得便益。其加徵綿布, 似若有弊, 然箭利甚重, 民皆樂爲之。” 上命戶曹規畫以啓。  戶曹啓: “請於魚箭, 每以有職者三人別定監考, 其捉魚之數, 書報本官置簿。又於秋節, 令堤堰司都數魚物, 酌定綿布三分, 以二分給結箭人, 以一分上納于司贍寺。” 至是, 安山郡守趙文淑上疏曰:  前年之旱, 一國被其災, 而沿海之邑尤甚, 生民之苦, 見之辛酸。然其所賴以生活者, 只魚箭耳。貧民得魚一尾, 轉賣以度朝夕。今因議者之言, 令所</p>

	<p>더욱 심하여 생민(生民)이 보기에 딱합니다. 그러나 그 힘입어 생활하는 것은 어전(魚箭)뿐인데, 가난한 백성이 고기 한 마리를 얻으면 팔아서 끼니를 이어 갑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의 말에 따라, 그 곳 고을들로 하여금 감고(監考)를 많이 정하여 고기의 수량을 적어 세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고을에 들이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전을 지른 백성도 제 비용을 헤아리는데, 두 몫의 이익으로는 스스로 보충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혹 이미 질렀다가 다시 없애어 주린 백성이 힘입어 살아갈 길이 없으니, 국가에서 평소에 거두던 세도 따라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은 어전에 대한 면포의 세를 없애어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시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조문숙의 말은 지나친 듯하나, 내가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닌데 이익을 다투는 이름을 얻으면, 후세에 반드시 논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는 마지못할 일이 아니니, 예전대로 세를 거두라.”</p> <p>하였다.</p>	<p>在各官多定監考，以記魚數，徵綿布三分，一分入官。由是結箭之民亦計其所費，而二分之利，不足以自補，故或既結而復罷。飢民無以資生，國家平日所收之稅，又從而不入也。臣請罷魚箭綿布之稅，以裕國便民。</p> <p>傳曰：“趙文瑒之言，似乎過當。然予非爭利，而得爭利之名，後世必有議之者。此非不得已之事，其仍舊收稅。”</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4월 1일 (병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김질(金耆)이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절도사(節度使)는 매양 2, 3월에 도내(道內)의 군사를 모두 진발(進發)합니다. 명목은 제포 산행(祭脯山行)17289) 이라 하는데, 중횡(縱橫)으로 말을 달리며 모맥(牟麥)17290) 을 짓밟아서 노루와 사슴[獐鹿]을 잡는 것이 많으면 1천여 마리에까지 이르니, 다만 군졸(軍卒)이 수고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에서 지공(支供)17291) 하는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금후의 제포(祭脯)17292) 는 수령(守令)에게 책임지워 준비해서 들이게 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전에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사람에게</p>	<p>○御經筵。講訖，執義金耆啓曰：“平安道節度使，每於二三月盡發道內軍士，名爲祭脯山行，縱橫馳騖，蹂躪牟麥，所獲獐鹿多至千餘。非徒軍卒勞苦，諸邑支供之弊亦且不貲。請今後祭脯，責守令備納，以除其弊。”上曰：“當問曾經其道觀察使、節度使者。”耆又啓曰：“唐人押行通事多齎商賈布貨，以爲興販之資。沿路站驛苦於轉輸，是通事獨行，無檢察官故爾。請於朝京使臣之行，一時押送，</p>

	<p>게 묻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질이 또 아뢰기를,      “중국인[唐人]을 안동해 가는 통사(通事)가 매매할 포화(布貨)를 많이 가지고 가서 장사할 밀천으로 삼기 때문에 연로(沿路)의 참(站)과 역(驛)에서 이를 실어 보내기에 고생을 하는데, 이는 통사 혼자만 가고 검찰(檢察)하는 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청컨대 조정 사신(朝京使臣)17293) 이 갈 때 한꺼번에 안동해 보내어, 이러한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p>	<p>以除此弊。” 上曰：“可。”</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4월 1일      (병자) 3번째기사</p>	<p>이극배(李克培)·김겸광(金謙光)·이극균(李克均)·정문형(鄭文炯)·박성손(朴星孫)이 의논하기를,      “제포(祭脯)는 처음에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준비해 들이도록 하였었는데, 수령(守令)들이 이로 인하여 비록 농삿달[農月]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뽑아 사냥을 하면서 만약 더러 부족하게 되면 백성에게서 값을 거두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그래서 국가(國家)에서는 그 폐단을 없애려고 하여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농한기[農隙]에 부근의 군졸(軍卒)을 모아 2, 3일 동안 사냥하게 하여 겨우 제포(祭脯)만 채우고서 바로 그쳤으니, 어찌 폐단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 고을로 되돌려 정한다면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니, 다만 절도사로서 법(法)을 어긴다거나 폐단을 만드는 자에게는 중론(重論)하여 징계(懲戒)한다는 뜻으로써 유시(諭示)를 내려 계칙(戒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난중(鄭蘭宗)이 일찍이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가 되었을 때에 사냥해서 얻은 것이 무려 수천 마리나 되었는데, 군졸</p>	<p>○李克培、金謙光、李克均、鄭文炯、朴星孫議：“祭脯，初令諸邑備納，守令因此雖當農月，抄民以獵，如或不足，斂價於民，民甚苦之。故國家欲除其弊，令節度使於農隙聚附近軍卒，獵之二三日，僅足祭脯乃止，何弊之有？若還定諸邑，則弊復如前。但以節度使違法作弊者，重論懲戒之意，下諭戒勅何如？”從之。</p> <p>【史臣曰：“鄭蘭宗嘗爲平安道節度使，獵獲無慮數千，而不分與軍卒，盡授諸邑令作脯，而皆有定數。守令欲盈其數，或以羔豚補之，一道鄙之。”】</p>

	<p>(軍卒)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다 여러 고을에다 주어서 포(脯)를 만들도록 한 것이 모두 정해진 수가 있었다. 수령(守令)이 그 수를 채우려고 하여 혹은 염소나 돼지[羔豚]의 포로써 보충을 하니, 온 도에서 이를 비웃었다.” 하였다.</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4월 7일 (임오)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견(特遣)한 직구(職久)가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첨지(僉知) 조전 언팔(早田彦八)이 돌아올 때에 보여 주신 후추[胡椒]의 종자는 상고(上古)로부터 본도(本道)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며, 부상(扶桑)의 여러 주(州)에 있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널리 구하고자 하고 있으니, 만약 구하게 되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낙하(洛下)에서는 전쟁중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산명(山名) 소필(少弼)이 구해 간 대장경(大藏經) 가운데 14책이 풍우(風雨)로 손실되었습니다. 산명(山名)이 사선(使船)을 보내더라도 구하기가 어렵고 귀국(貴國)의 번거로운 비용을 두렵게 여겨 제게 나아와서 청구하여 얻어 달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아뢰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사자(特使者)로 하여금 14책을 다시 내려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p>	<p>○壬午/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職久來獻土宜。其書契曰：  僉知早田彦八回時所示賜胡椒之種，自上古本道不產，又不聞在于扶桑諸州，雖欲旁求，以若得則奉獻者也。就中，於洛下兵戈，前年山名、少弼所求《大莊經〔大藏經〕》之內，一十四冊爲風雨所損。山名遣使船難可求，恐貴國之煩費，就于予被求之然者，令啓者也。今令特使者，一十四冊改以賜者，萬幸。</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4월 8일 (계미)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소이전(少二殿)의 사왜(使倭)가 바친 바의 후추[胡椒] 값이 적다고 하면서 성을 내어 말하기를, ‘우리가 본도(本島)로 돌아가게 되면 도주(島主)가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면서 길을 떠날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므로, 낭청(郎廳)을 보내어 말하게 하기를, “후추는 본래 정해진 값이 있으니,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 하니, &lt;사왜(使倭)가&gt; 대답하기를, “후추의 감(減)해진 값이 1천 1백 18필(匹)에 이르니, 만약 본도(本島)로 돌아가게 되면 도주(島主)가 반드시 우리를 사죄(死罪)에 처할 것이니, 다같이 죽을 바에는 여기에서 죽겠습니다.”</p>	<p>○禮曹啓：“少二殿使倭怒所獻胡椒價少，言曰：‘我還本島，島主必殺。’頓無發行之意。”命遣郎廳語之曰：“胡椒自有定價，難以更啓。”答曰：“胡椒減價至一千一百十八匹，如還本島，島主必置我死罪。等死耳，當死于此。”命議于大臣。鄭昌孫、盧思慎、尹壕議：“請依其言，加數給之。”沈澹議：“自古邊患常起於小，所費雖多，不可惜也。若加給五百匹，則彼</p>

하였다.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정창손(鄭昌孫)·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청컨대 그 말대로 수량을 더하여 주게 하소서.”  
 하고, 심희(沈澹)는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변방(邊方)의 근심은 항상 작은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소비되는 것이 비록 많을지라도 아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5백 필(匹)만 더 준다면 저들은 반드시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지금 원하는 데에 따라 더해 주게 되면 뒤에 오는 자가 이를 본받을 것이니, 잇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왜인(倭人)은 목숨을 가벼이 여기므로 혹시라도 자진(自盡)할까 두려우니, 호조(戶曹)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값을 증액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값이 이미 정해졌으니, 더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후(厚)하게 보내 주고 박(薄)하게 받는 것이 제왕(帝王)의 원인(遠人)17304)을 대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데에 따라 더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만약 값을 증액한다면 뒤에 이를 본받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소이전(少二殿)이 사는 곳은 깊숙하고 멀어서 대마도(對馬島)와 같이 우리 경계에 바짝 다가 있지는 않으니, 비록 간혹 분원(忿怨)을 맺을지라도 어찌 능히 우리의 근심이 되겠는가? 예조(禮曹)로 하여금 의(義)를 들어 다시 효유(曉諭)하게 하라.”  
 하니, 예조에서 다시 낭청(郎廳)을 보내어 말하기를,

必以爲足矣。” 尹弼商議：“今從願加給，則後來者效之，難可繼矣。然倭人輕生，恐或自盡，令戶曹量宜增價爲便。” 洪應議：“價已定矣，不可加給。” 李克培議：“厚往薄來，帝王待遠人之道，從願加給何如？” 傳曰：“若增價則後之效此者必多。小二殿所居深遠，非如對馬島迫近我境，雖或結忿，豈能爲我患？令禮曹舉義更諭之。” 禮曹更遣郎廳語之曰：“爾等慕義來獻土宜，而索價太甚，是以貨而來也。該曹已定其價，何以更啓於上？爾猶畏其主，況我大國乎？” 答曰：“《大莊經 [大藏經] 》不賜我而賜大內殿，對馬州凡有獻，必厚給其價，而於我則不然，貴國之待我主不如大內殿及對馬州也。” 傳曰：“勢難固拒，令戶曹量宜加給。”



	<p>“너희들이 의(義)를 사모해 와서 토산물을 바쳤는데 값을 구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 이것은 재물[貨] 때문에 온 것이다. 해조(該曹)17305) 에서 이미 그 값을 정하였는데, 어찌 다시 주상께 아뢰겠는가? 네가 오히려 그 도주(島主)를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 대국(大國)이겠는가?”</p> <p>하였는데, &lt;사왜(使倭)가&gt; 대답하기를,</p> <p>“대장경(大藏經)을 우리에게서 내려 주지 않으면서 대내전(大內殿)에게는 내려 주었고 대마주(對馬州)에서 무릇 바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값을 후(厚)하게 주면서 우리에게서 그렇지 아니합니다. 귀국(貴國)에서 우리 도주(島主)를 대하는 것이 대내전(大內殿)과 대마주(對馬州)만 같지 못합니다.”</p> <p>하므로, 전교하기를,</p> <p>“형세가 진실로 거부하기 어렵다. 호조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더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4월 9일 (갑신)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권중린(權仲麟)이 아뢰기를,</p> <p>“왜인(倭人)이 바친 바 목란피(木蘭皮)·차자(梔子)·후추[胡椒]와 같은 것은 나라의 소용(所用)에 요긴한 것이 아닌데, 그 값이 너무 비싸서 드는 비용이 적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변장(邊將)에게 유시(諭示)하여 그들로 하여금 와서 바치지 못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호조(戶曹)로 하여금 상의(商議)하여 아뢰게 하라.”</p> <p>하였다.</p>	<p>○甲申/受常參，視事。禮曹參議權仲麟啓曰：“倭人所獻如木蘭皮、梔子、胡椒，於國用不緊，而其價甚重，所費不貲。請諭邊將，使不得來獻。”上曰：“令戶曹商議以啓。”</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4월 12일(정해)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p> <p>“신이 전자에 해청(海靑)을 기르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지금 오히려 기르고 있으니, 성덕(聖德)에 누(累)가 될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丁亥/御經筵。侍讀官趙之瑞啓曰：“臣前者請勿畜海靑，今猶之畜，恐累聖德。”上曰：“若遊田十旬則非矣，只令鷹師放鷹，有何弊乎？”之瑞曰：</p>

	<p>“만약 유전(遊田)17320) 을 수십 일 동안 하였다면 그르겠지마는, 다만 응사(鷹師)로 하여금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이야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p> <p>하였다. 조지서가 말하기를,</p> <p>“응사(鷹師)가 달려가면서 뒤쫓느라 화곡[禾稼]을 손상시키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매 하나를 날리는데 폐단이 어찌 여기에 이르겠는가?”</p> <p>하므로, 조지서가 말하기를,</p> <p>“비록 매 하나를 날린다고 하지마는,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어찌 화곡을 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간(臺諫)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과 같은 관원인데, 지난 번에 응사(鷹師)가 정언(正言) 김수동(金壽童)을 피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사간원(司諫院)의 나장(羅將)이 장(杖)을 맞다가 운명(隕命)하였으니, 이것은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장의 말이 많이 부실(不實)한 까닭에 고문(拷問)한 것이지 어찌 장살(杖殺)하려고 하였겠는가?”</p> <p>하였다. 조지서가 아뢰기를,</p> <p>“어제 신이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새장[鳥籠]을 가진 자가 있어 물어보았더니, 곧 궁중(宮中)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lt;옛날&gt; 순(舜)임금이 칠기(漆器)를 만드니 간(諫)하는 자가 7인(人)이었는데, 새장은 곧 완호(翫好)17321)하는 물건이니 어찌 다만 칠기 정도이겠습니까? 지난 해에는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고 재이(災異)가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금년의 풍흉(豐凶) 또한 알 수가 없는데, 전하(殿下)께서 작은 오락물을 애완(愛玩)하시면서 백성의 괴로움을 긍휼(矜恤)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약 해청(海靑)을 날려보내지 않으신다면, 이는 작은 물건을 중히 여기고 백</p>	<p>“鷹師馳逐傷損禾稼，甚不可也。” 上曰：“放一鷹，弊豈至此？” 之瑞曰：“雖放一鷹，從之者多，豈不害稼乎？且臺諫，人主耳目之官也。頃者，鷹師不避正言金壽童，因此司諫院羅將受杖隕命，是可痛也。” 上曰：“羅將言多不實，故拷問之豈欲杖殺之？” 之瑞曰：“昨日臣道遇人有持鳥籠者，問之乃進宮中者也。舜作柒器，諫者七人；鳥籠乃翫好之物，豈但柒器而已？去年凶荒，民不聊生，災異屢興。今年豐歉亦未可知，殿下玩細娛而不恤民隱可乎？若不縱海靑，則是重細物而輕民也。” 上曰：“玩物喪志，予亦知之。民者，國之根本，予豈輕之？” 左副承旨朴崇質曰：“重細物輕民之言，誤矣。” 之瑞曰：“臣言非誤也。放鷹傷民禾穀，則豈非重物輕民乎？” 上不悅。</p>
--	---	--

	<p>성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완물(玩物)이 의지(意志)를 잃게 함을 나도 알고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내가 어찌 가볍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송질(朴崇質)이 말하기를,  “작은 물건을 중히 여기고 백성을 가벼이 여긴다는 말은 그릇된 말입니다.”  하므로, 조지서(趙之瑞)가 말하기를,  “신의 말은 그릇된 말이 아닙니다. 매를 날려 사냥하면서 백성의 화곡(禾穀)을 상하게 한다면, 어찌 물건을 중히 여기고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않았다.</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4월 15  일(경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신종호(申從濩)가 아뢰기를,  “가뭄 기운이 매우 심하여 화곡[禾稼]이 모두 마르고 우물도 고갈(枯渴)되었으며, 여러 해 동안 계속 가물어서 창고가 비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한다.’ 하였으니, 깊이 염려가 됩니다. 성상께서 걱정하시고 근면(勤勉)하심이 지극한데도 한재(旱災)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렇게 된 원인이 없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은 성실(誠實)함으로써 응(應)한다’ 하였으니, 전하(殿下)께서 하늘에 응하는 성실함이 아마도 미진(未盡)한 바가 있었던 듯합니다. 내응방(內鷹坊)에서 해청(海靑)을 기르고, 또 철망(鐵網)으로 새장[鳥籠]을 만들어서 들이게 하심은, 이것이 완호(玩好)하는 일에 뜻을 두심이니, 어찌 하늘을 공경하고 걱정하며 근면(勤勉)하는 데 있어서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변(災變)이 오는 이유야 내가 덕(德)이 없어서 그렇지, 어찌 해청(海靑)의</p>	<p>○御經筵。講訖，侍讀官申從濩啓曰：“旱氣太甚，禾稼盡焦，井泉亦渴，旱曠連年，倉稟空虛。古云：‘國無三年之蓄，則國非其國。’深可慮也。上之憂勤至矣，而旱災至此，豈無所自而然歟？古人云：應天以實，殿下格天之實，恐有所未盡也。內鷹坊畜養海靑，又令造鐵網鳥籠以入，是留意於玩好，豈敬天憂勤之實乎？”上曰：“災變之來，由予不德，然豈海靑之所致歟？鳥籠乃先王朝舊物，而多缺毀，故令補綴之耳。此豈留意於玩好乎？旱災果由於海靑，則縱之何難？但未知必能致雨也。”同知事蔡壽曰：“古云：‘某事得，</p>

	<p>소치(所致)이겠는가? 새장은 곧 선왕조(先王朝)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물건인데, 많이 이지러지고 헐었기 때문에 보철(補綴)하도록 한 것뿐이니, 이 어찌 완호(玩好)하는 일에 뜻을 두었겠는가? 한재(旱災)가 과연 해청으로 말미암았다면 날려보내는 것이야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는가? 다만 반드시 비가 오게 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겠다.”</p> <p>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채수(蔡壽)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아무 일이 잘 되면 아무 휴징(休徵)17330 이 응(應)하고 아무 일이 잘못되면 아무 구징(咎徵)17331 이 응한다.’ 하였으니, 이는 통하지 않는 논리(論理)입니다. 지금 비록 해청(海靑)을 날려보낸다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비를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마음을 다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걱정하시므로 마땅히 천재(天災)와 구징(咎徵)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한재(旱災)가 있으니, 이는 신이 무상(無狀)한 소치입니다. 옛날 사람은 나라에 재변(災變)이 있으면 삼공(三公)을 면(免)하기를 꾀하였으니, 빌건대, 신의 직(職)을 해임하시어서 재변을 그치게 하소서.”</p> <p>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재변이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군상(君上)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堯)임금이 나 탕(湯)임금이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만났을 적에 상신(相臣)을 면하기를 꾀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lt;임금&gt; 스스로 자신을 허물하지 않고 대신(大臣)이 면하기를 꾀함은 후세(後世)에 잘못된 일이다.”</p> <p>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당(唐)·우(虞)·삼대(三代)17332 의 시대에는 고요(皐陶)·기(夔)·후직(后稷)·설(契)과 주공(周公)·소공(召公)이 대신(大臣)이 되었으니, 이 어찌 면하기를 꾀할 수 있겠습니까? 한(漢)나라 이래로부터는 삼공(三公)에 더러 마땅하지 않</p>	<p>則某休徵應；某事失，則某咎徵應。’此不通之論也。今雖縱海靑，豈能必其致雨也？”領事尹弼商曰：“上盡心於敬天憂民，宜無災咎也，而有此旱災，此臣無狀所致也。古者國有災，策免三公，乞解臣職，以弭災變。”上曰：“災變之作，皆由君上。堯、湯遇水大旱之災，未聞策免相臣也。不自罪己，策免大臣，此後世之失也。”弼商曰：“唐、虞三代之時，皋、夔、稷、契、周、召爲大臣，是豈可策免者乎？自漢以來，三公或有非其人，故策免也。請依漢故事，解臣職事。”上曰：“是予不德所致，豈由大臣乎？”從漢曰：“今旱乾相仍，公私俱竭，民多餓死，此正憂勤之時，凡有害無益之事，請盡去之。”上曰：“予深居九重，豈知民間疾苦？古云：‘君子之過，如日月之食，人皆見之。’予何隱其過失乎？弘文館每請不畜海靑，縱之何難？”從漢曰：“鷹師騎馬，犯正言金壽童，而壽童導卒因此拷掠而死。殿下雖非欲致人於死，其於禮貌臺諫，未爲得也。古人云：‘行行且止，避驄馬御史。’漢既衰亂而所云如是，猶重其臺諫也。”</p>
--	--	---

	<p>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면하기를 피하였었습니다. 청컨대 한(漢)나라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신(臣)의 직사(職事)를 해임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은 나의 부덕(不德)한 소치이니, 어찌 대신(大臣)으로 말미암았겠는가?”</p> <p>하였다. 신중호(申從濩)가 말하기를,</p> <p>“지금 한건(旱乾)이 서로 인(因)해서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되고 백성이 많이 아사(餓死)하였으니, 이는 바로 &lt;백성을&gt; 걱정하고 근면(勤勉)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무릇 유해 무익(有害無益)한 일은, 청컨대 다 물리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구중 궁궐[九重]에 갇혀서 있으니, 어찌 민간(民間)의 질고(疾苦)를 알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자(君子)의 과실(過失)은 일식(日食)과 월식(月食)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본다.’ 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 과실을 숨기겠는가? 홍문관(弘文館)에서는 늘 해청(海靑)을 기르지 못하도록 청하였는데, 해청을 날려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p> <p>하므로, 신중호가 말하기를,</p> <p>“응사(鷹師)가 말을 타고서 정언(正言) 김수동(金壽童)을 범(犯)하였는데, 김수동의 도졸(導卒)이 이로 인해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니 전하(殿下)께서는 비록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나, 대간(臺諫)을 예우하는 도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가다가 잠시 중지하는 것은 총마어사(驄馬御史)17333)를 피함이다.’ 하였으니, 한(漢)나라가 이미 쇠란(衰亂)하였는데도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그래도 그 대간(臺諫)을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공(三公)이 길에서 대간을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예모(禮貌)로써 하는데, 이제 응사(鷹師) 등은 간관(諫官)을 &lt;길에서&gt; 만나 치돌(馳突)17334) 하며 지나쳤으니, 이는 응사가 도리어 삼공보다 존귀(尊貴)한 것입니다.”</p>	<p>且今三公路遇臺諫，必下馬以禮貌之；今鷹師等遇諫官，馳突過之，是鷹師反尊於三公也。” 上曰：“予非欲護鷹師而拷訊導卒也。鷹坊內官言：‘道遇喝，道無辟除聲，故未知正言之來，驅馬而過。’導卒之不辟除，明矣。而詐言辟除，故令訊問耳。予以畜海靑之故，受人之言如此，當罷鷹坊矣。” 仍命承政院縱海靑，鷹坊內官失其所恃，皆涕泣。</p> <p>【史臣曰：“蔡壽外爲剛直，心實邪慝，故其發言類如此。時，持平權仁孫、正言黃玗入侍，而無一言，其人可知。”】</p>
--	--	---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응사를 비호하려고 하여 도졸(導卒)을 고신(拷訊)한 것이 아니다. 응방(鷹坊)의 내관(內官)이 말하기를, ‘길에서 갈도(喝道)를 만났으나 벽제(辟除)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정언(正言)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그대로 말을 몰아 지나쳤습니다.’ 하였으니, 도졸이 벽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거짓으로 벽제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신문(訊問)하게 하였을 뿐이다. 내가 해청(海靑)을 기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응방(鷹坊)을 파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p> <p>하고, 이어서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해청을 날려보내게 하니, 응방의 내관(內官)들은 그 믿는 바를 잃었으므로 모두 눈물을 흘리었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채수(蔡壽)는 겉으로는 강직(剛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특(邪慝)했기 때문에 그 발언(發言)하는 유(類)가 이와 같았다. 당시에 지평(持平) 권인손(權仁孫)과 정언(正言) 황정(黃玎)이 입시(入侍)하였었으나 한마디의 말도 없었으니, 그 사람됨을 알 만하다.” 하였다.</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4월 18일(계사) 3번째기사</p>	<p>형조(刑曹)와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개 들으니, 성현(聖賢)이 왕위(王位)에 있으면 음양(陰陽)이 조화가 되고 풍우(風雨)가 때를 맞추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신민(臣民)의 위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감히 한가하고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서 조종(祖宗)의 어렵고 큰 위업(偉業)을 실추(失墜)시키지 않게 할 것을 생각해왔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한황(旱荒)17342 이 서로 잇달아, 지난해의 한재(旱災)는 전고에 없던 바로서 사방의 만민(萬民)이 기아(飢餓)로 허덕이고 있다. 비록 창고를 기울여 진휼(賑恤)하더라도 오히려 회복[蘇復]시킬 수가 없었는데, 지금 또 바로 농사달을 당하여, 비오는 것이 시기를 어겨 화곡(禾穀)이 마르고 손상되니, 내가 생민(生民)을 생각하고 있으나 조치할 바를 모르겠다. 이러한</p>	<p>○傳旨刑曹、司憲府曰：“蓋聞聖賢在位，陰陽和，風雨時，黎庶阜蕃，以底休平。予以眇躬，托于臣民之上，夙夜祇懼，不敢違寧，思所以無墜祖宗艱大之業。比年以來，旱荒相仍，去年之災，前古所無，四方萬民飢餓相望，雖傾倉賑之，尙未蘇息。今又正當農月，雨澤愆期，禾穀焦傷，言念生民，罔知攸措。變不虛生，緣政而起。永思厥愆，未達其由。豈予之不敏於德而不明於政歟？將中外刑獄或濫，詞訟</p>

	<p>재변(災變)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데, 곰곰이 그 허물을 생각하였으나 이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내가 덕(德)에 불민(不敏)하여 정사를 밝게 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중외(中外)의 형옥(刑獄)이 남용되고 사송(詞訟)17343) 이 혹은 엄체(淹滯)17344) 되어 백성들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순한 기운을 범(犯)하여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찌 천견(天譴)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재변(災變)을 물리쳐 회복시키려면 인사(人事)를 닦아서 이에 응(應)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건대 형부(刑部)17345) 와 사헌부(司憲府)는 형옥(刑獄)과 사송(詞訟)이 모이는 곳이니, 경(卿) 등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각각 마음을 다하되, 형옥을 심리(審理)함에 있어 원억(冤抑)17346) 하고 엄체(淹滯)되는 한탄이 없게 하여, 황천(皇天)이 재난을 내려 경계(警戒)하는 뜻에 답하고 과인[寡躬]이 근심하고 근로하며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p>	<p>或滯，民有愁嘆之聲，以干其順氣歟？不然則何天譴之至此歟？思欲消復災變，盍修人事以應之？念惟刑部、憲府，刑獄詞訟之所萃，卿等體予至懷，各盡乃心審理刑獄，俾無冤抑淹滯之嘆，以答皇天降災警戒之意，以副寡躬憂勞兢惕之懷。”</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4월 18 일(계사) 4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근래에 한황(旱荒)이 서로 잇달음으로 인하여 만민(萬民)이 오오(嗷嗷)17347) 하므로, 창고를 기울여 진휼해도 오히려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 또 바로 농삿달을 당하였는데, 비가 오는 것이 시기를 어겨 화곡(禾穀)이 마르고 손상되니, 내가 생민(生民)을 생각하고 있으나 조치할 바를 모르겠다. 그 재변(災變)이 오는 원인을 추구해보면 비록 과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무릇 형옥(刑獄)의 남용이라든가 사송(詞訟)의 엄체(淹滯)는 사람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이다. 화기(和氣)를 손상하고 재화(災禍)를 초래하는 것은 반드시 이로써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니, 경(卿)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원옥(冤獄)을 심리(審理)하고 엄체된 사송(詞訟)을 판결하여 원왕(冤往)17348) 이 없게 해서, 내가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p>	<p>○下書諸道觀察使曰：  近因旱荒相仍，萬民嗷嗷，傾倉賑之，尙未蘇息。今又正當農月，雨澤愆期，禾穀焦傷，言念生民，罔知攸措。迹其災變之來，雖因寡躬之無類，凡刑獄之濫、詞訟之滯，人之冤抑，無大於是，傷和召災，未必不由於斯。卿其體予至懷，理冤獄，決滯訟，俾無冤枉，以副予夙夜兢惕之意。</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4월 23일(무술) 3번째기사</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여러 도(道)의 진휼사(賑恤使)·종사관(從事官) 및 수령(守令)들이 마음을 다해 구황(救荒)하는 여부(與否)를 어찌 알고서 상벌(賞罰)을 내리겠는가?” 하니, 승지(承旨)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  “종사관(從事官)과 수령(守令)은 진휼사(賑恤使)에게 물으면 알 수 있지만, 진휼사의 능(能)하고 능하지 못한 것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그것을 대신(大臣)들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여러 도(都)의 진휼사(賑恤使)가 능하고 능하지 못한지는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재상(宰相)을 보내어 핵실(覈實)하게 하소서.” 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지금 양맥(兩麥)17357 이 이미 익어 가고 있는데, 유리(流移)17358 한 자나 사망(死亡)한 자가 없으니, 청컨대 상(賞)을 주소서.” 하고, 심희(沈澮)는 의논하기를,  “만약 강명(剛明)한 조관(朝官)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찾아 묻게 하면, 그 실상(實狀)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진휼사가 여러 달 동안 촌락(村落)을 드나든 것은 진실로 분주(奔走)한 수고가 있었으나, 이것은 직분(職分) 안의 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구황(救荒)할 즈음에는 근로(勤勞)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니, 청컨대 상을 주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傳于承政院曰：“諸道賑恤使、從事官及守令盡心救荒與否，何以知而賞罰之？”承旨成健等啓曰：“從事官、守令則問於賑恤使可知，賑恤使能否，無由可知。”傳曰：“其問于大臣。”鄭昌孫議：“諸道賑恤使能否，難以遙度，請遣宰相覈實。”韓明澮議：“今兩麥已熟，而無流移死亡者，請賞之。”沈澮議：“若遣剛明朝官訪於民間，則可知其實。”盧思愼議：“賑恤使累月出入村落，誠有奔走之勞。然此職分所當爲也。”尹壕議：“救荒之際，勤勞莫甚，請賞之。”傳于承政院曰：“今當農月，不可遣使覈實。待秋分遣御史，詢問民間，則可知賑恤能否矣。”承旨成健等啓曰：“既委任大臣，而又遣人覈實，其於待大臣之體何如？守令則可也，賞罰賑恤使則不可。”傳曰：“賞罰守令而不及於賑恤使，則後之賑恤使，必不盡心矣。”對曰：“賑恤飢民，非自去年。如尹弼商、李克培、盧思愼皆曾爲賑恤使，聞有賞賜。”傳曰：“予欲賞罰賑恤使，欲其勸懲，卿等以爲不可故止耳。”</p>
---	--	--



	<p>“지금 농삿달[農月]을 당하여 사신을 보내어서 핵실(覈實)하는 것은 불가(不可)한 일이니, 가을을 기다렸다가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순문(詢問)하게 하면, 가히 진휼(賑恤)한 능부(能否)를 알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승지(承旨)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p> <p>“이미 대신에게 위임(委任)하였는데 또 사람을 보내어 핵실(覈實)하게 되면, 그 대신을 대하는 체면에 어떻겠습니까? 수령이라면 가하지만 진휼사에게 상벌(賞罰)을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p> <p>하므로, 전교하기를,</p> <p>“수령에게 상벌을 내리면서 진휼사에게만 미치지 아니한다면, 뒤에는 진휼사가 반드시 마음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p> <p>하니, 대답하기를,</p> <p>“기민(飢民)을 진휼하는 일은 지난 해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과 같은 경우는 모두 일찍이 진휼사가 되었었는데, &lt;그 때에&gt; 상사(賞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내가 진휼사에게 상벌(賞罰)을 내리려는 것은 권선 징악(勸善懲惡)을 하려는 것인데, 경(卿) 등이 불가하게 여기는 까닭에 그만두겠다.”</p> <p>하였다.</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4월 25일(경자)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왜사(倭使) 직구(職久) 등 5인을 접견(接見)하였다. 직구에게 명하여 술잔[爵]을 올리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p> <p>“너희 도주(島主)가 사람을 시켜 입회하게 하고 적왜(賊倭)를 죽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p> <p>하고는,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庚子/上幸景福宮， 御思政殿設宴， 接見倭使職久等五人。 命職久進爵， 仍傳曰：“汝島主使人葢殺賊倭， 予甚嘉之。” 賜物有差。</p>
<p>성종 190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p>	<p>임금이 망원정(望遠亭)에 거둥하여 수전(水戰)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별서(別墅)17365)에 나아갔는데, 이정(李婷)에게</p>	<p>○甲辰/上幸望遠亭觀水戰。 遂御月山大君婷別墅， 賜婷廐馬二匹。 駕還</p>

<p>(成化) 22년) 4월 29일(갑진) 1번째기사</p>	<p>내구마(內廐馬)17366) 2필(匹)을 내려 주었다. 대가(大駕)가 돌아오다가 서교(西郊)에 이르러 관가(觀稼)17367) 하고, 농민(農民)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至西郊，觀稼，賜農民酒肉。</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5월 2일 (병오)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傳敎)하기를,  “철장(鐵場)의 도회(都會)17368) 를 폐지(廢置)하는 편부(便否)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혹은 이르기를, ‘취련(吹鍊)하는 군인(軍人)이 양식을 둘러메고 왕래(往來)하는 폐단이 작지 않으니, 철장을 파(罷)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바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백성들이 사사로이 스스로 취련(吹鍊)할 수가 없으므로 갖출 길이 없는데, 그 부겸(斧鎌)17369) 과 농기(農器) 등의 물건을 다 바치게 되면 몇 년이 가지 아니하여 민간(民間)에 조그만 쇠붙이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니, 도회(都會)는 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이 두 가지 계책 중에 어떤 것이 쓸 만한가? 아니면 공사(公私)간에 둘 다 편리한 계책이 별도로 있는가?”  하니, 판서(判書) 이덕량(李德良)·참판(參判) 김승경(金升卿)·참의(參議) 임수창(林壽昌)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여러 고을에서 나는 철(鐵)은 야장(冶場)17370) 에서 처리하되, 관찰사(觀察使)가 부근 여러 고을의 공철(貢鐵)의 다소(多少)에 따라 인부(人夫)를 헤아려 정한다.’ 하였는데, 일정한 액수(額數)가 없기 때문에 수령(守令)이 많은 수를 뽑아 보내게 되니, 과연 식량을 둘러메고 왕래하는 폐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철장(鐵場)을 파(罷)하고자 한 것은 이때문이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일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조관(朝官)을 보내어 경장(京匠)으로 하여금 시험적으로 취련(吹鍊)을 하게 해서 만약 강철(鋼鐵) 몇 근(斤)을 취련하는 데에는 인부(人夫) 얼마 정도를 쓰며, 정철(正鐵) 몇 근을 취련하는 데에는 인부 얼마 정도를 쓰는가를 보아서, 본고을 및 부근 고을의 백성들을 뽑아 취련군(吹鍊軍)으로 삼고는 잡역(雜役)과 요역(徭役)을</p>	<p>○傳于戶曹曰：“鐵場都會廢置便否，言者不一。或云：‘吹鍊軍人贏糧往來之弊不貲，罷鐵場，令民備納爲便。’或云：‘民不能私自吹鍊，無由可辦，盡納其斧鎌農器等物，不出數年，民間無寸鐵，都會不可廢也。’此兩策，何者可用？抑別有公私兩便之策耶？”判書李德良、參判金升卿、參議林壽昌來啓曰：“《大典》，諸邑產鐵處置冶場，觀察使以附近諸邑隨貢鐵多少，量定人夫。而未有定額，故守令多數抄送，果有贏糧往來之弊。議者之欲罷鐵場以此也。臣等以謂遣諳練朝官，令京匠吹鍊以試之，如鍊鋼鐵幾斤，用人夫幾許，鍊正鐵幾斤，用人夫幾許。抄本邑及附近邑民，定爲吹鍊軍，蠲免雜徭，俾專此役。則無贏糧往來之苦，而國用亦裕。況鹽鐵之利，歷代所不廢，而祖宗行之亦久，不可遽革也。”</p>

	<p>견면(蠲免)해 주고 이 역(役)만 전담하게 할 것 같으면, 양식을 둘러메고 왕래하는 괴로움도 없을 것이며, 국용(國用)17371) 또한 넉넉해질 것입니다. 하물며 염철(鹽鐵)의 이(利)는 역대(歷代)에서 폐(廢)하지 않던 바인데, 조종(祖宗)이 이를 행한 지 또한 오래 되었으니, 갑자기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5월 2일 (병오) 5번째기사</p>	<p>전라도 진휼사(全羅道賑恤使) 이극돈(李克墩)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흥덕 현감(興德縣監) 양자침(楊子瞻)은 용렬(庸劣)하기가 비할 데 없어서 쌀을 내어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일을 모두 하리(下吏)에게 맡겼는데, 하리가 사욕(私慾)을 많이 꾀하여도 어리석게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컨대 파출(罷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토지가 메말라서 추수가 충실(充實)하지 못하는데, 백성이 멀리 생각하지를 못하고서 그 해에 한 번 조금이라도 풍년이 들면 쓰는 것을 진휼과 모래처럼 하여 조금도 아끼는 것이 없어서, 한 사람이 한 끼니를 먹는 것이 늘상 중국 사람이 하룻동안 먹는 양(量)을 겸합니다. 비단 조식(朝夕)으로 이바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부로 허비하는 것이 법도가 없어, 술을 빚어 떼지어 마시면서 취하는 것을 한도로 하며, 그 저축(儲蓄)해 놓은 것이 즉시 바닥이 나므로, 명년[來歲]의 종자와 식량까지 관창(官倉)에 의지하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예삿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흉년[凶荒]을 만나게 되면 자활(自活)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망(流亡)하는 자가 서로 속출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 안동(安東)의 백성은 검소하고 아끼는 것을 숭상하는 풍속이 있어서 한 해의 수확을 총계(總計)하여 명년(明年)의 종자와 식량이 될 만큼 예산해 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금년(今年)의 비용으로 삼기 때문에, 이로 말미</p>	<p>○全羅道賑恤使李克墩來復命。 仍啓曰：“興德縣監楊子瞻庸劣無比，出糶賑民，盡委下吏，吏多營私，憊無所知，請罷黜。”從之。 又啓曰：“我國土地磽薄，秋穫不實，而民無遠慮，歲一稍稔，用如泥沙，略無顧惜。 一人一時所食，常兼中國人一日所食，非但朝夕所供，橫費無紀，釀酒群飲，以醉爲度。 其所儲蓄，隨手轉空，來歲種食，專仰官倉，習以爲常。 一遇凶荒，不能自活，流亡者相望。 我國安東之民，俗尙儉蓄，總計一歲所收，以擬明年種食，以其餘爲今年之費。 由是雖有水旱，無有捐瘠之患。 臣謂每年之秋，令守令巡審民戶所收之穀，依安東土俗，計除公債租稅及明年種子，然後以所餘許爲一年之食。 如其不足，備草食以補之，則民間自然節用。 議者云：‘民戶至多，守令難以一一巡審，且所收之穀，何以詳其數乎？’ 臣意謂民戶</p>

아마 비록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있게 되더라도 굶주려서 서로 버리게 되는 근심이 없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가을이 되거든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민호(民戶)에서 거둔 바의 곡식을 순심(巡審)하도록 하여서, 안동(安東)의 토속(土俗)에 의하여 공채(公債)와 조세(租稅) 및 명년의 종자까지 셈을 따져 제할 것은 제하고, 그런 연후에 남는 것을 가지고 일 년 동안의 식량으로 삼기를 허락하소서. 만약 그것이 부족할 경우 초식(草食)을 갖추어 보충하게 할 것 같으면 민간(民間)에서도 자연히 절약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민호(民戶)가 지극히 많으므로 수령이 일일이 순심하기가 어렵고, 또 거두는 바의 곡식도 어찌 그 수를 상세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민호가 비록 많기는 하나 만약 1개월 동안을 한다면 두루 순심할 수가 있을 것이니, 비록 반드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개 또한 서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안동(安東)의 토속(土俗)과 같이 다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전날과 같이 망령되게 허비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전라도(全羅道)는 민간(民間)의 굶주림이 심하여 소아(小兒)를 유기(遺棄)하는 것이 1백 4명에 이르렀는데, 신(臣)이 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 분부는 하였으나, 친속(親屬)이 아니므로 능히 구호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수년(數年) 동안의 기한을 정하여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해마다 존망(存亡)을 뽑아 갖추어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의정부(議政府)의 건의(建議)로 인하여 사민(徙民)하는 일을 정지하도록 명하셨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전라도(全羅道) 한 도(道)를 보건대, 풍속이 광한(獷悍)17372) 하여 공공연하게 겁

雖多，若一月則可遍巡審。雖未必的知，大概亦不相遠。年年如是，縱不盡變如安東之俗，亦不至妄費如前日也。且全羅道民間饑甚，遺棄小兒，至一百四名。臣分付願養者，然非親屬，恐不能護恤。請限數年，令其道觀察使，每歲抄具存亡以啓。”傳曰：“然。”又啓曰：“今聞因議政府建議，命停徙民，臣意以爲不然。以全羅一道觀之，風俗獷悍，公行劫略，專由地狹人衆而然也。且民自分今年必徙，其志已定，若終不徙民則已，不得已移民實邊，則請於今年徙之。”傳曰：“知道。”

	<p>략(劫略)17373) 을 하니, 이는 오로지 지역은 좁은데다 사람이 많음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스스로 금년에 반드시 사민(徙民)이 있을 것이라 분별(分別)하고서 그 뜻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만약 끝내 사민(徙民)이 있을 것이라 분별(分別)하고서 그 뜻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만약 끝내 사민(徙民)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었지마는, 부득이 백성을 옮겨 변방(邊方)을 채워야 한다면, 청컨대 금년에 사민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5월 3일 (정미) 2번째기사</p>	<p>경상도 진휼사(慶尙道賑恤使) 한치형(韓致亨)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사민(徙民)하는 일을 정지하도록 명하셨다 합니다. 신이 경상도(慶尙道)의 백성을 보건대, 마땅히 입거(入居)하여야 할 자는 이미 천사(遷徙)17374) 할 계획을 정해 놓고서 모두 집과 전답[田宅]을 팔아버렸으니, 중지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p> <p>하고, 또 서계(書啓)하기를, “본도(本道)에는 군자(軍資)가 넉넉하지 못한데, 별창(別倉)의 곡식을 수령(守令)이 남는 것을 취(取)하여서 이익을 보는 재미로 임의(任意)로 출납(出納)하기 때문에, 부호(富豪)한 백성과 교활한 아전[猾吏]은 대출하는 쌀을 받고서 값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별창(別倉)의 저축한 것이 점차 없어져 가므로 부득이 예(例)대로 군자(軍資)를 청하게 됩니다. 금후로는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별창(別倉)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되, 그 해의 풍흉[豐歉]을 비교해서 사유를 갖추어 계청(啓請)하게 하여 호조(戶曹)에서 수효를 계산하여 헤아려 주게 하고 군자창(軍資倉)에서는 계청하지 말도록 하소서. 상수리[橡實]는 다마 구황(救荒)에 긴급(緊切)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군수(軍需)에도 도움이 될</p>	<p>○慶尙道賑恤使韓致亨來復命。 啓曰：“今聞命停徙民。 臣觀慶尙道民當入居者，已定遷徙之計，皆賣田宅，不可中止也。” 又書啓曰：</p> <p>本道軍資不敷，別倉之穀，守令利於取剩，任意出納，豪民猾吏受糶不償。 因此別倉所儲漸耗，不得已例請軍資。 今後令觀察使勿擅用別倉，較歲豐歉，具由啓請，戶曹計數量給，軍資倉毋得啓請。 橡實非徒切於救荒，亦可補軍需，請於州府郡縣量宜定數，隨年斂散，並錄會計。 本道土地沃饒，收稅當倍他道，而守令不知大體，收稅失中，國用不裕。 請自今年分等第，務要得中，使公私兩便。 沿邊軍需甚繁，</p>

만하니, 주부 군현(州府郡縣)에 청하여 잘 헤아려 수를 정하고 그 해에 거두어들이고 흠어주는 데 따라 아울러 회계(會計)에 기록하게 하소서. 본도는 토지가 옥요(沃饒)17375) 하니, 세(稅)를 거두는 것이 마땅히 다른 도(道)의 갑절이 되어야 하는데도 수령(守令)이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고서 세를 거두는 일에 중도를 잃고 있으므로, 국용(國用)이 넉넉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연분등계(年分等第)17376) 는 득중(得中)17377) 을 요(要)하기를 힘쓰되 공사(公私) 양쪽이 모두 원만하고 편하게 하소서. 그리고 연변(沿邊)의 군수(軍需)는 매우 긴절하니, 청컨대 공천(公賤)의 신공(身貢)17378) 을 본고을에 납입하도록 하여 곡식으로 바꾸어서 군자(軍資)에 보충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호조(戶曹)에 회부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호활(豪猾)한 이민(吏民)으로서 공채(公債)를 갚지 않는 자를 검칙(檢勅)하지 않은 수령(守令)은 이미 치죄(治罪)하도록 법(法)을 세웠으니, 그 영(令)을 거듭 밝히소서. 만약 별창(別倉)의 곡식을 반드시 계청(啓請)하고서 백성을 진휼(賑恤)하게 한다면 이리저리 전전(轉傳)하여 보고하게 되므로, 형편(形便)이 백성을 구제하는데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창(別倉)의 곡식이 적으면 할 수 없이 군자(軍資)를 주어 구휼(救恤)하는데, 수령(守令)이 남는 것을 취(取)하려고 꾀하여 제멋대로 더 주어서 창름(倉廩)을 텅 비게 한 것은 관리(官吏)를 보내어 규찰(糾察)하고 적발해서 이를 죄주게 하소서. 상수리는 구황(救荒)에 긴절한 것으로 이를 준비하기는 매우 쉬우니,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수를 헤아려 관(官)에서 준비하게 하되, 해마다 거두어 들이고 흠어주게 하소서. 공천(公賤)의 공포(貢布)는 국용(國用)에 있어 가장 긴절한 것이므로 상납(上納)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령(守令)이 백성에게 명예 얻기를 요(要)하므로 과연 연분(年分)이 중도를 잃는 폐단이 있으니, 금후로는 관찰사(觀察使)와 수령으로 하여금 득중(得中)을 요하기를 힘써서 너무 험하지 않게 하소서.”

請公賤身貢納於本邑，貿穀以補軍資。

命下戶曹。戶曹啓：“豪猾吏民不償公債者，不檢勅守令，已立法治罪，宜申明其令。若別倉之穀必啓請賑民，則轉傳申報，勢不及救民。且別倉穀少，則不得已給軍資救恤。守令謀欲取贏，擅自加給，以致倉廩虛耗者，遣官糾摘罪之。橡實切於救荒，備之甚易，令州縣量數官備，逐年斂散。公賤貢布，國用最緊，不可不上納。守令要譽於民，果有年分失中之弊，今後令觀察使、守令務要得中，毋使過歇。”從之。

【史臣曰：“時，諸道饑荒，死者相枕，(致享) [致亨] 乃欲以飢餓遺民徙兩界，甚矣!”】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당시 여러 도(道)에 기근[饑荒]이 들어 죽은 자가 즐비하였는데, 한치형(韓致亨)이 이에 굶주린 유민(遺民)을 양계(兩界)17379)에 천사(遷徙)시키고자 하였으니, 이는 심하다.” 하였다.</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5월 6일 (경술)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양맥(兩麥)17382) 이 이미 익었으니, 그 동·서(東西)의 진제장(賑濟場)을 과(罷)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兩麥已熟，其罷東西賑濟場。”</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5월 8일 (임자) 3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직구(職久)가 하직하니, 예조(禮曹)에서 답서(答書)하였는데, 그 답서에 이르기를, “서계(書契)가 이르러 몸이 편안함을 알게 되니, 비로소 위로가 됩니다. 바친 바의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고서 거두어 들었습니다. 토의(土宜)로 정포(正布) 15필(匹), 면포(綿布) 7필(匹)을 돌아가는 사인(使人) 편에 부치니, 영수[領留]하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통래인[通格人]의 수(數)를 감(減)한 일은 연전(年前)의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인해서 이에 통유(通諭)했던 것인데, 이번에 보내 온 글을 보고서 전개(轉啓)하여 예전대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적도(賊徒)를 잡아 참(斬)하였다 하니, 깊이 칭찬하고 기뻐하며, 이에 쌀·콩[米豆] 아울러 30석(碩), 백저포(白苧布) 15필(匹), 명주[綿紬] 15필(匹), 흑마포(黑麻布) 15필(匹), 상면포(常綿布) 50필(匹), 정포(正布) 50필(匹), 백자(栢子) 1석(碩), 청밀(淸蜜) 4두(斗), 호피(虎皮) 1장(張), 표피(豹皮) 1장(張), 소주(燒酒) 15병(瓶), 유둔(油菴) 2, 건치(乾雉) 1백 수(首), 계(桂) 2각(角), 다식(茶食) 2각(角)을 내려 주어 성심[誠款]에 보답합니다. 사자(使者) 직구(職久)는 적도(賊徒)를 주살(誅殺)하는 데 참여한 공(功)이 있었으므로 사과(司果)를 초수(超授)17386) 하고, 겸하여 상사(賞賜)를 내렸으며, 대관(代官) 무승(茂勝)에게도 또한 급사(給賜)하니, 아울러 밝게 알기 바랍니다. 또 후추[胡椒]의 종자를 널리 구해서 보내는 일은 기쁘게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p>	<p>○宗貞國特送職久辭。禮曹答書曰： 書至，得認康裕，開慰。所獻禮物，謹啓收了。將土宜正布一十五匹、緜布七匹，付回使，惟領留。就中，前通格人減數事，爲緣年前凶荒太甚，玆用通諭。今承所示，轉啓仍舊施行。今聞捕斬賊徒，深用嘉悅。玆將給賜米豆并三十碩、白苧布一十五匹、綿紬一十五匹、黑麻布一十五匹、常緜布五十四、正布五十四、栢子一碩、淸蜜四斗、虎皮一張、豹皮一張、燒酒十五瓶、油菴二、乾雉一百首、桂二角、茶食二角，用答誠款。使者職久於誅賊亦與有功，超授司果，兼致賞賜。代官茂勝處亦有給賜，并照悉。且承胡椒種旁求以送事，多喜竚待。所</p>

	<p>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바의 《대장경(大藏經)》은 일찍이 여러 사인(使人)이 구해 감으로 인하여 거의 다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여 드리지 못하니, 의아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p> <p>하였다.</p>	<p>得依諭，幸勿見訝。</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5월 11일(을묘) 1번째기사</p>	<p>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가 졸(卒)하니, 철조(輟朝)17387) 하고 조제(弔祭)17388) 하고 예장(禮葬)하기를 예(例)와 같이 하였다. 보(補)는 태종(太宗)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이미 관례(冠禮)하고는 효령 대군(孝寧大君)에 봉(封)해졌다. 젊어서부터 독서(讀書)하기를 좋아하고 활쏘기를 잘하였는데, 일찍이 태종을 따라 평강(平康)에서 사냥하면서 다섯 번을 쏘아 다섯 번 다 맞추니, 위사(衛士)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편치않으므로 이보(李補)가 몸소 탕약(湯藥)을 써서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니, 태종이 가상히 여겨 특별히 노비[臧獲]를 내려 주었다. 세종(世宗)께서 우애(友愛)가 지극히 도타와서 늘 그 집에 거둥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야 파(罷)하곤 하였다. 이보(李補)가 부처[佛]를 좋아하여 중들을 많이 모아 불경(佛經)을 강(講)하였는데, 세조(世祖)의 돌보아 줌이 지극히 융숭하여서 상뢰(賞賚)17389) 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궁중(宮中)에서 곡연(曲宴)17390) 을 할 때면 이보(李補)가 일찍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어, 혹 밤중에 물러가기도 하였는데, &lt;이런 때면&gt; 세조가 초[燭]를 잡고 배웅하였으며, 원각사(圓覺寺)를 창건(創建)함에 미처서는 그 일을 말아 보도록 명하였다. 임금[上]17391) 이 즉위(即位)하여서는 이보(李補)가 나이 많고 종실의 웃어른[屬尊]이라 하여 예우(禮遇)함이 더욱 융숭하였으며, 여러 번 그 집에 거둥하여 잔치를 베풀고는 그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보(李補)가 만년(晩年)이 되어서는 따로 멧집[茅屋]을 지어 겨우 무릎이나 움지일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는데, 비록 한추위나 한더위라 할지라도 늘 거기에서 거처하였다. 아들 7인(人)이 있어, 가장 젊은 사람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p>	<p>○乙卯/孝寧大君補卒。輟朝、弔祭、禮葬如例。補，太宗第二子，生而聰穎，既冠，封孝寧大君。自少好讀書，善射，嘗從太宗獵平康，五發五殫，衛士皆嘆之。太宗嘗不豫，補親自湯藥，不少懈，太宗嘉之，特賜臧獲。世宗友愛至篤，常幸其第，與語竟夕而罷。補好佛，多聚緇徒講佛經。世祖眷顧隆至，賞賚無算，宮中曲宴，補未嘗不與，或至夜分而退，世祖執燭以送之。及創圓覺寺，命掌其事。上即位，以補年高屬尊，禮遇益隆，屢幸其第，設宴以寵之。補晚年別構茅屋，僅容膝，雖(祈)[禱]寒盛暑，常寢處其中。有子七人，其最少者，年踰六旬。每於良辰美景，舉觴稱壽，蒼顏白髮婆娑膝下，真一時盛事也。至是卒，年九十一。諡靖孝，寬樂令終‘靖’，慈惠愛親‘孝’。補惑釋教，爲緇髡淵藪，凡中外寺刹，必首唱營之。世祖崇信佛教，使僧徒肆行，未</p>



	<p>매양 좋은 날 아름다운 절기에는 술잔을 들어 축수(祝壽)하고, 창안 백발(蒼顏白髮)17392) 로 슬하(膝下)에서 춤을 추니, 진실로 한 시대의 성사(盛事)이었다. 이 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가 91세였다.</p> <p>시호(諡號)를 정효(靖孝)라 하였으니, 너그럽게 즐기며 고종명(考終命)17393) 한 것을 정(靖)이라 하고, 지혜롭게 부모(父母)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을 효(孝)라 한다. 이보(李補)는 불교[釋教]를 혹신(惑信)하여 머리 깎은 사람들[緇髮]의 집합 장소가 되었으며, 무릇 중외(中外)의 사찰(寺刹)은 반드시 수창(首唱)하여 이를 영건(營建)하였다. 세조(世祖)가 불교(佛敎)를 숭신(崇信)하여 중들로 하여금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니, 반드시 이보(李補)의 권유가 아닌 것이 없었다. 이보는 밖으로 청렴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탐욕(貪慾)하여서 거짓 문계(文契)를 만들어 남의 노비[臧獲]를 빼앗은 것이 매우 많았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아들들이 재산을 다투어 화목(和睦)하지 못하였다. 이보(李補)가 일찍이 절[寺]에 예불(禮佛)하러 나아갔는데,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개[犬]를 끌고 팔에는 매[鷹]를 받치고는 희첩(姬妾)을 싣고 가서 절의 뜰에다 여우와 토끼를 낭자하게 여기저기 흩어 놓으니, 이보(李補)가 마음에 언짢게 여겨, 이에 말하기를, “형님은 지옥(地獄)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하니, 이제(李禔)가 말하기를, “살아서는 국왕(國王)의 형(兄)이 되고 죽어서는 보살(菩薩)의 형이 될 것이니, 내 어찌 지옥에 떨어질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p>	<p>必非補之縱與也。 補外似康靜， 而內實貪欲， 僞爲文契， 奪人臧獲甚多。 身沒未幾， 諸子爭財不睦。 補嘗就寺禮佛， 讓寧大君提牽犬臂鷹載姬妾而往， 狼藉狐兔於寺庭。 補心惡之， 乃曰：“兄不怕地獄耶？” 禔曰：“生爲國王兄， 死爲菩薩兄， 予豈有墮地獄之理？”</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5월 11일(을묘)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졸(卒)한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에게 부의(賻儀)로 쌀[米] 70석(碩)과 콩[豆] 30석(碩), 보리[麥] 30석(碩), 청밀(淸密) 10두(斗), 기름[油] 15두(斗)를 내려 주도록 하였다.</p>	<p>○傳旨戶曹：“賜卒孝寧大君補賻米七十碩、豆三十碩、麥三十碩、淸蜜十斗、油十五斗。”</p>
<p>성종 191권, 17년</p>	<p>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이 와서 아뢰기를,</p>	<p>○丙辰/廣原君李克墩來啓曰：“臣頃自</p>

<p>(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5월 12 일(병진) 1번째기사</p>	<p>“신이 근자에 전라도(全羅道)로부터 돌아오다가 길에서 중들을 만났는데, 본도(本道)의 보리가 익어 감으로 해서 얻어먹으려는 자들이 서로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민간(民間)에 모맥(牟麥)17394) 이 많지 않은데 또 승도로 하여금 좀먹게 한다면, 명년(明年)의 종자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이를 금하소서. 또 본도의 굶어 죽은 자는 모두 공천(公賤)으로, 오로지 공역(貢役)의 과중(過重)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자활(自活)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조조(世祖朝)에는 자주 공포(貢布)를 감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헤아려 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蘇復)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마땅히 그대로 따르겠다.”</p> <p>하였다.</p>	<p>全羅道而還，道見僧徒，以本道麥熟，就食者相續。民間牟麥不多，而又爲僧徒耗蠹，則明年之種亦可慮也。請禁之。且本道餓死者皆公賤，專由貢役太重，不能自活耳。世祖朝屢減貢布，今亦量減，使之蘇復何如?” 傳曰：“卿言是，當從之。”</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5월 13 일(정사) 1번째기사</p>	<p>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듣건대, 본도(本道)의 양맥(兩麥)17395) 이 조금씩 여물어 감으로 해서 얻어 먹으려고 가는 중들이 서로 잇달아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명년(明年)의 종자가 반드시 꺾절(乏絶)될 것이므로 매우 염려가 된다. 그 해당 관가에서 마땅히 금하되, 중으로서 도첩(度牒)이 없는 자는 여러 고을로 하여금 쉼출(刷出)해서 군역(軍役)에 보충하게 하라.”</p> <p>하였다.</p>	<p>○丁巳/下書慶尙、全羅、忠淸道觀察使曰：“聞本道兩麥稍稔，僧徒絡繹就食，明年之種必乏，甚可慮也。在所當禁，其僧之無度牒者，令諸邑刷出以充軍役。”</p>
<p>성종 191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5월 16 일(경신) 2번째기사</p>	<p>승지(承旨)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 “의학 교수(醫學教授) 유천(柳旼)은 초모 한사(草茅寒士)17402) 로서, 지금 서울에서 객사(客死)하였는데, 처자(妻子)가 돌아갈 데가 없고 또 조석거리도 떨어졌으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하등(夏等)의 녹(祿)을 주게 하라.”</p> <p>하였다.</p>	<p>○承旨成健等啓曰：“醫學教授柳旼，草茅寒士，今客死于京，妻子無所於歸，且絕朝夕之供，誠可矜憫。” 傳曰：“其給夏等祿。”</p>

출처	내용	원문
<p>성종 192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6월 5일 (무인)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비가 이미 흠족하게 내렸고 밀보리도 익었으니, 탄일(誕日)에 진상(進上)하는 물선(物膳)을 전례대로 봉진(封進)하겠습니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도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p>	<p>○戊寅/禮曹啓: “今雨澤已洽, 兩麥亦熟, 誕日進上物膳, 請依舊封進。” 承政院亦請之, 皆不聽。</p>
<p>성종 192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6월 8일 (신사) 1번째기사</p>	<p>겸사복(兼司僕) 강석경(姜碩卿)이 죽었는데, 관곽(棺槨) 및 쌀과 콩을 아울러 10석(碩)과 베[布] 50필(匹)과 유둔(油菴) 2장과 종이[紙] 50권(卷)과 꿀[清蜜] 1석과 기름[油] 2석과 밀가루[眞末] 3석과 석회(石灰) 40석을 특별히 내렸다. 강석경은 봉보 부인(奉保夫人)17458) 백씨(白氏)의 아들이다.</p>	<p>○辛巳/兼司僕姜碩卿死。 特賜棺槨及米豆并十碩、布五十四、油菴二、紙五十卷、清蜜一碩、油二碩、眞末三碩、石灰四十碩。 碩卿, 奉保夫人白氏子也。</p>
<p>성종 192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6월 13 일(병술) 1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호조(戶曹)에서, 경상도 진휼사(慶尙道賑恤使) 한치형(韓致亨)이 연분(年分)17462) ·발창(發倉)17463) 등의 일을 아뢰는 것에 의거하여 아뢰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연분의 등제(等第)는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직접 자세히 살펴서 되도록이면 알맞게 하도록 하고, 너무 험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홍응(洪應)·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청컨대 호조에서 아뢰는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아뢰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군자창(軍資倉)을 관찰사·도사(都事)가 몸소 감독하여 여닫게 하는 것은 행할 수 없는 형편일 뿐 아니라, 대체(大體)에 손상됨이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자창을 수령이 마음대로 열게 할 수 없으니, 다시 의논하라.” 하였는데,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군자창을 관찰사가 여닫게 하면, 대체에 어그러지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p>	<p>○丙戌/前此, 戶曹據慶尙道賑恤使韓致亨所啓, 年分發倉等事以啓。 至是, 命議于大臣。 鄭昌孫議: “年分等第, 令觀察使、守令備細親審, 務要得中, 毋令過歇。” 韓明澮、沈澮、洪應、尹壕議: “請依戶曹所啓施行。” 尹弼商、盧思愼、李克培議: “依所啓施行爲便。 但軍資倉令觀察使、都事親監開閉, 非徒勢不可行, 有傷大體。” 傳曰: “軍資倉不可使守令擅開, 其更議之。” 尹弼商議: “軍資倉令觀察使開閉, 非徒有違大體, 事多妨礙, 恐難舉行。” 李克培議: “軍資倉開閉, 臣前議已盡。 且守令已斗量取於民, 觀察使、都事又照數入倉, 皆用民力, 爲弊亦多, 斷不可舉行。” 盧思愼議: “依</p>

	<p>일에 지장이 많아서, 아마도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군자창을 여닫는 것은 신이 먼저 의논할 때에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또 수령이 이미 말[斗]로 계산하여 백성에게서 받았는데, 관찰사·도사가 또 수량을 대조하여 창고에 넣을 적에 다 백성의 힘을 쓰고 있으니, 폐단이 또한 많아서, 단연코 거행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신이 전에 의논드린 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다.</p>	<p>臣前議施行。”</p>
<p>성종 192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6월 13        일(병술) 2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문의(文義)의 수인(囚人)인 별시위(別侍衛) 김숙형(金淑亨)이 술에 취하여 이정(李靖)을 때려 죽인 죄는, 율문(律文)에 참대시(斬待時)17464)에 해당합니다.”        하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이정(李靖)과 김숙형(金淑亨)이 서로 싸우다가 치사(致死)하였는데,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취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 없으니, 치사한 죄로 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홍응(洪應)·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청컨대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김숙형은 이정이 취하여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구호하려고 물을 얼굴에 뿌어서 빨리 깨기를 바랐는데, 이정이 취하여 욕하기 때문에 술김에 때려 죽였으므로, 그 본심을 따져 보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 싸우며 때린 것으로 논하여 결단하는 것이 아마情理(情理)에 맞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慎)이 의논하기를,</p>	<p>○刑曹啓: “文義囚別侍衛金淑亨被酒毆殺李靖罪, 律該斬待時。” 命議于大臣。 鄭昌孫議: “靖與淑亨相鬪致死, 雖曰醉酒, 法無貫醉者, 宜致死罪。” 韓明澮、洪應、尹壕議: “請依所啓施行。” 尹弼商議: “淑亨見靖醉臥, 初欲救護, 含水灑面, 以冀速醒。 因靖醉罵, 乘醉毆殺, 原其本心, 非故殺。 以鬪毆論斷, 庶合情理。” 盧思慎議: “淑亨之殺靖, 乃醉酒所爲, 情非故犯。” 又命承政院議之。 朴崇質、尹殷老、李世佑、宋瑛議: “淑亨初見靖醉臥, 以水灑面, 欲待醒同歸, 固無殺靖之心。 及聞靖醜詆, 以石擊口, 又以大石壓胸而逃匿於家, 不可謂非故殺。 但於農人所見處殺之, 情犯可</p>

	<p>“김숙형이 이정을 죽인 것은 술에 취하여 한 짓이니, 정상은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닙니다.”</p> <p>하니, 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박송질(朴崇質)·윤은로(尹殷老)·이세우(李世佑)·송영(宋瑛)이 의논하기를,</p> <p>“김숙형은 처음에 이정이 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물을 얼굴에 뿜어서 깨거든 같이 돌아가려 하였으므로 본디 이정을 죽일 마음이 없었으나, 이정이 욕하는 것을 듣고 돌로 입을 치고 또 큰 돌로 가슴을 누르고서 달아나 집에 숨었으니,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부가 보는 곳에서 죽었으니, 진정으로 범한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p> <p>하고, 안처량(安處良)·변처녕(邊處寧)이 의논하기를,</p> <p>“그 형적을 보면 분명히 고의로 죽인 것이니, 술김이라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김숙형(金淑亨)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 사형을 감면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17465 하라.”</p> <p>하였다.</p>	<p>疑。”安處良、邊處寧議：“觀其形迹，明爲故殺，不可以乘醉恕之。”傳曰：“淑亨非故殺，減死，全家徙邊。”</p>
<p>성종 192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6월 14일(정해) 1번째기사</p>	<p>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임득창(任得昌)이 졸(卒)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임득창은 서울에서 객사하였으므로 장사지낼 길이 없으니, 쌀과 콩을 아울러 10석(碩)과 유둔(油菴) 1장 및 관곽(棺槨)을 부조하라.”</p> <p>하였다.</p>	<p>○丁亥/僉知中樞府事任得昌卒。傳于承政院曰：“得昌旅死于京，無以殯斂。其賻米豆并十碩、油菴二及棺槨。”</p>
<p>성종 192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6월 30일(계묘) 2번째기</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이 서계(書啓)하기를,</p> <p>“신이 보건대, 본도(本道)의 여러 진(鎭)·보(堡)는 다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해지(要害地)이나, 유원(柔遠)·무산(茂山)이 더욱 긴요하니, 성을 높이 쌓고 못을 깊이 파서 방수(防戍)를 엄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령(高嶺)·동관(潼關)·미전(美錢)·훈융(訓戎)·혜산(惠山)·무이(撫夷)·사하북(斜下北) 이외의 나머지는</p>	<p>○永安道觀察使成俊書啓曰：  臣觀本道諸鎭堡，皆當賊路要害，而柔遠、茂山尤緊，宜高城深池以嚴防戍。高嶺、潼關、美錢、訓戎、惠山、撫</p>

	<p>다 벽성(壁城)인데, 수졸(戍卒)을 시켜 돌을 주워오게 하고, 또 본고을의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농사의 틈이 날 때에 점차로 쌓게 하면 몇 해 사이에 다 석성(石城)이 될 것입니다.</p> <p>신이 보건대, 장성(長城)의 수구(水口)를 가시나무로 막았으므로, 한 번 장마를 만나면 곧 물을 따라 떠내려가 흩어지고, 떠내려가 흩어지지 않더라도 적이 불을 놓아 태우면 한꺼번에 재가 되어 없어질 것이니, 수구에는 다 목책(木柵)을 설치하도록 하소서.</p> <p>신이 보건대, 본도(本道) 사람은 어리석고 미혹하며 멀리 염려하는 것이 없으므로, 장사꾼과 매매할 때에 농사가 조금이라도 잘된 해에는 무명 한 필의 값이 쌀 60두(斗)나 70두가 되고 다른 물건도 이와 같은데, 가산(家産)을 기울여서라도 꺼리지 않고 삽니다. 금하는 물건까지도 몰래 꺾어 사서 저들 17477) 에게 전매(轉賣)하므로 마소·뉘쇠·군기(軍器)가 장차 다 전매될 것이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하게 금하도록 하소서. 또 본도 유방군(留防軍)의 녹봉(祿俸)은 장사꾼이 다 무명으로 바꾸니, 이제부터 군사의 녹은 때에 따라 곧바로 무명을 주되 역(驛)으로 통하여 날라 들이게 하소서. 본도의 군관(軍官) 가운데에 이익을 불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파계(派係)를 상고하여 벼슬하는 집안의 자제가 아니면 구전(口傳)17478) 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장사꾼들이 받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p> <p>신이 보건대, 오진(五鎭)17479) 은 다 저들의 땅과 경계를 잇대어 있으므로 방비하는 계획에는 본디 경하게 여기거나 중하게 여기는 구별이 없으나, 온성(穩城)만은 삼면에서 적을 받고 또 울적합(兀狄哈)이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우므로 그 방어가 더욱이 중요한데,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어서 주민이 겨우 7백여 호이고 관노비(官奴婢)도 2백여 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잔폐(殘弊)하기가 막심하니, 하삼도(下三道)17480) 사람으로서 장죄(杖罪) 이상을 범한 자를 모두 읍겨서 채우고 또 공천(公賤)을 적당히 주소서. 그러면 관가와 민간이 크</p>	<p>夷、斜下北外，餘皆壁城。令戍卒拾石，又令本邑軍民，於農隙漸次築之，則數年之間，皆爲石城矣。臣觀長城水口塞以荊棘，一遇霖雨，輒隨水漂散。雖不漂散，如有賊虜縱火焚之，則一舉灰滅矣。請於水口皆設木柵。臣觀本道人愚惑無遠慮，與商賈通販，年或少稔，綿布一匹直米六七十斗，他物類此，雖傾家買之不憚，至於禁物，潛誘資易轉賣彼人，牛馬鎗鐵軍器，將盡轉賣，非細故也，請痛禁。且本道留防軍祿俸，與販者皆以綿布質換，自今軍士之祿，從時直給綿布，令傳驛輸入。本道軍官之中，興利人居多，若考其派係，非衣冠子弟。不許口傳，則商賈之徒不得接跡矣。臣觀五鎭皆與彼土接界，備禦之策，固無輕重。獨穩城三面受敵，又與兀狄哈所居最近，其防禦尤重。而土曠人稀，居民纔七百餘戶，官奴婢又不過二百餘人，彫弊莫甚。請下三道人犯杖罪以上者，悉徙以實之，又量給公賤，則官民阜盛而防禦實矣。臣觀六鎭軍士當番戍他鎭，下番戍本鎭，哨望巡邏無時解甲，以此軍士日益凋殘。臣意量除番上軍</p>
--	--	--

	<p>게 창성하여 방비가 충실하여질 것입니다.</p> <p>신이 보건대, 육진(六鎭)17481) 의 군사는 당번(當番)하면 다른 진(鎭)에 수 자리살고 하번(下番)하면 본진(本鎭)에 수자리살아 초망(哨望)하고 순라(巡邏)하느라 갑옷을 벗을 때가 없으므로, 이 때문에 군사가 날로 조잔(凋殘)하여 갑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번드는 군사의 체아(遞兒)17482) 를 적당히 덜어서 육진 군사의 봉료(俸料)를 넉넉히 주어 그 힘을 비축하게 했으면 합니다.</p> <p>신이 보건대,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는 이미 야인(野人)을 접대하지 않고 또 공무(公務)가 없는데도 인정(人丁)을 많이 차지하고 영아전(營衙前)을 붙였습니 다만, 본고을은 쓸쓸하여 심부름할 만한 자도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남도 절도사를 없애면 다섯 가지 이로운 것이 있겠는데, 군자(軍資)를 쓰지 않으니 하나요, 영노(營奴)에게서 공물을 거두니 둘이요, 역마(驛馬)를 쉬게 하니 셋이요, 아전을 본고을에 돌려보내니 넷이요, 군졸(軍卒)을 본진(本鎭)에 돌려보내니 다섯입니다. 없애지 않으면 도리어 다섯 가지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혹자는 ‘세조(世祖)께서 설립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 경솔히 없애지 않아야 한다.’ 하나, 그 때에 어찌 그 폐단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겠습니까?”</p> <p>하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p> <p>“석보(石堡)의 일은 거행할 만합니다. 장성(長城)의 수구(水口)에 목책을 설치하는 일은, 이미 성보(城堡)가 있고 또 해자(垓子) 밖에 나무를 심었으므로 튼튼하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오진에서 장사하는 자는 본디 금하여야 마땅하고, 이익을 불리는 군관을 데려가는 장수(將帥)도 중하게 논죄(論罪)하여야 마땅하나, 반드시 벼슬하는 집안의 자제를 차출하여 보낼 것은 없겠습니다. 방어하는 군사의 녹봉을 무명으로 바꾸어 주는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드리게 하되, 다만 그 역으로 전한다는 것은</p>	<p>士遞兒，優給六鎭軍士之捧，以舒其力。臣觀南道節度使既不接對野人，又無公務，而多占人丁，屬營衙前，本邑蕭然，無可使者。臣意革南道節度，則有五利焉，不費軍資一也，收貢營奴二也，休息駟騎三也，還衙吏於本邑四也，還軍卒於本鎭五也。不革則反有五害。或以爲世祖設立，深意存焉，不宜輕革。然當其時，豈知其弊至此乎？</p> <p>命議于大臣。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盧思愼、尹壕議：“石保事，可舉行。長城水口設木柵事，既有城堡，又隍池，外植木，不爲不固，仍舊爲便。興販於五鎭者，固當禁之。將帥之帶興利軍官者，亦當重論，不必差遣衣冠子弟。其防禦軍士祿捧以綿布換給事，令該曹擬議，但其傳驛則不可行也。犯流者徙居，既有法，當依此法，先實穩城可也。奪侍衛軍士遞兒給六鎭軍士，非惟壞法，大體未穩。南道節度使，不可革罷。其多占衙前之弊，由節度使非其人也，下諭戒飭可也。”從之。</p>
--	--	--

	<p>시행할 수 없겠습니다. 유배(流配)의 죄를 범한 자를 옮겨 살게 하는 것은 이미 법이 있으니, 이 법에 따라 먼저 온성에서 실천하도록 하여야 옳겠습니다. 시위(侍衛)하는 군사의 체야를 빼앗아서 육진의 군사에게 주는 것은, 법을 무너뜨릴 뿐더러 대체(大體)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남도 절도사는 없앨 수 없으며, 아전(衙前)을 많이 차지하는 폐단은 절도사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니, 하유(下諭)하여 계칙(戒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193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7월 21일(갑자)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근래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연(禮宴)을 오래 폐지하였는데, 올해에는 화곡(禾穀)이 오히려 무성하여 풍년을 예측할 수 있으니, 탄일에 진연(進宴)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올해의 풍흉(豐凶)은 미리 알 수 없고, 또 두 대비(大妃)께서 계시니, 내가 먼저 잔치를 받을 수 없다.”</p> <p>하므로,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두 대비전(大妃殿)에 먼저 진연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양전(兩殿)에게 여쭙었으나, ‘올해의 풍흉을 알 수 없으니 감히 잔치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말하지 말라.”</p> <p>하였다.</p>	<p>○議政府、禮曹啓曰：“近因年凶，久廢禮宴。今年禾穀尙茂，豐稔可占，請於誕日進宴。”傳曰：“今年豐歉未可預知，且兩大妃在，予不可先受宴也。”領議政尹弼商等啓曰：“請先進宴于兩大妃殿。”傳曰：“予已稟于兩殿，兩殿教曰：‘今歲豐凶難知，不敢受宴。’其勿言。”</p>
<p>성종 193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7월 28일(신미) 1번째기사</p>	<p>두 대비(大妃)가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술을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지난해의 흉황(凶荒)으로 주상(主上)께서 백성을 구제하기에 전념하여 애타게 우려하시더니, 올해에는 곡식이 조금 잘되었고, 또 내일은 주상의 탄신(誕辰)이니, 주상께서 반드시 잔을 드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술자리를 베풀어 주상을 위로하고, 이어서 경(卿)들에게 술을 내리니, 마시라.”</p> <p>하였다.</p>	<p>○辛未/兩大妃命賜酒于承政院。仍傳曰：“去年凶荒，主上勤於救民，焦思憂慮。今歲稍稔，且明日乃主上誕辰，主上必稱觴矣。我等今日置酒以尉主上，仍賜卿等酒，其飲之。”</p>



성종 194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8월 1일  
(계유) 2번째기사

영안도 초무 경차관(永安道招撫敬差官) 김제신(金悌臣)이 치계(馳啓)하기를,  
 “이아라가무(李阿羅加茂)·별연개(伐憐介) 등이 말하기를, ‘고령진(高嶺鎭)의 장성(長城)을 물려서 쌓을 때에 경작(耕作)하던 전지(田地)가 모두 성터[城基]로 들어갔는데, 끝내 값을 주지 않아서 다들 빈곤을 견딜 수 없다.’ 하고, 이아라가무가 또 말하기를, ‘전에 사로잡혀 간 고령(高嶺)의 거민(居民) 수명(守明)·희봉(希奉) 등을 쇄환(刷還)하였는데, 이제까지 서울에 조회(朝會)하여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포주(蒲州)로 옮겨 가려 한다.’ 하기에, 신(臣)이 타이르기를, ‘너희들이 말한 것을 진장(鎭將)과 절도사(節度使)가 낱낱이 처치할 것이고, 나도 연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할 것이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예전에 살던 곳에 돌아와 살라.’ 하였습니다. 사창개(沙昌介)가 식량[口糧]이 없다고 핑계하므로, 신이 타이르기를, ‘네가 돌아와 산다면 마땅히 관(官)에서 식량을 줄 것이다.’ 하였으나, 저들은 거의 돌아올 뜻이 없고 마침내 포주로 돌아갔습니다. 이오도(李吾道)·이자리개(李者里介)·이다차(李多車)·이초양개(李稍陽介)·이불생(李佛生)·이호토(李好吐)는 경작에 종사하지 않고 제 집을 수리하지도 않으니, 그 뜻은 반드시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철견(李鐵堅)·정괄(鄭恬)·신승선(愼承善)·이승원(李崇元)·박성손(朴星孫)·김극유(金克旵)·윤해(尹垓)가 의논하기를,  
 “이아라가무(李阿羅加茂) 등에게 쇄환(刷還)한 공로가 있고, 또 그 전지가 성터에 모두 들어갔는지의 진위(眞僞)를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상세히 사실을 캐게 하여, 말한 것이 옳거든 다른 예(例)대로 조회를 허락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사창개(沙昌介)는 성밑[城底]에 오래 살았으므로 본디부터 경작(耕作)하던 전지가 있는데, 식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이 아니니, 다시 타일러 본토(本土)로 돌아오게 하소서.”

○永安道招撫敬差官金悌臣馳啓：“李阿羅加茂、伐憐介等言：‘退築高嶺鎭長城時，所耕田竝入城基，竟不與價，皆不堪艱貧。’阿羅加茂又言：‘嘗刷還被擄高嶺居民守明、希奉等，而至今不得朝京蒙賞，欲移就蒲州。’臣諭之曰：‘汝等所言，鎭將及節度使當一一處之，予亦具由馳啓，汝其安心還接舊居。’沙昌介辭以無口糧，臣諭之曰：‘汝若還居，則當官給口糧。’然彼略無回意，竟歸蒲州。李吾道、李者里介、李多車、李稍陽介、李佛生、李好吐不事耕種，又不修葺其家，其意必不還也。” 命議于領敦寧以上、政府、兵曹。鄭昌孫、沈滄、尹弼商、盧思愼、尹壕、李鐵堅、鄭恬、愼承善、李崇元、朴星孫、金克旵、尹垓議：“李阿羅加茂等有刷還之功與其田沒入城基眞僞，令節度使詳加覈實。所言若是，依他例許朝以慰其心。沙昌介久居城底，有元耕田，而以無口糧爲辭，此非情眞也。更令開諭，俾還本土。”從之。

<p>성종 194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8월 4일 (병자) 2번째기사</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해의 흉황(凶荒)으로 국고(國庫)가 비고 민간의 저장도 떨어졌으므로, 올해의 수세(收稅)는 알맞도록 힘써서 공사(公私)를 편리하게 하여야 하는데, 만약 예(例)대로 면(面)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 한 면 안에서 손상된 것과 결실된 것이 매우 다르므로, 공사가 모두 병(病)이 될 것입니다. 대저 한 면의 화곡(禾穀)이 하하(下下)를 맞았어도 그 가운데에는 혹 하상(下上)인 것이 있고, 하상을 맞았어도 그 가운데에는 또한 하하인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분간(分揀)하여 등급을 매기면, 국가에나 백성에게나 다 편익(便益)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연분(年分)17535)의 등급을 매길 때에 작은 고을에서는 수령(守令)이 친히 살필 수 있으나, 큰 고을에서는 수령이 친히 살피기 어려운 형세이므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시켜 조사해 살피게 하는데, 그 사이에 사정(私情)을 쓰는 일이 없지 않으니, 다른 고을의 지식이 있는 품관(品官)으로 바꾸어 정하여 조사해 살피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신(大臣)과 호조(戶曹)에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다른 고을의 품관(品官)을 살펴서 연분(年分)을 정하게 하면 수령(守令)이 친히 살핀다는 법에 어그러지고, 또 면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겨서 땅조각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 한갓 문란하게 될 뿐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조종(祖宗) 때에는 수세(收稅)할 즈음에 위관(委官)으로 하여금 고을을 바꾸어 답험(踏驗)17536) 하여 수손 급손(隨損給損)17537) 하였으나, 속이는 자</p>	<p>○御經筵。 京畿觀察使成健來啓曰：“去年凶荒，國庫虛竭，民間蓋藏亦盡。今年收稅，務在得中，以便公私。若依例隨面等第，則一面之內損實迥異，公私俱病。大抵一面禾穀當下之下，而其中或有下之上者；下之上，而其中亦有下之下者。以此分揀等第，則於國於民皆有便益。且年分等第之時，小邑則守令可以親審，巨邑則守令勢難親審，不得已使人看審，其間不無用情行私。請以他官有識品官，換定看審。”傳曰：“其議大臣與戶曹以啓。”沈澮議：“若以他邑品官審定年分，則有違守令親審之法。且以面等第爲不可，而逐段等第，則徒爲紊亂，依舊爲便。”尹弼商議：“祖宗朝於收稅之際，使委官換官踏驗，隨損給損。然而欺詐者多，不得已行貢法。又慮等第不公，民或受弊，遣敬差官踏驗，而災傷六分以上則免稅。其法至爲詳密，豈可輕易紛更？”李克培、盧思慎議：“若如成健所啓，則貢法毀而不行，必致紛擾，仍舊爲便。李德良、韓堰議：“一面之內，土地肥瘠不同，禾穀損實亦</p>
--	---	--

가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공법(貢法)17538) 을 시행하였고, 또 등급을 매기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서 백성이 혹 피해를 받을까 염려하여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답험하게 하여, 재상(災傷)이 6분(分)17539) 이상이 되는 것은 면세(免稅)하였으니, 그 법이 지극히 상세한데, 어찌 쉽사리 어지럽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성건(成健)이 아뢰는 것과 같이 하면, 공법(貢法)이 무너져 행하여지지 않아 반드시 분요(紛擾)하게 될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이덕량(李德良)·한언(韓堰)이 의논하기를,  
 “한 면 안에서도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같지 않고 화곡(禾穀)이 손상된 것과 결실된 것이 다르므로 면으로 등급을 매기는 법을 의논하는 자가 편하지 못하게 여기나, 면으로 등급을 매기면 해당 고을에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뜻대로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므로 수세(收稅)가 알맞게 될 수 있는데, 땅조각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면 수령이 날날이 몸소 살피지 못하고 위관(委官)과 서원(書員)에게 맡기게 되어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뜻대로 사정(私情)을 써서 손상과 결실을 매기는 것이 고르지 않을 것이므로 작은 사고가 아니니,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하여 면으로 등급을 매기는 법을 행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당초 세종조(世宗朝)에 답험(踏驗)하는 법은 사정을 써서 알맞게 하지 않을 것이 걱정되므로 공법(貢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여러 조정(朝廷)에서 수성(守成)한 정사(政事)이므로 지켜서 어기지 말아야 마땅한데, 성건(成健)이 땅조각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를 바랐으니, 땅조각

殊，故面等第之法，議者以爲不便。然面等第，則該官不得以好惡任情高下，征斂得中。若逐段等第，則守令不得一〔一〕親審，委諸委官書員，而受人賄賂，任情行私，損實不均，非細故也。請依《大典》，行面等第之法。”傳曰：“其勿舉行。”

【史臣曰：“初，世宗朝患踏驗之法用私不中，設爲貢法，行之累朝，守成之政，宜遵而勿失。健欲爲逐段等第，殊不知逐段等第是復行踏驗之法矣。”】

	<p>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은 곧 답험하는 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임을 아주 모르는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194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8월 4일 (병자) 3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영안도(永安道)는 지난해에 흉황(凶荒)이 매우 심하였으므로, 이제 곡식이 조금 여물었더라도 양전 경차관(量田敬差官)을 보낸다면 민간(民間)이 소요(騷擾)하여 반드시 원망이 있게 될 것이니, 청컨대 내년을 기다려서 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양전(量田)은 큰 일이니 멈출 수 없다. 더구나 내년의 풍흉(豐凶)도 아직은 알 수 없다.”  하매, 시강관(侍講官) 정성근(鄭誠謹)이 말하기를,  “신이 지난해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이 도(道)에 가서 보니, 굶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또 흉황(凶荒) 끝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으면, 백성이 반드시 소요할 것입니다.”  하고, 김종직이 말하기를,  “올해에 양전(量田)하는 것의 편부(便否)를 관찰사(觀察使)에게 물은 연후에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김종직이 말하기를,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서 인가(人家)를 표몰(漂沒)시켰으므로 재변(災變)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주금(酒禁)을 파(罷)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산이 무너진 것은 내가 아직 듣지 못하였다. 다만 강원도의 몇 고을에 수환</p>	<p>○御晝講。講訖，同知事金宗直啓曰：“永安道去年凶荒太甚，今雖小稔，若遣量田敬差官，則民間騷擾，必有怨咨。請待明年爲之。”上曰：“量田大事，不可停也。況明年豐凶，亦未可知。”侍講官鄭誠謹曰：“臣去年奉使此道，見飢死者甚衆。今又凶荒之餘，使命煩多，則民必擾矣。”宗直曰：“今年量田便否，問於觀察使，然後爲之何如？”上曰：“然。”宗直曰：“山崩水溢，漂沒人家，不可謂無災，今罷酒禁，甚不可。”上曰：“山崩則予未之聞也，但於江原道數縣有水患。然不可以此而終歲禁酒也。”誠謹曰：“今雖小稔，罷酒禁則不可。”不聽。</p>

	(水患)이 있으나, 이 때문에 해[歲]를 마치도록 술을 금할 수는 없다.” 하매, 정성근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곡식이 조금 여물었더라도, 주금(酒禁)을 파(罷)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 194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8월 8일 (경진) 1번째기사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輕)·참판(參判) 권건(權健)·참의(參議) 권중린(權仲麟)이 와서 아뢰기를, “올해에는 곡식이 자못 여물었으니, 추석연(秋夕宴)을 바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먼저 두 대비전(大妃殿)에 진연(進宴)하라.” 하였다.	○庚辰/禮曹判書柳輕、參判權健、參議權仲麟來啓曰：“今年頗稔，請進秋夕宴。”傳曰：“可。先進宴于兩大妃殿。”
성종 194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8월 15일(정해) 1번째기사	임금이 두 대비전(大妃殿)에 진연(進宴)하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가 진연하였다. 진연하기 전에 예조(禮曹)에서 의주(儀註)17548) 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옛 의주에는, 반수(班首)17549) 가 잔을 올릴 때에 어榻(御榻)17550) 아래에 서고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내시(內侍)에게 전하여 주고 내시가 잔을 어상(御床)에 올리고 반수가 도로 내려가 제자리에 돌아간 뒤에 잔을 들게 되어 있어서, 이 예의가 자못 번거로우므로 이미 고치게 하였는데 이제 의주를 예전대로 고치지 않았으니, 매우 옳지 않다. 금후로는 반수가 곧바로 잔을 올리고 내가 마시고 나서 사옹원 제조가 다른 술을 따라 올리고 내가 받아서 반수에게 내리면 마신 뒤에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각각 자리에 앉는 것이 옳겠다. 이것을 가지고 고쳐 의논하여 올리라.” 하였다	○丁亥/上進宴于兩大妃殿。御仁政殿，議政府、六曹進宴。其未宴也，禮曹進儀註。傳曰：“舊儀，班首進爵，立於御榻下，司饗院提調傳授內侍，內侍奠爵於御床，班首還降復位後舉爵。此禮頗煩，故已令改之，而今儀註仍舊不改，甚不可也。今後班首直進爵，予飲訖，司饗提調酌進他杯，受以賜之班首，飲後降復位，行四拜禮，各就座可也。以此改議以進。”
성종 194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8월 18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근일에 연분(年分)을 면(面)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상세하게 더 살펴서 정하는 일을 가지고 우러러 성문(聖聞)을 번거롭게 하니, 곧 신의 말을 대	○庚寅/京畿觀察使成健上疏曰：  臣近日以年分面等第詳加審定事，仰塵

일(경인) 1번째기사

신(大臣)에게 의논시키셨으나, 대신들이 다 옳지 않다 하여서 그만두었는데, 신의 마음에는 오히려 평온치 못한 것이 있으므로 다시 성문(聖聞)을 번거롭습니다. 신이 그옥이 보건대, 대신의 의논은 공법(貢法)을 굳게 지키는 데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뢴 것도 역시 공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법 가운데에 조금 절목(節目)을 더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면으로 등급을 매기는 폐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릇 연분(年分)에는 9등이 있고, 한 면 안에서도 한 해의 풍등이 고르지 않아서 역시 9등이 있으나, 살펴서 정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쪽에 따라 시행(施行)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 면 안의 전지(田地) 전체에서 10분의 2 또는 3이 상등(上等)이고 나머지가 다 하등(下等)이면 어쩔 수 없이 하등에 따라 시행하고, 10분의 2 또는 3이 하등이고 나머지가 다 상등이면 상등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름진 전지는 곡식이 두둑 안에 가득하므로 많이 받아도 해롭지 않은데 조금 받고, 메마른 전지는 세(稅)를 바치기에 오히려 모자랄 것을 근심하는데 반드시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상등의 세를 헛되게 줄이고 하등의 세를 지나치게 거두는 것이니, 이것은 한갓 나라에 손해가 되어 손해가 가난한 백성에게 미치는데 홀로 그 이익을 누리는 자는 가멸[富實]한 사람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또 하등의 지나치게 거둔 수를 상등의 줄여 거둔 수에 맞추어 보면 지나치게 거둔 것이 적고 줄여 거둔 것이 많은데, 왜냐하면 대저 하등이 많고 상등이 늘 적기 때문입니다. 한갓 면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한결같이 세를 두면, 상등으로 세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는 역시 줄인 것이 많고 지나친 것이 적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상등인 면에서 하등을 들어내면 가난한 사람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고, 하등인 면에서 상등을 들어내면 국가의 세입(稅入)이 또한 조금 넉넉하여질 것이니,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것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겠습니다. 혹 ‘이렇게 하면 간리(奸吏)가 술수

聖聞。 卽以臣言議諸大臣， 大臣皆以爲不可而止， 於臣之心， 猶有所未穩， 再瀆聖聞。 臣竊見大臣之議， 不過堅守貢法而已。 然臣之所陳， 亦非欲毀貢法也， 但於貢法之中， 小加節目而已。 面等第之弊有二焉。 凡年分有九等， 而一面之內年品之不齊， 亦有九等， 審定者不得已從多施行。 假使一面之內， 十分之田二三分上等， 而餘皆下等， 則不得已從下施行； 二三分下等， 而餘皆上等， 則不得不從上施行。 沃饒之田， 禾稼盈疇， 多取之不爲虐， 則寡取之； 磽薄之田， 輸稅尙憂不足， 則必取盈焉。 是國家虛減上等之稅， 而過徵下等之稅也。 此乃徒損於國而害及貧民， 獨享其利者， 富實之人耳。 且以下等過徵之數， 準上等減收之數， 則過徵者少而減收者多。 何者？ 大抵下等居多， 而上等恒少， 徒以面等第， 逐一收稅， 則上等收稅者幾何？ 此不亦減者多而過者少乎？ 臣意以爲上等之面提出下等， 則貧乏之人， 得以蒙其澤； 下等之面提出上等， 則國家稅入亦必稍優矣。 便民裕國， 莫過於此。 或曰：“如此則奸吏用術， 恣行欺詐， 事

를 써서 사기[欺詐]를 자행(恣行)하고 일도 번요(煩擾)할 것이니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겠으나,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고을에 지식 있는 품관(品官)을 가려서 살펴 정하게 하되 그릇 살핀 죄를 엄하게 다스리면, 어찌 다른 고을의 전부터 서로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감히 속여서 스스로 중한 죄를 얻겠습니까? 혹 조금은 번거롭다 하더라도, 신의 생각으로는 법(法)이 참으로 좋은데, 어찌하여 작은 폐단을 헤아리겠습니까?

세를 징수하는 것은 왕정(王政)17551)의 중대한 것입니다. 대개 정전(井田)의 법(法)17552)을 이제는 시행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조종(祖宗) 때에 시행하여 온 손실(損實)의 법(法)17553)이 그 제도는 달라도 뜻은 같은 것인데, 그 때의 백성이 매우 편리하게 여기고 나라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도 많으니, 이것은 우리 조정의 양법(良法)입니다. 다만 이 법은 묘(畝)에 따라 손실(損實)을 나누므로 그 폐단이 번거롭고 좁스름기에 이르니, 이 때문에 사기가 혹 생기므로 드디어 공법(貢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면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그대로 행하되 조금 절목(節目)을 더하면, 공법 가운데에 손실의 뜻도 그 사이에 붙어 있어서 나라에도 백성에게도 양쪽으로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노사신(盧思愼)·심회(沈滄)가 의논하기를, “공법(貢法)으로 세(稅)를 거두는 것은 조종(祖宗) 때에 행하여 온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백성이 매우 편리하게 여기거니와, 이제 한 면 안에서 또 그 등급을 다시 살펴서 매긴다면, 손실(損實)의 법(法)을 다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왕(先王)의 법을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될 뿐이니, 시행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이것은 《대전(大典)》의 법(法)과 같지 않으나, 백성과 나라를 편리(便利)하게 하면 곧 양법(良法)이 되는 것이니, 우선 한 고을에 시험하는 것이 편하겠

且煩擾，行之甚難。” 臣意以爲不然。擇他官有識品官審定，而嚴治誤審之罪，則豈有爲他官曾未相識者，而敢爲欺詐，以自取重罪乎？借曰雖或小煩，臣意以爲法苟善矣，何計小弊乎？征斂，王政之大者。蓋井田之法，今雖曰難行，然祖宗朝損實之法，制異而其意則同也。其時民甚便之，國之所入亦多，此我朝之良法也。但此法逐畝以分損實，其弊至於煩碎，以此欺詐或生，遂行貢法。故臣意謂仍行面等第，而小加節目則貢法之中，損實之意，亦寓於其間，於國於民，似爲兩便也。

命議于大臣。鄭昌孫、韓明澮、尹弼商、尹壕、盧思愼、沈滄議：“以貢法收稅，祖宗朝行之已久，民甚便之。今若於一面之內，又復審其等第，則損實之法復行矣。毀先王之法而徒爲紛擾，不可行也。” 洪應議：“此與《大典》之法不同。然便民利國，則是爲良法，姑於一邑試之爲便。” 李克培議：“若從成健之言，則廢貢法而行損實之法也。征斂，國之重事，豈可以一人之言，輕易紛紜如此乎？令該司商

	<p>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성건(成健)의 말대로 따른다면, 공법(貢法)을 폐(廢)하고 손실(損實)의 법(法)을 시행하는 것이 됩니다. 세(稅)를 거두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인데, 어찌 한 사람의 말로 쉽사리 이처럼 분운(紛紜)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관사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헤아려서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우선 한 고을에 시험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度便否以啓後，更議。”傳曰：“姑試於一邑可也。”</p>
<p>성종 194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8월 19        일(신묘)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의 특견(特遣) 좌위문위(左衛門尉) 종직경(宗職經)이 와서 토산물[土宜]을 바쳤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지난해 12월에 본도(本島)의 소민(小民) 6인이 귀국(貴國)에 갔다가 2인이 귀국의 배를 타서 좀도둑질을 하였는데, 1인은 귀국에 잡혔습니다. 그 나머지 5인은 본도에 숨은 것을 온갖 계책으로 찾았는데, 1인은 기회를 보아 달아나고 4인을 쫓아가 잡았으므로, 좌위문위 종직경(左衛門尉宗職經)을 차출하여 전위(專委)하는 사자(使者)로 삼아서 묶어 보냅니다. 이들은 범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같은 배를 타고 무리에 낀 것이 명백(明白)하거니와, 신(臣)이 귀국의 동쪽 울타리로서, 작은 죄과라 하여 버려두면 점점 큰 데에 미칠 것이므로, 이번의 처치는 장래의 악한 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호초재(胡椒栽)를 구하시는 명을 받았으므로 감히 가만히 있을 수 없거니와, 이것은 남만(南蠻)에서 나는 것인데 유구(琉球)를 거쳐서 여기에 오므로, 처음에는 남만에 배를 보내려 하였으나 비용(費用)이 매우 많아서 힘이 미치지 못하였고, 지난해에 폐백(幣帛)을 후하게 하여 유구(琉球)에 사자를 보내어 간곡히 구하였으나 그 회보(回報)에 ‘호초재는 본국[本邦]에서 구하려 하더라도 얻을 수 없으</p>	<p>○辛卯/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左衛門尉宗職經來獻土宜。其書契曰：去歲十二月，本島小民六人往貴國，二人乘貴國之船而致小盜，一人爲貴國所獲焉，其餘五人竄于本島。萬計搜索，一人見機而逃；追捕四人，差宗左衛門尉職經爲專使，係縛以遣。是輩雖云無所犯，同船與黨明白也。臣爲貴國東藩，若以小過閣之者，漸將及大，是則懲來惡者也。往歲承胡椒栽之命，不敢寧處。此南蠻之產，經琉球而到于此。初欲遣船於南蠻，而費用甚多，力不能及。去歲，厚幣帛而遣使琉球，以致款懇，其報云：“胡椒栽者，本邦雖欲之無所得。大明豈不求之？實不</p>



	<p>며, 명(明)나라에서 어찌 구하지 않으랴마는 참으로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배를 보내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매우 많아서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처음에 종직경이 제포(齊浦)에 와 당자 4인을 묶어 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조라포(助羅浦) 등에서 도둑질한 자인데, 이제 데려와서 죽이려 합니다.”</p> <p>하므로, 첨절제사(僉節制使) 이근효(李近孝)·웅천 현감(熊川縣監) 유희(兪顥)가 곤란히 여겨 말하기를, “이것이 도둑일지라도 감사(監司)에게 신보(申報)하지 않고 마음대로 죽이면 안된다.”</p> <p>하였으나, 종직경이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나에게 명하기를, ‘차사원(差使員)에게 보이고 당장에 베어 죽이라.’ 하였습니다.”</p> <p>하고, 곧 적왜(賊倭)를 데리고 왜관(倭館) 서쪽에 가서 죽였는데, 그 뒤에 국분사(國分寺) 주지(住持) 승통(崇統)이 보낸 중국인 잠암(潛巖)이 와서 말하기를, “지난 신축년(1754)에 종무승(宗茂勝)이, 올해에 종직경이 죽인 왜인(倭人)은 귀국에서 범죄한 자가 아니라, 실은 그 섬의 죄인(罪人)입니다. 섬의 서면(西面)에 있는 아리포(阿里浦)에 사는 계시라(戒時羅) 등 30여 호(戶)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데, 실로 귀국 지경에서 도둑질하여 훔친 귀국 사람의 의복(衣服)·군기(軍器)·유기(鎗器) 따위 물건을 섬 안의 가멸한 집에 많이 팔았으나, 대관(大官)의 관하(管下)이므로 감히 묶어 오지 못한 것이다.”</p> <p>하였다.</p>	<p>聞有。今雖遣船，其費甚多，而所求不可得也。”</p> <p>初，職經來泊于齊浦，縛致四人云：“此，助羅浦等處作賊者也。今帶來，欲殺之。” 僉節制使李近孝、熊川縣監兪顥難之曰：“此雖賊，不報監司而擅殺，不可也。” 職經曰：“島主命我云：‘示差使員立斬之。’” 乃率賊倭，至倭館西殺之。 其後國分寺住持崇統所送唐人潛巖來，乃曰：‘去年辛丑宗茂勝、今年宗職經所殺倭，非犯貴國者也，實其島罪人也。 島西面阿里浦居戒時羅等三十餘戶，以漁爲業，實寇貴境。 所盜貴國人衣服、軍器、鎗器等物，多賣于島內富家。 然以代官管下，不敢縛致也。”</p>
<p>성종 194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충훈부(忠勳府)의 중삭연(仲朔宴)을 받았다.</p>	<p>○乙未/上御仁政殿， 受忠勳府仲朔宴。</p>

<p>(成化) 22년) 8월 23일(을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서교(西郊)에서 관가(觀稼)17555) 하고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별장[別墅]에 이르러 망원정(望遠亭)17556) 에 올라 술자리를 베풀었다. 정(婷)이 주찬(酒饌)을 마련하여 수가(隨駕)한 재추(宰樞)·시신(侍臣)에게 공궤(供饋)하였는데, 명하여 정에게 면포(綿布) 5백 필(匹), 정포(正布) 3백 필을 내리게 하였다. 임금이 연희궁(衍禧宮) 앞길에 이르러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에게 명하여 말을 달려 산에 오르게 하여 능부(能否)를 시험하고, 또 모화관(慕華館)앞에 이르러 우부승지(右副承旨) 변처녕(邊處寧)에게 명하여 겸사복·내금위를 지휘하여 고삐를 나란히 하여 앞에 말을 세우고 한꺼번에 말을 달려서 먼지가 어두워 밝지 않게 하는 것의 능부(能否)를 시험하였다. 임금이 승지(承旨)들에게 이르기를, “중국[中原]에 성식(聲息)이 있어서 만약 군사를 청한다면, 무사(武士)를 미리 길러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무사를 보면 흔히 말을 달리지 못하니, 매우 염려스럽다. 병조(兵曹)로 하여금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는 정병(正兵)·갑사(甲士)를 초록(抄錄)하여 아뢰게 하라. 내가 친히 시험하겠다.” 하였다.</p>	<p>○上觀稼于西郊。至月山大君婷別墅，登望遠亭置酒。婷設酒饌，饋隨駕宰樞、侍臣。命賜婷絁布五百匹、正布三百匹。上還至衍禧宮前路，命內禁衛、兼司僕馳馬上山，以試能否。又至慕華館前，命右副承旨邊處寧指揮兼司僕、內禁衛，並轡立馬於前，一時馳馬，塵暗，不明能否。上謂承旨等曰：“中原有聲息若請兵，則武士不可不爲之預養也。今見武士，多不能馳馬，深可慮也。其令兵曹抄正兵甲士能射御者以啓。予當親試之。”</p>
<p>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9월 3일 (을사) 3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을 인견(引見)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는 혁파(革罷)하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만약에 선왕(先王)께서 설치한 것이므로 혁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도영(節度營)을 혜산(惠山)이나 갑산(甲山) 같은 곳에 옮겨서 역로(驛路)의 폐단을 제거하소서. 다른 도의 절도사는 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는데 남도와 평안도의 절도사만은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길성(吉城)·명천(明川) 두 고을은 적이 들어오는 길에 가까운데도 가족을 데려갈 수 있으니, 다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남도 절도사의 영문(營門)에는 아전(衙前)이 대단히 많으니, 수십 인</p>	<p>○御宣政殿，引見永安道觀察使成俊。俊啓曰：“永安南道節度使，不可不革。若以爲先王所設不可革，則移節度營於惠山、甲山等處，以除驛路之弊。他道節度使皆不挈家，而獨南道及平安道節度使挈家而去。吉城、明川二邑近於賊路，亦得挈家，皆甚不可。且南道節度使營，衙前猥多，只留數十人，其餘則可減。”上曰：“當</p>

	<p>만을 남겨 두고 그 나머지는 줄여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조치하겠습니다.”</p> <p>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p> <p>“본도(本道)17560) 의 군사(軍士)에게는 노비(奴婢)가 없으므로 오로지 고공(雇工)을 노비(奴婢)로 삼는데, 이제 다 찾아서 충군(充軍)하니,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옳다. 다 군오(軍伍)에 편입하지는 말라.”</p> <p>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p> <p>“사마동 만호(斜麻洞萬戶) 양관(梁灌)은 청렴하고 스스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군졸과 음식을 같이하였는데, 이제 갈려서 사용(司勇)이 되었으므로 착한 것을 권장할 수 없으니, 포장(褒獎)하여야 하겠습니까. 또 구자 만호(口子萬戶)와 첨절제사(僉節制使)는 그 노고가 다를 것이 없는데, 만호만이 녹(祿)을 받지 못하니, 마땅하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만호에게 녹을 주는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였으니, 그 의논을 보아서 조치하겠고, 양관도 장차 등용할 것이다.”</p> <p>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p> <p>“회령(會寧)은 북도(北道)의 거진(巨鎭)인데 이제 잔폐(殘弊)하기가 막심하며, 또 수해(水害)를 당하여 평지(平地)는 다 백사장(白沙場)이 되어 경작할 만한 전지(田地)가 없고, 산을 일구어 밭을 만든 것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얼마 안 되므로 궁핍하여 스스로 구휼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보을하(甫乙下) 땅에 진(鎭)을 설치한다면, 경작하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영북진(寧北鎭)의 설치를 의논하였으나 지킬 군사가 없다 하여 멈추었는데, 만약에 남도</p>	<p>議諸大臣而處之。” 俊曰：“本道軍士無奴婢，專以雇工爲奴婢，今盡刷充軍，恐未可也。” 上曰：“然。其勿盡編軍伍。” 俊曰：“斜麻洞萬戶梁灌，清介自守，與軍卒同其食，今遞爲司勇，無以勸善，宜加褒獎。且口子萬戶與僉節制使，其勞苦無異，而萬戶獨不得受祿，未便。” 上曰：“萬戶給祿，曾已議之，當觀其議處之。梁灌亦將用之。” 俊曰：“會寧爲北道巨鎭，今殘弊莫甚。又被水害，平地盡爲白沙，無田可耕。墾山爲田，所收無幾，窮乏不自振。若置鎭于甫乙下之地，則可耕而食也。曩者，議置寧北鎭，以無戍兵而停。若減南道節度使衙前，又刷出軍戶餘丁，則不患無戍兵也。臣欲往審形勢而後更啓。” 上曰：“然。” 俊曰：“本道之民，本無恒產，一有不獲其所，則輒負戴四散。今若行量田，則必致騷擾。” 上曰：“已命姑停，當臨時更議爲之。”</p> <p>【史臣曰：“俊此啓，皆有次序，順如懸河，上甚重之。”】</p>
--	---	--

	<p>절도사의 아전을 줄이고 또 군호(軍戶)의 여정(餘丁)을 찾아낸다면, 지킬 군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 신이 가서 형세를 살핀 뒤에 다시 아뢰고자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p> <p>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 “본도의 백성은 본래 향산(恒産)17561) 이 없으므로, 한번 그 살 곳을 얻지 못하기만 하면 곧바로 지고 이고 사방으로 흩어지니, 이제 만약 양전(量田)17562) 을 거행한다면, 반드시 소요하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잠시 멈추라고 명하였으니, 그 때에 가서 다시 의논하여 하겠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성준의 이 계청(啓請)은 다 차서가 있어서 현하(懸河)17563) 처럼 도리(道理)에 따르므로, 임금이 매우 존중하였다.” 하였다.</p>	
<p>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9월 3일 (을사) 4번째기사</p>	<p>임금이 명하여 경연 당상(經筵堂上)과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후원(後苑)에 모이게 하여 술과 음악을 내려 주고, 또 승지(承旨)와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의 당상관과 위장(衛將)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고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도 참여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만보(萬寶)17564) 가 성숙하였다고 고(告)하므로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모두 즐기게 하고자 하니, 활을 잘 쏘는 자는 사후(射侯)하고 잘 쏘지 못하는 자는 투호(投壺)17565) 하되 좌우로 나누어서 승부를 내도록 하라.”</p> <p>하고, 이긴 편에게 녹비(鹿皮)를 각각 1장(張)씩 내려 주었다. 또 백옥(白玉)으로 만든 큰 잔을 내어 당양위(唐陽尉) 홍상(洪常)을 시켜 선권(宣勸)17566) 하여 많이 마시고 극진히 즐기소서 파하라고 명하니, 몹시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p>	<p>○上命會經筵堂上、弘文館員于後苑、賜酒樂。 又命承旨及入直兵曹、都摠府堂上、衛將往參、永安道觀察使成俊亦與焉。 傳曰：“今萬寶告成，欲令宰相一歡。 能射者射侯， 不能射者投壺。” 分左右以決勝負，賜勝耦鹿皮各一張。 又出白玉大杯，使唐陽尉洪常宣勸，命痛飲。 極歡而罷，無不沈醉。</p>
<p>성종 195권, 17년</p>	<p>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을 명소(命召)하여 전교(傳敎)하기를,</p>	<p>○命召領議政鄭昌孫等，傳曰：“成俊</p>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9월 8일  
(경술) 3번째기사

“성준(成俊)이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를 혁파(革罷)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영문(營門)을 갑산(甲山)이나 혜산(惠山)으로 옮기고, 또 영아전(營衙前)을 다 줄이고서 수십 인만을 남겨 두고, 또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할 것을 청하였으니, 편부(便否)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남도 절도사는 혁파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이 전일에 이미 친히 아뢰었습니다.”  
 하고, 심희(沈澮)가 의논하기를,  
 “남도 절도사는 쉽사리 혁파할 수 없겠습니다. 그 나머지 성준이 계청(啓請)한 것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남도 절도사를 한구석에 치우치게 설치하는 것이 어찌 세조(世祖)의 본의이겠습니까? 혜산 같은 곳으로 옮겨 설치할 수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성준이 아뢴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남도 절도사를 두어 북도와 함께 앞뒤에서 서로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 헤아리신 바가 원대하였으므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로(驛路)의 폐단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건의한 자의 말에 따라 갑산 같은 곳으로 본영(本營)을 옮겨서 그 폐단을 더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정해년(17580)의 난(亂)에 징계되어 드디어 남도 절도사를 두어 남북의 권세를 나누셨으니, 성려(聖慮)가 매우 원대하셨습니다. 이제 한때의 폐단 때문에 쉽사리 혁파할 수는 없으며, 절도사가 마땅한 사람이면 그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갑산이나 혜산으로 본영을 옮기는 것과 아전을 줄이고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해당 관사로 하여

請罷永安南道節度使，不然則移其營于甲山、惠山。且盡減營衙前，只留數十人，又不使挈家赴任。其議便否以啓。”昌孫議：“南道節度使宜可罷也，臣於前日已親啓之。”沈澮議：“南道節度使不可輕罷。其餘俊所啓，請令該司議啓。”尹弼商議：“僻置南道節度使於一隅，豈世祖本意？不可移置於惠山等處也。餘依成俊所啓爲便。”洪應議：“世祖置南道節度使，欲與北道首尾相救，其慮遠矣，不可廢也。但驛路之弊，不可不救，姑從建議者之說，移營於甲山等處，以紓其弊爲便。”李克培議：“世祖懲丁亥之亂，遂置南道節度使，以分南北之權，聖慮深遠，今不可以一時之弊輕革之。節度使得其人，則其弊自祛。但移營甲山、惠山及減衙前、除挈家便否，令該司議啓後，更議爲便。”盧思慎議：“南道節度使之營，臣則以爲不可移置甲山、惠山等處也。甲山、惠山，自北靑斗入數百里，別作一區，山川險峻，樹木蒙密，騎不並行。又居民鮮少，多病尪腫，勝兵無幾，乃窮僻一隅之地，非大將所宜居，其不可一也。

금 의논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남도 절도사의 본영을, 신은 갑산이나 혜산 같은 곳으로 옮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산·혜산은 북청(北靑)으로부터 수백 리를 쭉 들어가 따로 한 구역이 되어 있고, 산천이 험하고 수목이 뾰뾰하여 말을 타고 나란히 갈 수 없습니다. 또 주민이 적고 허약해서 종기를 앓는 이가 많아 싸움에 이길 군사가 얼마 없으므로, 곧 궁벽한 한구석의 땅이고 대장(大將)이 있기에 마땅한 곳이 아니니, 그 옳지 않은 것의 첫번째입니다.  
 이 땅이 저들의 지경과 서로 잇닿기는 하였으나, 저들이 사는 곳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고 산천이 막혀 있어서 입구(入寇)하려 하더라도 그 형세가 어렵습니다. 세종(世宗) 때 갑산에 입구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제까지 40여 년 동안은 갑산에 다시 급한 변고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방어가 긴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만합니다. 대장이 진수(鎭守)할 곳은 중앙의 중요한 땅에 있어 호령하고 지휘하며 앉아서 사방을 제어하여야 하는데, 어찌 기약할 수 없는 좀도둑을 두려워하여 변두리의 황무지(荒蕪地)에 대진(大鎭)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남도 절도사는 갑산 같은 곳을 방어하기 위하여 둔 것이 아니니, 어찌 쉽사리 옮겨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두 번째입니다.  
 평안도의 방어가 긴요한 것은 갑산에 견줄 것이 아닌데, 절도사의 본영이 영변(寧邊)의 내지(內地)에 있고 지금까지 이것에 의뢰합니다. 이것 역시 갑산으로 옮겨야 한다면 저것도 만포(滿浦)로 옮겨야 하고 저것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면 이것도 옮기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 옳지 않은 것의 세 번째입니다.  
 북청은 땅이 기름지고 백성이 많으며 또 어염(魚鹽)의 이익이 있으나, 갑산·혜산은 황잔(荒殘)하여 북청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청에서도 오히려 그 조도(調度)를 지탱하지 못하는데 갑산이

此地雖與彼境相接，距彼人所居遼遠，山川阻隔，縱欲入寇，其勢爲難。世宗朝雖嘗入寇于甲山，然至今四十餘年，未聞甲山復有警急，則其防禦之不緊可知矣。大將所鎭，當在中央重地，號令指揮，坐制四方。豈可預畏不可期之鼠竊，而置大鎭於窮邊荒穢之地哉？況南道節度使，非爲甲等處防禦而設，則豈可輕爲移置哉？其不可二也。平安道防禦之緊，非甲山比也，而節度使營在寧邊內地，至今賴之。此亦可移於甲山，則彼亦可移於滿浦；彼不可移，則此亦不可移矣，其不可三也。北靑土地沃饒，人民富庶，又有魚鹽之利；甲山、惠山則荒殘，其視北靑，不啻霄壤。北靑尙不支其調度，則甲山其能當之乎？其不可四也。甲等處秔稻不生，魚鹽不產，節度使其日用所需，必皆取諸北靑等處，此非神運鬼輸，必資人馬之力，其民人勞頓之弊，可勝言哉？其不可五也。南道衙前，臣則以爲亦不可全滅也。且以諸營衙前之數，酌其輕重，通議詳定，不可獨削南道也。節度使雖率眷赴任，臣則以謂平安道則觀察使兼平壤府尹，

	<p>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네 번째입니다.</p> <p>갑산 같은 곳은 벼가 자라지 못하고 어염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절도사는 그 일용(日用)에 드는 것을 반드시 다 북청 같은 곳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신이 날라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과 말의 힘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니, 그 백성이 지치는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다섯 번째입니다.</p> <p>남도의 아전을, 신은 역시 아주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본영의 아전의 수로 그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통틀어 의논해서 상세히 정하여야 하며, 남도만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절도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임지(任地)에 가더라도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안도는 관찰사(觀察使)가 평양 부윤(平壤府尹)을 겸하고 절도사가 영변 부사(寧邊府使)를 겸하며, 영안도는 관찰사가 영흥 부사(永興府使)를 겸하고 남도 절도사가 북청 부사(北靑府使)를 겸하여, 다 내지에 있으면서 고을의 벼슬을 겸하므로, 모두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赴任)하는 것이 국가의 구장(舊章)17581 인데, 어찌 남도에 대하여서만은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족을 거느리는 것을 폐단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어찌하여 반드시 남도만이 그러하다고 하겠습니까? 무릇 가족을 거느리는 자들을 다 혁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에도 군부(軍府)를 다스린 자가 많았습니다.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황잔(荒殘)한 것을 바꾸어 부성(富盛)하게 만들어 군사와 말이 정예(精銳)하고 강경(強勁)하여 백성이 기뻐하며 따랐고,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부성한 것을 바꾸어 황잔하게 만들어 군사와 말이 고달프고 쇠약하여 백성이 시름하고 원망하였으므로, 조종(祖宗) 때부터 서북 양계(兩界)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홍이로(洪利老)·김백겸(金伯謙)은 범상한 사람이니, 김백겸이 인망(人望)에 맞지 않는다면 홍이로가 또한 어찌 인망에 맞아서 폐단이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성준(成俊)이 그 폐단을 눈으로 보았으므로 남도 절도사를 혁파</p>	<p>節度使兼寧邊府使；永安道則觀察使兼永興府使，南道節度使兼北靑府使。皆在內地而兼其州官，故皆率眷赴任。此國家舊章也，豈可獨於南道不使之挈家哉？若以率眷爲有弊，則何必南道爲然？凡諸率眷者皆可革矣。古人治軍府者多矣，得其人則變荒殘爲富盛，而士馬精強，人民悅服；不得其人，則變富盛爲荒殘，而士馬罷弱，人民愁怨。故自祖宗朝，西北兩界，用人甚重。洪利老、金伯謙，夷人也。伯謙不孚人望，則利老亦豈孚人望，而無弊事乎？成俊目見其弊，欲革南道，再爲上請。臣意以爲人可改也，地不可改也。”傳曰：“從克培議，令兵曹議啓。”又命議吉城、明川守令除挈家事。昌孫、尹壕議：“吉城、明川守令率眷赴任已久，仍舊爲便。”明澮、克培議：“請令該司議啓。”弼商議：“吉城、明川守令，不須挈家。請依成俊所啓。”洪應議：“明川、吉城依邊方諸郡例，除率眷，三年而遞爲便。”思慎議：“吉城、明川守令率眷赴任，乃祖宗舊法，不可輕變。博問曾爲其道觀察使者，商議施行爲便。”從弼商</p>
--	--	---

	<p>하려고 두 번 청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 사람은 바꿀 수 있지만 위치는 바꿀 수 없다고 여깁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이극배의 의논을 따라 병조(兵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p> <p>하고, 또 길성(吉城)·명천(明川)의 수령(守令)이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하는 일을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p> <p>“길성·명천의 수령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고, 한명회(韓明澮)·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p> <p>“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p> <p>“길성·명천의 수령은 가족을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 성준이 아뢴 대로 하소서.”</p> <p>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p> <p>“명천·길성은 변방(邊方) 여러 고을의 사례에 따라 가족을 데려가는 것을 없애고, 3년이면 체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p> <p>“길성·명천의 수령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은 조종의 구법(舊法)이므로 쉽사리 변경할 수는 없으니, 전에 그 도의 관찰사가 되었던 자에게 널리 물어서 상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p>	<p>議。</p>
<p>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9월 12일(갑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두 대비전(大妃殿)에 곡연(曲宴)17586) 을 바치고, 명하여 종친(宗親)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과 의빈부(儀賓府)·한성부(漢城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를 후원(後苑)에 모이게 하여 술과 음악을 내려 주고, 이어서</p>	<p>○甲寅/上進曲宴于兩大妃殿。 命會宗親一品以上、議政府、六曹參判以上、儀賓府、漢城府、承政院、弘文館、藝文館、入直諸將于後苑， 賜酒</p>



	사후(射侯)와 투호(投壺)를 하도록 명하였다.	樂，仍命射侯、投壺。
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9월 14 일(병진) 1번째기사	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어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종직경(宗職經) 등을 접견하고, 차등을 두어 물건을 내려 주었다. 이어서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집에 거둥하였다.	○丙辰/上幸景福宮，御思政殿置酒，接見宗貞國特送宗職經等，賜物有差。仍幸月山大君婷第。
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9월 15 일(정사) 1번째기사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약동(李約東)이 치계(馳啓)하기를, “순창 군수(淳昌郡守) 박준(朴雋)이 사람을 시켜 물고기를 잡게 하였는데 빠져 죽은 자가 93인이니, 파출(罷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丁巳/全羅道觀察使李約東馳啓曰：“淳昌郡守朴雋使人捕魚，而溺死者九十三人，請罷黜。”從之。
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9월 18 일(경신) 2번째기사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계남(李季男)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어사(御史)를 보내어 평안도(平安道)의 연분(年分)의 등급을 매긴 것을 다시 살피게 하셨으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경기(京畿)에서 벼를 이미 거두었는데 평안도는 일찍이 서리가 내리므로 아마도 이미 다 거두었을 것이니, 어사를 보내더라도 밝혀내기 어려울 듯합니다. 더구나 평안도는 양전(量田) 때문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은데, 또 어사를 보내면 더욱 소요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밝혀야 한다면 양전 종사관(量田從事官)을 시켜 아울러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憲府掌令李季男來啓曰：“今遣御史，更審平安道年分等第。臣等意謂京畿禾穀已收，平安道早霜，想已盡收，雖遣御史，似難得驗。況平安道因量田，使命煩多，又遣御史，尤騷擾。不得已更驗，則請以量田從事官兼審。”從之。
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9월 19 일(신유) 1번째기사	진사(進士) 김협(金協)이 상서(上書)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臣)의 아버지 김원신(金元臣)은 전에 안동 부사(安東府使)를 맡았다가 병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으므로, 임소(任所)를 마 음대로 떠난 죄를 받아 황간현(黃澗縣)에 부처(付處)17590 되었습니다. 황간은 서울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 신의 아버지가 스스로 그 있을 땅을 선택하였더라도 어떻게 이보다 더 가깝게 잡았겠습니까? 다만 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지명(知命)17591 을 넘었고 평소에 병이 많으므로 적소(謫所)에 있을 때부터 병이 낫지 않고 끝다가 심하여져서 날로 더욱 쇠약하여가니, 신이	○辛酉/進士金協上書曰： 伏以臣父元臣前任安東府使，以病休官還家，坐擅離罪，付處于黃澗縣。黃澗距京都不甚遙遠，雖臣父自擇其地，何以過此？但臣父年踰知命，素多疾病，自在謫中，沈綿轉劇，日加衰耗，臣居傍側，所不忍見。臣非不知父罪

결에서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신이 아버지의 죄가 중하여 쉽게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도 이처럼 여러 말을 하는 까닭은 정(情)이 속에서 격앙되어 스스로 마지못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의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가 죄가 있어 잡혀가서 장안(長安)에 갇혔는데, 그 어린 딸 제영(緹縈)이 상서(上書)하여 아버지의 죄를 속(贖)바치겠다고 청하니, 문제(文帝)가 그 뜻을 불쌍히 여겨 곧 육형(肉刑)17592) 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양(梁)나라 때에 길분(吉玢)이란 자가 있었는데 15세 때에 그 아버지가 잡혀 정위(廷尉)17593) 에 가서 벌을 받게 되자 등문고(登聞鼓)17594) 를 쳐서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비니, 무제(武帝)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였습니다. 저 어린 계집과 어리석은 아이도 지극한 효성에서 발한 것이 능히 감동하여 분발하게 하고 격양(激昂)되게 하여 잠잠히 천총(天聰)을 돌이켜서 만사 일생(萬死一生)의 처지에서 아버이를 건졌습니다. 신이 어리석기는 하나 일찍부터 《시경(詩經)》·《서경(書經)》의 가르침을 익혔으므로 그 어린 계집과 어리석은 아이보다는 유식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깊은 시름과 고생으로 여윈 것이 극진한 데에 있음을 보고서도 한 마디 말을 내어 천문(天門)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곧 어린 계집과 어리석은 아이만도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하늘과 땅 사이에 스스로 용납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혈성(血誠)으로 구구한 뜻을 아뢰면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국가에서 베푸는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는 그 영현(榮顯)이 문과(文科)에 견줄 것은 아니나, 역시 아버이를 영현하는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변변치 못한 신이 이제 어찌다가 외람되게 그 가운데 이름이 들었습니다. 신을 제외한 1백 99인은 모두 경축하는 자리를 베풀어 양(羊)을 굵고 양새끼를 잡고 친척이 가득 앉은 자리에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수(壽)를 봉축하여 영광을 동리에 전하고 아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신만은 어미를 여의어 무덤의 풀이 이미 거칠어지고 믿는 이는 오직 한 분의 병든 아버지뿐이건

之重，不可輕赦也，而有如此云云者，情激于中，不能自己而然也。昔漢太倉令淳于意有罪逮繫長安，其少女緹縈上書請贖父罪，文帝憐悲其意，即除肉刑。且梁時有吉玢者年十五，其父逮治廷尉，搗登聞鼓乞代父命，武帝乃宥其父。彼幼女、駭童發於至孝，能感奮激(昂) [昂]，默回天聰，以救親於萬死一生之中。臣雖庸劣，早服《詩》、《書》之訓，其視幼女、駭童則爲有識矣，見親在幽愁窮悴之極，不能出一言以叩天門，則曾幼女、駭童之不若矣，何以自容於天地間乎？此臣所以血誠上陳，區區不能自己者也。國家設生員進士試，其榮顯雖非文科之比，亦顯親之一事也。顧臣不肖，今幸忝名其中，除臣之外，百九十九人，莫不開設慶筵，魚羊宰羔，親戚滿坐，眷講上壽，榮傳閭里，慰悅親心。獨臣慈母見背，墳草已荒，所恃者唯一病父矣，又流落天涯，歸期無日，將欲悅親，何可得也？病父聞之，亦必北望長呼，更加傷慘。然則十餘年燈窓雪榻之下，揚名顯親之志，反爲傷慘之資，豈不痛哉？道經信宿，放榜已逼，伏望令臣

	<p>만, 또한 하늘 저 끝 멀리에 영락(零落)하여 유랑하면서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 아버이를 기쁘게 하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아비가 듣더라도 반드시 북쪽을 바라보고 길게 부르짖으며 다시 더 애태우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여 년 동안 애써 공부하여 이름을 드날려서 아버이를 현영하려던 뜻이 도리어 애태우고 근심하게 하는 자료가 되었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길은 이틀 밤을 지내면 이를 수 있는 거리이고 방방(放榜)17595) 은 이미 가까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아버를 잠시 서울로 오게 하여 부자가 서로 잡고 울며 천은(天恩)을 기뻐하여 춤추게 하소서. 이것이 어찌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참으로 정성들여 효도하면 신명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으니, 이를테면 대 숲에서 울어 겨울에 죽순(竹筍)을 얻고 얼음을 두들기어 물고기를 얻는 일은 문득 아득히 어둡고 잠잠한 가운데에 응험(應驗)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주(聖主)께서 바야흐로 효도로써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참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호소한다면 어찌 감동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만일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자(聖慈)는 인(仁)을 드리워 받아들여 주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부자(父子)의 정은 사람마다 같은 것이다.”</p> <p>하고,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놓아 보내게 하였다.</p>	<p>父，暫到京師，使父子相持而泣，舞蹈天恩，此豈非聖世之美事也？人子之於親，苟以誠孝，則神可感也，天可動也。如泣竹、叩冰，輒有應於渺冥玄默之中，況聖主方以孝理國，苟以至誠而呼之，則寧有不可感動之理？臣之僥倖於萬一者，此也。伏惟聖慈，垂仁採納焉。</p> <p>傳曰：“父子之情，人所同也，命憲府放之。”</p>
<p>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9월 19일(신유) 2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참의(參議) 한언(韓堰)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은 어사(御史)를 보내어 평안도의 손실(損實)을 다시 밝히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의 종사관(從事官)을 시켜 다시 살펴계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관찰사(觀察使)가 살펴서 정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중국에서 낙타를 사라고 명하셨는데, 신들은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적당히 헤아려서 세포(細布) 30필(匹)을 보내어 사게 하소서.”</p>	<p>○戶曹判書李德良、參議韓堰來啓曰：“臣等欲遣御史以更驗平安道損實。今以量田巡察使、從事官更審，如此則與觀察使審定何異哉？且命市橐駝于中國，臣等不知其直高下，請量送細布三十匹以市之。” 傳曰：“令巡察使更</p>

	<p>하니, 전교하기를,  “순찰사를 시켜 손실을 다시 살피게 하라. 또 낙타[橐駝]는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으니, 군사를 일으킬 때에 양식을 나를 만하다. 배 60필을 보내어 사오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덕량 등은 조세를 더 매기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이미 감사(監司)를 믿지 않았고, 또 순찰사를 믿지 않으니, 어찌 대체(大體)에 맞겠는가? 기량이 적어 변변치 못한 사람을 어찌 헤아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p>	<p>審損實。且橐駝能載重行遠，軍興之時可運糧。其送布六十四以購來。”    【史臣曰：“德良等加賦之心勝之，而既不信監司，又不信巡察使，其於大體得乎？斗筭之人，何足算也？”】</p>
<p>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9월 23일(을축) 2번째기사</p>	<p>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처음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를 두신 것은 갑산(甲山)과 삼수(三水)의 방어가 긴요할 뿐만 아니라, 정해년(1759)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문에 비로소 두어 남도·북도의 병권(兵權)을 나누신 것이니, 세조의 큰 규모이고 원대한 계략입니다. 대장(大將)이 중병(重兵)을 맡아 내지(內地)에 있는 것은 또한 제승(制勝)하는 좋은 계책이며, 절도사도 때때로 군사를 거느리고 혜산진(惠山鎭)에서 방수(防戍)한다면, 반드시 세조의 신산(神算)을 어기고 갑산 같은 한구석의 변두리 땅에 옮겨 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평안도 절도사는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다만 남도 절도사에게 허가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남도의 방어가 북도보다 조금 쉽기는 하나, 장수가 있으니 그 군졸을 약하게 하여 위중(威重)을 손상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약에 수십 인만을 배정한다면 급할 때에 쓰기 어려울 것이니, 원액(元額) 6백에서 적당하게 2백을 줄이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p>	<p>○兵曹啓：“世祖初設永安南道節度使，非但爲甲山、三水防禦之繁也，因丁亥年李施愛之亂始置之，以分南北道兵權。此世祖宏規遠略，而大將握重兵居內地，亦是制勝之良策。節度使亦有時領兵防戍于惠山鎭，則不必違世祖神算，移置于甲山一隅窮荒之地也。且平安道節度使挈家以歸，則獨不許南道節度使，似不可也。南道防禦雖視北道稍歇，然有將則不可弱其軍卒，以損威重也。若只定數十人，則於緩急難用矣，請於元額六百，量減二百。”  命議于大臣。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李克培、尹壕議：“依兵曹所啓施行。”  洪應議：“南道節度使以甲山、三水爲賊路要衝而設，宜置營</p>

	<p>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는 갑산(甲山)·삼수(三水)를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충(要衝)으로 여겨서 둔 것이니, 본영(本營)을 혜산(惠山)에 설치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또 아전(衙前)의 수를 줄이고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하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영아전(營衙前)은 경중(京中)의 조례(皂隸)나 나장(羅將)처럼 군졸이 아니니, 급할 때에 쓸데가 없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5백 명이나 되도록 많아야 하겠습니까? 아전을 외람되게 차지한 것은 남도뿐이 아니니, 신이 전에 의논한 대로 그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그 수를 상세히 정하소서.”</p> <p>하고, 정괄(鄭恬)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영아전은 많기가 6백 명에 이르니,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승원(李崇元)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처음 남도 절도사를 둘 때에는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이 전례대로 하고, 또 아전 6백은 너무 많으니 반을 줄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p> <p>하니, 병조에 전교하기를,  “세조께서 처음 남도 절도사를 둘 때에 반드시 본영을 북청(北靑)에 두어야 하므로 옮기지 않은 것이 아니니, 갑산으로 옮겨 둔들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의 의논에 ‘아전은 군사가 아니므로 급할 때에 쓸데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액수를 정한 것도 많으니, 또 줄이도록 하라.”</p> <p>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p>	<p>於惠山。且減衙前之數，勿令挈家，不爲無益矣。” 盧思愼議：“依兵曹所啓施行。但營衙前，如京中之皂隸，羅將非軍卒也，緩急無所用，何必至五百之多乎？衙前濫占，非獨南道，請依臣前議，酌其輕重，詳定其數。” 鄭恬議：“依兵曹所啓施行。但營衙前多至於六百，減三分之二何如？” 李崇元議：“依兵曹所啓施行。但初設南道節度使之時，不得挈家赴任，今亦依此例爲之。且衙前六百，太多，減半爲便。” 傳于兵曹曰：“世祖初設南道節度使，不必置營於北靑而不移，雖移置甲山，有何害焉？且領中樞之議以謂：‘衙前非軍士，緩急無所用。’今定額數亦爲多矣，其又減之。” 兵曹啓：“衙前減數，誠如上教。但甲山土地磽确，禾穀不茂，若移營于此，則營中調度、軍卒糧餉，皆取辦於內地。且諸鎮報牒之吏，贏糧往來，其弊不貲，斷不可移營也。” 傳曰：“以此意馳書于招撫敬差官金悌臣，審定便否。”</p>
--	---	--

	<p>“아전의 수를 줄이는 것은 참으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다만 갑산은 땅에 돌이 많고 메말라서 화곡(禾穀)이 무성하지 못하므로, 만약 본영을 여기에 옮긴다면, 영중(營中)의 조도(調度)와 군졸의 양식을 다 내지(內地)에서 가져다가 장만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진(鎭)에서 보고하러 오는 관리가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게 되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단연코 본영을 옮겨서는 안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초무 경차관(招撫敬差官) 김제신(金梯臣)에게 치서(馳書)하여 편부(便否)를 살펴서 정하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95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9월 29일(신미) 1번째기사</p>	<p>나주 목사(羅州牧使) 윤효손(尹孝孫)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전지(傳旨)에 ‘철장(鐵場) 도회(都會)17600) 를 폐지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느 쪽이 편리한 지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한결같지 않은데, 참으로 잘 말할 자가 있거든 각각 품은 생각을 아뢰도록 하라.’ 하셨으므로, 신이 억견(臆見)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도회관(都會官)에서 쇠를 불릴 때에 다른 고을의 백성은 양식을 싸서 가지고 왕래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고, 또 그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스스로 장만하기 어려우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와하니, 이것이 의논하는 자가 철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까닭이나, 신은 폐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임오년(1760)에 군적 종사관(軍籍從事官)이 되어 창평(昌平)의 군안(軍案)을 점검하였더니, 그 철장의 취련군(吹鍊軍) 2백여 인은 다 다른 신역(身役)이 없고 그 일에만 이바지하는데, 다른 고을의 군안을 상고하였더니 그런 것이 없었으므로, 그 때에 이 창평의 취련(吹鍊)하는 사람을 폐지하여 다 군역(軍額)에 채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철장이 있는 곳의 백성은 남녀(男女)·부자(父子)가 대대로 쇠를 불리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서 각각 신역이 있으니, 창평에서 생산하는 방법에 따</p>	<p>○辛未/羅州牧使尹孝孫上書。 略曰：  臣伏覩傳旨，“鐵場都會廢置便否，言者不一，苟有能言者，各陳所懷。”臣以臆見敢陳之。 都會官鍊鐵之時，他邑之民贏糧往來，其弊不貲。 且不慣其事，卒難自備，民甚苦之，此所以議者之欲革鐵場也。 臣則以爲不可革也。 臣於壬午年爲軍籍從事官，點檢昌平軍案，其鐵場吹鍊軍二百餘人，皆無他役，只供其事。 考他官軍案則無之，故其時革此昌平吹鍊人，皆充軍額。 臣意以謂鐵場所在之民，男女父子，世以吹鍊爲業，而各有身役。 請依昌平產法，以鐵場所在官良民及公</p>

	<p>라 철장이 있는 고을의 양민(良民)과 공천(公賤)은 모두 그 신역과 신공(身貢)을 면제하고 적당히 취련군을 정하여 항식(恒式)으로 하면, 다른 고을의 백성이 양식을 싸서 가지고 다니는 폐단이 없어져서 공사(公私)에 편리하겠습니까.”</p> <p>하였는데, 대신(大臣)과 호조(戶曹)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한명회(韓明澮)·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p> <p>“철장 도회관을 두는 것은 공사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고,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p> <p>“군사를 뽑아 쇠를 불리는 것과 백성이 장만하여 바치는 것은 다 폐단이 있습니다. 윤효손의 말이 취할 만하니, 해당 관사를 시켜 상의하게 하소서.”</p> <p>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p> <p>“대저 군사가 있으면 보인(保人)17602) 이 있으므로 따로 취련군을 둔다면 보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철장이 있는 고을에 한정(閑丁)이 모자라면 반드시 다른 고을에 사는 백성으로 채울 것이니, 또 폐단이 있습니다. 예전 법대로 거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어지럽게 변경하여야 하겠습니까?”</p> <p>하고, 이덕량(李德良)·김승경(金升卿)·한언(韓堰)이 의논하기를,</p> <p>“신들이 전일에 철장이 있는 고을과 부근의 여러 고을에서 군정(軍丁)을 뽑아 취련군(吹鍊軍)이라 부르고 잡역을 면제하여 그 일을 전담시킬 것을 헌의(獻議)하였는데, 이제 윤효손의 말과 신들의 의논이 거의 같으니, 시행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 보류해 두라고 명하였다.</p>	<p>賤，一除其身役身貢，量定吹鍊軍以爲恒式，則無他邑之民，贏糧之弊，而便於公私矣。</p> <p>命議于大臣與戶曹。韓明澮、尹壕議：“鐵場都會官之設，無害於公私，仍舊爲便。”沈澮、尹弼商、李克培、盧思愼議：“抄軍吹鍊與民備納，皆有弊焉。尹孝孫之言在所可取，令該司商議。”洪應議：“大抵有軍則有保，若別設吹鍊軍，則當有保人。鐵場所在官閑丁不足，則必以他官居民充之，又有弊焉。當依舊法行之，何可紛更耶？”李德良、金升卿、韓堰議：“臣等前日獻議，鐵場所在官及附近諸邑抄軍丁，號爲吹鍊軍，蠲免雜役，俾專其事。今孝孫之言與臣等之議略同，宜可施行。”命留政院。</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0월 6</p>	<p>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종직경(宗職經)이 배사(拜辭)하였다. 그 회답(回答)하는 서계(書契)에 이르기를,</p> <p>“도망한 적도(賊徒)를 능히 성심으로 잡아 보내어 모두 이미 죄를 받았으니,</p>	<p>○宗貞國特送宗職經辭。其回答書契曰：</p>

일(정축) 2번째기사

참으로 기쁘다.”

하고, 도주(島主) 종정국에게 말[馬] 1필(匹), 안자(鞍子) 1, 채단(綵緞)·생초(生絹) 각각 2필, 면주(綿紬) 1백 필, 면포(綿布)·정포(正布) 각각 2백 필, 쌀[米]과 콩[豆] 아울러 1백 석(碩), 계다식(桂茶食) 각각 3각(角), 해송자(海松子) 1석, 소주(燒酒) 20병(瓶), 청주(淸酒) 50병, 건치(乾雉) 1백 수(首), 표피(豹皮) 3장, 호피(虎皮) 5장, 유둔(油菴) 2장, 유석(油席) 3장을 내리고, 대관(代官) 종무승(宗茂勝)과 도주의 아들 종정수(宗貞秀)에게 채단·생초 각각 1필, 면주 30필, 면포 50필, 정포 40필, 쌀과 콩 아울러 50석, 계다식 각각 1각, 소주 10병, 청주 30병, 건치 50수, 표피·호피·각각 1장, 유둔·유석 각각 1장을 내리고, 상관인(上官人) 종직경(宗職經)에게 백저포(白苧布)·흑마포(黑麻布) 각각 8필, 표피·호피 각각 2장, 유둔 2장, 침석(寢席) 3장, 쌀과 콩 아울러 20석, 소주 5병, 청주 15병, 해송자 15두(斗), 청밀(淸蜜) 3두를 내리고, 부관인(副官人)에게 백저포·흑마포 각각 3필, 호피·표피 각각 1장, 유둔 1장, 쌀과 콩 아울러 10석, 소주 5병, 청주 10병, 해송자 5두를 내리고, 선주(船主) 2인과 압물(押物) 1인에게 각각 백저포 2필, 흑마포 2필, 유둔 1장을 내리고, 대관 및 종정수의 사송(使送)에게 각각 쌀과 콩 아울러 7석, 백저포 2필, 흑마포 2필, 유둔 1장, 청주 10병, 해송자 5두, 호피 1장을 내리고, 반송인(伴送人) 5인에게 각각 백저포 1필, 흑마포 1필, 유둔 1장을 내리고, 삼포대관(三浦大官) 국장(國長)의 사송(使送) 원행만(源幸滿)에게 흑마포·백저포 각각 2필, 유둔 1장을 내리고, 반인(伴人) 오라시라(吾羅時羅)에게 백저포·흑마포 각각 1필, 유둔 1장을 내렸다.

在逃賊徒，能誠心捕送，俱已伏罪，良用嘉悅。 賜島主宗貞國，馬一匹、鞍子一、綵段生絹各二匹、綿紬百匹、綿布·正布各二百匹、米·豆并百碩、桂茶食各三角、海松子一碩、燒酒二十瓶、淸酒五十瓶、乾雉百首、豹皮三張、虎皮五張、油菴二張、油席三張。 代官宗茂勝及島主子宗貞秀，綵段生絹各一匹、綿紬三十匹、綿布五十四、正布四十四、米·豆并五十碩、桂茶食各一角、燒酒十瓶、淸酒三十瓶、乾雉五十首、豹皮·虎皮各一張、油菴·油席各一張。 上官人宗職經，白苧布·黑麻布各八匹、豹皮·虎皮各二張、油菴二張、寢席三張、米·豆并二十碩、燒酒五瓶、淸酒十五瓶、海松子十五斗、淸蜜三斗。 副官人，白苧布·黑麻布各三匹、虎皮·豹皮各一張、油菴一張、米·豆并十碩、燒酒五瓶、淸酒十瓶、海松子五斗。 船主二、押物一，各白苧布二匹、黑麻布二匹、油菴一張。 代官及宗貞秀使送，各米·豆并七碩、白苧布二匹、黑麻布二匹、油菴一張。 淸酒十瓶、海松子五斗、虎皮一張。 伴送



		<p>人五, 各白苧布一匹、黑麻布一匹、油      苳一張。 三浦代官國長使送源幸滿,      黑麻布・白苧布各二匹、油苳一張。      伴人吾羅時羅, 白苧布。 黑麻布各一      匹、油苳一張。</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0월 7      일(무인)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아뢰기      를,      “신(臣)들이 듣건대, 이제 흑마포(黑麻布) 60필(匹)을 보내어 중국에서 낙타      (橐駝)를 산다 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기는 하나 실은 대체(大體)에 관계되      는 것이므로, 그 옳지 않은 것 세 가지를 삼가 조목별로 나누어 아뢰입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겨 사이 팔만(四夷      八蠻)에 길을 트자 서려(西旅)에서 개[獒]를 바쳤는데, 태보(太保) 소공식(召      公奭)이 글을 지어 경계하는 말을 아뢰기를,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한 것을      해치지 않으면 공(功)이 이루어지며, 기이한 물건을 귀하여 여기고 소용되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넉넉합니다. 개와 말이 토성(土      性)17611) 이 아니거든 기르지 말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나라에서 기르지      말도록 하소서. 조그마한 행위를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德)에 누를 끼      쳐, 아홉 길[仞]의 산을 만드는 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이      이지러집니다.’ 하였습니다. 낙타는 먼 지방의 기이한 동물인데, 비싼 값으로      중국에서 구하여 사는 것은,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하겠      으며, 토성(土性)이 아니면 기르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장차 중국의 식      견 있는 자가 듣는다면, 전하께서 조그마한 행위를 삼가지 않아 성덕(盛德)의      누가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첫 번째입니다.      고려 태조(高麗太祖)는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어진 임금으로 일컬어집니다.      거란(契丹)에서 낙타를 보내어 오니, 태조가 다리 밑에 매어 두라고 명하여</p>	<p>○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筭子曰:      臣等聞今送黑麻布六十四市橐駝于中      國。 此雖若小事, 實關大體, 謹疏條      不可者三以啓。 謹按周武王克商, 通      道于四夷八蠻, 西旅貢獒。 太保召公      奭作書陳戒曰: “不作無益害有益, 功      乃成; 不貴異物賤用物, 民乃足。 犬      馬非其土性不畜, 珍禽奇獸不育于國。      不矜細行, 終累大德, 爲山九仞, 功虧      一簣。” 橐駝, 遠方異物也, 以重價求      買於上國, 謂之不貴異物可乎? 謂之非      土性不畜可乎? 將使中國有識者聞之,      無以殿下爲不矜細行而爲盛德之累乎?      其不可一也。 高麗太祖統合三韓, 號      稱賢主, 契丹來遺橐駝, 太祖命繫橋下      餓而死。 李齊賢論之曰: “太祖之所以      爲此者, 將以折戎人之譎計, 抑亦防後      世之侈心。” 殿下聖性高明, 卓冠百      王, 橐駝一事, 反不如麗祖之謹嚴, 其</p>

	<p>끓어 죽었는데, 이제현(李齊賢)이 이것을 논하여 이르기를, ‘태조께서 이렇게 한 까닭은 용인(戎人)의 간사한 계책을 꺾고 또한 후세의 사치하는 마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성성(聖性)이 고명(高明)하여 백왕(百王)에서 뛰어나신데, 낙타의 한 가지 일에 도리어 고려 태조의 근엄(謹嚴)한 것만도 못하시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두 번째입니다.</p> <p>우리 나라는 해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공사(公私)가 다 궁핍하여 조세(租稅)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흑마포(黑麻布) 1필의 값은 정포(正布) 10필인데, 흑마포는 저자에서 나오므로 장사하는 집에서는 실로 쉽게 장만되나, 정포는 농부의 전세(田稅)에서 나오므로 1필을 콩 10두(斗)로 칩니다. 이제 낙타의 값은 흑마포 60필인데 정포로 계산하면 6백 필이며, 콩으로 치면 6천 두이고 석(碩)으로 하면 4백입니다. 이 쓸데없는 짐승을 사려고 전세(田稅) 4백 석의 콩을 쓰니, 그 경비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세 번째입니다.</p> <p>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검소한 덕(德)을 숭상하고 낭비를 절약하며 먼 지방의 물건을 보배롭게 여기지 마시어 끝까지 처음처럼 삼가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이제 올린 차자(筓子)를 보니 매우 기쁘다. 내 당초의 마음은 이 짐승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출정(出征)할 때에 쓴다고 하므로, 내가 사서 한 번 시험하려고 하였을 따름이니, 물건을 애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바른 의논을 들었으니, 즐거이 따른다.”</p> <p>하였다.</p>	<p>不可二也。 本國比年旱荒,公私匱竭, 稅入甚寡。 黑麻布折價正布十四, 黑麻布則出於市里逐末之家, 固爲易備。 正布則出於農夫田稅, 一匹折豆十斗。 今橐駝價黑麻布六十匹, 以正布計之則六百匹, 以大豆折之則六千斗, 爲碩者四百。 欲買此無用之獸, 而費田稅四百碩之豆, 其於經費何如? 其不可三也。 伏望殿下崇儉德, 節浮費, 不寶遠物, 謹終如始, 不勝幸甚。</p> <p>傳曰: “今觀所上之筓子, 甚喜焉。 予之初心, 非貴此獸也, 聞中國用於出征之時, 故予欲市而一試之耳, 非玩物也。 今聞讜論, 樂爲之從。”</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0월 8</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성현(成愼)이 상소(上疏)하기를,</p> <p>“신(臣)이 올해의 농사가 부실하므로 양전(量田)을 멈추기를 청하였더니, 호조(戶曹)에서는 신이 대체(大體)를 고려하지 않고 양전하기를 싫어하여 온 도내</p>	<p>○平安道觀察使成愼上疏曰: 臣以今年農事不實, 請停量田。 戶曹</p>

일(기묘) 3번째기사

가 소요한다는 것을 구실삼아서 시행하지 말기를 청한 것이라고 논박하여 아뢰었습니다. 또 신이 연분(年分)의 등급을 매긴 것을 보고 아뢰기를, ‘가볍게 매겨서 마땅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사(御史)를 보내어 살피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며 두렵고 놀라와서 어쩔 줄 모르고 늘 죄를 얻을까 염려되어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등 문공(滕文公)이 정치를 물으니,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로부터 비롯하여야 합니다.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정지(井地)가 고르지 않고 곡록(穀祿)이 공평하지 않게 됩니다. 경계가 이미 바르면 전지(田地)를 나누고 녹(祿)을 제정하는 일은 앞서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8도 가운데에서 6도는 이미 양전하였으나 양계(兩界)만 유독 답험(踏驗)17613)에 의하므로, 국법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먼저 고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위로 천심(天心)을 짐작하고 아래로 조정의 의논을 물어서 행하시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인데, 신이 아뢰는 바는 본도(本道)는 인물이 잔폐(殘弊)하고 올해의 농사가 부실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 나라의 큰일은 말은 대신(大臣)이 이미 있고, 신은 오직 문서를 보내고 이원(吏員)을 다스릴 뿐인데, 신에게 무엇이 해롭기에 감히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음식이나 음악을 맡은 천부(賤夫)도 오히려 공무를 봉행하여 직분을 다할 줄 아는데,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그래도 대부(大夫)의 반열(班列)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통분하는 까닭입니다. 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든 것과 벼가 여물고 여물지 않은 것은 신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지만, 지금 온 사명을 받든 조관(朝官)이 무려 50여 원(員)이고 추종(騶從)은 그보다 배나 많아서 못 눈이 보는 것을 어떻게 엄폐하겠습니까?

대저 본도는 밭이 많고 논이 적으며, 동쪽과 북쪽의 두 방면은 다 높은 산과 큰 골짜기인데, 강변(江邊)일대는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산 위에서 경작하

駁啓謂臣“不顧大體，厭其量田，以舉道騷擾爲言。”請勿施行。又見臣之年分等第而啓之曰：“輕歛失中，請遣御史而審之。”臣反覆思念，兢戰駭愕，罔知所措，常恐獲罪而不能自伸也。昔者滕文公問爲政，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經界不正，井地不均，穀祿不平。經界既正，分田制祿，可坐而定也。”我國八道之中，六道則既已量田，獨兩界猶從踏驗，國法有二，所當先改。聖上上酌天衷，下詢廟議而行之，甚盛舉也。臣之所啓，不過本道人物殘敝，今年農事不實耳。夫國之大事，已有大臣任之者，臣惟行文書、定吏員而已，於臣何害，敢有異慮？庖翟賤夫猶知奉公而盡職，臣雖無狀，猶從大夫之後，豈敢有一毫厭憚之心乎？此臣所以兢駭而痛憤者也。且歲之豐歉、禾之秕實，臣可以明辨，今來奉命朝官無慮五十餘員，而騶從倍之，衆目所視，焉可掩乎？大抵本道旱田多而水田少，東北三面皆高山大壑，江邊一路尤甚。人耕山上，更歲迭休，而平疇正田，僅十分之一，旱則成茂，澇則耗損而不能遂也。惟赴京一路，

로 해를 걸러 묵히고, 평탄한 두둑의 정전(正田)은 겨우 10분의 1인데, 가물면 잡초만 무성하고 큰물이 지면 모손(耗損)되어 성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서울로 가는 일대가 모두 평탄한 들과 큰 길이기는 하나 말이 많고 논이 적으며, 이것은 다 바다에 가까워서 가물면 소금기가 있고 큰물이 지면 물에 가라앉으므로, 반드시 비오고 가무는 것이 적당하고서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신이 올해 초여름에 도계(到界)17614) 하였을 때에는 비내리고 별나는 것이 알맞아서 벼의 모가 가지런히 무성하여 야드르르한 것이 장차 풍성하게 여물조짐이 있더니, 6월에 큰 비가 내리고 7월에 큰 바람이 불고부터는 아주 음산하여 침침한 것이 달마다 풀리지 않아서, 높은 밭은 시들고 낮은 밭은 습하여, 전에 야드르르하던 것이 모두 변하여 거칠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삭을 내민 것은 경중하게 뻗뻗한 목에 쪽정이가 많고 여물지 않아, 걸곡식 15두(斗)를 1석(碩)으로 하여 짙은 쌀이 겨우 2, 3두입니다. 게다가 양전(量田)하는 일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축성(築城)하는 일이 아직 그치지 않았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허둥지둥하여 수확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은 위로 나라의 경비를 헤아리고 아래로 백성의 생업을 헤아리되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알맞게 하도록 힘쓸 따름인데,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거짓으로 신보(申報)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제 신이 신보한 것은 실농(失農)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재상(災傷)을 입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도의 조세는 다른 도와 같지 않아서, 반드시 위관(委官)17615) 을 시켜 답험(踏驗)하고 경차관(敬差官)을 시켜 다시 살피게 하여 답험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니, 1묘(畝)나 1결(結)이라도 어찌 숨겨서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가령 10등분으로 등급을 매긴다면, 10분이 결실하면 상의 상[上之上]이고, 9분이 결실하면 상의 중[上之中]이고, 8분이 결실하면 상의 하[上之下]이고, 7분이 결실하면 중의 상이고, 6분이 결실하면 중의 중이고, 5분이 결실하면 중의 하이고, 4분이 결실하면 하의 상이고, 3분이 결실하면 하

雖皆平原大途，然旱田多而水田少，是皆近海，旱則瀉鹵，澇則墊沒，必使水旱適宜，然後可獲也。臣於今年初夏到界，雨暘時若，禾苗齊茂芄芄穞穞，將有豐稔之兆。自六月大雨，七月大風，窮陰疇疇，連朔不解。高田萎荒，卑田沮濕，向之芄芄穞穞者，盡變而為踈糲，其有吐穗者亭亭強項，多秕不實。借如皮穀十五斗爲一碩，而春米僅二三斗。加以量田之事方興，而築城之役未休，愚民皇皇，無暇收穫。臣上計國之經費，下計民之口業，不重不輕，務合乎中耳，豈有一毫誣報之心乎？今臣之所報，非謂失農也，非謂盡有災傷也。本道之稅不類他道，必使委官踏驗之，敬差官更審之，隨踏而收稅，則一畝一結，豈可隱而漏乎？假使十分爲率，十分結實則爲上之上，九分則上之中，八分則上之下，七分則中之上，六分則中之中，五分則中之下，四分則下之上，三分則下之中，二分則下之下。其收稅則田一結，下之中則米六斗，下之下則米四斗。臣之所報，即皆下之中、下之下也。臣之所報如此，而民猶嗷嗷訴冤，而況當此險歲，

의 중이고, 2분이 결실하면 하의 하이며, 그 징수하는 조세는 전지(田地) 1결(結)에 대하여 하의 중이면 쌀 6두(斗)이고, 하의 하이면 쌀 4두인데, 신이 신보한 것은 모두 하의 중과 하의 하입니다. 신이 신보한 것이 이러한데도 백성은 오히려 근심하여 역울함을 호소하는데, 더구나 이런 흉년을 당하여 차마 등급을 높이겠습니까? 땅의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같지 않고 사람의 힘을 들이는 것이 한결같지 않은데, 북방은 풍기(風氣)가 세고 날씨가 추워서 일찍 서리가 내리고, 땅도 메마르고 자갈이 많아서 초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한두 군데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더라도 벼의 이삭이 나오고 낱알이 영그는 것이 남방과 같지 않은데다가 또 여러 가지 부역에 고달파서 경작에는 힘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많더라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양계(兩界)는 경기(京畿)만 못하고, 경기의 땅도 어찌 하삼도(下三道) 17616 만큼 기름지겠습니까? 전지(田地)에는 6등급이 있으나 반드시 다 1등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에는 9등급이 있으나 반드시 다 상등(上等)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니, 평년에는 거의 하등을 적용하고 큰 풍년이 들어야 비로소 높여서 중등을 적용합니다. 하삼도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본도이겠습니까? 신이 전례(前例)를 상고하기도 하고 부로(父老)에게 묻기도 하였는데, 본도의 조세는 중등을 적용한 때가 없고 다 하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농사는 올해보다 조금 여물었으나 오히려 등급을 높이자는 의논이 없었는데, 더구나 부실한 올해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성심을 쏟아서 성충(聖聰)을 번거롭게 하는 까닭입니다.

신이 삼가 상고하건대, 순(舜)임금 때와 하(夏)나라의 제도는 천하를 오복(五服)으로 나누어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이라 하고 지방의 원근(遠近)에 따라 납부(納賦)에 경중(輕重)이 있었는데, 이제 본도는 중국의 요복·황복에 해당합니다. 풍기(風氣)가 중토(中土)와 같지 않고 인심(人心)이 근지(近地)와 같지 않은데다가 부역에 고달파서 고생하며 즐거

忍而加等乎? 地之肥瘠不同, 人之用力不一, 北方風氣剛勁, 天寒早霜, 而地又磽确不毛。 其間縱有一二肥腴之地, 禾之發穗吐實不類於南方, 而又困於諸役, 耕墾不盡其力。 故土地雖多, 而所收甚尠。 是故兩界不如京畿, 京畿之地豈有如下三道之膏腴乎? 田有六等, 而不必皆用一等; 稅有九等, 而不必皆收上等。 平年則類皆用下, 而值歲大穰然後, 始升而用中焉。 下三道尙然, 而況本道乎? 臣或考前例, 或詢父老, 本道之稅, 無用中之時, 而皆用下等。 去年之農, 比今年稍穰, 猶無加等之議, 而況今年之不實乎? 此臣瀝瀉肝膽而冒瀆聖聰也。 臣謹按虞、夏之制, 分天下爲五服, 曰甸、侯、綏、要、荒, 隨地之遠近, 而納賦有輕重。 今本道卽中國之要荒也, 風氣不類中土, 人心不似近地, 加以困於力役, 憔悴無聊, 所當綏撫而安輯之也。 其所以困於力役者, 無他, 赴京護送勞也, 沿邊防戍苦也, 臣請得以言之。 赴京有聖節使、正朝使、千秋使, 其外有別禮奏聞使、遼東押解官, 三年又有管押使, 其護送人馬之數, 少則數十, 多則

움이 없으니,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야 할 바입니다. 그 부역에 고달픈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북경(北京)에 가는 행차를 호송하는 것이 힘들고 연변(沿邊)의 방수(防戍)가 괴롭기 때문인데, 신이 이를 말하겠습니다. 북경에 가는 행차에는 성절사(聖節使)·정조사(正朝使)·천추사(千秋使)가 있고, 그 밖에는 별례 주문사(別禮奏聞使)·요동 압해관(遼東押解官)이 있고, 3년마다 또 관압사(管押使)가 있는데, 그 호송하는 사람과 말의 수가 적으면 수십이고 많으면 수백이며, 의주(義州)부터 요동(遼東)까지는 길이 가깝지 않아서 대개 닳새길입니다. 여름에는 장마를 무릅쓰고 큰 강을 건너는데, 홍수에 막히기도 하고 진흙에 빠지기도 하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린 기색이 역력합니다. 겨울에는 북녘 바람을 거스르고 쌓인 눈을 무릅쓰는데 굳은 얼음이 얼어붙고 새벽 서리가 차가우므로, 살갗은 찬데 옷은 얇아서 얼굴은 검은 색과 같고 입은 얼어붙어 말할 수 없으며, 손가락은 뻣뻣하여 구부릴 수 없고 말은 고슴도치 털처럼 움츠리어 가지 못하니, 사람과 말이 죽어서 쓰러진 것이 길에 잇달아 있게 됩니다. 전에 간 자가 돌아오기 전에 뒤에 가는 자가 이어서 떠나, 끊임없이 계속되어 쉴 사이가 없으므로, 농사를 돌볼 겨를이 없고 처자를 보전할 수 없으니, 말을 하게 되면 슬프고 기막힌 일입니다. 성상께서 어찌 이처럼 지극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강변(江邊)의 고을이 여섯이고 첨절제사(僉節制使)·만호(萬戶)의 진영(鎭營)이 여덟인데, 다 외롭고 작은 보루(堡壘)이며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 중첩된 봉우리가 높이 하늘을 찌르고 양장(羊腸)처럼 구부러졌으며 나무가 뾰뾰이 들어선 것이 칼끝과 같으니, 그 험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따금 작은 집과 누추한 가게가 숲 기슭에 가까이 있으나 거친 풀이 뾰뾰하여 인가가 드물고, 여름에는 들에 흩어져 경작하다가 겨울에는 성안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사람과 말이 겹쳐 자도 성이 작아서 수용하기 어려우니, 이름은 읍(邑)·진(鎭)이라 하나 실은 부유한 상인(商人)의 큰 집만도 못합니다. 대개 군졸(軍卒)은

數百。自義州至遼東，其路不邇，大概五日程也。夏則冒霖雨渡大河，或阻淫潦，或陷泥淖，餽糧中絕，飢色可掬，冬則遡北風凌積雪，堅冰凝沍，晨霜凜冽，膚寒衣薄，面如黑色，口噤不得語，指直不得結，馬如蝟毛拳曲不行，人馬斃仆相繼於路。前者未還而後者繼起，循環絡繹，無有休息，農事不暇顧，妻子不得保，言之可爲於邑。聖上安知至於此極乎？江邊州郡六，而僉節制萬戶之營八，皆孤墉小堡，在山谷之間。重峯疊嶂，高插于天，羊腸屈曲，森如劍鋌，其險阻不可勝言。往往蝸廬茅店，依傍林麓，荒草蒙密，人烟鮮少。夏則散耕于野，冬則驅入于城，人馬枕藉，城小難容，雖名爲邑鎭，其實不如富商大家。大抵軍卒皆南道之人，賣田鬻宅，贏糧負戈，遠涉絕徼，自十月至于二月，年年防戍，解冰而散，其疲困不可勝言。以疲困之卒，禦無然之寇，然猶不窘者無他，獨恃山谿之險阻，聖澤之洋溢而已。聖上安知至於此極乎？臣又見自遼東而南，海州、蓋州之東，至鳳皇山之麓，其地廣遠，不下數百里，人家櫛比，禾

다 남도(南道)의 사람인데, 전토(田土)를 팔고 가택을 팔아 양식을 싸고 창을 메고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가서 10월부터 2월까지 해마다 방수(防戍)하고 얼음이 풀리면 해산하니, 그 피곤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곤한 군졸로 기세가 강한 도둑을 막으나, 그래도 군색하지 않은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산골짜기가 험하고 성택(聖澤)이 충만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 어찌 이처럼 지극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신이 또 보건대, 요동(遼東)으로부터 남쪽 해주(海州)·개주(蓋州)의 동쪽으로 봉황산(鳳凰山) 기슭까지 그 땅이 넓고 멀어서 수백 리에 밀돌지 않는데, 인가가 즐비하고 곡식이 들을 덮어 인구가 점점 번성합니다. 사람들은 다 중국 말을 모르고 오로지 우리 나라 말을 쓰며, 우리 나라 사람을 보면 앞을 다투어 고향을 물어 그 족속에게 인도하는데, 땅이 기름지고 세를 거두는 것이 매우 적으며 요동에는 또 동녕위(東寧衛)를 두어 편안하게 위안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본도에서 신역(身役)을 도피한 백성이 저 곳으로 들어가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으며, 압록강(鴨綠江)에 얼음이 얼어 의주(義州)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길게 노래하며 강을 건너더라도 누가 막는 자가 있겠습니까? 대저 영안도(永安道)는 본도처럼 부역이 많지 않으며 모련위(毛麟衛)가 또한 사납고 순종하지 않으나, 지난해에 온 집안이 도망하여 들어간 백성이 있는데, 더구나 본도의 피곤한 백성으로서 또한 편안하게 위안해 주는 곳이 있는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염려하는 까닭입니다.

본도는 방수하기가 괴롭고 호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달프고 땅이 척박하여 황폐하고 텅 비었는데, 만약 다른 도에 비하여 조부(租賦)를 정하되 많이 거두게 하고, 군졸을 군적(軍籍)에 올리되 여정(餘丁)이 없게 하여, 사람들이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고 다 도망하여 흩어지려 한다면, 해마다 백성을 모아 옮겨 가서 살게 하더라도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눈

稼被野，生齒漸盛。人皆不解漢語，專用我國之言，若見我人，則爭問鄉邑，導其族屬。土地膏饒，征稅大輕，遼東又置東寧衛綏撫不已。臣妄謂本道避役之民，安知不投於彼？當鴨水冰堅義州輒入之時，雖長歌渡江，孰有過之者乎？夫永安道不如本道之多役，毛麟衛又驚悍不順，然於去歲，民有捲戶而躲入者，而況以本道疲[困]之民，而又有安撫之處乎？此臣所以惕慮也。以本道防戍之苦、護送之勞、人困地薄、荒廢空虛，若比於他道定租賦而使之重斂，籍軍卒而使無餘丁，人未安業，皆欲逃散。則雖年年募民而徙居之，無益也。耳聞不如目覩，遙度不如親審，臣三度赴京，兩度宣慰，到今已往來矣，而道之殘敝、民之艱苦，臣稍知之矣。《書》曰：“民惟邦本，本固邦寧。”有若曰：“百姓足，君誰與不足；百姓不足，君誰與足？”此皆陳言恒說，似爲迂闊而無用，然治國與民，捨此何以哉？臣學不足以酌古，才不足以經邦，過蒙睿眷，待罪鑿坡二十餘載。今又授此大任，來撫一道，任大責重，事多謬誤。然平生所蘊，常

으로 보는 것만 못하며, 멀리서 헤아리는 것이 직접 살피는 것만 못합니다. 신은 세 번 북경에 가고 두 번 선위(宣慰)하면서 이제까지 이미 왕래하였으며, 이 도의 잔폐(殘弊)와 백성의 간고(艱苦)를 신이 조금 압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고, 유약(有若)17617) 이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넉넉하지 못하겠으며,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넉넉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다 평범한 말을 아뢰는 것이므로 오활(迂闊)하여 쓸데없는 듯하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이것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신은 학문이 옛것을 짐작하는 데에 부족하고 재주가 나라를 경영하는 데에 부족하나, 지나치게 충애를 입어 난파(鑿坡)17618) 의 벼슬에 있는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이 큰 직임에 제수(除授)되어 와서 한 도(道)를 다스리므로 책임이 중대하여 일에 오류가 많으나, 평생에 품은 바는 늘 충절을 다하여 두 마음이 없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윗사람을 속이고 사사로움을 행할 뜻을 갖겠습니까? 구구한 마음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성현(成僎)의 상소(上疏)는 간절하여 실로 사의(私意)가 아니니, 다시 강명(剛明)한 조관(朝官)을 보내어 농사의 풍흉(豐凶)을 직접 살피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성현이 본도의 폐단을 아뢰기는 하였으나, 군적(軍籍)과 양전(量田)은 다 나라의 중대한 일이고 또 이미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의 종사관(從事官)을 보냈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欲盡節而無二，豈有誣上行私之意乎？區區之心，不能自己。

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議：“成僎之疏懇切，實非私意。請更遣剛明朝官，親審農事豐歉後更議之。”韓明澮、沈澮議：“成僎雖陳本道之弊，然軍籍、量田，皆國之重事。而且已遣量田巡察使、從事官，不可中止也。”尹弼商議：“量田、軍籍，朝議已定，若因僎上書而止之，殊失大體。”洪應議：“今審成僎之書，其意欲祛一道之弊也。果農事不實，民皆愁怨，則量田可停也。且祖宗朝不量平安、永安兩道田者，恐有深意存焉。”盧思慎議：“國家法令甚嚴，豈人民有一事不便於己而潛入他國乎？雖有一二避役者，不可以此而廢國家大事也。僎以戶曹駁已太甚，故陳本道事弊，欲達其志而已，不可施行。”下書諭僎曰：“本道騷擾，誠如卿啓。但量田大事也，今已舉矣，不可中止。”



	<p>“양전과 균적은 조정(朝廷)의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성현의 상서(上書)로 인하여 그만둔다면, 대체(大體)에 매우 어그러집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p> <p>“이제 성현의 글을 살피건대 그 뜻은 한 도의 폐단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과연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이 다 근심하고 원망한다면, 양전은 멈출 만합니다. 또 조종조(祖宗朝)에 평안도·영안도 두 도의 전지(田地)를 측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깊은 뜻을 둔 것이 있을 듯합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p> <p>“국가의 법령이 매우 엄한데, 어찌 한 가지 일이 자기에게 불편하다 하여 다른 나라로 몰래 들어가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신역(身役)을 도피하는 자가 한 둘 있더라도 이 때문에 국가의 큰 일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성현은 호조(戶曹)에서 자기를 매우 심하게 논박하였으므로 본도의 폐단을 아뢰어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을 뿐이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성현에게 하서(下書)하여 이르기를,</p> <p>“본도가 소요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卿)이 아뢰는 것과 같으나, 다만 양전은 큰 일인데 이제 이미 거행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다.”</p> <p>하였다.</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0월 13일(갑신) 1번째기사</p>	<p>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 여자신(呂自新)이 조사(朝辭)하고 이어서 아뢰기를,</p> <p>“북도 절도사가 변방을 순행할 때에 성 밑에 사는 야인(野人)들이 뵈러 오면 술을 먹이고 소금을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남도에는 예전에 야인이 없었으나, 이제 김단다무(金丹多茂)가 새로 왔는데, 혹 뵈러 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또 북도 야인의 전례에 따라 서울로 올라오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丙) [甲] 申/永安南道節度使呂自新辭，仍啓曰：“北道節度使巡邊，城底野人等來謁，則有饋酒給鹽之例。南道舊無野人，今金丹多茂新到，如或來謁，將何以處之？且依北道野人例，有欲上京者，又何以處之？”傳曰：“如有來謁者，依北道例接之；其欲上京者，臨時取稟。”</p>

	<p>“뵈러 오는 자가 있거든 북도의 전례에 따라 접대하고, 서울로 올라오고자 하는 자는 그 때에 임하여 취품(取稟)17624) 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0월 13일(갑신) 2번째기사</p>	<p>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아뢰기를,  “강무(講武)는 중대한 일이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서산(西山)은 강무장(講武場)인데, 예전에는 짐승이 많았으나, 근년에는 풀을 베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으므로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여 짐승이 의지하여 살 곳이 없으니, 엄하게 금하소서. 또 세조(世祖)께서는 자주 풍양궁(豐壤宮)에 거둥하여 밤을 지내며 사냥하셨으므로 짐승을 잡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들건대 광릉(光陵)의 산에 짐승이 많아서 해(害)가 곡식에 미친다 하니, 이양생(李陽生)을 시켜 군인을 조금 거느리고 몰아 내려오게 하여 사냥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의 말이 매우 옳으나, 침원(寢園)17625) 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전에 대간(臺諫)·시종(侍從)의 말에 대답하기를,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졸을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하였다. 임금의 분부가 이러한데도 한명회는 많이 잡는 일에 힘써, 풀을 베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고 능침에서 사냥하기를 청하며, 밤을 지내며 사냥한 일까지 끌어대어 임금을 놀이 사냥으로 이끌었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당 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임금에게는 한마음이 있을 뿐인데 공략하는 자가 많으니, 조금이라도 해이하여 그 중의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위망(危亡)이 따를 것이다.’ 하였다. 이제 임금이 사냥에 빠져서 정사를 듣고 살피는 일에 게으르면, 한명회와 같이 아첨하는 신하가 넉넉히 공략할 만하여, 나라의 일이 그릇되게 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p>	<p>○上黨府院君韓明澮來啓曰：“講武大事，不可廢也。西山乃講武場，舊多禽獸，近年芻蕘之禁不嚴，故草樹不茂，禽獸無所依息，請嚴禁之。且世祖屢幸豐壤宮，經宿而獵，故獲禽甚多。今聞光陵之山禽獸衆多，害及禾稼。令李陽生略率軍人，驅下而獵。”傳曰：“卿言甚善。但蹂躪寢園不可也。”</p> <p>【史臣曰：“上嘗答臺諫侍從之言曰：‘非爲獲禽，欲鍊軍卒。’上教如是，而明澮務於多獲，請禁芻蕘，請獵寢陵，至引經宿行狩之事，導君於游田，是何心哉？唐太宗曰：‘人主惟有一心，而攻之者甚衆。少懈而受其一，則危亡隨之，今上如有禽荒之作，怠於聽察，則如明澮諂諛之臣足以攻之。’而國事之非，可坐而待也。”】</p>
<p>성종 196권, 17년</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허황(許瑩)이 아뢰기</p>	<p>○己丑/御經筵。講訖，司諫許瑩啓</p>

<p>(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0월 18일(기축) 1번째기사</p>	<p>를,  “황해도(黃海道) 전탄(箭灘)의 일은 이미 대신에게 위임하여 역사를 감독하도록 하였는데, 또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면 일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 일을 파(罷)하고자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였을 따름이다. 어찌 대신을 믿지 않아서 그러겠는가?”  하였다. 지평(持平) 원보륜(元甫崙)이 아뢰기를,  “공선(公船)을 써서 조운(漕運)하여 옴으로 부터는 쉽게 가라앉는데, 건진 쌀을 연해(沿海)에 사는 백성에게 억지로 나누어 주어 별에 말려서 바치게 하니, 쌀은 대부분 썩어서 못쓰게 되고, 고을에서는 독촉하여 거두어 들이므로 백성이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만약에 사선(私船)을 써서 조운한다면 아마도 배가 뒤집히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병선(兵船)을 써서 조운하는 것은 수군(水軍)으로 하여금 배를 부리는 법을 익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사선을 쓴다면 수군이 배를 부리는 법을 익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전일에는 사선을 써서 조운하다가 이제 폐지한 것이 이 때문이다.”  하였다.</p>	<p>曰：“黃海道箭灘之役，既委任大臣董役，而又遣人往審，於事體何？”上曰：“今天寒，欲罷其役，遣人往審耳，豈不信大臣而然耶？”持平元甫崙啓曰：“自用公船漕運以來，易致敗沒，以所拯之米，抑配沿海居民，使之曝乾以納，米多腐朽不用。州郡督徵，民不聊生，誠可悶也。若用私船漕運，則庶無敗覆之患矣。”上問左右，領事韓明澮對曰：“用兵船漕運，欲使水軍習行船也。若用私船，則水軍必不能慣其行船也。”上曰：“前日用私船漕運而今廢之者，爲此也。”</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0월 19일(경인) 3번째기사</p>	<p>의주 목사(義州牧使) 조숙기(曹淑沂)가 사조(辭朝)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의주는 군수(軍需)가 넉넉하지 않아서 늘 안주(安州)·영변(寧邊) 등의 고을에서 가져다가 채우니, 날라 옮기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의주에 세 섬이 있는데, 다른 섬은 도둑의 변란이 염려스러우나, 위화도(威化島)라면 물이 깊어서 도둑이 쉽사리 건너지 못하고 또 땅이 기름지고 넉넉하므로, 둔전(屯田)을</p>	<p>○義州牧使曹淑沂辭，仍啓曰：“義州軍需不敷，恒取足於安州、寧邊等官，輸轉之弊不貲。義州有三島，他島則賊變可慮，若威化島則水深，賊不得輕渡，且土地肥饒寬閑。若開屯田，所</p>

	<p>개설하게 하면 거두는 것이 반드시 많아서 군수에 보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군수에 보탬 수 있는 것은 좋으나, 의논하는 자들이 다 말하기를, ‘백성의 뜻이 바라지 않고 또 도둑의 변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그대가 가서 백성이 바라는 것을 다시 알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收必多，可補軍需矣。” 傳曰：“可補軍需則善矣。 然議者皆云：‘民情不願，又慮有賊變。’ 爾往更探民願以啓。”</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0월 19일(경인)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만호(萬戶)인 수군(水軍)은 물위에 오래 있게 하더라도 군기(軍器)는 물위에 둘 수 없다. 이제 성을 쌓고자 하는데, 전일에 대사헌(大司憲)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성을 쌓는 것은 군기를 간수하기 위한 것이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대사헌(大司憲)과 전에 그 도를 거친 재상(宰相)을 불러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증(李克增)·이극균(李克均)·이극돈(李克墩)이 의논하기를,  “수영(水營)을 둔 것은 본래 물위에서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기(軍器)와 군량(軍糧) 따위 물건이 매우 많으므로, 다 배 위에 실을 수 없고 또한 갑자기 날라다가 쓸 수도 없습니다. 배 위에서 이롭지 못하면, 장졸(將卒)이 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물건도 한 개의 횃불에 불타서 없어질 것인데, 용맹한 장수와 굳센 군졸과 노련한 사공이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이르기를, ‘이제 성을 쌓으면, 만호가 오랫동안 성안에 있게 될 것이니, 만호를 둔 본의에 어그러진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럴 듯하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 위에서 이롭지 못하여 한 번에 꺾하여 없어지는 것이 성에 의거하여 스스로 지키면서 원병(援兵)을 기다리는 것만 못하는데, 도둑도 어찌 갑자기 깊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그 때에 성은 없었으나 만호가 반드시 물위에 오래 있지 않았는데, 감사(監司)·수사(水使)가 알면서도 금하지</p>	<p>○傳于承政院曰：“萬戶、水軍雖令長在水上，然軍器不可置水上也。 今欲築城，而前日大司憲，言其不可築城爲藏軍器也， 其召議領敦寧以上、議政府、大司憲、曾經其道宰相。” 韓明澮、沈澮、尹弼商、李克增、李克均、李克墩議：“設水營，本欲水上防禦也。 然軍器軍糧等物甚多，不能盡載船上，亦不能倉卒運用也。 若船上失利，則非徒將卒無所於歸，在陸之物，亦爲一炬所焚蕩，雖猛將勁卒老手篙師，亦無如之何矣。 議者謂：‘今若築城，則萬戶長在城中，有乖設萬戶本意。’ 此言似然而實不然。 與其船上失利而一敗塗地，不如據城自守以待援兵。 賊亦豈遽深入？ 且當時雖無城，萬戶必不長在水上，監司水使雖知，亦不能禁者，以其勢不能也。” 李克培議：“各浦築堡不可。 臣於前議已盡，</p>

못한 것은 그 형세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각포에 정보를 쌓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신이 전에 의논할 때 다 아뢰었  
 으니, 어찌 감히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정보를 쌓  
 는 것은 군기(軍器)와 육물(陸物)을 간수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 신  
 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만호가 자고 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조  
 종조(祖宗朝)에 육진(陸鎭)을 두기도 하고 수진(水鎭)을 두기도 하여 수륙(水  
 陸)으로 적과 서로 버티어 태평한 지 1백 년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건의한  
 계책 때문에 조종의 성헌(成憲)을 험사리 고치니, 신은 참으로 통분합니다.”  
 하고, 정괄(鄭恬)·김겸광(金謙光)·이승원(李崇元)·박성손(朴星孫)이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수진·육진을 두어서 방비하되, 육진은 성지(城池)를 축설(築設)하여  
 굳게 하고, 수영(水營)은 만호가 수군을 거느리고 물위에 오래 있으면서 늘  
 적이 오는 것처럼 수전(水戰)을 익힙니다. 이제 군기와 육물(陸物)을 간수하려  
 고 성을 쌓는다면, 만호가 성안에 오래 있어 배 위에 있는 기계(器械)는 전혀  
 수정(修整)되지 않을 것이며, 적이 오더라도 혹 나가서 막지 않고, 나가서 막  
 더라도 조금만 이롭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갑자기 성안으로 달려 들어오고 힘  
 껏 싸우지 않을 것이므로, 병선(兵船)은 마침내 적에게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은 육물과 병기(兵器)를 지키려다가 병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종조부터  
 수진에는 성을 쌓지 않았는데, 어찌 지혜가 미치지 못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대개 수군이 배 위에 오래 있으면서 기회에 따라 변고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  
 이었으니, 예전대로 두고 쌓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유순(柳洵)·오순(吳純)이 의논하기를,  
 “당초 각포에 진을 두되 정보를 만들지 않은 것은 왜구(倭寇)가 바야흐로 치  
 성하므로 장졸(將卒)이 병기와 양식을 가지고 늘 물위에 있으면서 왜구가 온  
 것처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와 군량을 다 배 안에 둘 수 없으므

豈敢有他說? 議者以謂: ‘築堡不過藏  
 軍器、陸物之所。’ 臣以謂如此則必爲  
 萬戶寢息之所。 祖宗朝, 或置陸鎭,  
 或置水鎭, 水陸相持, 昇平百年, 以一  
 人建策, 輕改祖宗成憲, 臣實痛憤。”  
 鄭恬、金謙光、李崇元、朴星孫議:  
 “國家設水陸鎭以備禦, 陸鎭則築設城  
 池以爲固, 水營則萬戶領水軍長在水  
 上, 常若敵至, 以習水戰也。 今欲藏  
 軍器、陸物而築城, 則萬戶長在城中,  
 船上器械專不修整, 雖有敵至, 或不出  
 禦, 雖或出禦, 少有不利, 輒奔入城,  
 必不力戰, 兵船終爲敵人焚蕩。 是欲  
 守陸物兵器而棄兵船也。 自祖宗朝,  
 水鎭不築城, 豈智有所不及哉? 蓋欲使  
 水軍長在船上, 應機備變也。 仍舊勿  
 築爲便。” 柳洵、吳純議: “當初各浦  
 設鎭不爲城堡者, 以倭寇方熾, 欲令將  
 卒, 持兵器糧餉常在水上, 以擬其來  
 也。 然兵器軍糧不可盡在船中, 不得  
 已於陸鎭暫設草屋以藏之。 若無城堡  
 以防之, 脫有賊兵飄忽乘陸, 先焚蕩兵  
 糧, 則是先失備禦之具矣。 設爲石堡,  
 以爲藏兵器軍糧之所爲便。 議者云:  
 ‘如是則將卒將棄水就陸以自便。’ 是

로 어쩔 수 없이 육진에 잠시 초옥(草屋)을 두어서 간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정보가 없이 방어하다가 혹 적병이 갑자기 육지에 올라와 먼저 군량을 불태워 없앤다면, 이것은 먼저 방비할 도구를 잃는 것이니, 석보(石堡)를 두어 병기와 군량을 간수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장졸이 물을 버리고 육지로 나가서 스스로 편안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늘 배를 부려 싸움을 익히도록 법령에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긴요한 곳을 가려서 성을 쌓고 우환에 대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경동(李瓊全)이 의논하기를,  
 “전조(前朝)17632) 의 말기에 왜란(倭亂)이 극심하였습니다. 하삼도(下三道)만이 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개성(開城)의 황교(黃橋)까지도 널리 도둑의 숲이 되었는데, 고로(古老)가 서로 전하기를, ‘최영(崔瑩)이 오정문(午正門)에서 갑옷을 입고 방어하였다.’ 하니, 그 위태로왔던 것을 알 만합니다. 그러하였던 까닭은 연해(沿海)에 굳은 방어가 없어서 적왜(賊倭)의 출몰이 무상하여도 조정(朝廷)에서 방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는 몸소 갑옷과 투구를 몸에 입고 전진(戰陣)에 출입하며 추악한 무리를 섬멸하고 백성을 구제하여, 성대한 공덕(功德)으로 집을 바꾸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두루 맛보고 환난을 염려함이 깊어 수군을 창설하여서 견고하게 유지하셨으므로, 태평한 1백 년 동안 백성이 병난(兵難)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데에 익숙하여 장졸이 헤이하므로, 바로 확장(擴張)을 책려(策勵)하여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지키되 오히려 지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의 말에 따라 물위의 군사를 성안의 군사로 만들어 조종의 성헌이 장차 어지럽게 변경되겠으니, 어찌 매우 아깝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정보를 설치하는 것이 병기와 육물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힘드는 것

大不然。 常時行船習戰， 法令具在， 豈能自便乎？ 先擇緊要處築城， 備患何如？” 李瓊全議：“前朝之季， 倭亂極矣， 非唯下三道受害， 至於開城黃橋， 漫爲賊藪。 古老相傳， 崔瑩坐甲於午正門而禦之， 其岌岌可知。 其所以然者， 沿海無防戍之固， 而賊倭出沒無常， 朝廷莫得以隄備之也。 我太祖躬擐甲冑， 出入戰陣， 殄殲醜類， 拯救生靈， 功德之盛。 化家爲國， 歷試諸難， 慮患也深。 創置水軍， 維持鞏固， 太平百年， 民不見兵。 今者狃於宴安， 將卒緩弛， 正宜策勵張皇， 以守祖宗之成憲， 猶恐其不至。 乃因議者之言， 以水上之軍爲城裏之兵， 祖宗成憲將至紛更， 豈不甚可惜哉？ 今雖曰設堡所以衛兵器及陸物而止耳， 然人情莫不好安而惡(勢) [勞]， 將見萬戶與軍卒之用事者， 皆居城中， 以弱卒守船。 雖立嚴刑以禁之， 勢不得不爾。 今雖擇要害處築城， 將見列鎮紛然陳請， 據此例築之， 誰能獨在船上爲水戰之備乎？ 沿海之地百萬生齒， 繁育櫛(此) [比]， 而使萬戶據城自保， 則農民將何倚賴而生業乎？ 雖曰萬戶不能長在船上， 然使

을 싫어하므로, 장차 만호와 군졸 중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는 다 성안에 살면서 약한 군졸을 시켜 배를 지킴을 보게 될 것인데, 엄한 형벌을 세워서 금하더라도 형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요해지(要害地)를 가려서 성을 쌓더라도 장차 열진(列鎭)에서 어지럽게 진정하여 이 전례에 따라 쌓는 것을 볼 것인데, 누가 능히 홀로 배 위에 있으면서 수전(水戰)의 준비를 하겠습니까? 연해(沿海)의 땅에 백만의 백성이 번성하여 준비한데, 만호로 하여금 성에 의거하여 스스로 보전하게 한다면, 농민이 장차 어디에 의뢰하여 생업을 하겠습니까? 만호는 배 위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는 하나, 그들로 하여금 수군의 장수라는 것을 알고 수전(水戰)의 준비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을 지키며 스스로 안일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또 적국(敵國)은 늘 형세를 가지고 승부(勝負)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연해의 요해지에 수군을 두어 서로 버티어 온 1백 년 동안은 패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성을 쌓아 스스로 지키면 어찌 약한 것을 보여서 모욕당하지 않겠습니까? 왜적으로 하여금 육지에 내리게 한다면 만호가 선군(船軍) 수백 명을 거느리고 성안에 있더라도 단연코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적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약탈하게 한다면 만호가 선군을 거느리더라도 겨우 스스로 보전할 것인데, 어떻게 백성의 목숨을 구제하겠습니까? 지금은 오랑캐가 신하로서 불쫓아 계속하여 조회하러 오므로 신이 말하는 것은 염려스럽지 않으나, 다만 만세(萬世) 뒤에 기강이 점점 해이하여져서 혹 떨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있을 때에 근원이 된 까닭을 추구하여 성을 쌓은 계책이 전하로부터 비롯된 것을 식자(識者)가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성보를 설치하는 것은 군기(軍器)와 육물(陸物)을 간수하기 위한 것이고, 만호가 거처할 곳이 아니다. 처음에 조숙기(曹淑沂)의 말에 의해서 좌의정(左議

之知其爲水軍之將，而不忘水戰之備，不猶愈於保城而自逸乎？且敵國常以形勢爲勝負，國家設水軍於沿海要害之處，相持百年，未有敗事。今遽築城自守，豈不示弱而見侮乎？若使倭賊下陸，則雖萬戶率船軍數百人在城中，斷不能擐甲而出鬪明矣。使倭賊分軍而抄略，則雖萬戶與船軍僅能自保，何救於萬民之命乎？今夷獠臣附絡繹來朝，臣之所言保無可慮。但恐萬世之後，紀綱漸弛，或有不振之弊，追究源由築城之策，始自殿下，安知不爲識者之寒心乎？”傳曰：“設堡爲藏軍器、陸物，非萬戶居處之所也。初以曹淑沂之言，遣左議政審要害處築之耳，非盡築諸浦也。”李克均啓曰：“睿宗朝，臣爲節度使於南方，巡審諸浦，不能常處船中，居于陸，倭寇若乘夜潛來，直抵浦所，則屠殺軍民無遺。今若築城，庶免此禍矣。”傳曰：“事已舉行，不可停也。後若有變，當別有處置矣。”

	<p>政)을 보내어 요해지를 살피서 쌓게 하였을 뿐이고, 모든 포(浦)에 다 쌓게 한 것은 아니다.”</p> <p>하였다.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p> <p>“예종(睿宗) 때에 신이 남방(南方)에 절도사(節度使)가 되어 여러 포소(浦所)를 순행하여서 살폈는데, 배 안에 늘 거처하지 못하고 육지에 거처하였습니다. 왜구가 밤을 타고 몰래 와서 곧바로 포소에 닿으면 군민(軍民)을 남김없이 죽일 것인데, 이제 성을 쌓으면 아마도 이 화(禍)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일이 이미 거행되었으니, 멈출 수 없다. 뒤에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0월 22일(계사)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이제 보건대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연분(年分)의 등급을 매긴 것을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또 등급을 올렸다. 올해에는 곡식이 조금 잘된 듯하기는 하나,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서 민간에 빚을 진 것이 반드시 매우 많을 것이므로 장차 거두어 들인 것을 다하여 갚을 것이니, 나는 관찰사가 매긴 등급에 따라 백성에게 1푼(分)을 늦추어 주려 하는데, 승지(承旨)들의 뜻에는 어떠한가?”</p> <p>하니, 도승지(都承旨) 박송질(朴崇質)이 아뢰기를,</p> <p>“하등은 올릴 수 없겠으나, 하중(下中)과 하상(下上)은 각각 1등급을 올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좌승지(左承旨) 윤은로(尹殷老)·좌부승지(左副承旨) 안처량(安處良)·우부승지(右副承旨) 변처량(邊處良)·동부승지(同副承旨) 송영(宋瑛)이 아뢰기를,</p> <p>“감사(監司)가 매긴 등급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癸巳/傳于承政院曰：“今觀忠淸道觀察使年分等第，議政府、六曹又加等焉。今年雖若小稔，然去年凶荒，民間負債必甚多，將罄所收而償之。予欲依觀察使等第，寬民一分，於承旨等意何如？”都承旨朴崇質啓曰：“下等不可加也，下中、下上各加一等何如？”左承旨尹殷老、左副承旨安處良、右副承旨邊處良、同副承旨宋瑛啓曰：“當依監司等第。”右承旨李世佑啓曰：“若每年各加等，則忠淸道獨無下等矣。請勿加等，并減此道各官年例貢物之不足者。”傳于戶曹曰：“忠淸道</p>



	<p>하고, 우승지(右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해마다 각각 등급을 올린다면 충청도에만 하등이 없어질 것이니, 등급을 올리지 말고 이 도의 각 고을에서 연례(年例)로 바치는 공물(貢物) 중에서 모자라는 것도 아울러 줄여 주소서.”  하자,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충청도에서 연례로 각사(各司)에 바치는 것 중에서 줄일 만한 공물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年例各司納，可減貢物，其議啓。”</p>
<p>성종 196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0월 25  일(병신) 1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손(金首孫)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백익(伯益)이 대순(大舜)에게 경계하기를, ‘걱정이 없을 때에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마소서.’ 하였고,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고하기를, ‘탐락(耽樂)할 겨를이 없도록 하소서. 크게 스스로 덕(德)을 삼가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그 때에는 우(虞)나라의 온갖 일이 때 맞추어 차례로 행하여졌고, 주(周)나라의 온 백성이 모두 화락하였으니, 어찌 성왕(成王)이 탐락하는 임금이며 대순(大舜)이 법도를 잃는 임금이었겠습니까? 그 경계를 고한 것이 이러하였던 까닭은, 참으로 우리 임금을 성군(聖君)으로 여기되 경계가 되는 유익한 말을 올리지 않는 것은 신하로서 예방하는 의리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바야흐로 우리나라·주나라처럼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여 태평하고 화락한 정치에 이르고자 하시니, 신들이 백익·주공의 충성에는 미치지 못하나, 임금을 도리에 맞게 인도하려는 마음은 참으로 옛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가에 말한 만한 일이 많고 신들은 말할 만한 지위에 있는데, 감히 진심을 털어놓아 현재의 폐단을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삼가 신들의 귀와 눈이 보고 들은 것을 다음에 조목별로 아뢰입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후세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벼슬을 잘 맡기기로는 요(堯)·순(舜)만한 이가 없었다.’ 하나, 요·순이 스스로 사람을 거용(舉用)하지는</p>	<p>○丙申/司諫院大司諫金首孫等上疏曰：  伯益戒大舜曰：“儆戒無虞，罔失法度。”周公告成王曰：“無皇曰耽樂，皇自敬德。”當是時也，虞朝之百揆時敘，周家之萬民咸和，則豈成王爲耽樂之主，大舜爲失法度之君耶？其所以告戒乃如此者，誠以吾君爲聖而不進藥石之言，非人臣預防之義也。今主上殿下，方以虞、周自期，而欲臻泰和雍熙之治焉，臣等雖不及伯益、周公之忠，其引君當道之心，則固無讓於古人矣。況今國家多可言之事，而臣等居可言之地，敢不披肝瀝膽以救當時之弊乎？謹以臣等耳目之所覩，紀條陳于左。臣等伏聞後世言能官人者，莫如堯、舜。然堯、舜不能自舉人也，疇咨四岳而後</p>

못하였으니, 사악(四岳)에게 널리 물어 구하고서야 등용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고요(皋陶)가 형(刑)을 맡고 백이(伯夷)가 예(禮)를 맡고 백우(伯禹)가 사공(司空)이 되었으며, 익(益)·직(稷)·기(夔)·설(契)의 무리가 여러 지위에 벌여 있었는데, 누구나 다 남의 천거에 말미암아서야 등용되었습니다. 신들은 오늘날 보거(保舉)17653 하는 법이 능히 당(唐)·우(虞) 때에 현능(賢能)한 자에게 추양(推讓)하던 것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지금 보거하는 자는 오래 사귄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한 동네 사람이고, 한 동네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혼인한 집안입니다. 저 오래 사귄 사람이나 한 동네 사람이나 혼인한 집안이 다 선인(善人)이라면 참으로 마땅하겠으나, 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이니, 나라를 위하여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지금 3품 이상이 된 자의 수가 많은데, 어찌 다 어질겠습니까? 하나라도 어질지 못한 자가 있다면 자신도 남에게 의논의 대상이 될 것인데, 어떻게 남의 현부(賢否)를 의논하겠습니까? 선왕(先王)께서 이러한 것을 아셨으므로, 그 천거한 사람이 만약에 장오(贓汚)나 강상(綱常)을 무너뜨리는 일을 범하면 그 죄로 죄주셨으니, 그 어진 사람을 진용(進用)하고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치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오를 범하거나 강상을 무너뜨리는 자가 매우 많은데, 죄가 거주(舉主)에게 미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법을 세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 천거한 자는 죄준다는 법을 거듭 밝혀서 하나를 벌하여 백을 경계하도록 신들은 삼가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장차 천거되는 사람이 다 어질 것이고 변변치 못한 자는 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지극히 잘 다스리기로는 요·순만한 이가 없다고 말하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 고요·기·직·설과 같이 되지 못하고 또한 공공(共工)·환도(驩兜) 같은 자가 있었으므로, 유명(幽明)17654 을 내치고 승진시키는 법은 당·우 때에도 폐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은 오늘날 전최(殿最)17655

用之。 時則有皋陶典刑， 伯夷典禮， 伯禹作司空， 以至益、稷夔、契之徒， 列于庶位， 何莫非因人之薦而後見用也？ 臣等未審今日保舉之法， 其能如唐、虞之推賢讓能乎？ 臣等伏觀今之保舉者， 非故舊人也， 則必同里閭人也， 非同里閭人也， 則亦必婚姻之家也。 彼故舊也， 同里閭也， 婚姻之家也， 如皆善人焉則固當矣， 如非賢也， 妨政害治莫此爲甚。 其爲國薦賢之義安在哉？ 且今之爲三品以上者， 其麗多矣， 豈皆賢哉？ 一有不賢者在焉， 則身且見議於人矣， 安能議人之賢否乎？ 先王知其如是也， 故其所舉之人， 若犯贓汚敗常之事， 以其罪罪之， 其進賢退不肖之義至矣。 然今之犯贓敗常者甚多， 而未聞罪及舉主， 立法之意安在？ 臣等伏願申明謬舉抵罪之法， 以一警百， 則將見所舉者皆賢， 而不肖者不得與矣。 臣等伏聞言至治者， 莫如堯、舜。 然當其時也， 不能人皆爲皋、夔、稷、契， 而亦有共工、驩兜， 黜陟幽明之法， 雖唐、虞亦不能廢也。 臣等未審， 今日殿最之法， 其能如唐、虞之至公無私乎？ 臣等觀今殿最， 不論賢否， 只觀

하는 법이 능히 당·우 때의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던 것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보건대, 지금의 전최는 어질건 어질지 못하건 논하지 않고 다만 그 형세를 보아 높이고 낮추니,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공평하고 정대한 사람을 얻어 전최하는 직임을 맡겨, 하등을 차지한 자들은 그 이름 아래에 하등을 매길 만하였던 죄를 상세히 주기(註記)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하등을 차지한 자가 다 그 죄에 승복하고 손이 가는 대로 낮추거나 높이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군직(軍職)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그 녹(祿)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여러 해가 되어도 늘 하품(下品)에 있는 자가 있기도 하고 1년이 못되어 높은 벼슬에 뛰어 오르는 자가 있기도 하니, 이는 어찌하여 높이고 낮추는 것이 절도가 없고 위아래가 마땅함에 어그러지는 것입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국가에서 내응사(內鷹師)17656)에게 사일(仕日)을 주는 것이 외응사(外鷹師)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외응사는 3번(番)으로 나누어 사일이 3백 27에 차면 품계를 올리나, 내응사는 장번(長番)17657) 하여 사일이 4백 36에 차야지만 품계를 올리므로, 외응사가 한 품계를 오르는 기간에 비하면 내응사는 이미 두 품계를 오른다 합니다. 이는 어찌하여 같은 응사인데 그 사일을 주는 것이 이렇게 같지 않은 것입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내응방(內鷹坊)·외응방(外鷹坊)을 다 둘 필요가 없으므로 내응방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국가에서 유향소(留鄉所)17658) 를 둔 것은 향리(鄉里)의 풍속을 살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향리의 불효하고 부제(不悌)한 자를 유향소에서 살필 수 있고, 향리의 불睦(不睦)하고 불인(不姻)17659) 한 자를 유향소에서 바로잡을 수 있고, 간사한 꾀를 부려서 수령(守令)을 우롱하는 자는 제재할 수 있고, 관위(官威)를 빌어 백성을 침노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풍속(風俗)과 교화(教化)에 관계되는 것이 큰데, 요즈음 한

其勢，爲之高下，是豈可乎？伏願得公平正大之人，以寄殿最之任。凡居殿最者，逐其名下，詳註可殿之罪，則居殿者咸服其辜，而無隨手低昂之弊矣。軍職陞降，所以均其祿也，今也或有累年而恒居下品者，或有未一年而超陞高秩者，是何陞降之無節、上下之乖宜乎？臣等伏聞國家之給內鷹師仕也，與外鷹師不同。外鷹師則分三番而仕滿三百二十七而加階，內鷹師長番而仕滿四百三十六而加階。比外鷹師一階之期，則內鷹師已加二階矣。是何同一鷹師而其給仕若是其不同耶？臣等以謂內外鷹坊，不必皆設，內鷹坊革之可也。臣等伏聞國家之設留鄉所，所以糾正鄉里之風俗也。鄉里之不孝不悌者，留鄉所可以糾之；鄉里之不睦不姻者，留鄉所可以繩之；騁奸謀而愚弄守令者，則可以制之；假官威而侵漁百姓者，則可以懲之。其有關風教大矣！近者因一二人作弊而革之，臣恐鄉里之風俗，由是大毀。或曰：“風俗污隆、係於守令之賢否，留鄉所不必設也。”是大不然。我國郡縣之多，不知其幾也，則安能盡得如龔、黃、卓、魯者

두 사람이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지하였으니, 신들은 향리의 풍속이 이로 말미암아 크게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풍속이 쇠퇴하고 융성하여지는 것은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관계되므로, 유향소(留鄉所)는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 하나, 이는 크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고을이 많아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 어떻게 모두 공수(龔遂)·황패(黃霸)·탁무(卓茂)·노공(魯恭) 같은 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행히 한 어진 수령(守令)을 얻더라도 서로 교체되는 것이 마치 여관의 과객(過客)과 같으니, 어찌 성취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불행히 어질지 못한 수령을 얻으면 반드시 폐해를 끼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인데, 더구나 풍속을 바꾸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열 집이 있는 마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는데, 한 고을 안에 어찌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가 없겠습니까? 신들은 삼가 바라건대, 경재소(京在所)17660) 로 하여금 고을 안에서 근후(謹厚)하고 공정(公正)한 자를 가려 유향소의 직임을 맡기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침해하는 자가 있거든 경재소로 옮겨 사헌부(司憲府)에 전보(轉報)하여서 추핵(推劾)하여 죄주게 하며, 만약 여전히 폐단을 일으키는 유향소의 임원(任員)이 있거든 또한 경재소로 하여금 규핵(糾劾)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향리의 풍속을 거의 바꿀 수 있을 것이니, 어찌 풍속과 교화를 유지하는 데 한 가지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왕자(王子)·왕녀(王女)가 여염에 피우(避寓)하면 매우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종(侍從)하는 자에는 도류(道流)가 있고 의원(醫員)이 있고 환관(宦官)·별감(別監)이 있는데 이들은 밖에서 시종하는 자들이며, 아보(阿保)17661) 가 있고 시비(侍婢)가 있는데 이들은 안에서 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팎에서 시종하는 자들이 다 주인으로 삼은 집에서 먹으니, 그 집에서 분주하여 공궤(供饋)하기에 겨를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 세 때의 공궤가 있고 또 때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술을 사고 포(脯)를 사서

乎? 幸而得一賢守令, 其相代也如逆旅過客, 則其能望其有成乎? 不幸而得不賢守令也, 則必將貽弊之不暇, 況望其移風易俗乎? 夫十室之邑, 必有忠信, 則一鄉之中, 豈無一鄉之善士乎? 臣等伏望令京在所擇鄉中之謹厚公正者, 以寄留鄉所之任, 如有敗壞風俗、侵漁百姓者, 移諸京在所, 轉報憲府, 推劾科罪。 脫有留鄉員作弊如前者, 亦令京在所糾劾, 則鄉風庶可變矣, 豈非維持風教之一助乎? 臣等伏聞王子、王女之避寓閭閻, 甚有弊焉。 其侍從者, 有道流焉, 有醫員焉, 有宦官別監焉, 是侍從於外者也; 有阿保焉, 有侍婢焉, 是侍從於內者也。 其內外侍從者, 皆食於所主之家, 則其家奔走供饋不暇, 一日之內, 有三時之供, 又有不時之需焉, 必沽酒市脯以待之。 今日如是, 明日如是, 又明日如是, 又轉而之他, 則其家奉之亦猶是也。 在臣子爲上之心, 雖曰費萬錢, 何憚之? 若貧窮者, 則雖罄竭所有不能支, 其弊不貲矣。 臣等伏觀近年以來, 水旱連年, 飢饉相仍, 賑窮調乏, 倉儲垂竭。 民間負債, 不可不徵也, 然殿下慮其侵擾

대접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러하고 내일 이러하고 이튿날도 이러한데, 또 옮겨서 다른 데로 가면 그 집에서 받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만전(萬錢)을 쓴다 하더라도 어찌 꺼리겠습니까마는, 가난한 자라면 가진 것을 다 없애더라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근년 이래로 수재(水災)·한재(旱災)가 해마다 잇달아서 기근이 계속되어, 궁핍함을 구휼(救恤)하느라 창고의 저축이 다하여 가므로 민간의 부채(負債)를 거두어 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백성을 침해하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여러 도(道)에 일러 지난해와 올해의 빚만을 거두어 들이게 하셨으니, 곤궁한 자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어지심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수령이 성상의 어지심을 본받지 않고 오로지 매우 각박하게 하는 데에만 힘써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물론하고 받드시 거두어 들이려 하여 논밭과 집을 다 팔게까지 된 뒤에야 그만두니, 어찌 백성이 달아나고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에 다시 일러 백성의 부채를 거두어 들일 만한 자는 거두어 들이고 거두어 들일 만하지 못한 자는 늦추어서 민생을 돌보게 하소서.

국가에서 급보(給保)17662) 하는 법은 군사를 우대(優待)하기 위한 것이나, 그 침해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부리고 재물을 외람되게 받은 자는 모두 죄주게 하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사가 된 자는 오로지 침학하기를 서로 숭상하여 방자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남의 보인(保人)이 되는데, 아들 10명이 있다면 그 한 아들은 갑(甲)의 보인이 되고 한 아들은 을(乙)의 보인이 되어 일여덟 아들이 또한 각각 일여덟 사람의 보인이 됩니다. 저들이 한 사람의 보인이 되더라도 그 고생이 많아서 제 생업(生業)에 안정할 수 없는데, 먼저 말한 것과 같다면 한 집안의 11명이 11명의 보인이 되는 자는 장차 어떻게 감당하

百姓，特諭諸道，止徵往今年債，其子惠困窮之仁至矣！然守令不體聖上之仁，專以深刻爲務，不問貧富，而期於必徵，至於盡買田宅而後已焉，奈之何民不逃且散也？臣等伏願殿下，更諭諸道，民之負債可以徵者徵之，不可徵者寬之，以恤民生。國家給保之法，所以優待軍士也。然慮其侵暴也，故其違法役事、濫受財物者，竝令抵罪之法，載在令典。然今之爲軍士者，專以侵陵相尚，縱恣無忌。設有人焉，其爲人也爲人之保而有子十人焉，則其一子爲甲者之保，其一子爲乙者之保，其七八子亦各有七八人之保矣。彼雖爲一人保者，其艱苦萬端而無以安其業，如向所云，則一家之內十一人爲十一人保者，將何以當之？臣等伏願使爲人之保者同居一子，毋定他役，如無子也，則同居一丁毋定他役，以安其生可也。臣等伏聞後世言大舜之德者，必曰‘舍己從人’；成湯之德者，必曰‘從諫弗拂。’舜大聖人也，湯亦大聖人也，當時之臣，孰有賢於舜、湯者乎？然而其從人也如是，其弗拂也如是者，誠以萬機至煩，萬民至衆，非一人

	<p>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바라건대, 남의 보인이 되는 자는 한 아들과 함께 살게 하여 다른 신역(身役)을 정하지 말고, 아들이 없으면 한 장정과 함께 살게 하여 다른 신역을 정하지 말아서 생업에 안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신들이 삼가 듣건대, 후세에서 대순(大舜)의 덕(德)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것이라 하고, 성탕(成湯)의 덕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간언(諫言)을 따르고 어기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순임금은 큰 성인이고 탕임금도 큰 성인이니, 당시의 신하로서 누가 순임금·탕임금보다 어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남을 따르는 것이 이러하고 그 거절하지 않는 것이 이러하였던 것은, 참으로 만기(萬機)가 지극히 번거롭고 만민(萬民)이 지극히 많아서 한 사람이 통틀어 살피고 아울러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목마르듯이 직언(直言)을 구하고 물흐르듯이 간언(諫言)을 따라 한 가지 일의 잘못이나 한 가지 정사의 잘못도 모두 다 듣고서 고치셨으니, 남을 따른 순임금과 어기지 않은 탕임금과 함께 도리를 같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간언을 따르는 훌륭한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으시니, 이것이 어찌 마지막까지 처음처럼 삼가는 도리이겠습니까? 요즈음 신들이 유자광(柳子光)·윤탕로(尹湯老)의 죄를 다스리는 일로 천총(天聰)을 우러러 번거롭게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사리를 살피지 않고 직무를 버려두었다는 비평만을 면하려 한다.’ 하셨습니다. 신들이 모두 변변치 못한 몸으로 언관(言官)에 대죄(待罪)하면서 하나라도 좋은 계책을 올려서 곤직(袞職)17663) 을 돕지 못하였으므로 신들에게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이 말씀은 뒷날에 간쟁(諫諍)할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p>	<p>所能遍察而兼聽之也。 殿下即位以來，求言如渴，從諫如流，一事之誤、一政之失，莫不聞而改之，其與從人之舜、弗拂之湯，同一揆耳。 近年從諫之美，漸不如初，豈慎終如始之道乎？ 近者臣等將子光、湯老治罪事，仰瀆天聰，而敎曰：“不審事理而欲免曠職。” 臣等俱以無狀，待罪言官，不能獻一嘉猷以補袞職，臣等實有罪焉然殿下此言，無乃杜 後日諫諍之門乎？</p> <p>上嘉納之。</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1월 1</p>	<p>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세적(金世勳)이 사직장(辭職狀)을 올리고 적성(積城)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봉양하기를 청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김세적은 나이 젊고 무재(武才)가 있으니 허락할 수 없다. 철 따라 가서 문</p>	<p>○朔壬寅/同知中樞府事金世勳上狀辭職，請歸養其親于積城。 傳于承政院曰：“世勳年少有武才，不可許。 時使</p>

<p>일(임인) 1번째기사</p>	<p>안하게 하고,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하여금 그 어버이에게 음식물을 계속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세적이 비록 무재는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간(器幹)17666) 이 없고 또 조행(操行)17667) 이 없었다. 그러나 은권(恩眷)17668) 이 매우 높아서 영광이 그 어버이에게 미쳤다.” 하였다.</p>	<p>往見，令京畿觀察使續致其親食物。”</p> <p>【史臣曰：“世勳雖武才卓越，而無器幹，又欠操行。然恩眷甚隆，榮及其親。”】</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2 일(계묘)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신종호(申從濩)·박원종(朴元宗)·윤탕로(尹湯老) 등의 경연(慶宴)에 모두 악(樂) 3등을 내려주고, 또 신종호에게는 술을 내려 주라.” 하였다.</p>	<p>○傳曰：“申從濩、朴元宗、尹湯老等慶宴，皆賜樂三等，又賜從濩酒。”</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4 일(을사) 1번째기사</p>	<p>명하여 세자(世子)의 사부(師傅)·빈객(賓客)·서연관(書筵官) 및 서연(書筵)에 입참(入參)한 대간(臺諫)을 선정전(宣政殿)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세자가 술잔을 잡고 한 순배 권하고 내전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또 승지(承旨)들에게 입참(入參)하기를 명하였다. 빈객(賓客) 이상에게는 호피(虎皮) 각 한 장을, 서연관과 대간에게는 대록비(大鹿皮) 각 한 장을 하사하였다.</p>	<p>○乙巳/命饋世子師傅、賓客、書筵官及書筵入參臺諫于宣政殿庭。世子執爵侑一巡，還內。上命中官饋之，又命承旨等入參。賜賓客以上虎皮各一張，書筵官、臺諫大鹿皮一張。</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5 일(병오) 1번째기사</p>	<p>2품 이상의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등을 인양전(仁陽殿)에서 잔치하고, 또 술과 풍악을 승정원(承政院)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에게 내려 주었다.</p>	<p>○丙午/宴二品以上宗親、儀賓等于仁陽殿。又賜酒樂于承政院與入直諸將。</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6 일(정미) 2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채수(蔡壽)가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엿드려 듣건대, 본도의 금년 연분(年分)17675) 을 육조(六曹)와 의정부(議政府)가 같이 의논하여 본도는 전라도와 연품(年品)은 서로 같은데 등급이 각각 다르다고 하여 등(等)마다 등급을 올렸다고 하니, 신이 비록 무상(無狀)하더라도 어찌 국고가 비었고 경비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 감히 나라를 여위게 하고 백성을 살찌우기 위하여 지나치게 가볍도록 하려고 하겠습니까? 신이</p>	<p>○前此，忠淸道觀察使蔡壽馳啓曰：“臣伏聞本道今年年分，六曹、議政府同議以爲，本道與全羅道年品相同而等第各異，每等加等。臣雖無狀，豈不知國庫之空竭、經費之不足，而敢欲瘠國肥民，過爲輕歇乎？臣巡視諸邑，今年</p>

여러 고을을 순시하니, 금년은 비록 조금 농사가 잘 되었다고는 하나 본도는 전라도와 지력(地力)17676) 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벼의 성장을 보면 서로 비슷한 듯하더라도 추수함에 미처서는 많고 적음이 판이합니다. 또 다른 도는 지난해에 종자가 모두 넉넉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땅이 없었으므로 수확도 많아서 공사(公私)의 쓰임에 여유가 있으나, 본도는 지난해 흉년이 심해서 종자가 부족하여 14만 석(碩)의 기름진 땅이 태반이나 목혀 두었기 때문에 수확도 적은데, 민간에서는 잇달아 흉년을 만나 집집마다 모두 공·사채(公私債)를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해 먹은 곡식이 많은 이는 백여 석에 이르고 적은 이도 수십 석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여 다 징수하고 또 세(稅)를 중하게 매겨서 거두려고 하면 백성이 장차 먹을 것이 없어 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육조와 의정부에서는 각 도에 풍년이 든 것만 범연히 듣고 또 국가의 경비를 생각하여 등(等)을 더하기를 계청(啓請)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신이 고을을 둘러보고 그 경중을 참작하여 등급을 정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지 어찌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無狀)하더라도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야 어찌 조정에 있는 신하보다 못하겠습니까? 다만 굶주리고 쇠잔한 백성이 다행히 풍년을 만났으나 또 혜택을 입지 못할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었는데, 호조(戶曹)에서 거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는 금년 농사가 다른 도와 같은데, 다만 등급이 너무 험하여 그 수세(收稅)가 군수(軍需)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관사(官司)의 항공(恒貢)17677) 에도 부족하니, 채수의 아된 바를 거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鄭昌孫) 등은 모두 말하기를,

“금년은 근년에 비하여 조금 곡식이 잘 되었습니다. 다른 도에는 중등(中等)

雖稍稔，然本道與全羅道地力不侔，故視其禾稼，雖若相似，及其秋收，多寡頓異。且他道則去年種子皆足，無田不耕，故所收亦多，於公私之用，有餘裕矣。本道去歲荒甚，種子不足，十四萬碩沃饒之田，大半陳荒，故所收亦小。而民間連遭凶險，家家皆仰公私債，積年所食，多者百餘碩，小不下數十碩。今年以小稔，欲盡徵之，而又重稅以斂，則民將竭澤，無有生理矣。六曹、政府則泛聞各道豐稔，又慮國家經費，啓請加等。古人云：‘百聞不如一見。’臣歷觀郡邑，酌其輕重而等第之，實欲便民利國，豈至於輕歛也？臣雖無狀，憂國之心，豈下於在朝之臣？但恐飢殘之民，幸遇豐斂而又不蒙其澤也。”

戶曹據此啓：忠淸道今年農事，與他道同，而獨等第太歛，其收稅非惟不足於軍需，至於諸司恒貢亦不足，蔡壽所啓，請勿舉行。”

命議于大臣。鄭昌孫等皆以爲：“今年比近年稍稔，他道則有中等之分，亦多有下上之分，而忠淸道只有下上之分，而其數亦不多，類皆下下，比他道太輕。故加一等，欲使得中耳，非重斂以病民也。”



	<p>의 분(分)이 있고 또 하상(下上)의 분도 있으나, 충청도는 단지 하상(下上)의 분만 있는데다가 그 수(數)도 많지 아니하고 거의 모두 하하(下下)이나, 다른 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한 등을 더하여 알맞게 하려고 하였을 뿐, 중하게 거두어서 백성을 병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호조의 아뢰 바에 의하소서.”</p> <p>하였으나, 다만 심회(沈澮)는 말하기를,  “지난해 하삼도(下三道)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다만 관가의 저축에 의지하여 살았는데, 이제 어찌 한 해의 약간의 풍년으로 문득 등급을 더하여 백성에게 중하게 거두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하면 국가의 이로움이 아닙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니, 의정부와 육조의 멀리서 헤아리는 것이 어찌 관찰사의 친히 살핀 것과 같겠습니까? 청컨대 관찰사의 계청한 바에 따르소서.”</p> <p>하였는데,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請依戶曹所啓。” 獨沈澮以爲：“去年下三道凶歉，民間專仰官儲以生，今豈可以一年稍稔，而輒加等以重斂於民乎？百姓不足，非國家之利也。百聞不如一見，政府、六曹之遙度，豈如觀察使親審也？請從觀察使所啓。” 從昌孫等議。</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9일(경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  “신이 요즈음 경상도(慶尙道)에서 돌아왔는데, 금년 농사를 보니 제대로 여물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해 쌓인 공채(公債)를 일체 모두 거두면 백성들이 비록 있는 것을 다 처분하더라도 다 바치지 못할 것이며, 명년 봄에는 백성이 반드시 굶주려서 지난해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래 된 공채는 징수하지 말도록 하소서. 또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흉년을 구제할 정책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국가에서도 마땅히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p> <p>하므로,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대답하기를,  “경상도의 물가에 위치한 여러 고을은 모두 수재(水災)를 입어서 농사가 과연 여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곡[還上穀]은 본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御經筵。 講訖，侍講官鄭誠謹啓曰：“臣近日還自慶尙道， 觀今年農事不實。 若積年公債一皆徵斂， 百姓雖罄所有， 未盡輸納， 明春民必飢饉， 無異於前年矣， 願勿徵久遠公債。 又令守令預備荒政， 國家亦宜省冗費也。” 上問左右， 領事沈澮對曰：“慶尙道水邊諸邑皆被水災， 農事果不實。 然還上本爲救民， 不可不徵也。” 上曰：“然。” 同知事金宗直啓曰：“聞百姓前年飢甚， 皆云：‘非還上， 無以得生。’ 故今年皆盡心納官。 但戶曹請加忠清</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듣건대 백성이 지난해에 굶주림이 심하여 모두들, ‘환자곡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두 마음을 다해 관(官)에 바쳤습니다. 다만 호조(戶曹)에서 충청도(忠淸道) 전세(田稅)를 더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채수(蔡壽)는 눈으로 보고 등급을 정하였는데, 호조에서는 여기에 있으면서 어찌 본도(本道)의 풍년과 흉년을 알겠습니까?” 하고, 헌납(獻納) 김호(金浩)는 아뢰기를,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백성에게 일분(一分)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일분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세를 더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호조에서 세를 더하기를 청한 것은 아랫 백성의 재물을 덜어서 위에 보태기 위함이 아니라 경비가 부족함으로써 부득이해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김종직이 아뢰기를, “충청도에 어찌 풍년든 땅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관찰사가 정한 등급의 높은 것을 상고하여 세를 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마땅히 해당 조(曹)에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정성근이 또 아뢰기를, “신이 서울에 이르러 듣건대, 유생(儒生)들이 글을 올려서 별시(別試)17684)를 행하기를 청한다고 하니, 옛사람은 학업을 닦아 값을 기다릴 뿐인데 어찌 이처럼 스스로 팔리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초시(初試) 같은 것은 바로 출신(出身)하는 곳이므로 오히려 가하거니와, 자급(資級)을 바라서 무과 중시</p>	<p>道稅，此甚不可。 蔡壽目觀而等第之，戶曹在此安知本道之豐凶乎?” 獻納金浩啓曰：“先儒云：‘寬民一分，則民受一分之賜。’ 請勿加賦。” 上曰：“戶曹加賦之請，非爲損下而益上，以經費不足，出於不得已而然也。” 宗直曰：“忠淸道豈無豐稔之地? 請考觀察使等第之高者，加賦爲便。 上曰：“當問於該曹處之。” 誠謹又啓曰：“臣到京聞儒生等上書請行別試。 古人修業待價耳，豈可自銜如是乎? 如初試則乃出身之地，猶之可也，有希望資級請入武科重試者，士風之毀，莫甚於此。 請罪此輩，以正士習。” 宗直曰：“士習之毀，無如此時。 中武科初試者，欲赴重試，是希望資級爲僥倖之計也。” 上曰：“重試自祖宗朝有之，若罪請赴者，是設法以陷人也。” 誠謹曰：“臣觀南方防戍疎虞，萬戶長處於陸，不在船上。 臣恐倭變起於倉卒，莫敢支梧。” 上曰：“倭人等近以回奉未滿其意，有怨懟之言。 且對馬島主言：‘待我漸不如舊。’ 慮恐以此生釁。 萬戶恃其昇平，必不謹防戍，遣人糾摘可也。” 沈澹曰：“萬戶則不可盡擇而任之，須擇人</p>
--	--	---

(武科重試)에 들어가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니, 사풍(土風)의 허물어짐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 무리를 죄로 다스려서 선비의 풍습을 바로 잡으소서.”

하고, 김종직이 아뢰기를,  
 “사풍(土風)의 허물어짐이 지금 같음이 없습니다. 무과 초시(武科初試)에 합격한 자가 중시(重試)에 나가려고 하니, 이는 자급(資級)을 바라는 요행(僥倖)의 계책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시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있는 것인데, 만약 시험에 나오기를 청하는 자에게 죄를 주면 이는 법을 마련하여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정성근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남쪽 지방의 방수(防戍)가 허술합니다. 만호(萬戶)는 늘 육지에 있고 배 위에 있지 아니하니, 신은 두렵건대, 왜변(倭變)이 창졸간에 일어나면 감히 지탱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왜인(倭人)이 요즘 회봉(回奉)17685 이 그 뜻에 차지 못하여 원망하는 말이 있고, 또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말하기를, ‘우리를 대접하기를 점점 예전과 같지 않게 한다.’고 하니, 이로써 틈이 생길까 염려스러운데, 만호가 승평(昇平)17686 을 믿고 방수를 반드시 삼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심희가 아뢰기를,  
 “만호는 모두 다 골라서 임명할 수는 없으나, 모름지기 사람을 골라서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삼아 검찰(檢察)하게 하면, 방어가 저절로 허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以爲水軍節度使，使之檢察，則防禦自不疎虞矣。” 誠謹曰：“近者倭入彌助項木柵，射傷水軍。 臣恐此柵孤單，賊變不絕也。” 特進官金自貞曰：“臣曾爲觀察使，親往審之。 南海拒彌助項幾六十里，倭寇猝入，則無以及救。 且當賊路要衝，又無藏船之處，不宜設柵以戍。 且沿海諸鎮戍軍尙猶不足，新設此柵，用何軍戍之？” 卽傳于承政院曰：“洪政丞親審此地， 備知便否，其問以啓。”

	<p>하고, 정성근이 말하기를,  “요즈음 왜인이 미조항(彌助項) 목책(木柵)에 들어와서 수군(水軍)을 쏘아 상하게 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그 목책이 고단(孤單)하여 적변(賊變)이 끊어지지 아니할까 염려스럽습니다.”</p> <p>하고, 특진관(特進官) 김자정(金自貞)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관찰사가 되어 친히 가서 살펴보니, 남해(南海)에서 미조항까지 거리가 거의 60리인데 왜구(倭寇)가 갑자기 들어오면 미처 구(救)할 수 없으며, 또 적로(賊路)의 요충(要衝)17687)에 당하였고, 또 배를 간직할 곳이 없으므로,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방수(防戍)할 수 없습니다. 또 바다 연변 여러 진(鎭)의 방수(防戍)하는 군사도 오히려 부족한데, 이 목책을 새로이 설치하여 어떤 군사를 써서 지키겠습니까?”</p> <p>하니, 곧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홍 정승(洪政丞)17688)이 친히 이 땅을 살펴서 적당한 여부를 갖추어 알고 있으니, 그에게 물어서 아뢰라.”</p> <p>하였다.</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10일(신해)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講)하다가 후당 명종기(後唐明宗紀)에, 풍도(馮道)가 말하기를, ‘신(臣)이 중산(中山)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갈 적에 정경(井陘)의 험한 곳을 지나면서 신은 말이 넘어질 것을 근심하여 고삐를 잡고 매우 조심하였더니, 실수가 없었는데, 평지에 이르러서는 고삐를 놓고 스스로 방심하였더니, 갑자기 넘어지는데 이르렀습니다.’ 한 데에 이르러,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이 말은 지극히 적당한 이론입니다. 나라가 비록 이미 다스려졌다고 하더라도 조금 자만(自滿)한 마음이 있으면 다스리는 도(道)가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p> <p>하였다. 또 임금이 풍도에게 이르기를, ‘금년에 민간의 생활이 넉넉한가?’ 하</p>	

니, 풍도가 말하기를,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려서 죽고 풍년이 들면 곡식 값이 천하여 고통입니다. 신이 일찍이 진사(進士) 섭이중(聶夷中)의 시(詩)를 기억하는데, 거기에, 「2월에는 신사(新絲)를 선매(先賣)하고, 5월에는 신곡(新穀)을 선매한다. 눈앞에 증기는 치료했으나, 마음 속의 살을 깎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 데에 이르러, 홍응이 또 아뢰기를,

“농민(農民)은 흉년에는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풍년에는 거두는 세(稅)와 빚 징수에 곤궁하여 풍년이나 흉년이나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충청도(忠淸道)의 연분(年分) 등급을 재상들이 모두 더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떠한가?”

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叟)이 아뢰기를,

“관찰사(觀察使)는 이미 일도(一道)를 위임받았는데 어찌 국가의 큰 일을 생각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마땅히 아뢴 바에 따를 것이지 등급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대사간(大司諫) 김수손(金首孫)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서 금년에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곡식을 저축한 자가 적을 것인데, 이제 만약 등급을 더하면 1결(結)에 쌀 두 말을 더 거두게 되니, 만약 준비할 수 없으면 역시 유리(流離)17689) 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이 아뢰기를,

“그 말은 잘못입니다. 1결의 땅은 한 사람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백성이 바치는 것은 두어 되[升]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어찌 유리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풍년인데, 저축하지 아니하였다가 만일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백성을 구제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p>“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가 많은데, 어찌 반드시 등급을 더 올리겠는가?”</p> <p>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p> <p>“경상도(慶尙道)의 연해(沿海) 고을은 수재(水災)를 많이 만나서 흉년이 가장 심하여 백성이 장차 굶주릴 것인데, 조정에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풍년 든 고을과 같이 보고서 여러 해 쌓인 묵은 빚을 모두 다 징수하니, 이미 바친 자는 그만이지마는 바치지 못한 자는 가난함이 심한 자이므로, 청컨대 징수하지 말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말이,</p> <p>“이제까지 바치지 못한 자는 대개 가난한 백성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간사한 백성이 면제하기를 꾀하여 바치지 아니한 자도 많이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김수손이 아뢰기를,</p> <p>“고을에서 독촉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이 살림을 팔아서 바칩니다.”</p> <p>하고, 이경동은 아뢰기를,</p> <p>“도둑이 심히 성(盛)하니, 이는 빈궁(貧窮)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컨대 너그럽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말이,</p> <p>“그렇다. 가난한 백성은 마땅히 징수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특진관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가 아뢰기를,</p> <p>“성안에 요귀(妖鬼)가 많습니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 능히 집안의 기물(器物)을 옮기고, 호조 좌랑(戶曹佐郎) 이두(李杜)의 집에도 여귀(女鬼)가 있어 매우 요사스럽습니다. 대낮에 모양을 나타내고 말을 하며 음식까지 먹는다고 하니, 청컨대 기양(祈禳)하게 하소서.”</p>	
--	--	--

	<p>하자, 임금의 좌우에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유문충(劉文忠)의 집에 쥐가 나와 절을 하고 서서 있었는데, 집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유문충에게 고하니, 유문충이 말하기를, ‘이는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다. 쌀을 퍼뜨려 주라.’고 하였고, 부영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마침내 집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저절로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정창손의 집에 괴이함이 있으므로 집 사람이 옮겨 피하기를 청하였으나, 정창손이 말하기를, ‘나는 늙었으니, 비록 죽을지라도 어찌 요귀로 인하여 피하겠느냐?’고 하였는데, 집에 마침내 재앙이 없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영이는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나 항상 궁중의 나무에서 우니, 무엇이 족히 괴이하겠는가? 물괴(物怪)는 오래 되면 저절로 없어진다.”</p> <p>하였다. 유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화포(火砲)로써 이를 물리치소서.”</p> <p>하니, 임금이 응하지 아니하였다.</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10일(신해) 4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 경연(經筵)에서 주상께서 대간(臺諫)의 말에 따라 특별히 세(稅)를 더 올리지 말도록 하셨으나, 신 등이 반복해 생각하건대, 세종조(世宗朝)에는 저축이 1백 만여 섬이었으나 지금은 50만 섬에 그치는데다가 비용이 반(半)이 넘으니, 만약 수재·한재의 근심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왜인(倭人)의 회봉(回奉)이 한 해에 50만 필(匹)에 밀돌지 아니하여 2년 수입이 1년 비용을 지탱하지 못하니, 신 등이 세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만일 모두 등급을 더할 수 없으면 풍년든 고을만 골라서 등급을 더하기를 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경비와 녹봉(祿俸)을 줄이기를 청합니다.”</p>	<p>○戶曹判書李德良等來啓曰: “今朝經筵, 上從臺諫之言, 特勿加賦。 臣等反覆思之, 世宗朝國儲百萬餘碩, 今則止五十萬碩, 費用過半, 脫有水旱之虞, 將何以支乎? 況倭人回奉, 歲不下五十萬匹, 二年所入不能支一歲之費。 臣等之欲加賦者, 以此也。 如不皆加等, 則請擇豐稔之邑而加等, 不然請減經費及祿俸。” 傳曰: “予悲民窮而不忍重斂, 故命勿加等。 卿等若欲加等,</p>

	<p>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백성의 곤궁함을 슬퍼하여 차마 중하게 거들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을 더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경들이 만약 등급을 더하고 싶거든 그 도의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 민효남(閔孝男)과 같이 의논하여 풍년든 고을을 골라서 더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則與其道災傷敬差官閔孝男同議，擇豐稔之邑而加之可也。”</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10일(신해) 5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리기를,  “금년에 약간의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 굶주리고 흉년든 여파로 백성들이 매우 곤궁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곡[還上]은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부득이 징수하는 것이다. 다만 징수해 받는 즘음에 호한(豪悍)17690) 한 무리를 피하기를 피하여 바치지 아니하고 빈약한 백성은 전택(田宅)과 재산을 모두 팔고 떠나기까지 하니, 이는 수령이 호한한 무리를 위엄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외롭고 불쌍한 백성만 병들게 한 때문이다. 경 등은 이 뜻을 자세히 살피서 항상 더 검찰(檢察)하도록 하고, 또 공·사채(公私債)를 모두 바친 뒤에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함이 있음을 생각하여 미리 구제할 준비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諸道觀察使曰：  今年雖稍稔， 往年飢荒之餘， 民甚窮困。 然還上所以備荒， 不得已徵之。 但徵納之際， 豪悍之徒， 規避不納， 貧殘之戶， 盡賣田宅財產， 以致流離， 良由守令不能威制豪悍， 而獨病癘獨而然也。 卿悉此意， 常加檢察。 且慮公私債畢輸後， 民不免有飢餓者， 預爲賑救之備， 使無失所。</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17일(무오) 1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차자(筵子)를 올려 아뢰기를,  “신 등이 엿드려 듣건대, 19일 경신일(庚申日)에 종친을 인양전(仁陽殿)에서 접견하시고 기생·공인(工人)17699) 이 입참(入參)한다고 하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조종조 고사(故事)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 들음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이는 떳떳하게 오래 행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궐내의 악(樂)을 내려 주는 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사정전 월랑(思政殿月廊)에 풍악을 내리기를 명하자, 그 때 의정(議政) 강맹경(姜孟卿)·권남(權擘) 등이, ‘천위(天威)17700) 의 지척에서 풍악을 벌이고 잔치를 받는 것</p>	<p>○戊午/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筵子曰：  臣等伏聞十九日庚申， 接見宗親于仁陽殿， 妓工人入參。 臣等以爲雖有祖宗故事， 然見聞不厭於人心， 則是非經常可久之道也。 闕內賜樂， 亦是異數， 在世祖朝命賜樂于思政殿月廊， 其時議政姜孟卿、權擘等， 以天威咫尺張樂受</p>



은 황공하여 감히 당치 아니하다.’는 것으로써 두세 번 굳이 사양하니, 세조(世祖)께서 진노(震怒)하여 꾸짖은 지 몇 날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저 두 신하는 어찌 세조의 특별한 은혜를 깊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굳이 사양하다가 꾸지람을 받아도 그치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가까운 곁에서 공경치 못한 혐의가 있음을 두려워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드디어 고사(故事)가 되어 하나의 내연(內宴)이 있으면 반드시 외정(外庭)에 풍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핑계할 만한 것은, 밝은 날에 여러 사람이 보고 모든 신하가 자리에 있을 적에는 엄숙하고 공경하여 진실로 음탕하고 설만(褻慢)한 태도가 없었습니다만, 만약 밤에 궁중 엄밀한 곳에서 잔치를 하고 여악(女樂)으로 술을 권한다면 아무리 친척을 친밀히 하는 의리가 돈독하더라도 절신(節宣)17701)을 적당히 하는 데에 어긋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어사(御史)가 법을 집행하는 규칙은 없고 은혜와 사랑을 믿는 조짐만 있게 될 것이니, 그 근원이 한 번 열리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신 등은 어리석고 의혹하여 그 옳은 것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듣건대 이날에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관(都總官)·제장(諸將)에게 풍악을 내리고 아래로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여러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잔치를 받게 된다고 하니, 이와 같으면 궐문(闕門) 안에 규칙상 따라야 할 신하가, 남녀가 어울려서 마냥 술을 마시게 될 것인데 어찌 술에 취해 실수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맑고 밝음을 지니신 몸으로 뜻과 기운이 신(神)과 같으시어 일찍이 술에 취거나 음악에 빠지는 실수가 없으시고, 다만 구족(九族)을 돈목(敦睦)하시는 마음으로써 은혜를 미루어 여러 신하에게 이르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폐단이 혹시 임금과 신하가 술에 취해 노래하면서 아침까지 그치지 않게 된다면 천재(千載) 후에 어찌 거룩한 덕에 누(累)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옳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어리석은 신 등의 마음 속을 굽어 받아들여서 군신(君臣)의 예(禮)를 중히 하고 내외의

宴, 惶恐不敢當, 再三牢辭, 世祖震怒譴責, 數日乃已。 彼二臣者, 豈不深感世祖優異之恩? 而所以牢辭至於受譴而不已者, 誠恐側近之地, 有押昵之嫌。 今則遂成故事, 一有內宴, 則必賜樂於外庭焉。 然尚有可誘者曰: “白日之下, 十日所視, 群臣在位, 肅恭嚴畏, 固無淫佚褻慢之態焉。” 乃若夜宴於宮禁嚴密之內, 侑以女樂, 雖篤親親之義, 恐爽節宣之宜。 且無御史執法之規, 而有恃恩怙寵之漸, 其源一開, 流弊難防。 臣等愚惑, 未見其可。 又聞是日賜樂於入直兵曹、都總管、諸將下至弘文、藝文諸臣, 皆得受宴。 如此則闕門之內, 法從之臣, 男女混雜, 厭厭夜飲, 豈無酗酒失儀者乎? 殿下清明在躬, 志氣如神, 未嘗有酣酒嗜音之失, 只以敦睦九族之心, 推恩以及群下, 而流弊或至於君臣酣歌, 達朝不已, 則千載之下, 豈不爲盛德之累乎? 伏望殿下俯納愚衷, 重君臣之禮, 嚴內外之辨, 勿令娼妓賤類, 以玷風化之源。

不聽。

	<p>분별을 엄히 하여 창기(娼妓)의 천한 무리로 하여금 풍화(風化)의 근원을 더럽히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1월 18          일(기미) 3번째기사</p>	<p>임금이 두 대비전에 잔치를 올리고 명하여 종재(宗宰)17703) 를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술과 풍악을 내리는 한편, 인하여 동지(冬至)의 율시(律詩)를 지어서 올리기를 명하였다.</p>	<p>○上進宴于兩大妃殿，命饋宗宰于明政殿庭，賜酒樂。仍命製冬至律詩以進。</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1월 19          일(경신) 1번째기사</p>	<p>밤에 비가 내리고 천둥을 하였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호(金浩)가 와서 아뢰기를,          “종친과 시종(侍從)에게 잔치를 내리시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경신일(庚申日) 밤에는 옳지 못합니다. 세속(世俗)에서 경신일 밤을 지키는 것은 액(厄)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하께서 이를 행하시면 신은 아마도 후세에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액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경신일 밤을 지키는 것은 전조(前朝)17704) 의 고사(故事)와 같은 것이 아니라,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행하였다.”          하였다. 김호가 아뢰기를,          “밤을 세워 즐기고 잔치하며 여악(女樂)까지 써서 남녀가 섞여 있는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합니다. 전자에 이계동(李季全)이 연회에 입시(入侍)하였다가 매우 취함으로 인하여 과일을 던져서 기생을 희롱하였고, 요즘 또 궁중에서 기생을 희롱한 일이 발각되었으니, 밝은 낮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두운 밤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낮에 잔치하겠고, 또 기생과 섞여 있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였다.</p>	<p>○庚申/夜，雨且雷。司諫院獻納金浩來啓曰：“賜宴宗親侍從，固爲美事，庚申之夜則不可。世俗以庚申守夜謂之避厄，若殿下下行之，則臣恐後世以爲殿下避厄而爲之。”傳曰：“今之守夜，非如前朝故事也，祖宗朝已行之。”浩曰：“徹夜歡宴，至用女樂，使男女混處，至爲不可。前者，李季全侍宴。因醉甚，投果戲妓，近又中禁挑妓事覺。白晝猶尙如此，況昏夜乎?”傳曰：“予當晝宴，又不使妓混處。”</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1월 19 일(경신) 2번째기사</p>	<p>임금이 인양전(仁陽殿)에 나아가서 종친과 연회하며 활 쏘기를 하고, 기공(妓工)으로 하여금 풍악을 연주하게 하고, 또 입직(入直)한 도총관(都總官),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과 제장(諸將),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관원에게 명정전(明政殿) 뜰에다 술과 풍악을 내려 주었다.</p>	<p>○上御仁陽殿宴宗親，射的，使妓工奏樂。又賜酒樂于入直都總管、兵曹堂上、諸將、承政院、弘文館、藝文館官員于明政殿庭。</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1월 19 일(경신) 4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허황(許堊)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경신일(庚申日) 밤을 지키는 것도 도가(道家)의 말에서 나온 것으로 허황하고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임금은 운명을 창조하기도 하는데, 어찌 삼시(三尸)17708) 가 하늘에 올라가서 참소하여 요절(夭折)17709) 할 것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가령 삼시가 신령함이 있어서 능히 사람에게 화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총명 정직하여 행동에 예법을 따르시고, 호령을 발하고 벼품에 있어서 정리(情理)에 합당하기를 힘쓰시니, 사람의 일을 이미 닦았으므로, 하늘의 마음이 반드시 기뻐하여 모든 복된 물건과 상서로움이 이르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욕(情慾)에 방종하여 조정에 잘못된 정사가 많으면서 구차하게 경신일 밤을 지키면서 재앙을 면하려고 하면 어찌 야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첫째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오(吳)나라 임금이 칼쓰기를 좋아하자 백성은 칼에 상한 흔적이 많아졌고, 초(楚)나라 임금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자 궁중에 굶어 죽는 여자가 많았으며, 성안에서 높은 상투를 좋아하자 사방에서 상투 높이가 한 자가 되었고, 성안에서 큰 소매를 좋아하자 사방에서 소매를 온필[全匹]로 하였다.’고 하였으니,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함이 있습니다. 이제 전하의 이 일을 들으면 여항(閭巷)17710) 의 사민(士民)이 반드시 서로 흠모하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착하고 밝으시면서도 오히려 하시는데 우리들 소인이야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 하면서, 서로 모여 남녀가 섞여 앉아 밤에서 낮까지 계속하며 집집마다 이와 같고 사</p>	<p>○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司諫院司諫許堊等上疏曰：  臣等竊念庚申守夜，出於道家之說，荒昧不經，君上造命，豈畏三尸上訴於天，以致夭折哉？假使三尸有靈，能與人爲禍福，殿下聰明正直，動遵禮法，發號施令，務合情理，人事既修，則天心必悅，諸福之物，可致之祥，莫不畢至矣。若縱情肆欲，朝多疵政，而區區守夜，欲免災患，豈不鄙哉？其不可一也。古語云：“吳王好劍客，百姓多瘡瘢；楚王好細腰，宮中多餓死；城中好高髻，四方高一尺；城中好大袖，四方全匹帛。”上有好者，下必有甚焉。今聞殿下此舉，閭巷士民，必相慕悅曰：“主上聖明猶尚爲之，吾儕小人，安可已也？”相與聚會，男女雜坐，夜以繼日，家家如是，人人若此，酬飲觸憲，其爲政治之累，豈不大哉？其不可二也。傳曰：“君舉必書，書而不法，</p>

람마다 이와 같이 하여 취하도록 마시고 법을 범할 것이니, 그것이 정치의 누(累)가 됨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옳지 못한 것의 둘째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임금이 하는 일은 반드시 책에 기록하는데, 기록한 것이 법되지 아니하면 뒤를 계승한 임금이 무엇을 보겠는가?’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영명(英明)하심이 고금에 으뜸가는 자질(資質)로서 주색에 방탕한 실수가 없으시며, 간하는 말도 거역하지 않으시고, 의(義)를 들으면 즉시 실천에 옮기시므로 신 등이 품은 바를 진술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비록 어기고 거역함이 있을지라도 일찍이 죄를 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은 큰 관계가 없는 것인데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직 없으시니, 천재(千載) 후에 전하의 이 일을 가지고 법이 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셋째입니다.

전하께서 종친을 접견하는 까닭은 단지 구족(九族)을 돈목(敦睦)하여 친족을 친애하기 위한 뜻뿐입니다. 이제 날씨가 춥고 밤에는 더욱 심하니, 술을 내려 줄 적에 반드시 많이 권하게 되어 크게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술의 공덕을 칭송하는 자가 말하기를, ‘고요히 들어도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자세히 보아도 태산의 모양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희롱하는 말에 가까우나 또한 허망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창기(娼妓)로 하여금 앞에서 풍악을 연주하게 하여 이미 술에 취한 종친을 즐겁게 해 주려고 하다가 만약 눈에 거슬리고 삼가지 못한 상황이 있게 되면 그것을 다스릴 때에는 친족의 정을 돈독히 하는 뜻에 어긋날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할 때에는 군신(君臣)의 예(禮)가 무너질 것이며, 소문이 드러나고 풍자함이 분분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랑하겠다는 것이 도리어 해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신(臣)은 낮에는 술을 마실 수 있지만 밤에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으니, 낮과 밤의 분변을 삼가함이 지극한데, 하필 밤에 신하를 만나보는 것이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넷째입니다.

後嗣何觀?” 殿下以英明冠古之資，無荒淫酗酒之失，從諫弗拂，聞義即遷。臣等所懷，無不盡陳，雖有違忤，未嘗加罪。今者此舉，無大關係，而愈音尙阻。千載之下，安知不以殿下此舉爲垂範；而其流之弊，安知不以酒喪德，朋淫作狂之漸乎？其不可三也。殿下之所以接見宗親，只爲敦睦九族，加親親之意焉耳。今者日寒，夜分尤甚，賜酒之際，必多宣勸，以至昏醉。古之頌酒德者曰：“靜聽不聞雷霆之聲，熟視不見泰山之形。”雖涉戲言，亦非妄語。今使娼妓奏樂於前，以娛既醉之宗親，倘有忤目不謹之狀，則其治之也，篤親之意違，其不治也，君臣之禮替。流聞彰著，文刺紛紜，則其所以愛之，適所以害之。古人云：“臣卜其晝，未卜其夜。”其謹於晝夜之辨至矣，何必以夜而延見臣下乎？其不可四也。仁陽殿在大上殿側近之地，於此焉使工人奏樂，與臣下守夜飲宴，其於事體何如？殿下雖無崇飲之失，自侍坐者以下，與夫奔走執事之人，皆當及酒，安能保其萬無喧擾之弊乎？其不可五也。殿坐之下則天威咫尺，禮必嚴

인양전(仁陽殿)은 대상전(大上殿)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서 공인(工人)으로 하여금 풍악을 연주하고 신하들과 밤을 지키면서 술마시고 잔치하게 되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술을 많이 마시는 실수는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모시고 앉은 사람 이하로부터 분주하게 일을 맡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술을 마시게 되면 어찌 능히 만에 하나라도 떠들고 시끄러운 폐단이 없기를 보증하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다섯째입니다.

대전(大殿)의 어좌(御座) 밑에서는 천위(天威)가 지척에 있으므로 예가 반드시 엄숙하겠지만, 궁문 밖에서는 출입하고 돌아다니는 즈음에, 저문 밤 모르는 곳에는 반드시 광망(狂妄)하고 무식한 사람이 방탕하고 설만(褻慢)한 마음이 있을 것이니, 요사이 중금(中禁)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구나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 이하에게 마음대로 마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여섯째입니다.

궁중 가까운 곳에 풍악을 내려 주는 것은 낮에도 미안한 일인데 어두운 밤에 이르러서는 더욱 마땅히 삼가고 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입직한 병조(兵曹) 이하에게 풍악을 내려 준다고 하기에 신 등이 논계(論啓)한 것이 여러 날 되었으나 시종(侍從)하는 신하와 환위 장령(環衛將領)의 관원은, 한 사람도 사양하면서 감히 당치 아니하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 단서를 열면 교년(交年)17711) 과 제야(除夜)에도 예(例)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 옳지 못함의 일곱째입니다.

예전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일찍이 간의 대부(諫議大夫) 저수량(褚遂良)에게 묻기를, ‘순(舜)은 칠기(漆器)를 만들고 우(禹)는 그 조(俎)에 조각을 하였는데 당시에 간하는 자가 10여 사람이나 되었으니, 먹는 그릇에 대해 어찌하여 굳이 아뢰는가?’ 하니, 저수량이 말하기를, ‘조탁(雕琢)17712) 은 농사일을 해롭게 하고 찬조(纂組)17713) 는 여공(女工)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肅，若乃宮門之外，出入便旋之際，暮夜無知，必有狂妄無識之人，縱恣褻慢之心，如近日之中禁是也。況賜樂於入直諸將以下，使之縱飲乎？其不可六也。賜樂於禁近之地，晝日猶尙未安，至於昏夜之際，尤當謹嚴。今奉傳教，賜樂於入直兵曹以下，臣等論啓有日，自左右侍從之臣與環衛將領之官，未聞有一人辭謝不敢當之言，是皆有心欲之也。一開其端，則交年除夜，恐亦爲例，其不可七也。昔唐太宗嘗問諫議大夫褚遂良曰：“舜造漆器，禹雕其俎，當時諫者十餘人，食器之間何須苦陳？”遂良曰：“雕琢害農事，纂組傷女工，首創奢淫，危亡之漸。漆器不已，必金爲之；金器不已，必玉爲之。所以爭臣，必諫其漸；及其滿盈，無所復諫。”太宗曰：“卿言善矣！朕所爲事，若有不當，或在其漸，或已將終，皆宜進諫。比見前史，或有人臣諫事，遂答云‘業已爲之’，或道‘業已許之’，竟不爲停改。此則危亡之禍，可反手而待也。”臣等反覆此言，請爲殿下白之。夫舜、禹天下之大聖也，食器之飾，未甚失德，然諫之如此其多，則可

사치하고 음란함을 창작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조짐입니다. 그릇에 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금으로 그릇을 만들 것이며, 금으로 그릇을 만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쟁신(爭臣)17714)은 반드시 그 조짐을 간하는 것입니다. 일이 가득 차게 되면 다시 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태종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짐(朕)의 하는 일이 만약 마땅치 못한 것이 있거나 혹은 그 조짐이 있거나 혹은 장차 끝나 치려는 것이 있거든 모두 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즈음 역사를 보건대 혹시 신하가 간하는 일이 있으면 드디어 답하기를, 「이미 하였다.」고 하고 혹은 「이미 허락하였다.」고 하면서 마침내 정지하고는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위태롭고 망하는 화(禍)를 손을 뒤집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이 말을 되풀이하여 전하에게 아뢰고자 합니다. 대체로 순(舜)임금과 우(禹)임금은 천하에 큰 성인(聖人)이므로 음식 그릇에 장식하는 것이 그렇게 실덕(失德)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하기를 이처럼 많이 하였으니 성인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충신은 간하는 말을 올림에 있어서는 법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당 태종은 옛사람의 덕행을 논하고 바른 말을 구하기에 정성이 간절하니, 그 정치의 아름다움이 거의 성(成)강(康)17715)에 가깝다고 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신 등을 언관(言官)의 열(列)에 두시고 넉넉한 녹(祿)으로 길러 주시고 예(禮)를 더하여 대우해 주시며 광망(狂妄)한 말도 너그럽게 대답해 주시니, 이는 천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좋은 시기를 만난 것인데, 만약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신 등의 죄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능히 전하로 하여금 일동 일정(一動一靜)을 예법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면 신 등은 직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으로 하여금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전하의 지극히 어질고 밝으시며 넓고 큰 지극한 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혜가 만물에 뛰어났으면서도 지극히 어리석은 이의 말을 받아들이고, 위엄이 사해

見聖人聖不自聖，而忠臣進諫法當如是。太宗尙論古人，求言誠切，其所以致治之美，庶幾成、康者，蓋無愧焉。殿下置臣等於言事之列，優祿以養之，加禮以待之，狂妄之言，優游以答，千載一時，殊遇會合。若猶含默，臣等之罪大矣。臣等能使殿下，一動一靜，不出於禮法之外，則臣等之職舉矣，然能使臣等舉職者，莫非出於殿下之至仁至明含洪廣大之至德也。智出庶物而聽於至愚，威加四海而屈於匹夫，將見芻蕘畢陳，有犯無隱。涓塵可裨於山海，熒燭或助於日月，當世稱聖，後世稱德，豈不美哉？今守夜一事，比之漆器雕俎，其失有萬其倍。伏望殿下，勿以成命爲嫌，遂事爲言，毋踵唐太宗所言前史之事，則聽言從諫之美，垂之千萬歲而無窮。

傳曰：“釋氏近理，予尙不信，況畏三尸而守夜乎？但爲親親耳，非欲避厄也。”仍命入殿庭飲酒。對曰：“臣等非以聖上畏三尸也，適當庚申有是舉，故敢啓。今使臣等參宴，上恩則至矣。然臺諫合司伏閣，不得其言而參

(四海)에 덮였으면서도 필부(匹夫)에게 굴하시므로, 장차 미천한 사람까지도 할말을 다하여 직설적으로 말하고 숨김이 없게 되어 물방울과 티끌도 산과 바다에 보탬이 되고 반딧불도 해와 달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군(聖君)이라 하고 후세에서는 덕화(德化)를 일컬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경신일(庚申日) 밤을 지키는 하나의 일은 그릇에 칠하고 적대(炙臺)에 조각하는 일에 비하면 그 잘못이 만 배나 더함이 있습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미 명령을 내린 것이라 하여 혐의하지 마시고 이루어진 일이라 하여 구실삼지 마소서. 그리고 당나라 태종이 말한 전사(前史)에 대한 일의 경우를 따르지 않으시면, 말을 들어주고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천만세에 드리워서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석씨(釋氏)17716) 의 말은 이치에 가까와도 내가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삼시(三尸)를 두려워하여 밤을 지키겠는가? 다만 친족을 친애하기 위한 것뿐이다.”

하고, 인하여 전정(殿庭)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를 명하니, 대답하기를,  
 “신 등은 성상께서 삼시(三尸)를 두려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경신일(庚申日)을 당하여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 신 등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성상의 은혜는 지극하나 대간(臺諫)17717) 이 합사(合司)17718) 하여 복합(伏閣)17719) 하는데, 그 말을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이 진실로 편치 못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였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종친을 접견함에 있어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르렀으니, 지극하게 즐기지 아니한 것도 아닌데, 밤이 깊도록 파하지 아니하니, 신 등이 지금 노사신(盧思愼)

宴, 心實未安。” 傳曰: “爾等不從君命, 予復何言?” 臺諫啓曰: “接見宗親, 自朝至夕, 樂非不極, 而夜深不罷。 臣等今見盧思愼、魚有沼參外庭之宴, 皆扶醉而出, 以此知內庭宗親必至大醉也。 昏夜醉中, 安知不有褻慢之失乎? 聖上卽位以來, 過舉未有如此之甚也。 臣等若得入近地, 則欲痛哭以陳。” 傳曰: “夜見群臣, 非始乎今日, 自祖宗朝, 行之已久。 前此予之接見群臣, 或至夜深矣, 大司憲其時在何處?” 瓊全曰: “臣曩者待罪政院, 殿下如遇交年除夜, 承旨則政院, 經筵官則弘文館, 衛將則衛將所, 各於其司頒賜酒肉而已。 如此分內外庭賜宴樂, 自朝達夜厭厭不罷者, 臣未之見也。” 傳曰: “欲言其過, 其無辭乎?” 瓊全等曰: “臣等固知殿下不爲守夜也, 不爲荒樂也, 只爲親親耳。 愚民不知聖上之意, 妄以爲守夜避厄, 爭慕效之。 後世之主, 亦必謂: ‘以先王盛德, 尙且爲之, 吾何廢也?’ 一開其端, 末流難防。” 傳曰: “予之夜見群臣屢矣, 曾無有言之者。 今弘文館亦在此列, 事或不可, 肯不言乎?” 瓊全曰: “臣等見

과 어유소(魚有沼)가 의정(外庭)의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모두 술이 취해 부축을 받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내정(內庭)의 종친은 반드시 크게 취했음을 알겠습니다. 어두운 밤 취한 가운데 실만(褻慢)한 실수가 있지 않은지 어찌 알겠습니까? 성상께서 즉위하신 후로 지나친 일이 이처럼 심한 적이 있지 아니합니다. 신 등이 만약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통곡하면서 아뢰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밤에 신하들을 보는 것은 오늘날에 비롯된 것이 아니며 조종조(祖宗朝)에서 행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보다 앞서서도 내가 신하들을 접견하다가 밤이 깊기에 이른 적이 있었는데, 대사헌은 그 때에 어디에 있었던가?”

하자, 이경동이 아뢰기를,

“지난번 신이 승정원(承政院)에 대죄(待罪)17720) 하고 있을 적에는 전하께서 만일 교년(交年)이나 제야(除夜)를 만나면 승지(承旨)는 승정원, 경연관(經筵官)은 홍문관(弘文館), 위장(衛將)은 위장소(衛將所), 이렇게 각각 그 사(司)에다가 술과 고기를 반사(頒賜)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내정(內庭)과 외정(外庭)을 나누어서 잔치와 풍악을 내려 주었으나 아침부터 밤까지 즐기며 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허물을 말하려고 하면 그 할 말이 없겠는가?”

하니, 이경동이 아뢰기를,

“신 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탕하게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친족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뿐임을 압니다마는, 어리석은 백성은 성상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밤을 지키며 액(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서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을 것이며, 후세의 임금도 반드시, ‘선왕(先王)의 거룩한 덕으로도 하셨는데 내가 어찌 폐하겠느냐?’고

各司奴婢執饌奔走，禁中昏夜男女混處，其於事體何如？且今夜陰晦雨雪交墜，其在醉中，雖不知苦，在下奔走供事者，豈無飢寒之苦哉？弘文館員視然參宴，不言其非，豈是侍從論思之義乎？”傳曰：“供饋之人奔走於下，勢不得已也。今日夜寒，卿等久立於外，故欲饋之耳，非欲飲之酒使勿言也。”仍問弘文館以不言是非之由，皆醉甚不能對。瓊全等更請罷宴。傳曰：“卿等欲使予無過舉，予甚喜之。將罷宴。”賜宣醞各二玉杯。瓊全等更啓曰：“命賜酒，又有罷宴之教，不勝喜躍。但夜至二鼓，猶未罷之，臣等不勝缺望。請卽罷之。臣等不見罷宴，不敢歸。”傳曰：“適有雨微故罷之，非用卿等言也。”瓊全等退，俄而雷雨驟至，天地昏黑，咫尺不分。命開西南門，分男女出。



할 것이니,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밤에 신하들을 접견한 것이 여러 번인데 일찍이 말하는 이가 없었고, 지금 홍문관(弘文館)에서도 이 열(列)에 있었는데 일이 옳지 못한 것이라면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니, 이경동이 아뢰기를,

“신 등이 보건대, 각사(各司)의 노비(奴婢)가 반찬을 가지고 분주히 다니고, 궁중 어두운 밤에 남녀(男女)가 섞여 있으니, 그 사체(事體)에 있어서 어찌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밤은 흐리고 어두운데, 술이 취한 사람은 비록 괴로움을 알지 못할지라도 밑에서 분주히 일을 주선하는 자는 배고프고 추운 고통이 어찌 없겠습니까? 홍문관 관원은 예사로 연회에 참여하여 그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 어찌 이것이 시종(侍從)하는 신하가 정치를 논의하는 도리라 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궤(供餽)17721) 하는 사람이 밑에서 분주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늘밤이 추운데 경 등이 밖에서 오래 서 있기 때문에 대접하려고 한 것이지, 술을 마시게 하여 말을 하지 말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인하여 홍문관에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한 이유를 물으니, 모두 몹시 취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경동 등이 잔치를 궤하기를 다시 청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이 나로 하여금 과실이 없게 하려고 하니, 내가 매우 기뻐한다. 장차 잔치를 궤하겠다.”

하고, 선온(宣醞)17722) 두 옥배(玉杯)를 각각 내려 주었다. 이경동 등은 다시 아뢰기를,

“명하여 술을 하사하시고, 또 잔치를 궤하겠다는 하교(下敎)가 계시니, 기쁨

	<p>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밤이 이고(二鼓)17723) 에 이르렀는데, 아직 파하지 아니하였으니, 신 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즉시 파하게 하소서. 신 등은 잔치가 파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면 감히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마침 비가 내릴 징조가 있기 때문에 파하는 것이며 경 등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다.”</p> <p>하였다. 이경동 등이 물러나오자, 갑자기 천등과 비가 급히 내리고 천지가 어두워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명하여 서문(西門)과 남문(南門)을 열어서 남녀가 나누어 나가게 하였다.</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19일(경신) 5번째기사</p>	<p>이날 밤에 승정원(承政院)에 술을 내려 주고, 인해 녹비(鹿皮)와 활을 내어 전교하기를,</p> <p>“입직(入直)한 경연관(經筵官)과 더불어 함께 마시며 내기하라.”</p> <p>하였다.</p>	<p>○是夜， 賜酒于承政院， 仍出鹿皮及弓， 傳曰：“與入直經筵官， 共飲賭之。”</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22일(계해) 3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글을 올리기를,</p> <p>“신이 지난 무술년(17728) 에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고, 을사년(17729) 에는 또 본도(本道) 관찰사가 되었는데, 양도(兩道)의 연해(沿海) 형세를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는 통천(通川)·흡곡(歙谷)·고성(高城)·간성(杆城)·양양(襄陽)·강릉(江陵)·삼척(三陟)·울진(蔚珍)·평해(平海) 등 아홉 고을이 모두 연해(沿海) 고을이고, 본도는 영해(寧海)·영덕(盈德)·청하(淸河)·흥해(興海)·영일(迎日)·장기(長鬐)·경주(慶州)·울산(蔚山)·기장(機張)·동래(東萊)·김해(金海)·웅천(熊川)·창원(昌原)·칠원(漆原)·진해(鎭海)·사천(泗川)·곤양(昆陽)·하동(河東)·진주(晉州)·고성(固城)·남해(南海)·거제(巨濟) 등 스물 두 고을이 역시 모두 연해(沿海) 고을입니다. 그러나 그 적로(賊路)17730) 의 완급(緩急)의 형세는, 경주 이상은 조수가 없고 또 섬이 없으며, 흰 물결은 하늘에 닿고 쉼바람이 바다를 흔들며 서로 밀고 부딪쳐서 마치 산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왜</p>	<p>○慶尙道觀察使孫舜孝上書曰：</p> <p>臣去戊戌年爲江原道觀察使， 乙巳年又爲本道觀察使， 歷審兩道沿海形勢。 江原道通川、歙谷、高城、杆城、襄陽、江陵、三陟、蔚珍、平海等九邑， 皆沿海； 本道寧海、盈德、淸河、興海、迎日、長鬐、慶州、蔚山、機張、東萊、金海、熊川、昌原、漆原、鎭海、泗川、昆陽、河東、晉州、固城、南海、巨濟等二十二邑， 亦皆沿海。 然其賊路緩急之勢， 則慶州</p>

적(倭賊)이 아무리 배를 잘 조종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의지하여 힘을 쓰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경주 이북은 족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만, 울산 밑에서부터 비로소 조수가 있고 섬이 있으며 울산의 염포(鹽浦), 동래의 부산, 웅천의 제포(濟浦)는 왜노(倭奴)의 귀순자가 와서 사는데, 좌도(左道)의 울산에는 내상(內廂)17731) 과 수영(水營)이 함께 서로 대치(對峙)해 있어 그 금후지(襟喉地)17732) 를 견제하고 있고, 우도(右道)에는 창원의 내상과 거제의 수영이 있고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이 안팎에 나누어 웅거하여 함께 기각(掎角)17733) 의 형세를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 적의 침입하는 길은 우도가 긴요하며, 긴요한 중에서도 더욱 긴요한 것은 남해의 땅 미조항(彌造項)과 사천의 땅 삼천진(三千鎭)입니다. 그러나 모두 새로 설치하여 한 여(旅)17734) 로써 지키는데, 설치한 처음이라 규모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곤양·사천·고성(固城)에 이르러 제주(濟州)에서 와 사는 두무악(頭無岳) 등 남녀를 불러 모아놓고 술을 먹이고 국령(國令)을 유시(諭示)하며, 또 수로(水路)17735) 를 자세히 물으니, 각각 소견을 아뢰는데, 못사람의 말이 하나 같았습니다. 대마도(對馬島)에서 남해 미조항까지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섬이 벌여 있어 서로 연하였는데, 난도(卵島)·내매미도(內每彌島)·외매미도(外每彌島)·어리가건도(於里加件島)·내비산도(內非山島)·외비산도(外非山島)·비진도(非眞島)·용초도(龍草島)·오사리도(吾士里島)·연대도(延臺島)·내부지도(內夫知島)·외부지도(外夫知島)·연화도(蓮花島)·우도(牛島)·적화리도(赤火里島)·내초리도(內草里島)·외초리도(外草里島)·임도(林島)·나읍다지도(羅邑多只島)·욕지도(欲知島)·마도(馬島)·내갈리도(內葛里島)·외갈리도(外葛里島)·대로대도(大勞大島)·소로대도(小勞大島)·내거차리도(內巨次里島)·외거차리도(外巨次里島)·둔미도(菴彌島)를 지나 남해 미조항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내리(內里) 돌산(突山)까지 30여 리이며, 동쪽으로 삼천진까지 15여 리인데, 왜적의 나드는 것이 항상 이 길을 경유하면서 풍파가 일면 언덕에 의지하고, 바람이 고요하면 출발하고 이

以上既無潮汐，又無島嶼，白浪吞天，長風倒海，相推迭盪，如山之頽。倭雖善於操舟，何依而用力？以此觀之，慶州以北不足慮也。自蔚山以下，始有潮汐島嶼，蔚山之鹽浦、東萊之釜山、熊川之濟浦，倭奴歸順者來居。而左道蔚山內廂水營竝峙相對，控其襟喉之地；右道昌原內廂、巨濟水營、沿邊諸邑分據內外，共爲掎角之勢。其中賊路，右道繁矣，而繁之中，又有尤繁者，無如南海地彌造項、泗川地三千鎭也。然皆新設，守以一旅，布置之初，規模未成。臣到昆陽、泗川、固城，招集濟州來居頭無岳等男女饋酒，諭以國令，且詳問水路，各陳所見，衆口如一。自對馬島至南海彌造項，其間大小島羅列相連，曰：卵島、內每彌島、外每彌島、於里加件島、內非山島、外非山島、非眞島、龍草島、吾士里島、延臺島、內夫知島、外夫知島、蓮花島、牛島、赤火里島、內草里島、外草里島、林島、羅邑多只島、欲知島、馬島、內葛里島、外葛里島、大勞大島、小勞大島、內巨次里島、外巨次里島、菴彌島，乃至南海

렇게 돌고 돌아 미조항에 이르면 동(洞) 안에는 바람이 없고 해산물이 많이 있으므로, 머물면서 물을 길은 뒤에 서쪽으로 내례(內禮) 돌산(突山)에 들어가 있다가 때를 타고 몰래 나타나는데, 이 관문을 지나지 아니하면 전라도 경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참으로 도적의 평탄한 길이고 굴혈(窟穴)이므로, 그 길을 막고 그 굴혈을 빼앗으면 저들이 반드시 싫어하여 해롭게 할 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미조항과 삼천진 두 곳에 요해(要害)를 설치하는 것은 진실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큰 진(鎭)을 설치하고 그 정보를 높게 쌓아서, 크고 작은 병선(兵船)을 두고 멀고 가까운 연대(煙臺)를 세워, 용맹한 군사로 지키고 낭장(郎將)으로 거느리게 하며, 봉수(烽燧)를 삼가고 척후(斥候)를 멀리 하여, 적이 육지에 올라와서 노략질하면 육군(陸軍)으로 치게 하고 배로 돌아가 도망치면 선졸(船卒)로 추격하게 하여, 물과 육지에서 함께 견제하여 목을 누르고 등을 두드리면, 섬 오랑캐[鳥夷]가 위엄을 두려워하여 자취를 거둘 것이며 변경 백성이 편히 잠자고 즐겁게 일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이 설치한 진(鎭)이라서 방수(防戍)할 군사가 없다고 한다면, 경주 이북의 방어가 긴요하지 아니한 수군(水軍)·육군(陸軍)을 조금씩 줄여서 옮겨 지키게 하면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또 이 곳은 이미 요해지(要害地)이므로, 마땅히 생각 밖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인데, 선군 정병(船軍正兵)은 활을 잘 쏘는 자가 적으니 하번(下番)한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를 3, 40명을 뽑아서 아울러 방수하게 하고, 만일 외변(外變)이 있을 경우 병선(兵船)에 나누어 타게 하면 때에 따라 사변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니, 하나의 계책입니다.

곤양·진주·사천·고성에 두무악(頭無岳) 등을 나누어 두면, 모두 배를 잘 부려서 물결에 달려가는 것이 나는 새와 같으니, 그들을 어루만져 편히 살게 하면 급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외시(度外視)하며 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년 봄·가을에 병사(兵使)·수사(水使)가 삼천진에 모여서 크고 작

彌造項。西至內里突山三十餘里，東至三千鎭十五餘里。賊倭出入，常由此路，風蕩則依岸，風靜則乃行，轉轉徘徊，至于彌造項，則洞內藏風，海產多在，留連汲水。然後西入內禮突山，乘時而竊發，未過此關，亦未易入全羅之境，其眞盜賊之坦路也，窟穴也。塞其路，奪其窟，彼皆惡而欲害之，勢所必然也。彌造項、三千鎭兩地設險，固不可忽也。設其巨鎭，崇其城堡，置大小兵船，立遠近烟臺，守以猛士，領以郎將，謹烽燧，遠斥候。賊登陸而掠，則以陸軍擊之，返船而逃，則以船卒逐之，水陸共制，扼項撫背，則鳥夷畏威而斂迹，邊氓安枕而樂業矣。若曰新設鎭而無兵可戍，則慶州以北守禦不緊，水軍陸軍差減移戍，何不可之有？且此地既是要害之處，當爲慮外之備。船軍正兵善射者少，下番甲士、別侍衛量抄三四十人竝戍，如有外變，分騎兵船，可以隨時而應變，一策也。昆陽、晉州、泗川、固城分置頭無岳等，皆能操舟逐浪，正如飛鳥，撫以安業，緩急可用，不可置之度外而不用也。每於春秋，兵使、水使會三千鎭，

은 맹선(猛船)과 두무악 등의 작은 배를 가지고 수전(水戰)을 서로 익히면 급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이니, 또한 하나의 계책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후한 은혜가 널리 퍼져서, 도이(島夷)와 산용(山戎)이 분주히 예물을 바치고 있는데, 어리석은 신하의 하나의 계책이 어찌 만분의 일인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편안하다 하여 위태로움을 잊지 말고 다스려졌다고 하여 어지러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비가 내리기 전에 짐을 미리 수리한다.’고 하였으니, 밝게 살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그리고 일찍이 경상도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이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김겸광(金謙光)·박건(朴健)·박성손(朴星孫)·안관후(安寬厚)·김언경(金彦庚)은 의논하기를,

“삼천리(三千里)17736)의 땅이 그 형세로는 진(鎭)을 두어 수어(守禦)하는 것이 진실로 아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삼천리에서 물길로 거의 60리를 가면 서쪽에는 적량(赤梁)이 있고 동쪽으로는 사랑(蛇梁)이 있어, 두 진(鎭)이 밖에서 가로막고 있으니, 삼천리는 실로 내지(內地)가 되며, 미조항(彌造項)도 배를 간직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 이상의 여러 진(鎭)의 병졸은 겨우 스스로 지키고 있는 실정이니, 양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두무악(頭無岳) 등은 본래 낚시질로 생리(生利)를 삼고 배를 집으로 삼아 정해 사는 곳이 없으니, 급할 때에 쓸 수가 없습니다.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등은 하番(下番)하여 쉬고 있는데 또 방수(防戍)하게 하면 휴식할 겨를이 없으니, 역시 옳지 못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두 곳에 진을 설치하는 것은 형편이 모두 옳지 못하니, 예전대로 두기를 청합니다.”

하고, 정괄(鄭恬)·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以大小猛船及頭無岳等小船相習水戰，緩急可用，亦一策也。恭惟聖明在上，厚澤旁流，島夷山戎奔走獻琛，愚臣一得，何裨萬分？《易》曰：“安不忘危，治不忘亂。”《詩》曰：“迨天之未陰雨，綢繆牖戶。”伏惟睿鑑。

命召領敦寧以上、議政府、曾經慶尙道觀察使節度使議之。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盧思愼、金謙光、朴健、朴星孫、安寬厚、金彦庚議：“三千里之地，以其形勢，則置鎭守禦，誠如所啓。然自三千里水行幾六十里，西有赤梁，東有蛇梁，兩鎭控扼於外，三千里實爲內地。彌造項亦無藏船之處。且慶州以上諸鎭，兵卒僅能自守，量減爲難。頭無岳等本以海釣生利，以船爲家，無有定居，緩急不可用。別侍衛、甲士等下番休力，而又令防戍，則無休息之暇，亦不可也。臣等意兩處設鎭，勢皆不可，請仍舊。”鄭恬、李崇元議：“彌造項、三千里兩處形勢，臣等目所未觀，勢難遙度。然此兩處設鎭便否，屢遣大臣審定，只令軍卒守護，今不宜輕

	<p>“미조항과 삼천리 두 곳의 형세를 신 등이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니 형세를 멀리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에 진을 설치하는 데 대한 적당한가의 여부는 여러 번 대신을 보내어 살펴서 정하게 하였던 바, 다만 군졸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으니, 이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곳에 수진(水鎭)과 육진(陸鎭)을 아울러 설치하는 것은 더욱 형편이 어렵습니다. 경주 이북 각진(各鎭)은 방어의 긴요(緊要)하고 아니함에 따라 지키는 군사의 많고 적음을 정한 것인데, 이제 혹시 이를 빼내어 두 진에 옮겨서 방수하게 하면 마침내 어지러워짐을 이룰 것이니,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별시위·갑사는 당번(當番)이 매우 괴로운데 하번(下番)하자 또 나누어 방수하게 하면 마침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무악 등도 물위에서 붙어 살며 정치없이 유동하고 옮기므로, 급할 때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손순효(孫舜孝)의 계책은 모두 행할 수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였다. 명하여 손순효(孫舜孝)에게 글을 내리기를,  “경(卿)이 아뢰 바, 미조항과 삼천리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은 변경을 방비하는 계책에는 옳으나, 다만 경주 이북 각진(各鎭)의 군사가 수가 적어서 옮겨 지키기가 어려우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겠다.”</p> <p>하였다.</p>	<p>議。且一處水陸鎭竝設，尤勢難。若慶州以北各鎭，隨防禦緊歇，以定(成)〔戍〕卒多少，今或抽出移戍兩鎭，則終致紛更，其弊不貲。且別侍衛、甲士當番甚苦，下番而又使之分戍，則終不能堪。頭無岳等亦寄生水上，流移無定，緩急難用，舜孝之策，皆不可行，仍舊爲便。”命下書于舜孝曰：</p> <p>卿所啓彌造項、三千里置鎭，於備邊之策，得矣。但慶州以北各鎭之軍數少，難以移戍，不如仍舊之爲便。</p>
<p>성종 197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1월 22일(계해) 4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삼가 구양수(歐陽脩)17737)의 글을 보건대, ‘왕자(王者)가 천하(天下)를 보유함에 있어 천지에 순응하여 다스리는 한편, 만물에서 재료를 취하여 용도에 충족시킨다. 만약 정사가 그 도(道)를 얻고 취함이 그 한계에 지나치지 아니하면 천지가 순하게 이루어지고 만물이 무성하며 백성이 안락하게 될 것이니, 이를 지극히 다스려진 것이라고 이른다. 만일 정치가 그 도를 잃고 물건을 쓰기를 지나치게 하여 백성이 그 해를 입어 근심하고 괴로와하면, 천지의 기운이 어지러워지고 삼광(三光)17738)의 운행이 정상이 안되어서</p>	<p>○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疏曰：</p> <p>臣等竊觀(歐陽脩)〔歐陽修〕曰：“王者之有天下也，順天地以治之，而取材於萬物以足用。若政得其道也，而取不過度，則天地順成，萬物茂盛，而民以安樂，謂之至治。若政失其道，用物傷天，民被其害而愁苦，則天地之氣</p>

음양(陰陽)·한서(寒暑)가 절차를 잃어, 수재(水災)·한재(旱災)·충재(蟲災)·바람·우박·천둥 벼락과,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며 하천이 마르거나 서리와 눈이 시기를 잃고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아니하여, 혹은 안개·무지개와 괴이한 빛깔의 종류가 발생하는데, 이는 천지 재이(災異)의 큰 것으로서 모두 어지러운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발생하는 것을 상고하여 인사(人事)로써 징험하면 이따금 그 정치의 잘못과 비슷하게 유(類)에 따라 이른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빠른 우레와 급한 바람에도 태도가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군자(君子)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데에 있어서 물건이 정상(正當)에 어긋나서 변하는 자가 그 본성을 잃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루어진 원인을 생각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비록 미세한 것이라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그 말은 참으로 뜻 있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경신일(庚申日) 밤에 천둥과 비가 갑자기 내렸다가 한식경이 지나서 그쳤는데, 전하께서 측은(惻然)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시어 관곡하신 하교를 내려 옥사(獄事)를 의논하고 사건을 판결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그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시는 생각이 지극히 정성스럽고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천심(天心)에 사무치고 아래로는 백성의 뜻에 흡족하며, 재앙이 변하여 상서로움이 될 것을 가히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 등은 학술(學術)이 정밀하지 못하므로 하늘과 사람 사이에 감응(感應)하는 이치에 대해서는 천박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으나, 다만 사헌부(司憲府)에 있으면서 세월만 허송하고 하는 일 없이 녹록한 존재로 인원수만 채우고 녹(祿)만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재이(災異)가 경계를 내려서 밤낮으로 두려워하시는 때를 당하여 그릇 언책(言責)을 더럽히고 있으니, 침묵을 지키며 위치만 굳히는 것은 신의 계책에는 득(得)이 되겠습니까만, 국법[邦憲]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로 이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것이 지금 18년입니다. 모든 정사에 전념하셔서 삼가하심이

沴, 三光錯行, 陰陽寒暑失節, 以爲水旱蝗螟, 風雹雷火, 山崩水溢川竭, 雪霜不時, 雨非其物, 或發爲氛霧虹蜺光怪之類。此天地災異之大者, 皆生於亂政, 而考其所發, 驗以人事, 往往近其所失而以類至。《語》曰: ‘迅雷風烈不變。’ 蓋君子之畏天也, 見物有反常而爲變者, 失其本性, 則思其有以致而爲之戒懼, 雖微不敢忽而已。” 誠哉, 是言也! 今十一月庚申夜, 雷雨驟至, 移時乃已。殿下惻然警懼, 下教丁寧, 議獄決事, 勿令有冤枉者, 其所以畏天憂民之念, 至誠懇到, 上達天心, 下洽民情, 災變爲祥, 可立而待也。臣等學術荒蕪, 至於天人之際, 感應之理, 非區區淺知, 所可測識也。第以待罪憲府, 淹歷歲月, 悠悠碌碌, 備員竊祿。當此災異垂戒, 宵旰惕念之時, 謬玷言責, 含默固位, 臣計則得矣, 其於邦憲何如也? 誠爲此懼。殿下卽位, 于今十八年, 憂勤庶政, 日愼一日。無遊畋戈獵之娛, 無酣酒嗜音之失, 求言如渴, 用人惟己。如臺諫侍從之臣, 下及草茅賤隸之徒, 圖事揆策, 各陳所懷, 從容延訪, 務盡群情。

날로 더해가시고 놀이하고 사냥함을 즐거워함이 없었으며 술과 음악에 빠지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구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시고, 사람을 씌에 있어 자신의 몸처럼 여겨서 대간(臺諫)과 시종(侍從)하는 신하와 아래로는 초야(草野)의 천한 무리에 이르기까지도 일을 도모하고 계책을 세우며 각각 의견을 진술하면 조용히 불러 들여 못사람의 뜻을 다 채용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하더라도 일찍이 죄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채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들여서 쓰려고 하셨으니, 정사에 임하여 다스려지기를 원하여 청단(聽斷)에 힘쓰신 미덕(美德)은 당(唐)·우(虞)17739) ·삼대(三代)17740) 의 거룩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러나 성상께서는 어찌 나의 다스림이 이미 족하다고 하여 태만한 생각이 있으시겠으며, 신 등도 어찌 감히 성상의 다스림이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아첨이나 하여 기쁨을 사겠다는 뜻을 가지겠습니까? 수년 이래로 가뭄과 장마가 겹쳐서 흉년이 들고 벌레가 농사를 망치므로, 백성들이 많이들 흩어져 여정(閭井)17741) 이 삭막하고 도둑이 설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을 당하여 천지의 기운이 조화되지 않고 만물이 잠을 자는 겨울철을 당하여 바람과 비가 잦고, 우리가 소리를 발하는데, 천도(天道)는 멀고 인사(人事)는 가까우니, 그 까닭을 강구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삼가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월령편(月令篇)에 이르기를, ‘중동(仲冬)17742) 철에는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토목 공사를 일으키지 말며, 삼가하여 덮은 것을 헤치지 말고 실옥(室屋)을 열어 헤치거나 대중(大衆)을 동원하지 말고 굳게 닫아 두어야 한다. 땅 기운을 새게 하면 이는 천지의 방(房)을 열어제치는 것이니, 모든 벌레가 죽고 백성은 반드시 병이 들 것이다. 중동에 여름의 정령(政令)을 행하면 그 나라에 가뭄이 들고 검은 기운이 끼이며, 우리가 소리를 발한다.’고 하였고, 《후한서(後漢書)》 오행지(五行志)에는, ‘안재(安宰) 영초(永初) 6년(112) 10월 병술일(丙戌日)에 여섯 고을이 겨울에 천

言雖不中，未嘗加罪，稍有可採，必欲納用。其臨政願治孜孜聽斷之美，雖唐、虞三代之盛，何以加諸？然聖上豈以爲吾治已足，而有怠忽之念？臣等亦豈敢以聖治爲無可言，而爲諛悅之情乎？數年以來，旱乾水溢，年穀不登，蟲螟害稼，民多流亡，閭井蕭條，盜賊盛行。今當冬月天地閉塞，萬物蟄藏之時，風雨屢作，雷乃發聲。天道遠，人事邇，講求其故，其所以致此者何也？謹按《禮記》《月令》曰：“仲冬之月，命有司，土事毋作，慎毋發蓋，毋發室屋，及起大衆，以固而閉。地氣沮泄，是謂發天地之房，諸蟄則死，民必疾疫。仲冬行夏令，則其國乃旱，氛霧冥冥，雷乃發聲。”《後漢書五行志》：“安帝永初六年十月丙戌，郡六冬雷。”註：“京房占云：“天冬雷，地必震。”又曰：“教令擾。”又曰：“雷以十一月起黃鍾，二月大聲，八月闔藏。此以春夏殺無辜，不須冬刑致災。蟄蟲出行不救之，則冬溫風，以其來年疾病。其救也，率幼孤，振不足，議獄刑，貫謫罰，災則消矣。”臣等竊謂以天變推其事，有合有不合，有



등하였다.’라고 하였고, 주(註)의 경방(京房)의 점(占)에 이르기를, ‘하늘이 겨울에 천둥하면 땅에서 반드시 지진이 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교령(敎令)이 시끄럽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천둥이 11월에 황중(黃鍾)에서 일어나 2월에 크게 소리나고 8월에는 잠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봄·여름에 죄없는 이를 죽일 적에 겨울을 기다려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이다. 숨었던 벌레가 나와 다니는 것을 구(救)하지 아니하면 겨울이 따뜻하고 바람이 불며, 그 이듬해는 질병이 유행하게 된다. 그 구(救)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린 고아를 보호하고 부족한 것을 보조하며 옥사(獄事)의 형벌을 의논하여 벌을 너그럽게 용서하면 재앙이 사라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기로는, 천변(天變)으로써 그 일을 미루어 보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아니하는 것도 있으며, 같은 것도 있고 같지 아니한 것도 있으니, 옛부터 내려오면서 다 지적하여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제 전하께서 재이(災異)를 만나 두려워하시며 먼저 옥중의 죄수를 생각한 것은 진실로 옛사람의 옥사를 의논하고 형벌을 용서한다는 말과 부합하니, 그 재변이 사라지는 것은 밝은 시대에 묵묵히 부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항(閭巷)의 소민(小民)들은 연달아 장마와 가뭄의 재액을 만나 의식(衣食)에 급급하여 대개 생활을 즐기지 못한 것이 오래였습니다. 비록 금년에 약간의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세(稅)를 거두는 것이 번거롭고 무거운데다가 환자곡[還上穀] 바치기를 급박하게 독촉하므로, 농가의 괴로운 바는 풍년이나 흉년이나 모두 고통이 됩니다. 만일 구제하지 아니하면 소민들이 떠돌아 다니며 길에서 굶주려 넘어지는 자가 반드시 지난해보다 심할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고아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부족한 것을 구제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천변(天變)에 응하고 인사(人事)를 닦는데 있어 현재로서의 급선무(急先務)라고 여겨집니다.

또 ‘빈풍 칠월시(飭風七月詩)’17743) 를 상고하건대 그 1장(章)에 이르기를, ‘11월에는 바람이 차갑고 12월에는 날씨가 차가운데, 옷이나 털옷이 없으면

同有不同，自古以來，非可摘指而曲爲辭說焉。然今者殿下遇災而懼，首以獄囚爲念，誠合於古人議獄刑、貫謫罰之言，其災變之消，可以默符於昭昭之際矣。若乃閭巷小民，連遭水旱之厄，奔走於衣食，蓋不能聊生者久矣。雖云今年稍稔，稅斂煩重，糴納督迫，農家所苦，豐凶皆病。若不賑救，則小民之流離頓踣，飢餓於道路者，必甚於去年矣。臣等以爲率孤幼、賑不足者，此最應天變、修人事，當今之急先務也。又按《豳風》《七月》之詩，其一章曰：“一之日鬻發，二之日栗烈，無衣無褐，何以卒歲？”其五章曰：“十月蟋蟀，入我床下。穹窒熏鼠，塞向墜戶。嗟我婦子，曰爲改歲，入此室處。”農家三時勤苦，一時休息，其自古然也。如堤堰川防等事，雖爲農事之急務，然治之不以其時，則可以召怨而傷和。近者黃海載寧之民，豈無(祈)〔禱〕寒怨咨之人乎？然既已事畢矣。今又遣堤堰巡察使于京畿·忠清道，先聲所至，守令畏罪奔走，豈肯以冬月動衆爲嫌？堤坊所在，徵召聚會，以畚鍤爲事，哀哀庶民，飢寒僅存，遭

어떻게 이 해를 넘길 것인가?’ 하였고, 5장에는 이르기를, ‘10월에 귀뚜라미가 나의 침상 밑에 들어온다. 구멍을 막고 쥐를 잡으며, 북쪽 창을 막고 남쪽 문을 바른다. 아! 처자식들이 해가 바뀌게 되었으니, 이 집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하였으니, 농가(農家)에서는 삼시(三時)17744)에 부지런히 일하고 겨울한때는 휴식하는 것은 옛부터 그러한 것입니다. 제언(堤堰)과 천방(川防) 등의 일은 비록 농사의 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스림에 있어 제때에 하지 아니하면 원망을 부르고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즈음 황해도 재령(載寧)의 백성으로서 큰 추위를 원망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일을 이미 마쳤는데 이제 또 제언 순찰사(堤堰巡察使)를 경기·충청도에 보냈으니, 먼저 소문이 이르는 곳에 수령(守令)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분주한데, 어찌 겨울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는 것을 혐의하겠습니까? 제방이 있는 곳에는 백성을 불러 모아서 삼태기와 삽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없는 서민들은 굶주리고 추움을 겨우 견디는데 이졸(吏卒)의 엄한 독촉과 꾸짖음을 만나고 주방(廚房)의 공급으로 닭과 개가 다 없어졌으니, 내년이 오기도 전에 해(害)를 받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토공(土功)을 일으키는 숨어 있는 벌레를 상해하여 음양의 영(令)을 범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진실로 반드시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마는, 일을 거행하는 데 혹시 그 때를 잃으면 완전하기를 구하다가 허물어짐을 이루며 공교로운 것을 구하다가 도리어 졸렬함을 이룰 것이니, 그 폐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선왕(先王)의 법을 따르고서 잘못되는 것은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조종(祖宗) 때에 변고를 겪음이 많기 때문에 세운 법도가 지극히 온편(穩便)합니다. 이는 마치 늙은 의원이 병을 본 경험이 극히 많기 때문에, 약을 씌에 있어 허망하게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는 작은 해는 없지 아니하지마는 이로움이 많을 뿐인데, 후세 사람이 알지 못하고서 드디어 가볍게 고치고자 하니, 이것이 바로 그 해가 많

吏卒督責之嚴，廚傳供給，雞犬一空，恐未及來年，受害者多矣。況興土功，傷害蟄藏，以干犯陰陽之令乎？自古妨政害治者，固未必皆非，而舉事或失其時，則求全而致毀，求工而反拙，其弊有不勝言者矣。傳曰：“遵先王之法而過者，未之有也。”祖宗之時，經變多矣，故所立法度，極是穩便，如老醫看病極多，故用藥不至孟浪殺人。且其法度，不無小害，但利多耳。後人不知，遂欲輕改，此其爲害，所以紛紜也。趙普爲相，於廳事坐屏後置二大甕，凡有人投利害文字，皆置中，滿則焚之通衢。李沆嘗言：“居重位，實無補萬分，惟中外所陳利害，一切報罷之，唯此足以報國耳。”朝廷防制，纖悉備具，或循所陳請施行一事，卽所傷多矣。趙普、李沆，皆古之名臣也，相業如此，書之簡策，以爲得體。近見諸曹與夫言事者，紛紛獻策，條令日下，亦有不逾時而還罷者，教令之擾，無大於此。臣等曲學偏見，無所知識，災異之來，敢以此數事爲言者，非苟欲區區牽合附會而冒陳之也。考之經史，而一則曰：“冬行夏令，雷乃發聲。”

게 되는 것입니다. 조보(趙普)17745) 가 정승[相]이 되어 청사(廳事) 좌병(坐屏) 뒤에 큰 향아리 둘을 놓고 어떤 사람이 이해(利害)에 관한 글을 보내는 자가 있으면 모두 그 안에 넣었다가 가득 차면 큰 거리에 불태웠고, 이항(李沆)17746) 은 일찍이 말하기를, ‘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진실로 만분의 하나도 도움이 없었으나, 오직 중외(中外)에서 아뢰는 이해(利害)에 관한 것은 일체 보고해 과하였으니, 이것만이 나라에 보답하였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의 방수(防戍)제도가 자세하게 갖추어졌는데, 혹시 아뢰어 청하는 데에 따라서 한 가지 일씩 시행하게 되면 곧 손상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조보와 이항은 모두 옛 명신(名臣)으로 정승으로서의 업적이 이와 같았으므로 간책(簡策)17747) 에 쓰기를, 대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즈음 제조(諸曹)와 일을 말하는 자가 어지럽게 계책을 바쳐서, 조령(條令)이 날마다 내렸으나 역시 한 철을 지나지 아니하고 도로 과하는 것이 있으니, 교령(教令)의 혼란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은 바르지 못한 학문과 편벽된 소견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재이(災異)가 이름에 있어 감히 이 몇 가지 일로써 말하는 것은 구차하게 끌어 맞추어 함부로 진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經史)를 상고하건대 하나는 ‘겨울에 여름의 영(令)을 행하면 천둥이 소리를 발한다.’라고 하였고, 하나는 ‘겨울에 천둥을 하면 교령(教令)이 어지럽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폐단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대신들에게 보이도록 하고, 이르기를,  
 “이제 이 글을 보건대 토공(土功)을 일으킨 까닭으로써 천변(天變)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전탄(箭灘)의 역사(役事)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백성을 위한 것인데 어찌 이것으로써 천견(天譴)을 불러왔으며, 이제 삼공 육경(三公六卿)이 어찌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서 천변을 불러일으켰겠는가? 단지 나의 부덕(不德)한 소치일 뿐이다. 조정의 일은 진실로

一則曰：“冬雷教令擾。”今之所弊，恐或在此，故謹冒昧而陳之。

命示于大臣等曰：“今觀此疏，以興土功乃召天變，必指箭灘之役而言之也。然此乃爲民也，豈以此而召天譴哉？今三公六卿，豈非其人而召天變哉？只以予之不德耳。朝廷之事，固無可言，只慮刑決有所未至耳。”鄭昌孫等僉啓曰：“今憲府指堤堰巡察使而言，此雖無弊於民，臺諫之言不可不從，請召還。”傳曰：“遣堤堰巡察使，欲糾摘堤內濫耕者耳，何煩民之有？”

	<p>말할 것이 없으나 다만 형옥(刑獄)의 처결이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을까 염려한다.”</p> <p>하니, 정창손(鄭昌孫) 등이 첨계(僉啓)하기를,  “지금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제언 순찰사(堤堰巡察使)를 가리켜 말하였는데, 이는 비록 백성에게 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으니, 청컨대 소환(召還)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제언 순찰사를 보낸 것은 방죽 안에 함부로 경작하는 것을 규적(糾摘)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어찌 백성을 번거롭게 함이 있겠는가?”</p> <p>하였다.</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4 일(을해) 2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유윤겸(柳允謙) 등이 아뢰기를,  “이제 검집의(兼執義) 등을 보내어 환자곡[還上]을 지나치게 거두는 것을 검핵(檢覈)하게 하였으나,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생각건대 이미 수납(收納)하여 반드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겸관(兼官)은 본부(本府)17775) 와 더불어 상회(相會)17776) 하고서 출발하므로 미리 서울을 떠나지 아니하여 소문이 먼저 이를 것이니, 외방(外方) 수령이 누가 듣고 알지 아니하겠습니까? 일에 보탬이 없고 한갓 소요스런 폐단만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다면 따로 한두 조신(朝臣)을 보내어 그 뜻하지 아니할 때에 나가서 적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이것도 대간(臺諫)17777) 의 말을 인하여 보내는 것인데, 만약 두세 고을을 규적(糾摘)하고 오면 어찌 소요스러움이 있겠는가?”</p> <p>하였다.</p>	<p>○弘文館副提學柳允謙等啓曰：“今遣兼執義等，檢覈還上濫徵者。然時已晚矣，想已收納，必無及矣。且兼官與本府相會而發，未離京師，先聲已到，外方守令，孰不聞知？無益於事，而徒有騷擾之弊。如不得已，別遣一二朝臣，出其不意摘發可也。”傳曰：“此亦因臺諫之言而遣也。若糾擿二三邑而來，則豈其騷擾乎？”</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4</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조관(朝官)을 보내어 환자곡의 징수를 검핵(檢覈)하게 한 것은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을 병들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나 어리석은 백성이 망령되게</p>	<p>○戶曹判書李德良等來啓曰：“今分遣朝官，檢覈還上，恐其濫徵而病民。然愚民妄謂官家勿徵，逋負必不納矣。</p>

<p>일(을해) 3번째기사</p>	<p>생각하기를 관가(官家)에서 징수하지 말도록 한다고 하여 부채를 만드시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금년은 조금 풍년이 들었는데 묵은 빚을 다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뒤에 흉년을 만나면 장차 무엇으로 진구(賑救)하겠습니까?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今年稍稔，若不盡徵宿債，後遇凶荒，將何以賑救？請勿遣之。”從之。</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6 일(정축)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간(大司諫) 김수손(金首孫)이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의 백성이 그 조부(祖父)로부터 다른 도(道)에 흘러 들어가서 사는 자를 모두 쇄환(刷還)하는데, 수령이 가서 사는 세월의 오래고 가까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지 본관(本貫)만 상고하여 모두 강제로 쇄환하므로 민간(民間)이 지극히 소요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추쇄 절목(推刷節目)이 자못 상세한데 어찌하여 소요스런 데 이르는가?” 하고, 곧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려 묻게 하였다. 김수손이 또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에 음란(淫亂)한 풍속이 크게 성행하여 지아버가 없는 여자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사찰(寺刹)에 돌아다니며 놀면서 선음(宣淫)하며 혹은 아내를 놓아 남을 주어서 의식(衣食)의 밑천을 삼고 예사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이 풍속이 점점 젖어들어서 충청도(忠淸道)에까지 미쳤습니다. 청컨대 엄하게 금하소서.” 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척(李則)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어 이 풍속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절의 중이 혹은 복벽(複壁)17779) 에나 혹은 천화판(天花板)17780) 위에 숨겨 두었다가 마음대로 간음(奸淫)하고, 여러 사찰(寺刹)에 돌려가면서</p>	<p>○丁丑/受常參，視事。大司諫金首孫啓曰：“江原、黃海、平安道之民，自祖父流寓他道者，竝刷還，守令不顧流寓久近，只考本貫，竝勒刷還，民間至爲騷擾。”上曰：“推刷節目頗詳，何至騷擾乎？”卽命承旨下書，問于諸道觀察使。首孫又啓曰：“全羅淫風大行，女之無夫者數十爲群，遊遍寺刹宣淫，或縱妻與人，以資衣食，恬不知恥。此風浸淫，及於忠淸道，請痛禁。”同副承旨李則曰：“臣嘗爲全羅道觀察使，詳知此風。寺僧或於複壁、或於天花板上藏匿之，恣意淫奸，轉傳諸刹，盛備酒食，爭相迎迓，習以成風。臣令守令搜捕，定爲官婢，其風稍息。請令守令嚴加檢察，使不得恣行。”上曰：“僧人本逃賦避役，遊手而食，又恣行淫欲，以累風化，不可不禁。”仍命承旨下書觀察使痛禁之。</p>

	<p>술과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다투어 서로 맞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풍속을 이루었는데, 신이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수색해 잡아서 관비(官婢)로 삼게 하였더니, 그 풍속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청컨대 수령으로 하여금 엄하게 검찰(檢察)을 더하여 방자히 행하지 못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은 본래 부역(賦役)을 도피하고 놀면서 먹는데, 또 음욕(淫慾)을 방자히 행하여 풍화(風化)를 더럽히니,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p> <p>하고, 인하여 승지에게 명하여 관찰사에게 글을 내려서 엄하게 금하도록 하였다.</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2월 7일(무인) 1번째기사</p>	<p>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송영(宋瑛)이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 죄수 사노(私奴) 오장(吾壯), 양인(良人) 임막동(林莫同), 사노(私奴) 도토리(都吐里) 등이 양주(楊州) 나옥동(羅玉同)의 집에 들어가 유숙(留宿)하면서 도둑질하려고 꾀하여 나옥동의 아내와 자식 등 다섯 사람을 죽이고 재물(財物)을 탈취(奪取)한 죄는, 율(律)이 오장은 수범(首犯)이 되므로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재산은 죽은 자의 집에 붙이는데 해당하고, 임막동과 도토리는 수종(隨從)이므로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처자(妻子)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영구히 있는 곳의 관노비(官奴婢)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옥(典獄) 죄수 재인(才人) 석을동(石乙同)과 이산(李山) 등이 결당(結黨)하여 조계암(曹溪菴) 중을 겁타(劫打)하고 잡물(雜物)을 강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영구히 있는 곳의 관노비로 붙여야 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장령(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아뢰기를,  “금년에 민간(民間)이 매우 빈곤한데, 만약 내년 봄에 강무(講武)하면 백성의 곤란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청컨대 명년 가을까지 기다리소서.”</p>	<p>○戊寅/視事。 右副承旨宋瑛三覆啓：“義禁府囚私奴吾壯、良人林莫同、私奴都吐里等，投宿楊州羅玉同家，謀欲作賊，殺玉同妻子等五人，奪取財物罪，律該吾壯爲首，凌遲處死，財產斷付死者之家；莫同、都吐里隨從，斬不待時，妻子依《大典》永屬所在官奴婢。典獄囚才人石乙同、李山等結黨，劫打曹溪菴僧，強奪雜物罪，律該斬不待時，妻子依《大典》永屬所在官奴婢。”從之。掌令奉元孝啓曰：“今年民間甚貧困，若於明春講武，則民困滋甚，請待明秋。”上曰：“若待秋講武，則軍馬芻糧易備而民不病矣。但慮久不講武，軍政解弛也。”戶曹判書李德良啓曰：“前日打圍，臣爲大將，軍士</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가을을 기다려서 강무하면 군사와 말의 풀과 양식을 준비하기가 쉬워서 백성이 고통스럽지 아니할 것이나, 다만 오래 강무하지 아니하면 군정(軍政)이 해이할까 염려스럽다.”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이 아뢰기를,  “전날의 사냥[打圍] 때에 신이 대장(大將)이 되었는데, 군사가 행렬(行列)을 떠나서 항오(行伍)를 잃고, 한 사람도 기율(紀律)을 아는 자가 없었으니, 강무는 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짐작하여 헤아리겠다.”  하였다.</p>	<p>離行失伍，無一人知紀律，講武不可廢也。” 上曰：“予將酌量。”</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2월 10일(신사)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  “《춘추(春秋)》에 겨울에 얼음이 없는 것을 기록하였는데,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정교(政教)가 해이할 형상이다.’ 하였고, 홍범(洪範)17781) 에 이르기를, ‘예(豫)17782) 하면 항상 따뜻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역시 정사가 해이함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추울 때를 당하여 도리어 따뜻하니, 어찌 이를 초래한 바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두려워하여 마음을 수양하고 반성해서 천견(天譴)에 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얼음을 갈무리하는 것은 큰 일인데 올 겨울에는 따뜻하여 얼음이 없으니 이는 나의 과실에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일양지월(一陽之月)17783) 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니 마땅히 마음을 수양하고 반성해야 할 것인데, 요즘 듣건대 조사(朝士)들이 기생을 부</p>	<p>○御經筵。講訖，侍講官鄭誠謹啓曰：“《春秋》書‘無冰’，先儒以爲政教解弛之象也。《洪範》曰：‘豫恒暘若’，此亦言政之解弛也。今當沍寒而反燠，豈無所召？請恐懼修省，以答天譴。” 上曰：“藏冰，大事也，今冬暖無冰，此由予之失也。” 同知事金宗直啓曰：“一陽之月大雨雷電，所宜修省也。而比聞朝士招妓作樂，男女雜坐，日事沈酗，請禁之。” 上問左右，領事韓明澮對曰：“臣老病，不與宴會久矣，不知朝士之崇飲如此也。如有所聞，敢不啓乎？” 上曰：“法非不嚴也，但奉法者未舉行耳。憲府其痛禁之。” 宗直曰：</p>

	<p>르고 풍악을 울리며 남녀(男女)가 섞여 앉아서 날마다 술에 빠져 취하기를 일삼는다 하니, 청컨대 금하소서.”</p> <p>하므로, 임금(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p> <p>“신은 늙었고 병들어 연회(宴會)에 참여하지 못한 지가 오래이므로 조사(朝士)가 술을 숭상하기를 이처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들은 바가 있었으면 감히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법이 엄하지 아니함이 아니나 다만 법을 받드는 자가 거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헌부에서는 이를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김종직이 아뢰기를,</p> <p>“지금 조관(朝官)이 청축(請囑)을 공공연히 행하여 비록 당연히 행할 일일지라도 청축 편지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 공도(公道)17784)가 서지 아니함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무릇 관(官)의 일을 받드시 청탁(請托)에 인하여 얻는 것이 가하겠는가? 사헌부에서는 금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한명회(韓明澮)는 모든 사사로운 모임과 맞이하고 전송하는 데에 가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연회(宴會)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입(出入)이 없는 것으로써 아뢰었으니, 듣는 이가 기망(欺罔)하는 것이라고 여기었다.” 하였다.</p>	<p>“今之朝官公行請囑，雖應行之事，非請簡則不得爲，公道不立，莫甚於此時。” 上曰：“凡官事，必因請托而得之，可乎？憲府不可不禁。”</p> <p>【史臣曰：“韓明澮，凡私會迎餞無不往，而以不與宴會且無出入啓之，聞者以爲欺罔也。”】</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2월 14</p>	<p>전교하기를,</p> <p>“정인사(正因寺)의 공불(供佛)하는 백미(白米)를 한 달에 9두(斗)로 더하고 자단향(紫檀香)을 20근(斤)으로 하라.”</p>	<p>○傳曰：“正因寺供佛白米，一朔加九斗，紫檀香二十斤。”</p>



일(을유) 3번째기사	하였다.	
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14 일(을유) 4번째기사	<p>양양 부사(襄陽府使) 유자한(柳自漢)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무능한 자질로써 외람되게 한 고을의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가무는 해를 만나 백성이 굶주려 죽을 것을 근심하여 어리석은 힘을 다하여 흉년을 구제하는 일을 받들어 행하되, 위로는 전하의 부지런하고 근심하시는 마음에 부응(副應)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생민(生民)의 바라는 바를 위로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준비한 계책이 있었던 바, 감히 좁은 소견으로써 우러러 신람(宸覽)17809) 을 모독하니 굶어살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조종(祖宗) 이래로부터 의창(義倉)17810) 을 두고 군자창(軍資倉)17811) 을 두고 상평창(常平倉)17812) 을 두어서 흉년에 대비하는 법이 지극히 정밀하고 빠뜨린 계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公私)의 저축이 모두 적어서 창름(倉廩)의 이름만 있고 창름의 실적이 없으며, 또 백성은 원대한 생각이 없어서 곡식이 조금 풍년이 들면 문득 술을 빚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하고 마시며, 또 그 먹는 것이 다른 나라의 갑절이나 되어 한 사람이 항상 두어 사람의 먹는 것을 겸하므로, 명년 봄에 이르지 아니해서 저축한 양식이 이미 다하면 종자와 양식의 수요를 일체 관대(官貸)17813) 에 의존하여 상습(常習)이 되었으니, 만일 적병의 경보(警報)나 수년의 재해[災]가 있으면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신은 그욕이 한심스러워합니다.  신이 그욕이 보건대, 중국이 나라를 창건할 처음에 순리(循吏)17814) 휴리(携李) 주씨(朱氏)가 《목민심감(牧民心鑑)》을 지었으며 당시 호걸(豪傑)인 오흥(吳興) 반씨(潘氏)가 이를 써서 고을을 잘 다스리게 되었었는데, 그 비항조(備荒條)에 이르기를, ‘대구(大口)17815) 는 해마다 벳곡이나 혹은 콩·보리를 몇 말씩 저축하고 소구(小口)17816) 는 벳곡 몇 말씩을 저축하되, 제도를 의창(義倉)과 같게 하여 해마다 저축을 더하였다가, 만일 흉년을 만나면 곧 예전 수량대로 스스로 나누어 주도록 하고, 관부(官府)에서는 그 일에 간여하지 아</p>	<p>○襄陽府使柳自漢上疏曰：  臣以劣能，叨宰百里，值歲早乾，民虞溝壑，載竭庸愚，奉揚荒政。惟恐上不副宵旰之憂，下不慰生民之望，思所以先爲之備者，蓋有日矣。敢以管見，仰瀆宸覽，伏惟垂察。國家自祖宗以來，置義倉焉，置軍資焉，置常平焉，其所以備荒之法，至精至密，而算無遺策矣。然公私儲積俱爲尠少，有倉廩之名而無倉廩之實。且民無遠慮，禾稼稍登，輒爲酒醪，群聚宴飲，又其啖食，倍於他國，一人常兼數人之餐。未至來春，儲蓄已竭，種糧所需一仰官貸，習以爲常。萬有(刀) [刁] 斗之警、數年之災，國胡以應之？臣竊寒心。臣竊觀中朝開創之初，有循吏携李朱氏作《牧民心鑑》。當時豪傑吳興潘氏用之，以致百里之善治。其備荒之條乃云：“大口歲積穀，或豆麥幾斗，小口積穀幾斗，制如義廩，歲歲加積。如遇凶年，即如舊數自分給之，官府不預其事。”李悝作平糶之教，魏文侯用之，以致國家之儲峙。其平糶之條乃</p>

니한다.’라고 하였고, 이이(李愔)17817) 는 평적(平糶)17818) 의 법(法)을 만들었는데 위(魏)나라 문후(文侯)가 써서 국가의 저축을 이루었습니다. 그 평적법의 조목에 이르기를, ‘해[歲]에는 상숙(上熟)17819) ·중숙(中熟)·하숙(下熟)이 있는데, 상숙 때에는 10분의 3을 거두고 중숙 때에는 10분의 2를, 하숙 때에는 10분의 1을 거두었다가, 대기(大飢) 때에는 대숙 때에 거둔 것을 내어 주고 중기(中飢) 때에는 중숙 때에 거둔 것을 내어 주며 소기(小飢) 때에는 하숙 때에 거둔 것을 내어 준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이미 경험한 일이며 흉년에 대비하는 좋은 법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주씨의 《목민심감》은 식구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자세한데 해의 풍흉(豐凶)을 비교하는 데에는 간략하며, 이이의 평적(平糶)은 풍흉을 비교하는 데에는 자세한데 식구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간략하니, 이른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며 저기는 상세하고 여기는 간략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주씨의 식구를 헤아리는 법을 가지고 이이의 해의 풍흉을 비교하는 계책을 참작하여, 만약 해가 대숙(大熟)이면 대구(大口)는 곡식 약간 말을 내고 소구(小口)는 곡식 약간 말을 내며, 중숙(中熟)이면 대구는 곡식 몇 말을 내고 소구는 곡식 몇 말을 내되, 하숙(下熟)에도 이와 같게 하여, 많아도 한 섬에 지나지 아니하고 적어도 닛 말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해마다 저축을 더하며, 해가 오래 쌓이면 저축한 곡식도 더욱 많아질 것이니, 어찌 다만 옛사람의 ‘3년을 경작하면 1년 먹을 것이 남고 9년을 경작하면 3년 먹을 것이 남는다.’는 것뿐이겠습니까? 흉년에는 그 들어온 것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흠어 주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 상평창(常平倉)·의창(義倉)의 상환(償還)처럼 하지 말면, 그 곡식이 비록 관부(官府)의 창고에 들어오기는 하였을 지라도 자기 집에 저장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백성들이 모두 스스로 즐겁게 여기고 다른 날의 장마지고 가무는 것을 근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의논하기를, ‘백성의 재물을 저축하였다가 백성의 급함을 구제하는

云：“歲有上中下熟，上熟則糶三，中熟則糶二，下熟則糶一。大飢則發大熟之所斂，中飢則發中熟之所斂，少飢則發下熟之所斂。”此皆已驗之事，而備荒之良法也。雖然朱氏之《心鑑》，詳於度口之大小，而略於較歲之豐歉；李愔之平糶，詳於校歲之豐歉，而略於度口之大小。所謂知其一而不知其二，詳於彼而略於此者也。臣愚以謂以朱氏度口之法，參之以李愔較歲之策，若歲大熟則大口出粟若干斗，小口出粟若干斗；中熟則大口出粟幾斗，小口出粟幾斗；下熟亦如之，多不過於一碩，小不下於五斗。歲歲加積，積年愈久，積穀愈多，豈特古人三年耕餘一年之食、九年耕餘三年之食而已哉？凶年則計其所入之多寡，散之以利民，而勿使如常平、義倉之還償，則其爲粟也，雖入於官府之廩，而無異於自家之儲，民皆自以爲樂，而不憂他日之水旱矣。或者議曰：“儲其民財，濟其民急，法非不善也。然法之末流，弊必生焉，豈非後日斂散之際，或是病民之端乎？”(乎)臣則以謂或者之言，似然而猶未也。因百姓之力，以生百姓之財，取

것은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이 끝에 가서는 폐단이 반드시 생기는 것인데, 후일에 거두고 흠여 주는 즈음에 혹시 백성을 병들게 하는 단서가 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어떤 이의 말은 그럴듯하지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힘을 인하여 백성의 재물을 생산하고 백성의 재물을 취(取)하여 백성의 소비에 이바지하는데 어찌 백성의 병통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백성이 먼 앞날을 생각함이 없어서 쓰기를 절약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굶주려 구렁에 죽는 것보다는 관(官)에서 거두어 저축하여 남용을 조절하고 급할 때에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관에서 그 곡식을 거두고 백성이 스스로 소비를 절약하여 갑자기 흉년을 만나면 분(分)17820)에 따라 고르게 받고 후일에 상환하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황정(荒政)17821)의 한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주씨(朱氏)가 일찍이 하양(河陽) 영진(寧津)의 수령이 되었었고, 이어서 두 번 헌절(憲節)17822)을 가지고 진(秦)·초(楚) 두 고을을 거쳤는데, 그 흉년을 대비하는 일에는 먼저 이 일을 급하게 하여 한 때에 효력을 거두었다고 《목민심감(牧民心鑑)》에 나왔고, 그 뒤에 기록하기를, ‘뒤의 목민자(牧民者)17823)가 과연 능히 그 마음을 같이하여 정사에 시행하면 순리(循吏)의 이름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엿드려 생각하건대 전하(殿下)께서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이 법을 거행하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대신들에게 보이게 하니,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이 법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청컨대 우선 한 고을만 시험하여 그 편부(便否)를 시험하게 하소서.”

하고,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이는 비록 예전의 아름다운 법이기는 하더라도 지금 거행(舉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百姓之財，以供百姓之費，安有爲民之病乎？與其民無遠慮，用之無節而卒轉死於溝壑，孰若官自收貯而節其侈用，以備緩急乎？官收其粟，民自節費，卒值凶年，隨分均受，而不憂後日之還償，豈非荒政之一助乎？朱氏嘗宰河陽之寧津，繼兩持憲節歷秦、楚二郡，其於備荒事，首急此事，收効一時，著諸《心鑑》。而誌其後曰：“後之牧民者，果能同其心而施諸政，亦不失循吏之名。”伏惟殿下特降綸音，頒諸中外，舉行此法，則國家幸甚。

命示大臣。鄭昌孫議：“此法似爲便益，請姑試一邑，驗其便否。”韓明澮、尹弼商議：“此雖古之美法，今難舉行。”沈澮議：“斂民私穀藏於官府，民不得費用，似若利於民。然出入之時，爲害於民必多，斷不可行也。”洪應議：“此救荒之良策，然近來連遭饑荒，民無儲積，未免負債，奚暇得贏餘以蓄之哉？當俟豐年穀粟有餘，徐議施行。”李克培議：“此策古人之有效，然古今異宜，行之不得其道，則終爲民害。令自漢訪問民願，姑試襄陽一邑，

	<p>“백성의 사곡(私穀)을 거두어서 관부(官府)에 간직하여 백성이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백성에게 유리할 듯하나, 곡식을 내고 들일 때에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는 흉년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연달아 기근(飢饉)을 만나 백성들이 저축한 것이 없어서 부채(負債)를 면치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남는 것이 있어 저축하겠습니까? 마땅히 풍년이 들어 곡식이 남는 것이 있기를 기다려서 천천히 의논해 시행하도록 하소서.”</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이 계책은 옛사람이 시행하여 효과가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고금의 형편이 달라서 시행하는 데 그 적당한 길을 얻지 못하면 마침내 백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유자한(柳自漢)으로 하여금 백성이 원하는가를 묻게 하여 우선 양양(襄陽) 한 고을만 시험하여 편부(便否)를 보도록 하소서.”</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거두어 흠어 주는 즈음에 아전[吏]이 이를 인연해 부정한 짓을 하여 백성이 이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 해를 받을 것이니, 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민간에 부채가 매우 많아서 다 갚지 못하는데 하물며 명목 없는 곡식을 민간에 거두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법은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지금은 행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는데,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p>	<p>以觀便否。” 盧思愼議：“斂散之際，吏緣爲奸，民不蒙利而反受其患，恐不可行。” 尹壕議：“民間逋負甚多，不能盡償，況以無名之粟，徵於民間可乎？法雖美，今不可行也。” 從克培議。</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2월 15일(병술) 5번째기사</p>	<p>밤에 입직(入直)한 승지(承旨)·주서(注書)·홍문관(弘文館)에 명하여 ‘납설(臘雪)17829’을 제목으로 배율(排律) 십운(十韻)을 짓게 하고, 인하여 술을 내려 주었다.</p>	<p>○夜，命入直承旨、注書、弘文館，製‘臘雪’排律十韻，仍賜酒。</p>
<p>성종 198권, 17년</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p>	<p>○丁亥/上幸景福宮御思政殿，置酒接</p>

<p>(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16 일(정해) 1번째기사</p>	<p>고 이다지합(李多之哈)·상랑가(尙郎可) 등 다섯 사람을 접견(接見)하니 종친(宗親)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와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滄)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에게 명하여 이다지합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날씨가 춥고 먼 길에 고생하며 왔겠구나.”  하니, 이다지합 등이 절하며 사례하기를,  “편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는 모두 성상의 은혜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다지합과 상랑가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見李多之哈、尙郎可等五人。宗親德源君曙、靑松府院君沈滄等入侍。上命禮曹判書柳攄語多之哈等曰：“汝等天寒遠路，艱苦而來。”多之哈等拜謝曰：“安穩上來，都是上恩也。”上命多之哈、尙郎可進爵，仍賜物有差。</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17 일(무자) 3번째기사</p>	<p>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입직(入直)한 도총부(都摠府)·충훈부(忠勳府)·홍문관(弘文館) 관원(官員)을 불러서 ‘눈이 개자 먼 경치를 바라본다.[雪霽望遠]’는 제목으로 배육(排律) 십운(十韻)을 지어 올리게 하고, 주서(注書)·사관(史官)도 짓게 하라.”  하고, 인하여 술을 내려 주었다.</p>	<p>○傳于承政院曰：“其召入直都摠府、忠勳府、弘文館官員，共製‘雪霽望遠’排律十韻以進，注書、史官亦令製之。”仍賜酒。</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20 일(신묘) 4번째기사</p>	<p>이에 앞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이 와서 아뢰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논에 심을 볍씨가 대개 17만여 석(碩)인데 여러 고을에서 받아들인 환자곡[還上]은 겨우 5만여 석이므로,明年的 곡식 종자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경기(京畿) 백성이 경창(京倉)의 적미(糶米)17834) 를 갚지 못한 것이 또한 많이 있으니, 청킨대 피곡(皮穀)으로 각각 본고을에 바치게 하여 명년 봄의 볍씨를 준비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호조(戶曹)에 물으니, 호조에서,  “청킨대 경창 환자곡 3분의 2는 경창에 바치고 그 1분은 벼로 본고을에 바치게 하여 볍씨에 보태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滄)·심회(沈滄)·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호조에서 아뢴 대로 하소서.”</p>	<p>○先是，京畿觀察使成健來啓曰：“道內諸邑水田種租，大概十七萬餘碩，而諸邑所納還上，僅五萬餘碩，明年穀種，無以可辦。京畿之民未償京倉糶米者，亦多有焉，請以皮穀各納本邑，以備明春稻種。”上問戶曹，戶曹請以京倉還上三分之二，納於京倉，其一分，以租納本邑，以補稻種。至是命議大臣。鄭昌孫、韓明滄、沈滄、李克培、盧思愼、尹壕議：“依戶曹所啓。”洪應議：“今民已春米，欲納京倉，民之儲畜垂罄，將何以得皮穀以納</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지금 백성이 이미 방아를 찧어서 쌀을 경창에 바치려고 하여 백성의 저장한 곡식이 거의 다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피곡을 구하여 바치겠습니까?”  하니, 호조에 전교하기를,  “각 고을 백성이 경창 환자곡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 반(半)은 피곡으로 본고을에 바쳐서 볍씨를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乎?” 傳于戶曹曰: “各官人民未納京倉還上者, 隨民願, 爲半納皮穀於本邑, 以備稻種。 ”</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2월 21일(임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이덕량(李德良)이 아뢰기를,  “경기 백성에게 꾸어준 경창미(京倉米)를 반(半)은 본고을에 바치게 하였는데, 지금 광흥창(廣興倉)·군자감(軍資監)에 저장한 곡식이 넉넉지 못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전의 아뢴 바에 의하여 3분의 2를 경창(京倉)에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무리 좋은 전지가 있을 지라도 종자가 없으면 이는 버리는 전지이다. 관찰사(觀察使)가 민간(民間)에 종자가 없는 것을 알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뿐이다.”  하였다.</p>	<p>○壬辰/御經筵。 講訖, 特進官李德良啓曰: “京畿人民所糶京倉米, 令半納於本邑。 今廣興倉、軍資監所儲不敷, 甚可慮也。 請依前啓三分之二, 納于京倉。” 上曰: “雖有良田, 無種是棄之也。 觀察使知民間無種啓之, 故從之耳。”</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2월 21일(임진)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지 아니한 경창(京倉)의 환상곡[還上]은 호조(戶曹)의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 “各官未納京還上, 依戶曹所啓施行。”</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12월 25일(병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두 대비전(大妃殿)에 진연(進宴)하고, 인하여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 및 제장(諸將)과 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官)에게 술과 풍악을 내려 주었다.</p>	<p>○丙申/上進宴于兩大妃殿, 仍賜酒樂于入直兵曹、都摠府及諸將、承旨、注書、史官。</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27 일(무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동보이다(童甫伊多) 등 다섯 사람을 접견(接見)하니,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 등과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澹)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동보이다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戊戌/上御宣政殿置酒，接見童甫伊多等五人。月山大君婷等、靑松府院君沈澹等入侍。命童甫伊多進爵，仍賜物有差。</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28 일(기해) 2번째기사</p>	<p>성절사 질정관(聖節使質正官) 이창신(李昌臣)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북경(北京)에 갈 때 《소문충공집(蘇文忠公集)》 17862) 을 사 오도록 명하셨는데, 신이 북경에서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요동(遼東)에 이르러 우연히 진사(進士) 전(前) 지현(知縣) 소규(邵奎)를 만나서 더불어 말하고 인하여 《소문충공집》을 구하니, 소규가 곧 장서각(藏書閣)에 맞이하러 들어가서 보이고는 인해 책을 주었습니다. 신이 값을 주려고 하자, 소규가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어찌 값을 받겠는가? 주는 까닭은 다른 날의 잊지 아니하는 자료로 삼는 것뿐이다.’라고 하며, 인하여 시(詩)와 아울러 서(序)를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좋은 책을 얻어 왔으니 잘하였다. 다만 그대가 소규와 서로 접할 때에 말로 주고 받았는가? 아니면 문자(文字)로 창화(唱和)17863) 하였는가?” 하니, 이창신이 아뢰기를, “술을 마시는 즈음에 절구 사운(絕句四韻)으로 서로 창화하였을 뿐입니다.” 하고는, 인하여 소규의 시(詩)를 올렸다.</p>	<p>○聖節使質正官李昌臣來啓曰：“臣赴京之時，命市《蘇文忠公集》，臣求諸北京，未得乃還，到遼東偶逢進士前知縣邵奎，與之語因求《蘇集》，奎即迎入藏書閣以示，仍贈之。臣欲償之，奎却之曰：‘何用價爲？所以贈之者，以爲他日不忘之資耳。’仍贈詩并序。”傳曰：“得好書而來，善矣！但爾與邵奎相接，以言往復乎？抑以文字唱和乎？”昌臣啓曰：“飲酒之際，但以絕句四韻相唱和耳。”仍進邵奎詩。</p>
<p>성종 198권, 17년 (1486 병오 / 명 성화 (成化) 22년) 12월 30 일(신축)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술을 내려 주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입직(入直)한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과 사관(史官) 등과 더불어 밤을 지키면서 즐거움을 다하라.” 하고, 인하여 관탕(官帑)의 〈물건을〉 내려 주었다.</p>	<p>○賜酒承政院。仍傳曰：“與入直兵曹堂上、郎廳、史官等，守夜盡歡。”仍賜官帑。</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월 3일</p>	<p>궁온(宮醞)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주어서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總府)·사관(史官)과 더불어 마시게 하고, 인하여 홍매(紅梅) 한 가지를 내어 주며 각각 배율 팔운(排律八韻)17876) 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p>	<p>○賜宮醞于承政院，令與入直兵曹、都總府、史官飲之。仍出紅梅一枝，令各製排律八韻以進。</p>

(갑진) 2번째기사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大司憲) 김자정(金自貞)이 아뢰기를,  “이축(李瀾)의 죄를 신 등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재상(宰相)으로부터 홍문관(弘文館)에 이르기까지 모두 종친과 조관(朝官)은 구별이 없다고 말하는데 전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온 조정이 모두 옳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운 본의가 반드시 이와 같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김수손(金首孫)이 아뢰기를,  “조관이라고 일컬으면 종친도 그 가운데 포함된 것이니, 반드시 《대전》을 고친 뒤에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서로 이이(離異)하도록 하고 죄를 과(科)하여 조정의 기강(紀綱)을 바로잡으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대전》의 본뜻은 종친도 그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무식한 무리로 군신(君臣)의 명분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으나, 만약 조금이라도 의리를 아는 자라면 누가 감히 범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시녀(侍女)에게 장가드는 것을 금하는 법은 어느 때에 비롯되었는가?”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있었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가까이 모시는 어느 궁녀가 밖에 나가서 밤에 술을 마신 자가 있었으므로 곧 이 법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고, 참판(參判) 유순(柳洵)은 아뢰기를,</p>	<p>○丁未/受常參，視事。大司憲金自貞啓曰：“瀾之罪，臣等累請，竟未蒙允。自政府宰相以至弘文館，皆以謂宗親與朝官無別，而殿下不聽，舉朝皆以爲未快。”上曰：“立法本意，必不如是。”大司諫金首孫啓曰：“稱朝官，則宗親亦在其中矣。不必改《大典》然後處之。請離異科罪，以正朝綱。”上顧問左右，左議政洪應對曰：“《大典》本意則宗親，亦在其中矣。無識之徒，未知君臣之分者，不足道也；若稍識義理者，則誰敢犯之？”上曰：“禁娶侍女之法，始於何時？”洪應曰：“自祖宗朝有之，世宗朝有一近侍宮女出外夜飲者，乃申明之。”參判柳洵曰：“瀾事，在朝之士，孰不欲大懲乎？彼無知小民，不足數也；以親近貴戚，娶侍女爲妾，是豈人臣之心哉？請須離異治罪。”判尹魚世謙啓曰：“臺諫如此彈駁，而瀾安然家畜，是豈可忍哉？”自貞、首孫等更啓，上曰：“當更斟酌。”</p>
------------	--	--



	<p>“축의 일은 조정에 있는 선비로서 누가 크게 징계하려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 무지한 소민(小民)이라면 죄를 따질 것도 없으나 친근한 귀척(貴戚)으로서 시녀를 취하여 첩을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된 마음이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이이(離異)하도록 하고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p> <p>하였으며, 판윤(判尹) 어세겸(魚世謙)은 아뢰기를,</p> <p>“대간(臺諫)이 이처럼 탄핵하고 공박하는데 축은 태연히 집에 데리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김자정과 김수손 등이 다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마땅히 다시 참작하겠다.”</p> <p>하였다.</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월 7일 (무신)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오늘은 바로 인일(人日)17881) 이므로 술을 내려 주니,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 및 홍문관(弘文館)과 당일의 경연 당상(經筵堂上)을 빈청(賓廳)에 모이도록 하여 마시라.”</p> <p>하고, 인하여 무신(武臣) 외에는 각각 인일 율시(人日律詩)를 지어서 올리라고 명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今日是人日，故賜酒，其與入直兵曹、都摠府及弘文館、當日經筵堂上，會賓廳飲之。”仍命武臣外各製‘人日’律詩以進。</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월 12일(계축)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이덕량(李德良)이 아뢰기를,</p> <p>“왜인(倭人)이 가지고 온 잡물(雜物)을 관아에서 스스로 화매(和賣)17886) 하니, 그 상비(償費)17887) 가 매우 많아서 1년에 들어오는 여러 관사(官司) 노비(奴婢)의 공포(貢布)가 1년 동안 공급하는 비용에 부족하여 아마도 장차 지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환도(環刀)·자연(紫硯)·치자(梔子)·후추[胡椒] 등 물건은 쓸데없이 쌓아 두었으니, 청컨대 화매(和賣)하여 보충하게 하소서.”</p> <p>하니, 명하여 1년에 왜인이 진상(進上)하는 상비(償費)와 국고에 저장한 포화(布貨)의 수량을 모두 기록해서 아뢰게 하였다.</p>	<p>○御經筵。特進官李德良啓曰：“倭人齎來雜物，官自和賣，其償費甚多，一年所入諸司奴婢貢布，不足以供一年之費，恐將不能支也。如環刀、紫硯、梔子、胡椒等物，積於無用，請令和賣以補之。”命一年倭人進上償費及國庫所儲布貨之數，俱錄以啓。</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p>	<p>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p>	<p>○命議金丹多茂徙內地便否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韓明澮、尹壕</p>

<p>(成化) 23년) 1월 17 일(무오) 5번째기사</p>	<p>한명회(韓明澮)와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요즈음 청암(靑巖)의 야인(野人)이 도망해 본토로 돌아갔는데, 변장(邊將)이 알지 못하는 것은 저들 땅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김단다무를 만약 내지의 깊 숙한 곳에 옮겨 살도록 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뒷날 반 드시 청암 야인의 변(變)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김단다무는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우리 나 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알고 있는데, 혜산(惠山)에 살지 못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 당류를 불러 모아 우리 변경을 침략할까 진실로 염려스러 우니, 내지로 옮겨 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김단다무 등은 조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매우 흉악한데, 이제 고식지계(姑息之計)17906) 로 내지에 살게 하면 그 마음이 더욱 교만하 여 그 악함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 양식·의복·우마(牛馬)·전지(田 地)도 모두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며, 만약 조금이라도 뜻과 같지 않으면 문 득 분을 내고 원망할 것인데,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신의 생 각으로는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위협해서 쇠환(刷還)하게 하면 뒷날의 폐 단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타일러서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 가는 대로 맡겨 두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그 청을 따라 내지에 옮겨 살게 하면 동류들 가운 데 듣고서 본받는 자들을 마침내 반드시 막을 수 없을 것이니, 단서를 열 수 없습니다. 혜산·갑산 등지의 허실(虛實)과 평탄하고 험한 것은 저들이 모두 아는데, 어찌 김단다무 혼자만 알겠습니까?” 하였으며,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議: “近者靑巖野人逃還本土, 而邊將 不知者,以彼土近故也. 金丹多茂若不 於內地深處移居, 稍有不慊, 後必有靑 巖野人之變矣.” 沈澮議: “金丹多茂 宜還本土. 但此人知我國山川險夷, 以不得居惠山爲憤, 嘯聚黨類, 侵我邊 境, 誠爲可慮. 移居內地爲便.” 尹 弼商議: “金丹多茂等不畏朝命, 心甚 凶惡. 今以姑息之計, 使居內地, 則 其心益驕, 其惡難制. 且其口糧、衣 服、牛馬、田地, 亦皆備給. 若稍不 如意, 則便生憤怨, 國家將何以待之? 臣意謂令節度使威迫刷還, 則庶無後 弊.” 洪應議: “開諭還本而不聽命, 則雖任其所之可也. 如從其請, 徙居 內地, 則同類聞而慕效者, 終必不可 遏, 是不可開端也. 惠山、甲山等處 虛實夷險, 彼人等皆知之, 豈獨多茂知 之?” 李克培議: “戎狄非我族類, 其心 必異, 尤當謹嚴, 豈可招致內地與吾民 雜處乎? 令節度使開諭還送, 於策爲 良.” 李崇元議: “金丹多茂等更令開 諭還送, 若不欲還, 依前許於內地移居 似便.” 李鐵堅議: “彼旣云寧死不從, 而勒令還本, 則必生憤怨, 因此作耗必</p>
--	--	--

	<p>“오랑캐는 우리의 동족이 아니므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더욱 삼가고 엄하게 해야 마땅할 것인데, 어찌 내지로 불러 들여서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살게 하겠습니까? 절도사로 하여금 타일러서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좋은 계책입니다.”</p> <p>하고, 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김단다무 등은 다시 타일러서 돌려보내게 하되, 만약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전의 의논에 의하여 내지에 옮겨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p> <p>하였으며, 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저들이 이미 ‘차라리 죽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억지로 본토에 돌아가게 하면 반드시 분노와 원망이 생겨서 이로 인해 난(亂)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따라서 내지에 있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p> <p>하고, 신승선(愼承善)·박성손(朴星孫)·윤해(尹垓)는 의논하기를,  “피인(彼人)들이 지금은 비록 형편이 곤궁하여 투화(投化)17907) 한다고 하더라도 내지로 옮겨서 살도록 한 뒤에 아마도 후회하게 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밀에 사는 야인(野人)들이 만약 전례(前例)를 끌어대어 내지로 옮기기를 청하는 자가 많으면, 국가에서 이미 단서를 열었으므로 중간에 저지시킬 수 없을 것이며, 일일이 응락하면 그 무리가 널리 퍼져 백성들과 섞여서 살게 되어 장차 심복(心腹)의 병이 될 것이니,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아직 승정원에 보류해 두었다가 홍 정승(洪政丞)17908) 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矣。從願處內地爲便。”愼承善、朴星孫、尹垓議：“彼人今雖勢窘投化，移居內地之後，恐有後悔。且城底野人等，若援例請移內地者寔繁，則國家既開端，不可中沮，一一應諾，則其徒蔓延，與民雜處，將爲腸心之疾。令邊將開諭還本爲便。”傳曰：“姑留政院，待洪政丞之還更啓。”</p>
성종 199권, 18년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속기영회	○庚申/上黨府院君韓明澮以徐居正所

<p>(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월 19 일(경신) 1번째기사</p>	<p>서(續耆英會序)’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역대(歷代)에 모두 기영회(耆英會)가 있었습니다. 당(唐)나라 백낙천(白樂天)과 송(宋)나라 문언박(文彦博)과 고려(高麗)의 조통(趙通) 등은 모두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써 기영회를 만들어 태평 시대를 형상하였는데, 당나라 적노(狄盧)와 송나라의 사마공(司馬公)17910) 은 나이가 70이 못되었으나 덕망으로써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전 잘 다스려진 세상의 일이니, 이제 신이 예전 사람의 행한 자취를 본받고자 하여 노신(老臣) 정창손(鄭昌孫)·이염의(李念義)·권지(權至)·권윤(權綸) 등과 모여서 즐겼는데, 서거정·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나이는 비록 70이 넘지 아니하였으나 덕망으로써 기영회에 참여할 만합니다. 다만 나라에 모여서 술마시는 것을 금하는 명이 있으므로 아뢰지 아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아뢰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당나라·송나라·고려 때에는 모두 명신(名臣)이 한 바이니 실로 좋은 일이다. 다만 옛사람들이 반드시 아뢰어서 하였는가?”</p> <p>하자, 한명회가 아뢰기를,  “단지 기영전(耆英傳)만 보았을 뿐이며 아뢰는 예(禮)는 신이 다 알지 못합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춘추(春秋)》의 기영회는 나라에 몇몇한 예(禮)가 있었는데, 지금 회(會)를 하는 것은 단지 마시고 먹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일하는 바가 있는가?”</p> <p>하니, 한명회가 아뢰기를,  “모이는 기한을 드물게 하고 잔치할 물품을 간략하게 갖추며 간소한 바를 힘써 따르고 여생을 즐겁게 할 뿐입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  “예로부터 명신(名臣)은 모두 이 회(會)가 있었는데, 오늘날 원훈(元勳)이 이</p>	<p>製《續耆英會序》來啓曰：“歷代皆有耆英會，如唐之白樂天、宋之文彦博、高麗趙通等，俱以宿德高年，作者英會以象太平，而如唐之狄盧、宋之司馬公，則年未七十，以德望與焉。此前古治世之事。今臣欲倣前迹，與老臣鄭昌孫、李念義、權至、權綸等會歡，而如徐居正、李克培、尹壕，雖未逾七十，可以德望與會。而只以國有會飲之禁，不可不聞，敢來啓耳。”傳曰：“唐、宋、高麗之時，皆名臣所爲，實是勝事。但未知古人必聞奏而爲之耶？明澮啓曰：“但觀《耆英傳》而已，聞奏之禮，臣未悉知。”傳曰：“春秋耆英之會，國有常禮。今之所以爲會者，但以飲食乎？抑亦有所事乎？”明澮啓曰：“踈其會期，略其宴品，務從簡易，但賞餘齒耳。”傳曰：“自古名臣皆有此會，今日元勳如此會歡，不亦可乎？”</p>
--	--	--

	<p>처럼 모여서 즐기니, 어찌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월 19일(경신)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환관(宦官)에게 치부(致賻)하는 것은 비록 전례(前例)가 없더라도 김결(金潔)은 바로 예종 대왕(睿宗大王)의 능(陵)을 모시던 사람이므로 특별히 쌀·콩 아울러 10석, 청밀(淸蜜) 1석, 숯[炭] 8석, 종이 20권을 부의(賻儀)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宦官致賻雖無前例，金潔乃睿宗大王侍陵人，特賻米豆并十碩、淸蜜一碩、炭八碩、紙二十卷。”</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월 23일(갑자) 5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손(金首孫)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 등은 제왕(帝王)이 행할 만한 도(道)와 국가에서 없앨 만한 폐단을 삼가 채집하여 조목(條目)별로 아래에 진술합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경(經)에 이르기를, ‘예전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이는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는 이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으려고 하는 이는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하였으니, 예전의 제왕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궁궁 업업(兢兢業業)17918) 한 것이나 탕왕(湯王)과 문왕(文王)이 율율 익익(慄慄翼翼)17919) 한 것은 모두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여 옳고 그름에 어두우면 아침하는 말을 달게 여기고 바른 의논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여 사람을 쓰고 버리는 데 어두우면 소인(小人)이 벼슬자리에 있게 되고 군자(君子)는 조정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혹시 높고 낮은 데에 이를 것이며 형벌을 쓰는 데에 경중을 잃을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옛 성인(聖人)을 법으로 삼아 그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당(唐) 우(虞) 삼대(三代)의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司諫院大司諫金首孫等上疏曰： 臣等謹採帝王可行之道、國家可祛之弊、條陳于左。 臣等謹按經曰：“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 古之帝王，莫不以正心爲先焉。 堯、舜之兢兢業業、湯文之慄慄翼翼，皆正此心者也。 心苟不正而眩於是非，則諛佞是甘而讜論不入於耳矣。 心苟不正而昧於用舍，則小人在位而君子不立於朝矣，用法或至於低昂，用刑或失其輕重矣，豈不深可畏也哉？ 伏願殿下以古聖爲法而正其心焉，則唐、虞三代之治，可復見於今日矣。 臣等聞古人有言曰：“成立之難如升天，覆墜之易如燎毛。” 甚言創業之至難而守成之爲尤難也。</p>

신 등은 듣건대,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이루어 세우기 어려움은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고 뒤집혀 떨어지기 쉬움은 털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창업(創業)의 지극히 어려움과 수성(守成)의 더욱 어려움을 진지하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것을 가지고 수성(守成)할 때를 당하여서는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하며 선왕(先王)이 세운 법이 있어서 시행하기에 충분하니 높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하는 일 없이 있을 만하며, 사망에서 들어오는 재부(財賦)가 공급하기에 족하니 즐겁게 놀면서 스스로 은혜를 베풀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의 마음이 이에 교만하고 편안하여지기 때문에 정벌(征伐)을 좋아하고 유전(遊畋)을 즐겨하며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일으키고 신선(神仙)의 술법을 사모하는 이가 대를 잇는 임금 중에서 많이 나와 국가의 일이 그릇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끝없이 오직 나라를 근심하라.’는 것으로 그 임금에게 아뢰어 경계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신 등은 듣건대, 예전에 수성(守成)을 잘한 이로 주(周)나라에서는 성왕(成王)·강왕(康王)을 말하고 한(漢)나라에서는 문제(文帝)·경제(景帝)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성왕·강왕을 본받으려고 하신다면 마땅히 옥(獄)에 죄수가 없이 비었던 것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문제·경제를 본받으려고 하신다면 마땅히 큰 창고의 곡식이 붉게 변하도록 나라가 부유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릇 어렵고도 큰 업(業)을 보전하는 이가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면 수성(守成)하는 도(道)를 진실로 몇몇 임금에게 양보함이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전대의 제왕(帝王)이 모두 간(諫)하는 말에 따랐으면 나라가 흥하였고 간하는 말을 거절하였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을 사책(史策)을 상고하면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서경(書經)》에 순(舜)임금의 덕을 일컫기를, ‘자기를 버리고 남의 말에 따랐다.’ 하였고, 탕왕(湯王)의 덕을 일컫기를, ‘간함을 따르고 거슬리지 아니하며 허물을 고치는

何者? 當持盈守成之時, 國既治矣, 民既安矣; 有先王所立之憲章, 足以設施, 可高拱而無爲也; 有四方所入之財賦, 足以供給, 可娛遊而自肆也, 君心於是乎驕且逸矣。 故好征伐、甘遊畋、興土木之役、慕神仙之術者, 多出於繼世之君, 而國家之事非矣。 古人以‘無疆惟恤’進戒其君者, 正爲此也。 臣等聞古之善守成者, 周云成、康, 漢言文、景。 殿下如欲法成、康也, 則當思夫囹圄之空虛者, 何以致然也; 法文、景也, 則當思夫大倉之粟所以紅腐者, 何以致然也? 凡所以保艱大之業者, 無不盡心焉, 則守成之道, 固無讓於數君矣。 臣等謹按前代帝王, 莫不以從諫而興、拒諫而亡, 稽諸史策, 班班可見。 《書》稱舜之德曰“舍己從人”, 稱湯之德曰“從諫弗拂, 改過不吝。” 舜, 大聖人也, 湯亦大聖人也, 其不曰無過, 而曰改過者, 蓋雖聖人不能無過, 而聞過必改者, 乃聖人之所能也。 《史記》稱: “紂爲天子, 智足以拒諫, 言足以飾非。” 紂非無才智者也, 然身滅國亡, 而天下之惡皆歸焉, 以其悞諫而自用也。 夫忠良正直

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순임금은 큰 성인이고 탕임금도 큰 성인인데 허물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고친다고 한 것은,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을 수 없으나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는 것이 바로 성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史記)》에 일컫기를, ‘주(紂)가 천자가 되어 지혜가 간함을 거역하기에 족하고 말이 잘못을 꾸미기에 족하였다.’고 하였으니, 주(紂)가 재주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을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천하의 악(惡)함이 모두 귀착(歸著)되어 간함을 거슬리고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저 충성되고 정직한 말이 처음에는 귀에 거슬려서 미워할 만하나 그 뜻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데 있는 것이며,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이 처음에는 뜻에 따라서 기뻐할 만하나 그 뜻은 임금에게 아첨하여 사랑을 받기를 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주(紂)로써 경계하시고 순임금과 탕임금을 본받으신다면 옹희 태화(雍熙泰和)17920)의 다스림이 오로지 예전에만 훌륭하였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상벌(賞罰)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지극히 공정한 도(道)가 아니면 행할 수 없습니다. 대저 상(賞)이란 것은 공이 있는 이를 표창하는 것인데 한 번 사사로운 데에서 나오면 착한 일을 행하는 이를 권장할 수 없을 것이며, 벌이란 것은 죄가 있는 자를 다스리는 것인데 한 번 사사로운 데에서 나오면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이 있는 자는 비록 원수라도 상을 반드시 주어야 하며, 죄가 있는 자는 비록 귀근(貴近)이라도 벌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賞)은 봄과 여름을 짝하고 벌(罰)은 가을과 겨울을 형상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하늘을 본받아 사사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참람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상벌을 모두 적합하게 한 것은 모두 이 도(道)를 쓴 것입니다.

之言，初若逆耳而可惡也，其意要在愛君而憂國也；諂佞阿諛之言，始若順意而可喜也，其情不過爲媚上徼寵之計耳。伏願殿下以紂爲戒，以舜、湯爲法焉，其雍熙、泰和之治，不獨專美於前矣。臣等謹按賞罰，人主之大柄，非至公之道，不可以行之也。蓋賞者所以旌有功也，一出於私，則爲善者無所勸矣；罰者所以討有罪也，一出於私，則爲惡者無所懲矣。是故有功者雖在仇讎，賞必及焉；有罪者雖在貴近，罰必行焉。故賞以侔春夏，罰以象秋冬，言法天而無私也。高宗之不僭不濫，成王之畢協賞罰者，咸用此道也。伏願殿下以高宗、成王爲法，而用賞行罰之際，一以至公處之，則斯亦帝王之舉也。臣等謹按《書》曰：“常厥德，保厥位。”又曰：“德二三，動罔不凶。”人君之德貴於有常，而不可二三之也。請以一二事言之。蓋恭敬勤儉，此人君之德當然也；進賢退不肖，此人君之德當然也。然厥德靡常而或至於二三焉，則向所謂恭敬者有時而或怠，向所謂勤儉者有時而廢弛，賢者或有時而退，不肖者或有時而進矣。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고종과 성왕을 본받아서 상을 주고 벌을 행하는 즘에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처리하면 이것도 제왕(帝王)이 행할 일입니다.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그 덕을 변함없게 하면 그 위(位)를 보존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 덕을 이뤘다 저뤘다 하면 움직임에 흉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덕은 변함없는 것이 귀하며 이뤘다 저뤘다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한두 가지 일로써 말하겠습니다. 대저 공경(恭敬)과 근검(勤儉)은 바로 임금의 덕에 당연한 것이며, 어진이를 올리고 어질지 못한 이를 물리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임금의 덕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이 일정하지 못하여 혹시 이뤘다 저뤘다 하기에 이르면 앞에서 이른바 공경하는 것이 때로는 더러 게을러지기도 하며 앞에서 이른바 근검하는 것이 때로는 해이해지기도 하며 어진 자가 더러 때로는 물러가기도 하고 어질지 못한 자가 더러 때로는 올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탕(成湯)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며, 문왕(文王)처럼 순일(純一)함을 그치지 아니한 뒤에야 비로소 변함없는 덕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결같이 하라.’는 것은 이윤(伊尹)이 태갑(太甲)17921)에게 고한 말이고, ‘점차 끝까지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징(魏徵)17922)이 당(唐)나라 태종(太宗)에게 경계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끝까지 잘하는 이가 드물다.’고 한 것은 이것이 예로부터 임금의 공통된 병통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이윤과 위징의 말로써 경계를 삼아 매와 개를 놓아 보내고 놀이로 하는 사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첫 정사에 정신을 가다듬는 것임을 아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여 한 가지 일도 옳지 아니함이 없고 한때라도 혹시间断(間斷)함이 없으면 탕왕과 문왕의 정치에 어찌 가까울 뿐이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성왕(成王)이 다스리는 관리를 독려해서 바로잡는 데

必如 成湯之日新又新、文王之純亦不已，然後始可謂之常德矣。是故終始惟一，伊尹告于太甲；漸不克終，魏徵戒于太宗，靡不有初，鮮克有終者，此自古人君之通患。伏願殿下以伊尹、魏徵之言爲戒。知放鷹犬、節遊畋，乃勵精於初政也，則必思夫慎終如始焉；無一事之不然，無一時之或間焉，則湯、文之治，豈特庶幾哉？臣等謹按成王之董正治官也，以冢宰掌邦治，司徒掌邦教，邦禮、邦政則宗伯、司馬主之，邦禁邦土則司寇、司空主之。至於三公則曰，“論道經邦，變理陰陽。”夫經綸之用，藏於無迹，變理之妙，間不容聲，似若無事於事，而未見其設施之迹也。然成王所以重其任，而不與六卿之分職者，同其任焉，何也？蓋三公，上符乾象，下代天工，人主所與共天位，治天職者也。

故居是位者，百責所萃：震撼擊撞，欲其鎮定；辛甘燥濕，欲其調劑，兆民未安，何以集之？四夷未附，何以來之？六氣不調，則思所以和之；百職不舉，則思所以修之。國家之安危、生民之



에 총재(冢宰)로 하여금 방치(邦治)를 맡게 하고, 사도(司徒)로 하여금 방교(邦敎)를 맡게 하며, 방례(邦禮)와 방정(邦政)은 종백(宗伯)과 사마(司馬)가 맡게 하고, 방금(邦禁)과 방토(邦土)는 사구(司寇)와 사공(司空)이 주장하게 하였습니다. 삼공(三公)에 이르러서는 이르기를,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며 음양(陰陽)을 고르게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무릇 경륜(經綸)의 용(用)은 형적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음양을 고르게 하는 묘(妙)는 소라도 들어갈 틈이 없어, 일을 하되 일삼는 것이 없는 듯하여 그 시행하는 자취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왕이 그 임무를 중히 여기면서도 육경(六卿)과 같이 직(職)을 나누고 그 임무를 같이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저 삼공은 위로는 건상(乾象)17923)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천공(天工)17924)을 대신하여 임금과 더불어 천위(天位)를 함께하고 천직(天職)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위에 있는 이는 모든 책임이 모여드니, 진동하고 흔들고 치는 데에는 진정시키려고 하며, 쓰고 달고 마르고 습한 데에는 고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백성이 편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여 편히 모이게 할 것이며, 사망의 오랑캐가 불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여 귀순해 오도록 할 것인가 하며, 육기(六氣)17925)가 고르지 못하면 화합(和合)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모든 직무가 행해지지 못하면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며 국가의 안위(安危)와 민생의 휴척(休戚)에 관계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임무가 중하고도 큰데 어찌 한 가지 일을 맡겨 그 성공을 책임지게 하면서 유사(有司)가 각각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진평(陳平)을 우승상(右丞相)으로 삼았는데, 한 해의 결옥(決獄)과 전곡(錢穀)의 수량을 물으니, 진평이 말하기를, ‘맡은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말하기를, ‘경이 맡은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진평이 말하기를, ‘재상은 위로는 천자를 도와 음양(陰陽)을 다스리고 사시(四時)를 순조롭게 하며, 아래로는 만물의 마땅함을 이루며, 안으로는 백성과 친하여

休戚，無不關焉，則其爲任重且大矣，豈宜委之一事而責其成功，如有司之各掌其務乎？是故漢文帝以陳平爲右丞相，問一歲決獄錢穀之數，平曰：“有主者。”帝曰：“卿所主者何事？”平曰：“宰相上佐天子、理陰陽、順四時，下遂萬物之宜，內親附百姓，外鎮撫四夷，使卿大夫各得任其職焉。”帝乃稱善。唐德宗以李泌爲門下侍郎同平章事，謂泌曰：“自今凡軍旅糧儲事，卿主之。”泌曰：“不可。宰相之職，天下之事咸共平章。若有所主，是乃有司，非宰相也。”帝曰：“朕適失辭，卿言是也。”彼漢、唐君臣，猶知所以處宰相之道，況今薄漢、唐而不居者乎？臣等伏觀今之議政，既周之三公、漢之丞相、唐之門下侍郎同平章事也。然則今之待議政，其如古之待宰相乎？臣等竊觀國家以議政兼領一司之事，名曰提調，固已誤矣。今以築城一事，委左議政洪應，以軍籍一事，委右議政李克培焉，是國家以有司待三公，不以三公之道責三公也，豈不有乖於前代乎？若曰築城重事也，軍籍大事也，不得不委之大臣焉，則臣等竊惑焉。築城、

불따르게 하고, 밖으로는 사이(四夷)를 진압하고 어루만져서, 경대부(卿大夫)로 하여금 각각 그 직무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그제야 옳다고 일컬었습니다.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이필(李泌)을 문하 시랑 동평장사(門下侍郎同平章事)로 삼았는데, 이필에게 이르기를, ‘이제부터 무릇 군려(軍旅)와 양저(糧儲)는 경이 주장하라.’고 하니, 이필이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재상의 직책은 천하의 일을 함께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데, 만약 맡은 바가 있으면 이는 바로 유사(有司)이고 재상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짐(朕)이 마침 실언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저 한(漢)나라·당(唐)나라의 임금과 신하도 오히려 재상이 처(處)할 도(道)를 알았는데, 하물며 지금 한나라·당나라를 박(薄)하게 여기면서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보건대, 지금의 의정(議政)은 바로 주(周)나라의 삼공(三公), 한(漢)나라의 승상(丞相), 당(唐)나라의 문하 시랑 동평장사(門下侍郎同平章事)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의정을 대우하는 것이 예전의 재상을 대우하는 것과 같습니까? 신 등이 그웁이 보건대, 국가에서 의정으로 하여금 한 사(司)의 일을 겸하여 거느리게 하고서 이름을 제조(提調)라고 하니, 진실로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성(築城)하는 한 가지 일을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에게 위임하고 군적(軍籍)의 한 가지 일을 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에게 위임하였으니, 이는 국가에서 유사(有司)로 삼공을 대우하는 것이며 삼공의 도(道)로 삼공을 책(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전대(前代)와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축성은 중한 일이며 군적도 큰 일이므로 대신에게 위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 등은 그웁이 의혹됩니다. 축성과 군적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한갓 일개 유사(有司)의 일일 뿐입니다. 어찌 반드시 천지 음양을 조화(調和)하는 솜씨를 기다린 뒤에야 가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왕(成王)이 삼공을 대우하던 것으로써 삼공을 책(責)하고 한 가지 일을 위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전하께서는 성왕을

軍籍，雖曰事之重且大也，特一有司耳，豈必待贊化調元之手而後可也？伏願殿下以成王之待三公責三公，而不以一事委任焉，可也。若殿下以成王爲法，而今之爲三公者，反不如漢、唐宰相之知所任也，則覆餗伴食之譖起矣，將焉用彼相哉？臣謹按《易》曰：“日中而市，交易而退。”《孟子》曰：“古之爲市者，以其所有，易其所無者，有司治之耳。”蓋市肆之設，其來尙矣，糾察奸僞之法，非獨今時然也。然臣等伏聞今日市肆之中，巧詐成風，澆訛之習，日滋月長，姑舉一二言之，夫滿三十五尺者，爲緜布一匹之長，而今者以三十餘尺爲一匹，甚者聚三四端連作一匹，眩於廣集之中，而取其利焉。紙者所以造文券而經久遠者也，其用廣矣。今之號爲常紙者，其長不滿一尺，其廣不過五六寸，而其薄亦稱是焉。杻炬者所以備宵行也，古者以物百枚束而爲之，今以杻木飾其面而空其中，以(蒿) [藁] 草支其內而束其外，反不如一股之大矣。物皆然，惟此三者爲尤甚焉。此雖細事，亦可以觀世變矣，何不思所以更張之乎？

본받고 있는데 지금 삼공이 된 자가 도리어 한나라·당나라 재상이 소임(所任)을 알던 것과 같지 못하다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꾸지람이 일어날 것이니, 장차 어디에 그러한 정승을 쓰겠습니까?

신이 삼가 살피건대,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한낮에 저자를 열어서 물건을 서로 바꾸고 물러간다.’고 하였고,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예전에 저자를 만든 것은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인데 유사(有司)가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대저 시사(市肆)의 설치는 그 유래가 오래 되었고 간위(奸僞)를 규찰(糾察)하는 법은 지금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오늘날 시사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풍습을 이루어 요와(澆訛)17926) 하는 습관이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커진다고 하니, 우선 한두 가지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대저 35척(尺)에 차는 것이 면포(綿布) 한 필의 길이인데, 지금은 30여 척으로 한 필을 삼고 심한 것은 서너 동강이를 모아서 연하여 한 필을 만들어, 여럿이 모인 가운데에서 속이고 그 이(利)를 취합니다. 그리고 종이는 문권(文券)을 만들어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쓰임이 넓은데, 지금 상지(常紙)라고 부르는 것은 그 길이가 한 자에 차지 아니하고 그 너비는 대여섯 치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얇기도 이에 맞추었습니다. 축거(柎炬)17927) 라는 것은 밤에 다니는 데 준비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물건 1백 매(枚)를 묶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싸리나무를 곁에만 꾸미고 그 가운데에는 비워서 짚으로 안을 채우고 그 밖을 묶었으니 도리어 한쪽 다리의 크기도 안됩니다. 물건이 모두 그러하겠지만 이 세 가지는 더욱 심합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또한 세상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으니, 어찌 다시 고쳐서 바로 잡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대전(大典)》 금제조(禁制條)에 이르기를, ‘신속(新屬)17928) 을 침학(侵虐)하는 자는 장(杖) 60대를 때린다.’고 하였으니, 나라의 제도가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지금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

[○] 臣等謹按《大典》禁制條曰：“新屬侵虐者杖六十。”國制非不嚴也，然今也不畏邦憲而多方以侵責者，滔滔皆是。姑以承文院一司言之，某也新除正字，則必徵供饋之物，名曰‘徵求’，乃自三起數。如清酒三瓶則某魚三尾，某肉三頭，某菓某菜三盤，凡百可口者無不稱是。一有不備，則譴責隨之。如是者必過五度而後，方更以五起數，如向所云也。如是者必過三度而後，方更以七起數，以至九數而後已。以一徵求之物，可以辦一大宴，其費既已多矣。又有‘許參宴’焉，‘免新宴’焉者，皆大辦也。自非膏粱子弟，雖傾資破產，難以應無窮之費，必假貸於人而後企及之耳。非獨承文院爲然。彼成均館也，校書館也，藝文館也，莫不皆然。而藝文館乃四館中之尤甚者也。其徵求視承文猶倍蓰也，其免新、許參視承文猶倍蓰也。又有‘中日宴’焉，此他官所無，而藝文館之所獨也，其費又萬萬矣。然此四館猶有糾察之官也，彼監察者，身爲法官而自放於禮法之外，誰得而糾之哉？臣等

러 가지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가 그 기세가 대단함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선 승문원(承文院) 한 사(司)를 가지고 말하면, 아무개가 새로 정자(正字)에 제수되면 반드시 공궤(供饋)할 물건을 거두는데, 명칭을 ‘징구(徵求)’라고 하여 3에서 수(數)를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청주(淸酒)가 세 병이면 무슨 물고기가 세 마리, 무슨 고기가 세 마리, 무슨 과일·무슨 나물이 세 반(盤)이라고 하여, 무릇 백 가지 먹을 만한 것은 여기에 맞추지 아니함이 없고 하나라도 갖추지 아니하면 견책(譴責)이 따릅니다. 이처럼 하기를 반드시 다섯 차례를 지난 뒤에 다시 5의 수로 시작하여 앞에 말한 것과 같이 하고, 이처럼 하기를 반드시 세차례를 지난 뒤에야 7의 수로 시작하여 9의 수에 이른 뒤에야 그만둡니다. 한 번 ‘징구’하는 물건이 한 번의 큰 잔치를 준비할 만하니 그 비용이 너무 많으며, 또 허참연(許參宴)17929) 이 있고 면신연(免新宴)이 있으니 모두 큰 비용입니다. 자신이 부잣집 자제가 아니면 비록 살림을 다 기울여 없앤다 하더라도 한 없는 비용을 대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남에게 빌린 뒤에야 겨우 미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승문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성균관(成均館)이며 교서관(校書館)이며 예문관(藝文館)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는데, 예문관은 네 관(館) 가운데 더욱 심한 곳입니다. 그 ‘징구’가 승문원에 비하여 갑절이며 면신연과 허참연도 승문원에 비하여 갑절입니다. 또 중일연(中日宴)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다른 관에는 없는 것이고 예문관만 있는 것으로 그 비용이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네 관(館)은 그래도 규찰(糾察)하는 관원이 있지만, 저 감찰(監察)하는 자는 자신이 법관이 되어 스스로 예법(禮法)을 벗어나 방종하니 누가 규찰하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감찰이 되어 새로 온 자는 관직에 제수되면서부터 면신(免新)까지 그 사이에 비록 수십 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날마다 음식을 베풀어 선생(先生)17930)·구주(舊住)를 기다리고 선생·구주가 된 자는 번갈아 드나들면서 잔치하며 맞이하는 것이 없는 날이 거의 없으며 면신연(免新宴)은 이 수(數)에 포함되지 아니함

聞爲監察新來者，自除職抵免新也，其間雖過數十日，必日盛設饌，以候先生舊住焉。爲先生舊住者，更出迭入式宴以邀者，殆無虛日，而免新宴則不在此數也。且日投刺於舊住之第，其爲日不爲少矣，其爲舊住者不爲不多，而其刺紙非厚且廣大者不可，而率以綿布一匹，纔易三張矣，其刺紙之費又不可勝言矣。不特監察爲然。彼錄事也，內禁衛也，凡成衆之官，爭相效尤，以侵責新來者萬端矣。其侵責如是也，故有救爲錄事而不可得者，有求爲內禁衛而不可得者，以其貧窮而難支也。彼皆曰：“匪今斯今，振古如茲，古風不可廢也。”臣等亦知其所從來者遠矣，然其弊未有甚於此時者也。況監察，糾百司之官也；藝文館，朝夕侍從之臣也。猶且視邦憲爲何物，而輦轂之下，法亦不行，臣等竊謂此風不可不革也。臣等謹按《書》曰：“惟辟作福，惟辟作威。”又曰：“臣之有作福作威，其害于而家，凶于而國。”甚言威福之權，不可下移於臣也。今銓曹則注擬人物也，必備三望者，蓋政柄人主之大權，非臣子所得而自專者也。彼軍職

니다. 또 날마다 구주(舊住)의 집에 투자(投刺)17931) 하는데 그렇게 하는 날이 적지 아니하고 그 구주 되는 자도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지(刺紙)17932) 가 두껍고 넓고 큰 것이 아니면 안되는데, 대개 무명 한 필로 겨우 석 장을 바꾸니, 그 자지의 비용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찰만 그러할 뿐 아니라 저 녹사(錄事)며 내금위(內禁衛)며 모든 성중관(成衆官)이 다투어 서로 분반아서 새로 온 자를 여러 가지로 침해합니다. 그 침해가 이와 같기 때문에 녹사를 하려고 구하다가 얻지 못한 자가 있고 내금위가 되려고 구하다가 얻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은 빈궁하여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모두 말하기를, ‘지금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와 같았으니, 옛 풍습을 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신 등도 그 유래한 바가 먼 것을 알고 있으나 그 폐단이 이때처럼 심한 적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구나 감찰은 백사(百司)를 규찰하는 관원이며 예문관은 아침저녁으로 시종(侍從)하는 신하인데도 오히려 국법을 어떻게 보고 있기에 연곡하(輦轂下)17933) 에서도 법이 행해지지 아니하니, 신 등이 그욕이 생각하건대, 이 풍습을 고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오직 임금만이 복(福)을 주고 오직 임금만이 위엄을 내린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신하가 복을 주고 위엄을 주는 것이 있으면 집에 해롭고 나라에 흉하다.’고 하였으니, 위엄과 복의 권세가 신하에게 옮겨갈 수 없음을 심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전조(銓曹)에서 사람을 주의(注擬)17934) 하는 데 반드시 삼망(三望)을 갖추는 것은, 대저 정권(政權)은 임금의 큰 권세이므로 신하가 스스로 오로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군직(軍職)을 제수하는 데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상호군(上護軍) 이하로부터 반드시 한 사람을 의망(擬望)하니, 이는 전하께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벼슬을 주는 것은 바로 전조(銓曹)입니다. 비록 전조에서 사람을 쓰는 공정함이 저울로 물건을 다는 것과 같다 하더라

之除授也則不然，自上護軍以下，必以一人擬望焉，是非殿下爵人也，爵人者乃銓曹也。縱使銓曹用人之公也，如權衡之稱物也，猶不可自占于下也，一有私意容於其間，則陞降之權，在其掌握，政柄潛移于下矣，豈合人君作福之道乎？若曰：“行之已久，今不可卒變也。”則是大不然。如知其非義，則斯速已矣，豈可以行之久而踵而行之耶？況是法也，必一時擅權之臣，取稟於上，以爲冒弄之術也，豈可爲經遠之法乎？臣等伏願自今以往，其擬望也，必備三人，永絕冒濫之弊可也。臣等伏觀東班六品以上者，若因事見罷，則及其復敘也，不授之七品以下之職而又授之六品以上之職，其故何也？蓋自六品以上，謂之參職，七品以下，謂之參外。自六品七品觀之，其等級不相甚遠也；以參上參外觀之，則其間可謂峻絕矣。其不授七品以下之職，而必除六品以上之官者，豈非以此耶？彼西班牙則本是陞降之職也，固不可援此例論也。然自堂上官以下，授司正、司猛、司勇者有之矣。夫堂上，三品以上之職也，位之尊者也；司正、司猛、

도 오히려 밑에서 스스로 차지할 수 없는데, 한 번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용납되면 올리고 낮추는 권세가 그의 손아귀에 있어서 정권이 몰래 아래로 옮겨질 것이니, 어찌 임금이 복을 주는 도(道)에 합당하겠습니까? 만약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어서 이제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크게 옳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 빨리 그만두어야 할 것인데, 어찌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여 따라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법은 반드시 한때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신하가 위에 취품(取稟)하여 농락하는 술책으로 삼은 것인데, 어찌 멀리 전하는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원하건대, 이 뒤로부터는 그 의망(擬望)에 반드시 세 사람을 갖추게 하여 모람된 폐단을 영구히 끊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신 등은 삼가 보건대, 동반(東班)의 6품 이상인 자가 만약 일로 인하여 파면 되었으면 다시 서용(敍用)할 때에 미쳐서는 7품 이하의 직임(職任)에 임명하지 아니하고 또 6품 이상의 직을 주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대저 6품 이상은 참상(參上)이라고 이르고 7품 이하는 참외(參外)라고 이르는데 6품·7품에서 보면 그 등급이 서로 그다지 멀지 아니하나, 참상·참외로 보면 그 사이가 동떨어진다고 이를 만합니다. 7품 이하의 직임에 임명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6품 이상의 벼슬을 주는 것은 어찌 이러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저 서반(西班)은 본시 오르내리는 관직이니 진실로 이 예(例)를 끌어대어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상관(堂上官) 이하로부터 사정(司正)·사맹(司猛)·사용(司勇)에 제수된 자가 있으니, 대저 당상관은 3품 이상의 관직이므로 지위가 높은 자이며, 사정·사맹·사용은 7·8·9품의 관직이므로 지위가 낮은 자입니다. 저 <동반의> 일찍이 참상의 벼슬을 지낸 자도 오히려 참외(參外)의 관직을 잃지 아니하는데 더구나 일찍이 당상관을 지낸 이를 반드시 참외의 관직으로 낮추어 임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국가에서 당상관을 대우하는 것이 융숭하다고 이를 만하는데 이제 관직을 임명하는 것이 도리어 일찍이 참상의 벼슬을

司勇, 七八九品之職也, 位之卑者也。彼曾經參上官者, 猶不失參外職也, 況以曾經堂上, 必下授參外之職, 可乎? 國家之待堂上也, 可謂隆矣, 而今其授職, 反不如曾經參上之官。且參朝廷大小之會者, 與東西班無異也, 而又無一介驢口以帶行焉, 無乃聖慮之所未及耶? 伏願自今以往, 依東西班參上例, 勿授司正以下之職, 竝給根隨, 永爲恒式焉, 則其於國家之待堂上也, 恐或得其道也。 臣等謹按《記》曰: “化民成俗, 其必由學乎!” 學之有益於人國家也, 大矣哉! 故歷代帝王, 莫不以興學校、養人材爲先務焉。 我國家, 內則設成均四學焉, 外則於州府郡縣各設鄉校, 以教養焉, 其於興學, 可謂至矣。 然臣等聞今之爲鄉校生徒者, 率皆頑鈍無恥之人, 其以誦詩讀書爲己業者蓋寡。 其故何也? 國家令州府郡縣校生年壯才踈者, 以充歲貢之數, 遂使青衿之子, 反爲刀筆之吏。 此法一立, 而儒者向道之心沮矣, 乃相與謀曰: “今日我爲校生, 則明日必爲刀筆吏如某也。 寧爲人保, 不願爲鄉校生徒也; 寧習他技, 不願爲鄉校生徒也。” 由是

지낸 것만 못하며, 또 조정의 크고 작은 모임에는 동반·서반이 다름이 없는데 또한 일개 말을 모는 자도 데리고 다닐 자가 없으니, 성상의 생각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아납니까? 엿드려 원하건대 이 뒤로부터는 동·서반의 참상의 예(例)에 의하여 사정(司正) 이하의 관직을 주지 말고 아울러 근수(根隨)를 주는 것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으면, 국가에서 당상관을 대우하는 데에 아마도 그 도리를 얻을 듯합니다.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배움에 말미암는다.’고 하였으니, 배움이 나라에 유익함이 큼니다. 그러므로 역대 제왕(帝王)이 모두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를 기르는 것을 선무(先務)로 삼지 아니한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에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주·부·군·현(州府郡縣)에 각각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가르치고 기르니, 그 학교를 일으키는 데에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신 등이 듣건대, 지금 향교의 생도로 있는 자는 대개 모두 미련하고 둔하며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시를 외고 글을 읽는 자는 대개 적다고 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주·부·군·현의 교생(校生)으로 나이가 장년이고 재주가 소략(疎略)한 자를 세공(歲貢)17935)의 수에 채우게 되자 드디어 학생이 도리어 도필리(刀筆吏)17936)가 되게 하였으니, 이 법이 한 번 세워지자 유자(儒者)로서 도(道)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교생이 되면 내일은 반드시 도필리 아무처럼 될 것이니, 차라리 인보(人保)17937)가 되더라도 향교 생도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며, 차라리 다른 재주를 익히더라도 향교의 생도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관 자제(衣冠子弟)는 부끄러워하여 자취를 감추고 가난하고 세력 없는 자는 두려워하여 자취를 숨기니, 이와 같으면서 학교가 융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서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인재가 이루어

衣冠子弟，恥之而藏踪，孤寒無勢者，畏之而秘跡焉。如此而欲望學校之興，猶欲其入而閉之門也，尚何作成人材之可望乎？臣等且聞韓子曰：“師者，所以傳道、受業、解惑者也。”又曰：“童子之師，授之書而習其口讀者也。”今之爲教授、訓導者，率多幼學之人，口讀尚不知，況望傳道、解惑乎？孟子所謂：“以其昏昏，使人昭昭者。”正謂此輩也。彼生員、進士，雖未得爲眞儒，猶能業儒之業，而中國家之選者也。

伏願自今以往，勿令校生充歲貢之數，而擇生員、進士與夫會講中格者之可爲師表者，以任教養之責可也。臣等伏觀我祖宗之創業垂統也，慮萬事之或廢也，故既設百司以委任之；爲使令之不足於前也，故又設奴婢以服役之，大哉。先王之制也！當時行之而無患，後世遵之而無弊，其爲子孫萬世計者，可謂周矣。然其在今也，有凋敝而不振者多矣。其故何歟？於此有一司焉，其奴婢總百口，則可謂多矣。然其一人屬於別監，則他日呼朋引類，去此而

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또 듣건대, 한자(韓子)17938) 가 이르기를, ‘스승이란 것은 도(道)를 전하고 학업을 주며 의혹을 풀어 주는 자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어린이의 스승은 책을 주어 그 입으로 읽는 것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教授)·훈도(訓導)가 된 자는 대부분 유학(幼學)17939) 과 같아서 입으로 읽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도를 전해 주고 의혹을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맹자》에 이른바, ‘그 우매함[昏昏]으로써 남을 밝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생원(生員)·진사(進士)는 비록 진유(眞儒)는 되지 못하였더라도 오히려 능히 유업(儒業)을 업으로 하여 국가의 선발에 합격한 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이 뒤로부터는 교생(校生)을 세공(歲貢)의 수에 채우지 말며 생원·진사와 회강(會講)에 합격한 사람으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를 골라서, 가르치고 기르는 책임을 맡기는 것이 가합니다.

신 등은 삼가 보건대, 우리 조종(祖宗)께서 나라를 창업(創業)하고 전통을 드리우시는 데에 일이 혹시 폐(廢)함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미 모든 관아를 설치하여 일을 위임하였고, 사령(使令)이 앞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또 노비(奴婢)를 마련하여 복역(服役)하게 하였으니, 훌륭한도다. 선왕(先王)의 제도여! 당시에 시행하여 병통이 없었고 후세에서 준수하여 폐단이 없었으니, 그 자손 만대를 위하여 계획한 바가 두루 갖추어졌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조폐(凋弊)하여 떨어져 일어나지 못한 것이 많으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 사(司)가 있는데 그 노비가 모두 1백 명이면 많다고 이를 만하나, 그 한 사람이 별감(別監)에 속하면 훗날 벼를 부르고 무리를 이끌어서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나아갈 자가 약간 명이고, 그 한 사람이 각색장(色掌)에 속하면 훗날 벼를 부르고 무리를 이끌어서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나아갈 자가 약간 명이며, 아무개가 수복(守僕)이 되면 또한 이와 같이 하고, 아무개가 수장(守藏)이 되면 이와 같이 할 것이니, 그 남아 있는 자가

就彼者若干人也; 其一人屬於各色掌, 則他日呼朋引類, 去此而就彼者若干人也。 某也爲守僕, 則亦若是; 某也爲守藏, 則亦若是也。 其餘存者, 有幾人哉? 昔之盛者今若是, 則昔之衰者今如何哉? 其所以日就彫殘者, 良有以也。 臣等請以長興庫一司明之。 是司也, 有奴婢一百一十五口, 則奴婢之多, 莫盛於斯也。 然爲守僕者二人焉, 爲各色掌者三人焉, 爲別監者五人焉, 爲丘史、爲功臣奴者總六人也, 爲匠人、爲樂工、爲歌童、爲蠶室庫直摠四十三人, 爲照刺赤、爲蠶母、爲房子、爲水賜者總一十人也, 合六十九人, 皆隸於他。 而爲侍丁者, 又凡六人也, 爲從良者, 又凡七人也, 爲逃亡丐乞者, 又凡一十人也。 今其見役者, 奴止八九, 婢不過一十餘口, 而其司服役之事、他處進排之所, 不知其幾也。 若不講明復蘇之道, 而屬他之路猶古也, 則長興一司, 將至於弊不救矣, 爲官吏者安得措其手足哉? 以一司觀之, 則其他百司可以類推。 臣等未知施何策以救其弊也? 伏願殿下與廟堂大臣, 講明所以處置之方, 俾先王之制, 傳之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성(盛)하던 것도 지금 이와 같으니, 예전에 쇠하던 것은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그 날마다 쇠잔해지는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습니다. 신 등은 장흥고(長興庫) 한 사(司)를 가지고서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에 노비가 1백 15구(口)가 있으니 노비의 많기가 이보다 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복(守僕)이 된 사람이 두 사람, 각 색장(色掌)이 된 사람이 세 사람, 별감(別監)이 된 자가 다섯 사람, 구사(丘史)가 되고 공신(功臣)의 종[奴]이 된 자가 모두 여섯 사람이고, 장인(匠人)이 되고 악공(樂工)이 되고 가동(歌童)이 되고 잠실(蠶室)의 고지기[庫直]가 된 자가 모두 43명이며, 조라치(照刺赤)가 되고 잠모(蠶母)가 되고 방자(房子)가 되고 수사(水賜)가 된 자가 모두 열 사람이고, 합하여 69명인데 모두 다른 데 예속되었습니다. 시정(侍丁)이 된 자가 또 여섯 사람이고, 종량(從良)된 자가 또 모두 일곱 사람이며, 도망하여 거지가 된 자가 또 모두 열 사람입니다. 지금 현역자(現役者)는 남중[奴]이 8, 9명뿐이며 여중[婢]이 10여 명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사(司)의 복역(服役)하는 일과 다른 곳에 진배(進排)하는 것은 그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다시 회복시킬 도리를 강구해 밝히지 아니하고서 다른 곳에 소속시키는 길을 예전대로 두면, 장흥고 한 사(司)는 장차 피폐하여 구제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니, 관리 된 자가 어찌 손발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사를 보면 그 다른 여러 사(司)를 이로써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 등은 무슨 계책을 베풀어서 그 폐단을 구제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의정부[廟堂]의 대신들과 더불어 조처할 방법을 강구해 밝혀서 선왕의 제도를 만세에 전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예전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소를 끌고 당(堂) 밑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내가 그 떨면서 죄없이 죽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이 마음이 왕도(王道)를 펴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하였으니, 대저 백성을

萬世焉可也。 臣等伏聞昔齊宣王見牽牛而過堂下者，曰：“舍之。 吾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也。” 孟子曰：“是心足以王矣。” 蓋仁民而愛物，固帝王之道也。 今我殿下以好生之德，推博愛之仁，鳶魚之化，洋中溢外，猶慮一物之不被吾仁也。 在即位之八年，特立禁章，使宰殺牛馬者，勿論良賤，皆杖一百、於絕島諸邑全家定屬，其有許接之家，有職人則收職牒，永不敘用，無職人則杖一百，外方付處，庶人則杖一百，邊遠充軍。 其仁恩之及禽獸也，可謂至矣，豈特宣王之愛一牛哉？ 然近年以來，禁網踈闊，屠牛者遍處閭閻之間，或假寓他人之家，以行其事，爲其主者，亦利其利而不畏忌焉。 以之積骸累骨，填街滿巷，其故何也？ 蓋小民求利之心，無所不至矣，苟利之所在，則雖水火蹈焉，白刃冒焉，況不待蹈水火、冒白刃而其利自倍者乎？ 臣等竊聞牛之爲物也，當其生也，其直輕焉，及其見殺也，其取直之外，尚有餘利焉。 然則今日國家之法，其能止小人冒利之心乎？ 昔鄭子產有言曰：“夫火烈，人望而畏之，故鮮死焉；水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로 제왕(帝王)의 도(道)입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는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널리 사랑하는 어지심을 미루어서 연어(鳶魚)17940)의 교화(教化)가 중외(中外)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한 물건이라도 어진 은혜를 입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즉위하신 지 8년에 특별히 금장(禁章)을 세워서 마소를 도살하는 자는 양인(良人)·천인(賤人)을 물론하고 모두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절도(絶島) 여러 고을에 전가족을 정속(定屬)시키며, 허접(許接)17941) 한 집이 있으면 관직(官職)이 있는 사람은 직첩을 거두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며 관직이 없는 사람은 장(杖) 1백 대에 전가족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서인(庶人)은 장 1백 대에 먼 변방에 충군(充軍)하였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금수(禽獸)에 미친 것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어찌 제나라 선왕이 한 마리 소를 사랑한 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근년 이래로 금망(禁網)이 성기고 넓어져서 소를 도살하는 자가 여염(閭閻) 사이에 두루 있으며, 혹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빌어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주인 된 자 역시 그 이로움을 탐하여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아니합니다. 이로써 짐승의 뼈가 쌓여서 거리를 메우고 골목에 가득하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저 소민(小民)들의 이(利)를 구하는 마음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므로, 만일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물불이라도 밟고 시퍼런 칼날이라도 무릅쓰는데, 더구나 물불을 밟거나 칼날을 무릅쓰지 않아도 그 이익이 갑절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그욕이 듣건대, 소의 물건됨이 살아서는 그 값이 적으나 도살됨에 미쳐서는 그 값을 취하는 외에 오히려 남는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가의 법이 소인(小人)의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 정(鄭)나라 자산(子産)의 말에 이르기를, ‘대저 불은 뜨거우므로 사람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는 자가 적고, 물은 부드럽고 약하므로 백성이 가볍게 여기고 희롱하기 때문에 빠져 죽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옛법을 거듭

柔弱，民狎而玩之，故多死焉。伏願殿下申明舊章，以懲其罪。如有借人以第而分其利者，則亦以罪罪之，使小民知所畏而避之，不至於狎而玩之，則其於仁民而愛物也，可以兩全矣。

臣等伏聞先民有言曰：“佛氏之害，甚於楊、墨。”自古賢人君子所以深拒而力辨之者，多矣。此固殿下之所洞覽者也，奚待臣言哉？姑舉其耗蠹國家者，粗陳其萬一焉。以國家一歲飯僧之費觀之，開慶寺則鹽五十三碩五斗，(檜岸寺) [檜巖寺] 則鹽六十碩，津寬、莊義寺則鹽共二十碩，淨業、正因寺則鹽共六十碩，衍慶、福泉寺則鹽九十三碩五斗，崇孝、報恩寺則鹽共五十碩，覺林、大慈、龍門寺則鹽共一百二十碩，內佛堂則鹽五碩、末醬五碩五斗，米三十一碩二斗、麻布八匹、綿布一十四匹，奉先寺則鹽一百碩、末醬六碩五斗、黃豆四十八碩、米四十八碩、麻布一十四匹、絁布二十四匹，圓覺寺則鹽一十碩、末醬六碩五斗、黃豆四十八碩、麻布一十四匹、綿布二十四匹，演窟、福世菴則鹽共一十碩六斗、末醬五

밝혀서 그 죄를 징계하고 만일 남의 집을 빌려서 그 이익을 나누는 자가 있으면 또한 그 죄로 죄를 다스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것을 알아서 피하게 하고 친압하여 가볍게 여기는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데에 두 가지가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은 삼가 듣건대, 선민(先民)의 말에 이르기를, ‘불씨(佛氏)17942)의 피해는 양(楊) 목(墨)17943) 보다 심하다.’고 하였으니, 예로부터 현인 군자(賢人君子)는 깊이 막고 힘써 분별(分辨)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전하게서 통촉해 보시는 것인데,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우선 그 국가를 좀먹는 것을 들어서 그 만의 하나를 대략 진술하겠습니다. 국가에서 1년에 반승(飯僧)17944) 하는 비용을 관찰하면, 개경사(開慶寺)는 소금이 53석 5두, 회암사(檜巖寺)는 소금이 60석, 진관사(津寬寺)·장의사(莊義寺)는 소금이 모두 20석, 정업사(淨業寺)·정인사(正因寺)는 소금이 모두 60석, 연경사(衍慶寺)·복천사(福泉寺)는 소금이 93석 5두, 송효사(崇孝寺)·보은사(報恩寺)는 소금이 모두 50석, 각림사(覺林寺)·대자사(大慈寺)·용문사(龍門寺)는 소금이 모두 1백 20석, 내불당(內佛堂)은 소금 5석, 말장(末醬) 5석 5두, 쌀 31석 2두, 마포(麻布) 8필, 면포 10필, 봉선사(奉先寺)는 소금 1백 석, 말장 6석 5두, 황두(黃豆) 48석, 쌀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원각사(圓覺寺)는 소금 10석, 말장 6석 5두, 황두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연굴암(演窟菴)·복세암(福世菴)은 소금이 모두 10석 6두, 말장 5석, 쌀 27석 6두, 양종(兩宗)17945)은 소금이 모두 40석이고 선승(選僧)17946) 하는 해는 쌀이 모두 30석, 황두가 30석이니, 1년의 소비가 적지 않은 데 이릅니다. 10년을 합하여 보면 소금이 총계 6천 2백 20석 10두, 말장이 2백 30석, 황두가 1천 2백 30석, 쌀이 1천 7백 4석, 마포 2백 80필, 면포 5백 필이며, 20년을 쌓으면 소금·쌀·말장·황두가 총계 1만 8천 7백 60석이 넘고 마포·면포가 1천 5백 60필인데 공불(供佛)하는 비용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이로써 적(敵)을 방어하면 무슨 적인들

碩、米二十七碩六斗，兩宗則鹽共四十碩，其選僧之年則米共三十碩、黃豆三十碩，一年之費，至不小矣。合一十年觀之，則鹽摠六千二百二十碩一十斗，末醬二百三十碩，黃豆一千二百三十碩，米一千七百四碩，麻布二百八十四，綿布五百匹。積至二十年，則鹽、米、末醬、黃豆總一萬八千七百六十碩有奇，麻布、綿布一千五百六十四。而其供佛之費，且萬萬矣。以此禦敵，則何敵不克？以此守城，則何城不堅？用之於賑窮，則數十萬凍餒之民，可以活焉；用之於待夷，則數十年求請之費，可以應焉。今乃浚民膏血，而(乘) [棄] 之於無用之地，獨何耶？且照刺赤之服事于彼者，此又國家所不得已之事乎？若曰爲先王先后薦冥福也，不得不爾，則臣等竊惑焉。《詩》云：“愷悌君子，求福不回。”固當以孝以享，以對越在天之神而已，豈可歸依於佛以徼其福乎？況人主一身，爲四方萬民之所儀表者乎？臣等固知殿下以精一執中之學，加緝熙敬止之功，其不信佛道也深矣。然四方萬民，聞國家之於諸利也，其所以飯僧供佛者

이기지 못하겠으며, 이로써 성(城)을 지키면 어느 성인들이 튼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 데 쓴다면 수십 만의 열고 굶주린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오랑캐를 대접하는 데 쓴다면 수십 년간의 청구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고향(膏血)을 짜서 쓸데없는 곳에다 버리는 것은 유독 어찌서입니까? 또 조라치(照刺赤)가 저들을 복종하여 섬기는 것은, 이것이 또한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만약 선왕(先王)과 선후(先后)를 위해 명복(冥福)을 올리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신 등은 그웁이 의혹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화락(和樂)한 군자(君子)는 복을 구하되 올바르게 앎이 없도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효성으로써 제사하여 하늘에 계시는 신(神)에게 대할 뿐인데, 어찌 부처에게 귀의하여 그 복을 구하겠습니까? 더구나 임금의 한 몸은 사방(四方)과 만백성의 의표(儀表)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정일 집중(精一執中)17947 하는 학문으로써 중희 경지(緝熙敬止)17948의 공(功)을 더하시 불도(佛道)를 믿지 않는 마음이 깊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사방의 만백성이 국가에서 여러 사찰에 반승(飯僧)과 공불(供佛)하는 것이 저와 같고 복종하며 섬기는 사람을 준 것이 또 이와 같다는 것을 듣는다면, 국가에서 불도를 믿지 아니한다고 이르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물을 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고기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물을 버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 말을 믿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의식비(衣食費)를 없애어 국용에 보태게 하고, 그 복종하며 섬기는 사람을 없애어 본사(本司)로 돌아오게 하여서 사방의 만백성으로 하여금 대성인(大聖人)의 하시는 바가 보통보다 만 배가 뛰어난을 알게 하면, 만백성의 의혹을 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조폐(凋弊)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관사(官司)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既如彼，其所以給服事之人者又如此，則其謂國家不信佛氏之道乎？古人有言曰：“操網罟而入江海，語人曰我非漁也，不若捐網罟而人自信也。”伏願殿下除其衣食之費，以資國用，革其服事之人，以還本司，使四方之衆，知大聖人之作爲，出於尋常萬萬也，則非徒解萬民之惑也，彼凋弊不振之司，亦可蘇復矣。臣等竊聞，董子曰：“人君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正百官以正萬民，正萬民以正四方，四方正而遠近莫不一於正。”由是觀之，帝王可行之道、當今可祛之弊，其目雖十有四條，而其綱不越乎正心而已。何者？君心既正而終始無間焉，則賞罰之公，必不至於僭濫，正直之言，必不至於逆耳，而守成之道於是而盡矣。既正朝廷以正百官，則大臣知所任而不敢親細事矣，小臣知所畏而不敢干邦憲矣。既正百官以正萬民，則市中奸僞之徒、閭閻不逞之輩，不敢自肆，而薰陶於教化之中矣。既正萬民，以正四方而遠近莫不一於正，則必知吾道之眞醇、異端之虛無，而學校可以興，邪說可以息矣。而當今未祛之弊，亦可次第而祛矣。

신 등이 그옥이 듣건대, 동자(董子)17949) 가 말하기를, ‘임금이 마음을 바로 잡아서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아서 백관을 바로잡으며, 백관을 바로 잡아서 만백성을 바로잡고, 만백성을 바로잡아서 사방을 바로잡는데, 사방이 바르면 멀고 가까운 곳이 일체 바르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임금이 행해야 할 도(道)와 당장 지극 없앨 만한 폐단이 그 조목은 비록 열 네 조목이나 그 강령(綱領)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마음이 이미 바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間斷)이 없으면 상벌(賞罰)의 공정함이 반드시 참람한 데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정직한 말이 반드시 귀에 거슬리는 데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수성(守成)의 도(道)가 이에 극진할 것입니다. 이미 조정을 바로잡아서 백관이 바르게 되면 대신(大臣)이 맡은 바를 알아서 감히 자질구레한 일을 직접 하지 않을 것이며, 소신(小臣)은 두려워할 바를 알아서 감히 국법을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백관을 바로잡아서 만백성을 바로잡게 되면 시중(市中)의 간사하고 속이는 무리와 민간의 불량배가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고 교화 가운데에 감화될 것입니다. 이미 만백성을 바로잡아서 사방을 바로잡게 되면 멀고 가까운 곳이 일체 바르게 되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도(吾道)17950) 의 진순(眞醇)17951) 함과 이단(異端)17952) 의 허무(虛無)함을 알아서, 학교가 일어날 수 있고 요사한 말이 그칠 수 있으며 지극 없애지 못한 폐단도 차례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 등이 감히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여러 가지 조목의 강령(綱領)으로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뢰니, 삼가 원하건대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니,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신이 사간원(司諫院)의 상소를 보건대, 정심(正心)·수성(守成)을 말한 것과 상벌(賞罰)·상덕(常德)을 말한 것은 임금이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여야

矣。故臣等敢以正心爲萬目之綱，而終始獻焉。伏願殿下潛心焉。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韓明澮議：“臣觀司諫院上疏，曰正心、守成，曰賞罰、常德，人主所潛心；其餘條件，皆有成法，令該司申明舉行何如？”沈澮議：“第一二三四五條，聖慮裁之。第六條議政府堂上官爲提調、巡察，自祖宗朝行之已久，仍舊無妨。第七條新屬人設宴，令該司痛禁；第八條兵曹除授備三望，於理爲當，其軍士遞兒職外，皆備三望。第九條堂上官，勿授司正以下職，定給丘史事，上大護軍、司直遞兒有數，而以堂上官授行職者員多，且丘史無出處，定給亦難，皆不可行。第十條以生員進士，可爲師表者授訓導，可行也。鄉校生徒，則或有軍士衙前等雜類子孫，年至四五十而謀避軍役，冒名儒籍者頗多。擇年壯無用者充歲貢，不亦宜乎？第十一條諸司奴婢勿定他司役使，最爲良法。然別監、各色掌、守藏、照刺赤、侍女、蠶母等役使，不可廢也，但不緊者揀擇，還定本司，以救凋殘。第十二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조건(條件)은 모두 성립된 법이 있으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희(沈澮)는 의논하기를,

“제 1·2·3·4·5조(條)는 성상의 생각으로 재결하실 것입니다. 제6조의 의정부 당상관이 제조(提調)와 순찰사(巡察使)가 되는 것은 조종조로부터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제7조의 신속(新屬)된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는 것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엄금하게 해야 합니다. 제8조의 병조(兵曹)에서 제수(除授)할 때에 삼망(三望)을 갖추는 것은 이치에 마땅할 듯하니, 군사(軍士)의 체아직(遞兒職) 외에는 모두 삼망을 갖추게 하소서. 제9조의 당상관에게 사정(司正) 이하의 관직을 주지 말게 하는 것과 구사(丘史)를 정해 주는 일은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사직(司直)의 체아직은 정해진 수(數)가 있고, 당상관으로서 행직(行職)17953)을 줄 사람은 인원이 많으며, 또 구사는 나올 곳이 없어서 정해 주기가 어려우니, 모두 행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의 생원(生員)·진사(進士)로서 스승이 될 만한 자에게 훈도(訓導)를 제수하는 것은 시행할 만하나, 향교 생도 가운데에는 간혹 군사(軍士)·아전(衙前) 등 잡류(雜類)의 자손으로 나이가 40, 50에 이르러서 군역(軍役)을 피하려고 피하여 모람되게 유적(儒籍)에 이름을 넣은 자가 자못 많이 있는데, 장년으로서 쓸데 없는 자를 가려 세공(歲貢)으로 채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제11조의 여러 관사 노비를 다른 사(司)의 사역(使役)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별감(別監)·각색장(色掌)·수장(守藏)·조라치(照刺赤)·시녀(侍女)·잠모(蠶母) 등의 사역은 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요하지 아니한 것은 골라서 본사(本司)로 돌려 역(役)을 정하여서 쇠잔함을 구제하도록 하소서. 제12조의 마소를 도살하는 것은 법을 거듭 밝혀서 엄금하게 하소서. 제13조의 1년에 드는 반승(飯僧)의 비용은, 개정사·정인사·봉선사·진관사·장의사 등의 절은 선왕(先王)·선후(先后)를 위한 것이

條宰殺牛馬者，申明痛禁。第十三條一歲飯僧之費，開慶、正因、奉先、津寬、藏義等寺則爲先王先后，似不可廢也。其餘寺社米、豆、鹽、醬、麻布、絁布、照刺赤等減除事，舉行何如?”尹弼商議：“今觀諫院上疏，十三條內，有聖上允宜潛心之事，亦有申明痛禁之事，抑有令該曹商度便否，啓達施行之事，伏惟上裁。”盧思慎議：“其曰正心，其曰守成，其曰賞罰，其曰常德，此四條，雖古人陳戒人君之常說，帝王所當潛心服膺，伏惟留意。其餘條件，或勢不可行，或奸生法外，雖間有小弊，律法皆在，但舉行陵夷耳。不如申明舊法。”尹壕議：“築城、軍籍皆重事也，委諸重臣，何不可之有?何必坐廟堂然後，變理陰陽乎?臣以爲無妨大體。若綿布、柎炬、紙地、新屬侵虐等事，皆有禁令，有司治之而已，其餘條件，皆載在令甲，不必更議。然開慶等諸寺，皆爲先王創建，若不得論以異端革焉，則居僧食鹽，仍舊何妨?但照刺赤則革除何如?”李崇元議：“周公掌營洛邑，則國家重事，雖使三公任之，在所不得已也，若細事

	<p>므로 폐할 수 없을 듯하며, 그 나머지 사사(寺社)의 쌀·콩·소금·장·마포·면포·조라치 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은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p> <p>“이제 사간원의 상소를 보건대 13조 안에 성상께서 진실로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하실 일이 있고, 또 법을 거둬 밝혀서 엄금할 일도 있으며, 또 해당 조(曹)로 하여금 적당한가 적당하지 아니한가를 계달(啓達)하게 하여 시행할 일도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여 하소서.”</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그 정심(正心)이니 수성(守成)이니 상벌(賞罰)이니 상덕(常德)이니 하는 네 조목은 비록 옛사람이 임금에게 아뢰어 경계하는 상용(商用)의 말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고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유념하도록 하소서. 그 나머지 조건(條件)은 혹은 형세가 행할 수 없고 혹은 법에 벗어나는 간사함이 생겨서 비록 그 사이에 작은 폐단이 있더라도 율법(律法)이 모두 있는데 다만 거행하는 것이 해이해졌을 뿐이니, 옛법을 거둬 밝히는 것만 못합니다.”</p> <p>하였으며,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축성(築城)과 군적(軍籍)은 모두 중대한 일인데 중신(重臣)들에게 맡기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반드시 의정부[廟堂]에 나와 앉은 뒤에라야만 음양(陰陽)을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대체에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면포·축거(杻炬)·종이에 대한 것과 신속(新屬) 관원을 침학(侵虐)하는 등의 일은 모두 금령(禁令)이 있으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뿐이며, 그 나머지 조건은 모두 법령에 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경사(開慶寺) 등 여러 절은 모두 선왕(先王)을 위해 창건한 것이므로, 만약 이단(異端)으로 논해 없앨 수 없다면 사는 중의 식염(食鹽)은 예전대로 주는 것이 어찌 방해가 되겠습니까? 다만 조라치(照刺赤)는 없애</p>	<p>則不必任之。市肆詐僞者、新屬人侵虐者、治罪載在《大典》，不必更立新法。但邇來新屬人，侵虐尤甚，令該司依《大典》嚴禁。西班職每政陞降，必擬望三人，恐亦勢難。西班堂上官之數不少，皆給丘史，勢所難爲；除司正以下秩卑職，亦所不得已也。歲貢生徒，皆以年壯才踈者擇送，其少有文藝者、年少有將來者，必不在歲貢之數，有志於學者，必不以此沮向學之志矣，不須更改。訓導皆以進士生員差除，亦所難行。諸司奴婢多小不同，則其司無供役奴婢，恐將難支，今該司斟酌定送。宰殺牛馬者，近來不戢，然更法則勢難，令該司依法嚴禁。開慶等寺歲給鹽米等物，其數太多，量減何如？若正心等語，殿下所當留意。”傳曰：“舉行便否，各令該司議啓。”</p>
--	---	--

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주공(周公)이 낙읍(洛邑)17954) 을 맡아 영선(營繕)하였으니, 국가의 중대한 일은 비록 삼공(三公)에게 맡기더라도 부득이한 것입니다. 만약 작은 일이라면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시사(市肆)에서 속이는 자와 신속 관원(新屬官員)을 침학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신속 관원을 침학하는 것이 더욱 심하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대전》에 의하여 엄금하게 하소서. 서반직(西班牙職)을 정사(政事) 때마다 올리고 낮추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세 사람을 의망(擬望)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형편이 어려울 듯합니다. 서반 당상관의 수가 적지 아니한데 모두 구사(丘史)를 주는 것도 형편상 하기 어려운 바이며, 사정(司正) 이하의 낮은 직질(職秩)에 제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공생도(歲貢生徒)는 모두 나이가 장년이고 재주가 소략(疎略)한 자를 골라서 보내고 조금이라도 문예(文藝)가 있고 나이가 젊으며 장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세공의 수(數)에 두지 아니할 것이므로 학문에 뜻을 두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까닭으로써 향학(向學)하는 마음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이니 다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훈도(訓導)를 모두 진사(進士)·생원(生員)으로 임명하는 것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관사의 노비(奴婢)는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아니한데, 만약 노비 수가 적은 여러 관사에 조라치(照刺赤) 등의 차비(差備)를 많이 정하면 그 사(司)에 공역(供役)할 노비가 없어서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듯하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참작하여서 정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소와 말을 도살하는 자가 근래에 그치지 아니하나 법을 고치는 것은 형세가 어려우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엄금하도록 하소서. 개경사 등의 절에 해마다 주는 소금·쌀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너무 많으니, 양을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을 바로잡는 등의 말은 전하께서 마땅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거행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아니한가를 각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월 25 일(병인) 2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박승질(朴崇質)이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자, 부의(賻儀)로 쌀·콩 각 10석, 진말(眞末) 2석, 기름·꿀 각 1석을 특별히 주었다.</p>	<p>○都承旨朴崇質遭父喪，特給賻米豆各十碩、眞末二碩、油蜜各一碩。</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월 26 일(정묘) 1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이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와 강화(江華) 보음도(甫音島)의 지형을 그려서 올리며 아뢰기를, “대부도 가운데는 토지의 품질이 기름져서 곡식 2백여 석을 심을 만하고, 또 해택(海澤)17956) 이 있어서 2백여 석을 심을 만하니, 마땅히 경계를 쌓아서 목장의 말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화량(花梁) 당령 선군(當領船軍)의 반(半)을 나누어서 갈고 가꾸도록 하소서. 보음도도 땅이 기름져서 5, 6백 석을 심을 만하니, 청컨대 목장을 다른 섬으로 옮기고 월곶[月串]이 당령 선군의 반을 나누어서 갈고 가꾸도록 하여 국용(國用)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성건의 말을 사복시(司僕寺)에 자세히 유시(諭示)하여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丁卯/京畿觀察使成健，圖上南陽大部島、江華甫音島地形以啓曰：“大部島中土品膏腴，可種二百餘碩；又有海澤，可種二百餘碩。宜築界限，使牧場馬不得闌入。分花梁當領船軍之半，使立耕治。甫音島亦膏腴，可種五六百碩，請移其牧場于他島，分月串當領船軍之半耕治，以補國用何如？”傳于承政院曰：“其以健言，詳諭司僕寺議啓。”</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월 27 일(무진) 1번째기사</p>	<p>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이 졸(卒)하였는데, 철조(輟朝)와 조제(弔祭)·예장(禮葬)을 예(例)와 같이 하였다. 정창손의 자(字)는 효중(孝中)이며 본관은 동래(東萊)인데, 중추원사(中樞院使) 정흠지(鄭欽之)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여 영락(永樂) 계묘년(17957)에 사마시(司馬試)17958)에 합격하고, 선덕(宣德) 병오년(17959)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p>	<p>○戊辰/蓬原府院君鄭昌孫卒。輟朝、弔、祭、禮葬如例。昌孫字孝中，東萊人，中樞院使欽之之子也。自幼好讀書，永樂癸卯中司馬試，宣德丙午中文科，補權知承文院副正字，尋遷集</p>

권지 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보임되었다가 곧 집현전 저작랑(集賢殿著作郎)으로 옮기고 여러 번 승진하여 교리(校理)에 이르렀다. 정통(正統) 신유년(1796)에 사삼서 령(司贍署令)에 제수되고, 임술년(1796)에는 승진하여 시전장 부정(試典醬副正)에 임명되었다가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로 옮겼다. 을축년(1796)에 사헌 집의(司憲執義)에 임명되어 강개(慷慨)하게 곧은 말을 하였고, 병인년(1796)에는 언사(言事)로 좌천되어 군기 부정(軍器副正)이 되었다. 정묘년(1796)에는 직예문관(直藝文館)에 임명되었다가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에 제수되었고, 무진년(1796)에 부제학(副提學)에 승진하여 《고려사(高麗史)》와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수하는데 참여하였다. 경태(景泰) 경오년(1796)에 승정원 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에 임명되었다가 우승지(右承旨)로 옮기고 신미년(1797)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올라 조정의 기강(紀綱)을 크게 떨치게 하였다. 임신년(1798)에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옮기고, 계유년(1799) 세조 정난(世祖靖難)에 뽑혀서 자헌 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제수되고, 갑술년(1797)에는 자급이 정헌 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을해년(1797)에 세조(世祖)가 즉위하자, 승정 대부(崇政大夫)를 가하여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임명되고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의 호(號)를 받고 봉원군(蓬原君)에 봉해졌으며, 병자년(1797)에는 승록 대부(崇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이때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난(亂)을 피하자, 정창손이 변(變)을 고(告)하여 경절 공신(勁節功臣)의 칭호가 더 내려지고 보국 승록 대부(輔國崇祿大夫)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에 오르고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겸하였는데, 대개 문형(文衡)(1793)을 맡은 것이었다. 곧 대광 보국 승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올랐다가 천순(天順) 정축년(1797)에 좌의정(左議政)으로 올랐다. 무인년(1797)에는 어머니 상(喪)을 당하였는데, 예(例)에 부인은 정조(停朝)가

賢殿著作郎，累陞至校理。正統辛酉授司贍署令，壬戌陞拜試典醬副正，移集賢殿應敎。乙丑拜司憲執義，慷慨直言；丙寅以言事左遷，爲軍器副正。丁卯拜直藝文館，中重試，授集賢殿直提學。戊辰陞副提學，參修《高麗史》、《世宗實錄》。景泰庚(子)[午]拜承政院左副承旨，轉右承旨，辛未陞嘉善司憲府大司憲，大振朝綱。壬申遷藝文提學，癸酉世祖靖難，擢授資憲吏曹判書。甲戌階正憲，乙亥世祖卽位，加崇政，拜議政府右贊成，賜推忠佐翼功臣號，封蓬原君。丙子加崇祿，時成三問、朴彭年等謀亂，昌孫上變，加賜勁節功臣號，陞輔國崇祿蓬原府院君兼成均大司成，蓋典文衡也。俄陞大匡輔國崇祿議政府右議政，天順丁丑陞左議政。戊寅丁母憂，婦人例無停朝，上特命停朝市一日，示異恩也。及葬，昌孫在墓廬，一不至私第，世祖聞之，遣直提學徐岡賜內醢及素饌，命居京家，勿歸墓廬，然守墳如舊。世祖將幸平安道，欲以昌孫留守京都，特起復爲領議政。上箋辭。御書諭曰：“予之於卿，猶左右手。將率

없었으나 임금의 특명으로 조시(朝市)를 하루 정지하여 특별한 은혜를 보였다. 장사지냄에 미쳐 정창손이 묘려(墓廬)에 있고 한 번도 사가(私家)에 오지 아니하였는데, 세조가 듣고 직제학(直提學) 서강(徐岡)을 보내어 내온(內醢)과 소찬(素饌)을 내려 주었으며, 서울 집에 있고 묘려(墓廬)에 돌아가지 말도록 하였으나 예전대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세조가 장차 평안도에 거동하려고 하면서 정창손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지키도록 하려고, 특별히 기복(起復)하여 영의정(領議政)을 삼았으나 전문(箋文)을 올려 사양하자, 어서(御書)로 유시(諭示)하기를,  
 “나에게 경(卿)은 좌우의 손과 같으니 장차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가서 기복(起復)하도록 하겠다.”  
 하고, 갑자기 순행(巡幸)을 정지하였는데, 정창손이 또 전문을 올려 곧이 사양하였다. 경진년(1796)에 복(服)을 마치자 세조가 내전(內殿)에 불러 들어서 위로 하고,段的(段衣) 한 벌을 내려 주며 부원군(府院君)으로 봉하였다. 신사년(1797)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다가 임오년(1798)에 어떤 사건으로 여산군(礪山郡)에 귀양갔으나 곧 불러서 부원군에 봉해지고 특별히 잔치를 내려 위로해 주었다. 성화(成化) 무자년(1799)에 예종(睿宗)이 즉위하여 남이(南怡) 등을 죽일 적에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의 칭호가 내려지고, 기축년(1790)에 임금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으로 서무(庶務)를 참결(參決)하였다. 신묘년(1791)에 순성 명량 경제 좌리 공신(純誠命亮經濟佐理功臣)의 칭호를 받고 나이가 70인 까닭으로 치사(致仕)하였으나 운허하지 아니하였다. 임진년(1792)에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을미년(1793)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는데 을사년(1794)에 늙었다고 하여 사직하고 다시 부원군에 봉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가 86세이다. 시호(諡號)는 충정(忠貞)인데, 임금을 섬김에 절의를 다한 것이 충(忠)이고, 도(道)를 굳게 지키고 굽히지 아니한 것이 정(貞)이다. 아들은 정개(鄭价)·정칭(鄭僞)·정괄(鄭佶)

百官，親往起復。”俄停巡幸，昌孫又上箋固辭之。庚辰服闋，世祖引入內殿慰諭，至賜段衣一襲，封府院君。辛巳拜領議政，壬午以事謫礪山郡，旋召封府院君，特賜宴慰之。成化戊子睿宗即位，南怡等誅，賜推忠定難翊戴功臣號。己丑上即位，以院相參決庶務，辛卯賜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號，以年七十致仕，不允。壬辰賜几杖，乙未拜領議政，乙巳以老辭，復封府院君。至是卒，年八十六。諡忠貞：事君盡節‘忠’，直道不撓‘貞’。有子价、僞、佶，壻金碩。

【史臣曰：“昌孫天性恬靜簡素，不營產業，家居索然。關節不到，雖至親不敢干以私。孝於親，信於朋友，爲相三十餘年，清直一節，終始不渝。及年齒高邁，心志昏亂，議事之際，雖或錯誤，而略無迎合阿比之私。每朝廷之會，起居顛躓，猶不辭職，人竊譏議。”】

訃聞，傳曰：“清貧宰相，優給賻物。”

	<p>이고 사위는 김질(金質)이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창손은 천성이 조용하고 소탈하여 산업(産業)을 경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집에 사는 것이 쓸쓸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여 비록 지친(至親)이라도 감히 사사로이 간청하지 못하였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친구에게 신의를 지켜 정승이 된 지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청렴하고 정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였다. 나이가 많아지자 정신이 혼란하여 일을 의논할 때에 비록 더러 착오는 있었으나 조금도 임금의 뜻에 맞추어 아부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없었다. 매양 조정의 모임에서 기거 동작하는 데에 넘어 지면서도 오히려 사직(辭職)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가만히 비난하였다.” 하였다.</p> <p>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전교하기를,  “청빈(淸貧)한 재상이니, 부물(賻物)을 넉넉히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월 27일(무진)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졸(卒)한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에게 백정포(白正布) 15필, 백면포(白綿布) 15필, 정포(正布) 30필, 저포(苧布) 15필, 종이 1백 권, 청밀(淸蜜) 1석, 진유(眞油) 1석, 진말(眞末) 3석, 황랍(黃蠟) 40근, 여섯 장을 붙인 유둔(油菴) 6, 각종 실과(實果) 각 10두를 별도로 하사하고, 또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에게 치부(致賻)한 예(例)에 의하여 쌀·콩 아울러 1백 석, 종이 1백 50권, 백정포 20필, 육승 백면포(六升白綿布) 20필, 정포 50필, 저포 10필, 석회(石灰) 50석, 청밀 1석, 황랍 30근을 하사하였다.</p>	<p>○傳旨戶曹，別賜卒蓬原府院君鄭昌孫白正布十五匹、白綿布十五匹、正布三十四匹、苧布十五匹、紙一百卷、淸蜜一碩、眞油一碩、眞末三碩、黃蠟四十斤、六張付油菴六、各樣實果各十斗。 又依鄭麟趾、申叔舟致賻例，賜米·豆并一百碩、紙一百五十卷、白正布二十四、六升白綿布二十四、正布五十四、苧布十四、石灰五十碩、淸蜜一碩、黃蠟三十斤。</p>
<p>성종 199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월 29</p>	<p>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최적(崔適)이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최적은 다른 재상과 같은 예(例)가 아니다. 세조조(世祖朝)로부터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던 사람이며 나도 어려서부터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아는데, 이들</p>	<p>○知中樞府事崔適卒。 傳曰：“崔適非他宰相例，自世祖朝近侍左右者也，而予亦自少審知其爲人。 此等宰相致賻，</p>

<p>일(경오) 2번째기사</p>	<p>재상에게 치부(致賻)하는 예가 있는가? 이것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최적은 서자(庶子)로서 외람되게 세조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두 번 무과(武科) 시험에 장원하였으나 글을 알지 못하였다. 세조가 일찍이 최적과 민발(閔發)에게 이르기를, ‘그대들 두 사람이 글을 못하는 것이 누가 더 심한가?’ 하자, 최적이 말하기를, ‘민발의 종이 나무를 건너는 자가 있었는데, 도망하는 것을 잡으라고 글로 쓰기를 청하자, 민발이 속여 말하기를, 「오늘은 아버님의 기일(忌日)이라서 쓰지 아니하겠습니다.」고 하였으니, 민발의 글을 못하는 것이 신보다 심합니다.’ 하고, 민발은 말하기를, ‘최적이 일찍이 선공감(繕工監) 앞을 지나가는데, 외리(外吏)가 있다가 한 관첩(官帖)을 가지고 최적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기재한 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자, 최적이 자세히 보다가 말하기를, 「숯 굽는 나무이다.」라고 하니, 외리가 말하기를, 「내가 바치는 것은 어물(魚物)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하자, 최적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것이 어물이라면 어찌하여 사재감(司宰監) 앞에서 내게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고 하였으니 최적의 글을 못하는 것이 신보다 심합니다.’ 하므로, 세조가 크게 웃었다.” 하였다.</p>	<p>有例乎? 其考啓。”</p> <p>【史臣曰：“適以孽產，濫荷世祖恩眷，再魁武試，不識文字。世祖嘗謂適及閔發曰：‘汝二人不文孰甚?’ 適曰：‘發之奴有涉津梁者，請書：「捕亡」，發誣曰：「今日父忌」，不書，發之不文甚於臣。’ 發曰‘適嘗過繕工監前，有外吏持一官帖，示適曰：「所載者何物?’ 適熟視曰：「炭燒木也。」 外吏曰：「吾所納者魚物，何云爾也?’ 適瞪視曰：「若是魚物，何不示我於司宰監前乎?’ 適之不文甚於臣。’ 世祖大笑。”】</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2월 4일 (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동하여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건주위(建州衛) 야인(野人) 동부우마(童夫弓馬) 등 다섯 사람을 인견(引見)하고 전교하기를, “너희 추장(酋長)이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정성을 바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이어서 동부우마로 하여금 술잔을 올리게 하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甲戌/上幸景福宮御思政殿置酒，引見建州衛野人童夫弓馬等五人。教曰：“汝之酋長累遣人來款，予甚嘉之。” 仍令夫弓馬進爵，賜物有差。</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2월 7일</p>	<p>손순효(孫舜孝)를 승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설무림(薛茂林)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행 청송 부사(行靑松府使)로 삼았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손순효는 기량이 활달하고 거칠어서 충효(忠孝)로</p>	<p>○以孫舜孝爲崇政議政府右贊成，薛茂林通政行靑松府使。</p>

<p>(정축) 6번째기사</p>	<p>써 자부(自負)하고 큰소리치기를 좋아하였다. 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크게 취하면 갑자기 상대별곡(霜臺別曲)의 ‘임금이 밝고 신하가 곧다.’는 가사(歌詞)를 노래하고, 또 잔치의 모임에 기생들로 하여금 이 가사를 노래하게 하였으며, 혹은 스스로 일어나서 절하고 춤추기도 하였다. 일찍이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가 되어 중관(中官)18020) 으로서 고향에 돌아온 자를 대(對)하여 연필시(戀闕詩)를 지어서 그 부채에 써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뜻을 말하였었다. 중관(中官)이 궁중으로 돌아오게 되자 임금이 우연히 그 부채를 보고는 손순효가 한 것임을 물어서 알고는 임금을 사랑한다고 여겼다. 또 일찍이 임금의 앞에서 경의(經義)를 논란(論難)하다가 충서(忠恕)를 행하기를 권하였는데, 이로써 매우 후대(厚待)를 받아 지위가 높은 반열(班列)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다.</p>	<p>【史臣曰：“舜孝氣度闊略，以忠孝自許，好爲大言。與朋友飲至大醉，輒歌《霜臺別曲》君明臣直之詞，又於宴集令妓歌此詞，或自起拜舞。嘗爲江原道監司，對中官歸鄉者，作戀闕詩，題其扇，垂淚道其意。及中官還，上偶見其扇，問知舜孝所爲，以爲愛我。又嘗於上前論難經義，勸行忠恕，以此深蒙眷遇，致位崇班。”】</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2월 9일 (기묘) 1번째기사</p>	<p>중궁(中宮)이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의 집에 거둥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에게 명하여 선온(宣醞)18021) 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p>	<p>○己卯/中宮幸領敦寧尹壕第。上命都承旨李世佑齎宣醞往賜之。</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2월 11일(신사)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요즈음 예빈시 판관(禮賓寺判官) 남흔(南忻)이 윤대(輪對)에서 말하기를, ‘풍운월로(風雲月露)18023) 의 글로써, 도(道)를 논하고 음양을 섭리(變理)하는 신하에게 시험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떤 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가? 또 이르기를, ‘재예(才藝)로써 금지 옥엽(金枝玉葉)18024) 에게 시험하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내 생각에, 종친(宗親)은 학술(學術)이 없는 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설치하여 권해서 힘쓰게 하려고 한 것이다. 당초에 법을 세우는 데 대신(大臣)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한 것이니, 그것을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우승지(右承旨) 안처량(安處良)이 아뢰기를,  “남흔의 윤대는 전날 선온(宣醞)을 대신(大臣)에게 내려 주고 시장(詩章)을 짓</p>	<p>○辛巳/傳于承政院曰：“日者，禮賓寺判官南忻輪對云：‘以風雲月露之狀，試之於論道變理之臣’，此指何事而言歟？且云：‘以才藝欲試於金枝玉葉’，予意以謂宗親無學術者頗多，故設此法，欲以勸勉之也。當初立法，與大臣議而爲之，其考啓。”右承旨安處良啓曰：“南忻輪對，指前日下宣醞于大臣而命製詩章也。”左副承旨宋瑛、右副承旨李則請鞫南忻，傳曰：“南忻之對，予意亦謂指此也。然棄而勿問</p>

	<p>기를 명하신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송영(宋瑛)과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척(李則)이 남          혼을 국문(鞫問)하도록 청하니, 전교하기를,          “남혼의 대답은 나의 생각에도 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내버          려두고 묻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p>	<p>可也。”</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2월 14          일(갑신)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유양춘(柳陽春)이 윤대(輪對)한 조건(條件)을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이세우(李世佑)·윤은로(尹殷老)·안처량(安處良)·송영(宋瑛)·이          척(李則)·한언(韓堰)이 의논하기를,          “1. 좌우에 명(銘)을 놓아 두고 출입하면서 보고 살피는 것은 보탬이 없지 아          니합니다.          1. 의정부 서사(議政府署事)는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행하였는데 세조 대          왕(世祖大王)께서 특명(特命)으로 폐하였으니, 어찌 연유한 바가 없겠습니까?          1. 사람을 쓰는 일에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으니 형세가 행할 수 없겠습니          다.          1. 전최(殿最)18028)의 일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고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거행할 수 없습니다.          1. 여러 도(道)에 상시로 어사(御史)를 두는 것은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          1. 수령(守令)에게 품계를 올리는 것은 본래 영전(令典)에 있으니, 가볍게 고          칠 수 없습니다.          1. 빈풍(飢風)시(詩)를 그림으로 그리는 일은, 농가(農家)의 어렵고 괴로움을          구중(九重)에서 알기가 어려워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고 살피는 것이니, 보탬          이 없지 아니합니다.          1. 농사·어업·소금 등의 일에 힘쓰는 일은 이미 해조(該曹)가 있고 또 제언사          (堤堰司)가 있으므로 다른 사(司)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p>	<p>○甲申/命承政院更議柳陽春輪對條          件。 李世佑、尹殷老、安處良、宋          瑛、李則、韓堰議：“一， 左右置銘出          入觀省， 不爲無益。 一， 政府署事，          祖宗朝已行之， 世祖大王特命廢之， 豈          無所由？ 一， 用人事， 有乖大體， 勢不          可行， 一殿最事， 載在《大典》， 行之          已久， 不可舉行。 一， 諸道常置御史，          斷不可行。 一， 守令陞品， 自有令典，          不可輕改。 一， 圖《飢風》事， 農家          艱苦， 九重難燭， 作圖觀省， 不爲無          益。 一， 務農魚鹽等事， 既有該曹，          又有堤堰司， 不必更立他司。 一， 恤          民隱、減田租， 雖古昔聖王愛民之政，          然我國土瘠租寡， 歲入不敷， 勢不可          行。 一， 擇授師表， 果是急務。 然成          均四學， 尙難其人， 況許多州府， 焉能          盡得其人？ 若糾正鄉風， 非教授、訓導          之任， 不可舉行。 一， 赴學事， 詳載</p>

	<p>1. 백성의 고통을 근심하고 전조(田租)를 감하는 일은 비록 옛 성왕(聖王)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는 땅이 메마르고 조세가 적어서 세입(歲入)이 부족하므로 형세가 행할 수 없습니다.</p> <p>1. 사표(師表)를 택하여 제수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급무이기는 하나,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18029) 에서도 오히려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허다한 고을에 어찌 능히 적당한 사람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을의 풍속을 바로잡는 것은 교수(教授)나 훈도(訓導)의 임무가 아니므로 거행할 수 없습니다.</p> <p>1. 부거(赴舉)18030) 의 일은 《대전(大典)》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어지럽게 고칠수 없습니다.</p> <p>1. 국가에서 문신(文臣)을 권장하는 것은 법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성취(成就)의 높고 낮음은 역시 재품(才品)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어찌 법이 지극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법을 세울 수 없습니다.</p> <p>1. 대개 연향(宴享)에 여악(女樂)을 쓰지 말도록 하라는 것은, 이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유래가 오래 되었고 조종조(祖宗朝)에서 말한 사람이 하나만이 아니었지만 마침내 변경하지 못한 것은, 좋아하고 숭상해서가 아니라 형세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p> <p>1. 국가의 풍속이 일체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못할 것이 또한 많은데, 하물며 중국 조정의 사신이 오는데 순전히 흑색(黑色)을 쓰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령이 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p> <p>1. 종친(宗親)의 천출(賤出)18031) 이 사족(士族)과 서로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근거없는 말이므로 족히 취할 바가 못됩니다.</p> <p>1. 신속(新屬)한 관원을 침학(侵虐)하는 것과 모여서 술마시는 것을 금하는 일은 법령에 나타나 있으니, 본래 유사(攸司)가 있습니다.</p> <p>1. 형조 당상관(刑曹堂上官)을 오랫동안 유임(留任)시키는 일은, 관리가 그 직</p>	<p>《大典》,不可紛更。 一, 國家獎勸文臣, 法非不美, 其成就之高下,亦由於才品, 豈法之未至而然哉? 不可更立新法。 一, 凡宴享勿用女樂, 此言是矣。 然其來已久, 自祖宗朝言之者非一, 而卒莫之變者, 非以好尚, 勢不得已也。 一, 國家風俗, 不能一遵華制者亦多, 況中朝使臣之來, 純用黑色, 已有著令, 不必更議。 一, 宗親賤出, 不與士族相婚, 此無稽之言也, 不足取也。 一, 新屬侵虐及會飲之禁, 著在令甲, 自有攸司。 一, 刑曹堂上久任事, 官吏久於其任, 方有成效。然不可更立新法。 一, 若一從申訴之言, 每移他司, 則非徒紛擾, 斷訟無際, 決不可行。 一, 救荒弭盜之方, 法非不詳, 在官吏奉行耳。 不須更立新法。 一, 軍士番休及替代、禁令、鍊試節目, 載在《大典》, 安可更改? 賜馬則一時特恩, 不可拘以常例。 一, 汰冗兵歸農事, 自有成憲, 不必更議。 一, 水軍以沿海居人充定事, 言者非一, 然勢不可行。 一, 去官作散軍士, 別立衛名成籍事, 已有成法, 不可更改。 一, 州縣官軍器每於習陣鍊習事, 觀察使、節</p>
--	---	--



	<p>임에 오래 있어야만 일을 이룰 수 있으나,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p> <p>1. 만약 일체 신소(申訴)하는 말에 따라서 매양 다른 관사(官司)로 옮기면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송사를 결단하는 데 끝이 없을 것이니,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p> <p>1. 흉년을 구제하고 도둑을 막는 방법은 법(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리가 받들어 행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므로,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p> <p>1. 군사의 번휴(番休)와 체대 금령(替代禁令)과 연시 절목(鍊試節目)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어찌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말[馬]을 하사하는 것은 한때의 특별한 은혜이니, 상례(常例)에 구애될 수 없습니다.</p> <p>1. 쓸모없는 군사를 추려서 고향에 돌아가 농사짓게 하는 일은 본래 이루어진 법이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p> <p>1. 수군(水軍)을 연해(沿海)의 사람으로 채워서 정하는 일은, 말하는 사람이 하나만이 아니나 형세가 행할 수 없습니다.</p> <p>1. 거관(去官)하여 산관(散官)이 된 군사는 따로 위(衛)의 이름을 세워서 적(籍)을 만드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으므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p> <p>1. 주현관(州縣官)의 군기(軍器)를 습진(習陣)할 때마다 연습하는 일은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상시로 순행(巡行)하며 조련(操鍊)하는데, 어찌 다시 어사(御史)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진법을 익힐 때에 나누어 주면 출납할 즈음에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1.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정액(定額)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경진년(18032)에 무사(武士)를 많이 뽑은 것은 특별한 한때의 일이었을 뿐입니다.</p>	<p>度使常時巡行操鍊，何必更遣御史？若於習陣時分給，則出納之際，不無有弊，仍舊何如？一，文武科定額，載在《大典》，庚辰年多取武士，特一時之事耳。一，兵馬水軍節度使僚佐，以文臣有武才者參用事，成法不可紛更。一，南方要害邊郡設巨鎮，仍約定倭船大小歲遣之數，朝議所定，不可更改也。一，備邊之策，靡不修舉，軍需築城，今方舉行。若屯田，策之良者也。然或有田而無軍，有軍而無田，勢不可行也。募兵則民無餘丁，亦不可行也。”</p>
--	---	---

	<p>1.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요좌(僚佐)에 문신(文臣)으로서 무재(武才)가 있는 이를 참작하여 쓰는 일은, 이루어진 법을 어지럽게 고칠 수 없습니다.</p> <p>1. 남쪽 지방 요해지(要害地)의 변경 고을에 큰 진(鎭)을 설치하고 인하여 크고 작은 왜선(倭船)의 해마다 보내는 수(數)를 약정(約定)한 일은, 조정의 의논으로 정한 것이어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p> <p>1. 변경을 방비하는 계책을 수거(修學)하지 아니함이 없고 군수(軍需)와 축성(築城)을 이제 바야흐로 거행하니, 둔전(屯田) 같은 것은 계책 가운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 전토는 있는데 군사가 없기도 하고 군사는 있는데 전토가 없기도 하니, 형세가 행할 수 없습니다. 군사를 모집하게 되면 백성에게 남은 장정이 없을 것이니, 역시 행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2월 15일(을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장차 문소전(文昭殿)18035) 과 연은전(延恩殿)18036) 에 친히 제사하려고 하였는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정지하였다. 아헌관(亞獻官) 윤필상(尹弼商)이 예조 좌랑(禮曹佐郎) 김수동(金壽童)을 보내어 아뢰기를, “제사를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전전(前殿)에 이미 진설(陳設)하였는데 이제 친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큰 제사가 아니면 예(禮)에 신위(神位)를 전전(前殿)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신위를 이미 옮길 수 없으면 이미 진설한 제물(祭物)을 마땅히 후전(後殿)으로 옮겨야 할 것이며 주악(奏樂)하는 절차도 없어야 할 것인데, 장차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그것을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세우(李世佑)·안처량(安處良)·한언(韓堰)은 아뢰기를, “여러 능침(陵寢)에 반드시 모두 축시(丑時)18037) 를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므로, 신 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축시에 미쳐 행하지 못하더라도 제</p>	<p>○乙酉/上將親祭文昭殿、延恩殿，以雨停之。亞獻官尹弼商，遣禮曹佐郎金壽童啓曰：“以親行故，於前殿已陳設。今不親幸而又非大祭，則禮不可移神位於前殿。神位既不可移，則已陳祭物，當移後殿，而無奏樂節次，將何以處之？”傳于承政院曰：“其議啓。”李世佑、安處良、韓堰啓曰：“諸陵寢未必皆用丑時行祭，臣等以爲雖未及行於丑時，移設祭物于後殿行之爲便。”宋瑛曰：“凡祭祀須用丑時，與其移奠物而失禮，不若移神位於前殿趁時行祭。”李則曰：“此有不可者三，</p>

	<p>물(祭物)을 후전(後殿)으로 옮겨서 행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고, 송영(宋瑛)은 아뢰기를,        “무릇 제사는 모름지기 축시를 써야 하므로 전물(奠物)을 옮겨서 예의에 벗어나는 것보다는 신위를 전전(前殿)으로 옮겨서 때에 맞추어 제사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이칙(李則)은 아뢰기를,        “이는 옮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가볍게 신위를 옮기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미 진설한 제탁(祭卓)을 옮기는 것이 두 번째이며, 친히 제사하지 아니하시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친히 행하지 못한다면 전전(前殿)에 옮겨 모실 수 없고, 또 큰 제사가 아니므로 역시 음악을 연주할 수 없으니, 비록 축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물을 후전에 옮겨서 제사를 행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輕移神位一也，移已設祭卓二也，非親祭而奏樂三也。”傳曰：“既未得親行，則不可移安於前殿，又非大祭，則亦不可奏樂。雖未及丑時，移奠物于後殿行祭可也。”</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2월 17        일(정해)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외방(外方)의 유생(儒生)들이 세자(世子)가 장차 입학(入學)한다는 것을 듣고 별시(別試)18038)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바로 농삿달을 당해서 양식을 싸가지고 모여든다 합니다. 만약 시취(試取)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 세자(世子)가 입학(入學)할 때 과거를 보여서 선비를 뽑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에는 선비를 뽑고자 하는데,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심회(沈滄)가 의논하기를,        “세자가 입학한 뒤에 선비를 시험하는 것은 신이 구례(舊例)를 알지 못하며,</p>	<p>○承政院啓曰：“今聞外方儒生，聞世子將入學，意有別試，正當農月，贏糧坌集。若不試取，使之知會，下送何如?”傳曰：“祖宗朝世子入學時，取士與否，未之知也，予意欲取士，其問于領敦寧以上。”沈滄議：“世子入學後試士，臣未知舊例。且非親行之例，不須別試。”韓明澮、尹弼商、李克培、尹壕議：“世子入學，實是盛事，且今多士雲集，試取允當。”盧思愼議：“自古人君，求賢如不及。大學</p>

	<p>또 친히 행하는 예(例)가 아니므로 별시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p> <p>하고,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세자가 입학하는 것은 진실로 성대한 일입니다. 또 이제 많은 선비가 구름처럼 모였으니, 시험해 뽑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어진이를 구하기를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였으며, 태학(太學)18039) 이라는 것은 현명한 선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가(車駕)가 거동해 임하여 뛰어난 선비를 발탁(拔擢)하는 것인데, 세자의 입학이 어찌 임금의 일과 예(例)가 같겠습니까?”</p> <p>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만약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 있으면 뽑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상당(上黨)18040) 의 의논에 의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者，賢士之所關，故車駕臨幸，拔擢髦俊。世子入學，豈可與君上之事同例乎？”御書：“若有賢良，取之何妨？依上黨議。”</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2월 19일(기축) 2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최관(崔灌)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한명회(韓明澮)가 휴가를 청하여 장차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에서 목욕하려고 한다 하니, 역로(驛路)에 폐해(弊害)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도내(道內)의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수령(守令)들이 반드시 모두 맞이해 위로할 것이므로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한명회의 병이 매우 중하지는 않으니, 가을을 기다려서 돌아가게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청주(淸州)의 축성(築城)은 급한 일이 아니며, 이제 듣건대 돌 줍는 군부(軍夫)가 밀과 보리를 밟아버린다고 하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였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쌓게 하소서. 겸감찰(兼監察)을 두는 것은 환자곡[還上穀]을 거두기 위한 것인데, 이제 묵은 곡식이 이미 다하여 민간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바치기를 독촉하니, 매우 적당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司憲府持平崔灌來啓曰：“臣等聞韓明澮請假將沐浴于忠淸道公州。非徒驛路有弊，農務方興，而道內觀察使、節度使、守令必皆迎慰，其弊不貲。明澮之疾非甚劇，待秋而歸，未晚也。淸州築城，非急務也。今聞拾石軍夫，踐踏牟麥，請姑停，待秋而築。設兼監察，爲收還上也。今舊穀既沒，民間乏食，而催納如前，甚未便。”傳曰：“國之元勳存者無幾，故欲使無疾久安於世也。既下書備給食物矣，政丞有何事而求見觀察使，觀察使亦有何</p>

	<p>“나라의 원훈(元勳)이 생존한 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이 없이 오랫동안 세상에 편히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글을 내려 음식물을 갖추어 주었는데, 정승(政丞)이 무슨 일이 있어서 관찰사를 만나보고자 하겠으며 관찰사도 무슨 일이 있어서 맞이해 보겠는가? 청주에 축성하는 일은 가을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경창(京倉)의 환자곡[還上穀]은 마땅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事而迎謁乎? 清州築城事, 待秋成可也。京還上, 則當令該曹議而處之。”</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2월 28일(무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정석견(鄭錫堅)이 아뢰기를,</p> <p>“무릇 과장(科場)의 시험날에는 근수(根隨)18052) 와 사령(使令)을 모두 공궤(公饋)하는데, 시권(試券)을 고사(考査)하는 날에는 공궤가 없기 때문에 각자 물러가서 밥을 먹으므로 출입을 금함이 없으니, 거자(舉子)와 시관(試官)이 서로 통할 듯합니다. 청컨대 과장(罷場)할 때까지 한하여 모두 공궤하여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가하다.”</p> <p>하였다.</p> <p>헌납(獻納) 김호(金浩)가 아뢰기를,</p> <p>“국가에서 사유(師儒)로 선택한 사람은 비록 외임(外任)에 개만(簡滿)18053) 하지 아니한 자일지라도 모두 성균관(成均館)에 보임(補任)하여 가르치기를 오로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혹은 다른 관직에 체수하기도 하고 혹은 외방(外方)에 사절(使節)로 나가서 가르치는 일을 오로지하지 아니하여 나라 일이 허술합니다. 청컨대 다른 관사(官司)에 임명하지 말고 차례로 옮기게 하소서.”</p> <p>하므로, 임금이 좌우에 물으니,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대답하기를,</p>	<p>○御經筵。講訖, 持平鄭錫堅啓曰: “凡科場試日則根隨、使令皆公饋, 考卷日則無饋, 故各自退食, 出入無禁, 恐舉子與試官交通。請限罷場竝令公饋, 毋得出入。” 上曰: “可。” 獻納金浩啓曰: “國家選擇師儒, 雖外任未簡滿者, 竝補成均館, 使專教誨。近者或移授他職, 或出使于外, 教誨不專, 國事虛疎。請勿任他司, 次次遷轉。” 上問左右, 知事李克增對曰: “祖宗朝, 尹祥、金泮、金鉤、金末久任成均館, 陞至兼司成, 故爲弟子者敬受其訓, 人才輩出。今館員屢遞, 不以教誨爲己任。請更擇師儒, 依弘文館例次次遷轉。” 上曰: “令該曹選堪爲師儒者以啓。”</p>

	<p>“조종조(祖宗朝)에 윤상(尹祥)·김반(金泮)·김구(金鉤)·김말(金末)이 성균관에 구임(久任)하였다가 올라서 겸사성(兼司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자(弟子) 된 자가 그 가르침을 공경히 받아서 인재가 배출(輩出)되었는데, 지금은 관원(館員)이 자주 바뀌어서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청컨대 다시 사유(師儒)를 선택하여 홍문관(弘文館)의 예(例)에 의해서 차례로 옮기도록 하소서.”</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유(師儒)를 감당할 만한 자를 뽑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0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2월 29일(기해) 1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서 문묘(文廟)에 술잔을 올리고 드디어 입학(入學)하였다.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을 박사(博士)로 삼아서 의식과 같이 예(禮)를 행하였다.</p>	<p>○己亥/世子詣成均館，酌獻于文廟，遂入學。以達城君徐居正爲博士，行禮如儀。</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4일(갑진) 2번째기사</p>	<p>호조 관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 등이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와 강화(江華) 보음도(浦音島)의 둔전(屯田) 배치 형태를 그려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이 땅은 모두 경작하기에 적합합니다만 보음도는 월곳이[月串]의 선군(船軍)으로서는 다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목장(牧場)을 옮기어 백성이 스스로 경작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대부도는 겨우 2백여 석(碩)을 심을 정도이니, 목장을 옮기지 말고 화량(花梁) 수군(水軍)으로써 혹은 토장(土場)을 쌓고 혹은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경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判書李德良、京畿觀察使成健等圖上南陽大部島、江華浦音島置屯田形勢，仍啓曰：“此地皆宜耕墾。但浦音島非月串船軍所能盡耕，須移牧場，許民自耕。大部島僅可種二百餘碩，勿移牧場，以花梁水軍，或築土場，或設木柵，耕治何如？”從之。</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7일(정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두 대비전(大妃殿)께 잔치를 올리고 인하여 술과 풍악을 승정원(承政院)·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예조(禮曹)의 당상(堂上),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내려 주었다.</p>	<p>○丁未/上進宴于兩大妃殿。仍賜酒樂于承政院、都摠府、兵曹。禮曹堂上、司饗院提調、弘文館、藝文館。</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3월 8일 (무신) 1번째기사</p>	<p>왕세자(王世子) 입학(入學) 때의 사(師)·빈객(賓客)·예조(禮曹) 관관(館官)·서연관(書筵官)·익위사(翊衛司), 여러 집사(執事) 및 유생(儒生) 1백 4인을 부르도록 명하여 인정전(仁政殿) 뜰에 모이게 하여 술과 풍악을 주고, 인하여 박사(博士) 서거정(徐居正)에게 단자의(段子衣) 한 벌, 표피(豹皮) 한 장을, 빈객(賓客) 유지(柳攄)에게 호피(虎皮) 한 장(張), 큰 화살 한 부(部)를,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경동(李瓊全)·참의(參議) 권중린(權仲麟)에게 호피 각각 한 장을, 보덕(輔德) 이세광(李世匡)·가필선(假弼善) 정이교(鄭以僑)와 작헌(酌獻) 때의 전사관(典祀官)이던 이증문(李曾文)에게 표피(豹皮) 각각 한 장을, 유생들에게 활 각각 한 장을 주게 하고, 인하여 유생에게 명하여 석연동정(錫宴彤庭)이라는 글제로 육운 율시(六韻律詩)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p>	<p>○戊申/命召王世子入學時， 師、賓客、禮曹、館官、書筵官、翊衛司諸執事及儒生一百四人，會仁政殿庭，賜酒樂。 仍賜博士徐居正段子衣一襲、豹皮一張，賓客柳攄虎皮一張、大箭一部，禮曹參判李瓊全、參議權仲麟虎皮各一張，輔德李世匡、假弼善鄭以僑、酌獻時，典祀官李曾文豹皮各一張，儒生等弓各一張。 仍命儒生製‘錫宴彤庭’六韻律詩以進。</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3월 11일(신해) 5번째기사</p>	<p>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계동(李季全)이 중국에서 활 쏘는 것을 가르치는 법을 그리어 올리고, 인하여 글로 아뢰기를, “매 열오(閱伍) 【긴 담을 쌓고 군사를 들여보내는 곳의 이름.】 마다 각각 당면(當面)한 과자돈(把子墩) 【우리 나라의 과녀[侯的]과 같은 것임.】 까지의 거리는 1백 20보(步)이고, 열오의 좌우(左右)의 거리는 각각 10보(步)이며 한 열오의 군사는 25명인데, 한 사람이 각각 세 화살을 잡고 섰다가 청상(廳上)에서 큰 북을 치면 매 열오에서 각 한 사람씩 당면한 과자를 쏩니다. 세 화살을 다 맞힌 자는 박두(樸頭)18080) 셋, 돼지 머리 하나, 소주(燒酒) 한 병을 상주고, 두 화살을 맞힌 자는 박두 하나를 상주고, 한 화살을 맞힌 자는 박두 하나를 상주며, 25고(鼓)를 치면 그칩니다. 【반드시 25고(鼓)로 한정을 한 것은 한 열오의 군사가 25명이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우리 나라의 군사는 젊어서부터 교장(教場)에서 활 쏘는 법을 익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同知中樞府事李季全圖上中原教射之法。 因書啓曰： 每閱伍 【築小墻納軍之名。】 各距當面把子墩 【如我國侯的之類。】 一百二十步， 閱伍左右相距各十步。 一閱伍軍士二十五名， 一人各把三箭而立。 廳上擊大鼓， 則每閱伍各一人射當面把子， 三箭皆中者， 賞樸頭三、豬頭一、燒酒一瓶， 二箭中者， 賞樸頭一， 一箭中者， 賞樸頭一。 二十五鼓而止。 【必以二十五鼓爲限者， 以一閱伍軍二十五名也。】 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議：“本國軍</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중국의 교장(教場)에서 열무(闕武)하는 일은 신도 보았는데, 그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며 화살을 쏘는 것이 짜임새가 없는 것 같으니, 굳이 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중국의 교장의 법은 규모는 비록 다르나 곧 우리 나라의 과녁을 쏘는 법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세조(世祖) 때에 교열(敎閱)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참으로 병가(兵家)의 의범(儀範)입니다. 그 중국 교장(教場)의 법은 다만 각각 한 둔(墩)에 대하여 쏘는 것을 익히는 것이고 또 일시에 혹은 맞히기도 하고 혹은 못맞히기도 하며 징[錚]과 북[鼓]이 난잡(亂雜)하기만 하니, 족히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중국에는 평원 광야(平原廣野)18081) 가 많아서 대오(隊伍)를 벌이어 서로 향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싸움을 가르치는 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평원 광야가 없으므로, 중국의 교장과 같이 하려 하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습진(習陣)은 형상과 이름만 가르칠 뿐이고 쏘는 것을 가르치는 법은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습진(習陣)할 때에 겸하여 말타고 활 쏘게 하고 혹은 과녁을 쏘게 하여 상벌(賞罰)을 삼게 하소서.”</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중국은 정청(正廳) 좌우에 열오(閱伍) 각각 넷을 설치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으니, 그 제도에 의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청 좌우에 열오 각각 두 개를 설치하여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자, 전교하기를,  “사청(射廳)에 임시로 설치하여 그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시험하도록 하</p>	<p>士，自少不習教場射法，行之爲難，仍舊爲便。” 尹弼商議：“中朝教場闕武之事，臣亦觀之。其進退發矢，似乎齟齬，不須舉行。” 洪應議：“中朝教場之法，規模雖異，卽我國射侯之法，仍舊何如?” 李克培議：“世祖朝撰敎閱之法，此誠兵家儀範。彼中朝教場之法，只各對一墩習射，而且一時或中或否，錚鼓亂雜，不足法也。” 盧思愼議：“中朝多平原廣野，可以列隊相向，故其敎戰法如此。我國無平原廣野，欲如中原之敎場，不可得也。但我國習陣，只敎形名而已，無敎射之法，臣以謂於習陣時，兼令騎射，或射侯，以爲賞罰。” 尹壕議：“中原則正廳左右，設閱伍各四，我國無廣野，不依其制。但於正廳左右，設閱伍各二，試驗何如?” 傳曰：“可於射廳暫設，以試便否。”</p>
--	--	---



	<p>라.” 하였다.</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3월 14 일(갑인) 4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대부도(大部島)를 명년을 기다려 개간하면 한갓 사체(事體)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정교(政教)가 번거롭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둔전(屯田)을 두고 내수사(內需司)에 곡식을 저축하기를 예전의 경림(瓊林)·대영(大盈)18088) 과 같이 한다면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해 흉년이 들어 국고가 텅비었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큰 공을 이루는 자는 작은 폐단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비록 간책(簡策)에 쓰더라도 단연코 후세의 비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이어 곧 과하면 불가하지 않습니까? 잘살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백성을 부리면 비록 괴롭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백성을 위하여 시작하였으니, 또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청컨대 역사를 정지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둔전을 설치하는 것은 어찌 사용(私用)을 삼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군자(軍資)를 보충하고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관(臺官)과 대신(大臣)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은데, 내가 어찌 홀로 고집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백성에게 스스로 경작하기를 허용하되 마치 예전의 정전법(井田法)18089) 과 같이 하여, 여덟 집이 나누어 사전(私田)을 받고, 그들이 힘을 합하여 공전(公田)을 경작하게 해서 십분의 일의 이익을 거두었으면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자,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기계(器械)를 수송하여 선군(船軍)을 역사시킨 것이 며칠이 되었으니, 경솔히 과할 수 없습니다.”</p>	<p>○承政院啓曰：“大部島待明年開墾，非徒有違事體，抑亦政教煩數。若置屯田而儲穀於內需司，如古之瓊林、大盈，則臺諫之言然矣。今則以連年旱荒，國庫虛竭，故欲廣儲備耳，有何不可？古云：‘成大功者，不計小弊。’雖書之於簡，斷無後世之譏。今已始役，而旋即罷之，無乃不可乎？以佚道使民，雖勞不怨；今既爲民而作，又何怨焉？請勿停役。”傳曰：“今設屯田，豈欲爲私用哉？只欲補軍資、廣儲備也。然臺官與大臣皆以爲不可。衆論如此，予何獨固執？予意欲許民自耕，如古井田之法，八家分受私田，而同力以耕公田，以收什一之利，何如？”承旨等啓曰：“今已輸器械，而役船軍有日矣，不可輕罷。”</p> <p>【史臣曰：“成健、李德良、金升卿、李世佑，皆上所器重之臣也，非不知屯田之有害於民，而必欲建置。雖臺諫、大臣沈澮等，皆以爲不可，而猶執拗不回，乃曰：‘成大功者，不計小弊，</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성건(成健)·이덕량(李德良)·김승경(金升卿)·이세우(李世佑)는 모두 임금이 중하게 여기는 신하이다. 둔전(屯田)이 백성에게 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반드시 설치하려고 하여 비록 대간(臺諫)과 대신(大臣) 심회(沈澮) 등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서 말하기를, ‘큰 공을 이루는 자는 작은 폐해를 계산하지 않으니, 간책(簡策)에 쓰더라도 단연코 후세의 비방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식자(識者)가 그르게 여기었다.” 하였다.</p>	<p>書之於策，斷無後世之譏。’ 識者非之。”】</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15일(을묘) 2번째기사</p>	<p>경연관(經筵官)을 북소(北所)18090) 에서 대접하고, 혹은 사후(射侯)18091) 하고 혹은 투호(投壺)18092) 하게 하였으며, 당상관(堂上官)에게 후추[胡椒] 각각 7두(斗), 당하관(堂下官)에게 각각 3두를 주게 하였다.</p>	<p>○命饋經筵官于北所，或射侯，或投壺。賜堂上官胡椒各七斗，堂下官各三斗。</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15일(을묘)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자정(金自貞) 등이 차자(筴子)를 올리기를, “지난번에 대부도(大部島)의 목장 안에 있는 소전(召田) 등지가 논[畚]을 만들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개간하여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그 논갈이하는 소는 영흥(靈興)·선감(仙甘)·대부(大部) 등 세 목장 목자(牧子)의 사축(私畜)을 쓰고, 그 인부(人夫)는 화량(花梁)·영종(永宗) 두 포(浦)의 수군(水軍)을 쓰라고 명하시고, 인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화량 절제사(花梁節制使)에게 감농(監農)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신 등이 온당치 못한 사유를 대강 들어 두세 번 계달하였는데 이를 호조(戶曹)에 하문(下問)하시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기계가 이미 완비되었으므로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은 들으니, 예전의 천자(天子)·제후(諸侯)가 종묘(宗廟)의 자성(棗盛)18093) 을 위하여 적전(籍田)을 둘 뿐이고, 그 나머지 토지는 백성이 모두 받는다고 합니다. 그 둔전(屯田)이니 영전(營田)이니 하는 것은 다만 후세의 변장(邊將)이 이익을 말하고 사공(私功)을 요구하는 술책이지 선왕(先王)이 국가를 생각하여 들을 경리(經理)하고 토지에 인하여 조세(租稅)를 제정한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p>	<p>○司憲府大司憲金自貞等上筴子曰：頃者，以大部島場內召田等處，合作水田，命開墾置屯田；其耕治之牛，用靈興、仙甘、大部等三場牧子私畜；其人夫，用花梁、永宗二浦水軍；仍責南陽府使、花梁節制使監農。臣等略將不便事由，再三啓達，下問戶曹；戶曹啓以器械已完，不宜中止。臣等聞古者天子諸侯爲宗廟棗盛，置籍田而已，自餘土地，則民皆受之。其曰屯田、營田者，特後世邊將言利邀功之術，非先王體國經野因地制賦之法也。然則四境之內，莫非王土，豈可私爲町畦，至以</p>

사경(四境) 안이 왕토(王土)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사사로이 정휴(町畦)18094) 를 만들어 국둔전(國屯田)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 십배가 아니면 할 것이 못됩니다. 지금 세 목장의 거민(居民)이 을사년(18095) 의 참혹한 흉년을 겪고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집집마다 가축을 잡아먹으며 조석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병오년(18096) 1년은 비록 조금 수확을 하였으나 공채(公債)·사채(私債)의 빚을 갚기 위해 우마(牛馬)를 다 팔아서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년 농사에 만일을 기대하고, 차라리 먹을 것을 못먹으면서도 콩과 꿀을 꾸어다가 그 소를 기르는 형편인데, 지금 만일 그것을 빼앗아다가 둔전을 개간하게 하면 백성의 근심과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에 어그러지는 것은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것입니다. 호조에서는 한갓 이재(理財)만을 힘쓰고, 백성의 농사 시기를 빼앗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며 반성을 하기는 커녕 앞서 한 말의 잘못된 것을 문식(文飾)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수군(水軍)을 설치한 것은 바다 도적을 막자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심으로 주楫(舟楫)을 다스려 수전(水戰)에 예속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근년에 이 무리들을 모두 몰아다가 토목(土木)에 역사시키고 지금 또 둔전에 역사시키니, 다만 두 포(浦)의 군사가 휴양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변군(邊軍)도 맥이 풀리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군국(軍國)의 원대한 계획이겠습니까? 감농관(監農官)도 해마다 세 철 동안 군사를 영솔하면서 권과(勸課)를 빙자하여 침요(侵擾)하며 폐해를 끼치는 것이 또한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어찌 구구한 둔전에 있다 하겠습니까? 농사 시기를 빼앗지 말고,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에 힘쓸 수 있게 하여 모두 남은 곡식이 있게 되면 자연히 국고가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낭비하면서 말하기를, ‘국가의 용도가 부족하니, 마땅

國屯田爲名乎? 大抵利於民不十倍, 則不當爲。 今三牧場居民, 經乙巳旱荒之慘, 饑饉之極, 不堪自存, 家家殺烹頭畜, 以延朝夕之命。 丙午一年雖稍收穫, 於公私負債之償, 盡賣牛馬, 所餘者無幾。 猶冀萬一於今歲力農, 寧自廢食, 而稱貸芻豆, 以養其牛。 今若奪之, 使墾屯田, 則民之愁怨, 可勝言哉? 其悖於事理, 不待智者而後知之。 戶曹徒務理財, 不慮民時之奪, 執迷不回, 以文前言之失, 甚不可。 且水軍之設, 所以禦海寇也。 當專治舟楫, 俾隸水戰。 近年盡驅此輩, 役於土木, 今又役於屯田, 則非徒二浦之軍, 不得休養, 所在邊軍, 莫不解體, 是豈軍國經遠之謀乎? 監農官每歲三時領軍, 憑依勸課, 侵擾作弊, 亦必不費。 生財之道, 豈區區屯田云乎哉? 不奪其時, 使百姓力農, 皆有餘粟, 則自然府庫充牣矣。 其不量入爲出, 冗費百端, 曰: “國用不裕, 當置屯田者” 不免爲掊克之歸矣。 古人問國君之富, 數馬以對。 則今此牧場, 先王所規畫, 豈可侵墾? 儻曰, 沃饒不可使地有遺利, 則固當聽民自耕, 以收租稅而已。

	<p>히 둔전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면 취렴(聚斂)의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국군(國君)의 부력(富力)을 물으면 말[馬]을 썬해서 대답하였으니, 지금 이 목장은 선왕(先王)께서 규획(規畫)하신 것인데, 어찌 침노하여 개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땅이 비옥하여 땅에 이익을 남길 수 없다면 마땅히 백성이 스스로 경작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조세(租稅)를 거둘 뿐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不聽。</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17일(정사) 1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최관(崔灌)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연정렬(延井冽)로 동래 현령(東萊縣令)을 삼았는데, 연정렬이 전에 연안부사(延安府使)가 되었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 하여 하루 동안에 아전 두 사람을 때려죽였고, 또 배로 물고기와 소금을 운반하여 경강(京江)에 정박시키고, 배를 무역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에 연좌되어서 영불서용(永不敘用)을 당하였고, 잔인 포악하고 청렴하지 못하니, 임민(臨民)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동래(東萊)는 왜선(倭船)이 정박하고 재화(財貨)가 모이는 곳인데, 만일 탐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임하게 하면 반드시 횡렴(橫斂)에 이르게 되어 백성을 무마하고 외침을 방어하는 것이 도리를 잃을 것이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의(注擬)18103) 하였는가? 이조(吏曹)에 물으라.”  하였다.</p>	<p>○丁巳/司憲府持平崔灌來啓曰：“今以延井冽爲東萊縣令，井冽前爲延安府使，以不能捕魚，一日之內杖殺衙吏二人。且船運魚鹽，泊京江買布，事覺坐罪，永不敘用。殘酷不廉，不宜臨民。東萊，倭船所泊，財貨所萃，若以貪殘之人臨之，則必至於橫斂，而撫禦失道矣。請改差。”傳曰：“如此之人，何以注擬？其問吏曹。”</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19일(기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정토사(淨土寺) 산기슭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짐승을 쏘는 재상들에게 명하기를,  “짐승 쫓는 것을 탐하여 발곡식을 밟아 망그러뜨리지 말라.”  하고, 인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망원정(望遠亭)18118) 에 거둥하여 내구 마(內廐馬) 한 필을 주었다.</p>	<p>○己未/上幸淨土寺山麓，觀獵。命射獸宰相等曰：“毋貪逐獸，踏損田穀。”仍幸月山大君婷望遠亭，賜內廐馬一匹。</p>
<p>성종 201권, 18년</p>	<p>영안도(永安道) 축성 순찰사(築城巡察使) 홍응(洪應)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p>	<p>○庚申/永安道築城巡察使洪應來復</p>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3월 20  
일(경신) 1번째기사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김단다무(金丹多茂)가 하삼도(下三道)에 옮겨 살고자 하는가?”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김단다무를 보건대 비록 하삼도라도 반드시 옮겨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래 울적함(兀狄哈)과 원한이 있었으나, 그뒤에 원한을 풀었었는데, 하루는 함께 과녁을 쏘다가 울적함이 화살이 다하자 김단다무가 연하여 두 사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원한이 맺혀서, 김단다무는 원수를 피하여 우리에게 내투(來投)하였으니, 반드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단다무가 나이 장차 70이고 그 아내 또한 늙었으며, 자녀 네 사람이 있는데 모두 미약하여 큰놈이 겨우 15세이니 반복(反覆)할 생각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록 그대로 혜산(惠山)에 살더라도 해로울 곳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김단다무가 원수를 피하여 도망하여 왔으니, 어찌 반드시 내지(內地)에 옮겨 들어오게 해야 하겠는가? 그대로 혜산에 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신이 오진(五鎭)18119) 에 이르러,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성밀의 야인(野人)을 불러 대접하였는데, 한 진(鎭)에 사는 자가 혹은 1백 50인이고, 혹은 3백여 명까지 많은 데도 있는데, 종성(鍾城)이 더욱 많았습니다. 음식을 먹일 때에 모두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면서, 주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감격함이 천지(天地)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야인이 진장(鎭將)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명령을 듣기를 노예같이 하였고, 조금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졸들이 곧장으로 함부로 때려도 야인들은 두려워하여 추창해 나가니, 우리 나라의 변방 위엄에 복종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이 오진을 보건대, 성읍(城邑)이 굉장하고 거민이 조밀하여 조종께서 규칙 처리하신 것이 지극히 원대하였습니다. 다만 병기를 늘 휴대하고 있으므로,

命。上引見曰：“金丹多茂欲移居下三道乎？”應啓：“觀丹多茂，雖下三道，必欲移居矣。此人素與兀狄哈有怨，其後解仇，一日與之射的，兀狄哈矢盡，丹多茂連射二人殪之。以是更構怨，丹多茂避仇來投於我，必不肯還矣。丹多茂年將七十，其妻亦老，有子女四人皆微弱，長者年甫十五，保無反覆之慮。雖仍居惠山無妨。”上曰：“丹多茂避仇逃來，何必移入內地？仍居惠山可也。”應又啓曰：“臣到五鎭，每處必招城底野人饋之，居一鎭者，或百五十人，或多至三百餘人，鍾城尤多。饋餉時，皆頓首謝曰：‘上恩至重，感極天地。’野人在鎭將前，俛首聽命，有同奴隸，小有非違，邏卒以杖亂打，野人畏縮趨出。其服我國邊威如此。臣觀五鎭，城邑宏壯，居民稠密，祖宗規畫處置，至爲遠大。但兵器常時帶著，不如南方之韜藏，故易致破毀。請角弓、弓絃等物，間歲入送分給，以慰軍情。今五鎭判官，以文臣差遣，奉法莅事，其所長也，但不合於防戍之任。然爲府使所敬憚，府使不敢爲非，不無有益。但以離妻子戍絕

남방에서 칼집을 씌워 간직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청컨대 각궁(角弓)·궁현(弓絃) 등의 물건을 한 해 간격으로 들여보내어 나누어 주어서 군정(軍情)을 위로하게 하소서. 지금 오진의 판관(判官)을 문신(文臣)으로 차견(差遣)하였는데, 법을 준수하며 일에 임하는 것은 그들의 장점이지 마는, 다만 방수(防戍)의 임무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사(府使)가 공경하고 꺼리어 감히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니 이익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처자(妻子)를 떠나 절역(絕域)에서 방수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합니다. 문신은 비록 활을 쏠 수 있는 자라도 내버리고 익히지 않고 이를 회피합니다. 청컨대 처음 제수(除授)할 때나 체임(遞任)할 때에 계급을 더하여 권장하소서. 경흥(慶興)·온성(穩城) 등 고을은 노비의 수가 적으므로 야인을 대접할 적에 군사로 하여금 음식을 나르게 하니, 이는 사체(事體)에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공천(公賤)을 주어서 충당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북도(北道)는 공천이 넉넉지 못하니, 청컨대 본고을에 사는 사천(私賤)으로 정하여 주고, 산접(散接)하여 있는 공천으로 그 주인에게 주게 하소서. 명천현(明川縣)은 땅이 비습(卑濕)하고 가옥(家屋)이 낮으며 바다가 멀어서 진상하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자가 며칠씩 걸려야 돌아오게 되니,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그 백성들이 바다 가까운 곳에 나가서 높고 건조한 땅을 택하여 옮겨 배치하고자 하니, 청컨대 그 소원을 들어주소서. 회령부(會寧府)는 군사용 저축이 전에는 20만 석이나 되었으나 근래에는 못된 수령(守令)을 만나 제멋대로 낭비하여 소모된 것이 매우 많고, 남은 곡식은 아주 적습니다. 절도사(節度使) 변종인(卞宗仁)이 말하기를, ‘회령은 큰 고을이므로, 곡식의 저축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컨대 혹은 가까운 고을의 전세(田稅)를 수납하거나 혹은 면포(綿布)를 가지고 곡식을 무역하여 저축을 넓히게 하소서. 경성(鏡城)에 사는 알타리(斡朶里) 이아을가무(李阿乙加茂)가 신을 보고 말하기를, ‘청암(靑巖)에 사는 사람들이 본토(本土)에 도망하여 들어온 자를 내가 힘을 다해 쫓아 보냈

域爲苦。文臣雖能射者，廢棄不習以避之。請於初授或遞任時，命加級勸勵。慶興、穩城等邑奴婢數小，野人饋餉時，令軍士執饋物，事體未便。當給公賤以益之。但北道公賤不敷，請以私賤之居本邑者定給，而以散接公賤給其主。明川縣其地沮洳，屋宇卑湫，而距海甚遠，採進上海物者，經數日乃還，甚有弊。其民欲就近海處，擇高燥地移排，請從其願。會寧府軍儲，前此多至二十萬碩，近因守令非人縱意妄費，所耗甚多，留穀甚少。節度使卞宗仁言曰：‘會寧，大邑也，儲穀不可不多。’請或納近邑田稅，或用縣布貿穀，以廣儲峙。鏡城居斡朶里李阿乙加茂見臣，言曰：‘靑巖居人逃入本土者，我盡力刷還，至今未得蒙恩。’言甚哀懇，論賞何如？”上曰：“令兵曹考功勞以啓。”應又啓曰：“南道節度使無一幕僚，事體未便。依南方例，置虞候；或依北道例，置評事何如？”上曰：“何時廢虞候？令兵曹考啓。”應又啓曰：“鎮東堡舊基，地雖間曠可耕食，然距本邑四十餘里，勢甚單弱，今設堡處，諸賊要路，且近本邑，

	<p>는데, 지금까지 은사(恩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그 말이 아주 간절하였습니다. 논상(論賞)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공로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p> <p>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는 막료(幕僚)가 한 사람도 없으니, 사체(事體)가 옳지 못합니다. 남방(南方)의 예(例)에 의하여 우후(虞候)를 두든지 혹은 북도(北道)의 예(例)에 의하여 평사(評事)를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우후를 폐지하였는가? 병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p> <p>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진동보(鎭東堡)의 옛터는 비록 땅이 넓어서 경작하여 먹을 만하나 본고을까지의 거리가 40여 리나 되어 형편이 매우 단약(單弱)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堡)18120)를 설치한 곳은 여러 적의 요로(要路)이고 또 본고을과 가까워서 구원하기가 매우 편하니, 다시 옛터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동인보(同仁堡)는 비록 내지(內地)에 있으나 도적의 길[賊路]이 많고, 혜산(惠山)·운총(雲籠) 등의 진(鎭)이 모두 큰 산 30리의 거리에 막혔으니, 급할 때에 미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를 설치하고 거민(居民)을 첩입(疊入)18121) 하게 하여 도적[寇]을 방비한 지가 오래였으므로, 지금은 거민들이 원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첩입(疊入)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 보를 혁파하고자 하는데, 경솔히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운총보(雲籠堡)의 옛터는 고단(孤單)하고 멀어서 지킬 수 없는 땅이고, 지금 보를 설치한 곳은 토지가 비옥하여 살기는 마땅하나 수세(水勢)에 충파(衝罷)되어 인물(人物)이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설(妖說)을 퍼뜨려서 여러 사람을 광혹(誑惑)시키니, 경솔히 옮겨 배치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모두 예전대로 두게 하소서. 연대역(燕臺驛)·아산역(阿山驛)</p>	<p>救援甚便，不可復還舊基。 同仁堡雖在內地，多有賊路，而惠山、雲籠等鎭，俱隔大山三十里之程，緩急未及相救。 設此堡，疊入居民，以備寇久矣。 今居民不思遠慮，厭其疊入，欲革此堡，不可輕易革罷。 雲籠堡舊基孤單絕遠，不可守之地。 今設堡處，地饒宜居，而乃以爲水勢衝罷、人物不阜，鼓動妖說，誑惑衆聽，不可輕易移排。 請竝仍舊。 燕臺、阿山兩驛之間，相距不遠，故今欲合置一處。 如此則距綠野、雄無站各百餘里，距行營鍾城各九十里，四面相距遙遠，往來人馬困斃必矣。 兩驛人吏等請勿合置，從願仍舊何如?” 傳于承政院曰：“政丞所啓事，令該曹議啓。”</p>
--	--	---

	<p>두 역(驛) 사이는 상거(相距)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통합하여 한 곳에 두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녹야(綠野)·웅무참(雄無站)까지가 각각 1백여 리이고 행영(行營)·종성(鍾城)까지가 각 90리여서 사면의 상거가 멀므로, 왕래하는 인마(人馬)가 반드시 피곤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두 역의 아전들은 합하여 두지 말기를 청하니, 소원에 따라서 예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정승(政丞)이 아된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25일(을축) 1번째기사</p>	<p>대마주(對馬州) 선위사(宣慰使) 정성근(鄭誠謹)과 통사(通事)와 군관(軍官)을 빈청(賓廳)에서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정성근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은 노둔하고 천한 인품으로서 성명(聖明)한 때를 만나 유악(帷幄)에서 받들어 모신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털끝만치도 성덕(聖德)에 보익한 것이 없고 한갓 구구하게 국가에 보답하려는 정성이 있어 여러 번 광언(狂言)을 진달(陳達)하였었는데, 전하께서 죄를 주시지 않고 도리어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었으니, 성은(聖恩)이 하늘 같아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항상 본래 품고 있던 마음을 다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마침을 삼가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여 과오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시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해외(海外)에 가는 명을 받아 멀리 연곡(輦轂)18123) 을 떠나게 되었으니,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을 어찌 감히 조금이나마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옛적에 당(唐)나라 위징(魏徵)이 태종(太宗)에게 말하기를, ‘폐하께서 정관(貞觀)18124) 초년에는 사람이 간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항상 말하도록 유도하였고, 중간에는 기뻐하며 간하는 말을 따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비록 억지로 따르더라도 오히려 난색(難色)을 짓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태종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뜻이 예전 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p>	<p>○乙丑/命饋對馬州宣慰使鄭誠謹及通事軍官于賓廳。誠謹上書曰：  臣以駑鈍賤品，遭遇聖明，奉侍帷幄，今茲十年。曾無絲髮可以裨益聖德，徒有區區報國之誠，屢陳狂言，殿下不以爲罪，而反加優容，聖恩如天，報補無地。常懷罄竭素蘊，俾聖上愼終如始，而入於無過之地。況今銜命海外，遠離輦轂，其平昔懷抱，安敢少隱？昔唐魏徵言於太宗曰：“陛下貞觀之初，恐人不諫，常導之使言；中間悅而從之；今則不然，雖勉從之，猶有難色。”此見太宗欲善之志，不及於昔時而言也。伏念殿下臨御之始，宵衣旰食，孜孜圖治，日御經筵，講論治道，求言如渴，從諫如流。非徒用其言，</p>



었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 등극하신 처음에는 소의 간식(宵衣旰食)18125) 하  
 며 애써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려고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셔서 치도(治  
 道)를 강론하며 말을 구하기를 목마른 것같이 하고 간하는 것 따르기를 물흐  
 르는 것같이 하여, 한갓 그 말을 쓸 뿐 아니라 또 품계를 높여 주어 총애하시  
 었으니 이것은 말하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어서(御書)가 민간(民間)에 유포  
 (流布)되자 심지어는 병풍과 족자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시종(侍從)이 불가하  
 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곧 회수를 명하시었으니 이것은 기뻐하며 따르신  
 것입니다. 근자에 응방(鷹坊)에서 매[鵲]를 길렀는데, 대간(臺諫)과 시종이 여  
 러 번 신총(宸聰)18126) 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두세 번 반복된 연후에야 들  
 에 놓아주었으니, 이는 억지로 따른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일로써 간(諫)함을  
 따르는 아름다움이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상고하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임금이 간하는 것을 따르면 성(聖)  
 스러워진다.’ 하였고, 당 태종(唐太宗)도 말하기를, ‘임금이 과실을 알고자 하  
 면 반드시 충신(忠臣)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천고의  
 격언(格言)입니다. 대체로 인신(人臣)이 몸을 아끼는 자는 많고 나라를 위해  
 죽는 자는 적으니, 비록 얼굴을 온화하게 하여 받아들이고 몸을 굽히어 따르  
 다 하더라도 선비는 오히려 꾸물대며 말을 못하고 녹(祿)을 생각하여 감히 말  
 하지 못하는데, 만일 말하여도 쓰지 않고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누가 즐겨 몸  
 을 잊고 나라를 사랑하여 충성된 말을 다하겠습니까? 었드려 원하건대 전하  
 께서는 내 정치가 이미 만족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더욱 썩은 새끼로 말을 몰  
 고가는 듯이 조심하라는 말을 경계하시며, 성지(聖知)가 남음이 있다고 여기  
 지 마시고 기꺼이 남에게 취하시며, 말이 귀에 거슬린다고 여기지 마시고 반  
 드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인가를 구하시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며 삼가고  
 또 삼가시어 시종(始終)을 한결같은 덕으로 하시면 다만 신민(臣民)의 다행일  
 뿐 아니라 실로 종사(宗社)의 복(福)입니다.”

又增秩以寵之，此導之使言也。 御書  
 流布閭閻，至爲屏簇，而侍從有言其不  
 可，則卽命收之，此悅而從之也。 近  
 者鷹坊養鵲，臺諫、侍從累瀆宸聰，至  
 再至三，然後放之于野，此勉從之也。  
 舉此數事，而知從諫之美，寢不如初  
 矣。 臣謹按《書》曰：“后從諫則  
 聖。” 唐太宗亦曰：“主欲知過，必藉  
 忠臣。” 此誠千載格論也。 大抵人臣  
 愛身者多，徇國者少。 雖和顏以受  
 之、屈己以從，士猶且逡巡而不能言、  
 懷祿而不敢言。 若言而不用、諫而不  
 聽，則孰肯忘身愛國而進盡忠言乎？ 伏  
 願殿下勿謂吾治已足，而益戒朽索。  
 勿謂聖知有餘，而樂取諸人；勿以言之  
 逆耳，而必求諸道；勿以言之遜志，而  
 必求諸非道。 思之而又思，愼之而又  
 愼，終始一德，則非特臣民之幸，實乃  
 宗社之福也。

御書曰：“爾可謂愛君者也。 予豈忘  
 之?”

	<p>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그대는 임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다. 내가 어찌 잊으랴.” 하였다.</p>	
<p>성종 201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3월 27 일(정묘) 5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와서 복명(復命)하고 아뢰기를, “대부도(大部島)에 이미 파종(播種)한 것이 65석(碩)이고 파종하지 않은 것이 50석입니다.” 하였다.</p>	<p>○都承旨李世佑來復命。 啓曰：“大部 島已播種六十五碩，未種五十碩。”</p>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4월 9일 (무인) 3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민사건(閔師鶯) 이 아뢰기를, “종묘(宗廟) 제사에 소[牛]는 나누어서 각 실(室)에 올리고 염소와 돼지는 통 째로 올리는 것이 옳은데, 머리는 제거해버리고 올리니, 이는 반드시 잘못 인 습(因襲)해오는 일입니다. 무릇 희생(犧牲)이란 것은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 인데, 삭망(朔望) 제사에는 머리까지 아울러 올리고 대제(大祭)에는 머리를 제 거하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대 답하기를, “청컨대 예문(禮文)을 상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p>	<p>○御晝講。 講訖，侍講官閔師鶯啓曰： “宗廟牛則分薦于各室，羊豕則體薦可 也。 而去其頭薦之， 此必因循之誤 也。 凡牲云者， 以全體而言也， 朔望 祭竝其頭薦之， 而大祭則去其頭， 尤不 可。” 上問左右， 同知事金宗直對曰： “請考禮文。” 上曰：“然。”</p>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4월 15 일(갑신) 3번째기사</p>	<p>선위사(宣慰使) 김제신(金悌臣)이 치계(馳啓)하기를, “영승(永承)의 사송(使送)이라고 하는 자가 일본 사신(日本使臣)과 함께 제포 (薺浦)에 왔는데, 다만 부험(符驗)18171) 이 없습니다. 접대하는 것이 합당할 는지 취지(取旨)18172)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예조(禮曹)에 내리자, 예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과해량(過海糧)18173) 만 주어 돌려보내야 하고, 접대할 필요는 없습니다.”</p>	<p>○宣慰使金悌臣馳啓曰：“稱永承使送 者， 與日本使臣偕到薺浦。 但無符驗， 接待當否， 請取旨。” 下禮曹， 禮曹議 啓曰：“給過海糧還送， 不宜接待。” 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尹弼商、 洪應議：“依禮曹所啓爲便。” 盧思愼</p>

	<p>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일본 사신과 함께 왔으니, 억지로 돌아가도록 하여 먼 곳의 사람이 의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접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머무르도록 허락하여 돌보아주고 또한 식량도 주어 일본 사신과 함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영중추(領中樞)의 의논이 옳다. 내 생각에도 먼 곳의 사람이 의리를 사모하여 바다를 건너 왔는데 경솔하게 거절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특별히 접대하기로 허락하고 말해 주기를, ‘이 뒤로는 부험(符驗)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접대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는 예조(禮曹)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p>	<p>議: “此人與日本使臣同來, 則不須強之使還, 以阻遠人慕義之心。 雖不能接待, 固當許留存恤, 又給糧料, 令與日本使臣偕還可也。” 傳于承政院曰: “領中樞之議是矣。 予意亦謂遠人慕義, 涉海而來, 不可輕絕。 特許接待, 而語之曰: ‘今後無符驗者, 斷不許接。’ 如此處之何如? 其問于禮曹。”</p>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4월 18일(정해) 1번째기사</p>	<p>어서(御書)로 전지(傳旨)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하늘과 사람의 사이에는 정침(精稔)18176) 이 서로 부딪치게 되고 선악(善惡)이 서로 밀치게 되어 있어, 어떤 일이 아래에서 감촉(感觸)하게 되면 형상이 위에서 발동하게 되는 법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년(近年) 이래 나의 허물로 인하여 하늘의 견책을 초래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황천(皇天)이 돌보고 어진 재상들의 도움에 힘입어 지난 병오년18177) 의 추수(秋收)를 하게 됨으로써 군생(群生)들이 소생(蘇生)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계하는 마음을 감히 소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올해에는 비가 모자라지 않아서 이맥(二麥)18178) 이 무성하게 되었고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도 없게 되었</p>	<p>○丁亥/御書傳旨下議政府曰:  予惟天人之際, 精稔有以相盪, 善惡有以相推, 事感于下, 象動于上, 可不懼耶? 近年以來, 以予之咎, 致天之譴, 連歲不登, 百姓困乏。 幸賴皇天之卹、賢相之佑, 往得丙午之秋, 群生得以蘇息。 然余心之警, 其敢忽諸? 今年水澤不愆, 二麥芄芄, 無水旱之災。 慮有人皆見之於前, 未思于後。 吏怠</p>

	<p>다. 염려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앞서 당하였으면서도 그 뒤에는 생각하지 않게 되어, 관원은 관사(官事)에 태만하고 민중은 생업(生業)에 게을러져서, 가혹(苛酷)한 정사(政事)가 또한 혹은 이로 말미암아 많아지고 원통한 옥송(獄訟)이 반드시 이에 따라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하(上下)가 수성(修省)하지 않아 하늘의 노여움을 사고 현저한 꾸지람을 받게 된 다음에는 비록 몸을 닦고 재변(災變)을 반성하려 한들 이미 일을 그르쳐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는 하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유사(有司)들은 모두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염려하는 뜻을 본받아서 각기 그 직책을 닦아 음양(陰陽)이 막히지 않고 화기(和氣)가 응결(凝結)되지 않게 함으로써 민중들이 배 부르게 먹고 사는 즐거움을 알고 격양가(擊壤歌)18179) 를 부르게 되도록 하라.”</p> <p>하였다.</p>	<p>於官，民惰于業，政事之苛，亦或多從於此，獄訟之冤，未必不起于斯。而上下不修，犯天之怒，蒙顯之譴，然後雖欲修諸身、反乎災，既誤事，有何益乎？是慢天，其無懼乎？凡有司咸體予畏天之心、念民之意，各修厥職，以致陰陽不隔、和氣不凝，俾民知含飽之樂，唱擊壤之歌。</p>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4월 23일(임진) 8번째기사</p>	<p>충청도(忠淸道) 진천현(鎭川縣)에 우박이 내려 보리를 10분의 2나 손상시켰다.</p>	<p>○雨雹于忠淸道鎭川縣，損麥十分之二。</p>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4월 24일(계사) 3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민사건(閔師鶯)이 아뢰기를, “지난해에는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백성이 원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 헛되이 소비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봄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여러 달 비가 오지 않아서 풍년이 들는지 흉년이 들는지 알 수 없으니, 청컨대 술을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가뭄이 심하지 않은데 어찌 시급하게 금지할 수 있겠는가? 다만 천재(天災)는 마땅히 먼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법인데, 혹시 형옥(刑獄)이 지체되어 원통하고 근심스러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을 지 모두 아뢰도록 하라.”</p>	<p>○御晝講。講訖，閔師鶯啓曰：“去年稍稔，百姓無遠慮，有糜費之弊。今當東作，彌月不雨，豐凶未可知。請禁酒。”上曰：“旱不甚，何可遽禁乎？但天災當先警懼，無奈有刑獄淹滯，抱冤憫者乎？其悉啓之。”都承旨李世佑啓曰：“《大典》：‘凡奴婢傳得者，期年內告狀，受立案。’臣爲判決事時，意謂期年內告狀而已，不必受立案也。今聞期年內，未受立案者，官吏</p>

	<p>하였다.</p> <p>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무릇 노비(奴婢)를 전해 받은 사람은 기년(期年) 이내에 고장(告狀)을 내고 입안(立案)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판결사(判決事)로 있을 때 생각하기를, 기년 이내에 고장을 내면 되고 입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듣건대 기년 이내에 입안을 받지 않은 것은 관원이 소송을 심리(審理)하지 않는다고 하니, 장차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대전》에, ‘기년(期年) 이내에 관아에 고하고 입안을 받는다.’고만 하였을 뿐이고, ‘관아에 고하고 미처 입안을 받지 않은 자는 후일에 추가로 내어준다.’는 말이 없는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고, 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이미 관아에 고한 것은 마땅히 관아에 고한 날을 확정된 기한으로 삼아야 하는데, 혹은 관원들이 연고가 있어 그 일시(日時)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재주(財主)의 의도는 본래 그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던 것인데 입안(立案)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의외(意外)의 사람에게 옮겨 주게 되면 어찌 인정상의 이치이겠습니까? 하물며 고장(告狀)을 내는 날로 기한을 삼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 시행해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전》에, ‘노비를 전해 받은 사람을 기년 이내에 관아에 고하고 입안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관아에 고하면 되는 것이고, 입안을 받고 안 받는 것을 기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p>	<p>不聽理，將如何而可乎？”上曰：“其議于領敦寧以上。”韓明澮、沈澮、尹弼商、李克培、尹壕議：“《大典》云，期年內告官受立案而已，無告官而未及受立案者，後日追給之語，有何疑哉？從《大典》施行爲便。”洪應、盧思愼議：“既告官，則當以告官日爲定限。或官吏有故未及日時者，亦多有之。財主之意本給此人，而以不出立案之故，移給意外之人，豈情理也哉？況以告狀日爲限，我國行之久矣。《大典》云‘傳得奴婢者，期年內告官受立案’者，亦告官而已；立案之受不受，不在期年內。”從洪應等議。</p>
--	---	--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4월 25 일(갑오) 2번째기사</p>	<p>하니, 홍응 등의 의논에 따랐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자정(金自貞)이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실농(失農)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조금 풍년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채(公債)·사채(私債)를 갚고 나면 저축한 것이 고갈될 것인데, 백성들은 원대한 생각이 없어 자못 모여서 술 마시기만 일삼아 헛되이 소비하는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술을 금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 사람들에게 묻자, 모두들 아뢰기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미 내리고 나면 헌리(憲吏)들이 죄없는 사람들을 외람되게 잡게 되어서 우매한 백성들이 헌리(憲吏)에게 뇌물을 주고 면하게 되므로, 그 폐단이 모여서 술마시는 것보다도 심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헌리(憲吏)들이 뇌물을 받게 되는 것은 한갓 술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금령(禁令)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유지(柳輕)는 아뢰기를, “민간의 부유(富裕)한 사람들이 대부분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을 일삼아서 실컷 마시고 질탕하게 놀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바라보고서 따라가려고 하여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니,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御經筵。講訖，大司憲金自貞啓曰：“近連年失農，去歲稍稔，然公私償債，所儲匱竭，而民無遠慮，頗事會飲，有糜費之弊，請禁酒。”上問左右，僉啓曰：“禁之爲便。”上曰：“禁令已下，則憲吏濫捕無辜，而愚民賄吏得免，其弊有甚於會飲。”領事盧思愼啓曰：“吏之受賂，非徒酒禁，凡事皆然。然不可以是而廢禁也。”特進官柳輕啓曰：“民間富者多事迎餞，崇飲佚遊，貧者亦欲企而及之，其費不貲，禁之爲便。”上從之。</p>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4월 25 일(갑오) 6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수십 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 징조가 이미 나타났는데도 무지한 백성들이 원대한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서 잔치하고 술을 마셔 헛되이 소비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혼인(婚姻)·제사(祭祀)·노병(老</p>	<p>○傳旨司憲府曰：“今當農月，連旬不雨，旱徵已見。而無知之民，不思遠計，宴飲糜費，甚爲不可。其婚姻、祭祀、老病服藥、武臣射侯外，公私飲</p>

	<p>病)에 약(藥)으로 마시는 것과 무신(武臣)들이 활쏘기할 때 마시는 것 이외에는 공사(公私)의 음주(飲酒)를 일체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p>	<p>酒, 一切痛禁。”</p>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4월 27일(병신) 1번째기사</p>	<p>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가 《식료찬요(食療撰要)》를 올렸다. 【의원(醫員) 전순의(全循義)가 편찬한 것인데, 손순효가 일찍이 경상도 감사(監司慶尙道)가 되었을 때 상주(尙州)에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책은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p>	<p>○丙申/右贊成孫舜孝進《食療撰要》。【醫員全循義所撰。舜孝曾爲慶尙道監司，令刊於尙州。】傳曰：“此書便於觀覽，予甚嘉之。”</p>
<p>성종 202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4월 27일(병신) 2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는 시자(鍤子)18187)·나전(螺鈿)의 붓대로 된 붓, 구리로 도금을 한 연적갑(硯滴匣)을 각각 하나씩 내려 주고, 여섯 승지(承旨)들에게는 요자(鈹子)18188) , 나전의 붓대로 된 붓, 소도자 갑구(小刀子匣具)·소연(小硯)을 각각 하나씩 내려 주고, 경연 당상(經筵堂上) 및 홍문관원(弘文館員)에게는 나전의 자루로 된 붓을 각각 하나씩 내려 주며, 주서(注書)와 한림(翰林)에게는 소도자, 나전의 자루로 된 붓을 각각 하나씩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또 인형필(人形筆) 1매(枚)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고서 이어 전교하기를, “승정원 안에 두고 함께 쓰도록 하라.” 하였다. 【곧 일본국 사신 등견(等堅)이 바친 것이다.】</p>	<p>○命賜領敦寧以上鍤子、【銅鍍金，有柄酒器。】螺鈿管筆、銅鍍金硯滴匣各一，六承旨鈹子、【銅鍍金，無柄酒器。】螺鈿管筆、小刀子匣具、小硯各一，經筵堂上及弘文館員螺鈿柄筆各一，注書、翰林小刀子、螺鈿柄筆各一。又下人形筆一枚于承政院，仍傳曰：“留院中共用之。”【乃日本國使等堅所獻也。】</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2일(신축)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왜사(倭使) 등이 포(浦)에 머무르는 양식을 외람되이 받고자 하여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 연고를 칭탁하면서 머무르며, 그 압령(押領)하는 통사(通事)도 뇌물을 받고 여러 왜사와 부동(符同)하여 혹은 자신의 병을 칭탁하고 혹은 짐바리가 뒤에 있다고 칭탁하면서 있는 곳의 관(官)에 보고하니, 그 고을 수령(守令)도 보고한 바에 의하여 예(例)대로 문계(文契)를 주어 국고의 곡식을 함부로 허비하니 폐단을 장차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이 뒤로는 압령하는 통사가</p>	<p>○禮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倭使等欲濫受留浦糧，所經諸邑，托故淹留；其押領通事亦受賂遺，與諸倭使符同，或稱身病，或稱馱載在後，報所在官，其邑宰亦依所報，例給文契，濫費廩粟，弊將難支。今後押領通事，如有上項所犯，科罪充軍戒後。且程途日限外，過十日稽留者，不論文契有</p>

만일 위의 항목을 범하는 것이 있거든 죄를 과(科)하여 충군(充軍)시켜서 후 일을 징계하소서. 또 정도(程途)18193) 의 기한 외에 10일이 넘도록 머무는 자는 문계가 있고 없음을 논하지 말고 포(浦)에 머무는 양식을 주지 말도록 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혹시 물에 막히거나 혹은 신병(身病)이 있어서 부득이하여 여러 날 머물게 되면 포에 머무는 양식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제 만약 주지 아니하면 아마도 틈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왜인(倭人)이 오래 머물면 국가의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통사를 중하게 논죄하면 저들이 반드시 법령(法令)을 괴이하게 여겨서 길에서 가기를 독촉하는 폐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틈이 생기는 것도 염려할 만합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향통사(鄉通事)18194) 의 논죄 절목(論罪節目)은 예조(禮曹)에서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나, 다만 혹 신병(身病)이나 혹은 물에 막혀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 날 머무는 것도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아마도 더러 틈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법을 세운 것이 지극히 정밀하고도 자세한데, 그 가운데 통사가 부동(符同)하여 오래 머무는 정상(情狀)이 명백한 것을 수령이 일부러 검거하지 아니한 것은 그때그때 엄격히 징계할 것이며 다시 과조(科條)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심회의 의논에 따랐다.

無，勿給留浦糧，以杜奸僞何如?” 命議于領敦寧以上。 韓明澮議：“或阻水，或身病，不得已留連，則給留浦糧，例也。 今若不給，慮恐生釁。” 沈澮議：“倭人稽留，國費甚多。 但重論通事，則彼必怪於法令，不無路上督行之弊，因此生釁，亦可慮也。 仍舊何如?” 尹弼商議：“鄉通事論罪節目，依禮曹所啓爲便。 但或身病，或阻水，不得已留連者，亦不取實，則恐或生釁。” 洪應議：“立法至精且詳，其中通事符同稽留，情狀明白者、守令故不檢舉者，臨時痛懲，不須更立科條。” 從沈澮議。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2일 (신축)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김세적(金世勳)은 나이가 젊은 무인(武人)으로 이제 바야흐로 쓰고 있으므로 돌아가서 아버이를 봉양하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하여금 그 아버지에게 음식물을 갖추어 주도록 하였는데, 내 뜻을 체득하여 은혜를 베풀어 기르는지 그것을 감사(監司)에게 물어서 아뢰라. 또 진상 봉여(進上封餘)18195) 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金世勳年少武人，今方用之，不宜歸養。已令京畿觀察使，備給食物於其親，其能體予意而惠養乎？其問於監司以啓。且令給進上封餘。”</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5일 (갑진) 1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과(尹坡)가 와서 아뢰기를, “요사이 가무는 징조가 이미 나타나서 밀·보리가 모두 시드는데 보루각(報漏閣)·자격루(自擊漏) 등의 일은 공역(工役)이 매우 큼니다. 청컨대 정과(停罷)하여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p>	<p>○甲辰/司憲府持平尹坡來啓曰：“近者旱徵已作，牟麥盡焦。如報漏閣、自擊制造等事，功役甚鉅，請停罷以謹天戒。”傳曰：“可。”</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7일 (병오) 1번째기사</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4월 23일에 진천현(鎭川縣)에서는 우박이 내려 밀·보리의 10분의 2를 손상시켰습니다.” 하였다.</p>	<p>○丙午/忠淸道觀察使金礪石馳啓：“去四月二十三日，鎭川縣雨雹，損牟麥十分之二。”</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8일 (정미) 3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4월 17일에 현풍(玄風)·창녕(昌寧)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새알만하여, 삼[麻]과 보리가 손상되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였다.</p>	<p>○慶尙道觀察使李世佐馳啓：“去四月十七日，玄風、昌寧等縣雨雹，大如鳥卵，麻、麥損傷殆盡。”</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10일(기유) 3번째기사</p>	<p>신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정의 인재가 낮아지는 까닭은 그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열 다섯 살부터 성균관(成均館)에서 글을 읽은 지 4,5년인데, 유생(儒生)의 풍습을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바야흐로 어려서 배울 때에는 그 뜻이 몸을 영화롭게 하고 집을 윤</p>	<p>○幼學俞升坦上疏曰： 觀今之鳩毒，燕閑也。獨公卿大夫自無心於長慮却顧，而萬姓敢怒，莫敢矯</p>

택하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배우는 것은 입과 귀로 기억하고 외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요행으로라도 빨리 과거에 합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성하여 행하는 날에 미쳐서는 마음속에 주관이 없어서 물욕이 주장하니, 이로 말미암아 지금 조정 신하는 방책(方策)으로 구하면 누구나 넉넉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정치를 시행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부족하니, 이는 바로 덕(德)을 천하게 여기고 재주를 숭상한 소치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에는 덕(德)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재주를 끼고 악한 짓을 하는 자는 악한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고 하였으니, 재주와 덕의 먼저 하고 뒤에 할 것과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할 것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지금의 과거(科擧)는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문(門)이 아니며, 다만 백성을 야위게 하고 자신을 살찌게 하는 사닥다리일 뿐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선 자는 이로써 인도하고 뒤에 있는 자는 이로써 따르니, 온 나라의 선비가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아 휩쓸려 풍속을 이루어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탐하는 풍속이 날마다 성하여 그것을 예사로이 여기고 괴이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때문에 기강(紀綱)이 서지 아니하고 교화가 행해지지 아니하여, 민심은 흩어지고 백성의 재물은 없어져서 풍속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아! 오늘의 선비는 내일의 대부(大夫)이며 오늘의 대부는 내일의 경상(卿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여 국세(國勢)를 태산같이 편한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는 글을 입으로 읽는 스승은 있었으나 뜻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스승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약관(弱冠)18227)에 이르러 한 사람의 강직한 벼를 얻어서 개연(慨然)히 사숙(私淑)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습(士習)의 탐하는 마음을 진실로 미워하였던 바, 외람되게 ‘청풍 명월(淸風明月)’이라고 이름하여 지나간 신축년(18228)에 면천(沔川)의 동문(東門) 들보 위에 크게 쓰기를, ‘청풍 명월이 장차 수신 제

其非。夫張虛譽、諱民冤，上下情隔，甚非所以安上而全下也。臣切悼之。殿下屢降詔旨，求言搜士，仁聲四布，民之望治，如渴之望飲、飢之待哺也。望之非一朝，待之非一夕，而治化之功，不加於百姓，臣切憫之。臣謂天生斯民，不能自治，必任之君；君撫斯民，不能獨治，必任之臣，君臣交修，以成治功，古今之通道也。然君臣相得，豈偶然哉？天下國家之治日常小，亂日常(日常)多。或有君而無臣，或有臣而無君。若堯、舜、禹、湯、文、武之君，獲稷、契、皐陶、伊尹、呂望之臣，然後足以成雍熙之治，臻泰和之隆，此千載一時，絕無而僅有者也。臣謂今之國家，有君而無臣。恭惟殿下以精一執中之學，得二帝三王之心，以於變時雍爲期，此人臣得志行道而効力之秋也。雖然方今之勢，最難有爲者。名爲治平無事，而其實多容忍隱匿之大弊，將同流合汚。苟免衆謗，則罪均欺明；起而特立獨行，則人人藉口於無大亂之迹，而不吾信。非徒不信，必媚疾以惡之；非徒惡之，小必離間，大必戮辱。臣縱有皓皓之白，

가(修身齊家)하여 나라를 도와 이룩하려고 한다.’고 하고, 인해서 새겨 둔 것은 신의 마음이 장차 뜻이 같은 벼를 널리 구하려고 한 것인데, 오늘날 사람이 학도(學徒)로부터 사류(士類)까지 도리어 우원(迂遠)18229) 하고 광망(狂妄)한 계책이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말을 전하며 크게 비웃습니다. 아아! 바른 학문이 세상에 시행되지 아니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뒤에 신이 다시 더불어 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시골에 엮드려 산 지가 이제 8년이 되었으므로 백성의 폐막(弊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신이 이제 구하는 바는 전하께 백성의 폐막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아시고 물리치지 않은 뒤에는 물러가 궁벽한 촌락에 살면서 밭을 갈고 세(稅)를 바치면 충성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옛 성현(聖賢)처럼 노(魯)나라를 버리고 위(衛)나라에 가거나, 제(齊)나라를 섬기다가 양(梁)나라에 유세(遊說)하며 바쁘게 국경을 나가면서 예물을 싣고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엮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른 재주와 능력이 없고 나이가 겨우 스물 여덟으로 자신을 수양하기에 반(半)이 못되었는데, 망령되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엿보는 것은 예사로 참고 볼 수 없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엮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장차 크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대신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만 먹으면서 전하의 앞에서 응대(應對)할 때를 당하면 말은 공(孔)·맹(孟)18230) 을 일컬으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사를 행할 때에 미쳐서는 탐독(貪毒)이 매우 심하여, 더구나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조목을 마음속에 나열(羅列)하여 위가 편안하고 아래가 순하며 풍속이 맑아지고 폐단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들이 평소에도 이욕(利慾)에 빠져서 곧은 마음으로 위를 섬길 수 없는데, 화환(禍患)을 당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알 만합니다. 위의 사람이 장차 무엇을 믿고 안강(安康)한 형세를 이룩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전하를 위해 차마 편히 앉아

何以盡曝白於九重乎? 賢者見幾, 深藏而不市; 志士修家, 毀之於朝廷。群臣無大相過者, 亦以此也。臣所謂‘容忍隱匿之弊’, 判然昭著, 下愚之外, 識事之人, 孰不切齒而慨歎乎? 所以括囊不言, 恐其激言權勢而失其保身之智也。臣非不知居是邦, 不非其大夫。然民之流亡, 責在守令, 守令之貪頑, 責在大臣, 則諱大夫而陳至言難矣! 而況尊大臣, 所以尊人君之所重, 則其可重大臣而欺君主乎? 臣嘗讀屈平之《離騷》曰: “豈余身之憚殃? 恐皇輿之敗績。” 又讀賈誼之策曰: “痛哭者一, 流涕者二, 長太息者六。” 臣心屈子之心, 憂賈生之憂, 皇天后土實所共鑑。臣既欲出身爲國家犯大難, 以求通大隔, 何言囁嚅, 何隱不陳? 然醫國忠誠, 當施諸行事而後快於心, 何煩文爲, 姑舉妨政害治之尤者以陳。伏惟聖察而留神焉。臣聞, 民惟邦本, 本固邦寧。以今觀之, 京城之外, 小民之命脈, 悉懸於守令, 而守令之頑貪無恥, 恣虐愚民, 莫甚於時。是非特一己之貪, 足以不畏邦憲, 其所恃者, 深且大矣。臣聞野老之歎曰: “公卿大夫

있을 수 없는 바입니다. 대저 을사년(乙巳年)18231) 겨울부터 병오년(丙午年)18232) 첫여름까지 백성은 노년과 장년이 없이 구학(溝壑)18233) 에 굴러 죽은 자가 한 고을 안에 몇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당시의 수령은 굶어 죽은 것을 감추기에만 힘을 쓰고 진휼(賑恤)하는 것은 힘쓰지 아니하니, 이는 저장한 곡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사(有司)가 위로는 법을 두려 위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때에 백성들은 진휼사(賑恤使)가 온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도착함에 미처서는 공연히 고을을 달리면서 백성의 고통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돌곶이[石乙串] 도랑 비탈의 곡식을 쌓았던 터에는 굶어 죽은 백성의 뼈가 낭자히 버려져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위를 받들고 백성을 구제하는 이는 천백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신들은 거짓으로 귀먹은 체하여 그런 사실을 들어도 듣지 못한 체하고, 소신(小臣)들은 병어리를 배워서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니, 슬픈 우리 백성은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간혹 원통하고 억울함이 뼈에 사무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옥사(獄事)를 판결하는 같은 무리의 악한 자가 법을 농락하여 죄에 빠뜨리고 따라서 형벌을 가하여 뒤의 사람을 징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한 뒤에 사치와 욕심을 지극히 하여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군현(郡縣)의 정사가 대개 이와 같을 뿐인데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신이 민생을 위하여 차마 앉아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생민이 굶주려서 구렁에 넘어지는 때를 당하여 진실로 한 번 폐막(弊瘼)을 주달하고자 하였으나, 본래 가난한 가문(家門)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가난함이 비할 수 없었으며, 흥년에 있어서 진대(賑貸)만 오로지 바라는데, 진대해 주는 것이 공정하고 엄결하지 않아 한 차례를 넘기고 양을 줄여서 주니, 이 때문에 신의 종들이 혹은 부황(浮黃)18234) 이 나고 혹은 흩어져 도망하였으며, 신 자신은 겨우 면하였으나 역시 살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서 멀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리

之家豪侈日盛，而民之憔悴貧窶日甚。”何以言之？剝民膏血以益卿相之富者守令，用事於內以掩守令之惡者卿相。內外相濟以蔽主聽，上恩何由而下宣，民瘼何由以上達？無怪乎民怨之傷和，而近年譴告之多，乃天心仁愛人君之至也。抑朝臣已陳此弊，而殿下姑舍是乎？不然，臣恐朝少忠臣也。古人有言曰：“滄海長鯨，不可以常竿而釣之；丹山彩鳳，不可以常網而羅之。天下國家，不可以常人而治之；英雄豪傑，不可以常禮而待之。”殿下既以挽回轉移爲志，則今朝臣才德之高下，曾如見其肺肝然，經濟之佐，有耶無耶？苟有其人而遭遇聖上，則其致治之效，不止若是。臣謂我朝之人才，所以卑下者，其心術之不正而立志之不高也。臣自十五讀書成均四五年，而熟視儒習矣。方幼學之時，其志不過榮身潤屋，其學不過口耳記誦，僥倖捷科，故及壯行之日，中無所主，物欲爲主矣。由是今之朝臣，求之方策，孰不有餘；施之政治，斑斑不足，此乃賤德尙才之致也。

밥을 고대하여 조금 기운이 회복되어 갈 때에는 백성들도 보리밥을 먹을 수 있어서 사망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아뢰려던 것을 정지하였습니다. 가령 신 자신이 그 때에 굶주려 죽었다면, 충분(忠憤)한 마음이 있고 없음을 전하께서 마침내 알지 못하셨을 것이며, 상하(上下)의 정(情)이 막힌 폐단을 마침내 아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자 울먹일 만합니다. 신이 다행히 목숨이 붙어서 오늘에 이르러 가무는 조짐이 나타났으니, 전의 잘못을 인하여 후일을 구제하는 데에 서두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하가 막힌 폐단을 전하께서는 그 유래가 이미 멀고 습관과 풍속이 오래 길들어져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이(利)를 좋아하는 무리의 수가 많고 단단하여 폐단을 구제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건대, 막아서 거슬러 흐르게 하는 것은 어려우나 터서 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제 천리(天理)에 순응하고 인심(人心)을 바로잡는 것이 막힌 것을 터서 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다스림이 소성(小成)18235) 하는 데 편안하게 여긴다면 그만이었으나, 전하께서 장구히 다스려지고 오래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세우셨으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으심으로써 일국의 사사로운 은혜를 크게 막고 일국의 사사로운 계교를 크게 깨뜨려서, 일국의 권강(權綱)18236) 을 거두어서 스스로 잡고, 일국의 이록(利祿)을 거두어서 친히 사용하여 간사한 무리로 하여금 실정(實情)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간웅(奸雄)으로 하여금 피를 베풀지 못하게 한 뒤에는 마음이 같고 덕이 같은 신하로써 안팎의 정권을 잡게 하며, 그런 뒤에는 또 그들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드나들면서 기강(紀綱)을 세우고 교화를 밝히며 내치고 올리는 것을 크게 밝혀서 수악(首惡)을 베어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면, 《대학》에 이른바, ‘오직 어진 자라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할 줄 안다.’고 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어진 이는 벼슬하기를 즐거워하여 절의

傳曰：“輔世長民莫如德。”又曰：“挾才爲惡者，惡無不至。”則才德先後厚薄，不可不審。臣知今科舉，非修己治人之門，特瘠民肥己之梯耳。前者以是導之，後者以是蹤之，一國之士爭慕效之，翕然成風。賄賂之公行，貪風之日熾，以爲常而不以爲怪。以此紀綱不立，教化不行，散民心，渴民財，而風俗耗矣。嗚呼！今日之士，明日之大夫，今日之大夫，明日之卿相，則其致君澤民，而措國勢於太山之安，誰能任之？臣雖有口讀之師，未有誠正之師。年至弱冠，得一直友，慨然有私淑之志。於是士習之貪，心誠惡之，而濫號以‘清風明月。’去辛丑年間，大書于沔川東門櫟上曰：“清風明月將欲修身齊家，弼成邦國。”因而刻之者，臣心將欲廣取同氣之友也。而今之人，自學徒至士類，反爲迂遠狂妄之計，至今傳言大笑。嗚呼！正學之不行於世也久矣。然後臣知無復可與有爲者，而不求人知，自此陞伏鄉曲，于今八年，細知民瘼。臣今所求，欲殿下知民瘼耳。殿下不知而斥之，然後退伏窮閭，耕田納稅，忠亦在焉。非

(節義)를 다할 것이고 간사한 사람은 크게 두려워하여 악함을 덮을 것이니, 무엇을 금지시키더라도 그치지 않는 것이 있겠으며 무엇을 명령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장차 사방의 눈이 밝고 사방의 귀가 밝아서 상하의 정이 통할 것이며, 허위가 물러가고 참된 은혜를 입어서 소민(小民)이 살아나며, 탐하는 것이 스스로 없어지고 도둑이 저절로 그쳐서 나라와 백성이 넉넉해지고 자연히 인심이 화평하여 비오는 것과 별나는 것이 때에 순응할 것입니다. 아아! 벼슬을 높이고 녹(祿)을 후하게 하는 것은 본래 임금이 어진 이를 대우하는 공례(公禮)이며, 공경(公卿)이 대대로 지키는 사사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을 등용한 것과 탕(湯)임금이 이윤(伊尹)18237)을 초빙한 것과 무왕(武王)이 여망(呂望)18238)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은, 낮은 이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고 소원(疏遠)한 이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여 대신(大臣)으로 신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국(經國濟世)하는 재덕(才德)이 어찌 모두 세록(世祿)18239)의 집에서만 나오고 곤궁한 집에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사람을 뽑는 데에는 문과(文科)·무과(武科)로부터 잡기(雜技)에까지 모두 과목이 있고 재주를 고르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나, 홀로 덕(德)이 넉넉하여 재(才)를 힘쓰지 아니한 자는 혹시 한 가지 재주의 팔립을 부끄러워하여 현달(顯達)할 길이 없어서 불우(不遇)하게 몸을 마치니, 육덕(六德)18240)과 육행(六行)18241)을 먼저 하고 육예(六藝)18242)를 뒤에 하는 법에 결함이 없겠습니까? 이는 현량(賢良)18243)·방정(方正)18244)·효렴(孝廉)18245)의 과(科)의 이름이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조정 신하가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서 자제(子弟)를 끌어올려서 벼슬을 주고 외로운 초야(草野)의 어진 이는 발을 용납할 곳이 없으니, 진실로 속이 탈 만합니다.

如古之賢聖，去魯適衛，事齊遊梁，遑遑栖栖，出疆載贄之可望也。伏念臣無他技能，而年纔二十八，修己未半，而妄窺治人，所以不能安然忍視者在焉。伏觀殿下知民疾苦，將大有爲，而股肱之臣，尸位素餐。當應對殿下之前，言必孔、孟，及臨民行政之時，貪毒太甚，使斯民不蒙至治之澤。況望其修齊治平之日，羅列胸中，而以上安下順風清弊絕爲己責乎？彼在平日，汨於利慾而不能以直事上，則在於禍患，其心可知。上之人將何所憑藉而成安康之勢哉？此臣之爲殿下不忍安坐者也。夫自乙巳冬以至丙午孟夏，民無老壯，轉死溝壑者，一邑之內，不知幾人。當時守令，以藏殍爲務，而不務賑恤，是非積儲之不裕，正在有司上不畏法，下不憂民之故也。蓋於是時，民間賑恤使之來也，及其至則空馳州郡，不醒民瘼。至今石乙申溝陂積穀之墟，飢民白骨狼藉棄擲。惜乎！其奉上救民者之無一人於千百也。不特此也，大臣佯聾聽之而不聞，小臣學啞，視之而不言。哀我斯民，何所告哉？問有冤抑到骨，寧死告訴者，則折

獄之同惡者，弄法陷罪，從而刑之，以懲後人，使民有口無言，而後窮奢極欲，無所不至。郡縣之政，大概如此而已，豈不痛哉？此臣之爲民生而不忍坐視者也。臣當生民轉壑之日，誠欲一達弊癘，然臣本寒門，早喪父母，貧乏無比。其在凶年，專仰賑貸，賑給不能公廉，越一巡而減給焉。故臣之僮僕，或浮腫或流亡，臣身僅免，而亦皮與骨連，難可遠行。苦待麥飯，稍向平復時，則人民亦得麥飯，無復死亡者矣，茲仍寢奏。假使臣身餓死其時，則忠憤之有無，殿下終不得知，而上下情隔之弊，終不得達矣。興言至此，堪可飲泣，臣幸連喘，至于今日。旱乾兆見，則因前失而救後來，不可不急。今上下壅遏之弊，殿下以爲其來已久，狃於習俗之久而未能卒變耶？嗜利之徒，其麗不億，鞏固而難救耶？是大不然。比之治水，壅而逆流則難，決而順流則易。今也順天理，正人心，何異決壅順流乎？我朝之治，安於小成則已；殿下以長治久安立心，則殿下當以至公至明，大杜一國之私恩，大破一國之私計，收一國之權網而自執，斂一

		<p>國之利祿而親用之，使儉邪不得遁情，奸雄無以施術。然後以同心同德之臣，俾執內外權柄而後，又使之出入中外，立綱紀明教化，大明黜陟，誅首惡以警其餘，則《大學》所謂“惟仁者，能好人，能惡人。”賢者樂仕而盡節，壬人大畏而掩惡，胡禁不止？曷令不行？將見明四目，達四聰，而上下之情通；却虛僞，蒙實惠，而小民蘇息；貪自戢，盜自弭，而裕國裕民，自然人心和平而雨暘時若矣。</p> <p>嗚呼！隆爵厚祿，本人君待賢之公禮，非公卿世守之私物。若堯之揚舜、湯之聘尹、武王之得呂望，使卑踰尊、踈踰戚，而信任大臣矣。然則經濟之才德，豈盡出於世祿之家，而不出於窮閭鄙屋之下乎？國家取人，自文武至雜技，皆有科目，選藝之方，至為精密。獨優德而不務才者，或羞一藝之售，無路顯達，坎軻終身，於先六德六行而後六藝之典，無乃缺乎？此賢良、方正、孝廉之科，所由名也。今之朝臣，不問賢否，引進子弟，俾之官爵，孤根草野之賢，無容足之地，良可熱中。 臣</p>
--	--	--



又念以普天之下，率土之衆，猶能一相致治，況我國土地人民之有限乎？苟得平天下之才德者，則不過三年，而邦國大治矣。雖然。《書》曰：“惟聖罔念作狂。”人之一心，操舍無定，久則易怠，要皆貴於有常。天有常故不息，地有常故厚載，日月有常故久照。殿下與天地合其德，日月合其明，必體其有常之運，以之公明，以之去邪，以之信任，以之愛民。廣堂如是，深宮如是，大政事如是，微言細行如是，伊尹所謂‘常厥德，保厥位’，國家幸甚，生民幸甚。臣上戴天，下履地，何忍以虛妄之說，欺我主上乎？而況朋友之有成者，申申其戒臣曰：“滔滔者竟進貪婪，汝獨忠誠而誰聽之？汝何擊鼓而求亡乎？”臣聞言，心自反之曰：“士生斯世，見其隱匿成風而四聰不達，憊徒牧民而邦本日搖，則以一臣之一死，盡忠而救民，不亦宜乎？”於是勿憚九死，凡所目覩，直述以聞。追思數策，條列於後，伏惟聖裁。一。大會朝廷臣僚，問之曰：“臣昇坦云，貪風隔而上下情否，守令貪暴而小民憔悴。誠然則自今開自新之端，大張禮義廉恥之

		<p>教，將欲大去舊弊，大變舊習，大安生民而致太平。文武大小臣，欲同心協力者，皆出某邊立。今國家誠已至治，貪風誠已盡戢，民生誠已盡安，守令誠已盡無貪暴，而昇坦所云皆虛妄者，皆出某邊立。”以此分邊着名後，臣率虛妄云者一人及宗親內寺中，命親信一員爲監，潛行八道，就閭閻父老，問守令政迹、徭役、納穀節次；或入郡縣，搜捕濫雜，以彰虛實。一。田籍考定貢賦，所係至重。國家每使郡縣磨勘，法非不詳。然因守令之昏惰、執吏之冒濫，宮奴、執家、豪吏之戶，民爭附之，漕軍、驛子、執奴之名，亦合錄之。於是以廿卜一結而爲戶首者有之，以數百餘結而爲戶首者有之。故或不知叫呼者，乃擁高廩；或靡事不爲者，至賣田宅。其所以驚心駭目，莫甚於此。願自今特命有司，嚴立禁章，至親之外，毋使合錄。如不聽法，許令陳告，仍給其田；執吏之冒濫，一徙邊鄙；守令昏惰，永不敘用，庶無不均之弊矣。一。任土作貢，已著《夏書》。大而金錫皮革，小而菁茅竹箭，莫非土產，未聞其弊。國家貢案，或</p>
--	--	---

		<p>因一時守令邀射聲名，踰境外求，換實錄案，因物產之或無，童殺之患，無處無之，取辦遠境，後期之弊，不可勝言。伏願殿下特命有司，體大禹作貢之意，更定貢案，庶無跋涉難辦之弊矣。一。國家惠民之方，慮非不周，法非不密；殿下之心，以為小民已安居樂業，愁歎息矣。然臣下之奉行，徒為文具，終無其實。民之有常產者，不一二年，失業破產，有自來矣。何則，為守令者，謀遂無窮之慾，政令煩劇，雜役之多十倍軍役，而挾威侵責，故不計農務，奔走服役。而或暫刻遲滯，小事過誤者，自科笞杖，督賣田宅，以贖其罪。又凡百出令，纔及於民耳，從之以定罰之法，孰怨其辦納之難易？亦科笞杖贖罪，以此綿布積在私倉，潛輸于家。</p> <p>由是民之沃田，盡賣於權勢之奴；惟餘薄田，亦當春耕，種食具乏，專仰官廩。而鰥寡孤獨，飢困匍匐，僅到公門，於是守令慢不致意，或私事為忙，或待客泥醉，則竟日佇立，昏夜空還。其飢羸辛苦之狀，不啻傷心慘目，在家</p>
--	--	---

		<p>老兒之望亦絕矣，以此耕種失時。又於糶穀之日，擇米�之精好者，輸入私倉，不然豪右請托受之，愚民所受，非徒半雜塵土腐臭之物。或十斗、十二斗入碩，般以平碩計給，迨還糶之日，既徵無面虛數，又每一碩，濫納三斗，以充私倉，潛消暗鑠，是雖出於民間，其損國一也。又動衆私山行，月不下三四度，既失其時，又困其力，室如懸磬，民有菜色。因而流離，强者盜，弱者糊口斷絕，一生冤格于天。此皆朝臣之熟視，而諱殿下者也。</p> <p>一。近民之職，莫如守令。先儒曰：“守令，民之傅姆。傅姆之不德，飢之寒之，飢寒之至，民不爲盜者鮮矣。”苟守令之不德，何以致隆平之治哉？伏願殿下重守令之選，於其銓注之時，考其歷試，大有廉能名顯於朝，諸大夫皆曰可，然後命之，勿立期限，考其每居最，或至十年不調，其多最績者，當其宣招，須於六曹不次擢用。如有貪墨之失，敗露於後，罰比穿踰，一徙邊鄙，人知賞罰之重，不患龔、黃之無其人矣。</p> <p>一。殿下實欲大畏汚吏，則先出令中外曰：“將使臣某等問民疾苦。若</p>
--	--	--

		<p>在朝之臣，以預圖之術，漏通守令者，守令之詐飭預誘民間，而謀免其罪者，置之重誅。或官吏良人賤隸中，聽命飭詐教誨民間者，亦斬。其不諱前過，而樂於遷善者，勿論前失，以開自新之端。今後傷風敗化者，不計貴近，皆論重典，無復寬宥。”使中外臣民，誠悉知之。一。科田乃上古世祿之遺制，所以崇德報功，賞延于世之意也。夫君之於臣，愛之無已，待之有終，如此其至。嗚呼！先王之所以沒世不忘者，以此也。今也革科田以爲職田，爲仕者既有常祿，以代其耕，又有職田，以繼其富。其生也，恩幸無比，如此其極；其死也，兒寒妻飢，糊口四方，靡有紀極。其不幾於犬馬之養者幾希，於自周有終之意，無乃有缺乎？伏惟聖裁。一。寺有位田，所以賞其沙門，薦先王之冥福，祝願聖壽之萬年，嘉其釋氏之寡欲。今之緇流，收稅之際，寢食田家，淹留旬月，或以犯戒，已爲不可。而且瓢刷鞋襪凡百器皿，莫不有稅，徵求無厭，侵虐百端，民甚病焉。臣不知此何等稅也。以臣目覩，猶且切齒，況聖鑑之字民乎？</p>
--	--	---

		<p>如不可去，莫若收之於國，給之京倉。伏惟聖裁。臣聞東宮邸下入學，此國家無疆之福也。然教養之方，不可不謹。《易》曰：“蒙以養正聖功。”大抵人情，難親正道，易合諂諛。在昔國君儲副，自以為宮禁隱密之地，外人莫得而知者，遂乃妄結儉邪，親昵婦寺，恣行不義。習與性成，使聰明英睿之資，不得聞正道中和之論。及其小壯，聞道未至，行道未熟，臨政願治，多有闕失，甚可慮也。今計莫若擇正直忠良之士，以為保傅師友，使時時與之游處。左右前後無非正人，出入起居無非正道，薰陶德性，補助氣質，則此國家永永太平之基也。</p> <p>命議于領敦寧以上。韓明澮、尹壕議：“昇坦所言‘公卿大夫與守令豪侈貪虐’必有指囑者。賑恤時白骨狼藉事，并質問，知虛實何如？但條陳事，則國家皆已施行，不須舉行。”沈澮議：“公卿大夫之豪侈與守令之貪虐不法，大關風教，不可不問其虛實。招致政院問之何如？”尹弼商議：“昇坦之言，雖多有不中，亦有可嘉之意。其條陳便否，</p>
--	--	--

		<p>令該曹議啓何如?” 洪應議: “昇坦條陳數事, 如復行之, 盡變先王舊章而後可也。 且論卿相守令, 舉無其人, 此過甚之論。 至於 ‘誅首惡、去貪暴’, 必有指斥者, 是不可不問也。” 李克培議: “昇坦自以爲賢, 誹謗朝政, 歷詆卿相, 冀以顯用, 欲陳臯、夔、稷、契之事業, 其志盛矣。 其所條陳, 則或妨於成憲, 或失於迂遠, 間有似是之論, 而皆國家已行之陳迹, 無有奇謀遠略。 但其守令病民之狀、民生疾苦之形, 言之曲盡而無餘, 請留意。 所謂石串飢民, 至今白骨狼藉之語, 不可不問。”</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12 일(신해) 1번째기사</p>	<p>감선(減膳)18279) 을 명하였다.</p>	<p>○辛亥/命減膳。</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13 일(임자) 1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래 재주와 덕이 없는데 4품관(四品官)으로써 발탁되어 승지(承旨)가 된 지 오래지 아니하였는데 또 올려서 도승지로 삼으셨으니, 신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감당할 수 없어서 곧 사면(辭免)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이름을 위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본래 해수(咳嗽)병이 있었는데 요사이 점점 심합니다. 더구나 도승지는 임무가 중한데 신과 같은 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p>	<p>○壬子/都承旨李世佑來啓曰: “臣本無才德, 以四品官特蒙拔擢爲承旨, 未久而又陞爲都承旨。 臣自度不堪, 卽欲辭免, 第恐近名未敢耳。 臣素患咳嗽, 近日轉劇。 況都承旨任重, 豈如臣者所能堪也? 請辭。” 傳曰: “聞卿病重, 不喫飯但飲酒, 眼宇陷落, 似未速愈, 故欲授閑官使調攝。 今聞病勢不甚,</p>

	<p>“듣건대, 경은 병이 중하여 밥을 먹지 아니하고 술만 마신다고 하는데, 눈언저리가 움푹 들어가서 빨리 낫지 아니할 듯하기 때문에 한관(閑官)에 임명하여 조섭(調攝)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제 듣건대, 병세가 심하지 않다고 하니 사피(辭避)하지 말라.” 하였다.</p> <p>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세우(李世佑)는 성품이 가혹하게 살피고 또 기(氣)를 부려서, 말하고 노여워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싫어하였다. 그러나 사무에 자세하고 마음도 끈기 때문에 임금이 그를 신임하였다.” 하였다.</p>	<p>毋爲辭避也。”</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17일(병진) 2번째기사</p>	<p>어반미(御飯米)18313) 를 줄이도록 명하자,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심하지 아니하여 여러 관사(官司)의 늪식(廩食)18314) 도 아직 감하지 아니하였는데, 먼저 어반미를 감하시니,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아니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命減御飯米。承政院啓曰：“今旱不甚，諸司廩食猶未減，而先減御飯，心實未安。”不聽。</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17일(병진) 3번째기사</p>	<p>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이극균(李克均)이 사조(辭朝)하고 인해 아뢰기를, “지금 적(賊)18315) 이 중성(鍾城)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이는 반드시 성 밑에 사는 야인(野人)이 향도(嚮導)18316) 한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세종조(世宗朝)에 이정옥(李澄玉)이 절도사가 되어, 만일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성 밑에 사는 야인을 엄하게 징계하였기 때문에 변경에 경보(警報)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약 사로잡힌 자가 있으면 쇄환(刷還)해 온다고 일컫고 스스로 그 공(功)을 자랑하면서 내조(來朝)하여 상(賞)을 받기 때문에 노략질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 뒤로는 사로잡힌 자가 있거든 엄한 말로 꾸짖어서 쇄환(刷還)의 공을 논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든 시행은 경(卿)의 처치하는 데 맡기겠다.”</p>	<p>○永安北道節度使李克均辭。仍啓曰：“今賊擄鍾城人，是必城底野人所嚮導也。臣聞世宗朝李澄玉爲節度使，如有賊犯境，則痛懲城底野人，故邊塞無警。今則若有被擄者，稱爲刷來，自矜其功，來朝受賞，故寇掠不已。今後有搶擄者，嚴辭刻責，勿論刷還之功。”傳曰：“凡所施爲，任卿處置。”仍賜藥餌。</p>



	하고, 인하여 약이(藥餌)18317) 를 내려 주었다.	
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17 일(병진) 7번째기사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치계(馳啓)하기를, “도내 남원(南原)·창평(昌平)·순창(淳昌)·장수(長水) 등 고을에서는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계란과 같아서 벼와 보리가 10에 8,9할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였다.	○全羅道觀察使馳啓: “道內南原、昌平、淳昌、長水等邑雨雹, 大如雞卵, 禾麥十傷八九。”
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18 일(정사) 1번째기사	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금년에 밀과 보리가 잘되지 못하여明年 종자를 미리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비 절목(豫備節目)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丁巳/都承旨李世佑啓曰: “今歲久旱, 兩麥不登, 明年之種, 不可不預爲之備, 請諭諸道監司。” 傳曰: “預備節目, 令該曹議啓。”
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18 일(정사) 2번째기사	명하여 유승탄(兪升坦)을 승정원(承政院)에 불러서 묻기를, “네가 말한 탐포(貪暴)한 수령(守令)과 재상(宰相)은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탐포한 수령은 결성 현감(結城縣監) 신후담(辛厚聘)과 면천 군수(沔川郡守) 조윤선(趙允瑄)입니다.” 하면서, 불법(不法)한 일들을 모두 들어서 세고는, 또 말하기를, “신이 만약 적간(摘奸)한다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탐포한 재상은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인데 때를 타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진휼사(賑恤使) 유순(柳洵)은 민간에 출입하지 아니하고 관가(官家)에만 머물고 있으므로, 신이 이들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였는데, 묻기를, “전해 들은 말을 가지고 수상(首相)을 헐뜯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억지로 탐포한 재상을 묻기 때문에 신이 어쩔 수 없이 들어서 아는 것으로 써 아뢰었을 뿐입니다.”	○命召昇坦于承政院, 問之曰: “汝言貪暴守令與宰相, 指誰耶?” 對曰: “貪暴守令, 則結城縣監辛厚聘、沔川郡守趙允瑄也。” 極數不法等事。 且曰: “臣若擿奸, 則不止此耳。 貪暴宰相, 則領議政尹弼商乘時販賣取利, 賑恤使柳洵不出入民間留官家, 臣指此等人也。” 問曰: “以傳聞之言, 詆首相何耶?” 對曰: “強問貪暴宰相, 故臣不得已以聞知者啓之耳。” 傳曰: “方求言之時, 故不罪也。” 政院啓曰: “此部民告訴者也。 言於求言之前, 而有關風教, 不可不罪之。” 傳曰: “令司憲府推鞠。”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구언(求言)하는 때이므로 죄주지는 않겠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는 부민(部民)이 고소한 것입니다. 구언하기 전에 말한 것이고 풍교(風教)에 관계가 있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추국(推鞠)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지나간 을사년(1831)에 가뭄으로 인하여 구언(求言)하자, 홍문관(弘文館)에서 말하기를, ‘윤필상이 백성들과 이(利)를 다투니 정승(政丞)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이르러 유승탄이 또 말하였다. 윤필상은 재상이 된지 20여 년인데 사랑과 대우가 가장 두터워 부(富)가 이미 극진하였다. 그런데도 만족한 데에 그칠 줄을 알지 못하고 틈을 타서 이(利)를 취하는데,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면 시정(市井) 사람을 불러서 친히 감독하며 베[布]와 바꾸었다. 홍문관에서 논박한 뒤에는 마땅히 조금 그쳐야 할 것인데도 행실을 고칠 수 없었으니, 보통 사람과 같다.” 하였다.</p>	<p>【史臣曰：“去年乙巳，因旱求言，弘文館以謂弼商與民爭利，不宜居相位，而至是昇坦又言之。 弼商爲相二十餘年，眷遇最隆，富已極矣。 而不知止足，乘時射利，年荒(谷)〔穀〕貴，則招市井之人，親監貿布。 弘文館論駁之後，宜少止矣，而不能改行，猶夫人也。”】</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19일(무오) 4번째기사</p>	<p>양전(兩殿)18320) 의 향운(香醞)18321) 을 감하였다.</p>	<p>○減兩殿香醞。</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19일(무오) 6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상소하기를,  “선유(先儒)의 말에 있기를, ‘백성을 움직이는 데에는 행동으로 하고 말로써 아니하며, 하늘에 응(應)하는 데에는 성실로써 하고 형식으로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하늘과 사람의 즈음에 정침(精禋)18322) 이 서로 움직이고 선악(善惡)이 서로 옮겨서 재변(災變)의 응함이 유(類)에 따라서 이르는 것입니다. 옛부터 훌륭한 황제와 명철한 임금의 천심(天心)을 받들어 재변(災變)을</p>	<p>○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上疏曰：  先儒有言曰：“動民以行不以言，應天以實不以文。” 夫天人之際，精禋有以相盪，善惡有以相推，災變之應，隨類以至。 自古聖帝明王，所恃以克承天</p>

막아 사라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응하기를 참된 정성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세(季世)18323) 에 내려옴에 미쳐서 천재(天災)의 유행이 없는 세대가 없었는데, 역대 임금의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근심을 막을 수 있는 이가 드문 것은 한갓 허문(虛文)만 일삼는 것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즉위(即位)하신 이래로 덕을 닦고 정사를 행하시, 태화(泰和)의 다스림에 이르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상(福祥)은 드물게 나타나고 재변은 연달아 이르니, 신 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여 전하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 등은 그욕이 생각하기를, 어선(御膳)을 줄일 필요가 없고, 대전(大殿)을 피(避)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다만 상하(上下)를 통하고 실효(實効)를 책(責)하여 더욱 몸과 덕을 닦아서 위로 천심(天心)에 응하기를 생각하면 재변이 저절로 사라지고 경사로운 징조가 저절로 응할 것입니다. 신 등은 삼가 관견(管見)18324) 으로서 뒤에 조목으로 진술합니다.

국가에서 근년 이래로 궁실(宮室)을 수선(修繕)하여 호야(呼耶)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장독관(掌督官)18325) 은 전의 규모보다 낮게 하려고 힘써서 조금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매질이 낭자(狼藉)합니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재앙(災殃)이 되었는데, 토공(土功)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적당한 시기이겠습니까? 신 등은 그욕이 역도(役徒)18326) 를 파해 보내고 때를 기다려서 영건(營建)하여도 늦지 아니하다고 여깁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관(官)은 친밀한 데에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는 이에게만 주며 작(爵)은 악덕(惡德)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어진이에게만 준다.’고 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의사(醫士)로서 내의원(內醫院)에 출사(出仕)하는 자에게는 조그만한 공로만 있어도 문득 당상관(堂上官)에 올리고 육경(六卿)의 장(長)18327) 에 처하며 추밀(樞密)18328) 의 지위에

心, 消弭災變者, 惟有應之以實而已。降及季世, 天災流行無世無之, 而歷代人君, 鮮能消災弭患者, 豈不以徒事虛文而已乎? 恭惟我主上殿下, 卽位以來, 修德行政, 思臻泰和之治。然而福祥罕發, 災變沓臻, 臣等不審所以敬天勤民之實, 有未至耶? 抑上天仁愛人君, 欲堅殿下之心耶? 臣等竊以爲膳不必減也, 殿不必避也, 但思所以通上下、責實效、益修己德、上應天心, 則災變自消而嘉祥自應矣。 臣等謹以管見, 條陳于後。 國家比年以來, 修繕宮室, 呼耶之聲不絕, 掌督之官, 務勝前規, 少有不及, 捶楚狼藉。 今當農月, 亢陽爲災, 興作土功, 豈其時乎? 臣等竊以爲罷遣役徒, 待時營建, 未爲晚也。 《書》曰: “官不及私昵, 惟其能; 爵罔及惡德, 惟其賢。” 比年以來, 醫士之仕內醫院者, 少有微效, 輒陞堂上官, 至有處六卿之長、居樞密之地。 彼懷瑾握瑜而沈於下僚者, 寧不喪心乎? 自古爲國者, 文以致治, 武以戡亂, 故文武兼用, 長久之道也。 然文武全才, 世不常有, 或長於文而短於武, 或長於武而短於文, 不可求備于一

지 이르니, 저 구슬같이 아름다운 덕(德)을 지니고도 하료(下僚)에 잠겨 있는 자는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문(文)으로써 다스림을 이루고 무(武)로써 난(亂)을 평정하기 때문에 문무를 겸용하는 것은 장구(長久)한 도(道)입니다. 그러나 문무의 온전한 재주는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므로, 더러는 문(文)은 넉넉하나 무(武)는 부족하고 더러는 무는 넉넉하나 문은 부족하니, 한 사람에게 갖추어지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근년 이래로 문신(文臣)으로 조금이라도 활을 쏠 줄 아는 자는 관례로 방진(方鎭)18329)의 임무를 주고 무신(武臣)으로 조금 문필을 아는 자에게는 갑자기 정사를 다스리는 벼슬을 맡기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그래도 가하겠지만, 더구나 반드시 모두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옛 속담에 이르기를, ‘농사일은 마땅히 남종[奴]에게 묻고 베짜는 일은 마땅히 여종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것을 비유할 만합니다. 곡례(曲禮)18330)에 이르기를, ‘외부의 말은 곧(梱)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부의 말은 곧 밖에 나가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내외(內外)의 분별을 엄하게 하고 청알(請謁)18331)의 조짐을 막는 것입니다.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든 그러한데 더구나 궁금(宮禁)이겠습니까? 임금의 한마음을 침공하는 것이 많아서, 혹은 옛 은혜로써, 혹은 사랑으로써 엿보는 것이 백 가지 인데, 여알(女謁)18332)이 한번 열리면 작상(爵賞)이 적당함을 잃어서 국가의 일이 날마다 그릇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적장 체아(嫡長遞兒)18333)를 설치하여 공신(功臣)의 후예를 대우하니, 이는 상(賞)이 대대로 미치게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신의 적장(嫡長)이 동반(東班)의 직(職)에 제수된 자가 많이 있는데, 매양 도목(都目)18334) 때를 당하면 그 체아(遞兒)를 충훈부(忠勳府)에서 뜻에 따라 올리고 낮추어서 비록 강보(襁褓) 속에 있는 아이라도 모두 전차(填差)18335) 하는데 병조(兵

人也。國家頃年以來，文臣之稍能控弦者，例授方鎭之任，武臣之稍解文墨者，驟任治事之官。能堪其任者則可矣，況未必皆其人乎？古諺有之曰：“耕當問奴，織當問婢。”此言雖小，可以喻大。《曲禮》曰：“外言不入於梱，內言不出於梱。”此嚴內外之分，杜請謁之漸也。士大夫之家猶然，況宮禁乎？人主一心，攻之者衆，或以恩舊，或以嬖寵，窺覷百端，女謁一開，則爵賞失當，國事日非矣。國家設嫡長遞兒以待功臣之後，此賞延于世之意也。然而功臣嫡長授東班職者居多，每當都目，其遞兒忠勳府，隨意陞降，雖在襁褓者，亦得填差，而兵曹未嘗預聞。臣等竊以爲自今雖嫡長，年壯入番者，方許薦用；其餘遞兒，授兩界萬戶之無祿俸者，則祿不加設，而鞅掌於邊圉者，得以蒙其澤矣。萬戶秩中四品，扞禦海寇，其任重矣。而求補是職者，率皆闖茸之徒，由是貪黷屢聞，備禦踈虞。臣等竊謂自今以內禁衛擇差萬戶，而考滿還屬本衛，則貪冗之風，自戢而備禦實矣。親民之職，莫重於守令。許多郡縣，不能皆得其人，

曹)에서는 일찍이 참여해 듣지 못합니다. 신 등은 그욕이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비록 적장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장성하여 입번(入番)한 자라야 비로소 추천해 쓰도록 하고, 그 나머지 체아(遞兒)는 양계(兩界)18336) 만호(萬戶)의 녹봉(祿俸)이 없는 자에게 주면, 녹(祿)을 더 마련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의 일에 바쁜 자가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호는 직질(職秩)이 4품에 해당하고 해구(海寇)를 방어하니 그 임무가 중한데, 이 직(職)에 보임(補任)되기를 구하는 자는 거의 모두 탐용(闡茸)18337)한 무리들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탐독(貪黷)18338) 하는 말이 여러 번 들리고 방어가 허술합니다. 신 등은 그욕이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내금위(內禁衛)에서 만호를 골라서 차임(差任)하였다가 고만(考滿)18339) 이 되면 도로 본위(本衛)에 속하도록 하면 탐독하는 풍습이 저절로 없어지고 방어가 충실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백성과 친한 직무는 수령(守令)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허다한 고을에 모두 적합한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올리고 내치는 법이 있어서 10고 2중(十考二中)18340) 인 자는 무록관(無祿官)18341) 에 서용(敍用)합니다. 대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끝에는 게을러지는 것이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대저 관에 있는 이가 본디 대현(大賢)이 아니면 처음에는 뜻을 가다듬어 공무에 봉사하다가 중간에는 힘쓰기를 게을리하고 나중에는 방자하여 오직 욕심대로만 하는 것이 온 세상이 모두 그러한 것인데, 더구나 2중(二中)이라는 좌욕(挫辱)18342) 을 당하고 앉아서 6기(六期)18343) 를 기다리면 어찌 게을러지는데 이르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아전이 두려워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그 해(害)를 받습니다. 이 뒤로는 수령으로 2중(二中)인 자는 6기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곧 바꾸어 서용(敍用)하도록 하소서.

국가에서 겸사복(兼司僕)을 설치하여 활쏘고 말다루는 일을 맡아서 왕실(王室)을 호위하는데, 바로 옛 호분(虎賁)의 남긴 제도입니다. 근년 이래로 서자

故有陞黜之法，十考二中者，敍於無祿官。大抵始勤終怠，人情之常。凡在官者，自非大賢，初則銳意奉公，中則倦於策勳，終則放肆惟欲之從，滔滔皆是。況遭二中之挫辱，坐待六期，則其有不至於倦怠乎？由是吏不畏服，而民受其害矣。今後守令之二中者，勿待六期，旋即換敍。國家設兼司僕，執射御以衛王室，即古虎賁之遺制。比年以來，孽產賤隸，稍有才力者，皆許入屬，豈侍御僕從，罔非正人之謂乎？自今慎簡士類，無使賤人廁於其間。宦者之職，不過守掖庭、掌房闈而已。我朝裁抑宦寺，有犯不貸。然其官職與朝官相等，紆朱拖金者，布列宮庭，或因宣慰、或因採女、或因傳香奉使歸鄉者，所經州郡奉之，惟恐不及，所得賂遺，動以千數。由是京師第舍，僭擬踰制，所在田園，皆極膏腴，宦寺豪縱之漸，恐終不可復制矣。僧徒廣占私田，以爲己物而相傳之，國家又從而復其役，由是寺田日益多，驕僧日益富。其親屬相善之人，亦利其復役，因緣暗錄者，比比有之。民困而僧佚，民貧而僧富，何苦爲民以取困且

(庶子)나 천례(賤隸)라도 조금만 재주와 힘이 있는 자는 입속(入屬)되기를 허락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시어복종(侍御僕從)이 바른 사람이 아님이 없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사류(士類)를 신중하게 골라서 쓰고 천인(賤人)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끼이지 못하게 하소서.

환자(宦者)의 직무는 액정(掖庭)18344) 을 지키고 방달(房闈)18345) 을 맡는 것뿐인데, 우리 조정에서는 환사(宦寺)들을 억제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직(官職)을 조관(朝官)과 서로 같게 하여 우주타금(紉朱拖金)18346) 한 자가 궁정(宮庭)에 늘어서 있는데, 혹은 선위(宣慰)로 인하여, 혹은 채녀(採女)18347) 로 인하여, 혹은 전향(傳香)18348) 을 위하여 사명(社命)을 받들고 시골로 돌아가는 자에게 그들이 지나가는 고을에서 받들기를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얻는 뇌물이 자칫 천수(千數)에 이르면, 이로 말미암아 서울의 집이 참람하여 제도에 넘치고, 있는 곳의 전원(田園)이 모두 극도로 기름져서, 환관들의 호화롭고 방종하는 조짐을 아마도 마침내 다시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도(僧徒)가 사전(私田)을 널리 점령하여 자기의 물건으로 삼아 서로 전하는데, 국가에서 또 따라서 그 역(役)을 면제하여 주니, 이로 말미암아 사전(寺田)이 날마다 많아지고 교만한 중이 날마다 부(富)를 더하여 그 친속(親屬)의 서로 친근한 사람도 그 역(役)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 인연하여 몰래 〈승적(僧籍)에〉 기록하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백성은 괴롭고 중은 편하며 백성은 가난하고 중은 부유한데, 무엇 때문에 고달프게 평민이 되어 곤궁하고 가난함을 취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서로 이끌고 머리를 깎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의 체통에 누(累)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은 그욕이 생각하기를, 무릇 사전(寺田)은 일체 없애버리고 승사를 업(業)으로 하는 중은 모두 충군(充軍)하도록 하면 승도가 없어지고 군액(軍額)이 증가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貧哉? 故民而生子, 則相率而斃其首, 此豈非有累於國體乎? 臣等竊以謂凡寺田一切革去, 業農之僧, 竝令充軍, 則僧徒戢而軍額增矣。 蒜山隄堰不宜灌溉, 故聽民自耕, 蓋亦有年, 而世祖許屬上院寺, 特出於一時之權宜耳。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豈可取民之天, 以資僧徒乎? 服勞奉上者, 不得其衣食, 逃賦避役者, 反享其飽煖, 是固仁政之大累也。 徂茲軍資(鹽) [監] 例遣官, 質材於沿江諸邑, 大抵官給價布之數小, 分定材木之數多, 一夫所得不過數尺, 而一木之輸至役十夫。 緣此守令, 類皆不給其價, 只以田結, 督輸其木, 甚非便民之本意。 臣等竊以爲東西兩江聯巨, 筏私販材木, 無慮千數, 不必遣官作弊, 行虛惠, 貽實害也。 古者任土作貢, 各獻方土所宜之物。 今諸道節度使狩獵之獲, 足以供方物, 故以營中自備, 載在令甲。 而例分州郡, 斂於民間, 一皮之直, 綿布數十匹。 今年如是, 明年又如是, 小民其有蘇息乎? 請申明其令, 勿收價州郡。 且蠶室之設, 其失有二。 外居諸司公賤, 許蠲其貢, 以供蠶事, 蠶成而

산산(蒜山) 제언(堤堰)은 관개(灌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에게 스스로 경작하기를 허락한 것이 대개 몇 해가 되었는데, 세조(世祖)께서 상원사(上院寺)에 붙이도록 허락한 것은 특별히 일시의 권의(權宜)18349)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데, 어찌 백성이 하늘을 빼앗아서 중들의 자산이 되게 하겠습니까? 힘드는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면서 윗사람을 받드는 자는 그 의식(衣食)을 얻지 못하는데, 부역(賦役)을 도피하는 자는 도리어 그 배부르고 따듯함을 누리니, 이는 인정(仁政)의 큰 누(累)입니다.

과거에는 군자금(軍資監)에서 예(例)로 관원을 보내어 연강(沿江) 여러 고을에 재목을 샀습니다. 대저 관에서 값으로 주는 베[布]의 수량은 적고 나누어 정한 재목의 수량은 많아서, 한 사람이 얻는 것은 겨우 두어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한 나무를 운반하는 데에는 열 사람을 사역하는 데 이르니, 이로 인연하여 수령이 대개 모두 그 값을 주지 아니하고는, 다만 전결(田結)18350) 로써 그 나무를 운반하도록 독촉하니, 매우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신 등은 그옥이 생각하기를, 동서(東西) 두 강에 거벌(巨筏)18351) 을 연결하여 사사로이 재목을 파는 것이 무려 천수(千數)인데, 관원을 보내어 폐단을 일으키게 하여 헛된 은혜를 행하고 참된 해(害)를 줄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예전에는 토지에 따라 공물(貢物)을 만들어서 각각 지방 토질에 적당한 물건을 바치게 하였는데, 지금 여러 도(道)의 절도사(節度使)가 사냥해 잡은 것으로도 방물(方物)에 이바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영중(營中)에서 스스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영갑(令甲)18352) 에 실려 있는데, 관례로 주군(州郡)에 나누어서 민간(民間)에 거두므로 한 피물(皮物)의 값이 면포 수십 필이 되며, 금년에도 이와 같고 명년에도 이와 같으니, 소민(小民)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청컨대 그 영(令)을 거듭 밝혀서 값을 주군(州郡)에 거두지 말도록 하소

品不善、用不宜，則所獲亦不能補其所亡，其失一也。蠶亦農月也，蠶農之舉，竝在一時，驅農夫蠶婦於公役，以奪民時，既不利於公，又不便於民，其失二也。若曰“蠶室之設，載在國典，不可輕廢。則限年權罷，以蘇吾民可也。國家於諸道置冶場，役諸邑之民而吹鍊之，贏糧往來，動經旬月，少失期限，鞭撻隨之。爭聚價物，自相防納，監冶之官，率皆無識之徒，其於防納之際，拮據財利，剖折秋毫，曰糧價，曰炭價，曰人力之價，曰鐵物之價，徵斂甚急，財殫力瘁，怨讟興焉。傷和召災，未必不由於此也。臣等竊以爲，自今權罷鐵場都會，許令諸邑，各自採鐵以納，則民不爲病而公私兩便矣。國家於諸驛，置位田以贍其用，設日守以服其勞，且分路之大中小，量給旁近所居公賤，以助其役。然而近年以來，官守者不得其人，加之以凶歉，館宇日就頽圯，人馬日就困頓，奴婢日守未充其額。臣等竊以爲，令所在郡縣，充日守、給公賤，一依《大典》之數，則可以蘇復矣。

	<p>서.</p> <p>또 잠실(蠶室)을 설치하는 것은 그 손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방에 있는 여러 관사(官司)의 공천(公賤)에게 그 공물(公物)을 면제하고 누에치는 일에 이바지하도록 허락하였는데, 누에치는 일은 이루어졌으며 품질이 좋지 못하여 쓰기에 마땅치 않으면, 얻는 것이 잃는 것을 보충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손실이 하나입니다. 누에도 농사철에 하는 것이므로 누에와 농사의 일이 아울러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인데 농부(農夫)와 잠부(蠶婦)를 공역(公役)에 몰아다가 백성의 농사짓는 시기를 빼앗으니, 이는 공적으로도 이롭지 못하고 또 백성에게 불편하니 그 손실이 둘입니다. 만약 말하기를, ‘잠실을 설치하는 것은 국전(國典)18353)에 실려 있어서 가볍게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몇 해를 기한하여 임시로 파하여 우리 백성을 살리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p> <p>국가에서 여러 도(道)에 야장(冶場)18354)을 두고 여러 고을 백성을 부려서 취련(吹鍊)하는데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면서 자칫 한달이 경과되며, 조금만 기한을 잃으면 매질이 따르므로, 다투어 값으로 물건을 모아서 스스로 방납(防納)18355)하는데, 야장(冶場)을 감독하는 관원이 거의 다 무식한 무리이므로 그 방납하는 즈음에 재리(財利)를 취하려고 호리(毫釐)를 부절(剖折)18356)하여 양식값이니, 숯값이니, 인력(人力)값이니, 하면서 거두기를 매우 급하게 하므로 재물이 다하고 힘이 피곤하여 원망이 일어나는데, 화기(和氣)를 손상하고 재변이 이르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말이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그옥이 이르기, 이제부터는 철장(鐵場)의 도회(都會)18357)를 임시로 파하고 여러 고을에서 각자 채철(採鐵)하여 바치게 하면 백성이 고달프지 아니하고 공사(公私)가 모두 편할 것이라고 여깁니다.</p> <p>국가의 역(驛)에 위전(位田)을 두어 그 쓰는 것을 넉넉하게 하고 일수(日守)18358)를 두어 그 힘드는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도록 하며, 또 길의 대(大)·중(中)·소(小)를 나누어서 근방에 사는 공천(公賤)을 헤아려 주어 그 역</p>	<p>命議于領敦寧以上。 韓明澹、沈澹、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慎、尹壕議：“若用疏忽，則壞《大典》之事甚多。 雖曰土功，而創建春宮，不可廢也。 內官多占田園，至於奉使作弊者，皆指的言之，推覈爲便。”</p>
--	---	---



	<p>(役)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관수자(官守者)18359) 를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고, 거기다가 흉년이 더하여 관우(館宇)가 날마다 허물어지고 사람과 말이 날마다 피곤해지며 노비(奴婢)와 일수가 그 액수에 차지 않습니다. 신 등은 그옥이 생각하기를, 있는 곳의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일수를 채우고 공천(公賤)을 두어 일체 《대전(大典)》의 액수에 의하게 하면 소복(蘇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p> <p>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p> <p>“상소의 내용을 만약 적용한다면 《대전》의 법을 파괴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토목 공사[土功]라고 하더라도 춘궁(春宮)18360) 을 창건하는 일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내관(內官)이 전원(田園)을 많이 점령하며 사명을 받들고 가서 폐단을 일으키는 것에 이르러서는 모두 지적해서 말한 것이니, 추핵(推覈)하는 것이 편합니다.”</p> <p>하였다.</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19일(무오) 7번째기사</p>	<p>사간원(司諫院)에 전교하기를,</p> <p>“나를 사실[實]로써 권하고 나를 정성[誠]으로 깨우치니,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내관(內官)이 전원을 많이 점령하며 집을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하며 뇌물주는 것을 많이 받았다는 일은 범연히 말하고 그 사람을 가리키지 아니하였고, 양잠하는 일은 이미 정과(停罷)하게 하였는데 또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하니, 정언(正言) 박희손(朴喜孫)이 와서 아뢰기를,</p> <p>“내관 이효지(李孝智)는 서울 집이 매우 사치스럽고 아름다워서 제도에 지나치며, 또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현석규(玄碩圭)에게 표리(表裏)를 선사(宣賜)할 때에 현석규가 면포 2백 필을 주었습니다. 또 유한(柳漢)은 해주 둔</p>	<p>○傳于司諫院曰：“勸予以實，警予以誠，予用嘉之。但汎言內官，廣占田園、侈美第宅、多受贈賂等事，而不指言其人；養蠶事已令停罷，而亦言之何歟？”正言朴喜孫來啓曰：“內官李孝智京家，甚侈美過制，且宣賜表裏于平安道觀察使玄碩圭，碩圭贈綿布二百匹。又內官柳漢冒占海州屯田，事覺被鞠；內官嚴用善以齎賜物往慶尙道，多般作弊。故疏中及之。”傳曰：“孝智事，</p>

	<p>전(海州屯田)을 모점(冒占)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자 국문을 받았고, 내관 엄용선(嚴用善)은 하사하는 물건을 싸가지고 경상도에 가서 여러가지로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소 가운데 언급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효지의 일은 만약 현석규를 대신한 자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나, 엄용선의 일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가?”</p> <p>하니, 박희손이 아뢰기를,</p> <p>“들은 지가 이미 오래 되어 그 이름을 잊었습니다.”</p> <p>하자, 명하여 이승원(李崇元)과 박건(朴楨)을 불러 물기를,</p> <p>“경 등이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있을 때에 어떤 물건을 이효지에게 주었는가?”</p> <p>하니, 이승원 등이 대답하기를,</p> <p>“이효지에게 늙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먹이도록 주었을 뿐입니다. 현석규가 면포를 준 일은 신 등이 듣지 못하였습니다.”</p> <p>하였는데, 사간원(司諫院)에 전교하기를,</p> <p>“중국 환시(宦寺)가 비록 우리 나라에서 폐단을 일으키더라도 누가 감히 중국에 말하겠는가? 우리 나라의 내관도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 그대들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가사(家舍)는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적간(摘奸)하게 할 것이며, 전원(田園)은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근거를 찾게 할 것이다. 전향(傳香)·선위(宣位)·채녀(採女) 등의 일은 부득이하여 내관을 보낸 것이다. 다만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감사(監司)로 하여금 검거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若問代碩圭者則可知，用善事，聞於何人乎？”喜孫啓曰：“聞之已久，忘其名矣。”命召李崇元、朴楨，問曰：“卿等爲平安監司時，贈何物于李孝智乎？”崇元等對曰：“孝智有老親，故饋遺酒食耳。碩圭贈緜布事，臣等未之聞也。”傳于諫院曰：“中朝宦寺，雖作弊於我國，誰敢言之於上國乎？我國內官，何以異哉？爾等不言，予何由知？家舍則令憲府摘奸，田園則令其道觀察使根尋矣。如傳香、宣慰、採女等事，則不得已遣內官也。但其作弊者，令監司檢舉耳。”</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과(尹坡)가 와서 아뢰기를,</p> <p>“절도사(節度使)는 한 지방을 전제(專制)하고 군졸(軍卒)을 어루만져 다스리</p>	<p>○司憲府持平尹坡來啓曰：“節度使專制一方，撫禦軍卒，其爲任，至不輕</p>

(成化) 23년) 5월 26  
일(을축) 2번째기사

니, 그 임무가 지극히 가볍지 않습니다. 한환(韓權)이 대궐 뜰에서 사연(賜宴) 할 때에 기녀(妓女) 자운아(紫雲兒)와 더불어 서로 희롱하였는데 어유소(魚有沼)가 한환이 나간 틈을 타서 곧 자운아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한환이 투기하여 자운아를 구타하였습니다. 그 광패(狂悖)함이 이와 같은데 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때에 추핵(推劾)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추죄(追罪)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윤과가 아뢰기를,  
“추죄하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광망(狂妄)한 형상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큰 일을 그르쳐서 중한 죄를 범하는 데 이른 뒤에 바꾸면 어찌 미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시험해 본 뒤에 그만두겠다.”

하였다. 윤과가 또 아뢰기를,  
“한한(韓僞)이 전번에 전라 감사(全羅監司)에 임명되었는데 한한과 상피(相避)된다고 하여 장흥 부사(長興府使) 김극련(金克鍊)과 창원 부사(昌原府使) 박형문(朴衡文)을 서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두 부(府)는 상거가 매우 멀고 지금 바야흐로 농월(農月)이며 또 한재(旱災)가 있어, 두 고을 백성이 맞이하고 전송하는 데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한한을 다른 도로 바꾸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윤과가 또 아뢰기를,  
“종성(鍾城)은 오진(五鎭)의 문호(門戶)이므로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부사(府使) 노효신(盧孝愼)은 나이가 많고 재질이 둔하여 말달리고 활쏘기에 능하지 못하고, 판관(判官) 홍계원(洪係元)도 문신(文臣)으로서 무예(武藝)에 익숙하지

也。韓權於闕庭賜宴時，與妓紫雲兒相挑戲，魚有沼乘權出，旋飲紫雲以酒，權妬歐紫雲兒。其狂悖如此，不可任以重寄。”傳曰：“其時不劾，豈可追罪？”坡曰：“非請追罪，但啓狂妄之狀耳。至於誤大事、犯重罪然後，改之何及？”傳曰：“試可乃已。”坡又啓曰：“韓僞曾拜全羅監司，以僞之相避長興府使金克鍊，與昌原府使朴衡文相換，兩府相距甚遠。今方農月，且有旱災，兩府之民迎送有弊。請換韓僞於他道。”傳曰：“可。”坡又啓曰：“鍾城，五鎭門戶，防禦最緊。府使盧效愼年老質鈍，不能馳射；判官洪係元亦以文臣，不閑武藝，何以應變？”傳曰：“吏、兵曹薦非其人何也？其問之。”吏曹啓曰：“效愼諳練武士，雖質鈍，不至於衰耗，故擬望。”

	<p>못한데, 어찌 사변에 대응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그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물어 보라.”  하자, 이조에서 아뢰기를,  “노효신은 암련(諳練)18387) 한 무사(武士)이므로 자질이 둔하다 하더라도 쇠모(衰耗)한 데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망(擬望)한 것입니다.”  하였다.</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28  일(정묘) 4번째기사</p>	<p>경상도(慶尙道)·충청도(忠淸道)·경기(京畿)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정성근(鄭誠謹)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대마도(對馬島) 주(主)가 말하기를, 「사왜(使倭)가 왕래할 때에 비록 드러나게 큰 병에 걸렸더라도 몰아 쫓아서 길을 떠나게 하고, 만약 말을 탈 수 없으면 함거(檻車)를 임시로 만들어서 소에 떼워 끌게 하는데, 이 때문에 사자(使者)가 길에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참으로 이 말과 같으면 어찌 먼 나라 사람을 회유(懷柔)하는 도리이겠는가? 비록 왜인이 포(浦)에 머물면서 양식을 얻으려고 꾀하여 거짓 병을 칭탁해서 오래 머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어찌 정말로 병든 자가 없겠는가? 연로(沿路)의 여러 고을에 유시(諭示)하여, 이 뒤로는 실지로 병이 있는 자는 길을 떠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慶尙、忠淸、京畿觀察使曰：  今觀鄭誠謹書狀，對馬島主言：“使倭往來時，雖顯有大病，驅逐就途，若不能乘馬，則假作檻車，駕牛曳之，以是使者多斃於道。”信如此言，豈柔遠之道歟？雖曰倭人謀得留浦糧，詐病遲留，其間亦豈無實病者乎？其諭沿路諸邑，今後病實者，毋令就途。</p>
<p>성종 203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5월 29  일(무진) 2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한환(韓權)은 본래 한 광망(狂妄)한 비부(鄙夫)18402) 로서 하는 것이 꽤만(悖慢)하여 걸핏하면 국법을 범하는데, 다만 척리(戚里)인 것을 인연하여 지나치게 &lt;법을&gt; 굽혀가며 용서를 받아 벼슬이 2품에 이르렀으나, 이미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외람되게 곤외(關外)의 권(權)18403) 을 받아 스스로 한 지방을 담당하였으니, 신 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장</p>	<p>○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上筓子曰：  韓權本一狂妄鄙夫，所爲悖慢，動犯邦憲，只緣戚里，過蒙曲貸，位至二品，已爲公議所不容矣。今者濫膺關外之權，自當一面，臣等不識殿下，將欲置</p>

	<p>차 충청도 한 도의 군민(軍民)을 어느 땅에 두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안으로는 백관과 밖으로는 군민이 만구 일담(萬口一談)18404) 으로 비난하는 논의가 흥흥하데 전하께서는 여러 의논을 물리치고 굳이 시험해 보려고 하시니, 신 등은 그욕이 두렵건대, 전하의 사사로움이 없는 명철하심에 어그러지고 전하의 인색하지 아니하는 덕에 손상이 있을까 합니다. 신 등은 듣건대, 관사(觀射)18405) 하던 날에 한환이 어유소(魚有沼)와 더불어 감히 창기(娼妓)와 어울려 전정(殿庭)에서 술을 마시며 희롱하다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창기를 주먹으로 구타하였으니, 이는 크게 불경(不敬)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등통(鄧通)이 황제의 곁에 있으면서 태만(怠慢)한 예(禮)가 있자 승상(丞相) 신도가(申屠嘉)가 격소(檄召)18406) 하여 참(斬)하려고 하였고, 또 요즈음 이계동(李季叟)은 전상(殿上)에서 감자(柑子)를 기생에게 던져 주었으므로 먼 지방에 귀양갔습니다. 이제 이 한환과 어유소의 죄는 등통과 이계동의 죄보다 훨씬 더 합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명하여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밝고 바르게 다스리소서.”</p> <p>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忠清一道軍民於何地? 內而百官, 外而軍民, 萬口一談, 非議洵洵; 殿下排群議, 固欲試之, 臣等竊恐爽殿下無私之明, 傷殿下弗吝之德也。 臣等聞於觀射之日, 懼與魚有沼敢與娼妓, 酬飲戲謔於殿庭, 遂生猜心, 拳歐其妓, 是大不敬也。 昔漢之鄧通居帝傍有怠慢之禮, 丞相申屠嘉得以檄召而將斬之。 且近日李季全於殿上, 投柑遺妓, 謫于遠方。 今茲權、有沼之罪, 浮於鄧通、季全遠甚。 伏望殿下命付有司, 明正其罪。</p> <p>不允。</p>
<p>성종 204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6월 2일 (경오) 1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승경(金升卿)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 를, “금년 봄에는 비가 이미 흡족하게 내려서 모든 백성이 풍년 들기를 함께 우러러 기대하였는데, 정작 농사철을 당해서는 하늘이 화(禍)를 바꾸지 아니하여 가뭄이 심하니, 비를 바라는 마음이 이미 지극합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깨닫고 반찬과 음식을 줄이시며 자신을 꾸짖고 바른 말을 구하여 신기(神祇)18410) 에 기도하였으나 감응(感應)이 있지 아니합니다. 예전에는 한주(州)를 다스리고 한 현(縣)을 맡은 자라도 정성이 족히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돌이키게 하였는데, 어찌 전하의 덕으로써 도리어 하늘을 감격시키지 못한다고 이르겠습니까? 《가어(家語)》에 이르기, ‘하늘에 대한 감응은 사</p>	<p>○庚午/司憲府大司憲金升卿等上疏。 略曰： 今歲之春，雨澤既渥，凡厥民生，咸仰豐年之期。 正當農月，天不悔禍，旱魃爲虐，雲霓之望既極，而殿下警悟天戒，減膳貶食，罪已求言，徧禱神祇，而未有感應。 古之牧一州、宰一縣者，誠足以致雨反風，誰謂殿下之德，反不能感格于天乎？ 語曰：“應天以實，不以</p>

실(事實)대로 해야지 형식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기양(祈禳)은 말단(末端)이고 수정(修省)은 근본(根本)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그 근본을 먼저 하고 그 말단을 뒤에 하시면 천견(天譴)에 보답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시경(詩經)》 18411) 에 이르기를, ‘수고롭다. 서정(庶正)이여!’라고 한 것은 서관(庶官)의 장(長)이 일에 부지런한 것이며, ‘괴롭다. 총재(冢宰)여!’라고 한 것은 대신(大臣)의 높음으로써 그 직무에 수고하는 것이며, ‘취마(趣馬)18412) 와 사씨(師氏)와 선부(膳夫)와 좌우(左右)가 능하지 못하다고 하여 그만두는 이가 없다.’고 한 것은 백관 서사(百官庶士)가 백성의 일에 급급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음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재(旱災)를 만났어도 백성이 유리(流離)하는 한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낭묘(廊廟)18413) 에 있는 이가 섭리(變理)18414) 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육부(六部)18415) 에 있는 이가 부성(阜成)18416) 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백관으로서 여러 지위에 별여 있는 자가 모두 능히 그 직책을 다하고 있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것을 어렵게 여기시고 신중히 하소서. 《서경(書經)》 18417) 에 이르기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하다.’라고 하였고, 《역경(易經)》 18418) 에 이르기를, ‘아랫사람에게 후하게 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그 근본을 후하게 하려고 하면 마땅히 그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는 것뿐인데,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는 백성을 수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물을 손상하는 것이므로 비록 풍년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가볍게 거행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힘은 부족한데 일은 많은 것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창경궁(昌慶宮)의 역사를 겨우 마치자 춘궁(春宮)의 역사가 잇달아 일어나서 호야(呼耶)18419) 의 소리가 길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판축(版築)18420) 의 소리가 궁위(宮闈)18421) 에 들리는데, 하물며 궁벽한 산골짜기와 언덕진 비탈의 험한 곳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운반하고 한 개의 돌을

文。” 祈禳，末也；修省，本也。願殿下先其本而後其末，則庶可以答天譴矣。《詩》曰：“鞠哉！庶正。”則庶官之長，勤於事也；“疚哉！冢宰。”則大臣之尊，勞於其職也；“趣馬、師氏、膳夫、左右無不能止”則百僚庶士無不急於民也。是以雖遭旱乾之災，民無流離之嘆。今之位廊廟者，盡變理之責乎？居六部者，盡阜成之責乎？百僚之列于庶位者，皆能盡其職乎？伏望殿下其難其慎。《書》曰：“民惟邦本，本固邦寧。”《易》曰：“厚下安宅。”然欲安其宅而厚其本，當寬其民力而已。土木之役，非但勞民，亦且傷財，雖豐歲固不可輕舉，況時屈舉贏乎？國家昌慶宮之役纔畢，春宮之役繼起，呼耶之聲，不絕於道，版築之聲，殷動宮闈。而況窮山之谷、懸崖之險，輸一木轉一石之苦，有甚於篳楚，豈無起怨咨，傷和氣乎？古者遇旱乾之災，則趣馬不秣，師氏弛兵，馳道不除，祭事不懸，左右布而不修，大夫不食梁，士飲酒不樂，而況動民力營宮室乎？伏願亟罷是役，以休民生。夏后氏五十而貢，周人百畝而徹，其實皆什一，以

움직이는 고통은 회초리를 맞는 것보다 심할 것이니, 어찌 원망이 일어나고 화기(和氣)를 손상함이 없겠습니까? 예전에는 한재(旱災)를 만나면, 취마(趣馬)가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아니하고 사씨(師氏)는 군사를 쉬고 치도(馳道)18422) 를 소제하지 아니하며, 제사(祭祀)에 음악을 연주하지 아니하고 좌우에 벌려 놓고 쓰지 아니하며, 대부(大夫)는 양(梁)18423) 을 먹지 아니하고, 사(士)는 술을 마시고 즐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백성의 힘을 동원하여 궁실(宮室)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옳드려 원하건대 이 역사를 빨리 파하여 백성을 쉬게 하소서.

하후씨(夏后氏)18424) 는 50묘(畝)로 공법(貢法)을 쓰고, 주(周)나라 사람은 1백 묘(畝)로 칠법(徹法)을 썼는데, 그 실체는 모두 10분의 1로써 백관(百官)과 유사(有司)에 이바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백성의 세(稅)를 거두어서 치도(緇徒)18425) 를 기르겠습니까? 지금 세를 거두는 절이 무려 50이나 되니, 진실로 국가의 큰 해독입니다. 백성들은 몸이 땀에 젖고 밭은 흙투성이가 되어 한 해를 마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여도 그 부모 처자를 부양(扶養)하지 못하는데, 중들은 누에치지 아니하면서 옷을 입고 농사짓지 아니하면서 밥을 먹으며 좋은 집에 편히 앉아서 그 이(利)를 누리니, 이는 신 등이 마음 아파하는 까닭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봉선사(奉先寺)·원각사(圓覺寺)·내불당(內佛堂)·복세암(福世庵)의 중은 앉아서 공름(公廩)18426) 을 먹는데 소비가 적지 아니하니, 옳드려 바라건대, 모두 개혁하여 없애어서 국용(國用)에 채우게 하소서.

또 복세암(福世庵)은 도성(都城) 서악(西岳) 꼭대기에 있어서 궁궐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보잘것 없는 무리가 여기에 누워서 금원(禁苑)18427) 을 내려다보니, 어찌 통분(痛憤)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세묘(世廟)18428) 께서 창건한 것이므로 차마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한 할 말이 있습니다. 농부(農夫)에 비유하건대, 그 아버지가 곡식을 이미 심어 놓으면 그 아들이 김을 매야

供百官有司而已，豈令收民之稅，以養緇徒乎？今輸稅寺社，無慮五十，實國家之巨蠹也。百姓沾體塗足，終歲勤勞，不得養其父母妻子，而緇徒衣不蠶之衣，食不耕之食，安居華屋，坐享其利，此臣等所以痛心者也。不特此也，奉先寺、圓覺寺、內佛堂、福世庵之僧，坐食公廩，糜費不貲。伏望竝皆革除，以充國用。且福世庵在城都西岳之頂，俯壓宮闕，無行之徒，偃臥於斯，下視禁苑，豈不痛憤？若曰世廟所創不忍廢之，則又有說焉。比之農夫，其父既種，其子當耘，見其莠曰父之所殖，不忍去之，見其秕曰父之取種，不忍除之，則可乎？何以異於是？伏望亟命撤去，以快人望。況仁王寺在福世庵之下，非先王所創，則廢之宜不俟終日也。國家令納丁錢，給牒爲僧，使民重於祝髮也。至於尼則無禁防，故爲尼者寔繁。有徒出入於寡(歸) [婦] 之家，以因緣之說教諭萬端，爲寡婦者，陷於術中，情同夫婦，晝夜與之同處，猶爲不足，經宿於尼舍。歸依日久，不念其子女，終爲簪剃者，比比有之。且僧尼雖曰同類，男女則固有間

하는데, 그 강아지풀을 보고서 아버가 심은 것이라고 하여 차마 없애지 못하고, 쪽정이를 보고서 아버가 씨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차마 없애지 아니하면 울겠습니까?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엇드려 바라건대, 빨리 철거하기를 명하여 사람들의 바라는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더욱이 인왕사(仁旺寺)는 북세암 밑에 있는데, 국가에서 정전(丁錢)18429) 을 바치게 하고 도첩(度牒)18430) 을 주어 중을 삼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축발(祝髮)18431) 을 중하게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여승[尼]에 이르러서는 금방(禁防)이 없기 때문에 여승이 번성하며, 무리들이 과부의 집에 출입하면서 인연(因緣)의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므로, 과부들이 그 술책에 빠져서 정이 부부와 같게 되며, 밤낮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부족하여 아예 이사(尼社)18432) 에 가서 잡니다. 그리고 귀의(歸依)한 날이 오래 되면 그 자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머리를 깎는 자가 종종 있습니다. 또 중[僧]과 여승[尼]은 비록 동류(同類)라고 할지라도 남녀는 본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사족(士族)의 여자라고 하더라도 출가(出家)하여 여승이 되면 중에게 절을 하고 스승으로 삼아서 더불어 같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신 등의 통분(痛憤)하는 바입니다. 청컨대 여승으로 하여금 일체 환속(還俗)하도록 하고 여러 부녀가 이사(尼社)에 가는 것을 엄금하여 죄를 부과하게 하소서.

재령(載寧) 전탄(箭灘)은 정난중(鄭蘭宗)에게 명하여 본도(本道)18433) 의 장정 1만 여명을 동원하여 파는데, 순월(旬月)18434) 이 지났으나 일이 끝나지 아니하였고, 또 종사관(從事官) 박숙무(朴叔懋)에게 명하여 당령 수군(當領水軍)을 사역하여 파게 하였으나 또한 끝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전탄은 재령의 한쪽 구석에 있으므로 비록 한 봇도랑[渠]을 개통한다 할지라도 겨우 한 고을에 혜택이 있을 것이며 온 도의 백성을 이롭게 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또 전지(田地) 8결(結)에서 인부 한 사람을 내는 것이 관례인

矣。雖士族之女，出家爲尼，則拜僧爲師，與之同處而不疑，此臣等所痛憤者也。請令尼僧一切還俗，大小婦女之上尼社者，痛禁科罪。載寧箭灘，命鄭蘭宗發本道丁壯萬餘鑿之，動經旬月，事功未訖。又命從事官朴叔懋，役當領水軍鑿之，功亦未畢。臣等以爲箭灘在載寧一隅，雖開一渠，僅惠一郡，不足以利一道之民矣。且田八結出一夫例也，今以五結出一夫，一道騷然，靡有孑遺，民之怨咨，孰甚於此？況土性麤疎，隨鑿隨毀，終不可訖功，則利不及民而先困吾民矣。伏望命停是役，以蘇一道之民。古者九章之服，上下有截，各有等級，不相僭踰。今俗尚華侈，服美于人。商賈奴隸之徒服飾，擬於卿大夫，士族之女，非貂裘，不得齒於宴席。奢侈無節，此風不可長也。且今之商賈，或新良甲士、忠贊衛、壯勇隊者居多，自謂有職，而衣士人之服，戴士人之笠，比肩士流，甚非辨貴賤、嚴等威之禮也。伏望痛革奢僭，使衣服有章，上下有別。昔楚莊王天不見妖、地不見異，則必禱於山川曰：“天其亡我耶？”今殿下勿懼災害



데 지금은 5결에서 인부 한 사람을 내므로 온 도가 소란하여 남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의 원망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토질이 거칠고 단단하지 못하여 팔 때마다 허물어지므로 마침내 공사를 마칠 수가 없으니, 이익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먼저 우리 백성이 피곤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역사를 정지하여 온 도의 백성을 쉬게 하소서.

예전의 구장복(九章服)18435) 은 상하(上下)의 구별이 있어서 각각 등급이 있고 서로 참람되게 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풍속은 화려하고 사치함을 숭상하여 의복이 사람보다 아름다워서 장사치와 노예의 무리의 복식(服飾)이 경대부(卿大夫)를 본뜨고 사족(士族)의 여자가 초구(貂裘)가 아니면 잔치 자리에 끼이지 못하는 등 사치함에 절제가 없으니, 이 풍속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의 장사치는 혹 신량 갑사(新良甲士)18436) ·충찬위(忠贊衛)·장용대(壯勇隊)에 속한 자가 많은데, 스스로 직(職)이 있다고 이르면서 사인(士人)의 옷을 입고 사인의 갓을 쓰고는 사류(士流)와 어깨를 나란히 하니, 귀천(貴賤)을 분별하고 등위(等威)를 엄하게 하는 예(禮)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사치와 참람됨을 엄하게 혁파하고 의복은 장(章)18437) 을 두어 상하가 분별이 있게 하소서.

예전에 초(楚)나라 장왕(莊王)은 하늘에 요기(妖氣)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땅에 이변(異變)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산천(山川)에 기도하기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가?’라고 하였으니, 지금 전하께서는 재해(災害)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허물을 고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상서(祥瑞)가 이르지 아니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정성이 지극하지 못함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함을 두려워하며,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는 것이 오히려 극진하지 못함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희헌(羲軒)18438) 의 도(道)를 우러러서 이(利)를 일으키고 해(害)를 제거하기를 생각하며, 당(唐)·우(虞)18439)

之不殄，而猶懼其過之未悛；勿懼祥瑞之未臻，而猶懼其誠之不至。敬天勤民，猶恐其未至；側身修德，猶恐其未盡。仰羲、軒之道，思興利而除害；侔唐、吳〔虞〕之聖，思明目而達聰；思夏禹之德，思泣辜而恤民；法成湯之寬，思從諫而弗拂。思文王葬枯骨之仁，思漢文罷露臺之儉。去貪夫而禁女謁，絕讒言而伸鬱抑，崇教化而勵廉恥，抑僥倖而黜奔競，則天地位焉，萬物育焉，災可轉爲祥，危可變爲安矣。

御書曰：

警予之言，予當受之。三公六卿之有不稱職者，予所未知，卿等何畏而諱言耶？春宮之役，固不可停也，況垂畢乎？革寺社、禁爲尼，先王之所定，舊章之所無，遵之可也，苛之非也。箭灘之役，若有利於民，安可廢乎？禁賤者華侈與服章之汎濫，在憲府糾之如何耳，何必立新法，以亂成憲耶？

	<p>의 현성(賢聖)함에 짝하여 사방으로 눈을 밝히고 사방으로부터 잘 듣기를 생각하며,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덕(德)을 사모하여 죄인을 보고서 울고 백성을 가엾게 여길 것을 생각하며, 성탕(成湯)의 너그러움을 본받아서 간(諫)하는 말에 따르고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며, &lt;주(周)나라&gt; 문왕(文王)이 마른 뼈를 장사하던 어짊을 생각하며,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노대(露臺)를 파 하던 검소함을 생각할 것입니다. 탐부(貪夫)18440) 를 버리고 여알(女謁)18441) 을 금하며, 참소하는 말을 끊고 억울함을 펴주며, 교화(教化)를 숭상하고 염치(廉恥)를 장려하며, 요행(僥倖)을 억제하고 분경(奔競)18442) 을 배척하면,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육성되어 재앙(災殃)이 변하여 상서로움이 될 것이며, 위태로움이 변하여 편안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이르기를,</p> <p>“나를 깨우치는 말은 내가 마땅히 받아들일 것이다. 삼공(三公)·육경(六卿)이 그 직무에 맞지 아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인데, 경 등은 무엇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숨기는가? 춘궁(春宮)의 역사는 진실로 정지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거의 끝나가는 것이겠는가? 사사(寺社)를 개혁하고 여승[尼]이 되는 것을 금하라는 것은 선왕(先王)이 정하신 옛 법에 없는 것이므로 준수함이 가하며 가혹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탄(箭灘)의 역사는 만약 백성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천(賤)한 자가 사치하는 것과 복장(服章)의 범람(汎濫)을 금하는 것은 사헌부(司憲府)가 규찰(糾察)하는 여하에 달려 있는데, 어찌 반드시 새로운 법을 세워서 이루어진 법을 어지럽게 하겠는가?”</p> <p>하였다.</p>	
<p>성종 204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6월 2일</p>	<p>홍문관(弘文館)에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 어서(御書)에 이르기를,</p> <p>“그대들이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나의 결점을 보충하고 나의 미치지 못한 것을 바로잡았으므로, 내가 그대들을 소중히 대우하는 것은 어찌 말하기를 기다</p>	<p>○賜弘文館酒魚。 御書曰： 爾等在經幄之中，補予之所缺，匡予之</p>

<p>(경오) 2번째기사</p>	<p>린 뒤에야 알겠는가? 내가 가뭄을 근심하여 침식(寢食)을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랐는데, 하늘이 이 백성을 돌보아서 비가 억수같이 내렸으니, 내 마음의 기쁨을 어찌 비유할 수 있겠는가? 이에 술을 내려 주니, 각자 취하고 즐기도록 하라.”</p> <p>하니, 부제학(副提學) 유윤겸(柳允謙) 등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례하기를, “바다와 산처럼 깊고 높은 은혜에 물방울과 먼지만한 도움도 아직까지 없었으며, 하늘처럼 덮어주고 땅처럼 실어주어 사랑해 기르시는 은혜를 치우치게 입었습니다. 분수를 살피니 마땅치 아니하여 몸을 어루만지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옥이 생각하건대, 신 등은 모두 천박한 자질로써 외람되게 논사(論思)18443) 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야흐로 직책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근심하는데, 도리어 특별한 은총을 입어 신한(宸翰)18444) 의 한 서찰(書札)이 운한(雲漢)18445) 처럼 밝게 빛나고 법운(法醞)18446) 의 좋은 술을 보내 주시니, 널리 미치시는 은혜가 비와 이슬처럼 우약(優渥)합니다. 가슴에 받들어 부끄러움이 더욱 지극하고 살에 배어 땀이 더욱 젖습니다. 사람들은 영화롭다고 하나 신은 진실로 두려움을 알겠습니다. 이는 대개 주상 전하께서 총명하시어 옛일을 상고하여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받드는 때를 만나 성심(聖心)이 재해(災害)를 염려하여 감액(甘液)이 땅에 내리고 천안(天顏)에 기쁨이 있자 예택(睿澤)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드디어 신 등이 우소(迂疎)한 데도 은혜의 물결 속에 함께 목욕하게 하였습니다. 신 등은 감히 소절(素節)을 더욱 굳게 하여, 돌보고 알아주시는 데에 보답하기를 도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좋은 계책이 있으면 곧 들어가서 고할 것이며 화락(和樂)한 정치를 보기를 기대하여 요(堯) 순(舜)의 도(道)가 아니면 감히 진술하지 아니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不逮，予之重待爾等，何俟言而後知歟？予以憂旱，不能寢食，惶惶不懈，冀回天心，而天卹斯民，霈然降澤，予心之喜，曷可云喻？茲賜以酒，其各醉權。</p> <p>副提學柳允謙等上箋謝曰：</p> <p>海岳崇深，迄無涓埃之助；天地覆載，曲荷卵育之私。省分非宜，撫躬罔措。竊念臣等，俱以譴薄之質，濫居論思之筵，方虞瘝曠之譏，反紆殊異之寵。宸翰一札，煥乎雲漢之昭回；法醞上尊，沛然雨露之優渥。服膺而慙益至，滄肌而汗愈霑。人以爲榮，臣實知懼。茲蓋伏遇主上殿下聰明稽古，寅畏奉天；聖心懼災，注甘液於下土，天顏有喜，霈睿澤於層宵。遂令臣等之迂疎，共沐恩波之汪濊。臣等敢不益堅素節，圖報眷知？庶殫夙夜之誠，有謀猷卽入告，竚見雍熙之治，非堯、舜不敢陳。</p>
<p>성종 204권, 18년</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傳于承政院曰：“今日之雨，足以潤</p>

<p>(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6월 9일 (정축) 2번째기사</p>	<p>“오늘 비가 족히 만물(萬物)을 적실 만하니, 내가 매우 기뻐한다. 홍문관(弘文館)·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官) 등은 희우부(喜雨賦)를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술을 내려 주었다.</p>	<p>物，予甚喜之。弘文館、承旨、注書、史官等，其製《喜雨賦》以進。”仍賜酒。</p>
<p>성종 204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6월 10일(무인) 2번째기사</p>	<p>대마도 선위사(對馬島宣慰使) 정성근(鄭誠謹)이 와서 복명(復命)하자, 임금의 인견(引見)하였다. 정성근이 아뢰기를, “신(臣)이 5월 초2일 진시(辰時)18463) 에 배를 출발하였는데, 그날 바람이 순조롭기 때문에 포시(晡時)18464) 에 대마도(對馬島) 땅에 이르렀습니다. 듣기로는 도주(島主)가 사는 곳까지 겨우 하루 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빠른 길을 알까 두려워하여 일부러 둘러 가면서 험하고 먼 것을 보여주며 제 7일에 대마도(對馬島)에 들어갔는데, 도주(島主)가 사람을 보내어 신에게 이 르기를, ‘바다길이 험한데 수고롭게 오셨으니, 청컨대 육지에 내려 편히 계시 면서 장차 좋은 날을 골라서 사물(賜物)을 받겠습니다.’라고 하기에, 신이 말 하기를, ‘군명(君命)은 머물러둘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있었다면 혹시 오래 머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미 육지에 내렸으니, 사사로이 군명(君命)을 머물러 두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좋은 날을 고른다고 하면 내가 마땅히 이 배 위에 있을 것이며 육지에 내리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 주(島主)가 할 수 없어서 이튿날 대청(大廳)에 맞이해 들여 사물(賜物)을 받았 습니다. 이때 도주가 지영례(祇迎禮)18465) 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사물과 서계(書契)는 모두 왕명이니, 지영례를 하지 아니할 수 없 습니다.’라고 하니, 도주가 전례가 없다는 까닭으로써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 였습니다. 신이 강요한 뒤에 행하는데, 사배(四拜)를 하고 서계(書契)를 받고 는 또 사배례를 행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을 신이 통사(通事)로 하여금 가르치 게 하여 행하였습니다. 예식을 마치자 신이 선운(宣醞) 한 잔을 받들어 사주 례(賜酒禮)를 행하게 하려고 하자, 도주가 또 전례가 없다는 까닭으로써 받으</p>	<p>○對馬島宣慰使鄭誠謹來復命。上引見，誠謹啓曰：“臣五月初二日辰時發船，其日風順，故晡時到對馬島地。聞距島主所居，纔一日程，而彼人等恐識捷路，故令迤邐而行，以示險遠。第七日入島，島主遣人謂臣曰：‘海路間關，勞困而來。請下陸安處，將擇吉受賜物。’臣語之曰：‘君命不可留也。方在海上，雖或久留可也，今既下陸，私留君命，吾不忍爲也。若曰擇吉，則吾當在此船上，不下陸矣。’島主不得已，翌日迎入大廳，受賜物。時，島主不欲祇迎，臣語之曰：‘賜物及書契皆君命，不可不祇迎。’島主以前例所無，不欲行也。臣強之後，行焉。四拜而受書契，既受又不欲行四拜禮，臣令通事教而行之。禮畢，臣奉宣醞一爵，欲行賜酒之禮，島主又以前例所無，不欲受之。臣令通事語之曰：‘若然，是棄君命也，不可不受。’島主卽跪受飲。訖，引臣等坐于西廳，</p>

려고 하지 아니하기에, 신이 통사를 시켜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하면, 이는 왕명을 저버리는 것이니,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곧 꿇어앉아 받아 마시기를 마치고는 신 등을 인도하여 서청(西廳)에 앉게 하였는데, 도주와 그 아들 정수(貞秀)와 대관(代官) 등은 모두 한 줄로 연하여 앉고 유독 신만은 한쪽 벽(壁)에 앉았습니다. 자리를 정하자 신이 사목(事目) 안의 사연을 들어서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접대하는 절차를 물으니, 정성근이 아뢰기를,  
“서로 만날 때에는 도주와 신이 읍(揖)하는 예를 행하고 동서(東西)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도주가 우리 나라 음악을 듣고자 하기에 신이 데리고 간 악공(樂工)들로 하여금 연주하게 하자, 그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하여 구경하는 자가 마치 담장처럼 둘러서고 남녀가 즐비하게 서서 모두 도주를 피하지 아니하니, 통제(統制)가 없음이 막심하였습니다. 신이 또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도주가 말하기를, ‘이 땅의 음악은 매우 야비하여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신이 강요한 뒤에 연주하였는데, 다만 한 공인(工人)이 소고(小鼓)를 치고 또 한 공인이 적(笛)을 불도록 하였습니다. 그 적의 길이가 겨우 한 자 가량인데 가로[橫]로 불지 아니하고 바로 불며, 또 갈고(鞞鼓)가 있는데 역시 한 자 가량이었으며, 두 공인으로 하여금 가면(假面)을 쓰고 춤을 추게 하였는데 모두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저 사람들도 활 쏘는 것이 있던가? 군관(軍官)들도 활을 쏘게 하였는가?”

하니, 정성근이 아뢰기를,  
“신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원후(遠侯)18466) 를 설치하여 도주를 칭한 다음 신이 황석건(黃碩健)이란 자로 하여금 먼저 쏘게 하여 다섯 화살을 모두 맞혔고, 기타 군관도 다섯을 맞히기도 하고 넷을 맞히기도 하여 활을 쏘지 못하는이가 없으니, 저 사람들이 모두 깊이 탄복하였습니다. 또 저 사람들이 관

島主及其子貞秀與代官等，皆連坐一行，而獨坐臣於一壁坐定。臣舉事目內辭緣歷說之。”上間接待節次，誠謹曰：“相會之時，島主與臣行揖禮，分東西以坐。島主欲聽我國音樂，臣令帶去樂工等奏之，彼人等深樂之，觀者如堵。男女櫛比而立，皆不避島主，無統莫甚。臣又令彼人自奏其樂，島主曰：‘此土之樂甚鄙，不可聽。’臣強之而後奏之，但令一工人擊小鼓，又令一工人吹笛。其笛纔尺許，不橫吹而直吹之，又有鞞鼓亦尺許。令二工人，假面以舞，皆無足觀也。”上問：“彼人等有射者乎？軍官等亦令射乎？”誠謹曰：“臣一日設宴，張遠侯，請島主。而臣令黃碩健者先射之，發五矢皆中；其他軍官，或五中，或四中，莫不善射，彼人等皆深服之。且彼人等，不設館宇以待使命，只儼一屋以處之，且闕朝夕之供，頗辱君命矣。自今請勿遣使。島主遣人遺小封曰：‘此藥甚良，海上之行尤佳，故贈之。’受而不開見。翌日平國忠、平茂續來見，臣問島主所貽藥何物，國忠密語曰：‘此實黃金也。欲表厚意，故託以良藥而

우(館宇)를 설비하여 사명(使命)을 대접하지 않고 다만 집 하나를 빌려서 있게 하였으며, 또 아침저녁 공궤(供饋)도 없었으니, 왕명(王命)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신을 보내지 마소서. 도주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 봉물(封物)을 주며 말하기를, ‘이 약은 매우 좋은 것인데, 바다에 가는 데에는 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에 드립니다.’라고 하므로, 받아놓고 열어 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튿날 평국충(平國忠)·평무속(平茂續)이 찾아 왔기에 신이 물기를, ‘도주가 준 약이 무슨 약입니까?’하니, 평국충이 은밀히 말하기를, ‘이는 사실 황금(黃金)인데, 후의(厚意)를 표하고자 하여 좋은 약이라고 칭탁하여서 준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곧 다시 봉하여 돌려보내고 또 작은 편지에 쓰기를, ‘예전에 왕밀(王密)18467) 이 밤중에 금을 품고 가서 양진(楊震)에게 주니, 양진이 받지 아니하므로, 왕밀이 말하기를, 「어두운 밤이라 아는 이가 없다.」고 하자, 양진이 말하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이 알며, 자네가 알고 내가 하는데, 어찌하여 아는 이가 없다고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도주가 주는 것이 비록 몸을 보호하는 약이라고 할지라도 밤을 타서 주는 것이니, 이로써 받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두세 번 청하였으나 신이 굳이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도주가 신을 맞이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는데, 신이 칭탁하기를, ‘왕명을 받고 와서 마음대로 놀이하고 구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맞이하여 흥복사(興福寺)를 구경시키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불교를 숭상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유사(儒士)인데 어찌 감히 절을 구경하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흥복사는 전하를 위하여 만수패(萬壽牌)를 설치하고 축수합니다.’라고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이는 비록 불경(不經)18468) 하고 요탄(妖誕)한 말이라 족히 믿을 것이 못되나 상국(上國)18469) 을 위해 흠모(欽慕)하는 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흥복사 주승(主僧)이 신에게 다과(茶果)를 기증하기에 신이 행탁(行橐)18470) 에 지닌 임자(荏子)·납축

贈之耳.’ 臣卽加封還, 且以小簡書之曰: ‘昔王密夜中懷金以遺楊震, 楊震不受. 王密曰: 「暮夜無知。」 震曰: 「天知, 神知, 子知, 我知, 何謂無知?」 今島主所贈, 雖是衛身之藥, 然乘夜以贈, 玆用不受.’ 再三請之, 而臣固拒不受. 且島主欲邀臣以觀田獵, 臣託以受君命, 不可恣意遊觀. 又邀臣而觀興福寺, 臣語之曰: ‘主上不崇佛教, 而吾亦儒士, 安敢求見寺社乎?’ 島主曰: ‘興福寺爲殿下設萬壽牌以祝之.’ 臣語曰: ‘此雖不經妖誕之說, 固無足信, 然其爲上國欽慕之誠可觀矣.’ 興福寺住僧遣人贈臣茶果, 臣以行橐所持荏子、蠟燭等物報遺.” 上曰: “其不見興福寺則善矣. 然其田獵等事, 雖觀之無害矣.” 誠謹又啓曰: “接待之日, 具甲冑荷槍劔者, 列於左右, 可五里許, 是必盡聚八州之人矣.” 上曰: “有成陣行伍之列乎?” 誠謹對曰: “只分左右而行耳.” 上曰: “彼人兵器何如?” 誠謹對曰: “接待時, 置一甲櫃於座後, 又置槍劔於架上, 又掛弓矢於壁間, 而無他兵器矣.” 上曰: “所過之地, 閭閻幾許歟?” 誠謹對

	<p>(蠟燭)18471) 등의 물건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홍복사를 보지 아니한 것은 좋으나, 사냥 등의 일은 비록 구경하더라도 해로움이 없다.”</p> <p>하였다. 정성근이 또 아뢰기를,  “접대하던 날에 갑주(甲冑)를 갖추고 창검(槍劍)을 맨 자가 좌우에 늘어선 것이 5리(里) 가량 정도였는데, 이는 반드시 팔주(八州) 사람을 다 모은 것일 것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진(陣)을 이루고 향오(行伍)의 열(列)이 있었던가?”</p> <p>하니, 정성근이 대답하기를,  “단지 좌우로 나누어서 행할 뿐이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병기(兵器)는 어떠한가?”</p> <p>하니, 정성근이 대답하기를,  “대접할 때 한 갑궤(甲櫃)18472) 를 좌석 뒤에 놓고 또 창검(槍劍)은 시렁[架] 위에 얹었으며, 또 활과 화살을 벽에 걸어 놓았고 다른 병기는 없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가는 땅에 마을이 얼마나 있던가?”</p> <p>하니, 정성근이 대답하기를,  “신이 바다 연변 여러 포(浦)를 보건대, 혹 10여 집, 혹 50여 집이 모여서 살고 도주가 사는 곳에 이르니 마을이 겨우 2백여 호이며, 또 그 토질이 몹시 메마르고 논도 없으며, 모두 산전(山田)에 의뢰하여 먹고 삽니다. 저 사람들이 산림(山林)을 금벌(禁伐)하여 경작해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혹은 칩뿌</p>	<p>曰：“臣觀沿海諸浦，或數十餘家，或五十餘家，團聚而居。至島主所居之處，村舍僅二百餘戶。且其土性甚薄，又無水田，皆資山田以食。而彼人禁伐山林，使不得耕食，或採葛根蕨根，或取海魚煮食，人多飢色。前此專以剽竊我邊境以延其生，而島主之禁防太嚴，故彼人等反以爲怨曰：‘使吾輩以就飢死。’”上曰：“其接待之處，館舍墻宇何如？”誠謹曰：“館舍甚狹，僅如我國小驛。坐大廳則馬廐甚近矣。以板爲墻，只設一門，門外五步許，鑿海子，跨木橋以通路矣。島主知臣之爲內臣也，喜而言曰：‘殿下特遣內臣宣慰，其撫綏之恩，豈偶然哉？’”島主曰：“今也往來船數至少，請尊官達于殿下，依祖宗朝例，優定其數。”臣對曰：“將啓殿下矣。”上問曰：“島主衣服何如？”誠謹曰：“無異於常倭矣。”上曰：“島主年齒幾何？且島主之子貞秀何如人也？”誠謹曰：“島主之年五十七，貞秀狀貌有病，喉吭多有灸處，娶從妹爲妻，蓋其俗然也。代官茂勝語臣曰：‘平國忠、平茂續既是率來之人，須當率還。’”臣答曰：“來時未有帶還</p>
--	---	---

	<p>리와 고사리 뿌리를 캐고 혹은 바다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는데, 사람들이 굶주린 빛이 많았습니다. 이 전에는 오로지 우리 변경에서 도둑질하여 그 생명을 연장하였는데, 도주의 금방(禁防)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저들이 도리어 원망하기를, ‘우리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접대하는 관사(館舍)와 장우(牆宇)18473) 는 어떠한가?”</p> <p>하니, 정성근이 아뢰기를,  “관사가 몹시 비좁아서 겨우 우리 나라 작은 역(驛)과 같고 앉는 대청은 마구(馬廐)와 매우 가까우며, 판자로 담장을 해서 단지 문 하나만 만들고 문밖 5보(步) 가량에 해자(海子)18474) 를 파고 나무다리를 걸쳐서 길을 통합니다. 도주(島主)는 신이 내신(內臣)인 줄 알고 기뻐서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 특별히 내신을 보내어 선위(宣慰)하시니 그 무유(撫綏)하는 은혜가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또 말하기를, ‘지금 왕래(往來)하는 선척(船隻)의 수가 지극히 적으니, 청컨대 존관(尊官)은 전하께 주달하여 조종조(祖宗朝)의 예(例)에 의해 그 수를 넉넉하게 정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장차 전하께 아뢰겠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도주의 의복은 어떻던가?”</p> <p>하니, 정성근이 대답하기를,  “보통 왜인(倭人)과 다름이 없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던가? 또 도주의 아들 정수(貞秀)는 어떤 인물이던가?”</p> <p>하니, 정성근이 아뢰기를,  “도주의 나이는 57세입니다. 정수(貞秀)는 얼굴에 병색이 있고 목에 땀뾰</p>	<p>之命，何敢擅自帶還乎?’ 茂勝以島主之言，語之曰：‘國忠等去春出歸者，是前年出歸之條。請以今年出歸之條出歸。’不得已聽之。茂續則庸常之流，不能與島主言矣，但國忠爲島主所親信者也。且通信宣慰等使，不可假銜而送，彼人等皆稱金自貞不賢者也。臣問曰：‘何爲耶?’ 答曰：‘自貞詐稱其職，豈爲賢乎?’ 誠謹又啓曰：“兵船造作，一依倭船之體，以便水上何如?” 上問承旨等曰：“無乃已令造作乎?” 承旨韓堰啓曰：“申叔舟在時，已令造作矣。” 上曰：“嘗聞之，倭船在浦內，雖曰疾捷，入於大洋，不及於我國之大艦，信乎?” 誠謹曰：“倭船則雖入大洋，專以櫓而行之；我國大艦，重設風颿，受風既多，其疾如飛，倭船反不及矣。”</p>
--	---	---



이 땅왔습니다. 종매(從妹)18475)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았는데, 대개 그 풍속이 그러한 것입니다. 대관(代官) 평무승(平茂勝)이 신에게 말하기를, ‘평국충(平國忠)·평무속(平茂續)은 이미 데리고 온 사람이니, 마땅히 데리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올 때에 데리고 돌아오라는 명령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마음대로 데리고 돌아가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평무승(平茂勝)이 도주의 말로써 말하기를, ‘평국충 등이 지난 봄에 출귀(出歸)18476) 한 것은 바로 지난해의 출귀하는 조건(條件)으로 시행된 것이니, 청컨대 금년에 출귀하는 조건으로 출귀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기에, 할 수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평무속은 용상(庸常)한 무리이므로, 도주와 더불어 말할 수 없으나, 다만 평국충(平國忠)은 도주가 친신(親信)하는 자입니다. 또 통신사(通信使)나 선위사(宣慰使) 등의 사신은 가함(假銜)을 써서 보낼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두 일컫기를, 김자정(金自貞)은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기에 신이 묻기를,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김자정(金自貞)이 그 벼슬을 속여서 일컬었으니, 어찌 어질다고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성근이 또 아뢰기를,  
“병선(兵船) 제작은 일체 왜선(倭船)의 체제에 의하여 물위에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승지(承旨)들에게 묻기를,  
“이미 만들게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하니, 승지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신숙주(申叔舟)가 있을 때에 이미 만들게 하였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왜선이 포(浦) 안에서는 비록 빠르나 큰 바다에 들어가서는 우리 나라 대함(大艦)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러한가?”

	<p>하니, 정성근이 아뢰기를,  “왜선은 큰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오로지 노(櫓)를 저어서 가는데, 우리 나라 대함은 풍범(風颿)18477) 을 겹쳐서 설치하여 바람을 받음이 많음으로 그 빠름이 나는 듯하여 왜선이 도리어 미치지 못합니다.”  하였다.</p>	
<p>성종 204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6월 12일(경진) 3번째기사</p>	<p>주금(酒禁)을 해제하였다.</p>	<p>○罷酒禁。</p>
<p>성종 204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6월 12일(경진) 4번째기사</p>	<p>지평(持平) 윤파(尹坡)가 와서 아뢰기를,  “비가 이제 비록 두루 흡족하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가을 가뭄을 미리 헤아릴 수 없는데, 갑자기 주금(酒禁)을 해제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하는 바인데, 지금 재변(災變)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제한 것이다.”  하였다.</p>	<p>○持平尹坡來啓曰：“雨澤今雖周洽，秋旱未可預料，而遽罷酒禁，可乎？”  傳曰：“禁酒所以謹天戒也。今災變消弭，故罷之耳。”</p>
<p>성종 204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6월 13일(신사) 1번째기사</p>	<p>의금부 판사(義禁府判事) 이철견(李鐵堅) 등이 와서 아뢰기를,  “요즈음 설말손(薛末孫)·박은손(朴銀孫) 등이 불상(佛像)을 도둑질한 것은 절도(竊盜)에 불과하며 법이 사형(死刑)까지 이르지 아니하는데, 율관(律官)이 세조조(世祖朝)의 고사를 끌어대어서 창고(倉庫)의 전량(錢糧)18499) 을 도둑질한 율(律)로 비교해 논하여 사형에 처하고자 하므로 감히 품(稟)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절도의 율로 논죄하라.”  하였다.</p>	<p>○辛巳/義禁府判事李鐵堅等來啓曰：“今者薛末孫、朴銀孫等盜佛像，是不過竊盜，法不至死。律官援世祖朝故事，以盜倉庫錢糧律比論，欲置於死，敢取稟。”  傳曰：“論以竊盜律。”</p>
<p>성종 204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6월 13일(신사) 1번째기사</p>	<p>중부(中部)18528) 장통방(長通坊) 사람 임상(林尙)의 아내가 나이 1백 5세인데 아치(兒齒)18529) 가 나고 머리털이 반백(班白)이었다. 명하여 해마다 쌀</p>	<p>○中部長通坊人林尙妻年百有五歲，生兒齒，髮班白。命歲賜米十碩如例。</p>

<p>(成化) 23년 6월 28일(병신) 3번째기사</p>	<p>10석을 관례대로 내려 주도록 하였다.</p>	
<p>성종 205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7월 17일(갑인) 1번째기사</p>	<p>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정문형(鄭文炯)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한한(韓僴)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윤민(尹愨)이 하유(下諭)를 받고 타위(打圍)18593) 할 만한 곳을 살펴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경기(京畿)는 금수(禽獸)가 번성하지 못하니, 강원도(江原道)나 황해도(黃海道) 중 어느 도가 강무(講武)18594) 할 만하겠는가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의논하기를,  “강원도 평강(平康)과 철원(鐵原)은 본래 강무장(講武場)18595) 이었습니다. 다만 근년(近年) 이래로 백성들이 간벽(墾闢)18596) 을 많이 했고 또 나무 벌채를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금수가 희소(稀少)하니, 황해도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황해도와 개성부(開城府)는 금수가 있으니, 강무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삼도(三道)의 사냥할 만한 곳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 살펴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제 들으니, 철원 등지에는 금수가 없다고 합니다. 토산(兔山)과 장단(長湍) 등지에 원유 별감(苑圍別監)을 보내어 살펴보게 한 뒤에 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들으니, 강무를 20일로써 기한하였다고 하는데, 신은 성체(聖體)가 오랫동안 초야(草野)에 머무는 것이 편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군사(軍士)들이 한 필의 말에 신는 짐으로서 군기(軍器)와 우구(雨具)와 20일분의 양식을 다 용납하여 실을 수가 없을 것이니, 다시 일수(日數)를 기한하</p>	<p>○甲寅/江原道觀察使鄭文炯、京畿觀察使韓僴、黃海道觀察使尹愨，承諭審打圍可處以聞。傳曰：“京畿則禽獸不繁，江原、黃海何道可講武乎？議于領敦寧以上。”韓明澮議：“江原道平康、鐵原，固是講武場，但近年以來，民多墾闢，且不禁樵採，故禽獸稀少，莫如黃海道。”沈澮議：“黃海道若開城府有禽獸，講武爲便。”尹弼商議：“三道可打圍處，更遣人審定何如？”洪應議：“今聞鐵原等處無禽獸，兔山、長湍等處，遣苑圍別監看審後，一定爲便。且聞講武以二十日爲期，臣恐聖體久留草野不便。況軍士一馬所馱軍器、雨具、二十日之糧，必不能容載，更約定日數何如？”李克培議：“江陰等處可講武。但此道風氣不好，以此爲慮耳。”盧思慎議：“黃海道禽獸雖多，風氣不好，恐非大駕臨幸之地。江原道禽獸雖不多，講武爲便。”尹壕議：“講武所以閱兵薦獸也。宗廟則各室體薦，又於兩殿封進，厥數不可少也。黃海道初面有禽獸，可於此打圍。”傳</p>

	<p>여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강음(江陰) 등지는 강무를 할 만합니다. 다만 이 도는 바람 기운이 좋지 않으므로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하였으며,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황해도는 금수가 비록 많으나 바람 기운이 좋지 않으니, 대가(大駕)가 임행(臨幸)하실 곳이 아닐까 합니다. 강원도는 금수는 많지 않으나 강무하기에는 편할 것입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강무란 열병(閱兵)과 천수(薦獸)를 하려는 것입니다. 종묘(宗廟)에는 각 실(室)마다 몸소 올려야 할 것이고, 또 양전(兩殿)에 봉진(封進)해야 하니, 그 수가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황해도는 초면(初面)이므로 금수가 있을 것이니, 여기에서 사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마땅히 황해도에서 사냥하겠다.”          하였다.</p>	<p>曰：“當狩于黃海道。”</p>
<p>성종 205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7월 21          일(무오) 2번째기사</p>	<p>어탁 대선(御卓大膳)을 경연 당상(經筵堂上)과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에 하사(下賜)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연탁(宴卓)을 내려 주면 스스로 효찬(肴饌)18602) 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가?”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경연관(經筵官)과 예문관에는 사령(使令)이 없으므로, 장설사(掌設司)의 제공이 아니면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연의 당상이면 정승(政丞) 및 재상(宰相)·승지(承旨)도 참여하는 것이다.</p>	<p>○賜御卓大膳于經筵堂上、弘文館、藝文館，仍傳曰：“予聞賜宴卓，則必自辦肴饌，然乎？”承政院啓曰：“經筵官、藝文館無使令，非掌設司供之則難辦。”傳曰：“經筵堂上，則政丞及宰相、承旨亦與焉。予欲饗經筵官，而近因年荒，久未行之。今欲令卿等劇歡，宜令掌設司多備肴饌，自朝至夕，投壺以飲。”</p>

	<p>내가 경연관에게 대접하고자 하였으나 근래에 연황(年荒)18603) 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행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경(卿)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고자 하니, 마땅히 장설사로 하여금 효찬을 많이 갖추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호(投壺)18604) 도 하면서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05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7월 22 일(기미) 1번째기사</p>	<p>경연관(經筵官)과 예문관(藝文館)의 관원(官員)들을 충훈부(忠勳府)에 모이게 하고 파비(破費)18606) 로 음식을 하사하였으며, 풍악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좌승지(左承旨) 송영(宋瑛)과 우승지(右承旨) 한언(韓堰)을 보내어 선온(宣醞)18607) 을 가지고 가서 주게 하고, 또 도승지(都承旨) 안처량(安處良)에게 별도로 선온을 하사하도록 명하였으며, 또 내관(內官) 유한(柳漢)과 김처선(金處善)을 보내어 선위(宣慰)케 하고, 내전(內殿)에서 대록(大鹿)의 가죽 두 장과 삼아 녹비(衫兒鹿皮) 두 장과 활 5장(張)과 호초(胡椒) 20두(斗), 유석(油席) 3장을 내어 투호(投壺)의 내기하는 상품으로 삼게 하였다. 조금 뒤에 주서(注書) 황육운(黃陸雲)을 보내어 고유(告諭)하기를, “잔치에 참여한 객(客)의 수가 많지 않으니, 입직(入直)한 총관(總管)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토록 하라.” 하여, 부총관(副總管) 김세적(金世勳)과 한보(韓堡)가 가서 참여하였다.</p>	<p>○己未/經筵官、藝文館員會忠勳府。破費賜膳，命賜樂。遣左承旨宋瑛、右承旨韓堰齋往宣醞，又命都承旨安處良別賜宣醞。又遣內官柳漢、金處善宣慰。內出大鹿皮二張、衫兒鹿皮二張、弓五張、胡椒二十斗、油席三張，以爲投壺之注。俄而遣注書黃陸雲諭之曰：“參宴客數不多，令入直總管二員赴宴。”副總管金世勳、韓堡往參。</p>
<p>성종 205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7월 26 일(계해)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내전(大內殿)의 사자(使者) 철우(鐵牛) 등이 《대장경(大藏經)》과 황금(黃金)을 요구하였습니다. 회봉(回奉)할 왜(倭)인(人)들의 양료(糧料) 등에 대한 일도 매우 간절하니, 비록 다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다 거절할 수도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는 불교(佛敎)를 믿지 아니하고, 다만 옛날에 인출(印出)한 《대장경》이 1,2본(本)만 있어 국왕(國王)의 청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대들의 말을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대들이 마음으로 정성껏 구(求)</p>	<p>○禮曹啓曰：“大內殿使鐵牛等求《大藏經》黃金回奉格倭糧料等事甚切，雖不可盡從，亦不可盡拒。”傳曰：“我國不信佛敎，但有舊印《大藏經》一二本，以待國王之請，爾等之言似難從也。然爾等心誠求之，不得已從之。其以此開諭鐵牛，使日本知我國無此經也。”</p>

	<p>하므로, 부득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렇게 철우를 설득시켜서 우리 나라에 그 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05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7월 30 일(정묘) 2번째기사</p>	<p>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홍이로(洪利老)와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이, 경기(京畿)와 황해도(黃海道)에 강무(講武)할 때 주필(駐蹕)18638) 할 곳을 가서 살펴보고, 회계(回啓)하기를, “지나가는 땅에는 콩과 서숙이 들을 덮었는데, 짐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니, 이로써 금수(禽獸)가 번성하지 못한 것을 알겠습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황해도에는 본래부터 금수가 많다고 일컬었고 관찰사(觀察使)도 또한 사냥할 만하다고 일렀는데, 지금 홍이로 등이 짐승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와서 아뢰니, 이는 반드시 조정(朝廷)에서 바야흐로 이 도에는 장기(瘴氣)가 있어 강무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아뢰었을 것이다. 그들을 헌부(憲府)에 내리어 추국(推鞠)하게 하라.” 하였다.</p>	<p>○同知中樞府事洪利老、雞城君李陽生往審京畿、黃海道講武駐蹕之處，回啓曰：“所經之地，菽粟蔽野，不見獸迹，以是知禽獸不繁矣。”傳于承政院曰：“黃海道素稱多禽獸，觀察使亦云可狩，而今利老等以不見獸迹來啓，是必以朝廷方論此道，有瘴氣，不宜講武故，此輩畏群議，有是啓也。其下憲府推鞠。”</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8월 3일 (경오)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기사관(記事官) 이윤(李胤)이 아뢰기를, “올가을의 강무(講武)18645) 는 20일이나 되도록 오래 한다는데,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두 도의 변방 고을 사람들은 반드시 15일이나 걸린 다음에야 서울에 오게 되므로 군기(軍器)와 양식(糧食)을 하나의 짐수레로는 싣고 올 수가 없어 반드시 모자라게 되는 우려가 생길 것입니다. 군정(軍政)이 해이(解弛)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단지 열무(閱武)만 하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20일이나 되도록 오래 해야 합니까? 날수를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헌납(獻納) 최인(崔潏)이 아뢰기를,</p>	<p>○庚午/御經筵。講訖，記事官李胤啓曰：“今秋講武，至二十日之久，慶尙、全羅兩道邊邑之人，則必經十五日而後到京。其軍器糗糧，非一馱所能輸也，必有匱乏之虞。軍政不可解弛，故但閱武耳，何必二十日之久哉？減日數何如？”上問左右，獻納崔潏啓曰：“去己亥年講武時，臣以史官隨駕，目覩軍士有絕糧，訴於駕前者。十六日之行，尚且如此，況二十日之久哉？”</p>

	<p>“지난 기해년(1864)에 강무할 때 신이 사관(史官)으로서 거가(車駕)를 따라가 직접 보았는데, 군사들이 양식이 떨어져 거가 앞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일 동안 시행하는 데에도 오히려 또한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20일이나 되도록 오래 하는 것이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그대들의 말은 모두 모자라는 계책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국가의 큰 일은 제사(祭祀)와 군사(軍事)에 있다’고 하였다. 지금 군사들이 태평한 데에 익숙해져 대부분 태만해져서 탈 말과 짐바리를 모두 준비하지 않고서 번상(番上)할 때마다 남의 것을 빌려 점열(點閱)을 받으니, 군무(軍務)가 소홀하다. 이번 20일 동안의 사냥에 있어서도 양식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만일 두 달이나 석 달 동안 군무에 종사해야 할 일이 있게 될 적에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들으니, 지난 기해년(1864)에는 군사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으로 미리 생각하고서 짐짓 양식을 적게 가지고 갔다가 마침내 굶주림을 고한 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20일의 양식을 가지고 가도록 한다면 일찍 돌아가게 되더라도 남은 양식이 또한 헛되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니, 지금 기한을 감할 수 없다.”</p> <p>하였다.</p>	<p>上曰：“爾等之言，皆計之未達也。古云：‘國之大事，在祀與戎。’今軍士等狃於昇平，率皆懈怠，騎馱皆不之備，每番上，賃借點閱，軍務踈虞。今於二十日之狩不能齋糧，則如有二三月從軍之事，將何如耶？予聞去己亥年軍士逆料速還，齋糧故少，竟有告飢者。今使齋二十日糧，而若得經還，則餘糧亦不虛棄，今不可減限也。”</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3일 (경오) 2번째기사</p>	<p>원정홍(源政弘)의 사자(使者) 철우(鐵牛)가 하직했다. 그에게 보내는 답서(答書)에 이르기를,</p> <p>“서신을 받고 강길(康吉)함을 알게 되었으니, 반갑고 마음 놓입니다. 헌상(獻上)하는 예물(禮物)을 삼가 아뢰고서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내려 주는 백저포(白苧布) 10필(匹), 흑마포(黑麻布) 10필, 인삼(人參) 35근, 호피(虎皮) 2장(張), 표피(豹皮) 2장, 남사피(藍斜皮) 10장, 변아침석(邊兒寢席) 15장, 청밀(淸蜜) 15두(斗), 해송자(海松子) 1백근, 면포(縣布) 1백 19필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주었으니, 받아두기 바랍니다. 요구한 《대장경(大藏經)》은 일찍이</p>	<p>○源政弘月使鐵牛辭。其答書曰：</p> <p>書至，就審康吉，欣慰。所獻禮物，謹啓收謹。今將給賜白苧布十四、黑麻布十四、人參三十五斤、虎皮二張、豹皮二張、藍斜皮十張、邊兒寢席十五張、淸蜜十五斗、海松子一百斤、縣布一百十九匹、付還使，惟領</p>

	<p>여러 주(州)에서 구해 가버렸기 때문에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널리 찾아보고서 삼가 아교(雅教)에 답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잘 보전(保全)하시기만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p> <p>하였다.</p>	<p>留。 所索《大藏經》曾因諸州求去，殆無餘儲。 然廣搜私藏，謹塞雅教，并照悉。 餘冀自玉。 不宣。</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3일 (경오)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p> <p>“올해 본도(本道)의 화곡(禾穀)은 오랜 장마로 인해 손상되어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북도(北道)의 여러 보(堡)는 절반이 넘게 무너졌으므로 부득이 수축(修築)해야 하는데, 또한 양전(量田)하는 일도 있어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아직 양전은 정지하도록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永安道觀察使成俊啓本啓：“今年本道禾穀，因久霖損傷，豐歉未可知。 且北道諸堡過半頽落，不得已修築。 又有量田事，一時並舉爲難，請姑停量田。” 從之。</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3일 (경오) 5번째기사</p>	<p>어모 장군(禦侮將軍) 최식(崔湜)이 상서(上書)하기를,</p> <p>“신의 증조(曾祖) 최무선(崔茂宣)이 중국에 들어가 화포(火砲) 쏘는 법을 배워다가 드디어 우리 나라에 전파하였는데, 지금도 시험하여 쓰고 있습니다. 지난 경신년(1864) 무렵에 왜구(倭寇)들이 깊이 내지(內地)까지 들어오고 변방 고을에서 사람을 죽이고 해치게 되었을 적에는 최무선이 그 화포를 사용하여 적의 선봉(先鋒)을 꺾었으니, 그 공로가 진실로 적지 않습니다.”</p> <p>하고, 이어서 그의 집에 간직하고 있던 《용화포섬적도(用火砲殲賊圖)》 1축(軸)과 《화포법(火砲法)》 1책(冊)을 올렸는데, 모두 고화(古畫)와 고서(古書)였다. 또 아뢰기를,</p> <p>“목화씨[木綿子]를 가져온 사람의 자손은 지금 모두 녹용(錄用)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조(曾祖)의 공로가 이러한 데도 녹용되지 못하니, 신은 그욕이 민망하게 여깁니다.”</p> <p>하니, 음식을 먹여 보내도록 명하고 이어서 각궁(角弓) 1장(張)을 내려 주었</p>	<p>○禦侮將軍崔湜上書曰：</p> <p>臣曾祖崔茂宣入中朝，學得火砲法，遂傳布我國，至今試用。 去庚寅年間，倭寇深入內地，屠殘邊邑，茂〈宣〉用火砲，摧折賊鋒，其功信不細矣。</p> <p>仍進家藏《用火砲殲賊圖》一軸、《火砲法》一冊，皆古畫古書也。 且啓曰：“木綿子取來人子孫，令皆錄用；吾曾祖之功若此，而未蒙錄用，臣竊憫之。” 命饋送，仍賜角弓一張。</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5일 (임신) 2번째기사</p>	<p>다.  형조 정랑(刑曹正郎) 유양춘(柳陽春)이 희우부(喜雨賦)를 올렸다. 그 서(序)에 이르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지난 4월 18일의 의정부(議政府)에 내린 교지(教旨)와 5월 13일 본부(本府)에서 번역하여 쓴 어비(御批)는 모두 지극한 충심(衷心)으로 간절하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이 스스로 전사(傳寫)하여 저의 방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꿇어앉아 읽노라면 감격되는 마음이 지극해졌습니다. 반복해서 사사로이 생각해 보건대, 성상(聖上)께서는 하늘이 내신 훌륭한 임금으로서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분이신데, 하늘이 견책하여 고하게 된 것은 무슨 일인가 하고 여겨졌으니, 아마도 하늘이 인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상의 마음을 견고해지게 한 것인 듯합니다. 하늘이 견책함으로 인하여 백성의 고통스러운 일을 찾으시느라 밤낮으로 걱정하고 수고하셔서, 날마다 공경 대신(公卿大臣)·대간(臺諫)·시종(侍從)들과 더불어 빠짐없이 강구(講求)하고 검토하도록 하여 벌써 남김없이 소통시키고 씻어내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더욱 힘쓰시게 한 일입니다. 위로는 조정(朝廷)으로부터 아래로는 여항(閭巷)에 이르기까지 유식(有識)하거나 무식하거나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모두들 우리 성상의 지극한 어지심과 지극한 정성이 이미 하늘의 듣는 바를 감동시켜 그 보응(報應)이 오게 됨을 서서 기다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과연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큰 비를 내려 3일 동안이나 그치지 않으므로 조야(朝野)가 환호성을 울리며 모두들 풍년 들고 즐겁게 될 상서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하늘이 깊이 도우신 일입니다. 경축(慶祝)하며 손뼉치고 싶은 마음이 지극하므로 드디어 희우부(喜雨賦)를 지어 성상께서 널리 탐문(探問)하도록 하신 분부를 선양(宣揚)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가뭄이 들던 끝에는 반드시 홍수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오늘의 비가 혹시 장마가 저 손상이 된다면 반가운 비라고</p>	<p>○刑曹正郎柳陽春進《喜雨賦》，序曰：  臣伏觀前四月十八日，議政府宣下教旨及五月十三日，本府翻譯御批，皆出於至衷懇惻也。臣竊自傳寫，掛之私室，晨夕跪讀，感激之至。反覆私念，以謂聖上天縱眞主，至仁至誠，天之所以譴告者何事？意天以仁愛之心，益堅聖上之心也。因天之譴，求民之隱，夙夜憂勞，日與公卿大臣、臺諫、侍從，悉令講討，既已踈滌無餘，是天之所以益塵聖上之心也。上自朝廷，下及閭巷，有識無識，罔不感動，皆知我聖上至仁至誠，已動天聽，其報應之至，立俟無疑也。未幾，天果大霑，三日不止，朝野權呼，皆稱豐樂之祥，以天實助之深也。慶抃之至，遂欲撰《喜雨賦》，以對揚聖上博問之旨。第念旱乾之末，必有水溢之慮，今日之雨，苟至於澇損，則謂之喜雨不可也，若然則是豈天報答之意也？徐觀雨之候賦之，未爲不可也。臣伏見天之行雨之令，不驟不徐，不暴不霽，自五月下澍至七</p>
---	--	---

할 수 없게 되리라고 여겨졌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찌 하늘이 보답하는 뜻이 되겠습니까? 서서히 비 오는 기미를 보다가 희우부(喜雨賦)를 짓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었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하늘의 운행(運行)과 비가 오는 계절이 빠르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으며 거세게 오지도 않고 장마가 지지도 않으면서, 5월 하순(下旬)으로부터 7월 그믐까지 알맞게 내려 벼가 잘 자라도록 절도(節度)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곡식들이 이미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전답에는 모맥(牟麥)이 떠내려가게 되는 수해도 없었고 곡식은 싹이 나서 손모(損耗)하는 일도 없었으며, 집에서 개구리가 새끼치게 되는 고통도 없었고 들판이 요수(遼水)에 잠기게 되는 근심도 없었으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하늘이 때에 맞게 비를 내리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우리 성상(聖上)을 따라 주는 것이나 성상께서 하늘에 대응(對應)해 나가시는 것이 모두 생생(生生)18649) 의 지극한 덕에서 나올 것임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감히 즐겁게 여기며 부(賦)를 지어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통(感通)되는 이치를 질정(質正)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자묵객경(子墨客卿)·한림학사(翰林學士)란 자칭(自稱)으로 문답을 설정하여 우리 성대(聖代)의 희우(喜雨)의 경사에 대한 부(賦)를 짓게 되었습니다. 신이 이런 어그러지고 망령된 참람한 짓은 마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함을 잘 압니다마는, 단지 지극히 간절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대로 그만둘 수 없기에 삼가 배수(拜手)하고 계수(稽首)하며 부(賦)를 올립니다.”

하고, 그 사(辭)에 이르기를,  
“성화(成化) 기원(紀元) 23년(18650) 여름 5월 기망(既望)18651) 에 백성들이 바야흐로 목마르게 비를 기다리게 되어 흙에서 뿌연 먼지만 났었는데, 7일이 지난 신유일에 비가 내리고 정묘일에는 큰 비가 내려 온 나라의 밭에 두루 흡족하고 사방의 못이 가득 차도록 쏟아졌다. 이에 백성들은 들판에서 서로가

月之終，斟酌施與，以養禾苗爲節，而萬寶已至於告成，則田無漂麥之災也，穀無生角之耗也，家無產蛙之苦也，野無涵潦之患也。是眞所謂天之時雨，而人皆喜之也。於此益信天之所以聽於我聖上，而聖上之於應天，皆出於生生之至德也。敢不樂爲之賦，以質諸天人相感之理乎？遂以子墨客卿、翰林學士設爲問答，以賦我聖代喜雨之慶。臣極知謬妄之僭。當伏典法，只以誠出於至懇，不能遂已。謹拜手稽首獻賦。

其辭曰：

成化紀元二十三年夏五月既望，民方渴雨，土生浮塊，越七日辛酉乃雨，丁卯大雨，九陌周洽，四澤盈注。於是百姓相與抃于野，群臣相與慶于庭，咸曰：“豐登有期，勃然生成，是雨之功，伊誰之力耶？”皆呼萬歲之慶，僉曰：“吾王之澤也。”齊上手而陳賀，遂登聞于王前。教曰不然，歸之于天，遂御南薰殿，召司農卿講九農之政，慶百苗之殖。乃命子墨客卿，按萬物之性

손뻑치게 되었고 군신(群臣)들은 대궐 뜰에서 서로 경하(慶賀)하게 되었는데, 모두들 ‘풍년이 들 것을 기필하게 되었다. 부쩍 자라나 성숙하게 되는 것은 곧 비의 공이지만,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겠는가?’ 하여 모두 만세(萬歲)를 부르며 경축하였고, 모두들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덕택이다.’ 하며 일제히 손을 올려 진하(陳賀)하였었다. 드디어 임금 앞에 올려 알리니, ‘옳지 않다.’고 분부하여 공을 하늘에 돌리고 드디어 남薰전(南薰殿)에 나아가 사농경(司農卿)을 불러 구농(九農)에 관한 정사를 강론(講論)하고 온갖 곡식이 번식하게 되는 것을 경축하시었다. 이에 자묵객경(子墨客卿)에게 명하여 만물의 성정(性情)도 고찰해 보고 이기(二氣)18652) 의 정독(亭毒)18653) 도 탐구해 보아 비의 공을 찬양하고, 하늘의 덕을 찬미하되, 마땅히 더없이 펼쳐서 서술(敍述)하여 임금을 위해 부(賦)를 짓도록 하였다. 자묵객경이 배수(拜手)하고 계수(稽首)하면서 ‘성상의 훌륭한 명을 선양(宣揚)하겠습니다.’ 하고, 삼가 부복(俯伏)하고서 조금 물러나와 붓을 잡아서 부사(賦詞)를 이어갔다. 드디어 부를 짓기를,

‘달은 유빈(蕤賓)18654) 으로 읊아오고 해는 동정(東井)18655) 에 있으며 창룡(蒼龍)은 한 중앙이 되고 주순(朱鷄)은 바야흐로 빨라졌도다. 이때에 백로(伯勞)가 서로 울고 남쪽 들에서 지나간 해를 맞이하게 되니, 바야흐로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므로 전답 농사가 잘 익게 되기를 기약하였도다. 홀연히 여러 달 동안 민망하게 비를 기다려 운예(雲霓)18656) 바라보기를 애타게 하였지만, 대단한 가뭄은 혹독한 열기가 거세기만 하고 혹렬한 더위는 무덥게 사망에서 일어났도다. 화거(火車)를 달리며 형혹(熒惑)18657) 을 참승(驂乘)시킨 듯하고 회화(羲和)18658) 로 하여금 빨간 기를 흔들게 하는 듯하여, 그 기세 불꽃이 솟구치는 듯 활활거리고 그 기운 불길이 이글거리는 듯 대지를 말려 버렸도다. 불 우물이 끓어 넘치는 듯 계곡은 고갈되었으며 우연(虞淵)18659) 도 불타는 듯 몽범(濛汜)18660) 이 붉어졌도다. 바위의 구멍에

情，探二氣之亭毒，揚雨之功，贊天之德，宜極鋪張，爲予賦之。子墨客卿拜手稽首，對揚聖上之休命，謹俯伏小退，抽筆聯詞，遂作賦曰：“月旅蕤賓，日在東井，蒼龍正中，朱鷄方逞。時伯勞之和鳴，迎南郊兮脩景；方長養之盛節，期田功之上熟。忽連月而悶雨，望雲霓其如焱，亢陽悍其酷烈，炎氣鬱其四起。馳火車兮驂熒惑，使羲和兮搖赤幟。勢炎炎而赫赫，氣融融而滌滌，火井沸兮焦谿竭，虞淵烘兮濛汜赤。巖竇絕乳，陂池出閘，堤陞爲陸，溝澮成嘆。當此之時，雖使鄭伯開其涇渭、豹起謀其澤鹵，顧安所舉鍤而成雲、決渠而爲雨也哉？於是按神農求雨之書，稽舞雩禱雨之典，靡神不舉，于壇于墀，至於山林川澤丘陵墳衍，遍走遍求。既展既卒，是虔禱之至此，猶靈貺之久鬱。方將致怨乎雲漢，歸訟乎風伯，乃舞巫覡，呼蜥蜴，觴土龍，泥石牛。或閉門而塞道，或遷市而修溝，皆曰其雨其雨兮，萬口喁喁其未休。俄而八風不翔，六氣沈寂，天色渾沌，層陰四合，昏昏漠漠，暝暝默默。忽乾旋而坤轉，上帝赫其威靈，

도 물줄기가 끊어지고 방죽[陂池]에는 수문(水門)이 드러났으며, 제승(堤勝)이 육지로 변하고 구회(溝澮)18661) 가 마른 땅이 되어 버렸도다. 이럴 때에 비록 정국(鄭國)과 백공(白公)으로 하여금 경수(溼水)·위수(渭水)를 개통하게 하고 서문표(西門豹)와 사기(史起)로 하여금 택로(澤鹵)를 경영하게 하더라도 18662) 어떻게 가래[鍤]를 들자 구름이 일어나고 도랑[渠]을 파헤치자 비가 오듯이 할 수 있으랴? 이에 신농(神農)18663) 이 비를 구하던 글을 고찰하고 무우(舞雩)18664) 에서 비를 빌던 사례를 상고하여 단(壇)이나 선(壇)18665) 에서 제사하지 않은 신(神)이 없고, 산림(山林)·천택(川澤)·구릉(丘陵)·분연(墳衍)18666) 에 이르기까지도 사방으로 다니며 두루 찾아, 이미 제사를 베풀고 이미 찾기를 마치고도다. 이토록 정성스럽게 비 오기를 빌었는데도 영험을 내리지 않고 계속 음울(陰鬱)하기만 하여, 바야흐로 장차 운한(雲漢)18667) 을 원망하고 풍백(風伯)18668) 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었고도다. 이에 무당[巫覡]을 불러 굿을 하며 석척(蜥蜴)18669) 에게 호소하고 토룡(土龍)18670) 에게도 술잔을 올리고 석우(石牛)18671) 의 등에 진흙을 칠하였도다. 혹은 문(門)을 닫거나 길을 막기도 하고 혹은 저자를 옮기거나 도랑[溝]을 수축(修築)하거나 하기도 하였도다. 모두 말하기를, ‘비가 오려나 비가 오려나’ 하면서 만백성이 입을 모아 갈망하기를 그치지 않았도다. 갑자기 팔풍(八風)18672) 이 일지도 않고 육기(六氣)18673) 가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하늘빛이 혼돈(混沌)해지고 층이 진 그들이 사방에서 어우러져 음침한 기운이 까맣게 덮여오더니 캄캄해지며 정적이 밀어닥쳤도다. 홀연히 천지[乾坤]가 뒤바뀌는 듯 상제(上帝)가 혁연(赫然)18674) 한 위령(威靈)으로 육정(六丁)18675) 을 호령하고 오성(五星)18676) 을 불러들였으며 비렴(飛廉)18677) 에게 명하여 풍룡(風隆)18678) 을 모으게 하고 전모(電母)18679) 를 꾸짖어 뇌공(雷公)18680) 을 채찍질하게 하였도다. 귀신들을 때려 용거(龍車)18681) 를 타고 철기(鐵騎)18682) 를 몰아 금색(金索)을 날리어, 염발(炎魃)18683) 을 서쪽 들에서

叱訖六丁，撤召五星，命飛廉，會豐隆，呵電母，鞭雷公。擊鬼神兮騰龍車，驅鐵騎兮飛金索，誅炎魃於西郊，襲驕陽於南陸。於是詔馮夷，徵海若，既行令於四瀆，又布符於五嶽。肅氣升兮蒸鬱，滲液漏兮游揚。既而興雨師以作陳，聽天一而主張，分指揮兮既嚴，施號令兮有節。不霏不劇，不徐不疾，匪震匪拔，匪溢匪洩。演以潛沫，灌以膏液。始霖霖而浸潤，終滂沱而優渥。於是根之跖者秀發，苗之遏者敷榮。或甲而出者，或乙而生者，或蒼而赤者，或(芑) [苞] 而白者，或軋軋而蓋蓋，或艷艷而生息。萬物欣欣其自悅，百穀穰穰其成苞。蔚翹莖而漢蘗，紛擢穎而展胞。揚皓珉兮萼萼，敷紫茸兮概概。將見一禾而十莖，一莖而九穗，悻悻黝黝，芄芄穉穉，既連莖而著德，亦合穎而呈瑞。異畝將不取於周盛，六穗又何論於漢治？嗚呼！坤稱母，乾稱父，鞠育萬物，貽我甘乳。使天而雨金成丘兮，苗不得滋以生遂也；使天而雨玉三日兮，民不得殮以爲食也。是膏澤之遍及兮，果不知其誰之賜也？”言未既，有翰林學士喟

베고 교양(驕陽)18684) 을 남쪽 언덕에서 엄습(掩襲)하게 하였도다. 이리하여 빙이(憑夷)18685) 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해약(海若)18686) 을 불러들였도다. 이미 사독(四瀆)18687) 에 영을 내리고 또한 오악(五嶽)18688) 에 부명(符命)을 반포(頒布)하여 숙살(肅殺)하는 기운이 걷히자 무더워서 숨이 막히고 습기[滲液]가 새어나 널리 퍼지게 하였도다. 이미 우사(雨師)18689) 를 출동시켜 진(陣) 치기를 천일(天一)18690) 에게 들어보아 주재(主宰)하도록 하여 지휘(指揮) 분담이 이미 엄격하고 호령을 시행함이 절차가 있게 하였도다. 비가 장마지지도 않고 세차지도 않으며 더디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으며, 벼락을 치지도 않고 초목을 뽑지도 않으며 넘치게 오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도다. 빗방울로 스며 흐르다가 기름진 물로 적셔 주었고 처음에는 가랑비로 적시다가 나중에는 주룩주룩 내리어 흠족하게 되었도다. 이에 구부러져 있던 뿌리들이 뻗어나 자라게 되고 움츠리고 있던 싹이 피어나 꽃폈도다. 혹은 껍질을 트고 나온 것 혹은 구부러져 돌아난 것 혹은 희미하게 붉은 것 혹은 더부룩하게 흰 것들이, 더러는 무더기로 무성해지고 더러는 윤기있게 번식하였도다. 만물(萬物)이 싱싱하여 스스로 기뻐하고 온갖 곡식들은 우거져 더부룩해졌도다. 줄기가 무성하게 뻗어나고 꽃술은 촉촉하였으며 뒤엎히도록 드리워진 이삭은 껍질을 열었도다. 흰 술이 뽀뽀하게 휘날리고 붉은 잔털이 촘촘히 퍼지게 되었도다. 장차 벼 한 포기에 줄기가 열이 되고 줄기 하나에 이삭이 아홉이나 되리라. 김푸르게 우거지기도 하고 무성하게 야드르르하기도 하여, 이미 잇닿은 줄기들이 덕스러움을 나타내게 되었고 또한 어우러진 이삭들이 상서로움을 보이게 되었도다. 장차 주(周)나라 성대(盛代)의 특이했던 농사를 취할 것이 없게 되었는데, 또한 어찌 한(漢)나라 치세(治世)에 한 줄기에서 이삭이 여섯 난 것을 논하겠는가? 아아, 땅은 어머니와 같고 하늘은 아버지와 같아 만물을 길러내고 우리에게 단 젖을 주는도다. 하늘이 구릉(丘陵)이 되도록 금(金)을 내려 준다고 하더라도 싹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지는 못할 것이고, 하

然而歎，歷階而進曰：“子徒知禱雨之有徵，不知致雨之有由也；徒知在天之天，不知聖人之與天爲謀也。子不覩我聖上之所以應天之實乎？體一元，敍九疇，守一德，行九經，運二氣於範圍，齊七政於璣衡。于以代天工、修天職，小心兢兢，臨政翼翼。於是祖神農宗后稷。親事籍田兮，以供粢盛之薦；留念《豳風》兮，以省耕斂之令。知稼穡之艱難，每勞心於稼政。忽值時雨之愆期，益自軫乎聖敬，遑遑乎畏天之威，汲汲乎求民之病。遂損膳而撤樂，發憂旱之痛旨，乞言於耆艾勳舊之臣，求言於骨鯁魁壘之士，冀交修而協贊，以匡予之不逮。特陞明而黜幽，斯補遺而革弊，乃至挺重囚，放輕繫，埋幽伏，伸冤滯。蠲免逋欠，賑恤困乏，革徙民之令，踈役民之式。既省獄之恩深，又厚生之德洽，是人心之胥悅，盍天意之感通？遂昭答以甘澍兮，示湛恩之圓融，信乎天聽之自我民兮，知聖心之上與天同也。是豈山川之祝、土龍之祈，所以回天之力、動天之機也？若乃德潤而仁枯，邦燬而政薰，是所謂天旱而人旱兮，亦何疑於報應之

늘이 3일 동안 옥(玉)을 내려 준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을 수는 없을 것인데, 이처럼 은택(恩澤)이 두루 미친 것은 과연 누가 이렇게 내려 주었는지 모르겠도다.’

하였다.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림 학사(翰林學士)가 크게 탄식하며 계단(階段)을 올라와 나아와서 말하기를,

‘그대는 한갓 비를 빌자 영험이 있었던 것만 알았지 비가 오게 된 연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갓 하늘에 있는 하늘만 알았지 성인(聖人)께서 하늘과 함께 도모하신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 성상(聖上)께서 하늘에 호응하기를 성실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일원(一元)18691)의 이치를 체득하여 구주(九疇)18692)를 펴고 일덕(一德)18693)을 지키면서 구경(九經)18694)을 행하며, 이기(二氣)18695)를 범위(範圍)에 맞게 운용(運用)하고 칠정(七政)18696)을 기형(璣衡)18697)으로 바로잡아, 그로써 천공(天工)18698)을 대행(代行)하고 천직(天職)18699)을 닦되, 삼가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정사(政事)에 임하기를 공경스럽게 하였으며, 이에 신농(神農)을 조술(祖述)18700)하고 후직(后稷)18701)을 조종(祖宗)으로 삼아 친히 적전(籍田)18702)에서 일을 하여 종묘(宗廟)에 바칠 자성(棗盛)18703)을 장만하기도 하고, 빈풍(飗風)18704)을 염두에 두어 경작하고 수확하는 데 따른 정령(政令)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기가 간난(艱難)함을 알고서 매양 농사일에 마음을 써오셨는데, 홀연히 칠 맞추어 와야 할 비가 시기를 어기게 되자 더욱 성덕(聖德)과 공경(恭敬)에 스스로 진념(軫念)하여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기에 황황(遑遑)하고 백성의 병폐를 바로잡기에 급급(汲汲)하였습니다. 드디어 감선(減膳)18705)하고 철악(撤樂)18706)하며 가뭄을 근심하는 비통한 분부를 내리어 기애(耜艾)와 훈구(勳舊)인 신하들에게 말을 해주기 바라며 강직하고 뛰어난 선비들에게 구언(求言)18707) 하였으며, 서로가 수성(修省)하고 협찬(協贊)하여 자신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 바로잡아 주기

足云也? 猗歟! 我聖上之奉天兮, 誠以實而不以文也。” 子墨客卿再拜而颺言曰: “大哉! 聖德之配天也, 誠如子之言乎! 然予於是有所感矣, 請質之於子。 昔堯之欽若昊天兮, 何有九年之水也? 成湯之欽崇天道兮, 何有七年之旱也? 以周宣之敬天兮, 既不免《雲漢》之歎; 我聖上之奉天兮, 亦有乙巳之憂。 是豈德有違於天耶? 殆時數之不可讎也歟? 信天道之幽遠兮, 豈人事之有所求也?” 翰林學士乃盱衡而誥曰: “子不知天之所譴告於人君兮, 亦仁愛人君之至也? 天之譴告於堯兮, 舜以爲警予而自試; 天之譴告於湯兮, 躬自責以六事; 天之譴告於周宣兮, 乃側身以瞿瞿; 我聖上之祇承天譴兮, 亦曰惟予之辜。 我求其所由兮, 豈召因之無端? 或朝有四凶而未之除兮, 不能無遺憾於知人之難; 或身處君臣之變兮, 不能無慙德於致天之罰; 或寧丁我躬而呼天兮, 豈以承厲王之餘烈也。 我聖上之避殿而求過舉兮, 又豈無人事之或失也? 是上天之所以譴告而使之覺悟兮, 信仁愛之出於陰鷲也。 知聖人所以應於天兮, 亦修省之至於昭假也。 諒人

를 바라셨습니다. 특히 현명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내치  
어 실수를 바로잡고 폐단을 고치게 하였으며, 이어 죄가 무거운 죄수를 관대  
하게 처리하고 죄가 가벼운 죄수를 놓아주며, 밝혀지지 않은 죄는 묻어두고  
원통하게 적체되어 있는 죄는 신원(伸冤)해 주었습니다. 포흠(逋欠)18708) 을  
감면(減免)해 주고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여 돌봐주며, 사민(徙民)하는 법령을  
개혁하고 백성을 부역(賦役)시키는 법을 간소화하여, 이미 감옥 죄수들을 살  
피는 은혜가 깊었고 또한 민생을 풍족해지게 하신 은덕이 흠족하셨습니다. 이  
에 인심(人心)이 서로들 기뻐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감통(感通)되지 않겠습  
니까? 드디어 분명하게 응답하느라 단비를 내리어 깊은 은혜를 보임이 원만  
하였으니, 하늘은 우리 백성을 통하여 듣는다는 것을 확신하겠고, 성상의 마  
음이 위로 하늘과 같음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산천(山川)에 빌고 토룡  
(土龍)에게 뵈으로써 하늘의 힘을 돌리게 되고 하늘의 기틀을 움직이게 된 것  
이겠습니까? 덕(德)이 마르고 인(仁)이 마르게 되거나 나라가 불타듯하고 정  
사가 후끈거리는 것과 같은 것은 곧 이른바 하늘도 가뭄이 들고 사람도 가뭄  
이 든 일이니, 또한 응보(應報)가 즉함에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아아! 우리  
성상께서는 하늘 받들기를 진실로 성실하게 하였고 형식으로 하지 않으셨습  
니다.’

하였다. 자묵객경(子墨客卿)이 재배(再拜)하고 소리높여 말하기를,  
‘위대하신 성상의 덕이 하늘과 짝이 됨을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다는 것입니  
까? 그러나 나는 이에 있어서 느끼는 바가 있으니 그대에게 질문하기를 청합  
니다. 예전에 요(堯)임금은 공경스럽게 하늘에 순응(順應)하였으나 어찌하여  
9년의 흉수가 있었고, 성탕(成湯)18709) 은 공경스럽게도 천도(天道)를 숭상  
하였으나 어찌하여 7년의 가뭄이 있었으며, 주(周)나라 선왕(宣王)처럼 하늘  
을 공경하는 분으로도 이미 운한(雲漢)18710) 의 한탄을 면하지 못하였고,  
우리 성상께서도 하늘을 받드셨지만 또한 을사년(18711) 의 근심이 있었습니

君致福之道兮，莫有大於引咎而自飭也。竟蒙天之報應兮，遂對時而育物也。極高明之爲配兮，宜與上天而對越也。豈侈然自以爲無咎兮，委時數而莫之察也。吁！其盛矣哉！彼漢武之意乾封、魯穆之欲暴尪，祇速天之怒兮，敢回天之有望？至罪歲而終莫知其咎兮，曾何補於國耗而民荒也哉？”於是子墨客卿矍然改容，慙然心服，避席離坐，遂讓于翰林學士撰頌。頌曰：“於赫我王，德配上玄。一至誠兮，至誠無息。有感必通，動圓靈兮。乖氣屏伏，和氣薰蒸。降膏澤兮，靈貺既隆。以優以渥，萬物育兮。雨暘時若，時和歲豐。惟皇之極兮，天人參會。上下相應，于胥樂兮。”子墨客卿欣然涉筆，請續爲之說曰：“吾聞太平之時，禾不爲穰，夜必甘雨，晝必和風，風七十二，雨三十六，是年之候，惟苗之碩，民豈勞力？實天之勛，古有國稅再熟之稻，鄉貢八蠶之繇，此其時乎！何以加焉？”遂輟墨而謝曰：“賦已就矣，謹繕寫以進，請播樂府。”上覽畢，牢讓不居，顧謂司農卿曰：“吾將觀省于郊。”遂命有司備法駕，幸東

다. 이것이 어찌 덕이 하늘에 어그러지는 일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아마 시운 [時數]을 맞출 수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진실로 천도(天道)는 그윽하고 아득한 것인데 어찌 사람이 하는 일로 구할 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한림 학사(翰林學士)가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깨우치기를,

‘그대는 하늘이 임금(君)을 견책(譴責)하며 고하는 것은 또한 그 임금을 인자하게 사랑함이 지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요(堯)임금을 견책하였을 적에는 순(舜)이 자신에게 경고(警告)하는 것이라 여기고서 스스로를 시험하게 되었었고(18712), 하늘이 성탕(成湯)을 견책하였을 적에는 몸소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서 자책하였었으며(18713), 하늘이 주(周)나라 선왕(宣王)을 견책하였을 적에는 몸가짐을 삼가며 두렵게 여겼었고, 우리 성상께서도 하늘의 견책을 공경스럽게 받드시면서 또한 오직 나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연유한 바를 찾아보면 어찌 불려들인 원인의 발단이 없었겠습니까? 혹자는 조정에 사흉(四凶)(18714)이 있는데도 제거하지 못했으니 사람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유감이 없을 수 없었고, 혹자는 자신이 군신(君臣)의 변동기에 처하여 하늘의 벌을 대신 시행한 점에 있어서 참덕(慙德)이 없을 수 없었고, 혹자는 자신을 재삼 간절하게 경계하면서 하늘에 호소하였으니 어찌 여왕(厲王)(18715)의 여독(餘烈)을 이어받게 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상께서도 피전(避殿)(18716)하며 잘못된 일들을 찾으셨으니, 또한 어찌 인사(人事)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없겠습니까? 이에 하늘이 견책을 내려 깨닫게 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임금들을 인자하게 사랑하는 음즐(陰鷲)(18717)에서 나온 일인 것입니다. 성인(聖人)들이 하늘을 감응시키게 된 것은 역시 수성(修省)함이 소격(昭假)(18718)하게 된 것임을 알겠고, 임금들이 복을 이르게 하는 길은 인책(引責)하여 스스로 신칙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마침내 하늘의 응보(應報)를 받아 드디어 철에 맞추어 만

郊, 召司稼, 乃登進厥農而勞之曰: “嗟! 爾有生, 常患阻飢, 厥咎在予, 予豈不知? 天鑑孔仁, 實不汝遺。 始旱而雨, 土膏方滋, 耕犁種蒔, 毋失其時, 耘耨培糞, 各勤乃業。 于以事育, 於生爲足。” 於是父老皆呼千歲, 相與爲《擊壤歌》曰: “我植種陸, 于彼原隰。 父菑子播, 仰以爲食。 方其未雨, 如火之熇, 及其已雨, 如乳之養, 蕪然秀盛, 茁爾壯長。 聖與天謀, 何不豐穰?” 又爲《報秋歌》曰: “一粒種兮, 萬顆垂實; 單稔拆兮, 雙米抱出。 于場于室, 乃積乃餽。 我有餘糧, 棲于畝而不收; 國有餘儲, 藏於民而不封。 豐年之慶, 誰爲上農? 王耶天耶, 何德之隆!” 歌未卒, 薰風南來, 陰雲西興, 須臾雨乃復作, 若神之徵。 未幾, 炎蒸消洗, 道路清澄, 遂戒僕夫, 車駕啓還。 於是路鼓既擊, 樂師行班。 歌謠者迭和, 觀德者如闐。 相與輸東海、獻南山, 頌德祝壽, 聲振人寰。 蕩蕩乎! 若天覆而地載, 颯颯乎! 若雨施而風頒。

傳曰: “此賦意則善矣, 然非吾之所及



물을 육성(育成)하게 되었고, 지극히 높고 밝은 덕이 하늘의 짝이 되었으니 마땅히 하늘에 대응해야 합니다. 어찌 거만하게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서 시운(時運)만 핑계하고 살피지 않겠습니까? 아아, 훌륭하셨습니다. 저 한(漢)나라 무제(武帝)는 가뭄은 봉토(封土)18719) 를 마르게 하려는 것으로 여기고, 노(魯)나라 목공(穆公)은 왕병(疰病)에 걸린 사람을 학대하고자 하다가 18720) 단지 하늘의 노여움만 초래하게 되었었으니, 감히 천심(天心)을 돌릴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연운(年運)으로 책임을 돌리고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에 이른다면 어찌 일찍이 국고(國庫)의 고갈과 백성의 흉년에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자묵객경(子墨客卿)이 두려운 표정으로 태도를 고치고 민망하게 여겨 마음에 감복하면서 자리를 피하여 물러앉아 드디어 한림학사(翰林學士)에게 송(頌)을 지으라고 양보하였다. 그 송에 이르기를,

‘아아, 혁혁하신 우리 임금의 덕이 하늘에 짝이 되어 한결같이 지성스러우셨도다. 지성은 쉽이 없고 감동되면 반드시 통하는 법이라 원령(圓靈)18721)을 감동시켰도다. 어그러진 기운 물러가고 화기(和氣)가 훈훈하여 기름진 비가 내렸도다. 신령(神靈)이 주는 것 융성하여 넉넉하고 흠족하니 만물이 자라게 되었도다. 비 오고 별 나는 것 순조로와 시절이 고르고 연사가 풍년드니 오직 거룩한 임금의 덕이로다. 하늘과 인간의 감응이 통하고 상하가 호응하여 서로 기뻐하게 되었도다.’

하였다. 자묵객경(子墨客卿)이 혼연(欣然)히 붓을 들어 말을 더 잇대겠다고 청하여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태평한 시절에는 벼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네. 밤에는 반드시 단비가 내리고 낮에는 반드시 온화한 바람이 불되, 바람은 72차례 불고 비는 36차례 오는 법이로다. 올해의 날씨는 오직 싹들이 잘 자라게 했으니, 어찌 백성들의 노력뿐이겠는가? 진실로 하늘이 도운 것이로다. 예전에 국세(國稅)

也。 留政院。”

【史臣曰：“陽春獻諛希寵，欲銜才藝，以欺人主，縉紳嗤之。 未幾，果被憲府之論劾。”】

로 받는 벼가 두 번 익는 것이 있었고 향공(鄉貢)18722) 하는 누에고치가 여덟 차례 익는 적이 있었다지만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고서 드디어 필묵(筆墨)을 치우고 사례(謝禮)하기를, ‘부(賦)가 이미 이루어졌기에 삼가 정서[繕寫]하여 올리며 악부(樂府)에 올리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다 보시더니 굳이 사양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사농경(司農卿)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내가 장차 교외(郊外)에 나가 살펴보겠다.’고 하셨다. 드디어 유사(有司)에게 법가(法駕)18723) 를 갖추도록 명하여 동쪽 교외로 거동하였다. 이에 사가(司稼)18724) 를 불러 그 곳의 농부(農夫)를 나아오게 하여 위로하기를, ‘아아, 우리 민생들이 항상 주리게 됨을 근심함은 그 허물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늘이 내려다보심이 매우 인자하여 진실로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는 가물다가 비가 내려 흙에 기름기가 바야흐로 흠족하니, 땅을 갈고 종자 심는데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김매주며 거름주어 각기 생업(生業)에 부지런히 하라. 이리하여 부모 섬기고 자녀를 길러가면 인생살이 족하게 될 것이다.’ 하셨다. 이에 부로(父老)들이 모두 만세를 외치며 서로들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기를,

‘우리 동륙(種陸)18725) 을 저 원습(原隰)18726) 에 심었네. 아버지는 일구고 아들은 종자 뿌려 먹고 살기 바라도다. 바야흐로 비 내리지 않을 적엔 불타듯 했었는데 이미 비가 오게 되어서는 젖주어 기르듯 했도다. 무성하게 이삭이 빼어나고 싱싱하게 초목이 자라도다. 성상께서 하늘과 함께 도모하시는데 어찌 풍년들지 않으리.’

하였다. 또 보추가(報秋歌)를 부르기를,

‘한 알을 심은 것이 만 개의 낱알이나 열매맺고 벼 한 알을 까면 쌀이 두 톨이나 나오리라. 마당에 방에 쌓아 두고 밥지어 먹으리라. 우리 식량 남아돌아 이랑에 두고서 다 못거두고 나라 저축도 남아돌아 민간에 두고 거두지 않으

	<p>리라. 풍년든 경사 누군들 상농(上農) 아니라. 임금인가 하늘인가 누구의 덕이 이리 많은가?’</p> <p>하였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훈훈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고 검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더니 삼시간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신령의 증험과 같았다. 얼마있지 않아 찌는 더위가 깨끗이 없어지고 도로(道路)가 말끔해졌다. 드디어 복부(僕夫)에게 신칙하여 거가(車駕)가 떠나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노고(路鼓)가 이미 울리고 악사(樂師)들이 줄지어 섰으며 노래 부르는 자들이 번갈아 화답하고 덕화(德化)를 보려는 자들이 저자를 이룬 것 같았다. 서로들 동해(東海)의 물만큼이나 복받기를 축원하고 남산(南山)처럼 무궁하도록 장수(長壽)를 빌어, 송덕(頌德)하고 축수하니 그 소리가 온세상에 진동하였다. 광대한 덕화는 마치 하늘이 덮어 주고 땅이 실어 주는 듯하며 은택은 마치 비가 내리고 바람이 퍼지는 듯하였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부(賦)의 뜻은 좋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승정원(承政院)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유양춘은 아첨하는 말을 올려 은총(恩寵)을 바라느라 재예(才藝)를 팔아서 임금을 속이려고 하므로 진신(縉紳)18727) 들이 비웃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과연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을 받았다.” 하였다.</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9일 (병자) 1번째기사</p>	<p>큰비가 내렸다.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오곡(五穀)이 순조롭게 익어야 할 시기에 가을 비가 지나치게 장마졌으니 벼를 손상시키지 않았느냐?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직접 살펴 보고 계문(啓聞)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丙子/大雨。 御書下承政院曰：“五穀順成之時， 秋雨過澇， 無乃害稼耶？ 令諸道觀察使親審以啓。”</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p>	<p>북소(北所)에서 종친(宗親) 1품 및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 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堂上官)과 입직(入直)한</p>	<p>○賜宴于宗親一品及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參判以上、漢城府堂上、</p>

<p>(成化) 23년) 8월 15일(임오) 2번째기사</p>	<p>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관원에게 북소(北所)에서 사연(賜宴)하고, 대내(大內)에서 녹비(鹿皮)·각궁(角弓)·후추[胡椒] 등의 건물을 내어다가, 짝을 나누어 사후(射侯)하고 투호(投壺)하여 내기를 하게 하였다.</p>	<p>入直兵曹都摠府、承政院、弘文館、藝文館于北所。內出鹿皮、角弓、胡椒等物，令分耦射侯、投壺以賭之。</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8월 15일(임오) 3번째기사</p>	<p>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정문형(鄭文炯)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번에 장차 평강(平康)·철원(鐵原) 지방에서 강무(講武)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고을에서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소경전(昭敬殿)의 9월·10월·11월 삭망(朔望)에 바치는 제육(祭肉)을 황해도(黃海道)에 옮겨 배정하고 봉진(封進)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下書于江原道觀察使鄭文炯曰：“今將講武于平康、鐵原地面，故兩邑文昭殿、延恩殿、昭敬殿九月·十月·十一月朔望祭肉，移定于黃海道，其勿封進。”</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8월 20일(정해) 6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정지(鄭摯)가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유양춘(柳陽春)이 희우부(喜雨賦)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래 가문 나머지 단비가 순조롭게 내려 만물이 소생하게 된 다음에야 바야흐로 희우(喜雨)라고 하는 법입니다. 올해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늘 비가 그치지 않아 벼가 잠기고 보리가 떠내려가 재해가 이보다 혹심할 수 없는데, 유양춘이 연고도 없이 희우부를 올렸으니 이는 반드시 재주를 부려서 아첨하는 말을 올려 진출(進出)을 노린 것뿐입니다. 사군자(士君子)가 마음가짐을 진실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그의 실정을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유양춘이 올린 부(賦)는 아첨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덕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니, 국문하지 말라.” 하고, 그 부를 보여주도록 명하였다. 정지가 다시 아뢰기를, “이 부를 보건대 전편(全篇)이 모두 아첨한 글입니다. 올해 5월에 비가 왔는데 유양춘이 부(賦)를 올린 것은 8월이니, 이는 반드시 깊이 사색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조각(雕琢)하여 만들어 글 잘한다는 이름을 취하기 위해 한 것입</p>	<p>○司憲府掌令鄭摯來啓曰：“聞柳陽春進《喜雨賦》。久旱之餘，甘澍時若，萬物得甦，然後方謂之喜雨，今年則自夏徂秋，恒雨不止，沈禾漂麥爲災斯酷。而陽春無緣獻賦，是必逞才獻諛干進而已。士君子立心，固當如是耶？請鞫其情。”御書：“陽春進賦，非諛也。但吾德不足以堪之，其勿鞫。”命以其賦示之。摯更啓曰：“觀此賦，全篇皆是諛諛之詞也。今年五月得雨，而陽春獻賦在八月，是必覃思刻慮，雕琢而成，務取文名而爲也。賦中有曰‘田無漂麥之災，穀無生角之耗，家無產蛙之苦，野無涵潦之患。’此不近於厚誣乎？古人有天旱則曰乾封，秋霖則曰禾稼自茂，陽春之賦，與此何異？諛</p>

니다. 부의 내용에 이르기를, ‘밭에는 보리가 떠나려가게 되는 수해도 없고 곡식은 싹이 나서 감손되는 일도 없으며 집에서 개구리가 새끼치게 되는 고통도 없고 들판이 요수(遼水)에 잠기게 되는 염려도 없었다.’고 했으니, 이는 크게 속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도 날이 가물면 봉토(封土)가 마르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가을 장마가 지면 ‘벼가 저절로 무성해지겠다.’고 하였으니, 유양춘의 부가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첨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희(沈澮)가 의논하기를,

“유양춘이 올린 부는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것이니 과연 아첨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민생들의 병폐나 고통에 관한 것도 아니고 조정 정사의 득실(得失)에 관한 것도 아닌데 유양춘이 부를 지어 아첨하는 말을 올렸으니, 사헌부(司憲府)에서 논청(論請)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유양춘이 문식(文飾)한 말만 늘어놓아 부를 지어 칭찬하되 걸핏하면 요(堯)·순(舜)에 비하였으니, 진출하기를 노려 아첨하는 말을 올린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마음으로 겸양(謙讓)하시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분부하셨으니, 어찌 국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유양춘의 부는 희우(喜雨)를 위해 올린 것이 아니니, 사헌부에서 논청(論請)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아첨한 것으로 죄를 돌리는 것은 과중합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諛之罪，不可不治。”命議于領敦寧以上。沈澮議：“陽春進賦非其時，果近諛。然不當罪。”尹弼商議：“非民生疾苦朝政得失，而陽春作賦獻諛，憲府論請宜矣。”洪應議：“陽春奮其藻辭，作賦稱譽，動比堯、舜，干進獻諛之人也。然上意謙讓，以不堪教之，何用鞫爲？”尹壕議：“陽春之賦，非爲喜雨而獻也，憲府論請當矣。然專以諛諛歸罪，則過重也。”御書曰：

陽春之意，只以仍歲旱荒，而今年雨洽爲喜耳。他無干媚之狀，勿鞫。

【史臣曰：“陽春行薄，不得志於士林，欲售小技，其見駁宜矣。”】

	<p>“유양춘의 뜻은 단지 해마다 가물어 흉년이 들다가 올해에는 비가 흠족한 것을 기뻐한 것이고 달리 아침하기를 노린 정상은 없으니,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유양춘은 행동이 경박하여 사림(士林)들에게 뜻을 얻지 못하자 자질구레한 재주를 써먹으려 하였으니, 논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다.</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23일(경인) 1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건(成健) 등이 차자(筮子)를 올리기를, “유양춘(柳陽春)은 성질이 본래 경솔하고 조급하며 마음이 또한 간사하여 젊어서부터 소소한 재주를 자랑하여 권귀(權貴)들에게 알아주기를 바랐으므로 동료(同僚)들이 마음속으로 비웃었는데, 이번에는 또 억지로 지리한 말을 엮어 명성을 도둑질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올해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곳은 비가 개이지 않아 흐르는 큰물이 들관에 넘쳐서 벼를 손상시키고 곡식을 해치므로 성상(聖上)께서도 근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양춘은 또한 풍병을 앓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이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한 것은 그의 뜻이 전하(殿下)의 눈앞에서 거짓말하여 진출(進出)하여서 임용(任用)되기를 바란 것에 지나지 않으니, 실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양춘이 지은 부(賦)를 보건대 모두 아침을 바치는 말이니, 진출을 노린 계획이 교묘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침하는 말을 날로 바쳐서 나라 일이 장차 그릇되게 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추국하도록 명하여 선비의 풍습을 바로 잡으소서.”</p> <p>하니, 어서(御書)하기를,  “유양춘이 현명한지 불초(不肖)한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전일에 희우부(喜雨賦)를 올렸었는데 나의 덕(德)이 감당할 수 없어 다만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할 뿐이었다. 지금 경(卿)들이 유양춘을 가지고 아침하는 말을 올려 진출을 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내가 나 자신을 기리는 사람을 임용(任用)한 임금이</p>	<p>○庚寅/司憲府大司憲成建等上筮子曰：  陽春性本輕躁,心又回邪, 自少術小技要權貴, 朋儕竊笑, 今又強綴支離之辭, 以爲盜名之資。 今年自夏徂秋, 淫雨不開, 流潦溢野, 傷稼害穀, 至貽聖上之慮, 陽春亦非病風之人, 豈不知此? 然而爲此者, 其志不過面謾殿下, 希求進用耳, 不可謂之無情也。 今觀陽春之賦, 盡是獻諛之辭, 其媒進之計, 可謂巧矣。 此厥不懲, 竊恐佞言日進, 國事將非矣。 伏望特命推鞠, 以正士習。</p> <p>御書：  陽春之賢不肖, 予未之知也。 頃進《喜雨》之賦, 吾德未足以堪之, 徒自警省而已。 今卿等以陽春爲獻諛干進,</p>

	<p>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아된 대로 하겠다.” 하였다.</p>	<p>是則予爲用譽己之君也。 今依所啓。</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24일(신묘)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이숙기(李淑琦)가 아뢰기를,  “지금 울산(蔚山)에 거주하는 군사들을 병영(兵營)·수영(水營)에 나누어 소속 시켜서 유방(留防)하게 하는데, 두 영(營)이 모두 울산에 있고 군사들의 집이 멀지 않으므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다만, 비록 벌을 가해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창졸(倉卒)간의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계책을 하여 각기 처자를 구원하게 될 텐데, 어느 겨를에 나라를 방위하게 되겠습니까? 청컨대 먼 고을의 군사로써 바꾸소서.” 하니,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대저 양식을 지고서 멀리 나가 방수(防戍)하는 것을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는데, 만약 토병(土兵)18754) 을 쓰면 방수하기가 매우 편리할 것이니, 이숙기의 말은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서 시행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숙기가 또 아뢰기를,  “밀양(密陽)의 수산(守山) 둔전(屯田)을 선군(船軍) 5백 명으로써 경작하고 있으니, 청컨대 헤아려보아 감하여서 방어를 견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p>	<p>○辛卯/御經筵。 講訖， 特進官李淑琦啓曰：“今蔚山居住軍士分隸兵營、水營留防。 兩營皆在蔚山， 軍士其家不遠， 任情往來， 雖加罪罰， 莫能禁止。 若有倉卒， 人自爲計， 各救妻孥， 何暇衛國乎？ 請以遠邑軍士換之。” 領事尹弼商啓曰：“大抵贏糧遠戍， 人甚苦之。 若用土兵， 則防守甚便。 淑琦之言必廣咨于衆， 乃可施行。” 淑琦又啓曰：“密陽守山屯田， 以船軍五百名耕治。 請量減， 以固防禦。” 上曰：“可。”</p>
<p>성종 206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29일(병신) 1번째기사</p>	<p>후원(後苑)에 나아갔다. 종친(宗親)·의빈(儀賓) 등이 입시(入侍)했는데 사후(射侯)도 하고 투호(投壺)도 하였으며, 후추[胡椒] 20석(碩)을 이긴 편에게 나누어서 내려 주었다.</p>	<p>○丙申/御後苑。 宗親、儀賓等入侍。 或射侯、或投壺， 以胡椒二十碩， 分賜勝耦。</p>
<p>성종 208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박희손(朴喜孫)이 아뢰기를,</p>	<p>○丁亥/御經筵。 講訖， 正言朴喜孫啓曰：“金礪非徒殺人， 士林皆稱其無</p>

(成化) 23년) 10월 21  
일(정해) 1번째기사

“김석(金磻)은 다만 살인뿐이 아니고 사림(士林)에서 모두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함을 말합니다. 어미의 상중에 있으면서 기생을 간통한 일은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말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묻기를,  
“만일 그렇다면 사록(司錄)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조정(朝廷)에 설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홍문관에서 또한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사람의 전정(前程)을 망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찌 경솔히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신이 연소(年少)하였을 때에 제배(儕輩)들과 떼를 지어 날마다 유희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면서 혹은 중을 구타하기도 하고 계집아이를 희롱하기도 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석의 살인이 또한 연소한 때에 있었으니, 족히 고이 논할 것은 없으나, 다만 어미 상중에 기생을 간통한 것은 강상(綱常)의 죄인인데, 어찌 성조(聖朝)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일이 이미 10년을 지냈으니,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김석의 사록(司錄)을 고치고 그 기생을 간통한 일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사증(辭證)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는 금년에 잘 결실되지 않았는데, 선군(船軍) 4백 명이 지금 산대(山臺)의 역사에 나가 있으니, 청컨대 이들을 먼저 돌려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도는 농사가 잘되지 못하고 지금 또 중국 사신을 지판(支辦)하는 일이 번다하니, 선군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行。 居母喪奸妓事， 雖無的實證驗， 言之者非一， 請改正。” 上顧問左右曰：“[若]然則非徒不可爲司錄， 決不可立身於朝路也。 但弘文館亦云未知的實。 廢人前程， 必須得實， 何可輕也?” 領事洪應對曰：“臣年少時與(齊)[儕]類成群， 日以遊戲爲事。 或毆僧人， 或戲兒女， 無所不爲。 磻之殺人， 亦在年少時， 無足深論。 但若母喪奸妓， 綱常之罪人， 豈可立身於聖朝乎? 第恐此事已過十年， 未易得實。” 上曰：“姑改磻司錄。 其奸妓事， 令義禁府推閱辭證可也。” 應又啓曰：“黃海道今年不稔， 而船軍四百名， 今赴山臺之役， 請先放送。” 上曰：“此道歲既不登， 而今天使， 支辦事煩， 船軍放送可也。” 應又啓曰：“國家設船軍， 本爲防戍也。 近來營作及屯田， 必役此輩。 昔趙充國擊先零， 留步卒墾屯田， 以繼兵食; 先零降， 旋罷之。 今之屯田， 與此不同。 世宗朝置守山屯田， 世祖朝曹錫文兼判戶曹， 強請置屯田， 世祖雖可其議， 實不喜， 竟罷之。 請罷屯田， 許民耕墾， 依法收稅爲便。” 上曰：“卿所言， 指大阜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선군(船軍)을 설치한 것은 본래 방수(防戍)를 위한 것인데, 근래에는 영작(營作)과 둔전(屯田)에 반드시 이 무리를 역사시킵니다. 예전에 조충국(趙充國)이 선령(先零)을 칠 때에 보졸(步卒)이 머물러 두고 둔전을 개간하여 군사의 양식을 잇대다가 선령이 항복한 뒤에는 이내 파하였습니다. 지금의 둔전은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수산(守山) 둔전(屯田)을 설치하였고, 세조조(世祖朝)에 조석문(曹錫文)이 호조(戶曹)를 겸판(兼判)할 때에 둔전을 설치할 것을 억지로 요청하므로 세조께서 비록 그 의논을 허가하시는 하였으나 실은 기뻐하지 않아서 마침내 파하였습니다. 청컨대 둔전을 파하고 백성에게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고 법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은 대부도(大阜島)·보음도(浦音島)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두 섬은 수로가 험하고 멀어서 백성이 왕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둔전을 두어 선군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왕래하기가 어려운 것이야 평민과 선군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대부도는 경작하여 거두는 곡식이 일 년에 5백 석에 불과하여 얻는 것이 비용을 보충할 수가 없으니,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니 백성을 소집하여 경작하게 해서 법에 따라 조세를 거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일 응모하는 자가 없다면 예전과 같이 목장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상량(商量)하여 조치하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북경[京師]에 가는 행차를 영접하고 호송하는 군사는 평안도·황해도만이 그

島、浦音島而言也。 兩島水路險遠，民難往來， 故置屯田， 令船軍耕治耳。” 應啓曰：“往來若難， 則平民與船軍何異？ 且大阜島耕墾所收穀， 歲不過五百碩， 得不補費， 非國家之利也。 莫若募民耕作， 依法收稅。 若無應募者， 依舊置牧場爲便。” 上曰：“當更酌量處置。” 應又啓曰：“赴京之行迎護送軍， 平安、黃海道獨受其苦， 往來奔走， 人馬俱斃， 勢將難支。 請以開城府及京畿正兵， 輪次差送， 以休其力。” 上曰：“如此更張， 似難矣。”

	<p>괴로움을 받는데, 왕래가 분주하여 사람과 말이 모두 죽으니, 형편이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개성부(開城府)와 경기(京畿)의 정병(正兵)을 윤차(輪次)로 차송(差送)하여 그 힘을 쉬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와 같이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p> <p>하였다.</p>	
<p>성종 208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0월 26 일(임진) 13번째기사</p>	<p>입직(入直)한 승지(承旨)·홍문관원(弘文館員)·주서(注書)·사관(史官)에게 소설시(小雪詩)를 지어 올리게 하고 인하여 술을 주었다.</p>	<p>○命入直承旨及弘文館員、注書、史官、製《小雪》詩以進，仍賜酒。</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2월 3 일(무진) 5번째기사</p>	<p>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한사문(韓斯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근래에 천둥과 번개의 재앙(災殃)으로 인하여 전교(傳敎)를 내려서 구언(求言)19029) 하셨는데, 신 등은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면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삼가 저희들의 의견을 가지고 채택(採擇)하시는 데에 우러러 갖추 고자 합니다.</p> <p>일찍이 동중서(董仲舒)19030) 의 책문(策問)19031) 을 보니 이르기를, ‘나라가 장차 도(道)를 잃고 패망(敗亡)하려 하면 하늘은 이에 먼저 재이(災異)를 내어서 견책하여 알리는 것인데,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괴이(怪異)한 일을 내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천심(天心)은 임금을 사랑하여 그 어지러움을 그치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임금이 하늘의 견책에 대해서 위로 응답함에 있어 실덕(實德)을 버리고 무엇으로써 하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실(實)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實)이라는 것은 덕(德)입니다. 진실로 덕(德)을 닦아서 응답한다면 복(福)을 반드시 구하지 않더라도 복이 스스로 이를 것이며, 재앙(災殃)을 반드시 그치게 하지 않더라도 재앙이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소위 덕(德)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본심(本心)을 지키고 해야 할 일</p>	<p>○司憲府執義韓斯文等上疏曰： 近因雷電之災，下教求言。 臣等待罪言官，不敢默默， 僅以臆見， 仰備採擇。 嘗觀董仲舒之策曰：“國家將有失道之敗， 天乃先出災異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於以見天心之仁愛人君而欲止其亂也。” 人君所以上答天譴者， 舍實德何以哉？ 傳曰：“應天以實。” 所謂實者， 德也。 苟能修德以應之， 則福不必求而福自至焉， 災不必弭而災自弭焉。 所謂修德云者， 不過存心與行事而已。 殿下清心寡欲， 躬履節儉， 不事遊畋， 不邇聲色， 孝誠友愛， 出於天性， 御下接物， 推誠無間， 無一念不出於正， 見殿下存</p>

을 행하는 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하(殿下)께서는 마음이 맑고 욕심이 적으시며 몸소 절약과 검소함을 실천하시며 사냥을 일삼지 않고 성색(聲色)19032) 을 가까이하지 않으시며, 효성(孝誠)과 우애(友愛)는 천성(天性)에서 우리 나오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사물(事物)을 접함에 있어서는 성의(誠意)를 이루어 소홀함이 없어, 한 가지 생각이라도 올바른 견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전하께서 본심을 지키는 실(實)입니다. 상벌(賞罰)을 명확하게 하고 등위(等威)를 밝히시며 어진 자를 나아오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시며 정치(政治)와 교화(教化)를 닦아서 밝게 하고 백성을 보기를 그대로 두면 다칠 것처럼 여기시며 폐단을 모두 없애어, 현재의 일을 올바른 견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해야 할 일을 행하신 실(實)입니다. 안으로 그릇된 덕(德)이 없고 밖으로 잘못된 정사(政事)가 없으면 마땅히 마음이 화평하고 기운이 화평하여 천지 만물(天地萬物)이 모두 화평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년(近年) 이래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 기근(饑饉)이 서로 잇따르고, 또 순음(純陰)19033) 의 달을 맞아 기후가 봄과 같고 지맥(地脈)이 풀려 퍼졌으며 천둥과 번개가 재차 일어납니까?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아직도 모두 실(實)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잘못된 바를 깊이 생각하시어,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에 성실하지 않은 바가 있고 한 가지 일이라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두려워하여 반성하고 미련없이 고치셔서, 잘못을 부끄러워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는 바가 없도록 하시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겨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지 마실 것이며, 좋은 바가 적다 하여 하지 않거나 나쁜 바가 적다 하여 하거나 하지 마시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천지(天地)에 대해서 부끄러운 바가 없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본심을 지키며 이를 행사(行事)로 나타내어 위로는 황천(皇天)의 경계에 응답하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에 부합도록 하면, 여러 복(福)있는 물건과 이

心之實也。 明賞罰，昭等威，進賢退邪，修明政教，視民如傷，盡祛弊癘，無今事不出於正見，殿下行事之實也。 內無失德，外無闕政，宜乎心和氣和而天地萬物莫不畢和矣。 奈之何近年以來，旱澇迭作，飢饉相仍，又當純陰之月，氣候如春，地脈灑洩，雷電再作耶？ 殿下之敬天勤民，猶有所未盡實耶？ 伏願殿下深惟過闕，如有一毫未孚於心、一事未合於理，則惕然而省，翻然而改。 無恥過而作非，毋自聖而自用，勿以善小而不爲，勿以惡小而爲之。 一念之誠，對越無愧，存諸心、見諸行事，上以答皇天之戒，下以副臣民之望，則諸福之物，可致之祥，不期而自至矣。 若其事有所未穩、政有所未便者，臣等請得而陳之。 《大典》京外給保條：“甲士給二保，騎正兵水軍給一保。 一丁而同居子壻若弟姪雖過保數，二丁毋定他役，使父子兄弟皆得而完聚。” 國家養兵之意，可謂優矣。 今之成籍，只據乙未之簿，充其故闕，而餘皆不動。 故軍籍事目，雖有父子完聚之文，然以年弱未付乙未之籍者，雖欲同籍，例皆不得改焉。 由

를 수 있는 상서(祥瑞)가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를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온당하지 않은 바가 있고 정사(政事)에 마땅하지 않은 바가 있다면, 신 등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대전(大典)》의 경외(京外) 급보(給保)19034) 조에, 갑사(甲士)에서는 2보(保)를 주고 기정병(騎正兵)·수군(水軍)에게는 1보(保) 1정(丁)을 주며, 같이 사는 아들·사위와 아우·조카는 비록 보(保)의 수를 넘더라도 2정(丁)을 다른 역사(役事)에 정하지 말아서 부자(父子) 형제(兄弟)로 하여금 모두 완취(完聚)19035) 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니, 나라에서 군사를 기르는 뜻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적(軍籍)의 작성은 단지 을미년(1906)의 장부에 의거하여 예전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적 사목(軍籍事目)에 비록 부자(父子)가 완취(完聚)하도록 한다는 글이 있기는 하나, 나이가 어려서 을미년의 군적에 첨부되지 않은 자는 비록 군적을 같이 하려고 해도 예(例)대로 모두 고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록 부자(父子) 형제(兄弟)의 친족(親族)이라도 일체 나뉘어서 배당되어 갑(甲)의 집에서 옷입고 밥먹으면서도 을(乙)의 군적(軍籍)에 옮겨 예속되어 문(門)을 나누고 호(戶)를 갈라서 각기 그 역사에 부역(賦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한 집이 군역(軍役)에 종사하면 열 집이 봉양한다는 뜻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제색 군사(諸色軍士) 중에서 수졸(水卒)인 정병(正兵)이 가장 노고(勞苦)하고 있으니, 그 부자(父子) 형제(兄弟)가 완취(完聚)하기를 바라는 자는 을미년의 군적(軍籍)에 구애하지 말고 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노제(老除)19037) 되는 자는 그 호적(戶籍)과 군안(軍案)을 상고하여 한결같이 나이 젊은 쪽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이것은 또한 간사함을 막는 방법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사한 무리가 색리(色吏)19038)와 몰래 통하여 미리 호적과 군안에 그 나이를 늘려서 기록하기도 하고, 우매한 무리들은 호적에 나

是雖父子兄弟之親，一切分配，衣食於甲者之家，而轉隸於乙者之籍，分門割戶，各役其役，其與古者‘一家從軍，十家奉之。’之意何如耶？臣等以謂諸色軍士之中，水卒正兵最爲勞苦，其父兄子弟願爲完聚者，不拘乙未之籍，從願施行爲便。且老除者，考其戶籍與軍案，而一從年少施行，此亦防奸之術，不得不爾。但奸詐之徒，暗通色吏，預於籍案，增記其年，愚惑之輩，減年於籍，而曾莫之知。由是有年滿而仍役者，有年少而規免者。如有一人之齒於戶籍軍簿，互有增減，處之難斷者，監司、兵使於巡行之時，親自點檢，兼視其形貌之衰壯而處置之，則庶使老者得安，而壯者不得苟免矣。天下有二權，兵權宜分，不宜專；政權宜專，不宜分。兵專則變必生，政分則事無統，善計國家者之所宜審處也。凡內外庶務之事，有遣官點察、差人監督者，該曹隨才擬望當也。而今也領一役、辦一事，則主監者無問賢否，各以所知，自占其屬。且如點馬別監也，從事官也，管務匪輕，而注擬不專於該曹，惟主使與提調所薦。故媒進之輩

이를 줄이기도 하니, 일찍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이가 찼는데 그대로 역사(役使)하는 자도 있고 나이가 어리면서 면(免)하기를 피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일 같은 사람의 나이가 호적과 군부(軍簿)에 서로 늘어났거나 줄어들어 처리하는 데에 결단하기 어려운 자가 있으면,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순행(巡行)할 때 직접 스스로 점검(點檢)하고 겸하여 그 용모의 노쇠하고 젊음을 보아 처리한다면, 노쇠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젊은 자로 하여금 구차하게 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천하(天下)에는 두 가지 권한이 있으니, 병권(兵權)은 마땅히 나누어져야지 독단으로 해서는 안되며, 정권(政權)은 마땅히 독단으로 해야지 나누어져서는 안됩니다. 병권을 독단으로 하게 되면 변란(變亂)이 반드시 생기고 정권이 나뉘어지면 일이 통솔될 수 없으니, 나라 일을 잘 도모하려는 자가 마땅히 잘 처리해야 할 바입니다. 무릇 내외(內外)의 여러 가지 일에 관원을 보내어 점검하고 살피며 다른 사람을 보내어 감독하게 하는 것은 해조(該曹)에서 재주에 따라 의망(擬望)19039)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역사(役事)를 통솔하고 한 가지 일을 처리하게 되면, 감독을 주관하는 자는 현명 한지 현명하지 않은지를 묻지도 않고 각기 아는 사람을 그 속관(屬官)으로 차지합니다. 또 점마 별감(點馬別監)19040) 이나 종사관(從事官)같은 것은 관장하는 업무가 가볍지 않은데, 주의(注擬)19041) 에 전념하지 않고 해조(該曹)에서 오직 주사(主使)와 제조(提調)가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진(媒進)19042) 하는 무리가 자신의 능한 바는 헤아리지 않고 권세 있는 집에 모여들어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 진실로 한 번 뚫고 들어가기 바라다가 이루지 못하면 세력이 있는 집정자(執政者)에게 붙어서 뒤따라 이르는 것입니다. 비록 해조와 더불어 의논하지만, 해조에서도 감히 모나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좋은지 나쁜지를 가리지 않고서 마침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제수하게 됩니다. 심지어 왜인(倭人)을 호송(護送)하는 여러 진(鎭)의 군관(軍官)도

不量其能，輻輳權門，搖尾帖耳。苟求一鑽而不得，則關節隨至，雖與該曹同議，而該曹亦未敢崖異，不擇臧否，卒授匪人。至於倭人護送諸鎭軍官，不因權貴，則亦無以爲也。此豈非政出多門之漸耶？伏願殿下先革此弊，以清銓選，使政權歸一，以杜僥倖之門。漢稱尚書，唐曰內相，卽我國承政院也。漢李固之策有曰：“陛下之有尚書，猶天之有北斗。北斗乃天之喉舌，而尚書亦爲陛下喉舌。故斟酌元氣，運平四時者，北斗也；出納王命，賦政四海者，尚書也。今之任是職者，固當顧名思義，出納之際，事無大小，參酌於心。其善者宣敷之，其否者封駁之。將順其美，匡救其不逮，則自然君無過舉，國無失政。曾降傳旨，事有不合於理者，許令更稟。而天威之下，不敢違異，凡有宣旨，例以承順爲任，未嘗駁議。以至事有可疑、政有未穩，則令大臣擬議可否，大臣從而順之，則事遂施行。然後臺諫雖駁之，而終不得改焉。使殿下從諫之美，有所未盡，而言官所論，無救於事，得不有乖於事體乎？願殿下深燭斯弊，申明

권세 있고 귀(貴)한 자를 통하지 않고는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치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이러한 폐단을 없애어 전선(銓選)을 막게 하셔서, 정권(政權)이 한곳으로 귀결되게 하여 요행(僥倖)의 길을 막도록 하소서.

한(漢)나라에서 상서(尙書)라고 일컫던 것을 당(唐)나라에서는 내상(內相)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우리 나라의 승정원(承政院)입니다. 한(漢)나라 이고(李固)의 책문(策問)에 이르기를, ‘폐하께서 상서(尙書)를 두고 있는 것은 하늘에 북두칠성(北斗七星)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북두칠성은 바로 하늘의 후설(喉舌)이므로, 상서(尙書)는 또한 폐하의 후설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지(天地)의 기운을 참작하여 사시(四時)를 균형있게 운행하는 것은 북두칠성이고,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하고 사해(四海)를 헤아려 다스리는 것은 상서(尙書)입니다. 지금 이 직책을 맡은 자는 진실로 마땅히 명예를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해서 출납할 때 일의 대소(大小)를 물론하고 마음에 참작하여, 그 옳은 것은 선양(宣揚)하고 그른 것은 봉박(封駁)19043 하여서 장차 그 좋은 바를 따르며 미치지 못하는 바를 바로잡고 도와준다면, 자연히 임금의 잘못된 행동이 없을 것이고 나라는 그릇된 정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전지(傳旨)를 내려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는 것은 다시 아뢰도록 허락 하셨으나, 임금의 위엄 아래에서는 감히 어긋나거나 다르게 하지 못합니다. 무릇 선지(宣旨)가 있으면 예(例)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임의로 삼아 일찍이 논박하여 의논하지 않고, 일이 의심스러운 바가 있고 정사가 온당하지 않은 바가 있게까지 되면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의논하게 하는데, 대신이 따라서 순종하면 일은 결국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는 대간(臺諫)이 비록 논박하더라도 마침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殿下)로 하여금 간(諫)하는 바에 따르는 홀륭함이 미진(未盡)한 바가 있게 하고, 언관(言官)이 논하는 바가 일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의 대체(大體)에 어그

前旨，使左右承弼之臣，得盡其職。范曄《漢志》《郡國》，冬雷屢書於策，而救之之方，則曰率幼孤、賑不足、議獄刑、賞謫罰，災則消矣。願殿下建中和之極，盡側修之道，如遇一雨暘之愆，則曰否德之召也，一風雷之變，則曰疵政之致也。當早夜以思曰，孤幼失所而未盡恤耶？民生艱食而未能賑耶？刑獄猶有冤耶？謫罰猶有過耶？以此數者，日慎一日，戰兢惕厲，則六氣叶而七曜順軌，三光全而寒暑受職。臣前所謂應天以實者，是已。願殿下留神焉。命議于領敦寧以上。沈滄議：“一家有餘丁，毋定他役，載在令典，申明舉行可也。但老除者，監司、兵使點視形貌，則似紛擾，不須舉行。主監者自占其屬，果有不合於義，今後宜令銓曹擬望。凡事之大者，議可否於大臣，裁自上意，何乖事體？”李克培議：“軍籍給保老除事，從事目，已成草案，不可更改。吏兵曹任人事與承政院出納事，宜當各自警省，以副聖上委任之意。至於遇災恐懼側身修德，只在聖上加之意耳。”

러지는 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깊이 아시고 앞서의 뜻을 거듭 밝히시어 좌우(左右)에서 받들어 보필하는 신하로 하여금 이 직책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범엽(范曄)19044)의 《한지(漢志)》에, 군국(郡國)에서 겨울에 천둥하자 누차 책문(策問)을 써서 구제하는 방법을 말하기를, 어리고 고독한 자를 이끌어 주고 부족(不足)한 바를 구제하며 형옥(刑獄)을 의논하고 귀양가거나 벌 주는 것을 용서 한다면 재앙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중화(中和)19045)의 지극함을 세우시고, 자신을 반성하며 덕행(德行)을 가다듬는 도리를 다하소서. 만약 한 번이라도 홍수와 가뭄의 재앙을 만나면 말하기를 ‘덕(德)이 없어 불러들인 것이다.’ 하고, 한 번이라도 바람 불고 천둥하는 재변(災變)을 만나면 말하기를, ‘정치에 과실이 있는 소치이다.’라고 하며,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기를, ‘거처를 잃은 고독한 자와 어린이를 모두 진휼(賑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밥먹기도 어려운 백성의 생활을 능히 구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형옥(刑獄)이 오히려 억울함이 있는가? 귀양보내고 벌 주는 것이 아직도 잘못이 있는가?’라고 하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날마다 하루 종일 삼가서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근심하고 힘쓴다면, 육기(六氣)19046)가 화합하고 칠요(七曜)19047)가 궤도(軌道)를 따르며, 삼광(三光)19048)이 온전하고 추위와 더위가 정상적이 될 것입니다. 신이 앞서 말한 바 실(實)로써 하늘에 응답한다는 것이 이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념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회(沈滄)가 의논하기를,

“한집에 여정(餘丁)19049)이 있으면 다른 역사(役事)에 정하지 말도록 법전에 실려 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노제(老除)되는 자를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용모를 살펴본다면 번거로운 듯하니, 모름

	<p>지기 거행할 수 없습니다. 감독을 주관하는 자가 스스로 그 속관(屬官)을 차지하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마땅히 전조(銓曹)19050) 로 하여금 의망(擬望)하게 하소서. 무릇 일이 중대한 것은 대신(大臣)에게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성상의 뜻으로 결단한다면, 어찌 일의 대체(大體)에 어긋나겠습니까?”</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군적(軍籍)·급보(給保)·노제(老除)하는 일은 사목(事目)에 따라 이미 초안(草案)을 만들었으므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사람을 임용하는 일과 승정원(承政院)에서 출납(出納)하는 일은 마땅히 각기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여 성상께서 위임하신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앙을 만나기에 이르러 두려워하고 자신을 반성하며 덕(德)을 닦는 것은 단지 성상께서 뜻을 기울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2월 3일(무진) 6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상소(上疏)하기를,</p> <p>“신 등이 삼가 전지(傳旨)를 받들건대, 허물을 이끌어 자신을 책망하신 말의 뜻이 매우 깊으니, 전하께서 하늘을 섬기는 공경과 구언(求言)하는 절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 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중동(仲冬)19051) 에 여름의 정령(政令)을 행하면 분무(氛霧)19052) 가 어둑어둑하고 천둥이 이에 소리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천둥이라는 것은 봄에 소리를 냈다가 가을에 소리를 거둬서 천도(天道)의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은 이미 융동(隆冬)19053) 인데도 천둥치고 비가 내리며 장무(瘴霧)19054) 가 하늘까지 가득 찼으니, 장차 하늘이 참된 명(命)으로써 그 덕(德)을 바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넓은 하늘이 밝으시어 그대와 더불어 나가 다니며, 넓은 하늘이 환하시어 그대와 더불어 놀러 다니시네.’라고 하였으니, 임금이 한 번 움직이고 멈추는 것과 한 번 주고 빼앗는</p>	<p>○司諫院大司諫申末舟等上疏曰：</p> <p>臣等伏承傳旨，引咎責躬，辭旨過深，有以見殿下事天之敬、求言之切也。臣等謹按《記》曰：“仲冬行夏令，則氛霧冥冥，雷乃發聲。夫雷也者，發聲于春，收聲于秋，天道之常也。今既隆冬矣，而雷雨發作，瘴霧滔天，將天以孚命正厥德耶？《詩》曰：“昊天曰明，及爾出王；昊天曰旦，及爾遊衍。”人君之一動靜、一予奪，雖若甚微，天之監視無處不在，宜殿下之日慎</p>



것은 아무리 매우 미미한 것이라도 하늘의 감시(監視)가 어느 곳이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전하께서는 날마다 하루 종일 삼가기를 깊은 연못에 임(臨)하고 얇은 얼음을 뚫듯이 하여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간언(諫言)을 아뢰기는 어렵지 않지만 간언을 받아들여가기가 어렵고, 구언(求言)하기는 곤란하지 않지만 그 말을 시행하기가 오직 곤란한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온화한 태도로 표정을 부드럽게 하여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른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무엇이 어렵겠으며 재앙을 그치게 하는 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안의 실덕(失德), 밖의 실정(失政), 조정(朝廷)의 폐법(弊法), 민간(民間)의 근심과 한탄 가운데 비록 한두 가지 말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미 말하였는데 혹 생각해서 듣는 바가 없다면, 재앙을 만나 구언(求言)한다고 해도 한갓 문구(文具)가 될 것이니, 끝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옛부터 다스리는 데에는 대개 또한 많은 방법이 있었으나 반드시 언로(言路)가 통하고 막히는 데에 따라 불운(不運)과 행운(幸運)이 되었던 것은, 어찌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바가 두 사람의 힘으로 하는 만큼 쉽지 못하고 혼자 지혜로 도모하는 바가 반드시 여러 사람의 지혜로 도모하는 만큼 밝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공장(工匠)이 잠언(箴言)19055) 을 외어 간(諫)하였고 소경이 시(詩)를 외어 간하였으니, 이는 공장과 소경도 간할 수 있는 것이고, 공경(公卿)도 아울러 간하고 선비도 말을 전하여 간하였으니, 진실로 조정(朝廷)에 있던 자는 모두 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길에서 비방하고 상인들은 저자에서 헐뜯었으니, 일반 백성과 상인도 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漢)나라에 이르러 간대부(諫大夫)를 두게 되자 언로(言路)는 넓지 않게 되었고, 역대(歷代)의 밝은 임금이 바른 말과 지극히 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반드시 괴로움을 참고서 받아들이고 포상(褒賞)하여 장려하며 사망에서 말하는 자를 오게 하였으나 이는 자손 만세(子孫萬世)의 계책을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전하께서

一日, 臨深履薄之不已也。 雖然進諫非難, 納諫爲難; 求言非艱, 用言惟艱。 苟能而康而色, 舍己從人, 則於爲國乎何有? 於弭災乎何有? 內而失德, 外而失政, 朝廷之弊法、民間之愁嘆, 雖有一二之可言; 及其既言也, 罔或念聞, 則遇災求言, 直爲文具, 終何益哉? 自古爲治者, 蓋亦多術, 而必以言路通塞, 爲否泰者, 豈不以獨力所勝, 不如兼力之爲輕, 獨智所謀, 不必衆智之爲明乎? 古者工誦箴諫, 瞽誦詩諫, 則工瞽得以諫也。 公卿比諫, 士傳言諫, 則允在朝者, 皆得以諫也。 庶人謗於道, 商旅譏於市, 則庶人商旅, 亦得以諫也。 至漢始置諫大夫, 而言路不廣。 歷代明主, 莫不以直言極諫爲喜, 必隱忍以受之, 褒崇以獎之, 以來四方之言者, 不過爲子孫萬世計耳。 殿下即位之初, 勵精圖治, 群情上達, 少遇災變, 責己求言, 孜孜治道, 常若不足。 比恃功業之大, 負聖智之明, 虛懷受言, 漸不如初。 間因細過, 結其所短, 至有以言事枉受拷訊者, 又有以言根逮(擊) [繫] 面質者。 故中外以言爲戒。 徂茲春早, 下教求言,

즉위하신 초기에는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써서 여러 가지 사정이 위로 전달되었고, 조금이라도 재변(災變)을 만나면 자신을 책망하고 구언(求言)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힘쓰면서 항상 부족한 듯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공업(功業)의 큰 것을 믿고 성지(聖智)의 밝음을 자부하고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점차 처음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혹 작은 과실로 인하여 그의 잘못된 바를 결단하기도 하고, 일을 말했다가 그릇되게 고신(拷訊)을 받은 자까지 있으며, 또 소문의 근거를 대라는 문제로 잡아 가두고 대질하는 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외(中外)에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봄 가뭄 때에 교서(敎書)를 내려 구언(求言)하였으나 말하는 자가 거의 드물었고, 이번 천둥의 변고에 교지(敎旨)를 내려서 사실을 듣고자 하였으나 말하는 자는 더욱 적었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그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내면적으로 파급된 영향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개 말하는 자의 광망(狂妄)함은 내가 용서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말하는 자가 많은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기소서. 만약 광망하고 정직한 것에 노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정직함을 싫어한다는 평판을 초래하기 알맞으니, 잃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하로서 나라를 따르는 자는 적고 자신을 아끼는 자는 많은 것인데, 무엇이 괴로워서 뜻을 어겨가며 꺼리는 바를 범하는 말을 하여서 화(禍)를 초래하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먼저 할 일을 서두른다.’고 하였는데, 현재 먼저 힘쓸 바는 언로(言路)를 더욱 열어서 선도(善道)를 마무리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역대(歷代)의 임금들이 누군들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고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단지 올바른 사람은 화합하기가 어렵고 간사한 사람은 친하기 쉽기 때문에 자주 간사한 사람에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개 올바른 사람은 예모(禮貌)가 엄격하여 눈앞에 꺼려지고 의논하는 것이 고답적

而言者幾希? 今焉雷變, 降旨實聞, 而言者益寡。 殿下不見其形, 願察其影。 大抵言者之狂, 表我之能恕; 言者之多, 表我之能容。 倘或怒其狂直而不之恕, 則適足以招惡直之名, 而所失者多矣。 而況人臣徇國者寡, 愛身者多, 何苦爲拂意觸忌之言, 以取殃禍哉? 傳曰: “急先務。” 當今之急務, 其不在益開言路, 以終善道乎? 伏惟殿下更留三思。 歷代人君, 孰不欲遠佞人、近正人? 顧正人難合, 邪佞易親, 故屢爲奸佞所中。 蓋正人禮貌莊而憚於目, 議論高而逆於耳, 一嘖一笑使我不得便, 一予一奪使我不得私。 佞人惟恐承順之未至, 故多合少忤, 如以石投水。 唐太宗賞玩禁中樹, 宇文士及從旁, 美嘆不已。 帝正色曰: “魏徵嘗勸我遠佞人, 不知佞人爲誰。 今果信然。” 士及叩頭謝曰: “臣幸在左右, 不小有將順, 雖貴爲天子, 何所聊賴?” 太宗意解。 夫以太宗之明, 既知其佞而不能斥之者, 得非將順之言, 有以中之乎? 徂茲小臣柳陽春, 以鉛槧末枝, 素懷干進之心, 伺候上意, 顧於嗜欲聲色, 無所投其隙, 但以殿下雅意儒學,

(高踏的)이어서 귀에 거슬려,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나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한 번 주고 한 번 빼앗는 것도 나로 하여금 사사로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오직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부합함은 많고 거슬림이 적어서 마치 돌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대궐 안의 나무를 좋아하여 구경하자, 우문사급(宇文士及)이 곁에서 아름답다고 감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 다. 황제(皇帝)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위징(魏徵)이 일찍이 나에게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권하였지만 간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보니 과연 믿을 만하구나.’ 하니, 우문사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신은 요행히 좌우(左右)에 있으면서 조금도 뜻을 받들어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귀(貴)하기로는 천자(天子)가 되셨으나,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하자, 태종의 마음이 풀렸던 것입니다. 대개 태종의 현명함으로써 이미 그 간사한 자를 알기는 하였으나 배척하지 못했던 것은, 뜻을 받들어 순종한다는 말에 말려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소신(小臣) 유양춘(柳陽春)은 문필[鉛槧]의 변변치 못한 재주로 평소 벼슬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마음을 품고 성상의 뜻을 엿보았으나, 기욕(嗜欲)·성색(聖色)에 있어서는 그 틈을 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전하께서 본래 유학(儒學)에 뜻을 두는 것을 가지고 부합할 바를 생각하여, 이에 사부(詞賦)를 지어서 가을 장마를 반가운 비라고 말하였으니, 바로 우문사급(宇文士及)이 아첨을 남긴 것과 같습니다. 전하께서 처음에 비록 정색하여 견책함이 없었으나, 마침내 그를 파직(罷職)시켜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으니, 이는 태종(太宗)의 현명함으로써도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 대저 임금이 진실로 좋아하는 바가 있다면 어찌 한 그루의 나무나 하나의 사부(辭賦)뿐이겠으며, 진실로 기쁘게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임금의 욕심에 부합하는 데 교묘한 자가 또한 어찌 한 명의 우문사급(宇文士及)이나 유양춘(柳陽春)뿐이겠습니까? 좋아하는 물건이 앞뒤에 서로 있고

思所中之, 便作詞賦, 以秋霖爲喜雨, 卽士及之遺佞也。 殿下初雖未有正色之譴, 終能罷還其家, 是則太宗之明有所不及也。 大抵人主苟有所玩, 豈止一樹、一辭賦而已? 苟悅將順, 巧於中人主之欲者, 亦豈止一士及、一陽春而已哉? 玩好之物, 交錯於前後, 將順之臣, 窺覲於左右, 而惟有人主所守者正, 防之甚嚴, 故旁觀縮手而不敢發耳。 伏惟殿下更留三思。 任官之要道, 惟用望而已。 一國之望, 一國向之矣; 天下之望, 天下向之矣。 然衆固向之, 我固置之, 是謂拂衆。 拂衆者, 衆亦拂我也。 舜之舉十六相, 是所謂因天下之望而答之者也。 三代之治天下, 亦莫不皆然。 三公而論道經邦者, 惟其望, 故有變理之功。 三孤而貳公弘化者, 惟其望, 故有寅亮之效。 六卿而倡九牧者, 惟其望, 故有阜成之化。 用人之道, 有關於生民之休戚。 當今任用之道, 循資格以待有常之士, 舉人望以待成德之彥, 眞所以克知三宅而立民長伯者, 可謂至矣。 第觀比來, 以特恩驟陞崇班者, 或是儉邪之徒; 參決六部者, 或有狂妄之人。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신하가 좌우(左右)에 엿보더라도, 오직 임금의 지키는 바가 올바르고 방비함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곁에서 보고도 손을 오그리고 감히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 하소서.

관리(官吏)를 임용(任用)하는 중요한 방법은 오직 사람들이 바라는 자를 쓸 따름입니다. 한 나라에서 바라는 바는 한 나라에서 향하는 것이고, 천하(天下)에서 바라는 바는 천하에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이 진실로 향하는데 내가 굳이 내버려둔다면 이것이 대중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며, 대중을 어기는 바가 많으면 또한 나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舜)임금은 16명의 재상을 등용하였으니, 이것이 소위 천하에서 바라는 바에 기인하여 응답한 것입니다. 삼대(三代)19056) 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또한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었으니, 삼공(三公)19057) 으로서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 바라는 바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섭리(變理)한 공(功)이 있었으며, 삼고(三孤)19058) 로서 삼공(三公) 다음으로 그 교화(教化)를 넓히는 자는 그 바라는 바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량(寅亮)19059) 의 성과가 있었으며, 육경(六卿)19060) 으로서 구목(九牧)19061) 을 인도하는 자는 그 바라는 바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백성을 부유하게 만든 교화가 있었으니,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는 백성의 휴척(休戚)19062) 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임용하는 방법은 자격(資格)에 따라서 범상한 선비를 대우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등용하여 덕(德)을 쌓은 착한 선비를 대우하고 있으니, 참으로 삼택(三宅)19063) 을 옳게 알고 장백(長伯)19064) 을 세우는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는 바입니다. 다만 근래에 보건대, 특별한 은혜로 갑자기 높은 반열(班列)에 뛰어오른 자 중에 간사한 무리가 더러 있기도 하고, 육부(六部)에 참여하여 결단하는 자 중에 광망(狂妄)한 사람이 더러 있기도 하여, 물의(物議)가 널리 일어나서 대중의 바라는 바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

物議旁騰，不厭衆望。伏惟殿下更留三思。《書》曰：“扑作教刑”《記》曰：“夏楚二物，收其威也。”則學校之刑，固異於官府之刑也。又曰：“君子既知教之所由興，又知教之所由廢，然後可以爲人師也。”師道之難，又可知矣。我朝崇學校，以爲養育之地，大而成均館，小而四學，常養有其數，教育有其道，故多士雲集，執經問難，十百爲群。比年以來，學生解體，鼓篋者鮮少，師儒不揆師道之有缺，務爲刻薄以聚之，伺察其名簿，繫累其蒼頭。法愈嚴而愈不集，此豈古人待儒之道乎？夫儒者，游心六經，率是不羈之士，固當從容優樂以待之，不當束縛之，馳驟之，使若牛馬然。君子之於學也，藏焉修焉，息焉游焉。故安其學而親其師，樂其友而信其道。後之教者，使人不由其誠，教人不盡其才，其施之也悖，其求之也拂。故隱其學而病其師，苦其難而不知其益也。伏惟殿下更留三思。國家於兩界巨鎮，俱用武臣，尙矣。徂茲獻計者有曰：“兩界雖在漠北，不可無文治，請兼用文臣。”朝廷可其議，遂定交差之法。

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회초리로 관청의 형벌을 삼는다.’고 하였고,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하(夏)19065) · 초(楚)19066) 두 가지 물건은 위엄을 거두게 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학교(學校)의 형벌은 진실로 관부(官府)의 형벌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군자(君子)는 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연유를 알고 또 교육을 폐(廢)하게 되는 연유를 안 연후에야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사도(師道)의 어려움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학교(學校)를 숭상하여 양육(養育)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크게는 성균관(成均館), 작게는 사학(四學)에서 항상 양육하는 인원수가 있고 교육하는 데 도리(道理)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비가 구름같이 모여들어 경서(經書)를 가지고 어려운 것을 묻게 되어서 열 명 백 명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학생(學生)들이 해체(解體)되어 취학(就學)하는 자가 얼마 안되며, 사유(師儒)는 사도(師道)에 결합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 각박(刻薄)하게 모으기에만 힘쓰고 그 명부(名簿)를 살피며 그 노예[蒼頭]를 붙잡아 놓으니, 법(法)이 엄해질수록 더욱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옛사람들이 유자(儒者)를 대우하던 도리이겠습니까? 무릇 유자(儒者)는 육경(六經)에 마음을 두고 있어 대체로 속박을 받지 않는 선비이니, 진실로 조용하고 너그럽게 좋아하면서 대우함이 마땅하지 속박하고 경주하여 소나 말같이 부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군자(君子)는 학문에 있어서 수업(修業)할 때나 휴식(休息)할 때나 항상 학문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학문에 안주(安住)하고 그 스승에게 친근하며 그 벗을 좋아하고 그 도(道)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시킴에 있어 그 성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그 재주를 다하게 하지 않아서 베푸는 것이 어긋나고 구하는 것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 학문을 숨기고 그 스승을 미워하며 그 어려운 바를 괴로와하고 그 도움되는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

竊惟兩界控帶鞞國之藩屏，呼吸之間，有風有雷。今雖梯山納款，鼠竊拘偷，殆無寧歲，夜則擊柝以守城，晝則陳兵以俟變。加以民衆雜處，專事弓劍，民風土俗，絕殊南方。軍機叢集，民事無多，建牙統衆，必資壯士；平政理訟，特是餘事耳。而且文士之才力壯健，可任邊事者常少，骨貌弱劣，不閑軍務者常多，豈可循例文臣之名，不量其才與力而授之哉？近觀兩界判官，初則揀文臣之能弓馬者授之，今則不擇可否，名爲文臣職次相當，則例填其闕。夫有巨力而加重負，猶懼顛仆之不暇，況非烏獲之力而舉萬鈞之鼎，則其不至於絕膺以斃者，幾希矣。矧今開滿浦之路，以待三衛，而三衛旋復驕盈，欲肆猖獗，窺覲於江邊者，已有日矣。倘或輕犯邊庭，耀兵牧馬，沿江上下，不却不前，則敦陣整旅，雖賴長官之能，臨機掎角，舍判官誰其任之？制置非宜，有識危之。臣等以謂文武齊致，雖無內外之分，隨才授任，亦是任用之道。文臣而兼習武者，則勿拘職秩高下，隨闕差遣。若無其人，則擇武士之練達官曹者，依舊充

	<p>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나라에서 양계(兩界)19067) 의 거진(巨鎭)에 모두 무신(武臣)을 쓴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앞서 계책을 아뢰는 자가 말하기를, ‘양계(兩界)가 비록 멀리 북쪽에 있으나 문치(文治)가 없을 수 없으니, 청컨대 문신(文臣)을 겸하여 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조정(朝廷)에서 그 의논을 옳게 여겨 드디어 교대로 임명하는 법(法)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양계(兩界)는 말갈국(靺鞨國)의 울타리를 빙 둘러 막고 있으므로, 어느 순간에 변고(變故)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정성을 바치고 있으나, 좀 도둑들로 인하여 거의 편안한 해가 없습니다. 밤에는 딱딱이를 쳐서 성(城)을 지키고 낮에는 군사를 진쳐서 변(變)을 대비하는데, 게다가 여러 사람이 섞여 살면서 궁검(弓劍)을 전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풍과 고장의 풍속이 남방(南方)과는 현격하게 달라 군기(軍機)19068) 가 모여 있고 민간의 일은 많지 않으니, 무신(武臣)이 나가서 그 지방을 진정(鎮定)하고 백성을 거느리려면 반드시 장사(壯士)에게 도움받아야 하며, 정사(政事)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訟事)를 다스리는 것은 다만 그 밖의 일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사(文士)로서 재주와 힘이 장건(壯健)하여 변방의 일을 맡을 만한 자는 항상 적고 골격이 약하여 군무(軍務)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例)대로 문신(文臣)이라는 명칭에만 따라 그 재주와 힘은 헤아려보지도 않고서 제수(祭授)하겠습니까? 근래에 양계(兩界)의 판관(判官)을 보면, 처음에는 문신(文臣)으로서 궁마(弓馬)에 능한 자를 택하여 제수하였었는데, 지금은 적합한지의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명칭이 문신(文臣)으로 관직의 차례가 서로 해당되기만 하며 예(例)대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대개 큰 힘이 있어서 무거운 것을 질 수 있다고 해도 오히려 엎어질까봐 두려워하기에 겨를이 없을 텐데, 하물며 오획(烏獲)19069) 의 힘으로 만 균(鈞)19070) 의 술을 들 수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절빈(絕贖)19071) 하여 죽</p>	<p>差。或文或武，期於得人，則庶無曠官失人之弊。伏惟殿下更留三思。古之取民，代各有制，而貢助徹之法，無非什一之意也。國家因庶土之所入，而致謹其財賦之入。四方穀土，又皆品節之上中下三等，即《書》所謂“底慎財賦，咸則三壤。”之遺制也。地力有異，年分不同，故每當西成，守令審定之，監司檢覈之。其良法美意，亦不過什取其一也。第於政府、六曹同議之日，歲雖凶歉，未聞減租之論。歲若稍稔，便有加等之啓，生財大道，恐不如是。視民如傷，又安在哉？議之者有曰：“經用甚廣，倉儲未豐，盡從本等，慮或不足。雖云加等，下之所供不過升斗，上之所資可充支用，以茲制事，庸何傷乎？”是大不然。夫地力之生物有大數，人力之成物有大限。故取之有道，用之有節，則常見其有保；取之無度，用之無節，則常見其不足。豈非生物之豐耗有數，用物之多寡由人乎？漢文帝屢下減租之令，而卒底紅腐之效者，不過曰躬儉節用而已。曾未數世，武帝算及舟車，而未免虛竭之嘆者，良由內廣興作，外張甲兵，侈</p>
--	--	---

지 앓을 자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만포(滿浦)의 길을 열어 삼위(三衛)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위는 곧 이어 다시 교만함이 가득차 함부로 날뛰면서 강변(江邊)을 엿본 지 이미 며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 변경을 경솔하게 침범하여 군대의 위세를 보이고 말을 기르며 강(江)을 따라 아래위로 오르내리면서 물러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면, 진(陣)을 정돈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것은 비록 장관(長官)의 능함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시기에 임하여 앞뒤에서 협격(挾擊)하는 것은 판관(判官)을 버려두고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식견이 있는 자는 그것을 위태롭게 여깁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문무(文武)를 고르게 보낸다면 비록 내외(內外)의 구분 없이 재주에 따라 제수하여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임용(任用)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신(文臣)으로서 무사(武事)를 겸하여 익힌 자는 직질(職秩)의 고하(高下)에 구애되지 말고 결원(缺員)에 따라 임명하여 보내고,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무사(武士) 가운데 관리(官吏)로서 숙달된 자를 예전대로 충원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혹은 문관(文官), 혹은 무관(武官)으로 임명하되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직무를 게을리하고 사람을 잃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예전에 백성에게서 취(取)하던 것은 세대(世代)마다 각기 제도가 있었으니, 공법(貢法)19072) · 조법(助法)19073) · 철법(徹法)19074) 으로서, 그 취지는 10분의 1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토지의 수입으로 인하여 그 재부(財賦)의 수입을 신중하게 하고, 사방의 곡식이 나는 토지를 또 모두 상·중·하 3등(等)으로 등차(等差)를 세웠으니, 바로 《서경(書經)》에서 말한 바 ‘재물(財物)과 부세(賦稅)를 신중히 하여 모두 세 가지 등급의 토질에 따랐다.’고 한 유제(遺制)입니다. 지력(地力)에는 차이가 있고 연분(年分)은 같지 않기 때문에 추수[西成]를 하게 될 때마다 수령(守令)이 살펴서 정하고 감사(監司)가

汰無穹而已。是知用之能節則雖虛必盈，不能節則雖盈必竭，理之常也。當今冗費損之又損矣，至於僧尼之徒，坐食經費者，其數猥多，則曾不知損抑，而顧欲增賦，以贍國用，以困民力，此特不思之甚爾。議者又曰：“《記》曰：‘國無九年之蓄曰不足，無六年之蓄曰急，無三年之蓄曰國非其國也。’水旱難期，凶荒荐臻，積穀備災，在所不得已耳。”是又不然。《王制》有曰：“冢宰用地小大，視年之豐耗，以三十年之通，制國用，量入以爲出。”又曰：“三年耕必有一年之食，九年耕必有三年之食。以三十年之通，雖有凶旱水溢，民無菜色。”當是之時，取民不過什一之法，而制用有一定之規，故歲有豐凶，而賦無增損，則其所謂九年六年之蓄者，蓋率土臣庶通爲之計耳，固非獨豐公庾不及編氓之謂也。安可失典籍備慮之旨，忘先王子愛之心，而必取盈焉，以搖邦本乎？伏惟殿下更留三思。我東方奴婢之法，肇於箕子八條之教。而世傳其業，以給公私之役者，半於平民，而脫漏避役，無處追尋者，其麗不億。故陳告給賞之

검사하는 것이니, 그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취지는 또한 그 10분의 1을 취한  
 다는 데에 불과합니다. 다만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함께 의논할 적  
 에 비록 그 해 농사가 흉년이 들었더라도 조세(租稅)를 감(減)하자는 의논은  
 듣지 못하였고, 그 해 농사가 만약 조금 풍년들게 되면 곧 등급(等級)을 더하  
 자고 아뢰는 바가 있습니다. 재물을 내게 하는 큰 도리는 아마도 이와 같지  
 않을 듯하니, 백성 보기를 그대로 두면 다칠 것처럼 여기는 의도가 또한 어디  
 에 있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경비를 쓸 곳이 매우 많고 창고에 저  
 장한 바는 풍족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등급에 모두 따른다고 하더라도 혹시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비록 등급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바치는 바  
 는 되[升]나 말[斗]에 불과하지만 위에서 힘입은 바는 용도에 충분할 수 있  
 으니, 이렇게 일을 정하는 것이 어찌 손상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대개 지력(地力)에서 생산되는 산물(產物)은 큰  
 수(數)가 있고 인력(人力)으로 그 산물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습  
 니다. 그러므로 취(取)하는데 방법이 있고 쓰는데 절제가 있으면 항상 보유하  
 는 바가 있게 되고, 취하는 데 헤아려 보지 않고 쓰는 데 절제가 없으면 항상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생산되는 산물이 풍족하고 모자람은 수  
 (數)가 있고, 사물을 쓰는 것의 많고 적음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  
 까?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누차 조세(租稅)를 감면하는 영(詔)을 내려서 마  
 침내 홍부(紅腐)19075 의 성과에 이른 것은, 몸소 검소하고 경비를 절감하  
 는 데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지도 않아서 무제(武帝)  
 가 배[舟]와 수레[車]에까지 세금을 받았어도 창고가 비고 고갈된 탄식을 면  
 하지 못하였던 것은, 진실로 안으로는 일을 일으키는 것을 널리하고 밖으로는  
 군사를 떨쳤으며 사치함이 막히는 바가 없는 데에서 연유하였을 따름입니다.  
 이로써 쓰는 데에 절제할 수 있으면 비록 비었더라도 반드시 차게 되며, 절제  
 할 수 없으면 비록 찼더라도 반드시 고갈됨이 이치의 정상적인 것임을 알 수

令, 著于國典。 臣等竊聞, 嘗以甘露  
 寺奴婢屬於內需司, 散亡者亦多。 內  
 需司今據舊案, 聽人陳告, 乃有喜功邀  
 賞者, 其名曰興守, 自以陳告爲己任,  
 恢張投托之門, 誘動衆心, 蓋亦有年  
 矣。 大抵避重就輕, 賤隸之常態。 故  
 彼爲公賤者, 百役疲瘵之餘, 坐生其  
 心, 冒稱某代祖若母, 乃是甘露寺奴若  
 婢, 架空言, 張虛事, 相趨附於興守之  
 門, 以爲淵藪。 內需司官吏迭爲唇齒,  
 從而成之, 文移該司, 決屬如流。 避  
 役者得就投屬之謀, 陳告者坐享受賞之  
 利, 兩遂其欲, 其爲姦軌, 何時而已  
 哉? 非徒公賤爲然, 私賤亦有效之者  
 矣。 夫公賤者, 本是公家之隸, 移東就  
 西, 猶之可也。 至於私賤, 一人之傳  
 家, 其數能幾何? 一朝而奪屬, 其爲冤  
 抑, 何可勝言? 姦軌之情, 奪削之冤,  
 雖在輦轂之下, 安得一塵宸聰乎? 伏惟  
 殿下更留三思。 江原道蒜山堤堰, 嘗廢  
 爲民田, 以爲仰事俯育之資者, 積有年  
 紀。 頃在世祖朝, 賜上院寺僧學悅,  
 是非求福田利益, 輕民命而然也, 特出  
 於權宜一時之恩耳。 而今學悅既沒,  
 其徒猶以爲飽暖之具, 則使吾民復田爾



있으니, 이제 쓸데없는 비용을 덜고 또 더는 것이 마땅합니다. 승니(僧尼)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앉아서 경비(經費)만 축내는 자가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도 일찍이 줄이거나 억제할 줄은 모르고 다만 부세(賦稅)를 늘려서 나라의 용도를 넉넉히 하고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려고만 하니, 이것은 특히 생각지 않음이 심한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다시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나라에 9년의 비축이 없는 것을 부족하다 하고 6년의 비축이 없는 것을 급하다 하고, 3년의 비축이 없는 것을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기필하기 어려우며, 기근(飢饉)이 거듭 이르면 쌓아 놓은 곡식도 재해에 방비하여야 함은 부득이한 바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왕제편(王制篇)에 이르기를, ‘총재(冢宰)는 땅의 작고 큰 것을 기초로 하고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참작하여 30년간의 수입을 통산해서 나라의 용도를 제정하고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정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3년 경작하면 반드시 1년 먹을 식량의 저축이 있고, 9년 경작하면 반드시 3년 먹을 식량의 저축이 있어야 하니, 30년간의 수입을 통산해서 <10년의 잉여가 있게 되면> 비록 흉년이 들거나 가뭄·홍수가 나더라도 백성은 굶주린 얼굴빛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십분의 일의 법(法)에 불과하고 나라의 용도를 제정하는 것이 일정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해는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지만 부세(賦稅)는 늘리거나 줄이는 바가 없을 것이니, 그 이른바 9년·6년의 비축이라는 것은 대개 온천하의 백성을 통틀어서 계산한 것이지 진실로 공유(公庾)19076) 만 풍족하고 편氓(編氓)19077) 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전적(典籍)에 갖추어 있는 엄려한 취지를 잃고 선왕(先王)께서 자식처럼 사랑하시던 마음을 잊고 반드시 채워서 취(取)하기만을 도모하여 나라의 근본을 흔들리게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田, 其不在斯時乎? 逃賦空門者, 坐享其利; 服勞奉上者, 反至於愁嘆, 固非今日之所宜聞也。 而況此道士瘠民貧, 比他道爲尤甚乎! 且今寺刹, 無不廣占土田, 以爲己物而相傳之, 朝家從而復役, 故寺田日益多, 緇徒日益富。 其親屬相善之人, 亦利復役, 因緣暗錄者, 比比有之。 寺田既復其役, 則代受其勞, 非吾民伊誰? 此亦當今之一弊政也。 臣等曩於求言之日, 將此二弊, 再塵天聰。 一則以爲祖宗所爲, 一則以爲己著令甲, 俞音尙阻, 不勝缺望。 臣等聞古人有言曰: “天地不變, 不成施化; 陰陽不變, 物不暢茂。 大抵天下之事, 萬世不可變者經也, 隨時可變者權也。 故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易》之道也。 變其所當變, 更其所當更, 與時宜之, 帝王之政也。 若稽古昔, 舜承堯禪, 禮樂刑政, 其所更張多矣。 而況十六相, 堯所未舉而舜舉之; 四兇, 堯所用之而舜罪之。 當是時, 舜不以爲嫌, 堯不以爲非, 後世人無間言, 豈非能用一時之權也歟? 殿下以此二事, 爲萬世不可變者乎? 既非萬世之常, 則茲非一時之權乎? 變而通

우리 나라 노비(奴婢)의 법(法)은 기자(箕子)의 팔조(八條)의 교훈(19078) 에서 시작되었는데, 대대로 그 업(業)을 전승하여서 공사(公私)의 역사(役事)에 공급한 것이 평민(平民)의 반이나 되며, 그 중에서 누락되어 역사(役事)를 피하고 있으나 찾아낼 곳이 없는 자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신고하면 상(賞)을 준다는 영(令)이 나라의 법에 명세되어 있습니다.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일찍이 감로사(甘露寺)의 노비(奴婢)를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켰는데 흠어져 도망한 자가 또한 많다고 합니다. 내수사(內需司)에서 이제 구안(舊案)에 의거하여 사람들이 신고하도록 허락하자, 이에 공(功)을 좋아하고 상(賞)을 바라는 자가 있게 되었는데, 그 명칭을 ‘흥수(興守)’라고 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그의 임무로 삼아서 의탁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놓고 군중의 마음을 피어서 동요시킨 지 대개 또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대저 무거운 일을 피하고 가벼운 일로 나아가는 것은 천레(賤隸)의 공통된 태도이므로, 저들 공천(公賤)이 된 자는 여러 가지 역사(役事)에 피로한 나머지 얹으면 그러한 마음만 생겨 아무 대(代) 조부(祖父)나 조모(祖母)의 성(姓)을 사칭(詐稱)합니다. 이에 감로사(甘露寺)의 종과 계집종은 헛된 말을 엮어 만들고 헛된 일을 떠벌려서 서로 흥수(興守)의 문(門)에 붙좃아 연수(淵藪) 19079) 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수사(內需司)의 관리(官吏)는 교대로 순치(脣齒) 19080) 를 맺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서류를 만들어 문안(文案)을 해사(該司)에 보내면 결속(決屬)됨이 물 흐르듯 합니다. 역사(役事)를 피하는 자는 투속(投屬)하려는 계책을 이룰 수 있고 신고한 자는 얹어서 상(賞)을 받는 이익을 누리 양측이 그 바라는 바를 이루고 있으니, 그 간사한 바가 어느 때에나 그치겠습니까? 비단 공천(公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천(私賤)도 분뜨는 자가 있습니다. 대개 공천(公賤)인 자는 본시 공가(公家)의 노예(奴隸)이므로 동쪽으로 옮기고 서쪽으로 나아가더라도 괜찮지만, 사천(私賤)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의 가문(家門)에 대대로 전하는 것이니,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속적(屬籍)에

之，以固邦本，正在今日。伏惟殿下更留三思。

御書：

以言事枉受拷訊者，以言根逮繫面質者，指誰歟？驟陞崇班，或是儉邪之人；參決六部，或有狂妄之人，又指誰歟？增賦事，依《大典》，政府六曹磨勘以啓，有何不可亦言之歟？

末舟等啓曰：“以言事受拷訊者，生員徐坎元、朴英蕃也；以言根逮繫面質者，李德崇也。以儉邪驟陞崇班者，閔永肩也；以狂妄參決六部者，韓權也。年分事，前此連歲凶荒，而今以少稔，輒加等第，小民莫不怨之。且加賦非美事，故啓之耳。”傳曰：“豈以坎元、英蕃之冤而有今雷變乎？面質事，非特德崇。事若至此，皆可問質矣。年分之事，自祖宗朝，政府六曹磨勘以定。若如爾等之言，《大典》之法壞矣。永肩雖曰儉邪，未能指摘其狀；韓權雖曰狂妄，是少時事也，今則改行矣。”司諫金諶啓曰：“臣等非

서 빼앗기게 되면 그 억울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사한 정상과 빼앗긴 억울함이 비록 서울[輦轂之下]에서 있는 것이기는 하나 어찌 신총(宸聰)을 더럽혔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 하소서.

강원도(江原道)의 산산(蒜山) 제언(堤堰)은 일찍이 폐(廢)하여 민전(民田)으로 만들어서 양사부육(仰事俯育)19081) 하는 자본(資本)으로 삼은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조조(世祖朝)에 상원사(上院寺)의 중[僧] 학열(學悅)에게 내려 주었는데, 이는 복전(福田)19082) 의 이득을 구하고 더욱이 백성의 목숨을 경시하여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만 임지로 한때의 은혜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지금 학열(學悅)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 무리가 오히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 도구로 삼고 있다면,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전지(田地)를 복구하게 하는 것이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부역(賦役)을 피하여 불문[空門]으로 도망한 자는 앞서서 그 이득을 누리고 노력하며 윗사람을 받드는 자는 도리어 근심하고 한탄하게 된다면, 진실로 오늘날 마땅히 있어서는 안될 바입니다. 하물며 그 도(道)는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다른 도에 비해서 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사찰(寺刹)에서는 토전(土田)을 널리 차지 하지 않음이 없어 자기들의 소유물로 삼아서 서로 전하는 데, 조정(朝廷)에서도 따라서 복역(復役)19083)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寺田)은 날로 더욱 많아지고 중의 무리는 날로 더욱 풍족해지니, 그 친속(親屬)이나 서로 친한 사람들이 또한 복역(復役)을 이롭게 여겨서 연줄로 몰래 기록하는 자가 자주 있습니다. 사전(寺田)을 이미 복역(復役)해 주고 나면 그 노고를 대신 받는 것은 우리 백성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이것도 현재의 한 가지 폐정(弊政)입니다. 신 등이 지난번 구언(求言)하던 날 두 가지 폐단을 가지고 재차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조종(祖宗)에서 하던 바라 하고 한 가지는 이미 법전[令甲]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유음(兪音)19084) 으로 오

以坎元、英蕃之冤， 有以召雷變也。自坎元等受訊後， 言事者絕無。 永肩儉邪之狀，雖未能指摘， 國人誰不知之？ 韓權之狂妄， 今猶不悛， 願留神處之。” 傳于承政院曰：“以諫院疏意， 議諸大臣。” 沈澹議：“從諫弗拂， 進君子遠佞人， 帝王之大德。 且揀擇師儒， 久任不遞， 兩界守令文武交差， 亦爲國之先務， 皆當舉行。 但下三道田稅加等， 非永世常行之法， 適國用不優故加之耳。 江原道蒜山堤堰， 世祖大王施納， 不可輕改。” 洪應議：“諫院之疏， 有可行者， 有不可行者。 先王已行之事、已成之典， 不可輕改， 且不可以奉行者之不能盡其方， 變易其法也。 年分則今年下三道豐稔， 故加等耳。 學校則今方刻意更張， 專責之師儒， 使優待其儒生可也。 文臣判官姑試爲之， 必欲文武交差， 則亦有弊， 不可執一也。 陞崇(斑) [班] 參六部者， 果有儉邪狂妄， 則退之可也。 大抵疏意， 以從諫漸不如初爲主， 願優納。” 李克培議：“納諫諍、遠邪佞、任官待儒等事， 宜留心警省。 文臣沿邊判官除授事， 國法已定， 遽卽更改， 似爲紛

히려 막으시니, 실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듣건대,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지(天地)의 변화가 없으면 시화(施化)19085) 를 이룰 수 없고 음양(陰陽)의 변화가 없으면 만물이 무성하게 자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천하의 일은 만세(萬世)에 변할 수 없는 것이 경상(經常)이고, 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권도(權道)입니다. 그러므로 궁(窮)하면 변(變)하고, 변하면 통(通)하고, 통하면 오래 가는 것이 《주역(周易)》의 이치이고, 마땅히 변할 바를 변하게 하고 마땅히 고칠 바를 고쳐서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는 것이 제왕(帝王)의 정치입니다. 예전에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의 선양(禪讓)을 받은 것을 고찰해 보면, 예악(禮樂)·형정(刑政)을 고쳐서 새롭게 한 바가 많았으며, 더욱이 16명의 재상을 요(堯)임금은 등용하지 않았는데 순(舜)임금은 등용하였고 사흉(四凶)19086) 을 요임금은 등용한 바이지만 순임금은 죄주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순임금은 혐의하지 아니하였고 요임금도 그릇되게 여기지 않았으며 후세(後世) 사람들도 비난하는 말이 없었으니, 어찌 한때의 권도(權道)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만세(萬世)에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이미 만세(萬世)에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한때의 권도(權道)가 아니겠습니까? 변하면 통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해야 할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하였다. 어서(御書)에,  
 “일을 말한 것으로 그릇되게 고신(拷訊)을 받은 자, 소문의 근거 문제로 잡아 가두고서 대질(對質)시킨 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가? 높은 반열에 갑자기 뛰어오른 자가 혹 간사한 무리이기도 하고, 육부(六部)에 참여하여 결단하는 자에 혹 광망(狂妄)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가? 부세(賦稅)를 증가시킨 일은 《대전》에 의거하여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마감(磨勘)하여 아뢰게 한 것인데, 무슨 옳지 않음이 있어 또 말하는

擾。年分，觀察使或有不顧大體，邀求民譽，等第不中，則自祖宗朝，政府六曹或加等，或減等，何害於民？蒜山堤堰給民資生，誠爲惠政。至於公私賤內需司投屬之弊，則誠如諫院所啓。令該司禁防節次，商議施行爲便。”傳曰：“疏條，或有祖宗朝已行事，或有載《大典》者。甘露寺奴婢陳告，亦有該司掌之。”

가?”

하니, 신말주(申末舟) 등이 아뢰기를,

“일을 말한 것으로 그릇되게 고신(拷訊)을 받을 자는 생원(生員) 서감원(徐坎元)과 박영번(朴英蕃)이고, 소문의 근거로 문제로 잡아 가두고서 대질시킨 자는 이덕숭(李德崇)이고, 간사하면서 높은 반열에 갑자기 뛰어오른 자는 민영견(閔永肩)이고, 광망(狂妄)하면서 육부(六部)에 참여하여 결단한 자는 한환(韓權)입니다. 연분(年分)19087)의 일은 이보다 앞서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풍년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등제(等第)를 더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또 부세(賦稅)를 증가시킨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어찌 서감원·박영번의 억울함으로써 지금 천등의 변고가 있었겠는가? 대질(對質)하는 일은 비단 이덕숭뿐만 아니라 일이 만약 이와 같은 데에 이른다면 모두 묻고 대질할 수 있는 것이다. 연분(年分)의 일은 조종조(祖宗朝)부터 의정부와 육조에서 마감(磨勘)하여 정하는 것인데, 만약 그대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대전(大典)》의 법이 무너질 것이다. 민영견은 비록 간사하다고 하지만 그 정사(情狀)을 지적할 수가 없고, 한환은 비록 광망하다고 하나 이는 어렸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행동을 고쳤다.”

하니, 사간(司諫) 김심(金諷)이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으로는, 서감원·박영번의 억울함이 천등의 변고를 초래함이 있었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만, 서감원 등이 고신을 받은 후부터 일을 말하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영견이 간사하다는 정사는 비록 지적할 수 없지만, 나라 사람들이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한환의 광망(狂妄)함은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한 뜻을 가지고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심희(沈滄)는 의논하기를,

“간(諫)함에 따르고 어기지 않으며, 군자(君子)를 나오게 하고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제왕(帝王)의 큰 덕(德)입니다. 또한 사유(師儒)를 간택하여 오랫동안 임용(任用)하고 바꾸지 않으며, 양계(兩界)의 수령(守令)에 문신(文臣)·무신(武臣)을 교대로 임명하는 것도 나라에서 먼저 하여야 할 일이니, 모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하삼도(下三道)의 전세(田稅)에 등급(等級)을 더한 것은 영세(永世)에 변함없이 행할 법이 아니라, 다만 나라의 용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더하였을 뿐입니다. 강원도(江原道)의 산산(蒜山) 제언(堤堰)은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시납(施納)한 것이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사간원의 상소에는 행할 만한 것도 있고 행할 만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선왕(先王)께서 이미 행한 일과 이미 이루어져 있는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고, 또 받들어 행하는 자가 그 방도를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분(年分)은 금년에 하삼도(下三道)가 풍년들었기 때문에 등급을 더하였을 뿐입니다. 학교(學校)는 지금 바야흐로 애써 고쳐서 새롭게 하고 있으니, 사유(師儒)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워 그 유생(儒生)을 우대(優待)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신 판관(文臣判官)은 아직 시험해서 해야지 반드시 문신과 무신을 교대로 임명하고자 한다면 또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한 가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반열에 뛰어오르거나 육부(六部)에 참여한 자 가운데 과연 간사하고 광망(狂妄)한 자가 있다면 물리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저 상소의 뜻은 간(諫)함에 따르는 것이 점차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니, 너그럽게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간쟁(諫諍)을 받아들이고 간사한 자를 멀리하며 관직에 임용하고 유생(儒生)을 대우하는 것 등의 일은 마땅히 유의하여 경계하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문신(文臣)을 연변(沿邊)의 관관(判官)에 제수하는 일은 나라의 법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갑자기 바로 고친다면 변잡할 듯합니다. 연분(年分)에 있어서 관찰사(觀察使)가 혹시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의 칭찬만 구하여 등제(等第)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조(祖宗朝)부터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혹 등급을 더하기도 하고 혹 등급을 감하기도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산산(蒜山) 제언(堤堰)은 백성들에게 주어서 생계를 돕게 하는 것이 진실로 은혜로운 정사(政事)가 될 것입니다.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내수사(內需司)에 투속(投屬)하는 폐단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사간원에서 아뢰 바와 같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금하여 방지하게 하고, 절차(節次)를 상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  “상소의 조목이 더러는 조종조(祖宗朝)에 이미 행한 일이 있고 더러는 《대전(大典)》에 실려 있다. 그리고 감로사(甘露寺)의 노비(奴婢)를 신고하는 것도 해사(該司)에서 말도록 되어 있다.”</p> <p>하였다.</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2월 6일(신미)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전교(傳教)를 받들어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원점(圓點)19096)의 법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게으른 무리가 거관(居館)하는 데에는 힘쓰지 않고 대부분 남의 손을 빌려 유적(儒籍)에 서명(署名)하기 때문에, 비록 거관하지 않더라도 원점(圓點)의 수가 이미 3백에 차게 되니, 지극히 모람(冒濫)됩니다. 금후로는 생원(生員)·진사(進士)가 아침저녁으로 밥먹을 때마다 관원(館員) 1명과 양현고원(養賢庫員)이 직접 스스로 점검(點檢)하고 도기(到記)19097)에 써서 메꾼 수와</p>	<p>○承政院承教議生員進士圓點之法以啓: “一, 懶慢之徒, 不勤居館, 率多借手署名儒籍。 故雖不居館, 而圓點之數已滿三百, 至爲冒濫。 今後每當生員進士朝夕食時, 館員一人與養賢庫員, 親自點檢, 照數到記書填, 踏印監封, 永爲恒式。 而每月季, 長官一人,</p>

	<p>대조하여 도장을 찍어서 감봉(監封)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하소서. 그리고 매달 말에 장관(長官) 1명이 장무관(掌務官)과 함께 직접 명부(名簿)를 가지고 원점(圓點)의 다소(多少)를 계산해서 개록(開錄)19098) 하고 당상 낭청(堂上郎廳)이 두루 모두 서압(署押)하여 후에 참고할 때 의거하도록 하소서.</p> <p>1. 늙고 병든 아버지가 있어서 진성(陳省)19099) 을 받은 자는 마야흐로 향시(鄉試)·한성시(漢城試)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였었는데, 경외(京外)의 유생(儒生)으로서 비록 늙고 병든 아버지가 아닌데도 외람되게 진성(陳省)을 받고서 시험에 나아간 자가 자못 많습니다. 그후로 아버지의 나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 오래 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재 관리(所在官吏)로 하여금 상세히 보감(保勘)19100) 을 서도록 하여 진성(陳省)을 주고, 외방(外方)의 진성은 예조(禮曹)에서 모름지기 관찰사(觀察使)가 점이(粘移)19101) 한 것을 참고하여 대조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소서.</p> <p>1. 원점(圓點)을 외람되게 차지한 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 서명한 자와 모람되게 진성(陳省)을 받은 자는 한 번의 식년(式年)을 정거(停舉)19102) 하고, 그 관리는 파출(罷黜)하도록 하소서.”</p> <p>하였다.</p>	<p>同掌務官，親執名簿，計圓點多少開錄，堂上郎廳圓僉署押，以憑後考。一，有老病親，受陳省者，方許赴鄉、漢城試；京外儒生，雖非老病親，冒受陳省而得赴者頗多。今後親年老少、宿疾有無，令所在官吏，詳加保勘給陳省；而外方陳省，則禮曹須考察使粘移許照訖。一，濫占圓點者、代署他人名者、冒受陳省者，一式年停舉，其官吏罷黜。”</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2월 8일(계유) 2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와서 아뢰기를,  “조훈(趙勛)은 금산 군수(金山郡守)로 있을 때 백성들이 소 14마리[頭]를 잡아서 관(官)의 용도에 공급하였고, 그 아들 조광림(趙廣臨)은 생원(生員)에 합격하여 귀근(歸覲)19103) 하여서 경축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전과 품관(品官)들이 각기 면포(綿布)를 내어서 전두(纏頭)19104) 로 삼았는데도 받고서 물리치지 않았으니, 죄를 범한 것이 매우 중합니다. 그러므로 본부(本府)에서 본율(本律)에 죄를 더할 것을 청하였으니, 단지 율(律)대로만 시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p>	<p>○司憲府掌令奉元孝來啓曰：“趙勛爲金山郡守時，宰殺民牛十四頭，以供官中支辦。其子廣臨中生員，歸勤設慶宴，人吏品官各出綿布爲纏頭，受而不却，罪犯深重。故本府於本律請加罪，而只依律施行，未便。”傳曰：“事在赦前，又非入己之事。故如此論定耳。”元孝更請之，傳曰：“其考赦前</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고 또 입기(入己)19105)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논하여 정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봉원효가 다시 청하니, 전교하기를,  “사유(赦宥) 전의 일로서 죄를 다스린 예(例)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事治罪之例以啓。”</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2월 12  일(정축)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아뢰기를,  “조훈(趙勛)이 금산 군수(金山郡守)로 있을 때 2년 사이에 농우(農牛) 14마리 [頭]를 죽였으니, 이렇기 때문에 방자함이 심한 것입니다. 비록 사유(赦宥)를 지냈다 하더라도 계목(啓目)19110) 에 의거하여 죄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사유(赦宥) 전의 일은, 우리 나라에서는 간혹 때때로 추론(推論)함이 있었으나 중국(中國)에서는 없습니다. 신숙주(申叔舟)가 북경(北京)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장죄(贓罪)19111) 를 범한 일이 있었는데, 장차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죄명(罪名)을 써서 두 손을 뒤로 합쳐 묶어 저자에 세웠으나, 돌아오기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이 그의 직책에 도로 임명되었습니다. 괴이하게 여겨서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중국에서 도둑질하였다가 다행히 사유(赦宥)를 입었으므로 본직(本職)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유를 지낸 일은 추론(推論)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또한 문과(文科)의 시취(試取)는 이미 이루어진 법규(法規)가 있는데, 이제 초장(初場)에서 강경(講經)하는 법을 다시 세운다면, 일의 대체(大體)에 적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항구한 법식(法式)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유생(儒生)들이 학업에 게으르</p>	<p>○御經筵。 講訖， 掌令奉元孝啓曰：  “趙勛爲金山郡守， 兩年間宰殺農牛十四頭， 此故縱之甚者也。 雖經赦宥， 請依啓目抵罪。” 不聽。 領事洪應啓曰：  “赦前事， 我國則或有時而追論， 中國則無之。 申叔舟赴京時， 有一人犯贓， 將置極刑， 書罪名， 反縛立市。 及至還來， 則其人還任其職。 怪而問之， 有人答云：‘彼盜漢幸蒙赦宥， 得還本職。’ 臣謂經赦事追論未穩。 且文科試取， 已有成規， 而今更立初場講經之法， 於事體恐爲未便。” 上曰：“非欲爲恒式， 以儒生懶學， 姑試勸之耳。” 知事徐居正啓曰：“祖宗朝， 每式年正二月初試， 旋即覆試， 故儒生勤於經學。 今則於秋初試， 至春覆試， 故儒生等， 自謂記誦三冬， 則可以僥倖捷科矣， 皆專於製述， 而不勤於經學。 初場不可不講經也。” 應曰：“非熟讀</p>

	<p>기 때문에 우선 시험적으로 권(勸)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지사(知事) 서거정(徐居正)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는 식년(式年)마다 정월·2월에 초시(初試)를 보이고 곧 복시(覆試)를 보였기 때문에 유생(儒生)들이 경학(經學)에 힘썼습니다. 지금은 가을에 초시(初試)를 보이고 &lt;다음해&gt; 봄에 이르러 복시(覆試)를 보이기 때문에, 유생들이 스스로 삼동(三冬)19112) 에 기억하고 외면 요행으로 과거에 뽑힐 수도 있다고 여겨 모두 제술(製述)에 전념하고 경학(經學)에 힘쓰지 않으니, 초장(初場)에서 강경(講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경서(經書)를 숙독(熟讀)하지 않는 자가 몇 개월 사이에 어찌 기억하고 읽 수 있겠습니까? 대저 교양(教養)하는 방법은 인도하여 도와주고 권장(勸獎)함이 마땅한데, 유생들의 희망이 매우 높아서 사장(師長)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오교(五教)19113)를 삼가 펴되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는데, 법(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사성(大司成) 노자형(盧自亨), 사성(司成) 이문흥(李文興)·이종호(李宗顯), 전적(典籍) 이희철(李希哲)은 가르칠 만하니, 다른 직무(職務)에 임명하지 말고 사석(師席)을 전적으로 맡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언(正言) 신복의(辛服義)가 아뢰기를,      “사람의 재질(材質)은 고르지 않고 각기 장점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경학(經學)과 사장(辭章)을 겸하는 자는 대개 적으니, 오로지 강경(講經)으로써 선비를 뽑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승지(承旨) 경준(慶俊)이 대답하기를,      “문장(文章)과 경학(經學)은 본래 두 가지 이치가 아니어서 경학에 힘쓰는 자는 바로 제술(製述)에 능한 것인데, 경학이 어찌 문장에 방해가 되겠습니까?”</p>	<p>經書者，數月之間，安能記誦乎？大抵教養之方，當誘掖勸獎。儒生志願太高，雖師長小不慊，則輒謗議。古云：‘敬敷五教在寬。’其可繩之以法乎？今大司成盧自亨、司成李文興·李宗顯、典籍李希哲能教訓，請勿差他務，專任師席。”正言辛服義啓曰：“人之材質不齊，各有所長。經學、辭章兼之者蓋寡，專以講經取士，似若未穩。”上問左右，承旨慶俊對曰：“文章、經學，本非二致；勤於經學者，乃能製述，經學豈文章之累乎？但今士習浮靡，自居齷齪，已有他岐之念，故不勤學業耳。圓點考察之法，雖若細碎，不得不爾。”居正又啓曰：“今素王之殿，設天花板與地衣，是近於侈靡，非所以崇儉朴也。遼東及開城府聖殿皆不設焉，因祖宗朝舊制，勿設何如？”上曰：“卿言是也。其停之。”應又啓曰：“慶尙道沿邊諸鎮，地勢險固，若有城堡，則不難禦敵。今已拾石，請築之。”上曰：“可。”</p>
--	---	--

	<p>다만 현재 선비들이 풍습이 경박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른 갈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학업(學業)에 힘쓰지 않을 뿐입니다. 원점(圓點)을 고찰하는 법이 비록 자질구레하기는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서거정(徐居正)이 또 아뢰기를,</p> <p>“이제 소왕(素王)19114)의 전(殿)에 천화판(天花板)과 지의(地衣)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사치한 데에 가까우니, 검소함을 숭상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동(遼東)과 개성부(開城府)의 성전(聖殿)에는 모두 설치하지 않았으니, 조종조(祖宗朝)의 구제(舊制)에 의거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p> <p>“경(卿)의 말이 옳으니, 그만두도록 하라.”</p> <p>하였다. 홍응(洪應)이 또 아뢰기를,</p> <p>“경상도(慶尙道) 연변(沿邊)의 여러 진(鎭)은 지세(地勢)가 험하고 단단하니, 만약 성보(城堡)가 있다면 적(敵)을 방어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이미 돌을 주워 놓았으니, 쌓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p> <p>“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2월 14일(기묘)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권건(權健)이 아뢰기를,</p> <p>“중국 사신에게 일체 지급(支給)하는 물건은 국가에서 갖추고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찬(韓僎)이 성절사(聖節使)로서 북경(北京)에 갔을 때 무릇 보고 들은 바를 미리 전하여 알리는 것이 옳았는데, 일찍이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가 산해관(山海關)에 돌아와서 이봉(李封)을 만난 연후(年後)야 치계(馳啓)하였으니, 전대(專對)19119)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들건대, 새 천자(天子)는 법령(法令)이 엄하고 밝다 하니, 이제 진하사(進賀使) 등은 택하여</p>	<p>○御經筵。 講訖， 大司憲權健啓曰：“天使一應支給之物， 國家無不備待。 韓僎以聖節使赴京， 凡所聞見， 預先傳通可也。 曾不爲慮， 還到山海關， 見李封然後馳啓， 專對之義安在？ 且聞新天子法令嚴明， 今進賀等使不可不擇遣。 慮有一行之人， 或站路作弊， 或冒禁販賣者。 禁防節目， 親教以送何</p>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행(一行)의 사람들 가운데 혹 참로(站路)에서 폐단을 일으키거나 혹 판매(販賣)의 금지를 무릅쓰고 하는 자가 있으면, 금하는 절목(節目)을 친히 교시(敎示)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찬(韓僎)이 북경에 머무른 것이 30여 일이었는데 중국 사신이 올지 안올지를 보고 듣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그릇되었다. 진하사(進賀使)의 행차는 미리 폐단을 일으킬 것을 생각해서 절목(節目)을 별도로 교시할 수 없다.”

하였다. 권건이 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여러 도(道)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깃털을 가진 물새와 곰·돼지 전체를 잡아서 바치도록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외간(外間)에서 그것을 완호(玩好)하시는 것으로 의심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새는 화사(畫師)로 하여금 모방해서 그리게 하려는 것뿐이고 완호(玩好)하려는 것이 아니다. 곰과 돼지 역시 한때의 우연한 명령일 뿐이지 항공(恒貢)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권건이 또 아뢰기를,

“신이 평안도(平安道)에서 들건대, 내수사(內需司)의 위차(委差)가 양대비(兩大妃)19120의 내지(內旨)라고 일컬어 종이[紙]를 가지고 홍화(紅花)와 바꾸려고 하자 관찰사(觀察使)가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고 도회관(都會官)19121을 정하여 바치도록 독촉하였다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양대비전(兩大妃殿)에서도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경(卿)의 말과 같다면, 이는 필시 위차(委差)가 외람된 소치일 것이다. 그러나 감사(監司)가 어떤 법에 의거하여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물어 보도록 하라.”

如?” 上曰：“僎留京三十餘日，天使來否，不之聞見，果非矣。進賀使之行，不可逆料作弊而別敎節目矣。” 健又啓曰：“上曾令諸道諸種水鳥具毛羽、熊豬全體捉進。臣恐外間疑其玩好也。” 上曰：“水鳥則令畫師摹畫而已，非欲玩也，熊豬亦一時偶命耳，非使爲恒貢也。當使勿進。” 健又啓曰：“臣聞諸平安道內需司委差，稱兩大妃內旨，欲以紙貿紅花；觀察使分定諸邑，定都會官以督納，其弊不貲。” 上曰：“非但予所不知，兩大妃殿亦必不知也。若如卿言，是必委差汎濫所致也。然未知監司據何法而分定於諸邑乎？其問之。” 健又啓曰：“金礪母喪奸妓，係關風教，而棄之，臣未知其故。金順誠有三子礪、礪、礪，皆不謹守喪，醜聲騰播。請更推覈，以正風俗。且平壤人有云，此事終難諱之。” 上曰：“卿聞於何人乎？” 健曰：“鞫之則自然吐露矣。” 上曰：“年久事，強覈則必有後弊。” 健強請，移時言頗懇到。司諫金諶亦合辭共請。上辭氣稍厲曰：“予雖不明，豈不知母喪奸妓之爲悖乎？顧年久難明耳。”

하였다. 권건이 또 아뢰기를,  
“김석(金磻)은 모상(母喪)에 기생을 간통하였으므로 풍속(風俗)과 교화(教化)에 관계되는데도 내버려두었으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순성(金順誠)에게는 김하(金砮)·김거(金磔)·김석(金磻)의 세 아들이 있는데, 모두 상(喪)을 삼가서 지키지 않아 추한 소문이 들끓었으니, 다시 추핵(推覈)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양(平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일은 끝내 숨기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가?”  
하자, 권건이 말하기를,  
“그를 국문(鞫問)하면 자연히 실토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햇수가 오래 된 일을 굳이 추핵하면 반드시 뒷날의 폐단이 있게 된다.”  
하였다. 권건이 강력하게 한동안 청하였는데 말이 자못 간절하였고, 사간(司諫) 김심(金諶)도 합사(合辭)19122) 하여 함께 청하였다. 임금의 말씨가 조금 노기를 띠어 말하기를,  
“내가 비록 현명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모상(母喪)에 기생을 간통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햇수가 오래 되어 밝히기 어려운 것뿐이다.”  
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특진관(特進官) 이숙기(李淑琦)가 대답하기를,  
“사증(辭證)이 갖추어져 있으니, 추핵(推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는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비위를 맞추어서 국문(鞫問)하지 말 것을 힘써 주장하였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그르게 여겼다.

仍問左右，特進官李淑琦對曰：“辭證俱在，推覈爲便。”領事李克培希旨，力主勿鞫，議者非之。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2월 14 일(기묘)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위차(委差)가〉 평안도(平安道)에서 홍화(紅花)를 무역한 일은 양전(兩殿)께서 내게 교시하기를, ‘이는 위차(委差)가 외람된 소치이다.’ 라고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죄주겠다. 감사(監司)에게는 묻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內需司貿紅花于平 安道事，兩殿教予曰：‘是委差等汎濫 所致。’予當罪之，其勿問于監司。”</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2월 15 일(경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 지평(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어제 권건(權健)이 평양(平壤)으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평양 사람이 말하기 를, 「김석(金碶)의 일을 만약 끝까지 추국(推鞠)한다면 끝내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김석과 기생이 비록 죽었다 하더 라도 김석의 형 김하(金霞)가 모상(母喪)에 간통한 기생과 낳은 아이가 지금 모두 있으니,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대사헌(大司憲)이 말하기를, ‘평양(平壤) 사람이 말하기를, 「김석(金碶) 의 일을 끝까지 추국한다면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 기에, 내가 그 소문의 근거를 물었더니, 대사헌이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강경하게 묻는다면 언로(言路)에 방해되는 바가 없겠는가? 경(卿)들이 전에 김석의 일을 논하면서 김하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신말주 등이 아뢰기를, “김석을 추핵(推覈)하면 김하의 일은 자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아 뢰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와 김석은 각기 범한 바가 있는데 어떤 것은 말하고 어떤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p>	<p>○庚辰/御經筵。講訖，大司諫申末 舟、持平成世明啓曰：“昨日權健來自 平壤，啓云：‘平壤人言，金碶事若窮 推，則終難諱之。’且碶妓雖死，碶兄 碶母喪所奸妓與所產兒，今皆存焉，事 關綱常，不可不鞫。”上曰：“昨大司 憲云：‘平壤人言，碶事窮鞫則難諱。’ 予問言根，大司憲諱而不言。若更強 問，則言路無乃有妨乎？卿等前論碶 事，而不言碶事，何也？”末舟等啓曰： “覈碶則碶事自現，故不并啓。”上曰： “碶、碶各有所犯，而或言或不言，不 亦異乎？”仍問左右，領事沈滄對曰： “碶事係關綱常，須問言根，畢鞫可 也。”上曰：“母喪奸妓，事孰爲大？ 但覈之甚難，故棄之。若遣朝臣，則 務欲得情，必加拷掠吏民，其肯忍杖而 不誣服乎？如此沍寒，無辜之人，或有 杖下殞命，則豈不傷和召災乎？卿等常 以問言根爲非，今則云須問於大司憲，</p>

	<p>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대답하기를,  “김석의 일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반드시 그 소문의 근거를 물어서 국문(鞫問)을 마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상(母喪)에 기생을 간통하였으니 어느 일이 이보다 크겠는가마는, 다만 추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만약 조정(朝廷)의 신하를 보낸다면 실정을 알아내고자 힘써서 반드시 아전과 백성을 고문하고 때릴 것인데, 감히 장(杖)을 참으면서 무복(誣服)19124)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심한 추위에 죄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장(杖)을 맞다가 죽는다면, 어찌 화기(和氣)를 상(傷)하고 재앙(災殃)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경들은 항상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을 그릇되다고 하면서 지금은 반드시 대사헌(大司憲)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니, 어찌 앞뒤가 다른가?”  하니, 신말주·성세명이 말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무릇 들은 바가 오래 되면 묻기 어려운 것인데, 권건(權健)이 들은 바는 근일에 있었으므로 비록 묻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불려서 묻도록 하겠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으로서 거관(居館)하지 않는 자는 모두 가동(家僮)을 가두고, 원점(圓點)의 법을 더욱 엄하게 하여, 모여서 밥먹을 때 관원이 직접 스스로 점검(點檢)한다고 합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오교(五教)를 삼가 펴되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으니, 유생을 대우하는 도리를 이와 같이 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何前後之異也?” 末舟、世明同辭啓曰：“凡所聞，久則難問也。健之所聞在近日，雖問之可也。” 上曰：“予將召問之。” 特進官孫舜孝啓曰：“臣聞成均館儒生不居館者，皆囚家僮，更嚴圓點之法，會食時官員親自點檢。《書》曰：‘敬敷五教在寬。’待儒生之道，不當如是也。” 上曰：“卿言是也。” 同知事李克增啓曰：“儒生赴學者纔十餘人，而於學簿僞署他人名，虛張其數，故不得已如此立法也。” 上曰：“幼而行詐，雖達而爲公卿大夫，何所用乎?” 舜孝曰：“待儒之道，莫如在寬。” 言頗懇至。 克增執拗自是，啓曰：“舜孝之言非也。” 上曰：“然。雖曰在寬，不可任其所爲也。”</p>
--	---	---

	<p>“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유생으로서 학교에 나아가는 자가 겨우 10여 명인데, 학부(學簿)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짓 서명하여 그 수를 헛되이 늘리기 때문에 부득이 이처럼 법을 세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간사한 짓을 한다면 비록 현달(顯達)하여 공경 대부(公卿大夫)가 된다 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하였다. 손순효가 말하기를,      “유생을 대우하는 도리는 너그럽게 하는 것만함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말이 자못 간절하였다. 이극증이 스스로 옳다고 우겨대며 고집하여 아뢰기를,      “손순효의 말이 그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비록 너그럽게 한다고 하나 그 하는 바대로 맡겨 둘 수는 없다.”      하였다.</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2월 22      일(정해) 5번째기사</p>	<p>영안도 절도사(永安道節度使) 이극균(李克均)이 병(病)으로 사직(辭職)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의원(醫員)을 보내어 약(藥)을 내려 주었다.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教)하기를,      “먼 지방에서는 쉽게 약을 얻을 수 없어 특별히 내의(內醫)가 조제한 것을 내려 주니, 교서(敎書)를 내려 조심해서 조리하고 보전(保全)하도록 유시(諭示)하라.”      하였다.</p>	<p>○永安道節度使李克均以病辭職。上不許，遣醫賜藥。仍傳于承政院曰：“遠方未易得藥，特以內醫之劑賜之，其下書諭以謹慎調保。”</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      (成化) 23년) 12월 24</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教)하기를,      “듣건대, 김작(金碓)의 병세(病勢)가 위태롭다고 하니, 고기를 권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己丑/傳于承政院曰：“聞金碓病勢危殆，勸肉何如？”承政院啓曰：“《家禮》亦云：‘居喪病深，以肉汁調護，病</p>



<p>일(기축) 1번째기사</p>	<p>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가례(家禮)》에도 이르기를, ‘상중(喪中)에 병이 심하면 육즙(肉汁)으로 조리하고 병이 나으면 바로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조종조(祖宗朝)에서도 고기를 권한 예(例)가 있었습니다.”  하자, 사관(史官) 홍한(洪瀚)에게 명하여 고기를 싸가지고 가서 권하도록 하였다.</p>	<p>愈卽止。’ 祖宗朝亦有勸肉之例。” 命史官洪瀚齋肉往勸之。</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2월 24일(기축) 2번째기사</p>	<p>문무 재상(文武宰相)에게 명하여 후원(後苑)의 북소(北所)에 모여서 사후(射侯)하게 하고 술과 음악을 내려 주었으며, 이어서 이긴 쪽에게 각기 활[弓] 1장(張)씩을 내려 주었다.</p>	<p>○命文武宰相會後苑北所射侯。 賜酒樂，仍賜勝耦各弓一張。</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2월 26일(신묘) 2번째기사</p>	<p>임금이 양 대비전(兩大妃殿)에 진연(進宴)19147) 하고, 감선(監膳)19148) 한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예조 당상 낭관(禮曹堂上郎官)과 승정원(承政院)에 입직(入直)한 자, 병조 도총관(兵曹都總管)에게 술과 음악을 내려 주었다.</p>	<p>○上進宴于兩大妃殿。 賜酒樂于監膳司饗院提調、禮曹堂上郎官及承政院、入直兵曹都總管。</p>
<p>성종 210권,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2월 29일(갑오) 2번째기사</p>	<p>이달에 기후(氣候)가 봄같이 따뜻하여 지맥(地脈)이 풀려 퍼지고, 강의 얼음이 잠깐동안 얼어 햇빛만 보면 바로 녹아 없어져서 장빙(藏氷)19159) 할 수 없었다.</p>	<p>○是月，氣候暖如春，地脈融洩，江水暫合，見晞輒澌，不得藏氷。</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월 1일(병신) 4번째기사</p>	<p>겨울에 한강이 얼지 않았다. 이때에 와서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정숙지(鄭叔墀)에게 명하여 광주(廣州)·둔미(菴彌)·월계(月溪) 등지에서 얼음을 채취하게 하였다.</p>	<p>○冬月，江氷不堅。 至是令司宰監副正鄭叔墀伐氷于廣州菴彌、月溪等處。</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월 4일(기해) 1번째기사</p>	<p>좌승지(左承旨) 한언(韓偃)이 아뢰기를,  “신(臣)의 숙부(叔父) 한명회(韓明澮)를 오늘 발인(發引)하는데, 영번군(迎番軍)은 성문(城門)을 나서자마자 모두 도망하였고, 양주(楊州)의 군인(軍人)은 겨우 15명이어서 떠날 수가 없어 성문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p>	<p>○己亥/左承旨韓偃啓曰： “臣叔父明澮，今日發引，迎番軍纔出城門，竝皆逃散，楊州軍人纔十五名，未得發行，駐在門外。” 傳曰：“東水庫負氷軍人</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동빙고(東氷庫)의 얼음을 운반하는 군인 1백 명을 동원하여 부장(部將)으로 하여금 인솔하고 가서 인도하게 하고, 예장 도감(禮葬都監)의 관원과 경기 차사원(京畿差使員)은 모두 국문(鞫問)하라.”  하였다.</p>	<p>一百名，令部將率領馳往交付，其禮葬都監官及京畿差使員，並鞫之。”</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월 7일  (임인) 3번째기사</p>	<p>우부승지(右副承旨) 경준(慶俊)과 동부승지(同副承旨) 유윤겸(柳允謙)을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에 나누어 보내어서 빙정(氷丁)19168)의 많고 적음과 얼음을 저장하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p>	<p>○分遣右副承旨慶俊、同副承旨柳允謙于東西氷庫，審視氷丁厚薄及藏氷之狀。</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월 11일  (병오)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앞서 금산 군수(金山郡守) 조훈(趙勛)의 불법 사건(不法事件) 중에 환상곡(還上穀)을 외람되게 징수한 일에 대해서, 집의(執義) 한사문(韓斯文)을 보내어 추핵(推覈)하게 하고 또 번고(反庫)19193) 하게 하는 한편 그 남은 곡식을 따로 나누어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여러 해 동안 축적(蓄積)한 데에서 생긴 잉여곡(剩餘穀)을 왕년(往年)과 금년(今年)에 받아갔거나 내어놓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청컨대, 나누어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박안성이 또 아뢰기를,  “내농작(內農作)은 국가(國家)에서 백성에게 농상(農桑)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좌(左)·우(右)의 편을 나누어 승부(勝負)를 결정하고서 서로 경쟁을 하는 한편 모두가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을 갖추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는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벗짚[藁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보다 앞서서는 70동(同)에 불과(不過)하였었는데, 금년에는 2, 3</p>	<p>○御經筵。講訖，大司憲朴安性啓曰：“前者，金山郡守趙勛不法事件內，還上濫徵事，遣執義韓斯文推覈；又令反庫，分其剩穀，還給本主。臣意以謂以積年蓄積之剩餘，分給往今年受出之民，至爲未便。請勿令分給。”上曰：“然。”安性又啓曰：“內農作，國家所以示民以重農桑之意也。但分左右，以定勝負，互相爭競，皆欲辦難備之物，不得無弊。至如所用藁草，前此不過七十同，今年多至二三百同，此事雖不可廢也，請勿分左右，以除爭勝傾軋之弊。”上曰：“農桑，本也。自先王朝設內農作，所以示民務本，且有祈禱豐稔之意。至於花卉禽獸，但備觀覽也，暫設暫撤，無甚大弊。況難備之物，已令勿設，雖分左右，有何弊</p>

	<p>백 동이나 되도록 많이 늘어났으니, 그 일은 비록 폐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컨대, 좌·우의 편은 나누지 못하게 하여 승부를 다투느라고 난잡하게 구는 폐단을 제거시키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상(農桑)은 천하의 근본이다. 선왕조(先王朝)로부터 내농작(內農作)을 시행한 것은 백성에게 근본을 힘써야 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풍년을 기원하는 뜻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훼(花卉)나 금수(禽獸) 따위는 다만 관람용으로 잠시 설치하였다가 철거하는 것이므로 그다지 큰 폐단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이미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록 좌·우로 편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무슨 폐단되는 일이 있겠는가?”</p> <p>하였다.</p>	<p>事?”</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월 13일 (무신) 6번째기사</p>	<p>행 호군(行護軍) 김흔(金訢)이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근래에 대사헌(大司憲) 권건(權健)을 파직(罷職)하고 이어 외방(外方)에 귀양보냈습니다. 신(臣)은 들으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므로 건(乾)·곤(坤)의 위치가 정해지고, 낮고 높음이 펼쳐짐으로 해서 귀(貴)·천(賤)의 지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신분은 하늘과 땅 같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도(天道)는 아래로 접(接)하여 광명(光明)하게 되고, 지도(地道)는 낮고 겸손하면서 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交合)하면 만물(萬物)이 화통(和通)하지만, 위아래가 교합하지 아니하면 천하(天下)에 방국(邦國)의 도(道)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泰平)이 되느냐 비색(否塞)이 되느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위아래가 교합하느냐 교합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p> <p>그러므로 신하가 된 사람은 진실로 경(敬)을 지키고 충(忠)을 행해야 하는데, 이마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것이 경(敬)이 아니라 옷깃에 매달리고[牽裾]19194) 수레의 가슴걸이 끈을 끊는 것[斷鞮]19195) 이 경이며, 무엇이든</p>	<p>○行護軍金訢上疏曰：</p> <p>伏以近者罷大司憲權健職，尋竄之於外。臣聞天尊地卑，乾坤定矣；卑高以陳，貴賤位矣。君臣之分，猶天地之不可易也。然天道下際而光明，地道卑謙而上行，故天地交而萬物通。上下不交，天下無邦，爲泰爲否，在天</p>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윗사람의 의견에 아부하고 임금의 뜻에 순종만 하는 것이 충(忠)이 아니라 신념을 굽히지 않고 강직한 말을 하며 면전(面前)에서 따지고 조정에서 논쟁(論爭)하는 것이 충입니다. 그래서 조명(詔命)을 받들지 않는 자가 있어도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칙서(勅書)를 되돌려 보내는 자가 있어도 명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 당시에는 체벌(體罰)을 가하지 않고 후세에서도 이의(異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금의 위엄은 천둥과 같고 위세는 만균(萬鈞)보다 더 무거운 것인데, 만약 위엄으로써 진노(震怒)하고 무게로써 짓누른다면 꺾이거나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임금의 위엄에 항거하고 역린(逆鱗)19196) 을 건드려서 반드시 망하게 될 화근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다투어가며 아부하면서 용납되기를 희망하여 아부하는 행위가 풍조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갓 꿩어 엮드려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 경(敬)으로 여기고, 비위를 맞추고 뜻을 따르는 것만 충(忠)으로 여겨 국사(國事)가 날로 그릇될 것입니다. 국가(國家)에서 대간(臺諫)을 설치하여 이목(耳目)의 구실을 하는 책임을 맡겼는데, 무릇 어떤 사건을 들추어 탄핵(彈劾)하거나 아뢰는 적에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을 가리켜 세속(世俗)에서 말의 출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혹 친척들의 은미한 사이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경솔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도 있고, 혹은 평소의 대화하는 중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감히 확실하게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의 출처를 일일이 추궁한다면 반드시 대답하기에 피로를 느끼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이롭게 여길 것이므로, 죄인(罪人)을 징계할 수가 없고 조정의 기강(紀綱)이 쉽게 해이해질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대간(臺諫)이 말의 출처를 묻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번 청하여 이미 윤희를 받았으니, 이를 영구한 성법(成法)으로 삼아 그대로 지키고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한두 대간이 물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

地上下之交不交如何耳。故爲人臣者，固止於敬，止於忠。稽顙拜手非敬，牽裾斷鞅爲敬也；唯唯諾諾，阿意順旨非忠，謇謇諤諤，面折廷爭爲忠也。故有不奉詔者，不以爲慢上；有封還勅書者，不以爲慢命。當時不加戮，後世無異議，何者？人主威如雷霆，勢重萬鈞，苟震之以威，壓之以重，無不摧折糜滅者，誰肯抗天威批逆鱗，以取必亡之禍哉？必爭阿諛取容，諛佞成風，徒以俯伏聽命爲敬，逢迎順旨爲忠，而國事日非矣。國家置臺諫，以寄耳目之任，而凡舉劾彈奏之際，其言之所從出，俗謂之言根。或得之於親故隱微之間，而難於輕發，或得之於平昔閒話之中，而莫敢的指。若一一推其言之所自出也，則必疲於應對，利於含默，而罪人無以懲，朝綱易以弛矣。前此，臺諫累請不問言根，而已蒙允俞，永爲成法，所當守而不失。近有一二臺諫，建白以爲可問，是自毀之也而可乎？殿下以從諫弗拂、邇言必察之盛心，用一二臺諫之言，特垂清問，而權健敢抗拒不對，事涉不敬，罪在無赦。而原其情，則不過欲守其法也。守法之吏，

니, 이는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것인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는 간언(諫言)을 따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찮은 말도 반드시 살피시는 거룩하신 마음이 있으시면서도 한 두 대간의 말을 가지고 특별히 하문(下問)하셨는데, 권건(權健)이 감히 항거하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일은 불경(不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정상을 추구해보면 법(法)을 지키고자 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관리는 비록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그대로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대체로 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천만인(千萬人)이 권장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 천만인이 두려워하는데, 천만인이 권장되고 두려워함은 상과 벌이 한 번 바뀌는 계기에 달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권건이 죄를 얻은 것은 그렇게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만, 그 강직한 기풍을 꺾고 아부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문제는 이번 한 가지 일에 달린 것이니, 어찌 매우 애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유념(留念)하셔서 살피주소서. 권건은 이미 죄를 얻었는데, 신이 감히 구구하게 변명하는 것은 죄인의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므로 신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신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신은 몇 해 전부터 풍습증(風濕症)으로 인하여 허리 아래를 쓰지 못하게 되었으며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외람되게 성상(聖上)의 자비(慈悲)를 입어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약(醫藥)을 내려 주시어 질병(疾病)을 다스리게 하고 늣록(廩祿)을 주시어 굶주림을 구제하게 하였으므로 약간의 차도를 얻어 오늘까지 살아 있게 된 것인데, 실은 전하(殿下)께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부월(斧鉞)의 형(刑)을 받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늦은 것인데, 어떻게 감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전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은 기력(氣力)이 아직도 허약하여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스럽게도 대궐을 바라보고서 득

雖賞之猶懼不能，況從而罪之乎？賞一人而千萬人勸，罰一人而千萬人懼，千萬人之勸之懼，在一賞罰轉移之機。一權健之得罪，不足惜也，而其所以摧剛直之氣，長阿諛之風者，在此一舉，豈不深可惜哉？伏惟殿下留神垂察焉。權健既得罪，臣輒區區陳論，疑於黨罪人矣。臣非不畏罪也，然知而不言，臣罪大矣。臣數年以來，風濕交侵，腰下不遂，死亡無日。而猥蒙睿慈，曲霈洪私，賜醫藥而治疾，病頒廩祿而救飢餓，得至小間，以至今日，實殿下再造之恩也。今雖受斧鉞之誅，死猶晚也，安敢隱默以負殿下哉？臣氣力尙弱，足不能行，恨不得瞻望闕庭，仰陳得失，而遙上封章。書不盡言，言雖有盡，意則無窮，忠憤所激，不覺嗚咽。

命召訢。訢與疾赴闕。傳曰：“此非他問言根比也。金碣罪關綱常，不可

실(得失)에 대한 것을 직접 아뢰지 못하고 멀리에서 봉장(封章)을 올리니, 글로는 말을 다할 수가 없으며 말은 비록 다한다고 하더라도 뜻은 무궁합니다. 충분(忠墳)이 격동하여 저도 모르게 목이 메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김흔(金訢)을 부르게 하니, 김흔이 병든 몸으로 들것에 실려 대궐에 나아왔다. 전교(傳敎)하기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 말의 출처를 묻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석(金錫)의 죄는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금부(義禁府)에 구속시키고 채차 형신(刑訊)을 하였으나 그래도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권건(權健)은 평안도(平安道)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평양(平壤) 사람들의 말이, 김석의 사건은 자세히 추궁하면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국문(鞫問)할 만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가 들은 곳을 물었던 것인데, 권건은 고집을 부리고 말하지 않으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법에 의해 죄주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큰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자신은 대신(大臣)이었으므로 특별히 가벼운 쪽을 따라 죄준 것이다. 그대는 오랫동안 경연관(經筵官)으로 있었으면서도 지금 이러한데, 그 밖의 사람이야 어떻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김흔이 대답하기를,

“권건이 성상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비록 올바르지 못한 듯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법을 지키고자 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지금 이후부터는 아부하며 무조건 뜻을 다루는 자는 많고 강직한 선비는 적을까 걱정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안선(安璿)은 안관후(安寬厚)와 연족(連族)이다. 이렇게 불 적에 권건이 들은

不懲，故囚于禁府，再度刑訊，而尙不能得情，故棄之。 權健自平安道來啓曰：‘平壤人言：「碣之事詳推，則可以得情。」’ 予聞其言，謂其有據可鞫，卽問其所傳聞處，健固執不言。 君臣之間，豈可如此？ 予欲依法罪之。 然父是大勳，身爲大臣，特從輕罪之耳。 爾久爲經筵官，今尙如此，外人豈能家喻而戶曉哉？” 訢對曰：“健不對上問，雖似過當，然不過欲守其法耳。 臣恐自今以後，阿意順旨者多，而直士少矣。” 傳曰：“安璿連族於安寬厚，以此觀之，權健所聞安璿之言，亦未必出於正也。” 訢曰：“權健得罪，無足惜也。 若比比如此，則恐臺諫無見聞處矣。 璿之連族於寬厚，臣不敢知也。” 傳曰：“爾嘗久侍經幄，今何所啓乃爾耶？ 非他問言根比也，在所不得已也。”

【史臣曰：“訢病腰脚，以肩輿赴闕門而啓。 議論勁直，識者高之。”】

	<p>것과 안선이 말한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닐 것이다.”      하였다. 김흔이 말하기를,      “권진이 죄를 얻은 것은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만, 모두를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대간(臺諫)은 듣고 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안선이 안관후와 연족이 된다는 것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는 오랫동안 경약(經幄)을 모셨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아되는 바가 그러한가?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의 말의 출처를 물어보는 것과 비할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관계로 그러는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흔은 허리와 다리가 병들어서 들것에 실려 대궐 문에 나아가 아뢰면서도 의논(議論)이 강직하니, 식자(識者)들이 그를 훌륭하게 여겼다.</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월 18일      (계축)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환상곡(還上穀) 19212) 10석(碩)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자는 그 수령(守令)을 파직(罷職)시키라고 명하셨는데, 매우 다급하게 독촉하며 징수하므로 모두가 파산(破産)을 해가며 갚는 실정이어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청컨대, 그 명을 늦추어 주게 하소서.”      하고,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은 말하기를,      “신(臣)이 주군(州郡)의 저축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모두 이미 바닥이 나고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흉년이 든다면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전년(前年)에 경기의 백성들은 징수하지 말라는 명을 듣고 모두 수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약간의 풍년이 들었으니 독촉하여 징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御經筵。講訖，領事洪應啓曰：“京畿諸邑還上十碩未收者命罷，守令督徵甚急，率皆破産以償，民甚苦之，請緩其令。”特進官李克墩曰：“臣嘗目覩州郡之儲，皆已虛竭，歲若凶荒，則國胡以賑之？前年畿民，聞勿徵之令，專不輸納；今年則稍稔，督徵爲便。”同知事李瓊全曰：“今年雖稍稔，督徵還上，則臣恐百姓無所儲，而難於東作矣。且還上雖令蠲減，守令不致意，民不蒙其澤矣。”上曰：“今年不徵而脫有凶荒，則何以賑之？”洪應曰：“守</p>

	<p>하고,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全)은 말하기를,  “금년에 비록 약간의 풍년은 들었으나 환상곡(還上穀)을 독촉해가며 징수한다면,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백성이 저축할 수가 없어서 봄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또 환상곡을 비록 감면해주라고 하더라도 수령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의 말하기를,  “금년에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만약 흉년이 또 든다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는가?”</p> <p>하므로, 홍응이 말하기를,  “수령을 파직시키라는 명은 너무 엄중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징수한 수량을 내가 해당 관사(官司)에 물어보려고 한다.”</p> <p>하였다. 사간(司諫) 김심(金諶)이 아뢰기를,  “중춘(仲春)에 뇌성(雷聲)이 발하는 것은 진실로 예사 있는 일입니다만, 지금 맹춘(孟春)에 뇌성이 발하였으니, 비록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지적하여 어떠한 나쁜 조짐이 응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한 기상은 상서(祥瑞)를 부르고 어그러진 기상은 이변(異變)을 부르는 것인데, 어찌 원인이 없이 뇌성이 발하였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옥송(獄訟)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부르게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진실로 그럴듯하다. 정월(正月)에 뇌성이 발하는 것은 진실로 그 시기가 아니다.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니,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令罷黜之法太重。”上曰：“已徵之數，予將問於該司。”司諫金諶啓曰：“仲春雷乃發聲，固其常也。今當孟春之月而雷發，雖不可的指謂有某事而某咎徵應之。然和氣致祥，乖氣致異，豈無所自而然？臣恐獄訟冤抑，有以致之也。”上曰：“是語誠然。正月雷發，固非其時。不無冤抑之事，予當問之。”</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p>	<p>○御經筵。講訖，大司憲朴安性啓曰：“還上十碩以上未收者，罷黜之令太嚴，</p>



<p>(弘治) 1년 1월 23일 (무오) 2번째기사</p>	<p>“환상곡(還上穀) 10석(碩) 이상을 회수(回收)하지 못한 자는 파출(罷黜)하라는 명령이 너무 엄(嚴)하므로 수령(守令) 등이 매우 급박하게 독촉하며 징수하기 때문에, 민간(民間)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서 가산(家産)을 몽땅 팔아도 그 수량만큼 채울 수가 없으면 유리(流離)하여 생활 근거를 잃은 자가 많습니다. 그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매우 곤궁(困窮)한 자일 것이니, 징수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정언(正言) 박희손(朴喜孫)도 아뢰었는데, 임금(上)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은 매우 합당하다. 다만 국가(國家)에서 곡식을 회수하는 것은 오로지 민생(民生)을 위한 것이다. 나라가 부유(富裕)하면 백성이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는가? 백성들은 원대(遠大)한 생각이 없으므로, 그들이 믿는 바는 국고(國庫)뿐인데, 국고가 이미 바닥났으니, 앞으로 흉년이 들게 되면 어떻게 그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신(臣)이 듣기로는, 지난해에 백성들이 모두 환상곡을 준비하여 경창(京倉)에 모였었는데, 징수하지 않는다는 영(令)을 듣고 사방으로 흩어져나가 시장의 물건을 사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백성에게 기만을 당한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만, 비록 부자라고 하더라도 낱자를 기다리면서 납부하지 않는 자도 있으니, 낱자를 고찰하여 주현(州縣)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는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의무(李宜茂)는 아뢰기를, “수령(守令)들이 법령(法令)을 두려워하여 독촉하며 징수함이 너무 심하므로 파산(破産)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구(農器具)까지도 일체 내어다가 파는 형편이니, 매우 가련합니다.”</p> <p>하였는데, 임금(上)이 말하기를, “알았다.”</p>	<p>故守令等督徵太迫，民間騷擾。盡賣家産，不得盈其數，則流離失所者多。其至今未納者，必窮甚，勿徵何如？”正言朴喜孫亦啓之。上曰：“臺諫之言甚當。但國家之收穀，專爲民生也。國富則民安有不足者乎？民無遠慮，其所仰恃者國庫，而國庫已竭，飢饉將至，則何以救之？”領事尹弼商曰：“臣嘗聞昔年百姓，皆備還上聚于京倉，聞不徵之令，分散四出，或貿換市物。是則國家見欺於民也。彼貧寒者則已矣，雖富者，待日次未納者有之。考日次，專未納州縣，則徵之何如？”侍讀官李宜茂啓曰：“守令怵於法令，徵督太甚，民多破産。雖農器一切賣之，甚可憐也。”上曰：“知道。”特進官鄭文燭啓曰：“江原一道，比諸他道民戶尠少，凋殘莫甚，而今者道內流移者，一千二百餘戶，他道流移者，一千八百餘戶矣。其祖若父以下流移者，已令還本，而中因安琛建白而停之。此道之事，臣所目擊，敢啓。臣嘗觀平壤一府二十四旅，以江原一道之衆，反不能居其半，則不刷還可乎？”知事李克增啓曰：“江原一道，南接寧海等</p>
--------------------------------------	--	---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 한 도(道)는 다른 도에 비할 적에 민호(民戶)가 매우 적어서 조잔(凋殘)함이 막심(莫甚)합니다. 이번에 도내(道內)에서 유이(流移)한 자가 1천 2백여 호(戶)이고, 다른 도에 유이한 자가 1천 8백여 호인데, 그 조부(祖父)나 부(父) 이래로 유이한 자는 이미 본고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중간에 안침(安琛)의 건백(建白)으로 인하여 중지되었습니다. 그 도의 일은 신이 목격한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신이 보건대, 평양(平壤)은 한 부(府)에 24려(旅)인데, 강원도 전체의 인원이 도리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쇄환(刷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강원도는 남쪽으로 영해(寧海) 등지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곡산(谷山) 등지에 접하고 있으므로 지역이 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민호(民戶)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 더욱 쇄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p>	<p>處，西接谷山等處，則地非不廣也，而民戶之少，至於如此，尤不可不刷還也。” 上曰：“然。”</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월 23일  (무오) 3번째기사</p>	<p>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극돈(李克墩) 등이 와서 아뢰기를,  “근래(近來)에 있었던 뇌성(雷聲)의 이변(異變)으로 인하여, 옥송(獄訟)을 맡은 관리(官吏)가 청단(聽斷)에 실수가 있었을까 염려하시어, 전지(傳旨)를 내려서 노력하도록 꾸짖으셨는데, 신(臣) 등이 청송(聽訟)함에 있어 비록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식(知識)이 천단(淺短)하여 착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마도 억울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내농작(內農作) 때에 초완(草蓆)·진죽(眞竹)·해죽(海竹)·승색(繩索) 등의 물건을 그 써야 할 시기에 임박하여 모두 잘라서 허비해 버렸고, 또 태반이나 유실(遺失)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환납(還納)하라고 독촉하므로, 사람들이 매우 고민스럽게 여깁</p>	<p>○漢城府判尹李克墩等來啓曰：“近因雷變，慮獄訟官吏失於聽斷，乃下旨責勉。臣等於聽訟，雖盡心力，然知識淺短，不無錯誤，或有冤枉者。去年內農作時，草蓆、眞竹、海竹，繩索等物，當其用之之時，皆裁截破費，且大半遺失，而今者督令還納，人甚苦之。請勿徵。” 又啓曰：“畫員李季眞曾受公貿易回回青價，黑麻布十二匹，而卒</p>

니다. 청컨대, 거두어들이지 말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화원(畫員) 이계진(李季眞)이 일찍이 공무역(公貿易)하는 회회청(回回靑)19228)의 값으로 흑마포(黑麻布) 12필(匹)을 받고서 마침내 사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부(本府)로 하여금 그 본색(本色)19229)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의 가동(家僮)을 구속하고 연루된 자가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계진이 환납(還納)하지 못하는 것은, 회회청(回回靑)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민간에서 쓰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계진이 비록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청컨대, 본색(本色)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흑마포(黑麻布)를 배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조부모(祖父母) 이래로 유이(流移)한 자는 본관(本貫)으로 쇄환(刷還)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기내(畿內)에서 살며 생업(生業)에 안정하고 있는 자와 또 군역(軍役)에 편입되어 있는 자를 모두 본토(本土)로 쇄환한다면, 거기에 가봤자 이미 족친(族親)도 없고 또 전묘(田畝)도 없는데 옮겨다니는 사이에 손실(損失)되는 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에 이익은 없으면서 백성에게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청컨대, 도망하여 숨은 자 외에 그 나머지로 오랫동안 안정하여 살고 있거나 병적(兵籍)에 있는 자들은 쇄환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유민(流民)을 쇄환하는 일에 있어서는 근래(近來)에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강원도(江原道)는 지역이 넓고 사람은 적으니, 만약 쇄환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그 땅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하여금 본토(本土)로 돌려보내야 할 자의 인원수를 서계(書啓)하게 한 것

不買來，令本府徵其本色，囚家僮累及數百名。而季眞不能納者，以回回靑，非我國所產，亦非民間所用，季眞雖至死，不能納必矣。請勿徵本色，以黑麻布倍徵何如？”又啓曰：“祖父母以下流移者，盡刷還本貫。今居畿內安業且充軍役者，盡刷還本土，則適彼既無族親，又無田畝，遷徙之間，不無所失，無益於國，有怨於民。臣請逃避隱漏者外，其餘久遠安居所在籍兵者，勿令刷還。”傳曰：“流民刷還之事，近來大臣乃云：‘江原道地廣人稀，若不刷還，則遂棄其地。’故已令京畿監司應還本土者，名數書啓矣。餘皆從之。”

	<p>이다.” 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월 25일 (경신)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정난종(鄭蘭宗) 등이 와서 아뢰기를,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환상곡(還上穀)은 대다수(大多數)가 미납(未納)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근래에 이따금 은혜를 베풀어서 건감(蠲減)해 준 일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요행수를 바라고 당장 편안한 것만 생각한 탓으로 미루적거리며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신(臣) 등이 듣기로는, 임인년(19239)에 바야흐로 환상곡(還上穀)을 모아 바치려고 하였을 적에 국가에서 특별히 환납(還納)을 보류하라는 명(命)을 내리자 백성들은 모두 갚아야 할 곡식을 가지고서 면포(綿布)를 사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니, 환상곡을 독촉하여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처음에 정월(正月) 그믐으로 기한을 정한 것은 2월이 되면 농사철이 임박해지기 때문이었는데, 금년에는 윤정월(閏正月)이 있어 농사일은 급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 등이 애초에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서 기한을 정한 것이므로 진실로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상곡은 지금 서둘러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지금 만약 보류한다면 파직(罷職)당하는 수령이 많을 것이고, 국가에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윤정월 그믐으로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여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호조(戶曹)에서 아뢴 것이 과연 내 뜻과 부합한다. 전년(前年)에 조금 풍년이 들었을 적에 징수해 들이는 것이 좋겠다. 만약 금년에 흉년이 든다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가령 금년에 또 풍년이 든다고 하더라도 금년은 금년대로 받아들일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지금은 이미 절기가 늦었으나 마땅히 징수해 들이는 것을 보류해야 하며, 또 근일(近日)에 이의무(李宜茂)를 교하(交河)로 환차(還差)했을 적에 환상곡(還</p>	

上穀)을 독촉해 들이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백성의 생활은 돌보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에만 힘쓰고자 한다면 이는 국가에서 백성을 구제해주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회(沈澹)는 의논하기를,  
“무릇 농민들이 수확(收穫)한 다음에는 전세(田稅)나 환상곡과 같이 관(官)에 바쳐야 할 물건이 많으므로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수요도 부족한 형편인데, 더구나 왕년(往年)의 환상곡까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기한을 물려서 징수해 들이기로 한다면 비록 전택(田宅)과 우마(牛馬)를 다 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값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한을 물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신(臣)의 의견은 호조(戶曹)에서 아뢰 바와 같습니다. 이는 전일(前日) 경연(經筵)에서 이미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월 그믐으로 기한을 정한 것이니, 지금 다시 그 기한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금년에는 풍년이 들었으므로 전세(田稅)를 내는 것은 그전과 같은데, 왕년(往年)의 환상곡(還上穀)과 경기(京畿)의 환상곡을 출납할 때 독촉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의 저축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물(財物)과 우마(牛馬)를 모두 팔고 또 전지(田地)까지도 잇따라 팔고 있는데, 전지와 재물이 없으면 그 형편이 흩어져 도망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년의 계획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른바, ‘풍년이 흉년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관(主管)하는 관사(官司)에서는 오로지 곡식 저축에만 힘쓰고, 수령(守令)으로서 임(臨)하고 있는 자도 대부분 파직

(罷職)이 될까 겁이 나서 한결같이 각박하게 독촉하고 있으니, 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야 할 일은 다만 성상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聖上)의 배려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요즈음 경기(京畿)의 환상곡(還上穀)을 독촉하며 징수함으로 인하여 민간(民間)에서 전지(田地)와 우마(牛馬)를 팔아 이를 갚느라고 심지어는 떠돌이가 되어서 살 곳을 잃은 자까지 있습니다. 윤정월(潤正月)은 옛 2월입니다. 마땅히 환상곡을 주어 진휼(賑恤)해야 할 시기이므로, 진실로 백성에게서 취해 올 수는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미 정월 그믐까지 기한을 정하였다가 또다시 윤정월로 기한을 바꾼다면 이는 백성에게 신임을 잃는 것입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금년에는 이미 절기가 늦었으니, 가을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 수납(收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호조(戶曹)에서 아된 것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정월(正月)이후부터는 대부분 공채(公債)나 사채(社債)에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한 해의 풍년을 가지고 과거 5,6년 동안 짊어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비록 윤달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농사에 있어서는 2월과 다를 것이 없으며,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어려움은 윤달이 있을 때 더욱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달만 한정하여 징수해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부득이하여 창고의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구제하였던 것인데, 아직 다 수납(收納)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관사(官司)의 계청(啓請)이 진실로 대의(大義)에는 부합합니다. 그러나 옛부터 정월 이후로는 백성들이 모두 창고의 곡식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지난해에 비록 조금

	<p>풍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식량이 넉넉한 백성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 독촉해서 징수해 들인다면 반드시 파산(破産)하게 될 것입니다.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신승선(愼承善)은 의논하기를,  “지금 만약 기한을 물려서 독촉하며 다 수납(收納)하게 한다면 소동이 생기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보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아직까지 수납하지 못한 환상곡은 가을을 기다려서 다 징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월 27일  (임술)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광주(光州)는 본래 큰 고을로서 사무(事務)가 복잡하였는데, 지금 관관(判官) 우윤공(禹允功)이 화살을 맞은 것으로 인하여 옥(獄)에 구속된 자가 매우 많아져서 오래도록 사무를 폐(廢)하였습니다. 가령 마침내 죄인(罪人)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불과(不過)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오래도록 관사(官事)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그 읍호(邑號)를 현(縣)으로 강등(降等)시켜 현감(縣監)을 속히 차견(差遣)하고, 그 토지(土地)는 분할하여 가까운 곳의 잔읍(殘邑)에 소속시키는 한편, 간사스러운 인리(人吏)들은 전가 사변(全家徙邊)19240) 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이 말하기를,  “윤필상(尹弼商)의 아뢴 바에 의한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였는데, 윤필상이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의 풍속은 본래부터 야박하고 악독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p>	<p>○壬戌/御經筵。講訖，領事尹弼商啓曰：“光州本巨邑，事務繁劇，今以判官禹允功中矢，繫獄者甚多，久廢事務。假令終得罪人，亦不過處事矣，不可以此久廢官事。請降號爲縣，速差縣監；其土地割屬旁近殘邑，人吏之豪猾者，全家徙邊。”上顧問左右，大司憲朴安性曰：“依弼商所啓爲便。”弼商曰：“全羅風俗素稱薄惡。世祖朝有一朝官，欲捕逃奴婢往康津，其奴等設宴饋之，遂縛其主杖之，督出賤籍，至拔其足指，盡縛帶行。奴子二人逃脫，奔告于官，卽捕得之，事聞，凌遲處死。此等惡風，不可不痛繩也。”</p>

	<p>세조(世祖) 때에 어떤 한 조관(朝官)이 도망간 노비(奴婢)를 잡고자 하여 강진(康津)으로 갔었는데, 그 노비들이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다가 마침내 그 주인을 결박하여 곤장을 때리면서 천적(賤籍)19241) 을 내어놓으라고 재촉하였고, 심지어는 그 발가락까지 뽑아내었으며, 데리고 간 일행을 모두 결박하였습니다. 마침 데리고 갔던 종[奴子] 두 사람이 탈출하여 관가(官家)에 달려가서 고(告)하였기 때문에 즉시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조정에 보고하여 능지 처사(凌遲處死)시켰는데, 그러한 악독한 풍습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월 29일 (갑자) 1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충익부(忠翊府)의 진연(進宴)을 받았는데, 대마도(對馬島) 주(主)가 특송(特送)한 상관인(上官人) 직선(職善) 등도 들어와 참석하게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輕)에게 명하여 유시(諭示)하게 하기를,</p> <p>“오늘 내가 여러 대신들과 함께 연회(宴會)를 베푸는데, 너희들이 마침 왔으므로 또한 이 연회에 참석하게 한 것이니, 먹고 마시도록 하라.”</p> <p>하니, 직선 등이 이마를 조아리며 말하기를,</p> <p>“저희들이 마침 이러한 때에 오게 되어 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니, 성상(聖上)의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는데, 직선 등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甲子/上御仁政殿，受忠翊府宴。對馬島主特送上官人職宣等亦入參。命禮曹判書柳輕諭之曰：“今日予與群臣同宴，爾等適來，亦令參宴，其飲之。”職宣等稽顙曰：“我等之來，適當此時，得與是宴，上恩說不能盡。”職宣等賜物有差。</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월 29일 (갑자) 2번째기사</p>	<p>어탁(御卓)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그리고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에게 하사(下賜)하였다.</p>	<p>○賜御卓于領敦寧以上及政府、司饗院提調。</p>
<p>성종 21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월 30일</p>	<p>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이승장(李承張)이 병사(病死)하였다. 임금이 듣고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p> <p>“무슨 병으로 죽었으며,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는가?”</p>	<p>○乙丑/藝文館檢閱李承張病死。上聞之，問于政院曰：“以何疾而死也? 其死幾日乎?” 政院啓曰：“傷寒而死，</p>



<p>(을축) 1번째기사</p>	<p>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상한(傷寒)19244) 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4일이 되었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앞으로는 비록 당상관(堂上官)이나 근시(近侍)의 신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과 주서(注書) 등이 병들어서 고생하거든 아뢰도록 하고, 의약(醫藥)을 내려 주어 그것을 상례(常例)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p>	<p>于今四日矣。” 傳曰：“今後雖非堂上官，近侍之臣若弘文館、藝文館及注書等病苦，則啓給醫藥以爲例。”</p>
<p>성종 21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윤1월 5일(경오) 2번째기사</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바닷조개[海蛤] 백 개를 바쳤다. 그 이름은 강요주(江瑤柱)인데, 비인(庇仁)·내포(內浦) 등지에서 생산된다. 날씨가 추울 때에 해구(海口)의 조수(潮水) 머리에 물이 줄어들고 진흙이 드러난 곳에 나는데, 흑시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며, 그 맛은 보통 조개[蛤]와 같지 아니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여석은 성품이 본래 간사하고 아첨하여 임금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사는 일은 하지 아니함이 없었다.</p>	<p>○忠淸道觀察使金礪石獻海蛤百箇，其名江瑤柱，產於庇仁內浦等處，日寒時海口潮頭水落泥生處，或產或不產。其味與常蛤不類也。  【史臣曰：“礪石性本邪諂，於媚悅君上之事，無所不至。”】</p>
<p>성종 21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윤1월 12일(정축)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고 광양군(廣陽君) 이세좌(李世佐)를 인견(引見)하였다. 이세좌가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는 땅이 좁고 백성이 많아서 백성이 가진 논에 종자를 뿌리는 수량이 많아도 한 섬에 미치지 못하고 적게는 열 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 자, 한 치의 땅을 서로 빼앗기를 다투어 사람을 상해하는 자가 종종 있으니,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래에 한재(旱災)로 인하여 아직 입거(入居)19310) 를 정지하였으나, 양계(兩界)19311) 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으니 미리 대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입거하게 하는 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큰 일을 이루는 데에는 작은 폐단에 구애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국가에서 이미 초정(抄定)하였으니,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丁丑/御經筵。講訖，引見廣陽君李世佐。世佐啓曰：“慶尙道地窄民衆，民之有水田也，其落種之數，多不過一碩，少不及十斗。以此寸田尺地，互相爭奪，至於傷人者比比有之，此非細故也。比因旱災，姑停入居。然兩界地廣而人稀，不可不預爲之備，則入居之事，亦不可緩也。臣妄謂成大事不拘小弊，國家既已抄定，待秋成入送何如?” 上曰：“卿言是也。當待秋入送。” 又啓曰：“《大典》載二十年改</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마땅히 가을을 기다려서 들여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20년 만에 양전(量田)19312) 을 고친다고 실려 있는데, 경기(京畿)와 하삼도(下三道)19313) 는 연한(年限)이 이미 지났는데도 양전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川]가 변하고 개[浦]의 물이 말랐으며, 전지가 모두 허물어진 곳에도 백성이 세(稅)를 면제받지 못하고, 혹은 노사(鹵瀉)19314) 의 땅에 물을 끌어넣어서 논을 만들어 백성이 그 이(利)를 받는 곳에도 그 세를 내지 아니하니, 백성의 이해(利害)의 차(差)가 심합니다. 하삼도는 다른 도(道)에 비할 것이 아니며, 산술(算術)에 정통한 자가 매우 많으므로, 양전(量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더욱이 지금 외방(外方)에 일이 없으니, 모름지기 이때에 미처서 양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내가 장차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성(固城) 지방에서 왜구(倭寇)가 어민(漁民)을 찢러 죽인 일을 고성 현령(固城縣令)이 첩보(牒報)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민을 찢러 죽일 뿐만 아니라 왜적이 언덕에 배를 대고 어민을 잡아 와서 묻기를, 「이곳 인가(人家)에 누가 부실(富實)하냐?」고 하니, 어민이 부실한 집을 가리켜 주자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모두 거두어서 배에 싣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신이 창원 부사(昌原府使) 박문형(朴文衡)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는데, 아직 마치지 못하여 미처 계문(啓聞)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변장(邊將)이 후망(候望)을 삼가지 아니하고 방비를 게을리하여 왜선(倭船)이 향하는 곳을 즉시 치보(馳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은 청컨대, 고성 현령(固城縣令)과 사랑 만호(蛇梁萬戶)와 봉수군</p>	<p>量田, 而京畿、下三道年限已過, 不改量田。 故川反浦落, 田盡缺毀, 而民未免稅。 或鹵瀉之地, 引水作水田, 民享其利, 而亦漏其稅, 民之利害懸絕。 下三道則非他道之比, 精算術者甚多, 量田甚易。 況今外方無事, 須及此時量田爲便。” 上曰: “予將議于大臣。” 又啓曰: “固城地面倭寇刺殺漁人事, 固城縣令牒報。 而有人言, 非唯刺殺漁人, 賊倭泊船于岸, 拘執漁人, 問之此處人家, 誰爲富實, 漁人指示富家, 賊倭遂入其家, 盡收財物, 載船而歸。 臣令昌原府使朴文衡文鞫之, 未畢, 未及啓聞。 大抵邊將不謹候望, 緩於備防, 倭船所向, 不卽馳報, 故屢致犯邊。 臣請固城縣令及蛇梁萬戶、烽燧軍等, 竝重論, 發邊遠充軍, 以警其餘。” 上曰: “畢推後論罪可也。” 又啓曰: “彌助項設鎮事, 初則禹賢孫建議, 而其後曹淑沂審定。 彌助項距南海縣九十餘里城古介以北, 則有人居且有田; 城古介以南至彌助項六十里之地, 則茂林豐草, 絕無人家。 而議者以陸水所在, 倭船往來常泊, 於此置鎮, 則可以防賊倭之往來矣。 然陸水</p>
--	--	---

	<p>(烽燧軍) 등을 모두 중하게 논죄하여 먼 변경에 보내어 충군(充軍)시켜 그 나머지 사람을 깨우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추책을 마친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미조항(彌助項)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은 처음에는 우현손(禹賢孫)이 건의(建議)하였고, 그 뒤에는 조숙기(曹淑沂)가 살펴보고 정하였습니다. 미조항은 남해현(南海縣)과 거리가 90여 리인데 성고개(城古介) 이복은 사람이 살고 있고 전지도 있으나 성고개 이남에서 미조항까지 60리 지역은 숲이어서 풀이 많아서 인가가 전연 없는데, 의논하는 이가, ‘육지의 물이 있는 곳이어서 왜선이 왕래하며 항상 여기에서 머물기 때문에 진을 설치하면 왜적의 왕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나, 육지의 물이 있는 곳은 미조항뿐만 아니라 동서(東西)의 산기슭이 있으니, 왜선이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더라도 저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四鎭)의 군사를 나누어서 미조항에 방수(防戍)하게 하고, 또 군사를 동원하여 성을 쌓게 하는 것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움이 있습니다. 청건대, 과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19315)에게 물어서 그 도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아뢰도록 하겠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조회하러 오는 왜인인지를 분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흰 옷과 흰 갓을 갖춘 자가 모두 왜인이 아닙니다. 또 고기잡이로 직업을 삼으면서 틈을 타서 우리 백성을 침략하는 자는 그 무리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활을 잘 쏘는 자로 하여금 배 안에 숨겨 두고 밖으로는 고기를 잡는 모양을 보이면 저들이 반드시 틈을 타고 이</p>	<p>所在, 非但彌助項, 東西山麓皆有之; 倭船雖不得泊於此, 亦可依於彼。 今分四鎭之軍, 戍於彌助項, 且發軍築城, 徒無益而有害。 臣請罷之。” 上曰: “問諸左議政, 令其道監司、兵使更審以啓。” 又啓曰: “臣嘗聞朝倭未辨, 此虛語也。 彼著白衣白笠者, 非盡倭人也。 且以捕魚爲業, 而投間抵隙, 以剽掠我民者, 其徒固不多也。 若國家令善射者, 隱於舟中, 外示捕魚之形, 則彼必乘間而至矣。 於是射殺二三倭人, 而仍語之曰: ‘汝所持弓劍之物皆棄之。’ 則彼必畏服而盡棄之矣。 一舉可滅, 不在於此乎? 盡死無餘, 則島主安得而知之? 昔者潛巖殺倭之事, 亦若此也。 又有固城鄉吏以彈丸盡殺倭人之犯邊者, 流傳至今矣。 金季貞、李蓀、呂承堪等皆曰: ‘彼倭人之犯境者, 今亦一舉而可盡滅也, 但畏國禁耳。’ 上曰: “島主自鄭誠謹回還, 已懷憤怒, 不宜如此以啓邊釁也。” 又啓曰: “尊卑貴賤等級載《大典》, 非不詳盡。 而近來京中則或有犯宰相前導而不下馬者, 外方則亦有至犯教書而不下馬者。 陵上之風, 漸不</p>
--	---	---

	<p>를 것입니다. 이때에 두 세 왜인을 쏘아 죽이고는 인해 말하기를, ‘너희가 가진 활이나 칼 같은 물건을 모두 버리라.’고 하면, 저들이 반드시 두려워하여 모두 버릴 것이니,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모두 남김없이 죽이면 도주(島主)19316) 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잠암(潛巖)이 왜인을 죽인 일도 이와 같습니다. 또 고성(高城)의 향리(鄕吏)가 탄환으로 변경을 침범하는 왜인을 모두 죽였는데, 지금까지 그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p> <p>하자, 김계정(金啓貞)·이손(李蓀)·여승감(呂承堪) 등이 모두 아뢰기를, “변경을 침범하는 왜인은 지금도 한 번에 모두 없앨 수 있으나, 다만 국가의 금법을 두려워할 뿐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정성근(鄭誠謹)이 돌아올 때로부터 이미 분노(憤怒)를 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하여 변경의 틈을 내게 할 수 없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존비(尊卑)·귀천(貴賤)의 등급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어 자세하고 극진하지 아니함이 아닌데, 근래에 서울 안에서 혹시 재상(宰相)의 전도(前導)를 범하면서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는 자도 있으며, 외방에서는 교서(敎書)의 행차를 범하여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는 자까지도 있으니,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속을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법을 다시 밝히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재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엄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p> <p>하였다.</p>	<p>可長。請申明其法。”上曰：“卿言是矣。輕宰相，乃輕朝廷也，不可不痛禁也。”</p>
<p>성종 21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p>	<p>임금이 선농(先農)19350) 에 친히 제사하였다. 대차(大次)19351) 에 이르러 전교하기를,</p>	<p>○丁亥/上親祀先農，至大次，傳曰：“神位向背及拜位，圖寫以啓。”政院</p>

(弘治) 1년 윤1월 22  
일(정해) 1번째기사

“신위(神位)의 향배(向背)와 배위(拜位)를 그림으로 그려서 아뢰라.”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곧 이를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환궁(還宮)할 때에 규(圭)19352) 를 잡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한가?”  
하니,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輕)가 아뢰기를,  
“규(圭)는 상하(上下)에 신(信)을 통하고 조하(朝賀)를 받으며 군신(群臣)에 임  
하고 중국 사신을 대(待)할 때에 마땅히 잡는 것인데, 환궁할 때에는 아마도  
잡을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친경(親耕)19353) 때에 규(圭)를 놓고 쟁기[耒]를 받아서 오퇴례(五推禮)  
19354) 를 행하기를 마치고는 곧 밭이랑 가운데에서 도로 규를 잡는 것은  
예식에 온당치 못할 듯하다. 규를 놓은 곳에 물러가서 규를 잡는 것이 어떠하  
겠는가?”  
하니, 유지가 아뢰기를,  
“상교(上教)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대차(大次)에 돌아와서 날이 밝은 다음 오퇴례(五推禮)  
를 행하고, 관경대(觀耕臺)에 올라서 밭갈이를 구경하였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가 칠  
퇴례(七推禮)를 행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겸(魚世謙)·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약동(李約東)·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사간(司諫) 김심(金諶) 등이  
구퇴례(九推禮)를 마치자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이 서인(庶人)을 거느리고  
차례로 1백 묘(畝)를 갈기를 마쳤다. 밭이랑을 다스리는 자가 농가(農歌)를  
부르면서 밭이랑을 다스리기를 마치고는, 봉상시 정(奉常寺正)이 늦벼[種]와  
올벼[穆] 씨를 받들고 뿌리기를 마쳤다. 임금이 대차(大次)에 돌아와서 전교  
하기를,  
“선농(先農)에 제사하는 것은 경사(慶事)이고, 또 반사(頒赦)의 전례(前例)도

卽啓之。 傳曰：“還宮時， 當執圭歟  
否？” 禮曹判書柳輕啓曰：“圭所以通信  
於上下， 受朝賀、臨群臣、待天使時，  
當執之矣。 還宮時， 則恐不必執也。”  
傳曰：“親耕時釋圭受耒， 行五推禮。  
訖， 卽於畦畝中還執圭， 於禮未穩， 退  
却釋圭處執圭， 何如？” 輕曰：“上教允  
當。” 祭畢還大次， 平明行五推禮， 升  
觀耕臺觀耕。 月山大君婷、領議政尹  
弼商、領敦寧尹壕行七推禮， 兵曹判書  
魚世謙、吏曹參判李約東、大司憲朴  
安性、司諫金諶等行九推禮。 訖， 奉  
常寺副正帥庶人， 以次耕百畝， 畢治畝  
者， 唱農歌。 治田畝畢， 奉常寺正捧  
種穆之種播之。 訖， 上還大次。 傳  
曰：“祀先農， 慶事也。 且有頒赦前  
例， 其議于領敦寧以上。” 沈滄、尹弼  
商、尹壕僉議啓曰：“上教允當。” 駕  
還， 耆老、儒生、女妓等以次獻歌謠。  
其耆老歌謠曰：“禮樂百年而興， 蓋有  
待於今日。 諸侯九推而舍， 幸復觀其  
繡儀。 天地同權， 臣民胥悅。 恭惟主  
上殿下， 挺天縱之聖， 握乾符而乘。  
克儉克勤， 體夏禹之溝洫； 無淫無逸，  
卽周文之康田。 方撫太平之無爲， 尙

있으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가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대가(大駕)가 돌아오자 기로(耆老)·유생(儒生)·여기(女妓)들이 차례로 가요(歌謠)를 올렸는데, 기로의 가요는 이러하였다. “예악(禮樂)이 백년 만에 일어나니 대저 오늘날을 기다린 것이며, 제후(諸侯)가 구퇴례(九堆禮)를 마치니 아름다운 의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지(天地)가 함께 기뻐하고 신민(臣民)이 서로 즐거워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聖人)으로서 건부(乾符)19355) 를 잡고 왕위에 오르셨네. 검소하고 부지런하심은 하우씨(夏禹氏)의 구혈(溝洫)19356) 에 힘쓰심을 체득하시고, 음탕함이 없고 안일함이 없으심은 주문왕(周文王)의 강전(康田)19357) 을 본받았습니다. 바야흐로 태평 무사함을 누리는데 오히려 광전(曠典)을 거행하지 아니함을 염려하였네. 큰 일은 제사에 있음을 생각하여 반드시 자성(棗盛)19358) 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소인(小人)이 의지하는 바인데 감히 가색(稼穡)을 뒤로 하겠습니까? 이에 길일(吉日)을 택하니 바로 맹춘(孟春)의 절기입니다. 푸른 단(壇)을 동쪽 들에 설치하여 풍년을 매우 일찍 빌었고, 감색(紺色) 수레를 남쪽 밭이랑에 거둥하여 쟁기를 잡고 밭을 가시니, 못 신하는 그림자처럼 추창(趨蹌)하고 만백성은 구름처럼 모여서 구경합니다. 풍년이 들어 기장과 벼가 많기를 빌고 우리 곳집[庾]이 섬[島]처럼 언덕처럼 쌓이기를 노래합니다. 난여(鑾輿)19359) 가 돌아오자 다행히 황도(皇道)19360) 의 넓음을 따랐고 천안(天顏)19361) 에 기쁨이 있으니 함께 백일(百日)의 밝음을 우러러 봅니다. 가요를 지어서 부르니 푸르고 푸른 옷감이 늘어섰고, 서도(瑞圖)19362) 를 받들어 올리니 옹기종기 선아(仙娥)19363) 가 웅위합니다. 신 등과 같은 자는 수역(壽域)19364) 에 노닐고 춘대(春臺)에 섭니다. 나이는 상유(桑榆)19365) 에 닿았는데 은혜는 장맛비처럼 학발(鶴髮)

慮曠典之未舉。念大事之在祀，宜潔棗盛，況小人之攸依，敢後稼穡？乃涓其吉，惟孟之春。設青壇於東郊，祈年孔夙；服紺轅於南畝，秉耒以耕。群臣景從而趨蹌，萬民雲集而觀聽。祈豐年多黍多稌，歌我庾如坻如京。鑾輿載回，幸遵皇道之蕩蕩；天顏有喜，咸仰白日之昭昭。撰歌謠而列子衿之青，青獻瑞圖而擁仙娥之簇簇。如臣等優游壽域，息偃春臺，景迫桑榆，恩獲霖於鶴髮。壽域嵩岳，誠倍殫於蟻忱。謹獻頌曰：於皇我王，允文允武，作其卽位，佑我大東。日燠日寒，惟風惟雨，迄用康年，有富無窶。群黎百姓，日用飲食，王曰臣工，各敬爾職。在昔聖王，所其無逸，圖匱於豐，惟穀之恤。乃眷東郊，厥土惟沃，乃秉黛耜，乃駕縹輶。于以耕之，于王之籍，其種維何，我稷我黍。于以薦之，于簠于簋，神錫純嘏，聖壽於萬。玉趾一舉，三農知勸，以興嗣歲，以開百室。粒我烝民，維王之極，殷禮既稱，法駕言旋。歡騰闐闐，光動山川，祥風披拂，化日舒長。黃童白叟，蹈舞康莊，顧惟臣輩，僂僂羸廡，

	<p>에 더함을 얻었습니다. 태산 같은 축수(祝壽)를 올리며 개미 같은 작은 정성을 갑절이 되도록 다합니다.</p> <p>삼가 송(頌)을 올립니다.</p> <p>‘아아! 거룩하신 우리 왕은 문(文)·무(武)를 겸하셨네.</p> <p>왕위에 오르시어 우리 나라 도우셨네.</p> <p>더위 추위 고루하고 비와 바람 때맞췄네.</p> <p>풍년을 이루어서 부유하고 넉넉하며</p> <p>모든 백성 일용 음식 가난함이 없어라.</p> <p>왕이 말씀하시기를, 신하들아, 너희 직분 공경하라.</p> <p>예전의 성왕들은 안일함을 일삼지 않았네.</p> <p>풍년에도 가난을 염려하여 곡식만을 걱정했네.</p> <p>동녘 들을 돌아보니, 그 땅이 기름져라.</p> <p>검은 보습 손에 잡고 푸른 멩에 소에 매워</p> <p>이에 밭을 가니 임금의 적전(籍田)19366) 이네.</p> <p>그 종자 무엇인가, 벼와 기장이라네.</p> <p>보(簠)와 궤(簋)에 이를 담아 신(神)에게 제사하니,</p> <p>신께서 복을 내려 만수무강하오리다.</p> <p>임금이 한 번 거동하자 삼농(三農)19367) 이 권장되며</p> <p>오는 해를 일으키고 온 겨레를 열어 주니,</p> <p>우리 백성 먹는 곡식 오직 왕의 은덕이네.</p> <p>성대한 예식 다 마치고 대가가 돌아오니,</p> <p>백성들 기뻐하고 산천이 빛이 나네.</p> <p>상서 바람 일어나고 덕화가 퍼지니,</p> <p>어린이와 늙은이가 한길에서 춤추네.</p> <p>생각하면 신 등은 굽고 여윈 몸으로</p>	<p>扶携殘骨，拭目休光。望之如雲，曰惟我后，千秋萬歲，作民父母。”其儒生歌謠曰：“寅賓出日，授時之政克修；敬恭明神，祈年之禮孔夙。天步載旋於黃道，輿頌謹獻於彤墀。恭惟主上殿下，舜哲、堯明、文謨、武烈。禮樂追三代之盛，禋祀不愆；倉廩餘九年之儲，粢盛已潔。茲當驚蟄之閏月，亦復用牲於東郊。於昭重穀之誠，丕顯先農之祀。設庭燎而晰晰，陳幣帛之粦粦。駿奔青壇，袞衣耀，籩豆之薦，躬秉黛耜。玉趾臨原濕之吻，八蜡可通，五禮咸穆。五日風，十日雨，坐見時若之休；千斯倉，萬斯箱，終協年豐之慶。誕舉縟典，允屬昌辰。臣等俱以樸楸之資，仰荷菁莪之化。籍田獻賦，才雖劣於岳祈；擊壤騰謠，情敢後於父老？遂作頌曰：明明我王，臨下有赫。昧爽丕顯，夕惕若慄。無輕民事，所寶惟穀。於維弘治，元年閏月，大開閭闔，御于八極。乃命春官，乃頒號令。號令維何？聿修農政。載諏吉日，用祈豐年。思樂東郊，爰有公田，我王戾止，昭事先農。駿奔僇僇，嗟嗟臣工。八音克諧，享祀不</p>
--	--	---

쇠약한 몸을 이끌고서 좋은 이 광영 눈을 닦고 구경하며,  
 가뭄에 구름을 기다리듯 공손히 비는 말은  
 우리 임금 천만세에 백성 부모 되옵소서.”  
 유생(儒生)의 가요는 이러하였다.  
 “돋는 해를 공경히 맞이하여 수시(授時)19368) 의 정사를 잘 다스리고, 밝은  
 신(神)을 공경하여 기년(祈年)19369) 의 예식이 매우 엄숙합니다. 하늘의 궤  
 도는 비로소 황도(黃道)를 따라 돌고, 못사람의 송축(頌祝)은 삼가 대궐에 올  
 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요(堯)임금처럼 착하고 순(舜)임금  
 처럼 밝으시며, 문왕(文王) 같은 계획에 무왕(武王) 같은 공을 세웠네. 예악  
 (禮樂)은 삼대(三代)의 성대함을 따라서 제사함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창름(倉  
 廩)은 9년의 저축이 남아서 자성(棗盛)이 이미 깨끗하네. 이에 경칩(驚蟄)의  
 윤월(閏月)을 당하여 다시 생(牲)19370) 으로 동교(東郊)에서 제사하고, 곡식  
 을 중히 하는 정성이 밝아, 선농(先農)의 제사가 크게 빛났습니다. 딸에는 햇  
 불이 밝게 비치고 올리는 폐백(幣帛)은 아름답습니다. 푸른 단(壇)에 나아가니  
 곤의(袞衣)가 변두(籩豆)를 올리는 곳에 빛나고 검은 보습을 잡으니 임금의  
 발길이 높고 낮은 들에 임하셨습니다. 팔석(八蜡)19371) 에 통할 만하고 오  
 퇴례(五推禮)가 모두 엄숙합니다.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어 내리니 시절의 아  
 름다움을 볼 수 있고 곳집과 노적이 많이 쌓여서 풍년의 경사에 부합합니다.  
 이에 아름다운 예식을 행하니 진실로 좋은 때에 당하였습니다. 신 등은 모두  
 노둔한 자질로서 우러러 인제 양성의 교화를 입었습니다. 적전(籍田)에 글을  
 올리니 재주는 비록 수복(壽福)을 비는 데 모자랄지라도 격양가(擊壤歌)를 올  
 리는 심정은 감히 부로(父老)에 뒤지겠습니까? 드디어 송(頌)을 지어 올립니  
 다.  
 ‘밝고 밝은 우리 임금 백성에게 임하시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까지 조심하네.

忒，祝有嘏言，介爾景福。我王曰嘒，  
 公卿百執，惟天惟祖，付予歷服。國  
 依於民，民依於食，民苟惰業，君誰與  
 足？訓之導之，是誠在我。我其躬耕，  
 敢有違者？爰降靈壇，乃撫御耦。太  
 農撰器，失喜噎嘔。原濕龍鱗，阡陌  
 繡錯。五推而舍，其耕澤澤，以供棗  
 盛，孝思維則。天謂我王，嘉乃勤民，  
 陰鷲下民，室家溱溱。終爾千畝，百  
 穀咸殖。四人成功，污萊乃闢。天謂  
 我王，爾德馨香，予何以錫？降福將  
 將。曰雨而雨，曰暘而暘，多黍多稌，  
 豐年穰穰。天謂我王，嘉乃克敬，保  
 之佑之，必有餘慶。子子孫孫，俾熾  
 而昌，毋曰予聖，罔念作狂。兢兢業  
 業，維我訓是式；日新又新，小心翼  
 翼。我王曰咨！可畏匪天，祇受厥命，  
 庶幾罔愆。圖匱於豐，思艱於逸，念  
 茲在茲，服膺勿失。大哉。王言！三  
 韓之福，撫我育我，我后之德，我歌且  
 謠。畫天摹日，勒之金石，昭示千  
 億。”其女妓歌謠曰：“禮重五推，示  
 下民以嗣以續；嵩呼萬歲，罄三韓誠忭  
 誠欣。草木增輝，山川改色。恭惟主  
 上殿下，中和育物，剛健對時，體周文



	<p>백성 일을 중히 하고 곡식만을 귀히 여겨  아아! 홍치(弘治)19372) 원년 윤정월에  대궐문 크게 열고 팔극(八極)19373) 에 나아가  관에 명을 내려 호령을 반포하니,  그 호령 무엇인가, 농정(農政)을 닦음이네.  좋은 날을 가리어서 풍년을 기도하니,  아름다운 동쪽 들에 공전(公田)이 여기 있네.  우리 임금 이르시어 선농(先農)에 제사하니,  구부리고 달려오는, 아아! 모든 신하.  팔음(八音)19374) 이 화합하고 제사가 엄숙하니,  축관(祝官)이 말하기를, 큰 복을 내린다네.  우리 임금 말씀하되, 아아! 공경과 백집사야.  하늘과 선조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시니,  나라는 백성에게, 백성은 먹는 것에 의지한다.  백성이 게으르면 임금이 누구와 만족하랴.  가르치고 지도함은 진실로 내게 있다.  내가 몸소 밭가는데, 누가 감히 어기리오.  영단에서 내려와 보습을 만지시니,  태농(太農)이 농기구를 고르면서 기쁨을 못참는다.  들에는 용비늘이 번득이고, 밭두둑엔 비단 수(繡)가 화려하네.  오퇴례(五推禮)가 끝나니 그 흙이 기름져라.  제사에 이바지하며 효도를 본받네.  하늘이 왕의 정성 아름답게 여기어서  백성을 몰래 도와 호수(戶數)가 많아지고,  많은 밭에 풍년들어 백곡이 번성하다.</p>	<p>康功, 田功肇稱先農、祀; 思夏禹庶食  艱食, 尤勤重穀之心。 屬春令之載頒,  協吉日以爰啓。 紺轅黛耜, 駐天仗於  青郊; 玉輅金輿, 旋龍馭於紫陌。 祥  風浩蕩, 化日舒長。 馳道肅鷓鷯之行,  法駕儼天日之表。 鈞天縹緲洋洋, 廣  樂之九成; 蓬島參差簇簇, 瓊葩之幾  朶。 誰言太平之無象, 始信至治之惟  馨。 茲曠代之罕聞, 實當今之幸見。  妾等叨塵法部, 獲際昌辰, 載廣邇雅之  歌, 會見曾孫之多稼。 願享箕疇之福,  倍祝君子之萬年。 不度荒詞, 上進口  號: 鑾輿回駕自東垌, 祇祓青壇慶禮  成。 萬姓同歡千載會, 四方多稼八風  清。 六鰲矗聳迎仙仗, 雙鶴蹁躚下彩  旌。 最幸此身瞻盛事, 喜將歌舞賀昇  平。” 上入自弘化門, 御明政殿, 受群  臣賀, 仍頒赦。 其賀箋曰:   惟聖人爲能饗祭, 盡四時之誠。 自天  子莫非耕躬, 秉五推之禮, 事光簡策,  喜溢臣民。 恭惟主上殿下, 文思協堯,  聰明齊舜, 撫萬機而南面, 奉宗廟社稷  之神。 籍百畝於東郊, 供御廩粢盛之  潔, 肇稱曠代之令典, 用示後嗣之良</p>
--	--	---

	<p>사인(四人)이 성공하여 황무지가 개간되니, 하늘이 우리 왕께 이르기를, 너의 덕이 아름다운데 무엇으로 내려 줄까? 많은 복을 내리리라. 비올 때에 비가 오고 별날 때에 별이 나서, 벼와 기장 풍년들어 많이많이 쌓였도다. 하늘이 우리 왕께 이르기를, 공경 가상하여 보호하고 도와 주어 반드시 남은 경사 있어 자자손손 이어 가며 창성하게 할 것이니, 잘한다고 자부하지 말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미치광이 될 것이다. 삼가하고 조심하여 나의 훈계 본받으며 날로 마음 새롭도록 조심하고 공경하라. 우리 왕이 말하기를, 두려운 건 하늘이 아닌가? 공경히 명을 받아 허물없게 노력하리. 풍년에 흉년을 염려하고 편할 때에 어려움을 생각하며 항상 염두에 두고 가슴속에 새겨 두리라. 거룩하다! 왕의 말씀, 삼한의 복입니다. 우리를 기르심은 우리 왕의 은덕이라. 우리의 이 가요는 하늘·해를 그림이라, 어찌 형용다하리까? 금석에 새기어서 천억년에 밝게 전해 만백성에 보이리다.” 여기(女妓)의 가요는 이러하였다. “오퇴(五推)의 예(禮)를 중히 하여, 하민(下民)에게 이어받아 계승할 것을 보 였고 만세를 높이 부르며 삼한(三韓)이 기쁨을 다하니 진실로 기쁘고 진실로 즐겁습니다. 초목이 광채를 더하고 산천이 빛을 바꿉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중화(中和)의 덕으로 만물을 기르시고 강건(剛健)한 마음으 로 절후에 대응하여 주문왕(周文王)의 백성을 안정시키고 농사에 힘쓴 공(功)</p>	<p>規。 伏念臣等， 幸際昌辰， 獲觀美 舉。 山則高， 海則廣， 助雖乏於涓埃； 日之昇， 月之恒， 心常祝於壽考。</p> <p>其赦文曰：</p> <p>欽天授時， 報田功於黎庶； 祈年郵祀， 薦孝思於粢盛。 終古以還， 以斯爲 美。 予以寡德， 嗣守丕基， 事宜講而 不修， 己雖勞而必舉， 務農之政， 吁食 于茲。 然以菲薄之資， 尚阻窮旻之祐， 歲或不熟， 民乃厄飢。 屬茲三陽布和， 萬物資始， 復循古典， 親祀先農。 禮 既成於五推， 年竚登於百穀。 人將竝 受其福， 予豈獨享其休？ 宜推作解之 仁， 以敷在宥之澤。 自今閏正月二十 二日昧爽以前， 盜及關係綱常外， 徒以 下，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 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 其罪罪之。 於戲！ 勸民力業， 予一人 先知稼穡之艱， 滌瑕行恩， 俾萬姓均蒙 雨露之渥。 依乙未年例， 諸執事資窮 者代加， 未資窮者各加一資。</p> <p>前此， 司憲府持平成世明來啓曰：“伏</p>
--	---	--

을 체득하여 비로소 선농(先農)의 제사를 행하시고 하우(夏禹)의 서민들이 어렵게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여 더욱 곡식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지런하셨습니다. 마침 봄 절후를 당하여 좋은 날을 받아서 거둥하시니, 푸른 수레와 검은 보습[耜]의 천장(天仗)19375) 이 봄들에 머물고, 옥로(玉輅)19376) 와 금여(金輿)19377) 의 용어(龍馭)19378) 가 자맥(紫陌)19379) 에 돌아오시니 상서로운 바람이 호탕(浩蕩)하고 교화(教化)의 해가 길어집니다. 달리는 길에는 조관(朝官)의 행렬이 엄숙하고 법가(法駕)19380) 에는 천일(天日)19381) 의 모습이 엄연(儼然)합니다. 까마득한 균천(鈞天)에 넘치는 광악(廣樂)19382) 이 아홉 번 연주하고 아물아물한 봉도(蓬島)19383) 에 떨기로 난 경파(瓊葩)19384) 는 몇 송이가 피었습니까? 태평(太平)의 형상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지치(至治)의 향기로우름을 비로소 믿겠습니다. 이는 오랜 시대에 듣기 드문 일인데, 진실로 지금에 다행히 보았습니다. 첩(妾) 등은 외람되게 법부(法部)에 있으면서 좋은 때를 만나서 빈야(邠雅)19385) 의 노래를 화답하니, 마땅히 자손의 많은 농사를 볼 것입니다. 기주(箕疇)의 복(福)19386) 을 누리기를 원하며 군자(君子)19387) 의 만년 수를 빕니다. 황당한 말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구호(口號)를 올립니다.

‘임금 행차 동교에서 명예를 돌이키니,  
선농단에 제사하고 좋은 예식 이루었네.  
만백성 기뻐함은 천년의 기회이며  
사방에 풍년들고 팔풍(八風)19388) 이 맑아라.  
육오(六鰲)19389) 는 힘차게 선장(仙仗)19390) 을 맞이하고  
쌍학은 너울너울 채색 기에 내려오네.  
이 몸이 다행하게 거룩한 일 보게 되어  
춤추고 노래하며 태평성대 하례합니다.’

임금이 홍화문(弘化門)으로 들어와서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聞將肆赦。古人有云：‘赦者，小人之幸。’今後親祀先農，自成例事，豈可祭則必赦乎？況天使之來，必不得已頒赦，赦豈可如是其數乎？請勿頒赦。”傳曰：“如此慶事，豈可無赦？且天使之來，頒赦何可必也？”世明更啓曰：“諸葛亮治蜀，赦不妄下，至今以爲美談，赦不可輕下。”傳曰：“在前，登極詔書之來頒赦，自有常例乎？其問于承文院提調。”提調等啓曰：“臣等未能記憶，考院謄錄爲便。”獨李瓊全啓曰：“若以賀登極頒赦，則初聞登極，卽當頒赦，豈待天使之來而頒之？詔書雖有頒赦之語，海外豈與海內同哉？”傳曰：“瓊全之言果是矣。其以此語世明。”世明又啓曰：“臣聞執事加資事。今執事者，非曾經吏曹郎官，卽是宰相子弟，希望資級，求請執事。士風不美，莫甚於此。今若果如其望，則後日之奔競，有甚於今日。請重惜爵賞，磨礪士風。”不聽。

하례를 받고 인하여 반사(頒赦)하였다. 그 하전(賀箋)은 이러하였다.

“오직 성인(聖人)만이 능히 제사하여 사시(四時)의 정성을 다하며, 천자로부터 모두 받을 갈아서 오퇴(五推)의 예(禮)를 행하니, 일은 간책(簡策)19391) 에 빛나고 기쁨은 신민(臣民)에게 넘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문사(文思)는 요(堯)와 짝하시고 총명은 순(舜)과 같으시며 만기(萬機)를 잡고 남면(南面)하사 종묘(宗廟)·사직(社稷)의 신(神)을 받드시고, 동교(東郊)에 백무(百畝)의 적전(籍田)을 갈아서 어름(御廩)과 자성(棗盛)의 깨끗함을 이바지하시니, 비로소 광대(曠代)19392) 의 아름다운 예(禮)를 행하여 후사(後嗣)에게 좋은 법을 보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 등은 다행히 태평 시대에 즈음하여 아름다운 행사를 얻어 볼 수 있었습니다.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은혜에 물방울과 먼지 같은 보필이 없을지라도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달이 기울지 아니하는 것처럼 수(壽)하시기를 마음으로 항상 축수합니다.”

그 사문(赦文)은 이러하였다.

“하늘을 공경하고 책력을 나눠주어 백성에게 전공(田功)을 알리고, 풍년을 빌고 제사를 행하여 자성(棗盛)으로 효성을 올렸네. 예로부터 오면서 이를 아름답게 여겼고, 나는 덕이 적으면서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았다. 마땅히 강구할 일을 닦지 못하였으니 몸이 아무리 괴로와도 받드시 거행하였다. 농사를 힘쓰는 정책에 날마다 부지런하였으나, 천박한 자질(資質)이어서 아직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혹시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린다. 이제 삼양(三陽)이 화한 기운을 펴고 만물이 비로소 소생할 시기이니, 다시 옛 예법을 따라서 친히 선농(先農)에 제사하였다. 이 오퇴(五推)의 예(禮)를 이루었으니 백곡이 풍년들기를 기다린다. 사람이 장차 그 복을 함께 받을 것인데 내가 어찌 그 아름다움을 홀로 받겠는가? 마땅히 풀어 주는 어진 마음을 미루어서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편다. 지금 윤정월 22일 새벽 이전에서 도둑 및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 외의 도(徒) 이하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아니한 것이나 모두 용서해 사면한다. 감히 유지(宥旨)19393) 전의 일로써 서로 고해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를 주겠다. 아야! 백성을 권하여 농업에 힘쓰게 하는 데에는 나 한 사람이 먼저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야 할 것이며, 허물을 씻고 은혜를 행하는 데에는 만백성으로 하여금 우로(雨露)의 은혜를 고루 입어야 할 것이다. 을미년(19394)의 예(例)에 의하여 여러 집사(執事)로서 자궁(資窮)19395)된 자는 대가(代加)19396)하고 자궁이 안된 자는 각각 1자급(資級)을 가하게 한다.”

이에 앞서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와서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장차 사사(肆赦)19397) 하려 한다고 하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면(赦免)하는 것은 소인(小人)의 다행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농(先農)에 친히 제사하는 것이 예사(例事)가 될 것인데, 어찌 제사하면 반드시 사면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중국 사신이 오면 반드시 반사(頒赦)를 아니할 수 없을 것인데 사면을 어찌 것처럼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면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같은 경사에 어찌 사면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중국 사신이 오는 데에 반사하는 것을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세명이 다시 아뢰기를,  
“제갈양(諸葛亮)이 촉(蜀)나라를 다스릴 때에 사면을 함부로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이제까지 미담(美談)이 되었으니, 사면은 가볍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등극 조서(登極詔書)가 오는 데에 반사하는 것이 본래부터 상례(常例)가 있었는가?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에게 물어 보라.”

하므로, 제조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기억할 수 없으니, 《승문원등록(承文院登錄)》을 상고하는 것이 좋

	<p>했습니다.”</p> <p>하였다. 홀로 이경동(李瓊叟)이 아뢰기를,  “만약 등극(登極)19398) 으로서 반사한다면 처음 등극을 들었을 때에 즉시 반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중국 사신이 오기를 기다려서 반사하겠습니까? 조서(詔書)에 비록 반사하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해외(海外)가 해내(海內)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이경동의 말이 과연 옳다. 이것을 성세명에게 말하라.”</p> <p>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집사(執事)에게 가자(加資)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집사가 된 자는 일찍이 이조 낭관(吏曹郎官)을 지낸 이가 아니고 바로 재상(宰相)의 자제가 자금(資級)을 바라고 집사를 희망한 것이니, 사풍(士風)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과연 그 소망과 같게 되면 후일에 분경(奔競)19399) 이 오늘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청컨대, 작상(爵賞)을 다시 아끼고 사풍을 가다듬게 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성종 21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윤1월 23일(무자) 1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시경(侍耕)19400) 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술을 내렸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겸(魚世謙)·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약동(李約東)·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사간(司諫) 김심(金諶)·예의사(禮儀使)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와 종재(宗宰) 덕원군(惠源君) 이서(李曙)·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誠)·강양군(江陽君) 이축(李瀾)·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滄)·예성군(藥城君) 어유소(魚有沼)·좌찬성(左贊成) 이철건(李鐵堅)·청성군(淸城君) 한치형(韓致亨)·서릉군(西陵君) 한치례(韓致禮)·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p>	<p>○戊子/上御仁政殿，賜勞酒侍耕。 月山大君婷、領議政尹弼商、領敦寧尹壕、兵曹判書魚世謙、吏曹參判李約東、大司憲朴安性、司諫金諶、禮儀使禮曹判書柳攄及宗宰德源君曙、玉山君躋、蛇山君灝、雲山君誠、江陽君瀾、靑松府院君沈滄、藥城君魚有沼、左贊成李鐵堅、淸城君韓致亨、西陵君韓致禮、廣川君李克增、左參</p>

	<p>좌참찬(左參贊) 신승선(愼承善)·호조 판서(戶曹判書) 정난중(鄭蘭宗)·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숙기(李淑琦)·장천군(長川君) 김효강(金孝江)·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함성군(咸城君) 이종생(李從生)·상선(尙膳) 김처선(金處善)·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홍이로(洪利老)·호조 참판(戶曹參判) 노공필(盧公弼)·예조 참판(禮曹參判) 박견(朴楗)·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경동(李瓊全)·공조 참판(工曹參判) 한환(韓權)이 입시(入侍)하고, 집사(執事)로 호조 참의(戶曹參儀) 이세우(李世佑) 이하 55인, 기민(耆民)19401) 20인, 병외사인(秉耒耜人)19402) ·수우인(隨牛人)·서인(庶人) 아울러 42인, 치무인(治畝人) 1백 10인도 참석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과 좌승지(左承旨) 한언(韓堰)에게 명하여 동쪽·서쪽 계단 위에 나누어 술을 마시게 하고 시신(侍臣)이 또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시위(侍衛)한 내금위(內禁衛) 등에게 술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贊愼承善、戶曹判書鄭蘭宗、刑曹判書李淑琦、長川君金孝江、竹城君朴之蕃、咸城君李從生、尙膳金處善、僉知中樞府事洪利老、戶曹參判盧公弼、禮曹參判朴楗、兵曹參判李瓊全、工曹參判韓權入侍。執事戶曹參議李世佑以下五十五、耆民二十、秉耒耜人·隨牛人·庶人并四十二、治畝人一百一十亦參。命都承旨宋瑛、左承旨韓堰分飲東西階上侍臣。又命內官，賜侍衛內禁衛等酒。</p>
<p>성종 21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윤1월 28일(계사) 5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우의정(右議政)19418) 이 만리길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영의정(領議政)19419) 이 어찌 서로 만나 보고 싶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선온(宣醞)을 내려 주니 인정전(仁政殿) 안에서 여섯 승지들이 우의정을 따라 함께 나아가서 위로하라.” 하였다. 이때 윤필상(尹弼商)이 시관(試官)으로 인정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p>	<p>○傳曰：“右議政萬里而還，領議政豈不欲相見乎？今賜宣醞，可於仁政殿內。”六承旨等從右議政，齊赴慰之時，尹弼商以試官在殿內，故有是教。</p>
<p>성종 21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2월 3일(정유)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잔치를 내려 주었다. 좌승지(左承旨) 한언(韓堰)을 보내어 선온(宣醞)19424) 을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이는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이 부경(赴京)하였다가 돌아온 때문이다.</p>	<p>○賜宴于議政府，遣左承旨韓堰齎宣醞往焉，以右議政盧思愼赴京而還也。</p>
<p>성종 21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2월 6일</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초례(醮禮)19427) 를 행하였다. 그 의식은, 도총관(都總管)·병조 시위(兵曹侍衛)·봉례(奉禮)가 왕세자(王世子)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가니, 세자(世子)가 사배(四拜)를 행하였다. 봉례가</p>	<p>○庚子/上御宣政殿，行醮禮。都總管、兵曹侍衛。奉禮引王世子入就拜位，世子行四拜。奉禮引王世子，陞</p>

<p>(경자) 1번째기사</p>	<p>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해서 올라와 자리의 서쪽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니, 사옹원 부제조(司饗院副提調)가 잔[爵]에 술을 따라가지고 왕세자에게 나아가 서남쪽에서 동향(東向)하여 섰다. 왕세자가 사배(四拜)를 행하고, 자리[席]에 올라 남향(南向)하여 꿇어앉아 규(圭)를 쬐으니, 부제조(副提調)가 잔을 왕세자에게 주어 왕세자가 잔을 받았다. 사옹 정(司饗正)이 찬탁(饌卓)을 자리 앞에 올리니, 왕세자가 제주(祭酒)하고 일어나 자리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하여 꿇어앉아 술을 마시고, 잔을 부제조(副提調)에게 주었다. 부제조가 &lt;꿇어앉아&gt; 빈잔을 받아가지고 물러나니, 왕세자(王世子)가 규(圭)를 내어놓고 사배(四拜)를 행하였다. 사옹 정(司饗正)이 찬탁(饌卓)을 설치하니, 봉례(奉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당좌(當坐)19428) 앞으로 나아가 동향(東向)하여 꿇어앉아 부복(俯伏)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서 네 배필을 맞이하여 우리 종사(宗事)를 잊게 하되, 힘써 엄하게 거느리도록 하라.” 하니, 왕세자(王世子)가 말하기를, “신(臣) 아무[某]는 삼가 교지(教旨)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사배(四拜)를 행하였다. 봉례(奉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해서 내려가 동문(東門)을 따라 나가 막차(幕次)에 나아갔다. 유시(酉時) 초각(初刻)19429) 에 왕세자(王世子)가 위의(威儀)를 갖추고 도보로 돈화문(敦化門) 밖에 이르러 연(輦)을 타고, 빈제(嬪第)19430) 에 가서 친영(親迎)하였다. 임금이 양전(兩殿)에게 진연(進宴)하고, 이어서 영돈녕(領敦寧) 이상, 정부(政府), 육조 판서(六曹判書), 한성 판윤(漢城判尹), 입직 도총관(入直都總管), 병조(兵曹), 승정원(承政院), 제장(諸將), 사옹원 당상(司饗院堂上)과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 등에게 창경궁(昌慶宮) 빈청(賓廳)에서 주악(酒樂)을 내려 주고, 전교하기를, “세자(世子)가 이미 가례(嘉禮)를 이룬 까닭으로 오늘 양전(兩殿)께 진연(進</p>	<p>自西階就席，西南向立。司饗院副提調取爵酌酒，進詣王世子西南，東向立。王世子行四拜，陞席，南向跪，搯圭。副提調以爵授王世子，王世子受爵。司饗正薦饌卓於席前，王世子祭酒，興，降席，西南向跪，啐酒，以爵授副提調。副提調受爵，退。王世子出圭，行四拜。司饗正設饌卓，奉禮引王世子進當坐前，東向跪，俯伏。上曰：“往迎爾相，承我宗事，勸率以嚴。”王世子曰：“臣某謹奉教旨。”行四拜。奉禮引王世子，降自西階，由東門出，就幕次。酉初，王世子具威儀，步至敦化門外，乘輦親迎于嬪第。</p>
<p>성종 21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2월 10일 (갑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양전(兩殿)에게 진연(進宴)하고, 이어서 영돈녕(領敦寧) 이상, 정부(政府), 육조 판서(六曹判書), 한성 판윤(漢城判尹), 입직 도총관(入直都總管), 병조(兵曹), 승정원(承政院), 제장(諸將), 사옹원 당상(司饗院堂上)과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 등에게 창경궁(昌慶宮) 빈청(賓廳)에서 주악(酒樂)을 내려 주고, 전교하기를, “세자(世子)가 이미 가례(嘉禮)를 이룬 까닭으로 오늘 양전(兩殿)께 진연(進</p>	<p>○甲辰/上進宴兩殿，仍賜酒樂于領敦寧以上、政府、六曹判書、漢城判尹、入直都總管、兵曹、承政院諸將、司饗院堂上及豐川尉任光載等昌慶宮賓廳。傳曰：“世子已成嘉禮，故今日進宴于兩殿。卿等亦各極飲而</p>



	<p>宴)하였으니, 경(卿) 등도 또한 각각 한껏 마시고서 파(罷)하라.” 하였다.</p>	<p>罷。”</p>
<p>성종 21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2월 12일 (병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사은사(謝恩使) 성건(成健)을 인견(引見)하니, 성건이 아뢰기를,  “신(臣)이 여러 관사(官司)의 노비(奴婢)를 보니, 날로 조잔(凋殘)하여 가고 있습니다. 대개 노비(奴婢)들은 그 본사(本司)의 고역(苦役)을 꺼려서 백단(百端)으로 면역(免役)하기를 꾀하여, 타사(他司)의 장인(匠人)이나 궐내(闕內)의 차비(差備)에 소속되기를 구하여 본사(本司)에서 역사하는 자는 거의 없으니, 지극히 미편(未便)합니다. 이제부터는 상의원(尙衣院)과 같이 일이 긴요한 장인 및 궐내의 차비 이외에는 양인(良人)으로 차정(差定)하여 점차로 습숙(習熟)시킴이 어떻겠습니까? 또 《대전(大典)》에 기록된 장인으로 긴요하지 않아 혁파(革罷)할 만한 자가 많이 있는데, 《대전》은 경솔히 개정할 수 없으나 그 감할 만한 자를 따라서 감함은 어떻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금후로는 장인(匠人)들은 양인(良人)으로써 차정(差定)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있을 적에 전리(田里)를 순심(巡審)하였는데, 이른바 면등제(面等第)의 일을 보건대, 이 법이 지극히 미편(未便)하였습니다. 가령 한 면(面)이 중(中)의 중일 경우는 그 사이의 농사(農事)가 풍흉[豐歉]이 사뭇 다릅니다. 기름진 토지는 생산하는 곡식이 많은데도 세금은 너무 가벼웠고, 메마른 토지는 생산하는 곡식이 적은데도 세금은 너무 무거웠으며, 다른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국가(國家)의 소입(所入)은 풍족하지 못한데도 민폐(民幣)는 지중(至重)하였습니다. 자등제(字等第)의 법(法)은 혹 흉년을 만나야 행하니, 이 법이 어찌 흉년에만 행할 만하며, 풍년에 행할 수 없겠습니까? 만약 자등제(字等第)를 따른다면 국가의 소입이 전보다 감절은 될 것이며 민폐</p>	<p>○丙午/上御宣政殿, 引見謝恩使成健。 健啓曰: “臣見諸司奴婢日就凋殘。 大率奴婢等憚其本司苦役, 百端規免, 求屬於他司。 匠人及闕內差備役於本司者無幾, 至爲未便。 自今如尙衣院事緊匠人及闕內差備外, 以良人差定, 漸次習熟何如? 且《大典》載錄匠人, 多有不緊可革者, 《大典》不可輕改, 就其可(咸) [減]者減之何如?” 上曰: “今後匠人等, 以良人差定。” 又啓曰: “臣爲京畿監司巡審田里, 見所謂面等第事, 此法至爲未便。 假如一面中之中, 則其間農事豐歉迥異。 膏田則生穀多而稅太輕, 瘠田則生穀少而稅太重。 他亦類是, 國家所入不豐而民弊至重。 字等第之法, 或值年歉行之, 此法豈可獨行於凶年而不可行於豐年乎? 若逐字等第, 則國家所入倍前而民弊可革矣。” 上曰: “面等第之法, 行之已久; 字等第最難精, 將斟酌爲之。” 健又啓曰: “今年大阜島農事至稔, 其傍又有川防修築可耕處, 請令試之。” 上曰: “可。” 前此, 健將赴京,</p>

	<p>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등제(面等第)의 법(法)은 행한 지 이미 오래이고, 자등제(字等第)는 정밀하게 하기가 가장 어려우니, 장차 참작하여서 하라.”  하였다. 성건이 또 아뢰기를,  “금년에는 대부도(大阜島)의 농사(農事)가 지극히 잘 여물었습니다. 그 곁에 또 천방(川防)을 수축(修築)하여 경작할 만한 곳이 있으니, 청컨대,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이에 앞서 성건이 부경(赴京)하려고 할 적에 진달할 것이 있어 소대(召對)를 구하려고 한 까닭으로 사견(賜見)한 것이다.</p>	<p>欲有所陳求召對，故賜見。</p>
<p>성종 21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2월 15일  (기유) 1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니,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우참판(右參贊) 이승원(李崇元)·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겸(魚世謙)·호조 참판(戶曹參判) 노공필(盧公弼), 승지(承旨), 주서(注書), 사관(史官)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 유승조(柳崇祖) 등 5인이 경서(經書)를 강(講)하여, 강(講)하기를 마치니,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옛날 유생(儒生)은 거관(居館)19445) 하는 자가 많고 독서(讀書)하기를 좋아하여, 경서(經書)를 통달한 자가 배출(輩出)되더니, 이제는 독서를 좋아한다고 함을 듣지 못하고 한갓 취식(聚食)할 따름입니다. 모두 날마다 강(講)함을 꺼리어, 무리지어 나아가고 떼지어 물러가니 궁경(窮經)19446) 하는 자가 적고, 그 마음은 만약 초장(初場)에 중격(中格)하면, 겨울 3삭(朔) 안에 독습(讀習)하여 요행히 시강(試講)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름만 업유</p>	<p>○己酉/御宣政殿，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廣陵府院君李克培、領敦寧尹壕、廣川君李克增、右參贊李崇元、兵曹判書魚世謙、戶曹參判盧公弼、承旨、注書、史官等入侍。講成均館儒生柳崇祖等五人經書。講訖，克增啓曰：“昔時，儒生居館者多好讀書，通經書者輩出，今則未聞好讀書，徒爲聚食而已。皆憚於日講，旅進旅退，窮經者少。其心以謂若於初場中格，則冬三朔內，可以讀習，僥倖試講。故名爲業儒，而庸、學尙不能通曉。若於初場講經，則自無如此之弊</p>

	<p>(業儒)라고 하면서 학문이 용렬하여, 오히려 통효(通曉)할 수 없으니, 만약 초장(初場)에 강경(講經)하면 스스로 이와 같은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p> <p>하고, 이극배는 아뢰기를,  “만약 초장(初場)에 강경(講經)하는 법(法)을 영구히 행하면, 유생(儒生)은 스스로 학문에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홍응은 아뢰기를,  “경학(經學)에 정통한 자는 제술(製述)을 하지 못하고, 제술에 익숙한 자는 경학을 깊이 궁구할 수 없으니, 국가는 각각 그 재질을 따라서 씬이 옳습니다.” 하였다.</p>	<p>矣。” 克培啓曰：“若久行初場講經之法，則儒生自不得不勤於學矣。” 應啓曰：“精經學者不得製述，工製述者不能窮經，國家各因其材而用之可也。”</p>
<p>성종 214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3월 2일 (병인)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장령(掌令) 김미(金楣)가 아뢰기를,  “전일(前日)에 전교하기를, ‘이원(李源)이 6년이나 귀양살이를 하였으니, 어찌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와지는 마음이 없겠느냐?’고 하시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源)이 귀양가서 구례(求禮)에 있을 때에 신미(申眉)와 결탁하여 1읍(邑)을 횡행(橫行)하며 장리(長利)를 수납(受納)한다 사칭(詐稱)하면서 민간(民間)의 미숙(米粟)을 많이 취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고, 전지(田地)를 가진 중[僧]이 있다고 들으면 다 탈취하고, 중의 족친(族親)의 전지까지도 또한 모두 탈취(奪取)하므로, 읍민(邑民)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읍수(邑守) 최지성(崔智成)에게 호소(呼訴)하니, 원(源)이 최지성으로 더불어 말다툼하고 공사(公事)의 문권(文券)을 취하여 갔으니, 그 부도(不道)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비록 6년의 귀양살이를 겪었으면서도 곧 반성하는 마음이 없으니, 청컨대, 복직(復職)의 명(命)을 정지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源)은 바로 세종(世宗)의 친손(親孫)이며 영응(永膺)의 독자(獨子)이니, 봉사(奉祀)는 지중(至重)한 것이므로 지금의 복직(復職)은 영응(永膺)의 부인(夫</p>	<p>○丙寅/御經筵。 講訖， 掌令金楣啓曰：“前日傳曰：‘源謫竄六年， 豈無悔過自新之心乎？ 然源謫在求禮時， 交結申眉， 橫行一邑， 詐稱收納長利， 多取民間之米粟， 以爲己有。 聞僧人有田者， 則盡奪之， 至於僧之族親田， 亦皆奪取。 邑民不勝其苦， 訴於邑守崔智成， 源與智成鬪狠， 取公事文券而去。 其爲不道， 何可勝言？ 以此觀之， 則雖經六年之謫， 便無懲艾之心。 請停復職之命。’” 上曰：“源乃世宗之親孫， 永膺之獨子。 奉祀至重， 今之復職， 以永膺夫人上言也。 大抵人非自暴自棄者， 則不無改行之路。 源若改過， 則固當敍用， 然其所犯係關綱常， 爾等亦言之不已， 故姑收成命。” 金楣又於</p>

人)의 상언(上言)에 의한 것이었다. 대저 사람이 자포자기(自暴自棄)하는 자가 아니라면 개혁(改行)하는 이치가 없지 않으니, 원(源)이 만약 개과(改過)하였으면 진실로 서용(敍用)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범한 바가 강상(綱常)에 관계되고 그대들도 말하여 마지 않는 까닭으로 우선 성명(成命)을 거두겠다.” 하였다. 김미(金楣)가 또 소매 속에서 글을 내어 올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전라(全羅) 1도(道)는 옛 백제(百濟)의 터[墟]이니, 그 유풍(遺風)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완한(頑悍)19466) 한 풍속이 다른 도(道)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그 도적(盜賊)은 혹 집에 불을 지르거나 혹 길가는 사람을 저격(狙擊)하여 대낮에 양탈(攘奪)하므로 세상에서는 이르기를, ‘호남(湖南)의 습속은 강도(強盜)는 있어도 절도(竊盜)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또 왜복(倭服)에 왜어(倭語)를 하는 수적(水賊)이 있어, 해포(海浦)에 출몰(出沒)하면서 몰래 행선(行船)을 엿보고 있다가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바다에 던지고 몰래 도서(島嶼)에 숨고 하여 마치 귀신과 물여우[鬼蜮]와 같으므로, 관리(官吏)가 비록 수포(搜捕)19467) 하려고 하더라도 누구를 어찌할 수 없으니, 이것은 다른 도에 없는 일입니다. 그 죄를 범하고 도망하여 숨는 자는 세력 있는 백성[豪民]과 교활한 관리[猾吏]가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긴 울타리에 겹문을 만들고 다투어 굴혈(窟穴)을 지어 줍니다. 만일 본주(本主)가 근심(根尋)19468) 하는 자가 있으면 공금(公禁)에 참여하지 않고, 심한 자는 혹 불량한 무리를 모아 본주(本主)를 구축(毆逐)하여 상처를 입혀서 가도록 하니, 이것 또한 다른 도에 없는 일입니다. 그 귀신(鬼神)을 숭상함에 있어서는 강만(岡蠻)·임수(林藪)가 모두 귀신 이름이 붙어 있으며, 혹 목인(木人)을 설치하거나 혹 지전(紙錢)을 걸어 생황(笙簧)을 불고 북[鼓]을 치며, 주적(酒炙)이 낭자(狼藉)하고 남녀(男女)가 어울려서 무리지어 놀다가 노숙(露宿)하면서 부부(夫婦)가 서로 잃어버리기까지 하여도 조금도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음일(淫佚)19469) 을 좋아함에 있어서는 여항(閭巷)의 백성이 처첩(妻妾)

袖中出書以進, 其書曰:

全羅一道, 古百濟之墟, 其遺風尚存, 而頑悍之俗, 比他道尤甚。其盜賊則或焚蕩屋廬, 或狙擊道路, 白日攘奪。世云: “湖南之俗有強盜, 無竊盜者,” 以此。又有水賊, 倭服倭語出沒海浦, 潛伺行船, 盡將舟中人投之海, 潛竄島嶼, 有同鬼蜮。官吏雖欲搜捕, 莫之誰何, 此他道所無之事。其匿逋逃者, 則豪民猾吏, 相爲表裏, 長籬複戶, 競作窟穴。如有本主根尋者, 則公禁不與, 甚者或聚不逞之徒, 毆逐本主, 使創殘而去, 此亦他道所無之事。其尚鬼神也, 則岡蠻林藪, 皆有神號, 或設木人, 或冒紙錢, 吹笙憂鼓, 酒(灸)[炙]狼藉。男女雜沓, 群遊露宿, 至有夫婦相失而不以爲怪。其好淫佚也, 則閭巷之民, 妻妾相竊, 轉相仇援, 牒訴如蝟。甚至期功之親, 視若凡人, 或弟蒸兄妾, 奴奸主母, 以敗人倫者, 比比有之。論奢侈之俗, 則閭閻邑吏衣裳鮮麗, 村塢氓隸飲食若流。豐年不知裁節, 一遇凶年, 則襁屬流離。陵犯之風, 則下慢上, 賤暴貴, 卒伍而

을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원수가 저서 첩소(牒訴)가 고슴도치의 털처럼 복잡합니다. 심지어 기공(期功)의 친(親)을 보기를 범인(凡人)과 같이 하여, 혹은 아우가 형의 첩(妾)을 상피 붙고, 종[奴]이 주모(主母)를 간통하여서 인륜(人倫)을 무너뜨린 자가 간혹 있으며, 사치(奢侈)스러운 풍속을 논(論)하면 여염(閭閻)과 읍리(邑吏)의 의복(衣服)이 곱고 화려하며, 시골의 천한 백성들은 음식(飲食)을 물퍼쓰듯이 해먹으므로, 풍년(豐年)에 절재(節裁)할 줄을 모르고 한번 흉년(凶年)을 만나면 강보(襁褓)의 어린아이까지 유리(流離)합니다. 능범(陵犯)19470) 하는 풍속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천(賤)한 이가 귀(貴)한 이에게 행패를 부리며 병졸이 장수를 모함(謀陷)하고 이민(吏民)이 수령(守令)을 꾸짖어 욕하며, 명예를 구하고 분수를 범함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근일(近日)에 광산(光山)에서 군수[倅]를 사살한 일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대저 이 여섯 가지는 모두 다른 지방에 없는 풍속이니, 개혁(改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臣)이 김제 군수(金堤郡守)로 6년을 재임(在任)하였으므로 외방(外方)의 치체(治體)를 갖추 알고 있습니다. 감사(監司)가 된 자는 비록 그 폐단을 통렬히 혁신(革新)하려고 하여도 1년 안에 겨우 한 두 번 순행(巡行)하니, 수령(守令)의 현부(賢否)를 알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풍속을 고쳐 박(薄)한 것을 뒤집어서 후(厚)한 데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공자(孔子)는 말하기를, ‘만일 나를 써주는 이가 있다면 단 1년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3년이면 성과를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성인(聖人)의 덕(德)으로써도 1년 동안에는 크게 다스릴 수 없고 3년이라야 성과를 올릴 수 있거늘, 하물며 그만 못한 자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강명 정대(剛明正大)한 자를 택(擇)하여 감사(監司)를 삼되, 그 임무를 오래 맡도록 하여 3년이 지나서야 체차(遞差)하면, 완한(頑悍)한 풍속이 점점 혁신 될 것입니다. 혹은 또 말하기를, ‘예전에는 1향(鄉) 가운데에 정직(正直)한 품관(品官)1, 2원(員)을 택하여

誣構主帥，吏民而罵詈守令，干名犯分，無所不至。近日光山射倅之事，口不忍言。凡此六者，皆他方所無之俗，不可不革。臣以金堤郡守，在任六載，備諳外方治體。爲監司者，雖欲痛革其弊，一年之內，纔一二度巡行，守令賢否且不能知，何暇移風易俗、反薄歸厚乎？孔子曰：“如有用我者，期月而已可也，三年有成。”以聖人之德，期月之間，未能大治，三年乃成，況其下者乎？臣意以謂當擇剛明正大者爲監司，使之久於其任，三年乃遞，則頑悍之俗，漸可革也。或又曰：“古者一鄉之中，擇品官正直一二員，爲鄉有司，以正風俗，名曰留鄉所。革罷以來，鄉風日以淪薄。”臣意亦以爲復立留鄉所，擇剛直品官，爲鄉有司，則雖未能卒變薄俗，亦或有維持鄉風，而頑兇之徒，庶少戢矣。

上顧問左右，領事尹弼商啓曰：“監司三年之法，如其賢則可矣，如或庸劣則貽弊於民。且風俗非一朝一夕可變也。”金楬曰：“監司一期內，巡行不過兩三次，風俗薄惡，何暇治之乎？”

향유사(鄉有司)를 삼아서 풍속을 바로잡게 하고 이름하기를 유향소(留鄉所)19471) 라고 하였었는데, 혁파(革罷)한 이래로 향풍(鄉風)이 날로 투박(滄薄)하여졌다.’고 합니다. 신(臣)의 생각에도 다시 유향소(留鄉所)를 세워, 강직한 품관을 택하여 향유사(鄉有司)를 삼으면, 비록 갑자기 야박한 풍속을 변모시킬 수는 없더라도 또한 향풍(鄉風)을 유지(維持)하여 완흉(頑兇)한 무리가 거의 조금은 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上)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감사(監司)의 임기(任期)를 3년으로 하자는 법은 만일 그가 어질면 가(可)하나 혹 용렬(庸劣)할 것 같으면 폐단을 백성에게 끼칠 것입니다. 또 풍속(風俗)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변모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고, 김미(金楣)가 말하기를,

“감사(監司)가 1기(期) 안에 순행(巡行)함이 2, 3차(次)에 불과(不過)하니, 풍속의 박악(薄惡)함을 어느 겨를에 다스리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上)이 말하기를,

“정승(政丞)의 말이 매우 옳다.”

하였다. 김미(金楣)가 말하기를,

“예전에도 유향소(留鄉所)가 있었으니, 만약에 다시 세우면, 완은(頑兇)19472) 한 무리는 방자(放恣)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혹은 유향소(留鄉所)가 향풍(鄉風)을 유지하는 데에 유익(有益)하다고 이르고, 혹은 유향소(留鄉所)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도리어 폐단을 받는다고 이릅니다. 대저 법(法)은 스스로 행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다려서 행하니, 요(要)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을 책임자를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上曰：“政丞之言正是。”金楣曰：“古有留鄉所，若復立，則頑兇之徒，不得放恣矣。”弼商曰：“或云留鄉所於維持鄉風有益，或云留鄉所非人，則民反受弊。大抵法不自行，待人而行，要在監司守令得人耳。”上曰：“人能弘道，非道弘人。吏不奉行，雖立新法，何益？風俗薄惡，當漸以治之耳。”

	<p>“사람이 도(道)를 넓히는 것이요, 도(道)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니, 관리가 봉행(奉行)하지 않으면 비록 신법(新法)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찌 유익하겠는가? 풍속(風俗)이 박악(薄惡)함은 마땅히 점차로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14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3월 15일 (기묘) 1번째기사</p>	<p>두 중국 사신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알성(謁聖)19497) 하니, 명하여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 좌승지(左承旨) 한언(韓堰)에게 종행(從行)하게 하였다. 두 사신이 알성(謁聖)하기를 마치고 명륜당(明倫堂)에 좌정하니 관관(館官)·유생(儒生)이 차례로 행례(行禮)하여 다례(茶禮)를 행한 뒤에 중국 사신이 나갔다. 이어서 한강(漢江)으로 나아가 제천정(濟川亭)에 올라가 잔치를 여니,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輕)·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겸(魚世謙)·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이숙감(李淑城)과 관반(館伴) 허중(許琮)·정난중(鄭蘭宗), 승지(承旨) 송영(宋瑛)·한언(韓堰)·이계남(李季男)이 참여하여 술을 세 순배 돌리고서 파(罷)하였다. 배를 타고 순류(順流)로 내려와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러 망원정(望遠亭)에 올라가 또 잔치를 여니 중국 사신이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날이 저물어서야 파(罷)하였다.</p>	<p>○己卯/兩天使詣成均館謁聖。 命都承旨宋瑛、左承旨韓堰從行。 兩使謁聖訖，坐明倫堂，館官儒生以次行禮。 行茶禮後，天使出，仍向漢江，登濟川亭開宴。 達城君徐居正、西河君任元濬、禮曹判書柳輕、兵曹判書魚世謙、僉知中樞府事李淑城及館伴許琮·鄭蘭宗、承旨宋瑛·韓堰·李季男參焉。 酒三巡而罷。 乘舟順流而下，至楊花渡，登望遠亭，又開宴。 天使樂甚，日暮乃罷。</p>
<p>성종 214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3월 24일 (무자) 3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녹숭(李祿崇)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前日)에 윤사하(尹師夏)의 윤대(輪對)로 인하여, 명하여 직전(職田)·사사전(寺社田)을 환급(還給)하게 하였으나, 전년[前歲]은 가물고 곡식이 익지 않아 국용(國用)이 비고 모자라고 있습니다. 공신전(功臣田)·수사전(受賜田)은 반감(半減)하고 직전(職田)은 관(官)에서 수납하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바가 있어서입니다. 이제 1,2년 동안 조금 풍년들었다 하여 갑자기 환급(還給)하였다가 만약 다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만나면 또 부득이 환수(還收)하여야 하니, 청컨대, 국용(國用)을 지탱할 만한 2,3년을 기다렸다가 영구히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p>	<p>○司憲府持平李祿崇來啓曰：“前日因尹師夏輪對，命還職田、寺社田。 前歲旱，年穀不登，國用空乏。 功臣田、受賜田則減半，職田則官收之，此在所不得已。 今以一二年稍稔，遽還給之，若更遇水旱，又不得已還收矣。 請待國用可支二三年，永給何如?” 傳曰：“可。 但職田事，不可從也。”</p>

	<p>“옳지만, 그러나 직전(職田)의 일은 따를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14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3월 27일 (신묘)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지평(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전년에 겨우 풍년들었다고 갑자기 직전(職田)을 회복하심은 옳지 못한 줄로 아오니, 아직 후년(後年)을 기다림이 어떠합니까? 종학(宗學)과 사학(四學)의 공궤(供饋)를 모두 감(減)하시나, 직전(職田)에 비하여 중(重)함이 되니, 먼저 회복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다. 감생(減省)한 것도 차례로 회복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p>	<p>○辛卯/御經筵。講訖，持平成世明啓曰：“前歲纔稔，遽復職田，恐不可。姑待後年何如？宗學與四學供饋皆減，比職田爲重，宜先復之。”上曰：“果如所言。其他減省，當次第復之。”</p>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4월 4일 (정유) 2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종묘악(宗廟樂)의 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과 같은 것은 좋지만 그 나머지 속악(俗樂)의 서경별곡(西京別曲)과 같은 것은 남녀(男女)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歌詞)이니, 매우 불가(不可)하다. 악보(樂譜)는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곡조(曲調)에 의하여 따로 가사(歌詞)를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예조(禮曹)에 묻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이미 제사(祭祀) 때에 음복(飲福)을 하였는데, 어떤 예문(禮文)에 의거하여야 음복연(飲福宴)을 다시 베풀 수 있겠는가? 고전(古典) 및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악(樂)은 희문(熙文)으로부터 역성(釋成)까지가 보태평(保太平)이니 영신(迎神)과 초헌(初獻)에 쓰는 것이고, 소무(昭武)로부터 영관(永觀)까지가 정대업(定大業)이니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에 쓰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가사(歌詞)가 있어 남녀(男女)가 서로 좋아하는 속창(俗唱)이 아닙니다. 다만 정대업의 혁정(赫整)은 곡조(曲調)와 가사(歌詞)가 만전춘(滿殿春)에 유사</p>	<p>○傳曰：“宗廟樂如《保太平》、《定大業》則善矣，其餘俗樂如《西京別曲》，男女相悅之詞，甚不可。樂譜則不可卒改，依曲調，別製歌詞何如？其問於禮曹。且予既於祭時飲福矣。據何禮文而再設飲福宴乎？博考古典及祖宗朝故事以啓。”禮曹啓曰：“宗廟之樂，自‘熙文’至‘釋成’，《保太平》也，用於迎神及初獻；自‘昭武’至‘永觀’，《定大業》也，用於亞獻終獻。各有歌詞，非男女相悅之俗唱也。但《定大業》‘赫整’調詞似《滿殿春》，‘永觀’調詞似《西京別曲》，是以聽之，近於俗唱。再行飲福禮，則《詩》《楚茨篇》注云：‘祭</p>



	<p>(類似)하고 영관(永觀)은 곡조와 가사가 서경별곡(西京別曲)과 유사해서 이것이 듣기에는 속창(俗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듭 음복례(飲福禮)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경(詩經)》 초자편(楚茨篇)의 주(注)에 이르기를, ‘묘(廟)에서 제사(祭祀)하고 침(寢)에서 잔치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제사에서 이미 음복을 받고 또 침(寢)에서 잔치하는 것은 앞으로의 녹(祿)을 받고서 편안해지기 위함이다.’ 하였으며, 《가례(家禮)》에는 조(胙)를 받음이 있고 또 준(餽)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복(福)을 받는다는 것이나 조(胙)라는 것은 곧 지금의 제사지낼 때의 음복(飲福)입니다. &lt;《시경》 초자편 주(注)의&gt; ‘침(寢)에서 잔치한다.’는 것이나 &lt;《가례》의&gt; ‘준(餽)’이라는 것은 곧 지금의 제사 지낸 뒤의 음복이니, 거듭 음복하는 것이 고례(古例)에 명백히 있습니다.” 하였다.</p>	<p>於廟而燕於寢。’ 又曰：‘於祭既受福矣， 又燕於寢者， 將受後祿而綏之也。’ 《家禮》有‘受胙’，又有‘餽’。其曰‘受福’，曰‘胙’者， 卽今祭時之飲福也。 曰‘燕於寢’，曰‘餽’者， 卽今祭後之飲福也。 再飲福， 明有古例。”</p>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4월 4일 (정유) 3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음복(飲福)하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하였으니, 집사(執事)·승지(承旨) 이상(以上)이 전내(殿內)에 나아가고 당상관(堂上官) 이하(以下)가 섬돌 위에 나아가 각기 &lt;음복주(飲福酒)&gt; 한 잔씩을 마시고서 파(罷)하였다. 이어서 제집사(祭執事)를 인정전(仁政殿) 남쪽 월랑(月廊)에서 대접하도록 명하고 술과 음악을 내려 주었다.</p>	<p>○上御仁政殿， 飲福如儀。 執事承旨以上就殿內， 堂上官以下就階上， 各飲一爵而罷。 仍命饋祭執事于仁政殿南廡， 賜酒樂。</p>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4월 6일 (기해) 1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성숙(成俶)·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김종직(金宗直)·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이덕숭(李德崇)에게 유시하기를, “영안도(永安道)에 오진(五鎭)을 설치하던 처음에는 지력(地力)이 흩어지지 않았으므로, 화곡[禾稼]이 풍등(豐登)하고 땃밭[柴草]에 이르러서도 두루 넉넉지 않음이 없어, 백성들이 그 삶을 즐기고 번성하였었다. 근자에는 경흥(慶興)·운성(穩城) 등지에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잇따르고 기근(饑饉)이 거듭이르는데다가 유망(流亡)이 서로 잇따라서 민호(民戶)가 조잔(凋殘)해지고 군사의 수가 감소(減少)되어 마침내 방수(防戍)가 소우(疏虞)한 데 이르렀으니, 지극히 진려(軫慮)해야 할 것이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고루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이르기를, ‘마땅히 남쪽의 백성을 사민(徙民)하여 이를 채우게 하</p>	<p>○己亥/諭慶尙道觀察使成俶、全羅道觀察使金宗直、忠淸道觀察使李德崇曰：  永安道五鎭， 設置之初， 地力未散， 禾稼豐登， 以至柴草無不周足， 民樂其生， 生齒繁庶。 近者慶興、穩城等處， 水旱連仍， 饑饉荐至， 流亡相繼， 民戶凋殘， 兵額減少， 遂致防戍疎虞， 至可軫慮者也。 博議在廷之臣， 皆曰當徙</p>

	<p>소서.’ 한다. 경(卿)은 이 뜻을 잘 본받아서 앞서의 사목(事目)대로 부실(富實)한 백성으로서 두 고을에 읍길 만한 자를 가려서 이 뜻을 유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밝게 알도록 하라. 그러나 가려 뽑는 즈음에 만약 공정(公正)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백성의 원망이 실로 깊어질 것이니, 권세(權勢)에 두려워 말고 간술(奸術)에 빠지지도 말며 사정(私情)에 구애(拘礙)되지도 말고 마음에 편협(偏狹)하지도 말아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함이 없도록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않겠다. 그 액수(額數) 같은 것들은 임시(臨時)하여 다시 유지하겠다.”</p> <p>하였다.</p>	<p>南民以實之。卿其體悉此意，依前事目，擇富實民戶可徙兩邑者，諭以此意，使之曉悉。然抄擇之際，若不公正，則民之怨讟實深。毋怵於權勢，毋陷於奸術，毋拘於私，毋偏於意，俾無怨懟。如其不然，嚴治不饒。若其額數，臨時更諭。</p>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4월 11일 (갑진)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성세명(成世明)·정언(正言) 유인유(柳仁濡)가 아뢰기를,</p> <p>“중국 사신이 유관(遊觀)19534 할 때에 영접 도감(迎接都監)에서 지공(支供)한 모든 일이 기명(器皿)과 회구(膾炙)19535 의 유(類)에 등한히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고기를 벨 때에는 날이 무딘 칼과 누추한 그릇을 썼으므로 중국 사신의 〈말에〉 금도(金刀)19536 와 옥완(玉腕)19537 의 귀절이 있었으니, 이는 반드시 기롱(譏弄)을 한 것입니다. 또 하마연(下馬宴)19538 때에는 중국 사신이 밥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도감(都監)에서 찬밥을 올리자 중국 사신이 서로 돌아보고 먹지 않았습니다. 관반(館伴)19539 이 재차 청한 다음에야 수저[匙筯]에 손을 대었습니다. 청컨대, 도감(都監)의 관리를 국문(鞫問)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 때에 승지(承旨)도 가서 참여하였으나, 단지 중국 사신이 유관(遊觀)함을 탐한 일만 아뢰고서 말았을 뿐, 여기에 미쳐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어찌서인가?”</p> <p>하므로, 우승지(右承旨) 이계남(李季男)이 아뢰기를,</p>	<p>○御經筵。講訖，持平成世明、正言柳仁濡啓曰：“天使遊觀時，迎接都監支供諸事，器皿及膾炙〔炙〕之類，慢不致意，割肉時用鈍刀陋器，天使有‘金刀玉腕’之句，是必譏之也。且下馬宴時，天使欲食，而都監進冷飯，天使相顧不食，館伴再請而後下〔筯〕。請鞫都監官。”上曰：“其時承旨亦往參，只啓天使貪翫遊觀之事而已，無一語及此，何也？”右承旨李季男啓曰：“其時臣亦往參見之。都監知天使食性不喜喫膾，乃煎魚供之。”世明等啓曰：“其時參坐宰相，共言其非，欲啓而止。禮曹判書柳輕亦在坐，知而不啓。凡天使支供，禮曹所當糾檢，請竝鞫問。”上曰：“可。”侍講官李</p>

“그 때에 신이 또한 가서 참여해 이를 보았는데, 도감(都監)에서 중국 사신의 식성(食性)이 회(膾)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곧 고기를 지져서 대접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세명 등이 아뢰기를,

“그 때에 자리에 참여한 재상(宰相)이 함께 그 그릇됨을 말하여 아뢰려다가 중지하였는데,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淸)도 자리에 있으면서 알고서도 아뢰지 않았습니다. 무릇 중국 사신의 지공(支供)은 예조에서 마땅히 규검(糾檢)하여야 할 바이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국가(國家)에서 과거(科擧)를 중히 여기므로, 제술(製述)을 시험할 때에는 봉미(封彌)·등록(謄錄)·수권(收券) 등의 관원을 정하여 상세히 살펴서 간사한 것을 못하도록 막는데, 간혹 간위(奸僞)19540) 한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강경(講經)할 때에는 대면(對面)하여 서로 보는데, 그 척속(戚屬)으로서 아는 사람에게 어찌 사정(私情)을 둬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입격자(入格者)는 모두 경화 자제(京華子弟)19541) 이고 외방(外方)의 한사(寒士)19542) 로서 합격한 사람은 대개 드뭅니다. 금후로 시강(侍講)할 때에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간위(奸僞)를 막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때에 첩경법(帖經法)19543) 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행(舉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강경(講經) 때에는 재상(宰相)과 대간(臺諫) 등이 함께 시험하는데, 어찌 사정(私情)을 행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昌臣啓曰：“國家重科擧，試製述時，定封彌、謄錄、收券等官，詳悉防奸，而間有奸僞之事，況講經時，對面相視，其於戚屬所知之人，豈無私情乎？故入格者，皆京華子弟，如外方寒士，中者蓋寡。今後試講時，使不見面，以防奸僞何如？”上顧問左右，領事盧思愼曰：“唐時有帖經法，此可舉行。然今講經時，宰相、臺諫等共試，豈行私情？”上曰：“雖不見面目，若其素知者，則聽其聲音，可知其人也。”

	<p>“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만약 본래부터 아는 자라면 그 목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4월 17일 (경술) 2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掌令) 봉원효(奉元孝)가 별시(別試)를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무거(武擧)는 이미 방(榜)을 내었는데, 어떻게 중지할 수 있겠는가? 다만 상소(上疏) 가운데 이름을 기록한 자는 시비(是非)를 막론하고 과거(科擧)를 정지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어 연변(沿邊)의 형세(形勢)를 갖추 살펴 보았는데, 곤양(昆陽)·김해(金海) 등지의 적왜(賊倭)가 지나는 바의 섬을 역력히 셀 수가 있었습니다. 저 미조항(彌助項)은 실로 왜적(倭賊)이 내왕(來往)하는 길인데, 신이 그 때에 이종생(李從生)·우현손(禹賢孫) 등과 더불어 가서 살펴보았더니, 고기를 잡는 왜선(倭船)이 모두 이 길을 경유하므로, 실로 요해(要害)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버려두고서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왜적이 반드시 듣고서 서로 경하(慶賀)할 것입니다. 신이 그웁이 생각하건대, 경상도(慶尙道) 연변(沿邊)의 군사(軍士) 2려(旅)를 가지고 서울[京師]의 번상(番上)하는 것을 제외시켜서 미조항(彌助項)에 보내어 방수(防戍)하게 하면, 적선(賊船)이 반드시 그 사이를 왕래할 수 없으리라 여깁니다. 신의 권권(拳拳)19595 한 뜻은 전의 상소(上疏)에 이미 다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上)이 좌우(左右)에 고문(顧問)하였다.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신은 그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가을의 양전(量田)19596)에는 순찰사(巡察使)를 반드시 중신(重臣)으로 보내야 할 것이니, 아울러 잘 조사해서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受常參，視事。掌令奉元孝請停別試。上曰：“武擧已出榜，何可中止？但上疏中錄名者，勿論是非，並停擧可也。”右贊成孫舜孝啓曰：“臣曾爲慶尙監司，備審沿邊形勢，昆陽、金海等處賊倭所經之島，歷歷可數。彼彌助項，實倭賊來往之路，臣於其時，與李從生、禹賢孫等往審焉，捕魚倭船，皆由此路，實要害之地。今若棄而不守，則賊倭必聞而相慶矣。臣竊意以慶尙沿邊軍士二旅，除京師番上而遣戍於彌助項，則賊船必不能往來於其間矣。臣拳拳之意，前疏已盡。”上顧問左右，李克增啓曰：“臣未知其詳也。今秋量田巡察使，必遣重臣矣，并令看審何如？”上曰：“可。”</p>

	<p>“가하다.” 하였다.</p>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4월 18일 (신해)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난중(鄭蘭宗)이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군수(軍需)는 다른 도(道)에 비하여 긴요한데, 여러 고을의 저축(儲畜)이 모두 넉넉하지 못합니다. 우선 평양(平壤)의 축적(蓄積)을 계교(計較)해 보면, 원래의 수(數)가 25만여 석(碩)인데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진대(賑貸)한 수가 이에 18만여 석(碩)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이 갚지 않는 데 익숙해지고 또 견감(蠲減)해 줄 것을 바라면서 명자(名字)를 고쳐 애써 많이 받기를 요(要)하는데도 관리(官吏)가 때때로 바칠 것을 독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백성으로 하여금 기한을 늦추어 바치지 않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나누어 줄 때에 취정(吹正)19597 하여 준 것이 여러 해가 되었는데, 흘리기만 하고 거두어들이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창고에 남은 것은 겨우 4, 5만 석(碩)이며, 또 이러한 수(數)의 실부(實否)를 알지 못합니다. 또 이 도(道)의 강변(江邊) 여러 진(鎭)에 군량[糧餉]이 많지 않아서, 지난해에는 국가(國家)에서 여러 진에 면포(綿布)를 나누어 보내어서 풍년이 드는 해마다 저자의 시세에 따라 곡식을 바꾸어 널리 축적(畜積)하게 하였으나, 요사이 많은 일로 인하여 또 늦추고 시행하지 아니하여 면포(綿布)의 실제 수(數)와 이미 곡식과 바꾼 수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신임 감사(新任監司) 이극돈(李克墩)으로 하여금 평양(平壤)의 실제로 창고에 남아 있는 수와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는 것과 명부(名簿)에 현재 실려 있는 것과 끝내 환수해야 할 수와 도용(盜用)했거나 휴흠(虧欠)19598 된 수 및 강변(江邊)의 여러 진(鎭)에 남아 있는 면포와 이미 곡식으로 바꾼 수를 사실대로 마감(磨勘)해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御經筵。講訖，戶曹判書鄭蘭宗啓曰：“平安道軍需，比他道爲緊，而諸邑儲畜皆不敷。姑以平壤積儲計之，元數二十五萬餘碩，近因凶歲，賑貸之數，乃至十八萬餘碩。人民狃於不償，又望蠲減，變名字，務要多受。官吏非徒不時催納，間有令民緩期不納者。又有分給之時，吹正而給之者。積有年歲，有散無斂，因此留庫僅四五萬碩，又不知此數實否。且此道江邊諸鎭糧餉不多，頃年國家分送綿布于諸鎭，每於稔歲，從市直買穀，以廣畜積，近因多事，又稽緩不行，未能的知綿布實數與已換穀之數。請令新監司李克墩，將平壤實留庫之數、散在民間，名簿現載，終當還收之數與盜用虧欠之數及江邊諸鎭，留在縣布，已換穀之數，從實磨勘啓聞。”從之。又啓曰：“全羅道法聖倉漕運船三十一隻漂沒，漕卒亦多溺死，專是官吏慢不致意，不審風水之致然也。且漕卒依憑敗船，盜用米矜者。間或有之。其敗失米矜及拯出之數、漕卒生歿之數，委遣朝官，</p>

	<p>“전라도(全羅道) 법성창(法聖倉)의 조운선(漕運船) 31척이 표몰(漂沒)하고, 조졸(漕卒) 또한 많이 익사하였는데, 오로지 이는 관리(官吏)가 게을리해서 뜻을 두지 아니하여 풍수(風水)를 살피지 아니한 소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조졸이 패선(敗船)을 의지하여 미멸(未滅)19599) 을 도용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그 패몰(敗沒)되어 잃은 미멸 및 건저낸 수와 조졸의 생몰(生沒)의 수를 조관(朝官)을 위임(委任)해 보내어 상세히 검핵(檢覈)을 더하게 하고, 관리와 조졸로서 죄가 있는 자는 과죄(科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근년에는 조금 풍년이 들어 군국(軍國)의 수용(需用)이 거의 넉넉해졌으나, 올해에 조선(漕船)이 많이 패몰(敗沒)되었으므로, 국고(國庫)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니, 갑사(甲士)·근장(近仗)·대졸(隊卒)의 녹봉(祿俸)의 제급(題給)19600) 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옛날처럼 월봉(月俸)을 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조졸(漕卒)로서 표류(漂流)했다가 살아난 자는 가궁(可矜)하니, 모름지기 과죄(科罪)하지 말 것이며, 갑사(甲士) 등은 아뢴 바대로 월봉(月俸)을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詳加檢覈，官吏及漕卒有罪者，科罪何如？且近歲稍稔，軍國之需，庶幾有裕，而今年漕船多敗，國庫收入必少。甲士、近仗隊卒祿俸題給不便，請依舊給月俸。” 上曰：“漕卒漂流得生者，已爲可矜，不須科罪。甲士等依所啓，給月俸。”</p>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4월 18일 (신해) 3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이 아뢰기를,</p> <p>“신이 지난번에 선위사(宣慰使)로서 평안도(平安道)를 왕래(往來)하였으므로, 본도(本道)의 폐해가 되는 일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안주(安州) 이북(以北)에는 연곡(年穀)이 조금 풍년이 들었으나, 평양(平壤)에는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창고에 남은 곡식이 겨우 4, 5만 석(石)이며, 또 이러한 수가 실제로 있는지의 여부(與否)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정난종(鄭蘭宗)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이제 이극돈(李克墩)이 내려갈 때 인견(引見)하시고 친히 그 폐해를 구제하도록 하교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御晝講。講訖，都承旨宋瑛啓曰：“臣頃以宣慰使往來平安道，詳知本道弊事。去歲安州以北年穀稍稔，平壤則不稔，其留庫之穀，僅四五萬石。又不知此數實在與否，誠如鄭蘭宗所啓也。今李克墩下去時，引見親教，以救其弊何如？” 上曰：“近年平安道凶歉之餘，使命頻煩，疲敝莫甚。故今擇重臣爲監司，欲令蘇復耳。大抵得人</p>

하니, 임금(宋)이 말하기를,  
 “근년에 평안도(平安道)에는 흉년이 든 나머지 사명(使命)이 빈번하여 피폐(疲弊)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제 중신(重臣)을 가려서 감사(監司)로 삼아 소복(蘇復)시키게 하려고 한다. 대저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맡기면 폐해를 물리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 감사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는 구임(久任)시키는 것이 가하다. 내가 마땅히 이극돈을 인견(引見)하고 하교하겠다.”  
 하였다. 송영(宋瑛)이 또 아뢰기를,  
 “의주(義州)는 나라의 문병(門屏)으로서, 사신(使臣)이 오면 의순관(義順館)에 유숙(留宿)하는데, 근년에는 읍우(邑宇)가 무너져 파손된 것을 이병정(李秉正)·조숙기(曹淑沂)가 서로 잇달아 수리하여서 관우(館宇)의 난간과 담장이 환연(煥然)하게 일신(一新)되었습니다. 조숙기는 오는 가을에 고만(考滿)19601)이 되어 마땅히 체대(遞代)하여야 하니, 모름지기 현능(賢能)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어 이를 대신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宋)이 말하기를,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선정(善政)이 거행되니, 수령(守令)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집안일과 같이 나라일을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선정(善政)의 효과가 현저해질 것이나, 만약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한갓 폐단만 만들 뿐이니, 수령(守令)의 잉임(仍任)19602)을 만약 백성(百姓)들의 말로 인한다면 이는 불가(不可)하다. 조숙기의 현능(賢能)함을 재상(宰相)이 어찌 예언(譽言)19603) 하는가? 고만(考滿)의 기일이 오히려 멀었으니, 체대(遞代)될 때에 임해서 잉임(仍任)을 명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송영(宋瑛)이 또 아뢰기를,  
 “안주(安州) 한 도(道)는 큰 고을로서, 백상루(百祥樓)의 경치는 짝할 만한 것이 드뭅니다. 다만 이 고을은 노비(奴婢)의 액수(額數)가 많지 않고 그 현존(見存)하는 자 또한 모두 잔열(殘劣)해서 복사(服事)하는 데 부족하니, 청컨

而任之，則弊無不祛，監司善於其職者，久任可也。予當引見克墩教之。”  
 瑛又啓曰：“義州，國之門屏，使臣之來，留宿於義順館。頃年邑宇頽毀，李秉正、曹淑沂相繼治之，館宇欄墻煥然一新。淑沂來秋考滿當遞，須擇遣賢能以代之。”上曰：“人存則政舉，守令得其人，憂國如家，則善政之效著矣。如不得人，則徒作弊耳。守令仍任，若因百姓之言，則不可也。淑沂之賢，宰相豈爲譽言？其考滿之期尚遠，臨遞命仍任可也。”瑛又啓曰：“安州一道巨邑，百祥樓形勝，鮮有其儷。但此邑奴婢額數不夥，其見存者，亦皆殘劣，服事不足。請以本道加現諸司奴婢，依元額充給。若加現奴婢不足，則其傍近小邑奴婢過額者，量宜移給何如？”上曰：“此事前已議之，其考啓。”瑛又啓曰：“江邊諸鎮冬節防戍時，內地軍士抄定分送，當酌其遠近，各以附近次次抄送可也。今則或以內地初面軍士，令就遠鎮，中道軍士，令戍近鎮，勞逸不均，贏糧往來亦苦。是則奸吏用術，而邊將未及糾察耳。”上曰：“馳書諭之，以革其弊可

	<p>대, 본도(本道)의 현재 증가된 제사 노비(諸司奴婢)로써 원래의 액수(額數)대로 채워 주도록 하되, 만약 현재 증가된 노비(奴婢)가 부족하다면 그 근방 작은 고을의 노비로 액수(額數)가 넘치는 자를 적당히 헤아려 옮겨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이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였던 것이니,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라.”</p> <p>하였다. 송영(宋瑛)이 또 아뢰기를,</p> <p>“강변(江邊)의 여러 진(鎭)에서 겨울철에 방수(防戍)할 때 내지(內地)의 군사를 뽑아 정해 나누어 보내면서 마땅히 그 원근(遠近)을 참작하여 각각 부근의 군사로써 차차 뽑아 정해 보내는 것이 가한데, 지금 혹 내지의 초면(初面)의 군사를 가지고 먼 진(鎭)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중도(中道)의 군사를 가까운 진에 수자리살게 하니, 노일(勞逸)19604 이 균등하지 못하고 양식을 싸 가지고 왕래하는 것이 또한 고생스러운데, 이는 간리(奸吏)가 재주를 부리는데 변장(邊將)이 미처 규찰(糾察)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치서(馳書)하여 유시(諭示)해서 그 폐단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또 송영(宋瑛)이 아뢰기를,</p> <p>“일로(一路)의 관군(館軍)은 지금 모두 군졸(軍卒)로써 채우는데, 그 역자(役者)가 입마(立馬)19605 할 즈음에 재산(財産)을 기울여 다 허비하여도 기한(期限)이 없어서 마침내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해 흩어지기에 이르며, 역로(驛路)가 조잔[凋敝]한 것도 주로 이로 말미암은 것이는 하나, 관군(館軍)의 법(法)은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윤번(輪番)으로 기한을 정해서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기한을 정해서 역사시키는 것이 가하다.”</p>	<p>也。” 瑛又啓曰：“一路館軍，今皆以軍卒充之。 爲其役者，立馬之際，傾財竭產，無有期限，終不能堪，至於逃散。 驛路凋敝，職此之由。 館軍法不可輕改， 但輪番定限以均勞逸爲便。” 上曰：“可。 定期限以役之。”</p>
--	--	---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4월 22일 (을묘) 1번째기사</p>	<p>하였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영안도(永安道)의 오진(五鎭)은 모두 적(敵)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부령(富寧)이 더욱 긴요(緊要)하여 실로 적로(賊路)의 요충지(要衝地)입니다만, 다만 병액(兵額)19607이 감소(減少)한데다가 또 인근의 구원(救援)도 없으니, 만약 적변(賊變)을 만나게 되면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진(鎭)은 성저(城底)의 알타리(幹朶里)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품고 있어서 울적합(兀狄哈)이 입구(入寇)하면 반드시 먼저 고변(告變)하기 때문에 방비를 갖추고 기다리지만, 부령(富寧)은 그것이 없으므로, 적변(賊變)을 먼저 알지 못함에 따라 반드시 경계(境界)를 범하는 데 이른 연후에야 이를 알게 됩니다. 신의 뜻으로는, 부령 허수라(虛水羅)의 지역에 영북(寧北)의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경성(鏡城)과 더불어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게 한다면, 저들이 비록 입구(入寇)하고자 하더라도 가볍게 행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깁니다. 허수라는 실로 천험(天險)의 지역으로서 한 사람이 관문(關門)을 지키면 만사람이 대적할 수 없을 것이며, 더구나 그 토지(土地)가 비옥하고 곡식이 잘 되어서 백성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데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북(寧北)에 진(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이해(利害)는 조정(朝廷)에서 비록 백 가지로 멀리 헤아려 보더라도 어찌 경(卿)이 목격(目擊)한 것만 하겠는가? 다만 이것은 큰 일이니, 가볍게 거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진년(19608)에 신숙주(申叔舟)가 진(鎭)을 설치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였으니, 상고하여 아뢴 뒤에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준(成俊)이 또 아뢰기를,  “알타리(幹朶里) 등은 비단 우리 오진(五鎭)의 성저(城底)에 살 뿐만 아니라,</p>	<p>○乙卯/御經筵。講訖，大司憲成俊啓曰：“永安五鎭皆受敵之地，而富寧尤爲緊要，實賊路之衝也。但其兵額減少，又無隣援，如遇賊變，無如之何矣。且他鎭則有城底幹朶里，懷我恩信，兀狄哈入寇，則必先告變，故有備以待之。富寧則無之，賊變無從先知，必至犯境然後知之。臣意以謂於富寧虛水羅之地，設寧北巨鎭，與鏡城聲勢相倚，則彼雖欲入寇，難以輕舉矣。虛水羅實天險之地，一夫當關，萬夫莫敵，況其土地沃饒，禾稼豐登，民可樂生乎？”上曰：“寧北設鎭利害，朝廷雖百爾遙度，豈如卿目擊乎？但此大事，難以輕舉。庚辰年申叔舟看審置鎭當否之議，考啓後處之。”俊又啓曰：“幹朶里等非但居我五鎭城底，居對境者亦多，以其懷我恩信也。國家威德方盛，豈有背叛之理乎？但彼擄唐人逃來本國者，皆解送遼東，其人雖自謂唐人，而未可的知實否也。況彼非入寇遼東搶擄而來也，其人或爲深處兀狄哈所擄，轉轉移賣，幹朶里等領產收買而役之，一朝逃來，不問根由，而一皆解</p>
--	--	---

경계(境界)를 마주하여 사는 자가 또한 많은데,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품고 있으니, 국가(國家)의 위덕(威德)이 바야흐로 성(盛)하면 어찌 배반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포로가 된 중국인으로서 본국(本國)으로 도망해 오는 자는 모두 요동(遼東)에 풀어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비록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이르는 하지만,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저들이 요동에 입구(入寇)하여 창탈(搶奪)해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혹 깊은 곳의 울적합(兀狄哈)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것을 알타리 등이 재산을 기울여 사다가 역사시켰는데, 하루 하침에 도망해 왔다 하여 근본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서 한결같이 풀어 보내면, 신은 저들이 이로 인하여 분(憤)을 품고 우리에게 변방의 환난(患難)을 만들까 두렵습니다. 금후로 사로잡힌 중국으로서 도망해 온 자는 만약 본주인(本主人)이 뒤를 밟아 살살이 찾아내면 변장(邊將)이 권의(權宜)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확실하게 중국인임을 안다면 풀어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도망해 온 즉시 살살이 찾는 자는 본주인(本主人)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미 법(法)으로 마련되었다.”

하였다. 성준(成俊)이 또 아뢰기를,  
 “유원진(柔遠鎭)은 가장 곧바로 적(敵)을 받는 지역인데, 병액(兵額)이 줄어들어서 방수(防戍)가 허소(虛疎)하니, 남쪽 백성들을 옮겨서 채워야 합니다. 다만 갑사(甲士)는 사변(徙邊)19609 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삼도(下三道)19610 의 백성들이 다투어 갑사에 투속(投屬)하므로, 그 뽑아 정한 자들이 모두 잔열(殘劣)하고 용맹이 없는 사람들이니, 위급할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남쪽 백성들을 옮겨서 변경(邊境)을 채우는 것은 본래 적을 방어(防禦)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갑사를 논할 것 없이 그 용맹하고 건실(健實)한 사람을 가려서 사거(徙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送，臣恐彼因此懷憤，構我邊患也。今後被擄唐人逃來者，若其本主追踵根尋，則邊將權宜還給何如？”上曰：“若的知其爲唐人則不可不解送也。其逃來即時根尋者，還給本主，已立法矣。”俊又啓曰：“柔遠鎭最是受敵之地，而兵額減耗，防戍虛疎。今徙南民以實之，但甲士不許徙邊，故下三道人民爭屬甲士，其抄定者，皆殘劣無勇之人，於緩急何用哉？徙南民以實邊，本欲禦敵也。臣意以謂勿論甲士，擇其勇健者，徙居何如？”上曰：“可。”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4월 26일 (기미) 3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하직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 일로(一路)는 피폐(疲弊)한 것이 막심한데, 지금 오는 중국 사신은 조관(朝官)의 예(例)가 아니니, 한 곳의 선위사(宣慰使)를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대행(代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서도 이 뜻을 아뢰었다. 그러나 봉명(奉命)하는 사람을 경홀(輕忽)히 할 수는 없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피폐한 것은 내가 이미 익히 알고 있다. 무릇 백성의 휴戚(休戚)19623)은 수령(守令)에게 달려 있으니, 그 무능력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파(罷)하되, 전최(殿最)19624)를 기다리지 말고 계문(啓聞)하여 파출(罷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극돈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신이 듣건대, 평양(平壤)의 축적은 전(前)에는 25만여 석(石)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4, 5만 석일 뿐이라고 하며, 또 들으니, 이 수량 또한 그 수에 차지 못한다 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관리(官吏)가 거두고 흡는 데 마땅함을 잃고 또 따라서 모순(耗損)시킨 것인데, 교대(交代)할 때에 이르러서는 단지 문서(文書)를 전장(傳掌)19625)할 적에 인순(因循)하며 검찰(檢察)하지 아니하여 이에 이른 것이니, 한 사람에게서 징수하고자 하면 갚기가 어렵겠지만, 문서(文書)를 전장(傳掌)한 관리에게 나누어 징수할 것 같으면 수량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p>	<p>○平安道觀察使李克墩辭。 仍啓曰：“平安一路疲敝莫甚。 今來天使，非朝官例也，一處宣慰使，令節度使代行何如？” 傳曰：“政院亦啓此意。 然奉命之人，不可輕忽也。” 仍傳曰：“平安道疲敝，予已灼知。 凡民之休戚，係於守令，其罷軟不堪任者，不待殿最，啓聞罷黜可也。” 克墩啓曰：“上敎允當。 臣聞平壤積儲在前二十五萬餘石，而今纔四五萬石而已，又聞此數亦未滿也。 此無他，官吏斂散失宜，又從而耗之，至交代時，只以文書傳掌，因循不檢，乃至於此。 欲徵之於一人，則難以償納；若分徵於文書傳掌官吏，則可得充數矣。” 傳曰：“當依卿所啓。 且予欲引見，因事煩停之。 卿其往哉，毋負予委任之意。”</p>

	“마땅히 경(卿)이 아뢴 바에 의하도록 하라. 또 내가 인견(引見)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정지한 것인데, 경은 그곳에 가더라도 나의 위임(委任)한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15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4월 30일 (계해) 1번째기사	임금이 망원정(望遠亭)에 거둥하여 수전(水戰)을 보고, 종재(宗宰) 2품(品) 이상과 경연관(經筵官)·대간(臺諫)·사금(司禁) 등에게 주악(酒樂)을 내려 주고, 또 조군(漕軍)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癸亥/上幸望遠亭，觀水戰，賜酒樂于宗宰二品以上及經筵官、臺諫、司禁等，又命饋漕軍。
성종 216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5월 2일 (을축) 3번째기사	앵도(櫻桃) 두 소반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주면서 전교(傳教)하기를, “하나는 장원서(掌苑署)에서 친신(薦新)한 것이고, 하나는 사처(私處)에서 진상(進上)한 것이다. 무릇 유사(有司)들은 마땅히 맡은 직무를 다하도록 하라. 지금 장원서에서 친신한 앵도는 살이 찌고 윤택하지도 않은데다 늦게 진상하여 도리어 사처에서 진상한 것만 못하다. 이러한 친신이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승정원에서 그것을 함께 맛을 보고 해당 관원(官員)을 추국(推鞠)하여 아뢰라.” 하였다.	○下櫻桃二盤于承政院，傳曰：“一是掌苑署薦新，一是私處所進也。凡有司當各盡其職，今掌苑署薦新櫻桃不肥美，且晚進，反不如私進，此薦新豈安於心？政院其共嘗之，當該官員推鞠以啓。”
성종 216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5월 5일 (무진) 1번째기사	임금이 양대비전(兩大妃殿)에 진연(進宴)하였다. 그리고 명하여 종친(宗親) 1품(品),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참판(參判) 이상, 한성부 당상(漢城府堂上), 의빈부(儀賓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서소(西所)에서 대접하게 하고, 사후(射侯)19647) 와 투호(投壺)19648) 를 하도록 하여 흥을 돕게 하고, 인해서 전교(傳教)하기를,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는 실컷 즐기면서 마시도록 하라.” 하였는데, 날이 저물어서야 파(罷)하였다.	○戊辰/上進宴于兩大妃殿。命饋宗親一品、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參判以上、漢城府堂上、儀賓府、承政院、弘文館于西所，令射侯投壺以助歡。仍傳曰：“宗宰宜極歡飲。”抵暮而罷。
성종 216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5월 11일	의정부(議政府),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육조(六曹)에서 변방(邊方)의 일을 아는 재상(宰相)을 명소(命召)하여 영안도(永安道)에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하는 편부(便否)와 경상도(慶尙道) 연변(沿邊)의 왜적을 제어하는 편의를 의논하게	○命召議政府、領敦寧以上及六曹、知邊事宰相，議永安道寧北鎭建置便否及慶尙道沿邊制倭便宜。傳曰：“我國

(갑술) 5번째기사

하고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 연해(沿海)의 백성들이 고기잡이할 때에 늘 고기 낚는 왜인(倭人)을 만나 더러는 약탈을 당하고 더러는 살해(殺害)당하는데, 우리 백성의 힘으로도 오히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혼단(釁端)이 생길까 싶어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그마한 무기도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하는데, 이 때문에 늘 왜적(倭賊)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더러는 말하기를, ‘우리 백성이 바다로 나갈 때에 몰래 무기를 가지고 갔다가 왜구(倭寇)를 만나 잡히게 되면 물에 던져버려도 무방(無妨)하다.’ 하는데, 이들이 비록 고기를 낚는 일반 왜인이기는 하나 도주(島主)가 모르는 바다. 그러나 까닭없이 체포하거나 공격을 한다면 도주가 그것을 듣고서 사건의 곡직(曲直)은 모르고 틀림없이 노(怒)하여 혼단이 생길 것이니, 지금 이 뜻을 가지고 도주에게 통유(通諭)한 뒤에 체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어세겸(魚世謙)·이경동(李瓊全)·윤해(尹垓)는 의논하기를,  
“성상(聖上)의 하교(下敎)가 매우 온당합니다. 다만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하는 사의(辭意)는, 요컨대, 자세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회보(回報)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윤호가 의논하기를,  
“영북진(寧北鎭)의 일은 세조(世祖)조(朝)에도 진지하게 강구(講究)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거대(巨大)하고 군사는 적다는 것으로 끝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본도(本道)의 형세를 모르는데 어떻게 멀리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세를 관찰하건대, 설립(設立)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沿海之民漁採之時，每遇釣魚倭人，或被搶奪，或被殺害。我民之力，猶可以制之，然國家恐因此生釁，禁下海人不得持寸兵，以此每見害於倭。或云：‘我民出海時，密齎兵器，遇有倭寇，捕得投水無妨。’此雖釣魚常倭，島主所不知，然無緣捕擊，則島主聞之，不達事之曲直，必怒而生釁。今將此意，通諭島主後，令捕擒何如？”尹弼商、尹壕、魚世謙、李瓊全、尹垓議：“上教甚當。但通諭島主，辭意要須委曲，使彼開悟。回報後更議何如？”傳曰：“可。”尹弼商、尹壕議：“寧北鎭事，在世祖朝講之熟矣，以其事巨軍少，竟不設。臣等未知本道形勢，安能遙度？然以勢觀之，似難設立。”洪應議：“寧北鎭在先王朝講之熟矣，至今未建置者，豈徒然哉？觀其形勢孤遠，迫近彼土，兵若孤單，難以禦敵。倘曰：‘移置富寧而豐山、茂山、玉蓮、魚游澗等堡合鎭而禦之，則可以支持。’是甚不然。上項諸鎭之兵，本數不敷，而孤遠之地，賊來無方。於是又議建置之策，然則莫若仍舊之爲便。”許琮、魚有沼、慎承善議：“若設寧北鎭，

“영북진(寧北鎭)은 선왕조(先王朝)에서 충분히 강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한 것이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그 형세를 보건대, 외롭고 먼데다 피토(彼土)19660) 에 아주 가깝습니다. 군사가 고단(孤單)하면 적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말하기를, ‘부령(富寧)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풍산(豐山)·무산(茂山)·옥련(玉蓮)·어유간(魚游澗) 등의 보(堡)를 진(鎭)에 합쳐서 막게 한다면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 항(項) 여러 진의 군사는 근본 숫자가 넉넉하지 못한데다 외롭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적이 침입해 오는 길이 일정한 방향이 없으므로, 이에 설치하는 계책을 의논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신승선(愼承善)은 의논하기를,

“만약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한다면 경성(鏡城)·부령(富寧)이 모두 내지(內地)가 되어 방어하는 것이 덜리게 됩니다. 다만 설립하는 곳이 부령과의 거리가 4식(息)을 밀들지 않으나 형세가 매우 외롭게 떨어져 있으니 군사의 배치가 적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습니다. 만약 부령진(富寧鎭)을 저곳으로 옮긴다면 이것은 밖을 충실하게 하고 안을 허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령 관내(管內)의 고부거(古富居) 등지의 인민(人民)이 만약 영북(寧北)에 가려면 반드시 하룻밤을 경과해야 도착할 수 있으니, 부령은 옮길 수 없습니다. 만약 부령을 옮기지 않는다면 배치되는 군사가 반드시 적어서 형세가 매우 불편합니다. 또 영북에서 회령(會寧)까지의 거리도 7,8식(息)을 밀들지 않으니, 그 사이에 만약 진(鎭)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북이 외롭게 멀리 떨어져 있어 구원하기가 어려우니, 모름지기 3,4처(處)에다 진을 설치해야만 되겠습니다. 만약 진을 설치한다면 풍산(豐山)·무산(茂山)·옥련(玉蓮) 등의 보(堡)도 마땅히 영북(寧北)으로 옮겨서 방수(防戍)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곳에 방수하는 군사들을 단합하게 할 방도가 없으니 형세가 또한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모두 산골짜기가 험악하고 평원(平原)과 넓은 들이 없으니, 지금 비록 진을 설

則鏡城、富寧皆爲內地，防禦省矣。但設立之處，距富寧不下四息，勢甚孤絕，置軍少，則不可示威。若徙富寧鎭於彼，則是實外而虛內。且富寧任內古富居等處人民，若往寧北，則必經宿乃達，富寧不可徙也。若不徙富寧，則置軍必少，勢甚不便。又自寧北距會寧則亦不下七八息，其間若不置鎭，寧北孤遠，難以救援。必須三四處置鎭，然後可也。若置鎭，則豐山、茂山、玉蓮等堡當徙戍寧北，此處戍軍，團合無由，勢又不便。且其地皆山谷險阻，無平原曠野，今雖置鎭，必無久遠之勢。臣等恐無益而貽害於後矣，不設爲便。” 鄭蘭宗、辛鑄、李欽石、吳滋、辛錫康議：“今寧北設置之地，坐斷諸部出入之路，設巨鎭、置重兵以控制之，實是扼項答背之勢。豐、茂、玉、魚諸堡皆爲內地，禦戎之策，利益實多。頃在先王朝熟計欲置，只以懸孤之處，軍丁不敷，未卽施行，乃至今日。今雖以富寧諸鎭之兵舉數移屯，元額不多，不可恃此而戍。控弦之士，少不下七八百餘兵，乃可當之。宜令該司調發軍丁多少得宜以啓

	<p>치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오랫동안 버틸 형편이 못됩니다. 신 등은 아마도 유익한 것은 없고 후세에 피해만 끼칠 듯하니,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정난중(鄭蘭宗)·신주(辛鑄)·이흠석(李欽石)·오서(吳濼)·신석강(辛錫康)은 의논하기를,</p> <p>“지금 영북(寧北)에 설치하려는 지역은 앞서 여러 마을에 드나드는 길을 차단할 수 있으니, 큰 진을 설치하고 중병(重兵)을 배치해서 통제(控制)한다면 실로 이것은 목을 누르고 등을 치는 형세가 되며, 풍산(豐山)·무산(茂山)·옥련(玉蓮)·어유간(魚游澗) 등 여러 보(堡)가 모두 내지(內地)가 되어 오랑캐를 막는 계책으로 이익이 실로 많습니다. 지난 선왕조(先王朝)에서도 충분히 계획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니다. 다만 외롭게 떨어진 곳으로 군정(軍丁)이 넉넉지 않다 하여 즉각 시행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령(富寧) 여러 진의 병사들을 모두 옮겨서 주둔시키더라도 원액(元額)이 많지 않으니, 이것을 믿고서 방수(防戍)할 수 없으며, 활을 쏠 수 있는 군사가 적어도 7,8백여 명 이상이 되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군정(軍丁)의 다소(多少)를 조발(調發)하게 하여 적당한 것을 강구해서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정난중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後, 更議何如?” 從蘭宗等議。</p>
<p>성종 216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5월 26일 (기축) 4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p> <p>“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순보(金舜輔)가 광판(榔板) 6개, 중미(中米) 6석(碩), 속미(粟米) 3석, 콩[豆] 2석을 거둬들인 것은 율(律)이 결장(決杖) 90대에 도(徒) 2년 반이며, 고신(告身)은 모두 빼앗고 ‘도관량(盜官糧)’ 3자(字)를 자자(刺字)19709) 하고 장안(贓案)19710) 에 기록하는 데 해당합니다.”</p> <p>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회(沈滄)가 의논하기를,</p>	<p>○義禁府啓: “忠州牧使金舜輔榔板六、中米六碩、粟米三石、豆二碩入己, 律該決杖九十、徒二年半、告身盡行追奪、刺‘盜官糧’三字、錄案。”</p> <p>命議于領敦寧以上。沈滄議: “金舜輔所犯太重, 宜依律文科罪。然時方極熱, 若決杖, 則殞命可慮。除決杖,</p>

	<p>“김순보는 범(犯)한 것이 매우 중하므로 마땅히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바야흐로 몹시 더운데 만약 결장(決杖)을 한다면 죽을까 염려되니, 결장은 면제하고 나머지는 계목(啓目)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계목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그 어미의 나이가 80세이고 김순보는 독자(獨子)입니다. 율(律)에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존류(存留)시킨다는 조문(條文)이 있습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계목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다만 자자(刺字)는 성상(聖上)께서 재결(裁決)하소서.”</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계목대로 시행하게 하시고 그 상언(上言)은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의계(議啓)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존류(存留)하게 하고 자자(刺字)하는 것은 면제시키도록 하라.”</p> <p>하였다.</p>	<p>餘依啓目施行。” 尹弼商議：“依啓目施行。但其母年滿八十，而舜輔獨子，則律有存留養親之文。” 洪應議依啓目施行。但刺字，上裁。” 李克培議：“依啓目施行。其上言，令該司議啓。” 傳曰：“存留，除刺。”</p>
<p>성종 217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6월 5일 (정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사(武士)들의 무예(武藝)를 시험하였다. 환궁(還宮)할 때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의 집에 거둥하여 면포(綿布) 1백 50필, 쌀 40석(碩), 황두(黃豆) 20석을 하사하고,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공주(公主)를 보니, 차마 갑자기 돌아갈 수가 없어서 잠시 머물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시위(侍衛)하는 여러 장수들이 더위를 무릅쓰고 서 있는 것이 염려되니, 각각 편한 곳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라.”</p> <p>하였는데, 날이 저물어 환궁(還宮)하였다.</p>	<p>○丁酉/上幸慕華館，試武士藝。還宮時，歷幸豐川尉任光載家，賜絺布一百五十匹、米四十碩、黃豆二十碩。傳曰：“今見公主，不忍遽還，欲少留。但慮侍衛諸將，冒暑而立，其各就便處以待之。” 日暮還宮。</p>
<p>성종 217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p>	<p>종친(宗親) 2품 이상, 동반(東班) 3품 당상관, 승지(承旨),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官員), 도총관(都總管), 여러 장수에게 후추[胡椒]를 차</p>	<p>○乙巳/宗宰二品以上、東班三品堂上官、承旨、弘文館藝文館官員、都總</p>



<p>(弘治) 1년 6월 13일 (을사) 1번째기사</p>	<p>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管諸將，賜胡椒有差。</p>
<p>성종 217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6월 14일 (병오) 2번째기사</p>	<p>전 교리(校理) 최부(崔溥)가 북경[京師]으로부터 돌아와서 청과역(靑坡驛)에 묵으니, 명하여 일기(日記)를 찬진(撰進)하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이섬(李暹)이 표류(漂流)했다가 생환(生還)하였으므로, 특별히 초자(超資)하도록 명하였었다. 최부(崔溥)는 쓸 만한 사람인데, 이제 또 만리(萬里)를 표박(漂泊)하였다가 아무 탈 없이 생환(生還)하였으니, 그를 서용(敍用)하는 명은 마땅히 상(喪)을 마친 후에 할 것이고, 우선 쌀·콩 약간과 부물(賻物)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평하기를, “최부(崔溥)가 만약 이때에 사례(謝禮)하고, 상(喪)을 당하여 어미를 보고 난 후에 일기(日記)를 찬집(撰集)하겠다고 하였다면, 임금이 반드시 따르셨을 것이고 사람들도 끼어들어 말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훗날의 의논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자신에게 누가 되게 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하였다.</p>	<p>○前校理崔溥還自京師，寓靑坡驛。命撰進日記。溥曰：“李暹漂流生還，特命超資。溥可用人，今又漂泊萬里，無恙生還。其敍用之命，當在喪畢之後，姑賜米豆若干及賻物。”  【史臣曰：“溥若於此時辭謝，請奔喪覲母然後撰集日記，則上必從之，人無間言矣。今不能所以招後日之議也。然以是爲身累則過矣。”】</p>
<p>성종 217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6월 15일 (정미)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정난중(鄭蘭宗)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여름 석 달 동안 왜인(倭人)이 바친 것에 대하여 답사(答賜)한 포백(布帛)을 헤아려 보니 무려 10여 만 필(匹)이고, 사섬시(司贍寺)에 남아 있는 것은 단지 80여 만 필뿐입니다. 석 달의 비용(費用)이 이와 같이 많다면, 국가(國家)의 유한(有限)한 재물로 잇대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저들이 와서 바치는 물건으로 오매목(烏梅木)·소목(蘇木) 등의 물건은 공사간에 쓰이는 것이지만, 속향(束香)·정향(丁香)·백단향(白檀香)·후추[胡椒] 등의 물건은 모두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값만 몹시 비싼 것입니다. 더욱이 후추[胡椒]는 의영고(義盈庫)에 쌓아둔 것이 6백여 근(斤)이나 되어 나라의 소용(所用)에 여분이 있습니다. 단지 저 사람들의 욕심을 형편상 물리치기 어려우니, 마땅히 임시로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바친 물건은 소용(所用)되는 것이 긴요하지 않고</p>	<p>○丁未/戶曹判書鄭蘭宗來啓曰：“今計夏三朔倭人所獻答賜布帛，無慮十餘萬匹，而司贍遺儲，只八十餘萬匹耳。三朔之費如此其多也，則以國家有限之貨，恐難繼之。彼人來獻之物，唯烏梅木、蘇木等物，則公私所用也；如束香、丁香、白檀香、胡椒等物，皆不繫於用，而價則太重。況胡椒，義盈庫所儲六百餘斤，國用有餘矣。但彼人所利，勢難固却，當權辭語之曰：‘爾輩所獻之物，皆不繫於用，價甚重爾。</p>

	<p>값만 매우 비싼데, 만약 값을 깎아서 받는다면 일일이 답사(答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바에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타이르고, 그 거취(去就)를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과연 옳다. 그것을 예조(禮曹)와 상의(商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若減價而受，則當一一答賜，不然則似難從願。’如是開諭，觀其去就何如?” 傳曰：“所啓果是。其與禮曹商議以啓。”</p>
<p>성종 217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6월 23일 (을묘) 1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노병(老病)으로 복약(服藥)하는 것과 병술[瓶酒]을 가진 자 외에는 일체 금주(禁酒)하도록 하라.”</p> <p>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근래에 시신(屍身)을 유기(遺棄)한 옥사(獄事)로 인하여 형벌이 무고(無辜)한 자에게 미치는 것이 또한 있다 하는데, 내가 구중(九重)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어떻게 알겠는가? 유사(攸司)는 마땅하게 검찰(檢察)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도록 하라.”</p> <p>하였다.</p>	<p>○乙卯/傳曰：“老病服藥及持瓶酒者外，一切禁酒。”仍傳曰：“近因棄屍之獄，刑及無辜者亦有之。予在九重之內，安得知之? 攸司宜檢察，以謹天戒。”</p>
<p>성종 217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6월 25일 (정사) 4번째기사</p>	<p>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집(李諱)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최부(崔溥)와 같은 때에 표류(漂流)했다가 돌아온 광산 기관(光山記官) 정보(程保) 등 42인을 한 군데 모이게 하여 후하게 공궤(供饋)하고, 그때 공이 있던 허상리(許尙理) 등 18인에게 각각 면포(綿布) 2필과 정포(正布) 2필씩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下書全罷道觀察使李諱曰：“崔溥一時漂流還來人光山記官程保等四十二人，令聚一處厚饋之。其時有功許尙理等十八人，各給緜布二匹、正布二匹。”</p>
<p>성종 217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6월 29일 (신유) 1번째기사</p>	<p>정사(政事)를 보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극검(金克儉)이 형조(刑曹)의 삼복(三覆)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개령(開寧)의 죄수인 중[僧] 일관(一寬)이 사노(私奴) 금음금(今音金)을 찢러 죽이고 잡물(雜物)을 강탈(強奪)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됩니다.”</p>	<p>○辛酉/視事。左副承旨金克儉將刑曹三覆啓本啓：“開寧囚僧一寬刺殺私奴今音金強奪雜物罪，律該斬不待時。”從之。克儉又將刑曹初覆啓本啓：“典獄囚安仲山越宮城罪，律該絞</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극검(金克儉)이 또 형조(刑曹)의 초복(初覆)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옥(典獄)의 죄수인 안중산(安仲山)이 궁성(宮城)을 넘어간 죄는, 율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됩니다.”  하였는데, 임금(上)이 좌우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안중산(安仲山)의 죄는 실로 율(律)이 마땅합니다만, 단지 술에 취해서 범한 것이니, 정상(情狀)이 용서할 만합니다. 또 성(城)을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울타리[藩籬]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이니, 말감(末減)으로 논해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안중산(安仲山)은 돈화문(敦化門)의 동쪽 담장이 무너져 울타리로 보수한 곳으로 나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성(皇城)을 넘어간 것은 율에 정조(正條)가 있으니, 술에 취했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으며, 또한 울타리[藩籬]로 논할 수도 없다. 단지 전일에 이 죄를 범한 자를 말감(末減)한 적이 있으니, 안중산(安仲山)은 죽음을 감해 줄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p>	<p>待時。” 上問左右，僉曰：“仲山罪固當律。但醉酒所犯，情可恕也。且非越城也，其必以謂藩籬而越之，宜末減論。” 【仲山出自敦化門東墻頽圯籬補處。】 上曰：“越皇城，律有正條，不可以醉恕也，亦不可以藩籬論也。但前日有犯此罪者末減，仲山減死可也。”</p>
<p>성종 218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7월 1일 (임술) 4번째기사</p>	<p>감선(減膳)19776) 을 명하였다.</p>	<p>○命減膳。</p>
<p>성종 218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7월 8일 (기사) 3번째기사</p>	<p>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 등이 아뢰기를,  “이제 이미 비가 내렸으니 복선(復膳)19801)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상도는 비가 내린 것을 내가 이미 들었으나 다른 도는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안심하겠는가?”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司饗院提調玉山君躋等啓曰：“今既得雨，請復膳。” 傳曰：“慶尙道雨澤，予既聞之，他道則時未之間，予豈安心乎？” 不許。</p>

<p>성종 218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7월 10일 (신미)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이제 비가 내린 것이 이미 족하므로 양전(兩殿)께 복선(復膳)하기를 청하고 자 한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요즈음 가뭄이 크게 심하지 아니하고 여러 도(道)에 이제 비가 내려서 이미 풍년들 희망이 있으니,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자,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에게 명하여 창경궁(昌慶宮)에 나아가서 복선 하기를 청하게 하니, 양전께서 하교하기를, “주상께서 복선하시면 우리들도 복선하겠다.” 하였다. 송영이 돌아와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복선하라.” 하였다.</p>	<p>○傳曰：“今雨澤已足， 欲請兩殿復膳。” 承政院啓曰：“近日之旱， 不至太甚， 而諸道今有雨澤， 已有西成之望， 上敎允當。” 卽命都承旨宋瑛詣昌慶宮請復膳。 兩殿敎曰：“主上復膳， 則予等亦復之。” 瑛回啓， 傳曰：“其復膳。”</p>
<p>성종 218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7월 16일 (정축) 1번째기사</p>	<p>고(故)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어)의 아들 이중생(李衆生)이 상서(上書)하 기를, “엎드려 아뢰입니다. 신의 조모(祖母) 양씨(楊氏)가 세종 대왕(世宗大王)의 후궁 (後宮)으로 뽑혀 들어와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맏이는 신의 아버지 어(罷)이고, 다음은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玪)이며, 셋째는 〈영풍군(永豐君)〉 이진(李璫) 입니다. 문종(文宗)이 동궁(東宮)으로 계실 때에 노산(魯山)19808) 을 낳자 양씨가 세종 대왕의 명을 받들어 몸소 어루만져 길렀는데, 노산이 죄를 입음 에 미쳐서는 양씨가 연좌되어 사사(賜死)되었으니, 그 아들이 완전(完全)할 이 치가 없습니다. 현은 먼저 죽어서 면할 수 있었고, 신의 아버지 어와 전은 지나 간 을해년19809) 에 모두 외방 부처(外方付處)되어 신의 아버지 어는 함양(咸 陽)에 있었는데,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공훈(矜恤)을 극진히 더하여 의복과 진귀한 음식을 연속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무인년19810) 에 이르러 신 을 낳았는데 이듬해 기묘년19811) 에 불행히 병사[病沒]하였습니다. 세조 대</p>	<p>○丁丑/故罷子衆生上書曰： 伏以臣祖母楊氏選入世宗大王後宮， 得生三子， 長曰：“臣父罷， 次曰壽春君玪， 三曰璫、 文宗在東宮時， 乃生魯山， 楊氏承世宗之命， 躬自撫養。 及魯山被罪， 楊氏以緣坐賜死， 則其子理無完全。 玪先沒得免， 追坐臣父罷及璫， 去乙亥年皆付處于外。 臣父罷在咸陽， 世祖大王曲加矜恤， 衣服珍異之羞， 連續賜賚。 至戊寅年乃生臣， 翌年己卯不幸病歿。 世祖大王命備棺槨葬之， 又慮妻子失業， 命遣臣外祖權格</p>

왕께서 관곽(棺槨)을 갖추어 장사지내도록 명하시고 또 처자(妻子)가 생업을 잃은 것을 염려하여 신의 외조부(外祖父) 권격(權格)을 명해 보내어 보호해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오게 하여 그 삶을 이루게 하였으니, 만약 수명의 연장을 얻었으면 재조(再造)19812)의 은혜를 조금 입었을 것입니다. 신이 미루어 생각함이 여기에 미치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신이 그옥이 생각하던 대, 노산(魯山)의 외구(外舅)19813) 송현수(宋琰壽)의 인친(姻親)인 정종(鄭悰)은 함께 극형(極刑)을 당하였는데 그 아들 송거(宋瑠)와 정미수(鄭眉壽)는 벼슬길에 통함을 얻어서 모두 좋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신은 연좌(緣坐)된 데 연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파계(派系)는 선원(璿源)19814)에 있으면서 몸은 금망(禁網)에 걸려 상인(常人)의 열(列)에도 오히려 끼이지 못하니, 이는 신이 하늘을 우러러 찢어지는 듯한 아픈 마음을 호소하며 몹시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신의 일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죄를 범하고서도 오히려 혹시 용서받을 수 있는 예(例)가 아니며, 또한 밑에 있는 신하가 마음대로 계달할 바도 아닙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신의 급박한 뜻을 상달할 길이 없어서 감히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우러러 성청(聖聽)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양씨(楊氏)가 선왕조(先王朝)에서 자신이 중죄를 범하여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었는데, 그 자손을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심희(沈澮)·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신은 어(訛)가 범한 바 죄의 경중을 알지 못하며, 그 아들을 서용(敍用)하는 가부를 마음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어의 죄는 그 자세함을 알지 못하나, 어가 만약 연좌되었으면 이중생(李衆

護率上京，俾遂其生。 若得延年，少蒙再造之恩，臣追念及此，心焉如割。 臣竊以爲魯山外舅宋琰壽、姻親鄭悰懼被極刑，其子瑠及眉壽得通仕路，竝登顯秩。 臣非徒緣坐之緣坐。 事在未生之前，派接璿源，身罹禁網，猶不得齒常人之列，此臣所以仰天摧心，泣盡繼血者也。 今臣之事，非如他人身犯罪辜，猶或在赦原之例，亦非在下之臣所能擅達。 事至如此，則臣之危迫之情，無路上達，敢冒天威，仰瀆聖聽。

命領敦寧以上及政府議之。 尹弼商議：“楊氏在先王朝身犯重罪，事關宗社，其子孫不可輕議。” 沈澮、洪應、李克培、盧思愼議：“臣未知訛之所犯輕重，其子之得敍與否，不可以擅度。” 尹壕議：“訛之罪未知其詳，訛若緣坐，則衆生終身禁錮，似爲憐憫。 然事干亂逆，輕議爲難。” 李鐵堅議：“訛之罪犯，臣未的知，衆生許通仕路當否，不敢妄議。 但其初已分揀付處。” 孫舜孝議：“世祖大王靖難之後，或賜死，或爲功臣奴婢，或徒流，隨其罪之輕重

	<p>生)을 종신토록 금고하는 것은 가련한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난역(亂逆)에 관련되었으므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어의 범죄는 신이 확실히 알지 못하여 이중생을 벼슬길에 통하기를 허락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는 감히 망령되이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처음에 이미 분간하여 부처(付處)하였던 것입니다.”</p> <p>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정난(靖難)하신 뒤에 혹은 사사(賜死)하고 혹은 공신(功臣)의 노비로 삼고 혹은 도류(徒流)하여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구처하였는데, 그 때 신은 말류(末流) 벼슬에 종사하였으므로 미처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구처한 문안(文案)이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있으니, 그 사(司)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여 성상께서 재량해 시행하소서.”</p> <p>하고,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어의 죄명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선왕께서 이미 간당(奸黨)으로써 죄를 주었는데, 그 아들 이중생을 벼슬길에 통하도록 허락하여 속적(屬籍)에 붙일 수 없습니다.”</p> <p>하였는데,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p>	<p>而區處之。其時臣從仕末流，未及詳知，區處文案，俱在義禁府，令其司相考，上裁施行。”李崇元議：“罷之罪名，臣未詳知。先王既以奸黨罪之，其子衆生不可以許通仕路，附之屬籍也。”命留承政院。</p>
<p>성종 218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7월 20일 (신사)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강무(講武) 때에 군사들이 민간의 곡식[禾稼]을 침해하며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되,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장수(將帥)를 죄줄 것이다.”</p> <p>하였다.</p>	<p>○辛巳/傳曰：“講武時軍士，毋得侵損民間禾稼。若有犯者，當罪其將。”</p>
<p>성종 218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7월 22일 (계미) 1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박성근(朴成根)의 장물(贓物)을 김훈(金薰)이 찾지 못하고 왔는데, 다만 어제 번좌(番佐)가 【어우동(於于同)의 딸[女]이다.】 말하기를, ‘이미 할머니를 초빈[殯]한 사흘 만에 박성근과 그 아내가 한곳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박성근의 어린 아들이 나무로 된 인장을 가지고 장난하기에 내가 취하여 보니 바로</p>	<p>○癸未/都承旨宋瑛啓曰：“成根贓物，金薰不得而來。但昨日番佐【即於宇同女也。】言：‘既殯大母之三日，與成根及其妻會食於一處。成根之孺子，持木印爲戲，吾取而見之，則乃大母姓</p>

할머니의 성도장[姓印]이었는데, 전후의 문권(文券)에 찍었던 것입니다. 이 도장을 새로 지은 홑적삼[單衫] 끈에 매어달았다가 할머니가 해를 당할 때에 도둑이 함께 가져갔는데, 「네가 어디서 얻었느냐?」고 하자,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박성근이 곧 빼앗아 주면서 말하기를, 「어머니 빈소(殯所) 처마 밑에서 주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아니되어 경차관(敬差官)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듣고는 불에 태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박성근에게 물으니, 모두 변좌의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도 하나의 장물(贓物)이다. 그러나 박성근의 옥사(獄事)는 강도(強盜)의 예(例)가 아니므로 반드시 그 장물을 찾아서 질정할 것은 아니다. 박성근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로써 그 형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하다. 위관(委官) 등을 불러서 의논하라.”

하자, 홍응(洪應) 등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왕석(往石)과 정소(鄭韶)가 승복하지 아니하였는데 먼저 박성근의 죄를 정하면, 저들이 다시 다른 꾀를 낼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두 사람이 승복(承服)하기를 기다린 뒤에 박성근의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인해서 전교하기를,  
 “정자순(鄭自淳) 이하 일에 관련된 사람을 석방하고 왕석과 정소만 굳이 추핵하면, 저들이 스스로 면할 계책이 없음을 알고 이미 승복할 것이니,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홍응 등이 대답하기를,  
 “정자순의 사적(事跡)은 엮어 꾸미는 데 가까우니, 석방할 수 없습니다.”

印，而前後文券所着者也。 「此印繫於新製單衫之紐，而大母遇害之時，賊并取之。汝於何所得之耶？」孺子曰：「吾父與之。」成根卽奪而與之，曰：「得於母殯之簷下耳。」已而聞敬差官下來之奇，以火燒之。’問於成根，則悉如番佐所言。” 上曰：“此亦一贓。然成根之獄，非強盜例，不必求其贓物而質之。成根既服，以此正其典刑可也。其召委官等議之。” 洪應等啓曰：“上敎允當。但往石、鄭韶未服，而先定成根之罪，則恐彼復生異計。請待二人承服，然後定成根之罪何如？” 傳曰：“可。” 仍傳曰：“鄭自淳以下事干人放之，而堅推往石、鄭韶，則彼知無計自免，既承服矣，放之何如？” 應等對曰：“自淳事跡，涉於綱繆，不可放也。”

	하였다.	
성종 219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8월 10일 (신축) 1번째기사	임금이 서교(西郊)에 거둥하여 관가(觀稼)19849) 하였는데, 길에서 농민(農民)을 만나 술과 안주를 내려 주니, 마을과 들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망원정(望遠亭)에 임어(臨御)하여 호종(扈從)하는 재추(宰樞)에게 술을 내려 주고, 명(命)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에게 구마(廐馬) 한 필, 면포(綿布) 1백 50필, 정포(正布) 1백 필, 면자(綿子) 10근, 쌀 40석(碩), 황두(黃豆) 20석을 하사하였다.	○辛丑/上幸西郊觀稼。 道遇農民賜酒饌，村野間瞻望者，莫不欣喜。 上御望遠亭，賜扈從宰樞酒，命賜月山大君婷廐馬一匹、絛布一百五十四、正布一百匹、綿子一十斤、米四十碩、黃豆二十碩。
성종 219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8월 15일 (병오) 1번째기사	임금이 양 대비전(兩大妃殿)에 잔치를 올리었다. 명하여 종재(宗宰)와 입직(入直)한 모든 장수와 홍문 관원(弘文館員)에게 인정전(仁政殿) 뜰에다 술을 내려주고, 전교하기를, “이제 추석(秋夕)에 양전(兩殿)께 진연(進宴)을 하였으니 또한 즐겁지 않으냐? 종재(宗宰)들은 기쁘게 마시고 취하는 것을 한도로 함이 좋으리라.” 하고, 이내 추석 진연(秋夕進宴)을 제목[題]으로 한 율시(律詩)와 종재에게 사연(賜宴)함을 제목으로 한 율시(律詩)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다.	○丙午/上進宴于兩大妃殿。 命於仁政殿庭賜宗宰、入直諸將、弘文館酒。 傳曰：“今於秋夕，進宴兩殿，不亦樂乎？ 宗宰其歡飲，以醉爲度可也。” 仍命題‘秋夕進宴’律詩及‘賜宴宗宰’律詩製進。
성종 219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8월 20일 (신해) 1번째기사	영안도 양전 순찰사(永安道量田巡察使) 이극중(李克增)이 하직하니, 궁시(弓矢)·건복(韃服)과 단의(段衣) 1령(領), 주의(紬衣) 3령을 갖추어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경(卿)의 행차를 내가 직접 보고자 했으나 마침 미양(微恙)이 있어 실행하지 못한다.” 하고, 이어서 여섯 승지(承旨)를 명하여 빈청(賓廳)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辛亥/永安道量田巡察使李克增辭，賜弓矢、韃服具、段衣一領、紬衣二領。 傳曰：“卿之行，予欲親見，適有微恙不果。” 仍命六承旨饋于賓廳。
성종 219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8월 26일 (정사)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동지중추(同知中樞) 김세적(金世勣)이 지금 적성(積城)에 근친(覲親)하고자 하니, 그 감사(監司)로 하여금 식물(食物)을 갖추어 주게 하라. 지난번에 봉여(封餘)19885) 식물(食物)을 계속 보내라고 했었는데, 그 거행의 여부를 감사(監司)에게 물으라. 또 사옹원(司饗院)의 육물(肉物)을 하사하게 하라. 내가	○丁巳/傳曰：“同知中樞金世勣今欲覲親于積城，其令監司備給食物。 前者命續致封餘食物，其舉行與否，問于監司。 且賜司饗院肉物。 予之所以如此者，以世勣有將才，故特加恩典，令



	<p>이와 같이 하는 것은 김세적이 장재(將材)가 있으므로 특히 은전(恩典)을 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권장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김세적(金世勳)이 장재(將才)가 있다 하여 가려서 승지(承旨)에 발탁시키고 배우지 못했다 하여 학문을 배우게 하였고, 이제 또 은혜가 그 부모에게 미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권우(眷遇)19886) 가 지극하였다. 그러나 재질(材質)이 노둔하고 공부가 더 나가지 아니하여 그가 충청도 수군 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가 되었을 때는 방자함이 특히 심하더니, 결국에는 일찍 죽어 한 가지 일도 국가에 보답해 도움된 것이 없었다. 비록 하늘이 수명을 더하게 하였더라도 지식(知識)이 천박하니 어찌 의지해 장수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他人知勸耳。”</p> <p>【史臣曰：“上以世勳有將材，擢爲承旨，以其不學，使之受學。今又恩及父母如此，其眷遇至矣！然材質魯鈍，學不加進。其爲忠淸道水軍節度使，橫恣特甚，竟早卒，無一事補效於國家。雖天假之年，知識淺短，豈可倚以爲將？”】</p>
<p>성종 220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9월 12일 (임신)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대비(大妃)께서 한열증(寒熱證)19914) 을 오래 앓으시니, 이달 안에 나오시더라도, 내가 어찌 안심하고 강무(講武)할 수 있겠는가? 멈추는 것이 어떠한가?”</p> <p>하였다.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p> <p>“성상께서 분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강무는 큰 일인데 지난해에 거행하려다가 하지 못하였고, 올해에 또 거행하려고 모든 일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대비께서 조금 평상으로 회복하여 찬선(饌膳)을 드시거든 하룻길이나 한나절 길 되는 데에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으랴마는, 대비께서 편찮으시어 일이 거행되기 어렵겠으므로 일찍부터 멈추려는 것이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물으라.”</p> <p>하였다.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p> <p>“멈추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p>	<p>○壬申/傳于承政院曰：“大妃久患寒熱證，雖於今朔內平善，予豈得安心講武乎？停之何如？”承旨等啓曰：“上教允當。但講武大事，前年欲行而未果，今年又欲行之，諸事已具，待大妃稍平復進膳後，或一日程，或半日程行之何如？”傳曰：“予豈不思乎？但大妃未寧，事必難行，故欲早停耳。其問于領敦寧以上。”沈滄、尹弼商、洪應、盧思愼議：“停之爲便。”李克培、尹壕議：“所徵軍士已就程，講武雖未可行，命將點考後，放遣何如？”從克培等議。</p>

	<p>하고, 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징발된 군사는 이미 길을 떠났으니, 강무는 거행할 수 없더라도, 장수에게 명하여 점고(點考)한 뒤에 헤쳐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극배 등의 의논을 따랐다.</p>	
<p>성종 220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9월 13일  (계유) 2번째기사</p>	<p>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이승건(李承健)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의 형 이승녕(李承寧)이 이제 제주(濟州) 경차(敬差)의 명을 받았으나, 신의 어머니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고쳐 차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그 어머니에게 약을 내려 주었다.</p>	<p>○弘文館校理李承健上書曰：  臣兄承寧今受濟州敬差之命，而臣母病苦，請改差。  從之。又賜其母藥。</p>
<p>성종 220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9월 16일  (병자)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가 이어소(移御所)에 문안하니, 인수 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내 병이 어찌 피접(避接)하였다 하여 나올 수 있으랴마는, 창경궁(昌慶宮)은 내가 홀로 사는 곳이 아니라 왕대비가 계시고, 또 요즈음 병을 앓는 궁인(宮人)이 많아서, 이 때문에 주상(主上)께서 굳이 피접을 권하시므로, 내가 마지 못하여 따른 것이다. 다만 주상께서도 여기에 이어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미안하니, 주상께서 환궁(還宮)하여 3, 4일에 한 번이나 5, 6일에 한 번 왕래하며 문안하시는 것이 좋겠다. 내 병후(病候)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위급하여 질 것이 아니니, 다시 다른 증세가 생기거든 여기에 와서 약을 보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재상(宰相)들은 내 뜻으로 주상께 환궁을 권하시오.”  하였다. 윤필상 등이 대비의 분부에 따라 환궁을 계청(啓請)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출어(出御)한 것은 증후(證候)에 따라 방문(方文)을 살펴 약을 의논하고 약을 올릴 때에 내가 반드시 먼저 맛보려는 것이다. 어찌 잠시라도 멀리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윤필상이 대비전에 아뢰기를,</p>	<p>○丙子/領議政尹弼商、廣陵府院君李克培、玉山君躋、禮曹判書柳攄問安于移御所。仁粹王大妃傳曰：“予病豈可以避接獲愈乎？但昌慶宮非予獨居之處，王大妃在焉，且近者宮人患病者多，以此主上強勸避寓，故予不得已從之耳。但主上亦移御于此，予心未安。主上還宮，或三四日一次、或五六日一次往來問安可也。予病候非一二日之間，遽危急也。若更生他證，來此視藥未晚。宰相等其以予意勸主上還宮。”弼商等以大妃之教，啓請還宮。傳曰：“予之出御，欲隨證候考方議藥，當進藥，予必先嘗耳，豈可須與遠處乎？”弼商啓大妃殿曰：“臣等將傳教啓請還宮，上以視藥不可退處，故不</p>

	<p>“신들이 전교에 따라 환궁을 계청하였으나, 성상께서 약을 보는 일 때문에 물러가 계실 수 없으므로 윤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대비께서 분부하신 것이 옳기는 하나 전하께서 분부하신 것은 더욱 마땅하니, 장차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겠습니까?”</p> <p>하니, 대비가 전교하기를,</p> <p>“내 병은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고 또 위급한 증세가 아닌데, 더구나 이제 내가 약 먹기를 싫어하여 하루에 한 번만 먹을 뿐이니, 다시 다른 증세가 있거든 주상께서도 와서 병구완하시는 것이 옳겠다. 주상께서 환궁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병이 더할 것이니, 반드시 다시 계청하여야 할 것이오.”</p> <p>하였다. 윤필상 등이 이 뜻으로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p> <p>“대비께서 이어하셨으므로 내가 차마 물러가 있을 수 없으나, 굳이 자지(慈旨)19921) 를 어길 수 없으니, 내가 환궁하겠다.”</p> <p>하였다. 윤필상 등이 또 이 뜻을 대비에게 아뢰니, 대비가 전교하기를,</p> <p>“나는 이미 청을 허락받지 못하였거니와, 경(卿)들에게 힘입어 청을 허락받았으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오.”</p> <p>하였다.</p>	<p>允。 臣等以謂大妃之教雖是， 殿下之教尤爲允當， 將何以處之？” 大妃傳曰：“予病非今日始， 且非危急之證。 況今予厭飲藥， 一日之內， 只飲一服而已。 若更有他證， 主上亦可來救藥也。 主上若不還宮， 則予心不得寧而病必加矣， 須更啓請。” 弼商等以此更啓， 傳曰：“大妃移御， 予不忍退處。 然不可強違慈旨， 予將還宮。” 弼商等又以此啓大妃， 大妃傳曰：“予旣不得請焉， 賴卿等得請， 予心甚喜。”</p>
<p>성종 22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0월 2일 (임진) 4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에게 전교하기를,</p> <p>“내가 항상 이어소(移御所)에 있으면서 약(藥)을 맛보고서 드리고자 하나 대비(大妃)께서 미안하게 여기시는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약방 제조(藥房提調) 등은 만약 내후(內候)가 탄 증세로 변함을 듣거든 드릴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계품(啓稟)할 것 없이 때에 맞추어 다려 드리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于都承旨宋瑛曰：“予欲常在移御所嘗藥以進， 大妃以爲未安， 故未果。 藥房提調等， 若聞內候轉成他證， 有可進之藥， 其勿啓稟， 趁時煎進。”</p>
<p>성종 22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0월 2일</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외간(外間)에 존귀(尊貴)한 부인(婦人)으로서, 연갑(年甲)19964) 이 되고 증세가 대비(大妃)와 서로 같은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약이(藥餌)를 복용케</p>	<p>○傳于承政院曰：“外間尊貴婦人， 其年甲證候與大妃相似者， 必有之。 欲令服藥餌以驗之， 其以此意諭五部。”</p>

<p>(임진) 5번째기사</p>	<p>하여 징험하고자 한다. 이 뜻을 5부(五部)19965) 에 유시(諭示)하라.” 하였다.</p>	
<p>성종 221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0월 24일(갑인) 4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성숙(成俶)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道內)의 함양 군수(咸陽郡守) 조위(曹偉)와 의성 현령(義城縣令) 유호인(兪好仁)의 부모(父母)가 있는 곳에 각각 쌀 4석(碩), 황두(黃豆) 2석(碩), 식염(食鹽) 5석(碩), 미역 1상(箱), 청주(淸酒) 10병(瓶)을 내려 주되, 건물(乾物)과 해(醢)도 편의(便宜)에 따라 갖추어 주라.”  하고, 이어서 함양 군수 조위와 의성 현령 유호인에게 하서하기를,  “그대는 문장(文章)으로 몸을 일으켜 경악(經嶺)에 시종(侍從)하여서 나의 중히 여기는 바가 된 지 오래이다. 아버지[親]가 늙음으로써 사직(辭職)하고, 근군(近郡)의 수령(守令)으로 제수(除授)받아 봉양(奉養)에 이바지하는 것은 대개 어찌 할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나, 나의 시종(侍從)이었던 까닭으로 감사(監司)에게 하유(下諭)하여 그대의 아버지에게 식물(食物)을 약간 보내게 하여, 향리(鄉里)로 하여금 그대의 학문의 힘으로 영화가 그대의 아버지에게 미침을 알게 하노니, 그리 알라.”  하였다.</p>	<p>○下書慶尙道觀察使成俶曰：  道內咸陽郡守曹偉、義城縣令兪好仁父母處，各米四碩、黃豆二碩、食鹽五碩、藿一箱、淸酒十瓶賜給，乾物醢亦隨宜備給。  仍下書咸陽郡守曹偉、義城縣令兪好仁曰：  爾以文章致身，侍從經嶺，爲予所器者久矣。以親老辭職，得除近郡守令，以資奉養，蓋出於不得已也。予以侍從之故，下諭監司，略致餼于爾親，使鄉里知爾以稽古之力，榮及其親，爾其知悉。</p>
<p>성종 22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1월 15일(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서 문안하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서 하례를 받고 반사(頒赦)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효자의 지극한 마음은 아버지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높이는 지극함은 한 나라로써 봉양(奉養)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내가 보잘것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영도(靈圖)20186) 를 이어받아 양전(兩殿)20187) 을 봉양한 것이 이제 20년이 되었다. 안색(顔色)을 받들고 뜻에 순종하며 음식을 받들어 모시고 잠자리를 묻는 데에 감히 게으르지 아니하였는데 금년 9월에</p>	<p>○甲戌/上詣景福宮問安，御勤政殿受賀，頒赦。其文曰：  孝子之至，莫大乎尊親；尊親之至，莫大乎以一國養。予以眇末，叨襲靈圖，奉養兩殿，二十年于茲。承顏順志，侍膳問寢，罔敢或怠，於今年九月，仁</p>

	<p>인수 왕대비께서 갑자기 작은 병환에 걸리시니 내 마음이 두려워 몸들 바를 알지 못하여 약이(藥餌)20188) 를 먼저 맛보는 것과 기도와 제사로 정성을 다하는 일에 그 극진함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그래도 병환이 얕혀서 몸에 떠나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대궐 밖에 이어(移御)하시도록 하였는데 세 곳이나 옮기시는 데 이르렀다. 그래서 영위(榮衛)20189) 가 점점 회복되고 시일이 오래 되어서야 강녕(康寧)하신 데 이르러 지금 11월 13일 경복궁으로 환어(還御)하셨으니 이는 오직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묵묵히 도우신 소치이다. 내 마음의 기쁨과 우리 백성의 복은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이 기쁘고 경사로운 날을 당하여 관대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p> <p>이달 15일 매상(昧爽)20190) 이전에 모반 대역(謀反大逆)20191) ·모반(謀叛)20192) 과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기를 피하며 구타하고 꾸짖은 것과, 처첩(妻妾)이 지아비를 죽이기를 피하고 노비가 주인을 죽이기를 피한 것과, 고의로 살인을 피하여 고독(蠱毒)과 염매(魘魅)를 쓴 것, 그리고 강도를 범한 것과, 일이 국가의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 외에는 일체 도류(徒流)·부처(付處)·충군(充軍)에 이미 배치된 사람과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과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모두 용서해 없앤다. 감히 유지(宥旨)20193) 전의 일로써 서로 고해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처벌한다. 그리고 관에 있는 자는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고 자궁(資窮)인 자는 대가(代加)하게 한다. 아아! 어버이를 받드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지극한 정성인데 이미 약을 쓰지 아니하고 병환이 나오셨으므로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만백성과 즐거움을 같이하니 어찌 함께 더불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겠는가?”</p> <p>하였다.</p>	<p>粹王大妃驟嬰微疴。予心是懼，罔知攸措，藥餌之先嘗，禱祀之致誠，無所不用其極。然猶纏綿，尙未去體，遂奉移御于外，轉至三處，榮衛轉平。積以時月，乃底康寧，越今十一月十三日還御景福宮。此實惟天惟祖宗，默佑攸致，予心之喜，吾民之福，詎有既耶？屬茲喜慶之日，宣布寬大之恩。自今月十五日昧爽以前，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蠱毒魘魅、但犯強盜、事關國家綱常外，一應已配、徒、流、付處、充軍人及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咸宥除之。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以其罪罪之。在官者各加一資，資窮者代加。嗚呼！奉親予一人之至誠，既云勿藥有喜，推恩爾萬姓以同樂，盍亦咸與惟新？</p>
<p>성종 22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p>	<p>명하여 종재(宗宰)20196) 2품 이상에게 빈청(賓廳)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p>	<p>○命饋宗宰二品以上于賓廳。</p>

<p>(弘治) 1년 11월 15일(갑술) 3번째기사</p>		
<p>성종 22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1월 19일(무인) 1번째기사</p>	<p>약방 제조(藥房提調) 윤필상(尹弼商) 등과 이어소(移御所)에서 시위(侍衛)한 인원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명소(命召)하니 모두 80여 인으로 술과 풍악을 내려 주었다. 술이 반쯤 취하자 전교하기를, “오늘의 일은 다른 잔치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각각 모두 취하고 일찍 돌아가지 말라.” 하였다.</p>	<p>○戊寅/命召藥房提調尹弼商等及移御所侍衛人員于仁政殿庭，凡八十餘人，賜酒樂。酒半，傳曰：“今日之事，非他宴之比，其各醉，勿早歸也。”</p>
<p>성종 222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1월 30일(기축) 4번째기사</p>	<p>이척(李則) 등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임사홍을 돌보고 사랑하시면서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을 돌아보지 아니하심이 이에 이르렀으니, 오늘날 임사홍의 나아가고 물러감은 종사와 생령의 위태롭고 망하는 것이 달렸습니다. 생각하기를, 대신이 모여서 의논하였으니 반드시 바른 의논을 올리는 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겼더니, 이제 모두 의논한 것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이런 공경(公卿)을 두어서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 사람의 임사홍을 기용하는데 사직과 생령이 망하는 데 이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대들은 한갓 임사홍을 미워하여 말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이척 등이 다시 아뢰기를, “개벽(開闢) 이래로 성주(聖主)는 요(堯)·순(舜)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익(益)이 순임금에게 경계하기를, ‘간사한 자를 버리기를 의심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비록 성(聖)스러움이 요(堯)·순(舜)에게는 미치지 못하시더라도 이제 임사홍을 기용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임사홍이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느냐?’고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성명(聖明)하심을 스스로 믿으시고 과감히 소인을 기용한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깊은 못에 다다른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어찌 성명하심을 스스로 믿을 수 있겠</p>	<p>○李則等又啓曰：“殿下顧矜士洪而不顧宗社生靈至此。今日士洪之進退，而社稷生靈之危亡係焉。意謂會議大臣，必有進正論者，今皆議之如此，殿下畜此公卿，將安用之？”傳曰：“用一士洪，而社稷生靈之所以至於亡者，何也？爾等徒疾士洪而言之耳。”則等更啓曰：“自開闢以來，聖主莫堯、舜若也。然益戒舜曰：‘去邪勿疑。’殿下雖聖，不及堯、舜矣。今用士洪而曰：‘士洪安能誤國乎？’是殿下自恃聖明而敢用小人也。人君當兢兢業業，如臨深淵矣，安可自恃聖明乎？士洪進退決在今日，爲三公、六卿、承旨者，正當極言之時，而緘默不言如此，是殿下孤立無助矣。”傳曰：“今日是國家將終之日歟？爾等明燭而群至者，何也？爾等若欲更見吾顏，何以如此乎？”</p>

	<p>습니까? 임사홍의 진퇴(進退)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는데 삼공·육경과 승지로 있는 이가 바로 극진히 말할 때를 당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이는 전하께서 고립되어 원조가 없는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오늘이 바로 국가가 장차 끝나는 날인가? 그대들이 촛불을 밝히고 무리를 지어 이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들이 만약 다시 내 얼굴을 보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는가?”</p> <p>하였다. 이척 등이 아뢰기를,</p> <p>“신 등은 진실로 오늘은 바로 국가가 장차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재상에게 물었으나 재상들도 감히 그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 신 등은 이르기를, 종사가 위태롭고 망하는 결정이 오늘에 달렸다고 여깁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오늘 만약 임사홍을 기용하면 내일 나라가 망하겠는가?”</p> <p>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안호(安瑠) 등이 아뢰기를,</p> <p>“오늘 재상을 불러서 의논하시기에 신 등의 생각으로는 오늘 반드시 임사홍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두커니 성명(成命)을 기다렸는데, 늦게 들으니, 전교에 이르시기를, ‘물어 본 계책이 모두 같으므로 윤택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신 등은 놀라서 예궐(詣闕)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서경(書經)》에 귀종서종(龜從筮從)20248)의 말이 있는데, 이제 삼공·육경의 말이 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겠는가?”</p> <p>하였다. 이척 등이 아뢰기를,</p> <p>“만약 임사홍을 기용하면 종사가 위태롭고 망하는 것은 어찌 내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결정이 오늘에 있습니다. 신 등은 용렬하여 천심(天心)을 돌이킬 수 없다면 삼공·육경은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아니하니 또한 그만입니다. 지금</p>	<p>則等啓曰：“臣等固謂今日，是國家將終之日也。 殿下問于宰相，而宰相亦莫敢言其非也，臣等謂宗社危亡，決在今日矣。” 傳曰：“今日若用士洪，則明日危亡否？” 大司諫安瑠等啓曰：“今日召宰相議之， 臣等意謂今日必去士洪， 竚待成命， 晚聞傳教曰：‘詢謀僉同， 不允。’ 臣等驚駭詣闕矣。” 傳曰：“《書》有：‘龜從筮從’之語， 今三公、六卿之言如此， 何不聽耶？” 則等曰：“若用士洪， 則宗社危亡， 何待明日？ 決在今日矣。 臣等庸劣， 不能回天， 則三公、六卿可以言之， 而不言亦已矣， 今之議又不言其不可用， 是殿下孤立無助。 危亡之兆， 將自此始矣。” 安瑠等啓曰：“《書》所謂‘龜從筮從’之語， 乃言其至公無私也。 今三公、六卿、承旨等皆與元濬、士洪、光載等三父子交親， 而欲庇護士洪， 無一人言其不可用也。 此等之罪， 不可不治也。” 傳于李則等曰：“士洪則非小人也。 假使用眞小人， 豈能誤國哉？ 百年後事， 予亦焉能知哉？ 且卿等達曙言之何妨？ 但臺諫夜深留門出入， 聞者必驚駭矣。” 傳于安瑠等曰：</p>
--	--	--

의논에서도 그를 기용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전하께서 고립되어 원조가 없는 것이니 위태롭고 망하는 조짐이 이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하고, 안호 등은 아뢰기를,

“《서경》에 이른 바 귀종서종(龜從筮從)이란 말은 그 지공무사(至公無私)함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삼공·육경과 승지들이 모두 임원준(任元濬)·임사홍·임광재(任光載) 등 삼부자(三父子)와 사귀어 친하므로 임사홍을 비호하려고 하여 한 사람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가 없으니, 이들의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척 등에게 전교하기를,

“임사홍은 소인이 아니다. 가령 참 소인을 기용한다 하더라도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는가? 백년 뒤의 일을 나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또 경 등이 밤을 새워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방해롭겠는가마는, 대간(臺諫)이 밤이 깊도록 문에 머물면서 출입하면 듣는 이가 반드시 놀랄 것이다.”

하고, 안호 등에게 전교하기를,

“귀종(龜從)의 점(占)도 오히려 반드시 쓰는데 오늘날 대신의 말을 어찌 듣지 아니하겠는가? 만약 귀서(龜筮)로 점을 친다고 대신이 말하였는데, 이 두 가지에 어느 것을 따르겠는가?”

하였다. 이척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문에 머물면서 출입하는 것은 과연 놀랄 만한 것입니다. 임사홍을 기용하면 사직(社稷)과 생령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만약 소동(騷動)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다른 날 나라를 그르칠 때에는 미처 구(救)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호 등은 아뢰기를,

“크게 의심스러운 일은 귀서(龜筮)로 점을 쳐서 결정하는데, 귀서는 지극히

“龜從之占，尙必用之，今日大臣之言，何不聽之？若龜筮占之，大臣言之，於斯二者，何從焉？”則等啓曰：“臺諫留門出入，果驚駭矣；用士洪，則社稷生靈必危矣，豈不驚駭哉？若以爲騷動而不言，則他日誤國，其能及救乎？”安珦等啓曰：“大疑謀於龜筮而決之；龜筮，至公無私之物也。今宰相等皆以元濬、士洪、光載交親之故，欲爲庇護，何以比於龜筮乎？”傳曰：“若士洪有求於予而用之，則其漸可畏，爾等言之宜矣。元濬功大，只加一資，未滿於心，故又及其子耳。”則曰：“殿下以旁支入繼大統，此非人爲也，乃祖宗在天之靈，以宗社生靈之重，擇聖人而附畀之也。殿下宜以宗社生靈爲大計矣。有人於此，守殿下錢穀爲倉庫之吏，若使錢穀竭用無餘，則殿下以爲何如？今殿下受祖宗附托之重，而濫用官爵，以加小人如此，則祖宗在天之靈，其視殿下，亦如殿下之視此人矣。士洪有何關於宗社生靈，而必欲用之哉？”傳曰：“今日非分別旁支正統之時。”臺諫同辭啓曰：“士洪事，今日當破首諍之。但夜深，恐上體勞動，不敢更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상 등은 모두 임원준·임사홍·임광재와 사귀어 친한 까닭으로 비호하려고 하는데, 어찌 귀서에 비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임사홍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서 기용한다면 그 조짐이 두려워할 만하므로 그대들이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임원준의 공이 큰데 단지 1자급(資級)만 가하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미친 것이다.”

하였다. 이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방지(旁支)로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어받으셨으니, 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는 조종(祖宗)의 영(靈)이 종사·생령이 중하다는 것으로 성인(聖人)을 골라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종사·생령을 위해서 큰 계책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전하의 전곡(錢穀)을 지키는 창고의 관리가 되었는데 만약 전곡을 다 써 버리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으면, 전하께서는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조종의 중한 부탁을 받으셨는데 관작을 남용하여 소인에게 더하기를 이와 같이 하시면, 하늘에 계시는 조종의 영혼이 전하를 보시기를 전하께서 이 사람을 보시는 것과 역시 같을 것입니다. 임사홍이 종사와 생령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반드시 기용하려고 하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방지(旁支)와 정통(正統)을 분별할 때가 아니다.”

하였다. 대간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임사홍의 일은 오늘 마땅히 머리를 깨뜨리며 다룰 것입니다마는, 밤이 깊어서 성상의 옥체가 수고로우실까 두려워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고 물러가겠습니다.”

啓而退。” 傳于承政院曰：“日寒，臺諫等饋酒送之。” 及退，夜已四鼓矣。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날씨가 추우니 대간들에게 술을 대접하여 보내라.”  하였다. 물러가자 밤이 이미 사고(四鼓)20249) 가 되었다.</p>	
<p>성종 22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2월 8일  (정유) 6번째기사</p>	<p>이날 밤에 명하여 입직(入直)한 도총부(都總府)·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낭청(郎廳)과 승지(承旨)·주서(注書)·한림(翰林)·홍문관(弘文館)과 사소(四所)의 위장(衛將)·부장(部將)과 상직(上直)한 공신(功臣)을 승정원에 모아서 술을 내려 주고는 눈[雪]을 제목으로 하여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지어서 올리기를 명하였다.</p>	<p>○是夜, 命會入直都總府、兵曹堂上、郎廳、承旨、注書、翰林、弘文館、四所衛將、部將、上直功臣于承政院, 賜酒。 仍命製雪七言律詩以進。</p>
<p>성종 22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2월 14  일(계묘) 6번째기사</p>	<p>선운(宣醞)을 승정원에 내려 주고, 입직(入直)한 도총부(都總府)와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낭청(郎廳)과 예문관(藝文館)·홍문관(弘文館)과 위장(衛將)·부장(部將) 등을 불러 대접하기를 명하였다. 어서(御書)로 설청가회(雪晴嘉會)라는 칠언 율시(七言律詩)의 제목을 내리고 인해 전교하기를,  “비록 문신(文臣)이 아니더라도 능히 글을 지을 이가 있으면 모두 지으라.”  하였다.</p>	<p>○下宣醞于承政院, 命召入直都總府、兵曹堂上、郎廳、弘文館、藝文館、衛將、部將等饋之。 御書 ‘雪晴嘉會’ 七言律詩題以下, 仍傳曰: “雖非文臣, 有能製者皆製。”</p>
<p>성종 22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2월 22  일(신해) 2번째기사</p>	<p>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희(沈滄)·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우참찬(右參贊) 정난중(鄭蘭宗)과 육조 당상관(六曹堂上官)이 와서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어제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께서 신 등에게 전교하시기를, ‘듣건대, 주상이 지나치게 슬퍼하여 진선(進膳)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므로, 내가 몹시 마음이 아프고 염려스러우니, 경 등은 이 뜻을 가지고 주상께 진선하도록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비의 전교가 이와 같으시니, 원하건대, 자지(慈旨)20415) 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다른 증세는 없고 다만 마음이 상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뿐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대비께서 편찮으시다가 평복되신 지 오래 되지 아니하였는</p>	<p>○靑松府院君沈滄、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廣陵府院君李克培、右贊成孫舜孝、右參贊鄭蘭宗及六曹堂上來問安, 仍啓曰: “昨日仁粹王大妃傳于臣等曰: ‘聞主上過於哀傷, 不進膳羞, 予甚痛慮。 卿等將此意, 請主上進膳。’ 大妃之教如此, 願從慈旨。” 傳曰: “予無他證, 但以傷心, 胸鬲煩痛爾。 第念大妃未寧平善未久, 而又以大君之故不進膳, 痛心罔極。 屢請進膳, 雖曰從之, 而所進甚少, 予罔知所爲。 予爲生民之主, 不與匹夫</p>

	<p>데 대군(大君)의 일로써 진선하지 아니하시니, 마음이 아프고 망극하다. 여러 번 진선하기를 청하였던 바, 비록 칭한 바에 따르신다고는 하나 진어하는 바가 심히 적으시니, 내가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나는 백성의 임금으로 필부(匹夫)와 같지 아니한데, 어찌 대의(大義)를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다만 하늘이 나를 돕지 아니하여 하나인 형님을 일찍 잃게 된 것을 슬퍼할 뿐이다. 어찌하여 대비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겠는가? 경 등이 대비께 진선하시도록 청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하였다.</p>	<p>同矣，豈可不計大義，傷吾身乎？但痛天不佑我，早喪一兄耳，何不從大妃之命？卿等請大妃進膳，則予心安矣。”</p>
<p>성종 22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2월 22일(신해) 4번째기사</p>	<p>월산 대군 이정(李婷)에게 중미(中米) 70석, 황두(黃豆) 30석, 청밀(淸蜜) 10두(斗), 진유(眞油) 15두, 진맥(眞麥) 3석, 면포(綿布)·정포(正布) 아울러 5백필을 부의(賻儀)로 내렸다.</p>	<p>○賻月山大君婷中米七十碩、黃豆三十碩、淸蜜十斗、眞油十五斗、眞麥三碩、綿布·正布并五百匹</p>
<p>성종 22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2월 23일(임자) 1번째기사</p>	<p>청송 부원군 심회(沈澮)·영의정 윤필상(尹弼商) 좌의정 홍응(洪應)·광릉 부원군 이극배(李克培)·우의정 노사신(盧思愼)·우찬성 손순효(孫舜孝)·좌참찬 이승원(李崇元)·우참찬 정난종(鄭蘭宗)과 육조 당상관(六曹堂上官)이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경복궁에 나아가서 반복하여 진선(進膳)하기를 아뢰어 청하였더니,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이제 경 등의 말을 듣고는 힘써 음식을 먹겠다. 다만 주상이 소선(素膳)20416) 으로 인하여 식상증(食傷證)을 얻었으니, 모름지기 육선(肉膳)을 진어(進御)하도록 청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대비의 뜻이 간절하시어 끊임이 없으십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선왕(先王)의 제도에 기상(期喪)20417) 에는 대부(大夫)는 강(降)20418) 하고 제후(諸侯)는 절(絕)20419) 하니, 이는 고금의 통례(通禮)입니다. 비록 성상께서 우애하시는 인정은 무궁하실지라도 선왕의 제도에 감히 지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시고 육선(肉膳)을 올리기를 허락하여, 위로는 대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래로는 신 등이 바라는 바에 부응(副應)하소</p>	<p>○壬子/靑松府院君沈澮、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廣陵府院君李克培、右議政盧思愼、右贊成孫舜孝、左參贊李崇元、右參贊鄭蘭宗及六曹堂上問安，仍啓曰：“臣等詣景福宮反復啓請進膳，大妃傳曰：‘今聞卿等之言，勉進食飲。但主上因素膳得食傷證，須請進肉膳。’大妃之意懇懇無已。臣等以爲先王之制，期喪，大夫降，諸侯絕，此古今通禮。雖聖上友愛之情無窮，而先王之制，不敢過也。伏願念宗社大計，許進肉膳，上慰大妃之心，下副臣等之望。”傳曰：“大妃進肉膳，則予亦食也。”沈澮等更啓</p>

	<p>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육선을 잡수시면 나도 먹겠다.” 하였다. 심회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으로는, 성상께서 먼저 육선을 잡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대비께서도 잡수시는 것을 허락하실 날이 없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대비를 위하여 힘써서 육선을 진어하여 여정(輿情)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육선을 진어하시는 날에 내가 마땅히 먹겠다.” 하였다.</p>	<p>曰：“臣等以謂上宜先進肉膳。不然則大妃無許進之日。願爲大妃勉進肉膳，以副輿情。” 傳曰：“大妃進肉膳日，予當食之。”</p>
<p>성종 22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 (弘治) 1년) 12월 24 일(계축)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예성군(藥城君) 어유소(魚有沼)·좌참찬(左參贊) 이숭원(李崇元)·우참찬(右參贊) 정난중(鄭蘭宗)·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극균(李克均)과 육조 당상관(六曹堂上官)이 와서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성상의 전교를 받들고 대비전에 육선(肉膳)을 진어하시기를 청하였더니, 대비전에서 하교하시기를, ‘주상께서 말씀하시고 재상들도 말하기에 곧 육선을 먹겠으니, 재상들은 마땅히 즉시 가서 주상께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비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청컨대 육선을 진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전에서 이미 육선을 진어하셨으면 나도 먹겠다.” 하고, 인하여 술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또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에게 명하여 인혜 왕대비전(仁惠王大妃殿)에 나아가서 육선을 진어하기를 권하게</p>	<p>○癸丑/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廣陵府院君李克培、右議政盧思愼、右贊成孫舜孝、武靈君柳子光、藥城君魚有沼、左參贊李崇元、右參贊鄭蘭宗、知中樞府事李克均及六曹堂上問安，仍啓曰：“臣等奉上教，請進肉膳于大妃殿，教云：‘主上言之，宰相等亦言之，卽進肉膳。宰相等宜卽往請於主上。’大妃之教如此，請進肉膳。” 傳曰：“大妃殿既進肉膳，予亦食之。” 仍命饋酒。 又命都承旨宋瑛詣仁惠王大妃殿，勸進肉膳。 瑛來啓曰：“仁惠王大妃傳曰：‘仁粹王大妃大病後平復未久，而主上又近日不平矣。</p>

	<p>하였다. 송영이 와서 아뢰기를,  “인혜 왕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인수 왕대비께서 큰 병환 뒤에 평복하신 지 오래지 아니하였고 주상께서도 요사이 편찮으신데 나는 요즘 병이 없으니, 2, 3일 소선(素膳)을 더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인수 왕대비전과 주상의 마음이 미안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먹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p>	<p>予則近日無病， 欲加二三日素膳矣。然予不食肉， 則仁粹王大妃殿與主上未安於心， 故敢食。”</p>
<p>성종 22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2월 24일(계축) 2번째기사</p>	<p>봉원효(奉元孝)가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홍문관에서 올린 차자(劄子)에 이르기를, ‘권경희(權景禧)가 옳으면 봉원효(奉元孝)가 잘못이고 봉원효가 옳으면 권경희가 잘못인데, 둘 다 죄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하니, 과연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 이치가 없으면 마땅히 옳고 그름을 핵실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밝게 그 옳고 그름이 있는 바를 모두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홍문관에서 이미 일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면 권경희를 죄줄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일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면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권경희를 편들어서 죄를 신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p> <p>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문과(文科) 출신으로 처음 벼슬한 이후로 공사(公事)가 아니면 신의 발자취가 일찍이 재상(宰相)의 문에 이른 적이 없었고, 신의 청알(請謁)이 권세 있는 집에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천지 귀신이 위에서 증명하고 공경(公卿)과 좌우 사람이 모두 보고 듣는 바인데, 신이 감히 마음을 속이고 말을 꾸며서 성감(聖鑑)을 속이겠습니까? 이제 권경희는 신에게,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만약 권경희의 말이 옳다면 신은 한 간사한 소인(小人)입니다. 신이 만약 간사한 소인이라면 귀양보내어도 가하며 목을 베어도 가합니다. 그러나 만약 권경희의 말이 잘못이라면, 이는 남의 사실이 없는 것을 공격해 적발하고 남의</p>	<p>○奉元孝上疏曰：  臣聞弘文館上劄曰：“景禧是則元孝非，元孝是則景禧非，不可兩罪之。果如無兩是兩非之理，宜核是非，使國人曉然皆知是非之所在。” 今弘文館既不知事之是非，則不宜有不可罪景禧之語也，奈何不知事之是非而言之如此乎？是則未必非欲右景禧而罪及於臣也。伏念臣出身文科，始〔仕〕以後，非公事則臣之足跡，未嘗至於宰相之門，臣之請謁未嘗及於權勢之家。天地鬼神質之在上，公卿左右悉所見聞，臣敢誣情飾辭，以欺聖鑑乎？今景禧以臣爲中立免罪，含默不言。若景禧之言是，則臣一姦邪小人耳；臣若姦邪小人，則流竄之可也，誅戮之可也。若景禧之言非，則攻發人之無情，羅織人之無罪，一獄吏之能者也。自古聖主明君所可察者，非特姦邪小人，如景禧之獄</p>

허물이 없는 것을 꾸미고 짜내는 자로서 일개 옥리(獄吏)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착한 임금과 밝은 임금이 살피야 할 것은 간소한 소인뿐만 아니라 권경희와 같은 옥리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권경희가 대관(臺官)이 되었으니, 마땅히 일을 만나면 바르게 말하여 회피함이 없이 충성과 절의를 다해야 할 것이며, 백성이 억울함이 있으면 마땅히 공평한 마음으로 송사를 처리하여 그 억울함을 펴게 하여 성조(聖朝)의 정치를 돕는 것이 가한데, 이제 감히 사실이 아닌 일을 엮어 모으고 없는 허물을 찾아내어 죄명을 짜내고 꾸며내어 이르기를,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임사홍(任士洪)의 일을 말한 것이 수십여 일에 이르렀고 사직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비록 원수진 집이라고 하더라도 신을 가리켜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신이 그욕이 마음이 아픕니다. 권경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어찌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마음에도 없이 우연하게 아뢰었겠습니까? 신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일은 권경희가 이척(李則)에게 들었겠습니까? 이척은 반드시 신에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한다는 일은 권경희가 또 권건(權健)에게 들었겠습니까? 권건은 반드시 신을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척과 권건이 말하지 아니한 일을 권경희가 어떤 사람에게 듣고서 교묘하게 꾸며서 신의 몸에,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죄를 가하는 것입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권경희의 말은 무심코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신이 권경희의 사람됨을 안 것이 또한 오래입니다. 사귀기를 널리하고 마음이 비루(鄙陋)하여 구차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더불어 사귀지 아니하

吏, 不可不察也。 景禧爲臺官, 宜遇事直言, 無所回避, 盡忠盡節可也。 民有冤抑, 則宜平心聽訟, 伸其冤, 以佐聖朝之治亦可也。 而乃敢構會不實之事, 吹毛覓疵, 羅織罪名, 至曰中立免罪、含默不言也。 臣既言任士洪事, 至數十餘日, 至於辭職, 雖讎家不得指臣曰含默不言也。 臣竊痛心。 景禧非愚人也, 安得以不實之事, 無心而偶然啓之乎? 未知臣之含默不言之事, 景禧得聞諸李則乎? 李則必不得以臣爲含默不言也。 中立免罪之事, 景禧又聞諸權健乎? 權健必不得以臣爲中立免罪也。 李則、權健所不得言之事, 景禧聞諸何人而巧於羅織, 加臣身以‘中立免罪, 含默不言’之誅乎? 臣謂景禧之言, 非出於無心也。 臣知景禧之爲人亦久矣。 廣於納交, 爲心鄙陋, 區區不正, 故臣不與之交。 幸值景禧會處, 則臣謹避之。 臣固知景禧之銜臣久矣。 且臣爲掌令時, 景禧以兵曹正郎, 蠶祭飲福時, 濫刑掌樂院吏, 事覺就鞫於憲府。 雨後府庭泥濕, 有吏鋪茵, 使景禧就跪, 法不當如是, 臣卽(苔) [答] 其吏。 日月已久, 臣則忘

였고, 행여 권경희가 함께 있는 곳을 당하면 신이 삼가 피하였으니, 신은 본래부터 권경희가 신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지 오래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신이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 권경희는 병조 정랑(兵曹正郎)으로서 독제(蠶祭) 음복(飲福) 때에 장악원리(掌樂院吏)를 함부로 형벌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사헌부에 취국(就鞫)20420) 할 적에 비가 내린 뒤므로 사헌부 뜰이 진흙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부리(府吏)가 짚자리를 펴고 권경희를 꿇어앉게 하였는데, 법으로는 이와 같이 못하기 때문에 신이 곧 그 부리를 매때렸습니다.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신은 잊었는데, 지난번 임사홍을 논할 때에 대간이 교장(交章)하여 사직한 뒤에 숙직방(宿直房)에 물러갔더니, 권경희가 여러 사람 가운데서 까닭없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자에 권경희가 국문을 당할 때에 자리를 펴 주는 것도 옳고 장령이 부리를 매질한 것도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건대, 거기는 사사로운 말을 말할 때가 아닌데, 이는 반드시 권경희가 작은 혐의를 잊지 못하고서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스스로 발하여 그 말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작은 혐의를 능히 마음속에 없애지 못하고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자를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하면 보복할 피가 없겠습니까? 권경희는 몸이 장령(掌令)이 되어 정대(正大)한 의논을 빙자하여 보복하는 계책을 삼으려고 하니, 이 풍조를 어찌 자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석(金磻)의 일은 신이 과연 무상(無狀)하여 진실로 권건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비록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대사(大赦)를 지냈으며, 또 법사의 장령(掌令)으로서 유지(宥旨) 전의 일을 들어서 서로 고해 말하고 공함(公緘)으로써 묻기까지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한 것인데, 하물며 신의 실정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반드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의사(疑似)한 말로써 먼저 성상 앞에 아뢰어서 추국(推鞫)하고 겁박(劫迫)하면 봉원효가 반드시 스스로 밝힐 수 없어서 나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전하의 통찰하심이 아

之矣。 向者論士洪時，臺諫交章辭職後，退去直房，景禧於衆中，無緣語臣曰：“向者景禧被鞫之時，鋪茵可也，掌令之笞吏亦可也。” 臣不答而思之，此非發私言之時，是必景禧不能忘睚眦之嫌，不覺其心之自發，而其言如是也。 睚眦之嫌不能遺諸胸中，久而不能忘之者，可謂正人乎？不能忘之，則其無報復之計乎？ 景禧身爲掌令，而欲憑正大之論，爲報復之計，此風豈可長也？ 金磻之事，臣果無狀，實與權健同議而雖中立免罪，已經大赦，則又不宜以法司掌令，而舉宥旨前事相告言之，至問以公緘也。 況非臣之情乎？ 其心必曰：“我若以疑似之言，先啓於上前而推鞫之、劫迫之，則元孝必不能自明，而陷於我之筭也。” 若非殿下之洞察，其能免乎？ 以情尋之，以事觀之，則景禧之肺肝可見，而自不能遁矣。 弘文館安知景禧之用心、事之是非乎？ 司諫、掌令之交訟其是非，諫院知之，憲府知之。 掌令是則憲府必是景禧而啓之，司諫非則諫院必非元孝而啓之。 臺諫同僚之間，亦不乏公議而自不能相饒，則弘文館何至有言於其間哉？ 關國

니었으면 어찌 능히 면하였겠습니까? 실정으로써 살피고 하는 일로써 관찰하면 권경희 마음속을 볼 수 있으므로 스스로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홍문관에서는 어찌 권경희의 마음 씀과 일의 옳고 그름을 알겠습니까? 사간(司諫)과 장령(掌令)이 그 옳고 그름을 서로 송사하는 것을 사간원에서 알고 사헌부에서 아는데, 장령이 옳으면 사헌부에서 반드시 권경희를 옳다고 하여 아될 것이고 사간이 그르면 사간원에서 반드시 봉원효를 그르다고 하여 아될 것이며, 대간(臺諫)의 동료(同僚) 사이에도 공의(公議)가 없지 아니하여 스스로 서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문관에서 어찌하여 그 사이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종사(宗社)의 큰 일은 사람이 모두 말할 수 있으나, 이같은 일은 홍문관에서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간을 시비(是非)하고 대간을 진퇴(進退)하는 것이 모두 홍문관에 있는 것이므로 과연 이척의 말처럼, ‘홍문관에서 말하면 우리도 말이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은 장차 대간은 천해지고 권력이 홍문관에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도 전하께서 살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간이 서로 송사하는 것은 조정의 변(變)입니다. 마땅히 홍문관의 아된 바와 같이 그 곡직(曲直)을 판단하여 법대로 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세에서 성조(聖朝)의 정치를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문무공경(文武公卿)과 대성(臺省)과 백관을 크게 모아서 신의 전후 세 상소의 글을 두루 보여 신과 권경희의 곡직을 모두 알게 하고, 신과 권경희가 크게 모인 가운데서 면질(面質)하게 하여 성조(聖朝)의 나라를 경륜하는 법을 바르게 하고 사류(士類)의 보복하는 풍습을 막으소서. 신의 말한 바는 세도(世道)의 승강(升降)과 조정의 치란(治亂)에 크게 관계되니, 엇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살피시면 국가에 더없는 다행이고 조정에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그 끝에 쓰기를,

家宗社大事，則人皆可言，如此之事，非弘文館所宜言也。然則是非臺諫，進退臺諫，皆在弘文館，而果如李則之言曰：“弘文館言之，則吾等不可無言。”臣將恐臺諫賤而權在於弘文館也，此亦殿下之不可不察也。臺諫之交訟，朝廷之變也，當如弘文館之啓，而判其曲直，按律定罪。不然，後世謂聖朝之治何如也？伏願殿下大會文武公卿臺省百官，遍示臣之前後三章，使皆知臣與景禧之曲直，臣與景禧面質於大會之中，以正聖朝經邦之典，以杜士類報復之風。臣之所言，大關於世道之升降，朝廷之治亂。伏惟殿下深察之，國家幸甚，朝廷幸甚。

御書其尾曰：

召政府、六曹、漢城府，示此疏與前日景禧所啓及元孝上疏，議啓。



	<p>“의정부·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를 불러서 이 상소와 전일 권경희(權景禧)의 계달한 것과 봉원효(奉元孝)의 상소를 보여서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p>	
<p>성종 223권,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2월 26일(을묘)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병조 판서(兵曹判書) 허중(許琮)·호조 판서(戶曹判書) 한치례(韓致禮)·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신승선(愼承善)·좌참찬(左參贊) 이승원(李崇元)·우참찬(右參贊) 정난중(鄭蘭宗)·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준(成俊)이 빈청(賓廳)에 나아가서 봉원효(奉元孝)와 권경희(權景禧)를 심문하니, 봉원효의 공사(供辭)에 이르기를, “앞서 상소 가운데, ‘권경희가 교제를 널리 맺고 마음이 비루(鄙陋)하므로 행여 모이는 곳을 당하면 신이 조심하여 피합니다.’고 한 것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금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웃에 있는 한한(韓僞)이 인정(人定)20477) 때에 사람을 시켜 만나자고 청하기에 밤이 깊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다시 사람을 시켜 청하므로 할 수 없어서 부름에 따라 문을 나서다가 권경희가 먼저 이른 것을 듣고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교분이 없고 또 대관(臺官)인데 편복(便服)20478) 으로 서로 보기는 어렵겠다고 여기고, 곧 도로 들어와서 관대(冠帶)를 갖추고 가서 보았더니, 한한이 말하기를, ‘야회(夜會)에 예복(禮服)은 바로 승냥이[豺]와 호랑이나 서로 갖추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신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금년 첫 겨울 인정(人定) 때에 이웃에 사는 사촌형 홍자아(洪自阿)가 사람을 시켜 부르기에 편복(便服)으로 문에 이르자 사헌부의 나장(羅將) 두 사람이 문 밖에 앉았으므로 물으니 권 장령(權掌令)20479) 이 왔다고 하기에, 마음으로 또 ‘이 사람은 나와 뜻이 맞지 않는데 대관으로서 어두운 밤에 분주히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됨을 박하게 여겨 만나보고 싶지 아니하였으며, 또 편복으로 구차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홍자아가 말하기를,</p>	<p>○乙卯/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右議政盧思愼、兵曹判書許琮、戶曹判書韓致禮、右贊成孫舜孝、漢城府判尹愼承善、左參贊李崇元、右參贊鄭蘭宗、吏曹判書成俊詣賓廳，問奉元孝、權景禧。元孝供曰：“前上疏內其曰：‘權景禧廣於納交，爲心鄙陋，幸值會處，臣謹避之。’云者，日月不記，今年夏秋間，比隣韓僞於人定時，使人邀見，辭以夜深。更使人邀之，不得已赴招出門，聞景禧先到，於心以謂‘此人素無交分，且爲臺官，便服相見爲難。’卽還入具冠帶往見。韓僞曰：‘夜會禮服，正是豺虎相見。’俄而臣先出。又日不記，今年冬初人定時，隣居四寸兄洪自阿使人招之，便服造門，司憲府羅將二人，坐門外。問之則曰；權掌令來也。於心又以謂‘此人與我氣類不合’，以臺官昏夜奔走，薄其爲人，不欲相見，且以便服未肯草次見之，不入還家。其後洪自阿云：‘前日權景禧之來，汝何到門直返乎？’景禧曰：「宜入來而遽還，是不欲見我</p>

‘전일 권경희가 왔을 때 그대가 어찌하여 문에 이르렀다가 곧 돌아갔는가? 권경희가 말하기를, 「마땅히 들어올 것인데 갑자기 돌아갔으니 이는 나를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상소 가운데, ‘널리 교제를 맺고 마음이 비루하므로 내가 삼가하여 피하였습니다.’고 한 것입니다.

또 ‘권경희가 신에게 오랫동안 원망을 품어서 작은 혐의를 잊지 못한다.’고 한 것은, 지난 병오년(20480) 가을철 독제(蠶祭) 음복(飮福) 때 권경희가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서 기생과 악공(樂工)이 낭청(郎廳)의 모인 곳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노여워하여 장악원(掌樂院) 아전을 함부로 형벌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사헌부에 국문받으러 나왔을 적에 마침 비가 내린 뒤라서 사헌부 뜰에 흙이 젖었으므로, 부리(府吏) 김덕강(金德江)이 몰래 자리를 깔고 권경희를 꿇어앉게 하였습니다. 내가 곧 좌우에 고하여 법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드디어 김덕강을 매를 쳤습니다. 이제 대간에서 임사홍을 논박(論駁)할 때에 권경희가 모여 앉은 곳에서 까닭없이 내게 말하기를, ‘전번에 권경희가 국문을 당할 때에 부리(府吏)가 자리를 펴 주는 것도 옳고 장령이 부리를 매를 친 것도 옳다.’고 하기에, 신이 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던대, 날짜가 이미 오래 되어서 나는 잊었고, 또 대간이 모인 곳에는 사사로운 말을 발할 때가 아닌데, 권경희의 이 말은 아마도 신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오래되어 가슴 속에서 없앨 수 없으므로 그러한 감정어린 혐의를 엮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소 가운데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또 ‘권경희가 법사의 장령으로서 유지(宥旨) 20481)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해 말하고, 공함(公緘)으로 묻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한 것은, 권건(權健) 때의 일은 이미 내가 범한 바가 아니며, 비록 참으로 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저 유지 안에 반드시 이르기를, ‘유지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고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준다.’고 하였으니, 권경희는 법관으로서, 여러 번 사유

也。」云云故上疏內 ‘廣於納交，爲心鄙陋，吾謹避之’耳。其曰：‘景禧發於銜臣之久，而不能忘睚眦之嫌’云者，去丙午年秋節蠶祭飮福，景禧以兵曹正郎，怒妓工人，不到郎廳會處，濫刑掌樂院吏，事覺就鞫憲府。適雨後，府庭泥濕，府吏金德江潛使鋪茵，景禧就跪。吾卽告左右爲法不當如是，遂答德江。今臺諫論駁任士洪時，景禧於會坐處，無緣語我曰：‘向者景禧被鞫時，吏之鋪茵可也，掌令之答吏亦可也。’臣不答而思之，日月已久，我則忘之，且臺諫會處，非發私言之時，景禧此言，意謂銜臣之久，不能遣諸胸中，構此睚眦之嫌，故疏中并錄耳。其曰‘權景禧以法司掌令，舉宥旨前事相告言之，至問以公緘’云者，權健時事，既非吾所犯，雖實所犯，凡宥旨內，必曰：“以宥旨前事相告言者，以其罪罪之云，則景禧以法官，舉累經赦宥之事論啓，問備亦已甚矣。意謂有情，故疏中并錄耳。其曰‘弘文館未必非欲右景禧而罪及於臣，恐將臺諫賤而權在於弘文館’云者，臺諫相駁，既非關係宗社大體，而權健時事，亦已會赦，

(赦宥)가 지난 일을 가지고 논계(論啓)하여 갖춘 물음이 또한 심하므로, 이는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상소 가운데 아울러 기록하였습니다.

또 ‘홍문관에서 권경희를 편들고 신에게 죄를 미치게 하려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아마도 장차 대간은 천(賤)해지고 권력이 홍문관에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대간이 서로 반박하는 것은 이미 종사(宗社)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권건 때의 일도 이미 사(赦)를 지닌 것이며 또 나의 본정(本情)도 아니었는데, 홍문관에서 일의 시말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차자(筵子)를 올려 논하였습니다. 헤아리건대, 일에 따라 논박하는 것은 대간의 임무인데, 이제 모두 홍문관에서 나왔고, 또 차자에 논한 것이 모두 나만 허물하고 권경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소 가운데 아울러 기록한 것입니다.”

하였고, 권경희의 공사에는 이르기를,

“권건 때의 일과 임사홍의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일은 앞서 계달에서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다만 봉원효가 사약방(司鑰房)에 있으면서 이척(李則)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였고 주상 앞에 이르러 홍문관과 이척은 여러 번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은 소인(小人)20482) 을 올려쓰느냐 물리치느냐하는 시점에서 봉원효가 할 계획은 마땅히 속히 아뢰어서 윤희를 얻기를 기약하는 것이 가한데,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한 마디 말이 없이 물러갔으니, 이것이 입을 다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봉원효는 비록 말하기를, ‘조심하여 신을 피한다.’고 합니다만, 봉원효는 선진(先進)이고 신은 후진(後進)이며, 비록 본래 교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 벼슬한 이후로 서로 본 것이 오래인데 반드시 모여서 앉은 곳이 있었을 것이나 해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한(韓僴)은 신의 육촌(六寸)인데 단송 도감 낭청(斷訟都監郎廳) 때에 당상관

且非吾本情。而弘文館不詳事之始末，上筵論之。臆謂隨事論駁，臺諫所任，而今皆出於弘文館；且筵子所論，皆咎於我，不及景禧，故疏中并錄耳。”景禧供曰：“權健時事及任士洪事，含默不啓事，前啓已盡。但元孝在司鑰房與李則同議，至上前，弘文館及李則累啓不已，如此小人進退之機，爲元孝計當速啓，期於蒙允可也，中變無一言而退，此非含默而何？元孝雖云謹避臣，而元孝則先進，臣則後進，雖無素分，筵仕以後相見久矣，必有會坐之處，然年久不記。韓僴則臣之六寸，而斷訟都監郎廳時堂上也。其家在兄家與妻家中央，故往來時日不記，二度入見，元孝皆後我而來，來之之意，則韓僴以我來故請邀之也。以此見之，則鄙我謹避之意，未之知也。洪自阿則臣之七寸，而一時全羅道從事官。且家在妹夫李世佑之隣，聞往平安道，歷入見之，洪自阿家婢云：‘奉司諫來，而以不冠帶還歸。’臣語自阿曰：‘吾欲見之，何以還歸？’此外無他語。且近日論啓任士洪事，而辭職後有待命事，臺諫兩司詣闕。然以辭職之故，不得各入朝

(堂上官)이었습니다. 그 집이 형(兄)의 집과 처가(妻家)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왕래한 시일은 기억하지 못하나 두 번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봉원효는 모두 나보다 뒤에 왔는데 오라고 한 뜻은 한한이 내가 온 까닭으로써 칭해 맞이한 것입니다. 이로써 본건대, 나를 더럽게 여겨서 조심하여 피한다는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홍자아(洪自阿)는 신의 칠촌(七寸)인데, 한때 전라도 종사관(全羅道從事官)을 지냈고 또 집이 매부(妹夫) 이세우(李世佑)의 이웃에 있으며, 평안도에 간다는 말을 듣고 지나면서 들어가서 보았는데 홍자아의 집 여종이 말하기를, ‘봉사간(奉司諫)20483) 이 왔다가 관대(官帶)를 갖추지 아니한 까닭으로 돌아갔습니다.’고 하기에, 신이 홍자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나보려고 하였더니, 어찌 하여 돌아 갔느냐?’고 하였고, 그 밖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또 요즘 임사홍을 논계한 일로 사직한 뒤에 명령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대간(臺諫)인 양사(兩司)20484) 는 예궐(詣闕)하였으나 사직한 때문에 각각 조방(朝房)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추부 직방(中樞府直房)에 모여 한가롭게 말하기를, ‘오늘 갓[笠]을 쓰고 앉았으니, 바로 유생(儒生)으로 거관(居館)20485) 할 때와 같다.’고 하면서 평상시에 놀고 희롱한 일을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찌 공회(公會)에 희롱하는 말을 발할 수 없는 때이겠습니까? 또 이날 양사(兩司)의 이서(吏胥)가 마침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이 서리(書吏)의 일에 미치게 됨으로 인하여 신이 우연히 전일의 일이 생각나서 봉원효에게 묻기를, ‘전일에 사간(司諫)20486) 이 장령(掌令)이 되어 우리들을 추국할 때에 자리를 편 일로써 매를 맞은 서리가 지금 도리(都吏) 박무성(朴茂成)이 아니오? 서리가 자리를 펴 준 것은 충후(忠厚)한 풍습이고 대장(臺長)이 서리에게 매를 친 것은 법으로 또한 당연합니다.’ 하였더니, 봉원효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박무성이 아니라 거관(去官)하여 승(丞)이 된 성명 아무개 서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황사효(黃事孝)도 신과 더불어 한때에 병조 정랑으

房, 會中樞府直房閑話云: ‘今日着笠會坐, 正如儒生居館時也.’ 平日遊戲之事, 無不言之。 此豈公會不發戲言之時乎? 且是日兩司吏胥適不齊來, 故因語及書吏事, 臣偶思前日之事, 問元孝曰: ‘前日司諫爲掌令, 吾等推鞠時, 以鋪茵事受笞之吏得非今都吏朴茂成耶? 書吏鋪茵, 忠厚之風也, 臺長答吏, 法亦當然也.’ 元孝笑答曰: ‘非茂成, 乃去官爲丞某姓名吏也.’ 黃事孝亦與臣一時兵曹正郎, 同被鞠坐茵之人, 故重言相笑, 是豈無緣而發耶? 臣所言有情無情, 證在同坐之人。 且其時答吏, 非元孝獨擅, 則豈獨銜元孝而發於衆中也? 答吏之事, 臣與事孝、宋軼、金驥孫一時之事, 故相會則必言之相笑。 事孝亦豈不知吾銜之與否? 權健推鞠時奉元孝會赦事, 非臣獨劾, 乃本府會議, 凡赦前事, 終雖棄之推劾常例, 故論啓緘問耳。 元孝之事, 頗不實, 人皆非之。”

	<p>로 같이 국문을 당하여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므로, 거듭 말하며 서로 웃었으니, 이것이 어찌 까닭없이 발한 것입니까? 신의 말한 바가 뜻한 것이 있고 없음은 같이 앉았던 사람의 증거가 있고 또 그때에 서리를 매질한 것은 봉원효 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데, 어찌 홀로 봉원효만 마음에 두고서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발설했겠습니까? 서리에게 매를 친 일은 신과 황사효·송질(宋軼)·김기손(金驥孫)이 같은 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면 반드시 말하며 서로 웃었는데 황사효도 내가 봉원효에게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있는가의 여부를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p> <p>권건을 추국할 때에 봉원효가 사(赦)를 만난 일은, 신이 홀로 탄핵한 것이 아니라 본부(本府)에서 회의하여 무릇 사유(赦宥)하기 전의 일은 마침내 폐기하더라도 추핵(推劾)하는 것이 상례(常例)이기 때문에 함문(緘問)하기를 논계(論啓)한 것입니다. 봉원효의 일은 자못 불실(不實)하여 사람들이 모두 비난합니다.”</p> <p>하였다.</p>	
<p>성종 22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월 1일 (경신) 1번째기사</p>	<p>정조(正朝)의 하례를 정지하였다. 백관이 표리(表裏)20494) 를 올리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종재(宗宰)20495) 2품 이상을 불러 궐정(闕庭)에서 술을 내려 주었다.</p>	<p>○朔庚申/停正朝賀禮。 百官進表裏如儀。 召宗宰二品以上， 賜酒于闕庭。</p>
<p>성종 22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월 1일 (경신)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傳敎)하기를, “졸(卒)한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에게 3년을 한하여 녹봉(祿俸)을 주라.”</p> <p>하였다.</p>	<p>○傳于戶曹曰：“卒月山大君婷， 限三年給祿俸。”</p>
<p>성종 22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월 12일 (신미) 4번째기사</p>	<p>행 호군(行護軍) 김흔(金訢)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은 본래 못난 몸으로 오래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었으나 일찍이 털끝만한 도움도 없었으니, 직무를 다하지 못한 죄는 진실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천도(天道)는 악한 자에게 화(禍)를 주므로 재앙을 내려서 드디어 병이 중하게 되</p>	<p>○行護軍金訢上言： 臣本無似， 久忝侍從， 曾無絲毫裨補， 瘵曠之罪， 實所難逃。 天道禍淫， 降之疢疾， 遂至沈綿， 指日待死。 猥蒙</p>

있으므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외람되어 성상의 사랑하심을 받아 의원을 보내어 문병해 주고 여러 번 약이(藥餌)를 내리시는 한편, 다시 온천에 목욕하게 하시고 인해 전사(田舍)20521) 에 나아가서 조리하기를 허락하시니, 지중(至重)하신 성은(聖恩)으로 쇠잔한 목숨을 보전하게 되어 오늘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강활유풍탕(羌活愈風湯) 75첩을 내려 주심을 받으니,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전(箋)을 올려 사례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가죽나무처럼 쓸모없는 재목이 이미 말라 썩어야 마땅한데, 천지의 큰 은혜를 입어 자라날 수 있게 되었으니, 몸이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감격한 마음을 뼈에 새긴들 어찌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연참(鉛槧)20522) 의 낮은 재주이며 위포(韋布)20523) 의 외로운 자취로서 그릇되게 성상의 알아주심을 입어, 외람되어 유악(帷幄) 곁에 모시니, 힘은 약하고 책임은 중하여 항상 분수에 맞지 아니한 근심이 간절하였고, 사랑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므로 과연 뜻밖의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덧 한단(邯鄲)의 걸음을 잃게 되었고,20524) 오랫동안 장식(莊舄)의 노래를 읊었습니다.20525) 물러나기를 애원하여 여러번 성상(聖上)의 귀를 번거롭혔고, 휴가를 주시니, 급암(汲黯)20526) 의 끝음에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몸은 전리(田里)20527) 에 있으나 명부[籍]는 오히려 금문(禁門)20528) 에 통하고 발자취는 강호(江湖)에 머물렀으나 마음은 궁궐에 매여 있습니다.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좋은 약제(藥劑)가 멀리 궁벽한 시골 물가에 내린 것을, 뼈가 튼튼하고 몸이 가벼워져서 완전한 효력을 거두기를 기약하고 살에 배고 뼈에 스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추운 골짜기에 봄이 돌아옴을 깨달았고 마른 웅덩이에 물이 흐름에 놀랐습니다. 마을과 골목에는 기쁨이 넘치고 산과 내에는 광명이 동합니다. 이는 큰 덕이 살리기를 좋아하고 지극한 인(仁)이 만물을 양육하여, 천한 물건도 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은

聖慈，遣醫問疾，屢賜藥餌，復賜湯浴，仍許就田舍調理，睿恩稠重，曲全殘喘，以有今日。今又獲賜(姜)〔羌〕活愈風湯七十五服，臣不勝感激，謹上箋稱謝者。伏以樗櫟散材，已分枯朽，乾坤大造，曲遂生成，糜粉難酬，佩銘曷已？伏念臣鉛槧末技，韋布孤蹤，誤蒙冕旒之知，叨侍帷幄之側，力微任重，恒懷非據之憂。寵過災生，果罹無妄之疾，居然失邯鄲之步，久矣效莊舄之吟。乞骸屢瀆於舜聰，賜告竊愧於汲直。身在田里，籍尚通於禁門；跡滯江湖，心則懸於魏闕。何圖珍劑之降，遠及荒徼之濱？壯骨輕身，期收十全之效；淪肌浹髓，獲霑再生之恩。頓覺寒谷之回春，共驚涸轍之流潤。喜溢村巷，光動山川。茲遇大德好生，至仁育物，無廢菅蒯，尚記簪履之微，不棄蓋帷，亦收狗馬之賤，致令庸質，荐被殊私。臣敢不砥礪初心，激昂素節？雖退處於畎畝，一飯不忘，苟有益於國家，九死未悔。

	<p>벼슬아치도 기억하며, 작은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개와 말처럼 천한 것도 거두어서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거둬 입게 하시니, 신이 감히 처음 마음을 같고 닦아서 본래의 지조를 격양(激昂)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비록 발이랑에 물러가 있을지라도 밥 한술 먹는 순간에도 임금을 잊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국가에 보탬이 있으면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함이 없겠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22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월 22일 (신사) 2번째기사</p>	<p>좌부승지(左副承旨) 김극검(金克儉)이 김방(金方)의 추안(推案)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은 모두 다른 말이 없으며 김방의 말은 앞뒤가 어긋나고 다르니, 그의 뜻으로는 만약 자복(自服)하면 도리어 그 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김방이 만약 형장(刑杖)의 독함을 근심하면 마침내 사실을 알아낼 수 없으니, 삼가 의약(醫藥)으로써 구제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左副承旨金克儉將金方推案啓之。 上曰：“諸人皆無異辭，金方之言前後違異，其意以爲若服，則反受其罪，故如是耳。金方若患杖毒，終無得情之理，謹醫藥以救之。”</p>
<p>성종 22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2월 18일 (병오) 1번째기사</p>	<p>행 호군(行護軍) 김흔(金訢)이 병이 들어 영천(榮川)에 있었는데, 임금이 강활유풍탕(羌活愈風湯)과 대정기산(大正氣散) 각 한 제(劑)를 하사하니, 김흔이 전(箋)을 올려 사례하기를, “천어(天語)20672) 가 정녕(丁寧)하여 지척(咫尺)에 계신 듯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은(睿恩)20673) 이 거듭거듭 매우매우 융숭하였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으로는 감격하였습니다. 앞드려 생각하던 때,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은 하품(下品)으로서 쓸쓸하고 쇠잔한 생명이 천리밖 외로운 마을에서 오랫동안 끌어 온 병으로 괴로와하고 있었는데, 구중쌍궐(九重雙闕)20674) 에서 좋은 약제를 여러번 내리시어 마른 나무에 꽃이 피게 하셨으니, 목이 메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대저 주상 전하의 지극한 어지심으로 더러움을 참으시고 큰 도량으로 포용(包容)하심을 만나 신</p>	<p>○丙午/行護軍金訢有疾在榮川。上賜(姜) [羌] 活愈風湯、大正氣散各一劑。訢進箋稱謝曰： 天語丁寧，不違咫尺。睿恩稠疊，龔出尋常，雙涕旁流，中情內激。伏念臣庸愚下品，寂寞殘生，千里孤村，久抱沈綿之苦；九重雙闕，屢下劑和之珍，枯槁生華，噫嘔失喜。茲蓋伏遇主上殿下至仁舍垢，大度包荒，諒臣實無他腸，憐臣而有斯疾，致令微賤，獲被洪私。臣敢不荷戴龍光，策勵駑鈍？</p>

	<p>의 한결같은 마음을 알아주시고 신의 병이 있음을 가없이 여기셔서 미천(微賤)한 몸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시니, 신이 감히 은총을 받들어서 노둔함을 채찍질하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까? 마음은 북극(北極)20675)에 달려서 항상 강호(江湖)에서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남산(南山)처럼 해옥(海屋)의 수[筭]20676)를 배로 더하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하였다.</p>	<p>心懸北極，恒切江湖之憂，壽獻南山，倍添海屋之算。</p>
<p>성종 22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2월 19일 (정미) 2번째기사</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나아가서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에게 문안하니, 대비가 수가(隨駕)20685) 한 종재(宗宰)20686)와 시종(侍從)과 제장(諸將)에게 크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호슬(護膝)과 채낭(彩囊)을 내어서 나누어 주었다. 도총관(都總管) 손순효(孫舜孝)가 창덕궁(昌德宮)에 유직(留直)하다가 임금이 불려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손순효가 술이 취하여 호슬과 채낭을 띠에 함께 차고는 자기 자리를 버리고 여러 번 옮기니,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 하며 비웃었다.</p>	<p>○上詣景福宮，問安于仁粹王大妃。大妃大餉隨駕宗宰、侍從諸將，又出護膝彩囊分賜之。都總管孫舜孝留直昌德宮，上召使參宴。舜孝被酒，護膝彩囊俱佩於帶，舍其座屢遷，人皆指笑。</p>
<p>성종 22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2월 20일 (무신) 1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유경(劉璟)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大全)》은 만세에 마땅히 준수할 바인데, 만약 법을 쓰지 아니함이 있으면 한갓 헛된 글이 될 뿐입니다. 청컨대 월산 대군(月山大君) 장지(葬地)를 일체 《대전》에 따르고 한계(限界) 밖의 옛 무덤은 철거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 무덤의 수를 상고해 아뢰라.” 하였다. 유경이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와 황해도(黃海道)는 사명(使命)이 번거롭고 많아서 길에 연달았고, 또 안접사(安接使)가 서울로 돌아간 것이 오래지 않았는데, 다시 종사관(從事官)을 보내는 것이 마땅치 못합니다. 감사(監司)가 이미 그 지방을 맡아 다스리니 유시(諭示)를 내려 존무(存撫)20702)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p>	<p>○戊申/司憲府持平劉璟來啓曰：“《大典》，萬世所當遵守，若有法不用，徒爲虛文而已。請月山大君葬地一遵《大典》，毋撤限外古塚。”傳曰：“古墳數考啓。”劉璟啓曰：“平安、黃海兩道使命煩多，項背相望。且安接使還京未久，不宜更遣從事官。監司既典領方面，下諭使之存撫。”傳曰：“爾言善矣。當令下書諭之。”璟又啓曰：“昨者，大妃賜酒隨駕宗宰，又分賜彩囊護膝。宰相手自揀擇者有之，其志趣鄙陋可知。如孫舜孝，廟堂大臣也，以彩囊護膝竝佩於帶，以失大臣</p>



	<p>“그대의 말이 옳다. 마땅히 글을 내려 유시하겠다.”      하였다. 유경이 또 아뢰기를,      “어제 대비(大妃)께서 수가(隨駕)한 종재(宗宰)에게 술을 내려 주시고 또 채낭(彩囊)과 호슬(護膝)을 나누어 주셨는데 재상이 손수 스스로 고르는 자가 있었으니, 그 뜻이 비루(鄙陋)함을 알 만합니다. 손순효(孫舜孝) 같은 이는 묘당(廟堂)20703 대신인데, 채낭과 호슬을 띠에 아울러 차고서 대신의 용의(容儀)를 잃었으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사(頒賜)한 물건은 그 빛같이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재상들로 하여금 각각 좋아하는 바에 따르게 하려고 하였는데, 대비의 처음 뜻이 이와 같으셨다. 손순효가 띠에 찬 것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한 것뿐이다. 이는 고문(考問)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유경이 아뢰기를,      “손순효가 비록 성상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예(禮)로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임금이 신[靴]을 하사하면 신하가 머리에 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임금이 안장을 하사하면 신하가 등에 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손순효가 한 짓은 배우(俳優)와 같아서 자못 재상의 체면이 아닙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술에 취하여 그러한 것이니, 진실로 용서할 만하다.”      하였다.</p>	<p>容儀，請鞫之。” 傳曰：“頒賜之物，其色非一，欲使宰相各從其所好，大妃初意如此。舜孝佩之於帶，不過感恩而然耳，此不當考問也。” 璟啓曰：“舜孝雖感上恩，當以禮受之，不當如此也。假如君賜靴，則臣當戴之於頭乎？君賜鞍，則臣當負之於背乎？舜孝所爲，有同俳優，殊非宰相之體。請鞫之。” 傳曰：“被酒而然，固可怨也。”</p>
<p>성종 22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2월 21일 (기유)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안팽명(安彭命)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법은 허물어뜨릴 수 없는데, 이제 월산 대군(月山大君) 장지(葬地)의 영역(塋域)을 어찌 부인의 왕래에 편리하게 한다는 것을 핑계삼아</p>	<p>○己酉/御經筵。講訖，掌令安彭命啓曰：“《大典》法，不可毀也。今月山大君葬地塋域，豈可以夫人往來便易爲辭而輕以踰制乎？” 正言柳濱啓曰：“祖</p>

	<p>가볍게 제도를 지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정언(正言) 유빈(柳濱)은 아뢰기를,</p> <p>“조종(祖宗)의 법은 가볍게 변경시킬 수 없는데, 이제 대군의 장지가 도국(圖局)이 협소하다는 이유로써 조종의 법을 허물어뜨리면, 장차 어떻게 백성의 국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시키겠습니까? 신은 두렵건대, 무지한 백성이 모두 국법을 범할 수 있다고 하여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형세가 장차 조정은 도(道)를 믿지 아니하고 신하는 의(義)를 믿지 아니하여, 그 폐단은 장차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말은 옳다. 다만 도국이 협소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이다. 옮겨야 할 옛 무덤에 대해서는 모두 관곽(棺槨)을 내려 주어서 구휼하도록 하라. 이제 공역(功役)이 이미 이루어졌고 장기(葬期)도 임박하였는데, 다시 다른 땅을 고를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안팍명이 아뢰기를,</p> <p>“묘주(墓主)가 있는 것은 마땅히 개장(改葬)할 것이나, 묘주가 없는 것은 반드시 버릴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옛 무덤을 모두 이미 옮겼는가? 내가 마땅히 대비께 아뢰겠다.”</p> <p>하였다. 안팍명과 유빈이 또 아뢰기를,</p> <p>“손순효(孫舜孝)는 의정부(議政府)의 찬성[貳] 자리에 있으면서 배우(俳優)의 태도를 본받았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손순효는 임금의 하사한 것은 영광으로 삼아서 술이 취해 한 것인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p> <p>하였다.</p>	<p>宗之法，不可輕變。今以大君葬地圖局狹小，毀祖宗之法，將何以禁民之不從國法乎？臣恐無知之民，皆以爲邦憲可犯而無所不至，勢將朝不信道、工不信義，其弊將不可勝矣。” 上曰：“此言是也。但圖局狹小，不得已也，舊塚當遷者，皆賜棺槨以恤之。今功役已集，葬期亦迫，其可更卜他地乎？” 彭命啓曰：“有墓主者，當改葬之；若無墓主，則必棄之矣。” 上曰：“古塚皆已遷之乎否？予當啓于大妃。” 彭命、濱又啓曰：“舜孝以政府之貳，效俳優之(怨) [態]，請治其罪。” 上曰：“舜孝榮君之賜，乘醉所爲耳，有何罪也？”</p>
--	---	--

<p>성종 22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2월 22일 (경술) 5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어모 장군(禦侮將軍) 이서(李潁)가 토호(土豪)로서 요역(徭役)에 이바지하지 아니한 죄는 율(律)이 장(杖) 80대와 고신(告身) 3등을 추탈(追奪)하는 데 해 당하고 한산 군수(韓山郡守) 한철동(韓鐵全)은 차일죽(遮日竹)20712) 과 연실 (蓮實)20713) 을 신준(申浚)에게 주었는데 친문(親問)20714) 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한 죄는 율이 장 1백 대와 도(徒) 3년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滄)·노사신(盧 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이서(李潁)는 시골 무관(武官)으로 불법(不法) 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간사한 무리가 이를 인연하여 드디어 부도(不 道)20715) 한 말을 말하였으니, 이를 빠뜨려 두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뒤에는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길거리[街路]에서 곤 장을 쳐서 뒷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고, 홍응(洪應)과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한철동은 당대(當代)의 원종 공신(原從功 臣)20716) 이므로 결장(決杖)20717) 하는 것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한철동은 장(杖)만 속(贖)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도록 해라.” 하였다.</p>	<p>○義禁府啓: “禦侮將軍李潁以土豪, 不供徭役罪, 律該杖八十、追奪告身三 等。 韓山郡守韓鐵全以遮日、竹蓮實 贈申浚, 而親問時不以實對罪, 律該杖 一百、徒三年、告身盡行追奪。” 命 議于領敦寧以上。 沈滄、盧思愼、尹 壕議: “依啓本施行。” 尹弼商議: “依 啓本施行。 但李潁武於鄉曲, 多行不 法, 奸邪之徒緣此, 遂發不道之言, 此 厥不治, 後將難禁。 臣意以謂宜於街 路決杖, 以戒後人。” 洪應、李克培 議: “依啓本施行。 但韓鐵全, 當代原 從功臣也, 決杖上裁。” 傳曰: “鐵全 只杖贖, 餘依所啓。”</p>
<p>성종 22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2월 27일</p>	<p>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박삼길(朴三吉)이 와서 아뢰기를, “유자문(柳子文)은 전에 숙천 부사(肅川府使)가 되어 누에고치를 백성에게 팔 아서 사사로이 활용하였고, 또 자식[兒息]의 요미(料米)로써 유기(鑰器)를 바</p>	<p>○乙卯/司諫院獻納朴三吉來啓曰: “柳 子文前爲肅川府使, 貿繭於民而私用, 又以兒息料米換鑰器, 事覺錄贓案, 今</p>

<p>(을묘) 1번째기사</p>	<p>꾼 일이 발각되어 장안(贓案)에 기록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유한평(柳漢平)이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은 인하여 다시 분간(分揀)하도록 명하였는데, 그가 바꾼 누에고치는 사사로이 활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록 혹시 스스로 변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를 바꾼 일은 아직 면할 수 없는데 장안에 식제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악함을 징계하겠습니까? 또 의금부(義禁府)는 조옥(詔獄)20737) 인데 이창신(李昌臣)이 이극균(李克均)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그 뒤에 또 이철건(李鐵堅)과 이송원(李崇元)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를 믿으시고 여러 번 바꾸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창신의 번독(煩瀆)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조정의 체모(體貌)에 어떠합니까? 그 공경하고 조심하는 뜻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덕천 부인(德川夫人)이 어찌 의금부의 일을 알겠습니까? 이는 창신이 가르친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유자문(柳子文)이 누에고치를 바꾼 일은 이미 밝혀졌고, 유기(鑪器)의 일은 유자문이 어찌 하나하나 알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미 짐작하여 한 것이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덕천 부인의 상언(上言)은 이창신이 가르쳤다고 갑자기 말할 수 없다. 비록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고한 일이 반드시 잘못은 아닌데, 어찌 국문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已十五年，乃因其子漢平訴冤命改分揀。其質繭不私用，雖或自明，換鑪器事，尙不得免，而令削贓案，何以懲惡乎？且義禁府，詔獄也，而李昌臣以李克均爲不公，其後又以李鐵堅、李崇元爲不公，殿下信之，屢命改之。昌臣煩瀆至此，於朝廷體貌何？其無敬謹之意可見矣。且德川夫人安知禁府之事？是昌臣教之也。請鞫之。”傳曰：“子文質繭事已發明，鑪器事，子文安得一知之？予已斟酌爲之，其勿言。德川夫人上言，不可遽謂昌臣教之也。雖曰教之，所告之事，未必非也，何可鞫問？”</p>
<p>성종 22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2월 27일 (을묘) 3번째기사</p>	<p>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 사민 안접 체찰사 종사관(徙民安接體察使從事官)이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p> <p>“1. 새로 옮긴 백성이 힘이 약하여 개간할 수 없으면 부근의 원 거주민으로 하여금 힘을 돕게 하고, 그 가운데 가난하여 농사에 힘쓸 수 없는 자에게는 도내(道內)의 회계(會計)로써 염장(鹽藏)20740) 을 요량하여 주고 그 수량을 기록하여 계달하고, 그 준 간장[醬]은 5년을 기다린 뒤에 본색(本色)의 황두</p>	<p>○黃海、平安道徙民安接體察使從事官齎去事目：</p> <p>一。新徙之民力弱，不能開墾，令附近元居民助力。其中貧乏不能力耕者，以道內會計付鹽醬，量宜題給，其數錄啓。其所給醬，待五年後，以本色黃</p>

	<p>(黃豆)로써 수량에 의하여 환납(還納)한다.</p> <p>1. 여러 고을 수령이 만일 마음을 써서 존무(存撫)하지 아니하여 살 곳을 잃고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觀察使)와 도사(都事)가 계문(啓聞)하여 시행하되, 당상관 수령(堂上官守令)은 취초(取招) 계문하여 죄를 과(科)하고, 당하관 수령은 공신(功臣)·의친(議親)을 물론하고 죄상(罪狀)에 따라 결장(決杖)하여 도로 임명하되,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는 계문하여 과출(罷黜)한다.”</p>	<p>豆，依數還納。一。諸邑守令如有不用意存撫，致令失所逃亡，則觀察使、都事啓聞施行。堂上官守令，取招啓聞科罪；堂下官守令，勿論功臣議親，隨其罪狀，決杖還任。其中尤甚者，啓聞罷黜。</p>
<p>성종 22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2월 30일 (무오) 4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서해로(西海路) 축전주(筑前州) 씨향(氏鄉)이 보낸 변사야문(邊沙也文) 등이 사조(辭朝)하니, 대궐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사재감(司宰監)에서 바친 포(脯)가 좀이 먹은 것이 있었다. 임금이 듣고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먼 데서 오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와 같이 더러운 물건을 썼으니, 옳겠는가? 왜인(倭人)은 기뻐하고 노여워함이 일정함이 없는데 이처럼 삼가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성념이 없겠는가? 해사(該司)의 관원을 추국(推鞠)하여 죄를 주라.” 하였다.</p>	<p>○日本國西海路筑前州氏鄉所遣邊沙也文等辭，饋于闕庭。司宰監所供脯有蟲損者，上聞之，傳于承政院曰：“予欲厚待遠人，今用如此穢惡物饋之，可乎？倭人喜怒無常，如此不謹，其無怒乎？其該司推鞠抵罪。”</p>
<p>성종 226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3월 7일 (을축) 4번째기사</p>	<p>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가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을 권장해 힘쓰게 하는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1. 의서 습독관은 원수(元數)가 본래 30인데, 체아(遞兒)는 부사정(副司正)이 1, 부사맹(副司猛)이 3, 부사용(副司勇)이 4로서, 체아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참직체아(參職遞兒)가 없으니, 강례관(講肄官)의 예(例)에 의하여 사과(司果)의 체아를 하나 더 줄 것입니다. 1. 이전에는 습독관 30명에게 각각 구사(丘史)를 주었는데 이제는 형조(刑曹)에서 15명으로 감해 주니, 강례관의 예에 의하여 각각 줄 것입니다. 1. 이보다 앞서서는 습독관 30명에게 모두 음식을 지공(支供)하였는데 지금은 20명만 지공하니, 예전대로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p>	<p>○典醫監提調啓醫書習讀官勸勵節目：一，醫書習讀官元數本三十，遞兒則副司正一、副司猛三、副司勇四，非徒遞兒數少，且無參職。遞兒，依講肄官例，司果遞兒一加給。一，前此習讀官三十名，各給丘史，今刑曹減給十五名。依講肄官例，各給。一，習讀官三十人，前此皆供饋，今則只饋二十人。依舊例。從之。</p>

<p>성종 226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3월 10일 (무진) 5번째기사</p>	<p>군기시 정(軍器寺正) 김심(金諶)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축성 체찰사(築城體察使) 허종(許琮)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강원도에 가는데, 신의 아버지 김우신(金友臣)이 지금 단양 군수(丹陽郡守)로 있으니, 단양은 강원도와 경계가 연하였으므로, 일을 마친 뒤에 가서 뵈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원하는 바에 따라 가서 보게 하라. 내가 어릴 때에 일찍이 김우신(金友臣)에게 수업(受業)하였으니, 비록 한 글자를 배워 얻은 것이라도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내약방(內藥房)으로 하여금 약이(藥餌)를 내려 주게 하고 본도 감사(本道監司)로 하여금 식물(食物)을 갖추어 주게 하라.” 하였다.</p>	<p>○軍器寺正金諶上書曰： 臣以築城體察使許琮從事官往江原道， 臣父友臣今任爲丹陽郡守。丹陽與江 原道連境，請事畢後往覲。 傳于承政院曰：“可令從願往覲。予少 時，嘗受業於友臣，雖學得一字，豈偶 然哉？令內藥房賜藥餌，又令本道監 司，備給食物。”</p>
<p>성종 226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3월 13일 (신미)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세 고을 노비 공포(奴婢貢布)20777) 를 해마다 관(官)에서 받아들여서 쌓아 두고 쓰지 아니하니, 청컨대 정미년(20778) 의 노비 공포를 가지고 반(半)은 팔아서 말[馬]을 번식시키고, 반은 곡식을 바꾸어 군자(軍資)에 보태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濟州三邑奴婢貢布，年年 納于其官，積而無用。請將丁未年奴 婢貢布，用半貿孳息馬，用半貿穀補軍 資。”從之。</p>
<p>성종 226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3월 15일 (계유) 3번째기사</p>	<p>경차관(敬差官) 이의(李誼)가 충청도에 돌아와 서계(書啓)하기를, “천방(川防)의 이로움이 제언(堤堰)보다 중한데 천방은 회계(會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감사(監司)와 수령이 급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예산(禮山)의 무한성(無限城) 천방과 청주(淸州)의 작원(鵲院) 천방은 모두 폐기해 놓고 수축(修築)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많이 한스러워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제언의 예(例)에 의하여 회계에 기록해서 제언사(堤堰司)로 하여금 엄히 검거(檢舉)를 가하면 백성이 한재(旱災)를 면할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영광(靈光)·함평(咸平)·무안(務安)·나주(羅州) 등지에서는 수적(水賊)이 일어나 다니는데 그 무리가 지극히 많아서 바닷길에 내왕하는 배가 살략(殺掠)을 많이 입었는데,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독려해 잡게 하면 도적이 도망쳐서 절도(絶</p>	<p>○敬差官李誼回自忠淸道書啓曰： 川防之利，重於堤堰，而川防則不錄於 會計，故監司、守令不以爲急。如禮 山無限城川防、淸州鵲院川防，皆廢棄 不修，民多恨之。臣願依堤堰例錄會 計，令堤堰司嚴加檢舉，則民免旱乾之 災矣。臣聞靈光、咸平、務安、羅州 等處，水賊興行，其類極多，海路來往 之船，多被殺掠。令軍官督捕，則賊 逃入絕島，島居之人，若遇水賊，爭以</p>

島)20788) 로 들어갑니다. 섬에 사는 사람이 만약 수적을 만나면 다투어 술과 음식으로써 맞이해 위로하여 침략을 면하기를 바라니,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번성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으므로 바닷가 고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이 국문(鞫問)한 바 남포(藍浦)의 수적은 두 달 동안에 20여인을 죽였다고 하니, 다른 도적이 사람을 해친 수는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이 도적을 잡을 계책을 널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영광(靈光) 어을외도(於乙外島)·병풍도(屏風島)·증도(甌島)·모야도(毛也島)·고이도(古耳島) 등지는 하삼도(下三道)의 배가 모두 이 땅을 경유하기 때문에 수적이 많이 엿보고 있다가 틈을 타서 겁략(覘掠)합니다. 임치(臨淄)·다경포(多慶浦) 등 3, 4만호(萬戶)로 하여금 항상 이곳에 군사를 거느리고 후망(候望)하게 하여 안접(安接)하지 못하도록 하며, 혹은 불의(不意)에 나가서 수색해 잡고, 또 행장(行狀)20789) 이 없는 자를 엄하게 상고해 적선(賊船)으로 논한다면 1년 기한 안에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그 도적을 잡은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례(常例)에 비해 등(等)을 더하여 논상(論賞)하면 중하게 상주는 밑에서 반드시 도적을 잡아 묶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대전(大典)》안에, 수령(守令)이 1년에 호랑이 10마리 이상을 잡으면 계급을 더하는데, 도둑을 잡는 것은 논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남포 현감(藍浦縣監)이 수적 10여인을 잡았으니, 어찌 호랑이 10마리를 잡은 공만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도적을 잡으면 논상하는 법을 세워서 권면하게 하소서.

신이 듣건대 바다 연변에 와서 사는 제주(濟州) 사람에게 수령이 역(役)을 정하지 아니한 자를 이제 감사(監司)로 하여금 추국(推鞫)하여 죄를 논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신이 이 사람을 보니 본래 농업은 아니하고 오로지 고기를 잡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 수령이 복작간(鰵作干)이라고 일컫고 모든 진상(進上)하는 해물(海物)은 오로지 이 사람을 의뢰하여 채포(採捕)함으로 인하

酒食迎勞，冀免侵擾。由是日益蕃滋，無所忌憚，而沿海州郡無如之何矣。臣所鞫藍浦水賊，兩月之內，殺二十餘人，其他群賊害人之數，豈可量也？此非細故也。臣廣問捕賊之策，皆曰：“靈光於乙外島、屏風島、甌島、毛也島、古耳島等處，下道之船，皆由此地，故水賊多倚之，乘間劫掠。令臨淄多慶浦等三四萬戶常於此地，率軍候望，使不得安接，或出其不意搜捕，又嚴考行狀無者，以賊船論，期以一年，則見獲必矣。”其捕賊有功者，比常例加等論賞，則重賞之下，必有縛致者矣。且《大典》內守令一年捕虎十口以上加階，而捕盜則無論賞之法。今者藍浦縣監捕水賊十餘人，其功豈下於捕虎十口之功哉？請立捕賊論賞之法以勵之。臣聞沿海來居濟州人，守令不定役者，令監司推鞫論罪。臣見此人本不農業，專以捕魚資生，故諸邑守令，稱為鰵作干，凡進上海物，專賴此人捕採，因而愛護之，其人亦愛守令，得安其生。若遇侵責，則移寓他官，遷徙無定，常態也，不可以土着編氓之例，定役而使之也。雖不定役，專爲

	<p>여 사랑해 보호하고 그 사람도 수령이 그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만약 침책(侵責)을 당하면 다른 고을로 옮겨서 정처없이 옮기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니 토착(土着)한 편氓(編氓)의 예(例)와 같이 역(役)을 정하여 부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오로지 진상(進上)을 위하여 해산물을 채포하였으니, 역이 없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람이 몇 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루 아침에 상부(常賦)의 역을 정하면 역을 피해 도망쳐 흩어져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면서 수적과 더불어 서로 안팎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청컨대 을사년(20790)의 하서(下書)에 의하여 녹안(錄案)하여 수(數)만 알고 역은 정하지 말아서 시끄럽지 않도록 하며, 항상 무휼(撫恤)을 더하여 그 생활을 편안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천방의 일은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수적(水賊)과 복작간(鰭作干)의 일은 영둔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라.”</p> <p>하였다.</p>	<p>進上捕採海物， 則不可謂之無役也。如此之人， 不知其幾千人也， 而一朝定爲常賦之役， 則避役逃散， 彼此流移， 與水賊相爲表裏， 深可畏也。 請依乙巳年下書， 錄案知數， 勿定役， 勿騷擾， 常加撫恤， 以安其生。</p> <p>傳曰：“川防事， 令堤堰司， 依所啓施行。 水賊、鰭作干事， 示領敦寧以上。”</p>
<p>성종 227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1일 (기축) 2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조구(趙球)가 와서 아뢰기를,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은 인륜을 어지럽혔고, 의성군(誼城君) 이심(李冢) 등은 재물을 다투느라 화목하지 못한데, 모두 가작(加爵)하라 명하시니, 광패·음란하고 우애롭지 못한 무리들을 장차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성명(成命)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승지(右承旨) 김극검(金克儉)이 예빈시(禮賓寺)에서 숙수(熟手)20824) 를 빌었는데, 예빈시 관원은 이미 청탁을 따른 죄에 저촉되었으나, 김극검은 국문(鞫問)하지 말라 하시니 법으로 보아 어떻겠습니까? 김극검은 근시(近侍)하는 신하로서 쪽지를 보내 청하였으니 가볍게 버려둬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죄를 다스리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청풍군을 복직(復職)시킨 것은 대군(大君)20825) 의 제사를 받들기 위함이</p>	<p>○司諫院正言趙球來啓曰：“淸風君源瀆亂人倫， 誼城君冢等爭財不睦， 皆加爵命。 狂淫不友之徒， 將焉所懲？ 請收成命。 右承旨金克儉借熟手於禮賓寺， 寺員既抵從請之罪， 而克儉命勿鞫， 於法何如？ 克儉以近侍之臣， 折簡而請， 不宜輕棄。 請治罪。” 傳曰：“淸風君復職， 乃爲大君奉祀也。 誼城君等雖有爭財之累， 既蒙赦， 且皆年踰耳順者也。 特加爵秩， 以尊老耳。 借膳羞之奴， 奚獨克儉爲然？ 況此有過之</p>



	<p>다. 의성군 등이 비록 재물을 다툰 잘못이 있었으나, 이미 사면(赦免)을 받았으며, 또 모두 60세가 넘는 자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작질(爵秩)을 더해 노인을 우대하였을 뿐이다. 선수(膳羞)20826)의 종[奴]을 빈 것이 어찌 유독 김극검만 그러하겠는가? 더구나 사유(私有)를 지닌 일들이겠는가?” 하였다.</p>	<p>事乎?”</p>
<p>성종 227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6일 (갑오) 4번째기사</p>	<p>보단(報單)을 올리는 일을 수가(隨駕)한 재상(宰相)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어유소(魚有沼)·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이제 한치형(韓致亨)의 의논을 보니, 서반(序班)을 보낸 것은 본국의 사신을 후대하여 일로(一路)의 관대(館待)를 검찰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제 만약 본국에 작은 폐단이 있다 하여 갑자기 정지하기를 청한다면 말을 만들기가 어렵고, 싫어하는 뜻을 보일 듯합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그 공궤(供饋)하는 수요를 점차 헤아려 경감하고, 우선 보단(報單)은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증(李克增)은 의논하기를,  “서반(序班)을 관대(館待)하는 비용은 형세로 보아 장차 계속하기가 어려우니, 급히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서 형세를 본 다음 보단을 바치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었습니까?”  하고, 정괄(鄭恬)은 의논하기를,  “서반을 지대(支待)하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없애기를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전자에 노사신(盧思愼)·이숭원(李崇元)·이봉(李封) 등이 돌아올 때 서반 3인을 정하였는데, 노사신이 보단을 올려 2인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제 또 보단을 올려 없애기를 청하는 것이 사세가 편할 것입니다. 다만 보단 안에다 왕인(王人)이 오느라 수고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닌데, 혹시 솔직하지 못하다고 여길 듯하니, 폐단이 있다는 뜻을 은근히 진고(陳告)하면 어떻겠습니까?”</p>	<p>○議呈報單事于隨駕宰相。 魚有沼、李鐵堅議：“今觀韓致亨之議，序班之遣，厚本國使臣，使檢察一路館待也。今若以本國小弊，遽請停之，其措辭實難而似有厭之之意。 臣等以爲其供饋之需，漸裁減，姑除報單何如?” 李克增議：“序班館待之費，勢將難繼，不可不急圖之。 今往觀勢呈報單，何妨?” 鄭恬議：“序班支待之弊，不可勝言，不可不請除。 且前者盧思愼、李崇元、李封等回還時，定序班三人，思愼呈報單除二人，今又呈報單請除，事勢爲便。 但報單內以‘王人跋涉勞動’爲辭，實非本意，恐或以謂不直。 微陳有弊之意何如?” 愼承善、尹甫、李約東、安寬厚議：“以義州事勢料之，王人館待之弊不貲。 今雖勉強爲之，後將難繼。 今觀報單草辭，似無詰問生事之理。 況前者盧思愼等將此意，已有言矣，今又請減，前後同一辭，則</p>

하고, 신승선(愼承善)·윤보(尹甫)·이약동(李約東)·안관후(安寬厚)는 의논하기를, “의주(義州)의 사세(事勢)를 헤아려 보건대, 왕인(王人)을 관대(館待)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비록 힘써 하더라도 이후에는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보단의 초사(草辭)를 보니 힐문(詰問)하여 말쟁이 일어날 이치가 없겠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노사신 등이 이런 뜻으로 이미 말을 했으니 이제 또 전후가 같은 말로 감하기를 청하면 반드시 왕인이 오는 수고를 생각한 것으로 믿어 호송을 줄일 것입니다. 만약 인정(人情)을 후하게 주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하고, 이숙기(李淑琦)·성준(成俊)·구수영(具壽永)은 의논하기를, “예조(禮曹)에서 아뢴 바가 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합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신 등이 의주에서 서반(序班)을 관대(館待)하는 폐단을 보니, 그 때에도 이미 감당할 수 없었는데, 더욱이 근래에는 해마다 실농(失農)하였고, 또 관대가 빈번해서 형세로 보아 장차 지탱하기 어렵겠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비록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하더라도 또한 무방할 듯합니다. 더구나 정문(呈文)은 한때 사신(使臣)의 말인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비록 청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힐문하거나 말쟁이 생기는 데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臣) 이승원(李崇元)이 연전에 북경에 갔을 때 노사신 등과 이런 뜻을 가지고 예부에 글을 올렸더니, 예부에서 답하기를, ‘장차 황제께 주문(奏聞)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일찍이 힐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문의 내용을 보니 대체(大體)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조익정(趙益貞)에게 사세를 보아가면서 올릴 만하면 올리고, 형세가 어려우면 올리지 않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인정(人情)을 가지고 가서 예부(禮部)를 인연하여 그 법을 세운 본의(本意)를 알아내는 일은 대체에 어긋날 듯합니다.”

하고, 노공필(盧公弼)·성귀달(成貴達)·이세좌(李世佐)·송영(宋瑛)은 의논하기를,

必以‘尊王人跋涉勞動’爲信而減護送也。若厚齎人情，恐不可。”李淑琦、成俊、具壽永議：“禮曹所啓，實合事宜。”李克均、李崇元議：“臣等目覩義州館待序班之弊，其時已不能堪。況近來年年失農，又以館待頻繁，勢將難支。臣等謂雖移咨禮部，似亦無妨。況呈文一時使臣之辭，有何不可？雖不得請，恐不至詰問生事。臣崇元年前赴京時，與盧思愼等，將此意，呈文于禮部，禮部答曰：‘將聞奏發落。’曾無詰問之事。今觀呈文措辭，無礙大體。宜令趙益貞觀其事勢，可呈則呈，勢難則勿呈爲便。但齎人情因緣禮部，探其立法本意，恐妨大體。”盧公弼、成貴達、李世佐、宋瑛議：“序班之來，館待供頓，其弊不貲，終將難支，不可不請停也。依禮曹所啓，詳知序班押送根由後，以王人八站跋涉之勞與本國有弊之端，請于禮部，而不得則具由奏請，實爲無妨。議者或以爲：‘實朝廷優待本國之意，遽以有弊請停爲不可。’臣等謂若徒以‘王人跋涉之勞’爲辭，而禮部若曰：‘此出於先皇帝優待爾國之恩，今不可

	<p>“서반이 오게 되면 관대(館待)·공돈(供頓)의 폐단이 적지 않아 마침내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니, 정지할 것을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조에서 아뢰 바대로 서반이 압송(押送)하게 된 근본 이유를 자세히 안 후에 왕인(王人)이 팔참(八站)20842)에 들어오는 수고와 본국의 폐단을 적어 예부에 청하여 되지 않으면 까닭을 갖추어 주청(奏請)해도 진실로 무방할 것입니다.</p> <p>의논하는 사람들이 더러 ‘실로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우대하는 뜻인데, 갑자기 폐단이 있다 하여 정지할 것을 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기지만, 신 등의 생각에는 한갓 왕인(王人)이 오는 수고만을 말하였다가 예부에서 만약 말하기를, ‘이는 선황제(先皇帝)께서 그대의 나라를 우대하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대 나라에서는 어찌 번거롭게 정지하기를 청합니까?’ 한다면 후에 비록 청하고자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p> <p>하고, 채수(蔡壽)·성건(成健)·박송질(朴崇質)·윤은로(尹殷老)·성숙(成俶)·권정(權挺)·김세적(金世勳)은 의논하기를,</p> <p>“신 등이 생각하건대, 서반의 호송(護送)을 정지하도록 청하는 것은 오로지 지대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여겨서인데, 이제 임시 변통으로 말을 꾸며 청했다가 얻지 못하면 마침내 부득이한 데에 이를 경우에 다시 무슨 말로 청하겠습니까? 더구나 서반은 낮은 관원으로서 우리 나라의 통사(通事)와 견줄 만하니, 비록 높은 관원이라 하더라도 천자(天子)의 명을 받들고 나오는데, 어찌 험하고 먼 곳을 거치면서 수고로운 것의 작지 않은 폐단을 헤아리겠습니까? 또 팔참까지 오는 수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아주 낮은 관원에게 이런 폐단을 말하여 정지할 것을 청한다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건대, 예조(禮曹)에서 아뢰 바대로 입법(立法)한 본의를 자세히 안 연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다.</p>	<p>改，爾國何煩請停云爾?’ 則後雖欲請之，恐無辭焉。” 蔡壽、成健、朴崇質、尹殷老、成俶、權挺、金世勳議：“臣等以謂請停序班護送，專爲支持難繼。今以權辭請之而不得，則終於不得已而更請以何辭？況序班微官，比我國通事，雖顯官承天子之命而來，何計其經歷險遠勞動不費之弊，又何云八站跋涉之勞乎？況於至微之官，說此弊以請停行，於事體何如？臣等以爲依禮曹所啓，詳知立法本意，然後更議何如？”</p>
성종 227권, 20년	전교하기를,	○傳曰：“聞今有七十老儒登第，七十

<p>(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4월 8일 (병신) 3번째기사</p>	<p>“들으니 지금 70세 된 노유(老儒)가 있어 과거에 합격하였다 한다. 70세까지 학업을 폐하지 않았으니 그 뜻이 매우 가상하여 내가 그를 등용하고자 한다.” 하니, 도승지(都承旨) 한언(韓堰) 등이 아뢰기를,  “바로 김효흥(金孝興)입니다. 올해 나이 76세로 김효흥은 상투를 틀면서 독서(讀書)하여 머리가 세도록 변함이 없어 반드시 이를 것을 기약한 후 얻고야 말았으니 그의 뜻이 진실로 가상합니다. 근래의 유생(儒生)들은 나이 겨우 약관(弱冠)20844 인데도 한 번 과거에 떨어지면 자신의 학업이 정밀하지 못함은 허물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길로 나갈 것을 생각하여 옆길이나 지름길을 영진(榮進)하는 매개(媒介)로 삼으려는 자가 많으니 김효흥처럼 마음을 굳게 다잡는 사람이 대개 적습니다. 세종조(世宗朝) 때 권안세(權安世)가 노년에 급제하니 특별히 상전(賞典)을 내렸으며, 그 당시에 권경온(權景溫) 역시 은수(恩數)를 입었습니다.  이제 김효흥은 그 두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만약 예(例)대로 사관(四館)20845 에 보임(補任)하면 수년이 늦어져 끝내 반드시 일명(一命)20846 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천어(天語)20847 가 여기에 이르니 비단 김효흥 일신의 다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학문을 장려하는 뜻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 김효흥은 도하(都下)에 머물고 있는데 조석(朝夕)의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듯합니다.” 하였다.</p>	<p>之年，不廢其業，其志甚嘉。予欲用之。”都承旨韓堰等啓曰：“是金孝興也，年今七十六歲。孝興結髮讀書，白首不渝，期於必得而後已，其志誠爲可尙。近世儒生年纔弱冠一躋場屋，不咎學業之不精，反有他岐之念，傍蹊曲逕，以媒榮進者多矣。執心堅確，如孝興者蓋寡。在世宗朝，權安世老年登第，特垂賞典；在當代，權景溫亦蒙恩數。今孝興年高於二人，若例補四館遲回數年，則終不霑一命必矣。天語至此，非但孝興一身之幸，有補於國家右文之意。且孝興旅寓都下，朝夕饔飧，恐難繼也。”</p>
<p>성종 227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4월 8일 (병신) 4번째기사</p>	<p>어서(御書)를 내리기를,  “김효흥 귀 앞의 머리가 서리처럼 하얗게 세도록 청운(靑雲)의 뜻을 두고 학업을 폐하지 않아 드디어 과거에 합격하였으니, 어찌 후생(後生)을 면려하는 것뿐이겠는가? 이런 일은 고인(古人) 가운데서도 드무니 높은 품계[優秩]를 제수하고 또 의식(衣食)을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드디어 옷 한 벌과 쌀 5석(碩) 및 찬물(饌物)을 내려 주었다.</p>	<p>○下御書曰：  金孝興霜飛兩鬢，志杳靑雲，然不輟業，遂中科選，豈惟勉於後生？亦有罕乎古人。宜授優秩，且賜衣食。遂賜衣一襲、米五碩及饌物。</p>
<p>성종 227권, 20년</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황계옥(黃啓沃)이 아</p>	<p>○御經筵。講訖，獻納黃啓沃啓源不</p>

<p>(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4월 12일 (경자) 2번째기사</p>	<p>뢰기를,  “이원(李源)을 서용(敍用)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중친의 관직은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자리가 아니고, 단지 친척(親戚)을 친애(親愛)하는 의리일 뿐이다. 전일 대간(臺諫)의 소장(疏章)에 이르기를, ‘부인이 정사에 간섭한다.’고 했는데, 이른바 정사에 간섭한다는 것은 이것과는 다르다.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벼슬을 시키고자 하여 상언(上言)하는 것을 어떻게 정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상언하는 것을 모두 정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황계옥이 아뢰기를,  “이것이 바로 정사에 간여하는 조짐이니, 결단코 이러한 풍조가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사헌(大司憲)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대전(大典)》 가운데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당하관(堂下官)은 반드시 사만(仕滿)한 후 옮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근자에 전조(銓曹)에서 육조의 사(仕)가 차지 않은 자를 모람하게 아뢰고서 관직을 올려 제수한 경우가 자못 많습니다. 양희지(楊熙止)·박승약(朴承爚)·강겸(姜謙) 같은 사람은 그 인품이 모두 임용(任用)할 만한 자들이라 하나, 그 벼슬에 있었던 기간이 짧는데, 갑자기 관직을 올려 제수하였으니 법에 어찌하겠습니까? 신은 사만(仕滿)하여 옮기는 법이 이것으로부터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는 일체(一體)인데, 전주(銓注)할 때에 사정(私情)을 이와 같이 쓰니, 다른 날 반드시 이것으로 인하여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청컨대 추국(推鞠)하여 저죄(抵罪)하게 하소서.”</p>	<p>宜敍用。 上曰：“宗親之職，非爲輔君澤民，只以親親之義耳。 前日臺諫疏章曰‘婦人干政，’所謂干政者，異於是矣，夫人欲官其子而上言，豈謂之干政乎？ 大抵子爲父、父爲子而上言者，皆可謂之干政乎？ 啓沃啓曰：“是乃干政之漸，決不可長也。” 不聽。 大司憲宋瑛啓曰：“《大典》內，議政府、六曹堂下官必仕滿然後遷轉，此乃不易之法也。 近者銓曹以六曹仕未滿者冒啓，而授陞職者頗多。 如楊熙止、朴承爚、姜謙，其人品雖皆可用者，然居職日淺，遽授陞職，於法何如？ 臣恐仕滿遷轉之法，自此壞矣。 況吏·兵曹一體，而銓注之際，其用情若是，他日必因此而弄權者多矣。 請推鞠抵罪。” 上問左右，領事洪應對曰：“臺諫所啓允當。 循階之法，所以待庸常人也。 如此等人可用者，今授陞職，似爲可也，然《大典》之法，不可輕變。” 特進官吏曹判書成俊啓曰：“新及第除授之時無缺員，而又以久宦朝官，不可無故作散，故稟旨而移之耳。 臣聞楊熙止文武全才有名望，登第十餘年，而曾任守令，頗有聲績，故今陞奉常僉正。</p>
---	--	--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이 아된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품계(品階)를 따르는 법은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 임용할 만한 자라면 이제 벼슬을 올려 제수하는 것은 가할 듯하나, 《대전》의 법은 가벼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준(成俊)은 아뢰기를,  
 “새로 급제한 자들은 제수할 때 결원이 없고, 또 오래도록 벼슬한 조관(朝官)은 아무 연고도 없이 산관(散官)으로 만들 수 없어서 품지(稟旨)하여 옮겼을 뿐입니다. 신이 들으니 양희지(楊熙止)는 문무(文武)의 재능이 있다는 명망이 있으며, 급제한지 10여 년에 일찍이 수령이 되었을 때는 자못 성적(聲績)20854) 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으로 올렸습니다. 강겸(姜謙)은 일찍이 좌랑(佐郎)이 된 지 3년 만에 상(喪)을 당했다가, 복(服)을 마친 뒤에 다시 좌랑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으로 올렸습니다. 박승약(朴承爚)은 본직(本職)이 5품이나, 왕후의 족친(族親)이기 때문에 지금 돈녕부 첨정(敦寧府僉正)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정 선비들을 보니, 사만(仕滿)한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관안(官案)20855)을 상고해 보면 그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의 법은 진실로 대간(臺諫)이 아된 바와 같다. 그러나 진실로 어진 사람이라면 어찌 그 법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자, 홍응이 아뢰기를,  
 “어질고 능력이 있다면 진실로 자급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와 같이 《대전》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은데, 신은 《대전》의 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송영이 또 아뢰기를,

姜謙嘗爲佐郎，至三年而遭喪，服闋後更授佐郎，故今陞成均直講。承爚本職五品，而爲王后族親，今陞敦寧府僉正。見在朝士仕滿者絕無，若考官案，可知其情矣。”上曰：“《大典》之法，誠如臺諫所啓。然苟爲賢也，何必拘於其法乎？”應啓曰：“賢能則固不必循資。然近來如此壞《大典》之法多矣，臣意謂《大典》法，不可變更。”瑛又啓曰：“宗簿寺正朴纘祖、掌樂院正金慶孫、敦寧府僉正閔奎皆年過七十，而不肯致仕，貪位冒祿，有累士風。然以年老廢棄之，則亦非朝廷美事。請依舊例，授檢職，或授軍職，使之退居閑處，且月致酒肉以贍之。”上問左右，俊啓曰：“此人等雖老，亦不衰耗，足以治事。纘祖自少無污穢之行，節操可尚者也。”應啓曰：“此輩皆科第出身，不甚老鈍，不可以老而棄之。若授檢職則可矣。”上曰：“任用之際，銓曹當自爲之。”同知事李世佐啓曰：“臣以提調在掌樂院，見聲律之學，亦不甚難。但樂工無一人可取者，唯黃孝誠、朴衎精解音律，然孝誠已老。二人之外，無傳習者，至爲可慮。請

“종부시 정(宗簿寺正) 박찬조(朴縝祖)·장악원 정(掌樂院正) 김경손(金慶孫)·돈녕부 첨정(敦寧府僉正) 민규(閔奎)는 모두 나이가 70이 넘었으나, 치사(致仕)하려 하지 않고 자리와 녹(祿)을 탐하니, 선비들의 기풍에 누(累)가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버리는 것도 조정의 아름다운 일은 아니니, 청컨대 옛 관례에 따라 검직(檢職)20856) 을 제수하거나 혹은 군직(軍職)을 제수하여 물러나 한가하게 거처하게 하소서. 또 매달 주육(酒肉)을 넉넉하게 주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비록 늙었으나 쇠모(衰耗)하지 않아서 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박찬조(朴縝祖)는 젊을 때부터 더러운 행실이 없고 절조(節操)가 공경할 만한 자입니다.” 하고, 홍응이 아뢰기를, “이들은 모두 과거 급제 출신으로 그렇게 노둔(老鈍)하지도 않으니 늙었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검직을 제수한다면 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용할 때 전조(銓曹)에서 스스로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신이 제조(提調)로서 장악원(掌樂院)에 있으면서 보건대, 성률(聲律)의 학문이 매우 어렵지 않은데도 악공(樂工)중에 한 사람도 취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황효성(黃孝誠)·박곤(朴畚)만은 음률(音律)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황효성은 이미 늙었고, 두 사람 외에는 전해 익힐 자가 없어, 지극히 염려할 만합니다. 청컨대 첩자(妾子)들 중에서 슬기롭고 빼어난 자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고, 사신이 북경(北京)에 갈 때 따라가서 중국의 아악(雅樂)을 익히게 하소서. 지금 살펴보니, 조관(朝官) 중에 정운(鄭耘)과 신말평(申末平)이 또한 음률(音律)을 해득하니, 청컨대 전심하여 익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令妾子之聰穎者習之， 使隨赴京之行， 傳習中朝雅樂。 今觀朝官中鄭耘、申末平亦解音律， 請令專心肄習。” 上曰：“可。”

	<p>“가하다.” 하였다.</p>	
<p>성종 227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4월 19일 (정미) 2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전일 하서(下書)를 받들고 영산(靈山) 옆 고을에 가서 널리 수소문해 보니 사람들이 모두 신담(申澹)이 전 영산 현감(靈山縣監)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쳐서 백성들이 그를 아버지같이 받들었다고 하며, 지금 그가 갔는데도 끼쳐 준 사랑이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 추모함이 더욱 돈독하여 함께 생사당(生祠堂)을 세워 제향(祭享)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이 그 고을에 도착하여 고을 내의 학식(學識)이 있는 자를 불러 조용히 염탐해 보니, 신취인(辛就仁) 등 40여 인이 모두 말하기를, ‘신담이 6년 동안 정사를 하면서 청렴하고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을사년(20868) 흉년에는 백성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신담이 진휼(賑恤)하는 데 성의를 다하여 음식을 짐바리에 싣고 민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굶주리는 자를 만날 때마다 어루만져 먹였기 때문에 마침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혜택(惠澤)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가 기한이 차서 갈려가게 되자, 백성들이 모두 부모를 잃은 듯이 길을 막고 울었고, 신담이 간 뒤에는 사당을 세우고 초상을 안치하여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영구히 폐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당은 고을의 동쪽 2리쯤 되는 곳에 있는데, 전 교수(教授) 김일손(金駟孫)이 생사당기(生祠堂記)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일손은 문학하는 선비이니, 반드시 망령되게 짓지 않았을 것이다. 신담이 끼친 사랑은 헛말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장래의 폐단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 하고,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고 의논하게 하였다.</p>	<p>○慶尙道觀察使金礪石馳啓：“臣前奉下書，到靈山旁邑，廣行咨訪，人皆稱申澹前守靈山，實惠及民，民愛戴爺孃。今其去也，遺愛在人，追慕益篤，共立生祠以享之。臣到其縣，引邑中有識者從容廉問，有辛就仁等四十餘人，共言申澹六載爲政，廉謹仁恕，赤心字民。乙巳年凶，民濱於死，澹勤於賑救，馱載漿粥，巡遍閭閻，如遇飢餓者，輒撫摩哺之，竟無一民餓死。其惠澤如是，故當其秩滿而去，民皆如失怙恃，遮道而泣。澹去後，立祠宇，置畫像，春秋祀之，永世爲期。其祠宇在縣治之東二里許，前教授金駟孫作生祠記云。”傳曰：“駟孫文學之士，必不妄作。申澹有遺愛，似不虛也。然恐有將來之弊，示領敦寧以上議之。” 【史臣曰：“澹淳謹無橫斂，民愛慕之，其立生祠，特好事者唱之耳。”】</p>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신담은 순박하고 근실(勤實)하여 멋대로 거두는 일이 없어 백성들이 사모하였지만, 그 생사당을 세운 것은 특히 일을 벌려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창(主唱)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성종 227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4월 27일 (을묘) 2번째기사	졸(卒)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황치신(黃致身)의 아들 황사장(黃事長)·황사형(黃事兄)·황사공(黃事恭)·황사경(黃事敬)이 무과에 급제하고, 황사효(黃事孝)는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황치신의 처 황씨(黃氏)가 아직 생존에 있으므로, 《대전》에 의하여 해마다 쌀을 내려 주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卒判中樞府事黃致身之子事長、事兄、事恭、事敬中武科，事孝中文科。致身之妻黃氏尚在，請依《大典》歲賜米，從之。
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2일 (기미) 1번째기사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가 경복궁(景福宮)에서 창경궁(昌慶宮)으로 환어(還御)할 때에 호가(護駕)한 종재(宗宰)와 대소 인원(大小人員), 그리고 아래로 별감(別監)·친례(賤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등 있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또 명정전(明政殿) 뜰에다 술을 주었다.	○己未/仁粹王大妃自景福宮還御昌慶宮。隨駕宗宰、大小人員、下至別監賤隸，皆賜物有差。又賜酒於明政殿庭。
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5일 (임술) 1번째기사	후원에 행행(行幸)하여 양 대비(兩大妃)에게 잔치를 올렸는데, 내명부(內命婦)20880)와 외명부(外命婦)20881)가 모두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2품 이상의 종친(宗親)과 의정부(議政府)·의빈부(儀賓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 및 도총부(都摠府)의 여러 장수들을 요금문(耀金門) 안에 모이게 하고, 술과 음악을 내려 주었다. 또 사후(射侯)20882)와 투호(投壺)20883)를 하도록 명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재상들은 하루 종일 즐겁게 마시면서 빨리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대내(大內)에서 큰 옥배(玉杯)가 나오거든 그것으로 술을 마신 뒤에 파하라.” 하였다. 얼마 후 큰 옥배가 나오자 전교하기를, “큰 잔으로 마실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작은 은잔으로 마시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이 큰 잔으로 마시라.” 하였다. 위장(衛將) 최호원(崔灝元)은 본디 경망하여 허튼소리를 잘 하는 사람인데, 많이 취하여 교리(校理) 이의무(李宜茂)와 정경조(鄭敬祖)에게 큰 소리 치기를,	○壬戌/幸後苑，進宴于兩大妃。內外命婦皆入侍。上命召宗親二品以上、議政府、儀賓府、六曹、漢城府、承政院、弘文館、藝文館及都摠府諸將于耀金門內，賜酒樂，命或射侯，或投壺。仍傳曰：“宰相歡飲盡日，毋速退去。當待內出大玉杯飲之，然後罷去。”俄而出大王杯。傳曰：“不能飲者，皆飲小銀杯；能飲者，皆飲此。”衛將崔灝元本誕妄人也，大醉揚言于校理李宜茂、鄭敬祖曰：“若我當年少之時，選入弘文館，則於文藝何所不能？我雖老矣，若試之以長篇律詩，則皆可能之。豈弘文館獨能之，而如我輩獨不能耶？但朝廷謂我輩不能而不用之

	<p>“만약 내가 젊은 나이에 홍문관에 뽑혀 들어갔더라면 어찌 문예(文藝)에 능하지 못했겠는가? 내가 비록 늙었으나 장편 율시(長篇律詩)로 시험 보인다면 모두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홍문관만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하겠느냐? 단지 조정에서 우리들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등용하지 않을 뿐이다. 명예와 지위는 본래 허망한 것이다. 죽으면 한 언덕 위의 오소리[一丘貉]가 될 뿐이니 무어 논할 것이 있겠는가?”</p> <p>하였다. 이의무 등이 중관(中官)20884) 들 앞에 나아가 하사하는 술을 마실 때 최호원은 이덕승(李德崇)과 이숙감(李淑城)에게 말하기를, “이의무 등이 여기 있다면 내가 큰 소리로 욕을 하겠다.”</p> <p>하니, 이덕승 등이 크게 웃었다. 최호원의 말과 안색을 보니 전일에 홍문관에 유감이 있어 술취한 후 평소 쌓아 두었던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p>	<p>耳。 名位本是虛妄， 死則一丘貉也， 何足論乎?” 宜茂等就飲賜酒於中宮前， 灑元顧謂李德崇、李淑城曰：“宜茂等若在， 則我欲以大言辱之矣。” 德崇等大笑。 觀灑元辭色， 則前日有憾於弘文館， 而醉後素蓄憤恨之心作矣。</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8일 (을축)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수개 도감(修改都監) 관리들이 권유(權裕) 등을 외람되게 양인(良人)을 만들었는데도 전하께서는 사정(私情)이 없는 일이라고 하시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홍(權弘)은 세종조(世宗朝)에 지위가 총제(摠制)에 이르렀는데, 서울 기생 백반교(百般嬌)를 얻어 권유 등 5형제를 낳아 그 당사자들만 면역(免役)이 되도록 특별히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감(都監)이 이미 환천(還賤)하도록 수교(受教)하고서 하루아침에 김해(金海)의 불분명한 문안(文案)을 근거로 양인을 만드니 어찌 곡절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경진년(20888) 의 정안(正案) 내에 기록하기를, ‘권유의 동생(同生) 5남매 등은 전지(傳旨)에 따라 그 당사자에 한해서 면역되었으니 양인이 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있으니, 만약 추고(推考)한다면 간사하고 거짓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p>○乙丑/御經筵。 講訖， 大司憲宋瑛啓曰：“修改都監官吏以權裕等冒濫從良， 而殿下以爲無情之事， 臣意以爲不可謂無情也。 權弘在世宗朝， 位至摠制， 娶京妓百般嬌， 生權裕等五兄弟， 而其時特許己身免役而已。 故都監已受教還賤， 而一朝以金海不明文案從良， 豈無情由也? 且庚辰年正案內云：‘權裕同生五甥妹等， 傳旨己身免役。’ 則其不得從良也明矣。 若推考則可知奸僞矣。” 上顧問左右， 領事尹弼商啓曰：“果若宋瑛之言， 則都監不得無罪也。” 獻納黃啓沃啓曰：“權裕等事， 臣未詳</p>

	<p>하니, 임금의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과연 송영의 말과 같다면 도감(都監)이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고, 헌납(獻納) 황계옥(黃啓沃)이 아뢰기를,  “권유 등의 일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뢴 것을 가지고 본다면 도감이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추고(推考)함이 온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착오이지 어찌 사정이 있었겠느냐?”  하니, 송영이 아뢰기를,  “추고하여 실정을 켜 뒤에 죄를 무겁게 줄 것인지 가볍게 줄 것인지를 성상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헌부에서 추문(推問)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송영이 또 아뢰기를,  “대비(大妃)께서 환궁하시던 날 종묘(宗廟)앞에 초둔(草屯)20889) 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관아의 관리가 지금 추문(推問)을 당하는 중이니, 공방 승지(工房承旨) 또한 무죄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승지(承旨)의 잘못이 아니다. 단지 그날 초둔을 깔지 않았으므로 내관(內官)20890) 이 보고 도승지(都承旨)에게 말하기를, ‘지금 초둔을 깔지 않았으니 연(輦)에서 내리는 예(禮)는 어떻게 하리까?’ 하니, 도승지가 ‘초둔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드디어 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는데, 이것은 실로 불가하다.”  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p>	<p>知。但以憲府所啓觀之，都監烏得無罪？推之爲便。” 上曰：“此是錯誤，豈有情乎？” 瑛啓曰：“推考得情後，罪之輕重，在於上裁。” 上曰：“憲府推問可也。” 瑛又啓曰：“大妃還宮日，宗廟前不設草屯，該司官吏時方推劾，工房承旨亦不得無罪。請竝鞫之。” 上曰：“此非承旨之過也。但其日不設草屯，內官見之，言於都承旨曰：‘今不設草屯，下輦之禮，何以爲之？’ 都承旨云：‘無草屯則當過行。’ 遂不下輦而過，此實不可。” 弼商啓曰：“下宗廟，禮之大者，承旨等不得無罪。而又不待罪，故宋瑛啓之如此耳。” 上曰：“此事非承旨之過，不可推也。” 瑛又啓曰：“臣聞全羅、慶尙兩道之俗，民間親沒，出葬前一日，大設帳幙，置柩於其中，以油蜜果盛於大盤，奠於柩前，大會僧俗呈雜戲，飲酒歌舞徹夜。雖有識者，亦隨俗爲之，其費不貲。故貧者力不能辦而過期不葬，此實大累於風教，不可不痛禁。” 上問左右，弼商啓曰：“此宜痛禁也。” 特進官成俶啓曰：“臣爲慶尙監司，令守令痛禁，人或乘夜潛爲之，故守令不得聞之，難</p>
--	--	--

	<p>“종묘(宗廟)에서 내리는 것은 예 중에서도 큰 예이니, 승지 등이 죄가 없습니다. 또 대죄(待罪)하지 않기 때문에 송영이 이렇게 아뢰는 것일 뿐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이 일은 승지의 잘못이 아니니, 추고할 수 없다.”</p> <p>하니, 송영이 또 아뢰기를,</p> <p>“신이 들으니, 전라도·경상도 양도의 풍속에는 민간에서 어머니 상(喪)을 당하면 장례 하루 전에 크게 장막을 쳐 놓고 그 안에 영구(靈柩)를 안치한 뒤 큰 상에 유밀과(油蜜果)를 성대히 차려 놓고 영구 앞에서 전(奠)을 드리는데, 중과 속인을 크게 모아 잡희(雜戲)를 올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며 춤춘다고 합니다. 비록 지식이 있는 자라도 풍속을 따라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기한이 지나도록 장례를 지낼 수 없다고 하니, 이는 실로 풍속과 교화에 크게 누(累)가 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p> <p>“이것은 마땅히 엄하게 금지해야 합니다.”</p> <p>하고, 특진관(特進官) 성숙(成俶)은 아뢰기를,</p> <p>“신이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어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시켰더니, 어떤 사람은 밤을 틈타 몰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이 듣지 못할 경우는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죄없는 백성도 입거(入居)시켜 변방을 채우는데 하물며 법을 어지럽히는 자임에랴?’ 하고는 범하는 자는 모두 전가 사변(全家徙邊)20891) 하였더니, 백성들이 모두 두려움을 알고 이 풍습이 혁파되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죄없는 백성도 사변(徙邊)시키거늘 하물며 이렇게 예(例)에 어긋난 사</p>	<p>以禁止。 臣意以謂無罪之民，亦入居以實邊塞，況此亂制之人乎？ 犯者皆全家徙邊，則民皆知懼而此風革矣。” 上曰：“國家禁之，已有著令，何以至此極也？ 無罪之民，亦令徙邊，況此悖禮之人乎？ 卿言甚是。” 瑛又啓曰：“臣聞金可完之妾爲人所殺，刑曹方鞫之。其前夫之子，素不順於母，故人皆疑其子之所爲。 如此疑獄，不可不詳辨也。 請移義禁府鞫之。” 上顧問左右曰：“豈有子弑其母之理乎？” 弼商啓曰：“安有如此事乎？ 今若以永山爲弑母移禁府，三省交坐推鞫，則於人聽聞何如？” 啓沃曰：“此雖必無之事。 然刑曹事煩，如此疑獄，不可不專委鞫之也。” 上曰：“移禁府而除三省交坐。” 啓沃曰：“風俗當以漸磨而成。 曩者都下人，有割股肉，啗其母以療其病者，國家旌門嘉獎。 如此者外方，豈獨無乎？ 必監司、守令徒急急於簿書期會，慢於風化之事，雖有如此之輩，不以時聞。 甚爲未便，請諭諸道，使人人皆知忠孝之道，褒獎之意，而感發其善心，則教化行而習俗美矣。” 上曰：“然。” 俶啓曰：“方今昇平日久，南方</p>
--	--	---

	<p>람들이겠는가? 경의 말이 옳다.”  하니, 송영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김가완(金可完)의 첩(妾)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되어 형조에서 지금 국문을 하는데, 전남편의 아들이 평소 어미에게 불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자식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옥사(獄事)는 자세히 변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금부(義禁府)로 옮겨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어찌 자식으로서 제 어미를 죽일 리가 있겠는가?”  하자, 윤필상이 아뢰기를,  “어찌 이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영산(永山)이 제 어미를 시해(弑害)했다고 해서 의금부로 옮기고 삼성 교좌(三省交坐)20892) 해서 추국한다면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겠습니까?”  하고, 황계옥(黃啓沃)은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조에서는 일이 번잡하니, 이같은 의심스러운 옥사는 전적으로 맡겨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의금부(義禁府)로 옮기되 삼성 교좌는 제외하도록 하라.”  하였다. 황계옥이 아뢰기를,  “풍속은 점차로 다듬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일, 도성(都城) 사람 중에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그 어미에게 먹여 병을 낫게 한 자기 있어 국가에서 정문(旌門)을 내려 포장(褒獎)했었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외방(外方)이라고 어찌 없겠습니까?  필시 감사(監司)나 수령(守令)들이 한갓 장부의 기한을 맞추는 데만 급급하여 풍속을 교화하는 일에는 태만하므로 비록 이같은 무리가 있어도 그때그때 아뢰지 않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제도(諸道)에 하유하시어 모든</p>	<p>邊備疎虞，人心懈弛。萬一有變，則枕海之氓，必皆受害，誠非小事。臣觀慶尙道固城縣地濱大海而多有島嶼，此實賊路要衝也。前日國家革固城鎮移置於泗川縣，泗川非緊關之地也。固城加背梁乃受敵之地，而無鎮軍，甚爲未便。故臣爲監司時，將此意馳啓，以陸軍番戍，自是倭船不敢近矣。然固城東南濱海之地，有三千餘戶，而出入往來，皆由城門外一路。賊若邀截其路而襲之，則三千之民，皆爲鼎中之魚矣。此不可不慮也。臣願抄水營及防禦不緊如永登浦兵船，以戍要害之地，則賊不敢近而無虞矣。以此廣議諸大臣，施行爲便。”上曰：“可也。”啓沃啓曰：“古云：‘好問則裕，自用則小。’人主虛懷納諫，則德日進而治化美矣。殿下近日從諫之美，漸不如初，臺諫言之而不喜納，雖可聽之言，必屢言而後從之，此豈從諫如流之意乎？如任士洪、清風君源、李叔生事及吏曹官吏推考等事，皆可聽之言，而殿下或不聽。且憲府所啓修改都監官吏推考事，亦屢啓請而今乃勉強從之。古云：‘訑訑之聲音顏色，拒人於千里之外。’</p>
--	---	--

사람들에게 충효(忠孝)의 도리와 포장하는 본의를 알게 해서 착한 본성을 감발(感發)시킨다면 교화가 행해지고, 습속(習俗)이 아름다와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숙(成倣)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지금은 태평한 시대가 오래 계속되어 남쪽 변방의 방어가 허술하고 인심이 해이해져 만에 하나 변란이라도 있게 되면 해변가의 백성들은 필시 모두 해를 당할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이 경상도(慶尙道) 고성현(固城縣) 땅을 보았더니 큰 바다에 연해 있고 섬이 많아 이곳이야말로 적이 내왕할 요충이었습니다. 전일 국가에서 고성진(固城鎭)을 혁파하여 사천현(泗川縣)으로 옮겼는데 사천은 긴요한 관방(關防)이 아닙니다. 고성의 가배량(加背梁)은 바로 적이 올 만한 곳인데 진군(鎭軍)이 없으므로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감사로 있을 때 이러한 뜻을 치계(馳啓)하고 육군(陸軍)으로 번갈아 가며 지키게 했는데 이 뒤부터는 왜선(倭船)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성 동남쪽 바닷가 지방에는 3천여 호가 사는데 모두 성문 밖의 한 길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만약 그 길을 끊고 습격하게 된다면 3천여 백성은 모두 술 안에 든 물고기처럼 될 것이므로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수영(水營)과 방어가 긴요하지 않는, 예를 들면 영등포(永登浦) 같은 곳의 병선(兵船)을 뽑아다가 요해처에 주둔시킨다면 적(賊)이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시어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황계옥이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물기를 좋아하면 넉넉해지고 자기의 뜻만 쓰면 작아진다.’

殿下若有拒諫之色，則人誰樂告以善言哉？”上問左右曰：“若以臺諫之言而不問是非，皆聽納，則於事體何如？啓沃，賢士也，豈不商量而言之乎？是予不德，故如此耳。”弼商啓曰：“啓沃慮其漸而言之，非謂上拒諫也。”瑛曰：“大抵人心正直者小。人主若有拒諫之心，則諂諛之士，必逢迎其意而不爲匡救，卒至誤國矣。啓沃之言，正爲此懼也。”啓沃啓曰：“人不足與適也，政不足與間也，格君心之道，莫如盡言極諫也。且舜大聖人也，而益戒之曰：‘無若丹朱傲。’雖聖明之君，不可爲自聖而自用也。臺諫之言，不中於理則已矣，苟合於理，則當卽聽之，豈可屢言之而後，勉強從之乎？況人心從上所好，如有厭諫之色，則孰肯盡言乎？”上曰：“李叔生事，醉中所爲，故初不聽之也。修改都監事，任賢則當勿疑矣，豈可以一事之錯誤，疑宰相乎？然憲府啓之，故今乃從之，非爲拒諫而然也。”

고 하였으니, 임금의 마음을 비우고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면 덕(德)이 날로 진보하고 정치의 교화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요즈음 간언을 따르시는 미덕이 점점 처음 같지 않으시어 대간(臺諫)이 아뢰어도 즐겨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들어주실 말씀도 반드시 여러 번 아뢰어야 따르시니, 이것이 어찌 간언 따르기를 물흐르듯 한다는 본의이겠습니까? 임사홍(任士洪)·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 이숙생(李叔生)의 일 및 이조(吏曹)의 관리를 추고(推考)하는 등의 일 같은 것은 모두 들어줄만한 말인데도 전하께서 간혹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또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는 수개 도감(修改都監)의 관리를 추고(推考)하는 일 역시 여러 번 아뢰어 청하자 지금에야 마지못해 따르십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아는 체하는 목소리와 안색은 사람들을 천리 밖으로 물러나게 만든다.’라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만약 간언을 물리치는 기색이 있으시면 어떤 사람이 즐겨 착한 말을 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만약 대간(臺諫)의 말이라고 하여 시비(是非)도 묻지 않고 모두 들어준다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는가? 황계옥은 어진 선비라, 어찌 헤아려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내가 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일 뿐이다.”

하니,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황계옥은 그 조짐을 염려해서 말한 것이지 성상께서 간언을 거절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니, 송영(宋瑛)은 아뢰기를,

“대체로 인심은 정직한 자가 적어 임금에게 만약 간언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아첨하는 선비들이 그 뜻에 영합하느라 바로잡아 구원하지 않으므로 끝내는 나라를 그르치게 됩니다. 황계옥의 말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고, 황계옥이 아뢰기를,

	<p>“〈《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사람은 상대하여 공박할 게 못되고 정사는 비난할 게 못된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길은 할 말을 다해서 지극하게 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또 순(舜)임금은 대성인(大聖人)인데도 더욱 경계하기를, ‘단주(丹朱)20893) 와 같이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무리 성명(聖明)한 임금이라도 스스로 성인이라 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대간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면 그만이거니와 진실로 이치에 합당한 것이라면 즉시 청허(聽許)하실 것이지 어찌 여러 번 청한 뒤에야 마지 못해 쫓을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들의 마음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법이므로, 만일 싫어하는 기색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누가 즐겨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이숙생(李叔生)의 사건은 취중(醉中)에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수개 도감(修改都監)에 관한 일은 어진 사람에게 맡겼다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어찌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 재상(宰相)을 의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었기 때문에 지금 따랐는데 간언(諫言)을 거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p> <p>하였다.</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5월 9일 (병인) 2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집(李諶)·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최응현(崔應賢)에게 유시하기를,</p> <p>“무릇 제사와 장사를 치르는 예(禮)는 성인(聖人)이 매우 상세히 제도를 만들었으니 자식 된 이들은 한결같이 이 법을 따름이 마땅하다. 그렇지 아니하여 예를 어그러뜨리고 제도를 문란시킨다면 왕법(王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들으니, 본도(本道)의 민속(民俗)에 아버이를 장사지낼 때 주식(酒食)을 많이 마련해 놓고 마을 사람들을 널리 모아 배우들의 온갖 잡희(雜戲)를 못하는 것이 없이 한다고 한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때에 남정네와 여인들이 뒤섞</p>	<p>○諭慶尙道觀察使金礪石、全羅道觀察使李諶、忠淸道觀察使崔應賢曰：“凡祭祀葬送之禮，聖人立制甚詳，爲人子者固當一遵乎此，不如是則是悖禮亂制之人，王法所不容。聞本道民俗於葬親之時，多辦酒食，廣聚鄉閭，俳優百戲，靡所不爲。當哀呼擗踊之際，士女雜沓，歡飲終夜，壞敗喪紀，莫此</p>



	<p>여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상례(喪禮)의 기강을 무너뜨림이 이렇게 심하니,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차마 듣지 못할 일이다. 또 제수(祭需)도 풍성하고 사치하기에 힘써서 한번의 제사에 드는 비용으로 거의 파산(破産)하는 데 이를 지경이라고 한다. 부자는 그만이거나와 가난한 자들은 마련할 힘도 없어 아버지의 유해(遺骸)를 드러내 놓고 때가 지나도록 장례를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 진실로 놀랍다. 나무에 올라 노래를 부르자 성인(聖人)이 나무라셨고(20900), 머리를 산발하고 제사를 드리자 신유(辛有)가 탄식하였다.(20901) 지금 허물어진 민간 습속이 어찌 나무에 올라가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데만 그칠 것인가? 그 끼칠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에도 하유(下諭)하여 엄하게 혁파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풍습이 아직도 다 근절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민간에서 전과 같이 다시 이런 일을 한다면 무거운 벌을 가하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겠다. 이러한 뜻을 널리 깨우쳐서 궁벽한 백성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였다.</p>	<p>爲甚，有人心者所不忍聞。且祭品務極豐侈，一祭之費，幾破產業，富者則已矣，貧者力不能辦，暴露親骸，歷時不葬。念至於此，良用懼然。登木而歌，聖人責之；被髮而祭，辛有歎之。今民俗之壞，豈但登木被髮而止哉？其流害有不可勝言。前此下諭，使之痛革此風，而猶未殄絕。今後民間若復如前，則當加重典，全家徙邊。將此意廣諭，使窮閭僻巷之民，無不周知。”</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17일 (갑술) 2번째기사</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진연(進宴)을 받고, 시위(侍衛)하는 여러 장수들에게 술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최호원(崔灝元)이 위장(衛將)으로서 나아가 술을 마시자 좌윤(左尹) 권건(權健)이 보고 웃었는데, 이는 대개 그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긴 때문이었다. 최호원은 비록 두 번이나 과거에 급제했으나 풍수지리술[風土之術]로 자기의 사업을 삼았고, 임금 또한 그것으로 대우했다.</p>	<p>○上幸景福宮，御慶會樓下，受議政府、六曹進宴。命賜酒侍衛諸將。崔灝元以衛將出就飲，左尹權健目而笑之，蓋鄙其爲人也。灝元雖再中科第，以風土之術，爲己事業，上亦以是待之。</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19일 (병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종묘(宗廟) 8실(八室)의 희생(犧牲)이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더 보태기로 했는데, 제사 때에는 다리 한 짝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나머지는 모두 왜인과 야인(野人)들에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디 제사를 위해 마련한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제사에만 전부 쓰게 하소서.</p>	<p>○御經筵。講訖，領事盧思愼啓曰：“宗廟八室犧牲不足，故加一豚，當祭之時，唯用一脚，其餘皆用於倭、野人。本爲祭祀設，而分用未便，請全用於祭。且宗廟垣墻，其高只數尺，至於犬豕有時踰入，至爲未安。請加</p>

	<p>또 종묘의 담이 높이가 수척에 불과하여 개나 도야지들이 수시로 넘나들어 매우 미안합니다. 청컨대 더 높이 쌓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p> <p>하였다. 【당시 노사신(盧思愼)이 종묘 제조(宗廟提調)였다.】</p>	<p>築。”上曰：“可。”【時，思愼爲宗廟提調。】</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20일 (정축)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대사헌(大司憲)의 말이 ‘예(禮)에 세자(世子)가 시선(視膳)20909)함이 마땅하다.’ 하므로, 내가 이미 윤허(允許)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지금 학문에 겨를이 없으므로 하루 세 차례씩 시선하기는 어렵다. 학문이 이루어지는 장년 이전에는 다만 한 차례씩만 시선한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今朝大司憲言，世子禮當視膳，予已允之。然世子方無暇於學問，三時視膳爲難。學成年壯之前，只一時視膳。”</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21일 (무인) 2번째기사</p>	<p>종친부(宗親府)와 의빈부(儀賓府)에서 진연(進宴)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마침 비가 와서 정지하도록 명하고, 이어 술과 음악을 종친부와 의빈부에 내렸다. 당시 오래도록 가물다가 이때에 비가 내렸다.</p>	<p>○宗親府、儀賓府將進宴，適雨，命停之。仍賜酒樂于宗親、儀賓。時久旱不雨，至是雨。</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25일 (임오) 1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허계(許誠)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의 전일 상소를 ‘여러 대신들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시고는 오래도록 회보(回報)가 없으니, 그 사유를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승지 등이 조율(照律)할 때 오지 않아서이다. 오게 되면 지시하겠다.”</p> <p>하니, 허계(許誠) 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 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흥덕사 북쪽은 길을 개통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만약 궁궐을 범했다면 당초 수강궁(壽康宮)을 지을 때나 창경궁(昌慶宮)을 수리할 때에 어찌하여 막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유생들의 왕래로 인하여 막으라는 명을 내리시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성상의 본의를 모르고 ‘성상께서 불교에 조금 유의하신</p>	<p>○壬午/弘文館副提學許誠等來啓曰：“臣等前日上疏，命議于諸相，而久不報，未知其由。”傳曰：“承旨等照律，時未來，來則當有指揮耳。”誠等啓曰：“上不好佛，臣等固知之。但興德寺北開路已久，若有犯於宮闕，則當初壽康宮之作、昌慶宮之修，何不塞之乎？今因儒生往來，乃命塞之，臣等恐愚惑之民，不識聖意，以爲少留意於佛教云爾。且以此爲外青龍，則梨峴當爲內青龍，若用風水之說，則當先塞梨</p>

다.’고 할까 신 등은 두렵습니다. 또 이곳을 외청룡(外靑龍)이라고 한다면 이현(梨峴)은 당연히 내청룡(內靑龍)이 될 것인즉, 만약 풍수설을 채택한다고 하면 마땅히 이현을 먼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현은 버려두고 이 길을 막은 일은 사관(史官)이 사책(史策)에 쓰게 된다면, 후세 사람들이 어찌 전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오래도록 근시(近侍)로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절 뒤의 길은 내가 알고서도 막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근일 유생이 왕래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절 뒤의 길은 막은 지 오래 있었는데 언제 다시 개통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기에, 내가 자진(慈殿)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했더니, 과연 궁궐을 범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이현은 비록 내청룡이라고 하나 형편상 막을 수 없겠다고 하였다. 내가 만약 학궁(學宮)20917)에 가게 된다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빙빙돌아서 갈 것인가? 이 길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풍수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거니와 지금 이미 채용하고 있으며 양대비(兩大妃)께서 창경궁(昌慶宮)에 거처하고 계시니, 신자(臣子)로서 차마 말 못할 사정도 있는 것이다. 사관(史官)이 직필(直筆)로 보고 들은 것을 쓸 것인데, 내가 어떻게 관여하여 알겠는가? 지금 들으니, 흥덕사 경내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 누각(樓閣)이 있다는데, 유생이 학업을 폐기하고 떠돌아 다니면서 유희하는 것이 가한 일인가? 그대들은 사리(事理)는 따지지 않고 한갓 사건 관련자들인 유생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니, 어째서인가?”

하니, 허계 등이 또 아뢰기를,  
 “신 등은 진실로 전하의 마음을 알지만, 다만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의 마음을 알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중들이 이것을 구실삼아 ‘성상께서 불교(佛敎)에 유의하심이 없지 않다.’는 허망한 말을

峴矣。 今乃舍梨峴而塞此路， 若史氏書諸策， 則後世安知殿下之心哉?” 傳曰：“爾等久爲近侍， 其言之若此何也? 寺後有路， 非予知而不塞之也。 近因儒生往來， 大妃曰：‘寺後之路， 塞之久矣， 未知何時復開歟?’ 予聞慈旨， 使人視之， 果有犯於宮闕矣。 予意以爲梨峴雖爲內靑龍， 而事有不可塞者， 予若幸學， 則從何路耶? 抑將迤邐而行乎? 此不可塞者也。 風水之說， 不用則已， 今旣用之， 兩大妃時御昌慶宮， 臣子所不忍言之事也。 史氏秉直筆， 隨見聞書之， 予何與知焉? 今聞興德寺內有蓮池， 池上有樓， 儒生廢棄其業， 放浪遊戲， 其可乎哉? 爾等不計事理， 徒以事干儒生， 言之如此何哉?” 誠等又啓曰：“臣等則固知殿下之心。 但外人， 安知殿下之心哉? 非但如此， 愚迷之僧， 以此藉口， 以爲聖上不無留意於佛敎， 張其誕妄之說而鼓惑愚民， 則恐佛敎從此興矣。” 傳曰：“爾等旣知予之不好佛敎， 何言之若此耶? 今日雨， 可飲酒而去。”

	<p>퍼뜨려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면 불교가 이로부터 흥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대들은 이미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비가 와서 술을 마실 만하니, 물러가라.”</p> <p>하였다.</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29일 (병술) 1번째기사</p>	<p>홍문관(弘文館)과 승정원(承政院)에 술을 내리라 명하고 율시(律詩)20919) 2수(首) 씩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비가 내리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었다.</p>	<p>○丙戌/命賜酒于弘文館、承政院。命製律詩二首，因喜雨也。</p>
<p>성종 228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5월 30일 (정해) 4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당(唐)나라 문종조(文宗朝)에 조서(詔書)를 내려 백관[百僚]들이 성밖을 나가 관가(觀稼)20922) 하도록 했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p> <p>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p> <p>“이것은 곧 백성의 일을 중히 여기는 뜻이니,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p> <p>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唐文宗朝，詔賜百僚出城觀稼。予今欲行之，何如?”承旨等啓曰：“此乃重民事之意，上教允當。”</p>
<p>성종 229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6월 5일 (임진) 6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p> <p>“중들의 무리가 역(役)이 없는 것을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서 마음대로 흥판(興販)하고 다른 도(道)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군액(軍額)이 감소되는 것은 오히려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청컨대 그곳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잡아 고하게 하여 그 물건으로써 상(賞)을 주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석씨(釋氏)의 무리는 국가에 보탬이 없으니, 진실로 오도(吾道)의 죄인인데,</p>	<p>○刑曹據平安道觀察使李克墩啓本啓：“緇髡之徒自幸無役，恣意興販，他道皆然。軍額減損，職此之由。請令所在居民，皆得捕告，而以其物賞之。”傳曰：“釋氏之徒無益國家，誠吾道之罪人；興販營生者，又釋氏之罪人，雖盡去之，亦無足惜。然去之無漸，則有駭俗之弊；絕衣食之源，則未免窮而</p>

	<p>흥판(興販)으로 생활을 경영하는 것은 또 석씨의 죄인이다. 비록 모두 없앨지라도 족히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없애기를 점차로 하지 아니하면 풍속을 놀라게 하는 폐단이 있고, 의식(衣食)의 근원을 끊으면 곤궁함을 면하지 못하여 도둑이 될 것이다. 흥판하는 가운데에는 혹 아버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일체 금단(禁斷)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또 《대전(大典)》에 승인(僧人)을 금제(禁制)하는 조문이 있는데, 어찌 다시 법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爲盜。其興販之中，或有爲親而營養，不宜一切禁斷。又《大典》有禁制僧人之條，何必更立法程？其勿舉行。”</p>
<p>성종 229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6월 6일 (계사) 7번째기사</p>	<p>후추[胡椒]를 종친(宗親) 정2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영돈녕(領敦寧)·의빈부(儀賓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승정원(承政院)·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경연관(經筵官)·제장(諸將)·예문관(藝文館)·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에 차등이 있게 내려 주었다.</p>	<p>○賜胡椒宗親正二品以上、議政府、忠勳府、領敦寧、儀賓府、六曹、漢城府、承政院、臺諫、弘文館、經筵官、諸將、藝文館、兼司僕、內禁衛，有差。</p>
<p>성종 229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6월 7일 (갑오) 1번째기사</p>	<p>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약(藥)에는 오미(五味)20955) 와 사기(四氣)20956) 와 군신(君臣)·좌사(佐使)·상외(相畏)·상반(相反)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약을 지을 때에 반드시 그 성질에 따라 무겁거나 가볍게 해서 그 병을 다스려야 하니, 비록 수량(銖兩)20957) 의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오히려 능히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데, 하물며 참된 약이 아닌 것을 채취해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지난 봄에 향약(鄉藥)20958) 을 후원(後苑)에 심으려고 하여 제도(諸道)로 하여금 채취해 올리게 하였던 바, 경상도 심약(審藥) 김우연(金遇淵)이 참 자완(紫莞)이 아닌 것을 채취해 올렸으므로, 김우연은 이미 중죄(重罪)에 저촉되어 인해 그 직(職)을 파하였고, 또 채약(採藥)한 고을의 수령(守令)을 추고(推考)하였다. 무릇 공진(供進)하는 약재(藥材)는 수채(收採)와 폭건(曝乾) 등의 일을 일체 방서(方書)에 의하여 착오(差誤)가 없게 하라.” 하였다.</p>	<p>○甲午/下書諸道觀察使曰：  凡藥有五味四氣，君臣佐使相畏相反之性，故劑藥之際，必因其性而輕重之，以治其病。雖銖兩暫差，猶能傷人性命，況可採用非眞之藥乎？予於去春，欲種鄉藥於後苑，令諸道採進，慶尙道審藥金遇淵採進，非眞紫莞，已抵遇淵于重罪，仍罷其職，又推採藥之邑守令。凡供進藥材收採、曝乾等事，一依方書，毋致差誤。</p>

<p>성종 229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6월 9일 (병신) 1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및 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의 각 1원(員)과 좌승지(左承旨) 한건(韓健)에게 명하여 동쪽 교외[東郊]에 가서 농사를 보게 하고, 술과 풍악을 제천정(濟川亭)에 내려 주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특별히 당(唐)나라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경 등을 명해 교외로 나가서 농사를 보게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백성의 일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려는 때문이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이미 떠나자, 또 도승지(都承旨) 김극검(金克儉)과 내관(內官) 김자원(金子猿)에게 명하여 선운(宣醞)20960) 을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하고, 또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 민사건(閔師騫)·부교리(副校理) 강경서(姜景敘)·수찬(修撰) 박증영(朴增榮)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게 하는 한편,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으로서 백성의 일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때로 수재와 한재가 있으면 오직 마땅히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마음을 살피서 공경히 천심(天心)에 응답하였던 것이다. 얼마전 기후를 보건대, 아침저녁으로 서늘하여 가뭄의 징조가 이미 나타났으니, 근심하는 마음이 경경(耿耿)20961) 하였던 바, 다행히 하늘의 은혜를 입어 때에 맞추어 비가 들에 흠족하게 내렸다. 이제 특별히 대신을 보내어, 당(唐)나라의 고사(故事)에 의해 교외에 나가 농사를 보게 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중히 여김을 보이게 하고, 거둑 근신(近臣)을 보내어 대신을 위로하게 하니, 그대들은 모두 내 뜻을 체득하여 극진히 즐기다가 돌아오라.” 하였다.</p>	<p>○丙申/命領敦寧以上、議政府及六曹、漢城府各一員，左承旨韓健往東郊觀稼。賜酒樂于濟川亭。領議政尹弼商等辭。傳曰：“今特依唐朝故事，乃命卿等往觀于郊，所以使民知國之重民事也。”弼商等既行，又命都承旨金克儉、內官金子猿齎宣醞賜之。又命弘文館應教閔師騫、副校理姜景叙、修撰朴增榮齎宣醞往，下御書曰： 自古帝王莫不重民事，時有水旱，惟當恐懼修省，敬答天心。頃觀氣候，朝暮淒涼，旱徵已著，憂心耿耿，幸蒙天貺時雨洽野。今特遣大臣，依唐朝盛事，出郊觀稼，示民重農；疊遣近臣，宣慰大臣。爾等咸體予意，極歡乃歸。</p>
<p>성종 229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6월 9일</p>	<p>호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징채조(徵債條)에, ‘무릇 세공 미멸(稅貢米淸)을 받고서 준납(准納)20967) 하지 아니한 자와 고의로 파선(破船)하게 한 자에게는 징수(徵收)</p>	<p>○戶曹啓：“《大典》徵債條云：‘凡受稅貢米淸而不準納者、故令破船者，許徵。’漕轉條云：‘故令敗船盜用明白</p>

(병신) 4번째기사

하기를 허락한다.’고 하였고, 조전조(漕轉條)에는 이르기를, ‘고의로 패선(敗船)하게 하여 도용(盜用)한 것이 명백한 자에게는 전부 징수하고 일이 의심스러운 것은 3분의 2를 징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용한 것이 명백한 것은 마땅히 도용한 수량에 의하여 징수하고, 만약 일이 의심스러운 것은 한 배 가운데 공리(貢吏)·영선(領船)·격군(格軍)의 명수(名數)가 심히 많은데, 차등이 없이 일양(一樣)으로 나누어 징수하면 인정과 법에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성화(成化) 5년(1468)에 휴흠 미멸(虧欠米淸)은 그 반은 공리(貢吏)와 영선(領船)이, 반은 격군(格軍)이 나누어 징납할 일로 수교(受敎)하여 이미 정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선과 공리는 오로지 조전(漕轉)을 맡고 격군도 같은 배에서 수호하는 자이므로 그 도둑질하는 것은 반드시 격군과 같이 꾀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파선(破船)한 사람을 추국(推鞠)하니, 격군과 꾀를 통하여 도둑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제 만약 격군에게 나누어 징수하지 아니하면 공리와 영선이 비록 마음대로 도둑질하더라도 격군은 자기에게 간여됨이 없다고 스스로 이르면서 반드시 금지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영선과 공리는 각각 한 사람인데, 격군은 20명에 밀들지 않으니, 쥐처럼 도둑질하는 간사한 꾀를 영선 등이 다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 휴흠 미멸을 격군에게도 아울러 징수하면 자연히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을 써서 수호할 것이므로 도둑질하는 폐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무릇 세공 미멸(稅貢米淸)을 받고서 준납(准納)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법인데, 그 사실을 추핵(推劾)하여 휴흠(虧欠)된 것이 공리(貢吏)에게 있으면 마땅히 공리에게 징수하고 영선(領船)에게 있으면 영선에게 징수하며 격군(格軍)에게 있으면 격군에게 징수해야 할 것이므로 때에 다달아 처리할 뿐인데, 반씩 징수하는 법은 융통성이 없는 듯합니다. 신이 전의 의논에서 이른

者, 全徵; 事涉疑似者, 徵三分之二.’ 然盜用明白者, 當依所盜之數徵之; 若事涉疑似者, 則一船之中, 貢吏領船格軍名數甚多, 無差等一樣分徵, 有違情法。 故在成化五年, 虧欠米淸一半貢吏領船、一半格軍分徵事, 受敎已爲定法。 領船、貢吏專掌漕轉, 而格軍亦同船守護者也, 其所盜竊, 必與格軍同謀。 前此推鞠破船人, 則與格軍通謀, 盜竊者居多。 今若不分徵格軍, 貢吏領船雖恣意盜竊, 格軍自謂無與於己, 必不禁止。 且領船貢吏各一人, 而格軍則不下二十人, 其鼠竊奸謀, 非領船等所能盡防。 其虧欠米淸竝格軍徵之, 則自相疑畏, 用心守護, 庶無盜竊之弊。 請依前受敎施行。” 命議于領敦寧以上。 洪應議: “凡受稅貢米淸而不準納者徵之, 法也。 推覈其實, 虧欠在貢吏則當徵貢吏, 在領船則徵領船, 在格軍則徵格軍, 臨時處之而已。 一半之法, 似爲膠固。 臣前議所謂不更立條章, 以此也。” 從之。

	<p>바 다시 조장(條章)20969) 을 세울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29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6월 12일 (기해) 2번째기사</p>	<p>영안도 절도사(永安道節度使) 여자신(呂自新)이 치계(馳啓)하기를, “야인(野人) 요로토(要老土)·사라합(舍羅哈)이 운룡(雲籠)·혜산(惠山)의 시성(柴城)을 설치한 곳에 이르러 인해 머물러 사냥하면서 말하기를, ‘여기는 우리 땅인데 이제 설험(設險)20973)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비록 죽더라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滄)는 의논하기를, “저 야인들이 감히 설험(設險)한 곳을 넘어와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 또 공순하지 못하니, 만약 내쫓지 아니하면 국위를 손상시킬 것이며 이를 본받는 자가 별때처럼 일어날까 두려우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크게 군사의 위엄을 일으켜서 급히 쫓아내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저 야인들이 우리 나라의 설책(設柵)과 실험(設險)을 보고는 깊이 혐의스럽게 여기고는 이제 넘어 들어와 막(幕)을 열고 사냥하면서 변장(邊將)의 대처하는 형세를 시험하니, 이때를 당하여 고식적(姑息的)인 계책으로 음식물을 주어 약함을 보이면 저들이 반드시 때를 지어 나와서 함부로 타위(打圍)20974) 를 행하여 물리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후일의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내되, 만약 거역하면 섬멸하는 것도 가합니다. 그러나 한 번 쾌하게 한 뒤에 잇달아 병화(兵禍)를 맺는다면 이도 깊이 염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선 군사를 엄히 하여 굳게 지키고 형세를 크게 펼쳐 보이고 그 말을 엄하게 하여 끝까지 대접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보이되, 저들이 만약 여전히 돌아가지 아니하거든, 저들의</p>	<p>○永安道節度使呂自新馳啓曰：“野人要老土舍羅哈到雲籠、惠山設柴城處，因留行獵曰：‘此是我地，今設險何也？我雖死，不去。’”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兵曹。沈滄議：“彼人等敢越設險處，暫不疑畏，言又不恭。若不黜之，虧損國體，恐效此者亦蜂起，誠非細故。臣謂大舉兵威，急逐之爲便。”尹弼商議：“彼人等見我國設柵設險，深以爲嫌，今來越入，結幕田獵，以試邊將待之之勢。當今之時，以姑息之計，給食物示弱，則彼必成群出來，恣行打圍，難以却之，後日之患，不可勝言，誠宜舉兵逐之。若其拒逆，則殄殲之可也。然一快之餘，兵連禍結，此亦深可慮也。今姑嚴兵固守，多張形勢，嚴其詞說，以示終不待之之意。彼若如前不還，將彼答之之辭，且將形勢馳啓後，更議。”洪應議：“前日金丹多茂居此，國家警曉，移置江原道。今此要老土等來此，亦不過田獵而已。然不可不預防，須令節度使，或示之以恩，或規之以威，依丹多</p>



	<p>답하는 말과 또 형세를 치계(馳啓)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전일에 김단다무(金丹多茂)가 이곳에 거처할 적에 국가에서 알아듣도록 설득 시켜 강원도로 옮겨 두었는데, 지금 요로토(要老土) 등이 여기 온 것도 사냥하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방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혹은 은혜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위세로 위협하기도 하여 김단다무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빨리 몰아 내쫓도록 하고 그대로 있지 못하게 하소서.”</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전일 김단다무 등이 나올 때에 변장(邊將)이 멀리 생각하지 않고 염장(鹽醬)·구량(口糧)20975)·곡종(穀種) 등의 물건을 많이 주고 성(城) 안에 출입하게 하여 대우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자, 이로써 짐을 짓고 받을 갈며 장차 오래 살 계획을 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조처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요로토(要老土)·사라합(舍羅哈) 등이 때를 지어 나와서 방새(防塞)를 넘어 들어와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으니, 우리는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몰아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일으킨 뒤에 저들이 만약 나가지 아니하면 장차 공격하여야겠습니까? 만약 형편상 할 수 없이 공격한다면 저들과 우리 사이에 어찌 상(傷)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만약 공격할 수 없으면 가볍게 군사를 일으킨 것이 또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이들이 혹은 오래 머물고자 하여 온 것인지 혹은 한때의 타위(打圍)를 하려고 온 것인지 그 사이를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접대하지 말게 하고 사령(詞令)을 엄하게 하여 군(軍)의 위세(威勢)를 많이 베풀어서 강을 건너 몰아서 쫓아낼 것처럼 하여 저들로 하여금 절망(絶望)하여 편히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서 그 형세를 보면 여러 날 사이에 혹은 가든지 혹은 머물든지 그 실정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시 치계(馳啓)하여 취품(取稟)20976) 하게</p>	<p>茂故事，速令驅逐，毋使仍居。”李克培議：“前日金丹多茂等出來時，邊將無遠慮，鹽醬口糧穀種等物多與之，出入城內，遇之甚厚。以此造家耕田，將爲久遠之計，國家難於處置。今要老土·舍羅哈等成群出來，踰越防塞，無所畏忌，在我當舉兵驅逐。然舉兵後彼人等，若不出去，則將擊之乎？若勢不得而擊之，則彼我之間，豈無所傷？若不得擊之，則輕易舉兵，又如何也？此輩或欲爲久留而來，或欲一時打圍而來，其間又未可知。如令邊將，勿接待、嚴詞令，多張軍勢，爲過江驅逐之狀，使彼絕望不得安接，以觀其勢，累日之間，或去或留，情僞可知。然後更馳啓取稟何如？邊將生，處之不可不審。”盧思慎、李鐵堅、鄭文炯、孫舜孝、李崇元議：“節度使托以巡邊入去，則彼必聞而畏懼，自然退去。然猶留連不去，則以節度使逐出十餘人，何難之有？”尹壕議：“依所啓舉兵示威，以杜後日來往之路。”許琮、李瓊全、沈滌、元仲秬議：“甲山等處土廣人稀，殘敵莫甚。而金丹多茂來居之時，同類人來往者每每接見，</p>
--	--	---

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변경에 틈이 장차 생기면 처리하기를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노사신(盧思愼)·이철건(李鐵堅)·정문형(鄭文炯)·손순효(孫舜孝)·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절도사(節度使)가 변경을 순찰한다고 칭탁하면서 들어가면 저들이 반드시 들고는 두려워하여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머물고 가지 아니하면 절도사로서 10여 사람을 쫓아내게 할 것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아뢰 바에 의하여 군사를 일으켜 위엄을 보여서 후일의 내왕하는 길을 막게 하소서.”

하였으며, 허종(許琮)·이경동(李瓊全)·심인(沈潏)·원중거(元仲矩)는 의논하기를,

“갑산(甲山) 등지는 땅은 넓으나 사람이 적어서 잔폐(殘弊)함이 심한데, 김단다무(金丹多茂)가 와서 살 때에 동류(同類)의 사람이 내왕하는 자를 매양 접견하였던 바 그 사람들이 그 소금과 양식을 탐하여 연달아 나와서 드디어 길을 이루었으므로, 그 조짐을 커지게 할 수 없다 하여 그 내왕하는 요로(要路)에 위험물을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서 접대하지 못하게 하고 본조(本曹)에서는 전교를 받아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로토(要老土) 등이 설험(設險)한 곳의 안에 넘어 들어와서 막(幕)을 짓고 오래 머물면서 방자히 행하고 꺼림이 없으며, 또 저들이 비록 말하기를, ‘이 땅은 전부터 산에 다니는 곳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근일에 비롯된 것이고 옛부터 야인(野人)이 사냥하던 곳이 아니니, 저들의 말하는 바는 망령된 것이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귀순하였는데, 지금 가까운 지경에서 사냥하는 것은 역시 마음에 꺼리고 의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니, 비록 말로 깨우쳐 타이르더라도 듣지 아니할 이치가 없습니다. 마땅히 말하기를, ‘이제 극성(棘城)을 설치한 것은 저쪽과 이쪽의 경계를 막은 것인데, 마음

彼人利其鹽糧，連續出來，遂成道路。漸不可長，故其來往要路，設險堀坎，毋令接待，本曹受教行移。今要老土等踰入設險之內，結幕久留，恣行無忌。且彼雖云此地在前山行處，此乃始於近日，非自古野人行獵之處，彼之所言妄也，不可不懲。但右人等向國歸順，今之所以獵於近境者，亦心無猜疑故也。雖以言辭開諭，無不聽之理，當語之曰：‘今設棘城，所以限隔彼此也，擅入其中，法當擒殺。但汝等本是歸順之人，而初不知我國設險，故今不罪。汝宜速回還，俾無後悔，今後亦當勿復來往。又傳諭同類，毋令來犯國令。汝等生長近境，聞此處舊有接待者乎？今不可擅自接待。前者金丹多茂來居之時，雖暫相容接，前無此例，故丹多茂從願移居內地。後雖有來居此地者，當依丹多茂施行。’權辭開說，又微露威懼，期於還去，毋令久留。且更加設險，今後勿使彼人踰入。”從克培議。

	<p>대로 그 가운데 들어왔으니, 법으로는 마땅히 잡아 죽일 것이지만, 너희들은 본시 귀순한 사람이라 애초에 우리 나라의 설험(設險)한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죄주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마땅히 속히 돌아가서 후회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 뒤에도 마땅히 다시 내왕하지 말 것이다. 또 동류에게 전해 깨우쳐서 국령(國令)을 와서 범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가까운 지경에서 성장하였는데, 이곳에서 예전에 접대(接待)한 자가 있었음을 들었느냐? 이제 마음대로 접대할 수 없다. 전번에 김단다무(金丹多茂)가 와서 있을 때에는 비록 잠시 서로 접대함을 용납하였으나, 전에는 이런 예(例)가 없었기 때문에 김단다무를 원하는 바에 따라 내지(內地)로 옮겨 살게 하였으니, 뒤에 비록 이 땅에 와서 사는 자가 있더라도 마땅히 김단다무의 전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라고 권사(權辭)20977) 로 깨우쳐 말하고, 또 조금 위협함을 드러내어 돌아가기를 기약하고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설험(設險)을 다시 더하여 이 뒤로는 저들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이극배(李克培)의 의논에 따랐다.</p>	
<p>성종 229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6월 28일 (을묘) 3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권빈(權璣)이 와서 아뢰기를, “정성근(鄭誠謹)의 일을 신 등이 다시 생각하니, 추문(推問)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문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권빈이 또 아뢰기를, “신 등이 소문을 듣건대 진주(晉州) 사람으로 무과(武科)에 합격한 정은부(鄭殷富)가 군관(軍官)으로서 영안도(永安道)에 부방(赴防)하였는데 그 아내가 정은부의 사촌(四寸) 동생과 간통하였으니 바로 하맹저(河孟渚)의 아들입니다. 정은부가 부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간통한 사실을 살피고는 그 아내를 내쳤는데 그 아내가 그대로 간통한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이 여자의 어미도 그 남편의 이성(異姓) 삼촌(三寸) 조카 정윤례(鄭允禮)와 간통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문(移文)하여 추국(推鞠)하면 실정을 알아내지 못할 듯하니, 행</p>	<p>○司憲府持平權璣來啓曰：“鄭誠謹事，臣等更思之，不可不推。請推問。”</p> <p>不聽。璣又啓曰：“臣等風聞晉州人武科鄭殷富，以軍官赴永安道，其妻奸殷富四寸弟，乃河孟渚子也。殷富罷防還家，察其奸事，乃黜其妻，而其妻仍奸。且聞此女之母，亦奸其夫異姓三寸姪鄭允禮。若移文推鞠，則恐未得情，遣行臺推鞠何如？”傳曰：“可。”</p> <p>又啓曰：“前等憲府官吏被劾不承，法當追身而問。臣等竊以前等官吏今雖</p>

	<p>대(行臺)21101) 를 보내어 추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임[前等]의 사헌부(司憲府) 관리들이 탄핵을 받고 승복(承服)하지 아니하면 법으로는 마땅히 추신(追身)21102) 하여 추문해야 합니다. 신 등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전임 관리가 비록 체임(遞任)되었다 하더라도 지난날에 조강(朝綱)21103) 을 잡고 이 대(臺)에 앉았던 사람인데 앞뜰에 꿇어앉히고 이졸(吏卒)에게 굴욕을 당하게 하는 것은 대체(大體)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유사(攸司)가 본부(本府)21104) 만이 아니므로 다른 사(司)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요즈음 수집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천계(天戒)21105) 를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중외(中外)에서 술을 금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遞任, 乃前日執朝綱坐此臺者也, 趨跪於前庭, 屈辱於吏卒, 大體未便。 攸司非獨本府, 請移他司。 近日累旬不雨, 不可不謹天戒, 請禁酒中外。” 皆不聽。</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4일 (경신) 3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좌찬성(左贊成) 이철건(李鐵堅)·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좌참찬(左參贊) 이승원(李崇元)·우참찬(右參贊) 정문형(鄭文炯)이 서장(書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臣)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질로 지나치게 상은(上恩)을 입어 외람되게 정부(政府)에 있으니, 늘 복속(覆餗)의 근심(21180) 을 품었는데, 요즈음 어미를 죽인 변고가 다시 성화(聖化)21181) 에 누를 끼치고, 이제 또 가뭄이 재앙이 되어 화곡(禾穀)이 죄다 말랐습니다. 신들의 보좌가 변변치 못하여 성상께서 소간(宵旰)21182) 하시는 염려를 끼쳤거니와 총애를 외람되게 받고 어진이의 등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되겠기에, 신들의 벼슬을 해면하여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p>	<p>○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右議政盧思愼、左贊成李鐵堅、右贊成孫舜孝、左參贊李崇元、右參贊鄭文炯上狀辭職曰：  臣等俱以庸劣，濫蒙上恩，叨居政府，常懷覆餗之憂。 近者殺母之變，再累聖化； 今又亢陽爲災，禾穀盡枯。 臣等輔佐無狀，貽聖上宵旰之慮，不宜冒寵妨賢。 乞解臣等之職，以答天譴。  御書曰：  殺母之變，惟予無德之致； 亢陽之災，是予失政之由。 豈論道之有欠，弘化</p>

	<p>“어미를 죽인 변고는 오직 나에게 덕이 없는 탓이고, 가뭄의 재앙은 곧 내가 정사를 잘못된 까닭이지, 어찌 논도(論道)의 흠결이 있고 홍화(弘化)21183)의 흠결이 있겠는가? 경들이 사퇴하고자 하면,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겠는가?” 하였다.</p>	<p>之有缺? 卿等欲退, 吾誰與以答天譴?</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5일 (신유)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올 가을 강무(講武)의 군사 수는 이미 2만 5천으로 정하였으나, 근년에는 국가에 일이 많아서 오래 열무(閱武)21185) 를 그만두었더니, 군정(軍政)이 조금 헤이해지고 병졸이 게을러졌다. 이제 가을 곡식이 성숙할 희망이 있으니, 군사 수를 더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 “今秋講武軍數已定二萬五千。 然近年國家多故, 久廢閱武, 軍政稍弛, 兵卒怠惰。 今有西成之望, 加定軍數若何? 與議政府、兵曹共議以啓。”</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5일 (신유) 4번째기사</p>	<p>후원(後苑)에서 비를 빌 때의 행향사(行香使) 한치형(韓致亨)에게 아마(兒馬) 한 필을 내리고, 동자(童子)들에게 각각 쌀 한 말을 내렸다.</p>	<p>○賜後苑祈雨行香使韓致亨兒馬一匹, 童子米人一斗。</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5일 (신유) 5번째기사</p>	<p>박지번(朴之藩)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죽산군(竹山君)으로, 이종생(李從生)을 가정 대부 함성군(咸城君)으로 유순(柳洵)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박안성(朴安性)을 가선 대부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윤탄(尹坦)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평(李枰)을 통정 대부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전(金典)을 봉정 대부(奉正大夫) 수 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으로, 민이(閔頤)를 봉훈랑(奉訓郎)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경동(李瓊全)을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윤탄(尹坦)은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의 아우인데, 사람됨이 지절(志節)이 없으며 이익에 밝고 의리에 어두웠다. 첨지(僉知) 김의</p>	<p>○以朴之蕃爲嘉靖竹山君, 李從生嘉靖咸城君, 柳洵嘉善兵曹參判, 朴安性嘉善工曹參判, 尹坦通政刑曹參議, 李枰通政司諫院大司諫, 金典奉正守司諫院司諫, 閔頤奉訓司憲府持平, 李瓊全嘉善同知中樞府事。 【史臣曰: “坦, 領敦寧尹壕之弟也。爲人隳詬無節, 喻利昧義。 居與僉知金義童隔牆, 廣占限界, 金難之, 輒反唇醜詆。 其橫恣如此, 一里病焉。 丹</p>

	<p>동(金義童)과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한계를 넓게 차지하였으므로 김의동이 비난하니, 문득 입술을 뒤집고 욕하였다. 그 함부로 구는 것이 이러하므로, 온 마을이 괴로와하였다. 단양군(丹陽郡)의 아전이 찌꺼기 미역 몇 다발을 들고 탄식하며 ‘이것으로 재목을 사려 하니 또한 어렵지 않은가?’ 한 적이 있는데, 대개 윤탄의 집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윤탄이 본향(本鄉)이라는 핑계로 토산물을 요구하므로, 아전이 그를 괴로와하였다.” 하였다.</p>	<p>陽郡吏嘗持殘藿數束，嘆曰：‘以此欲質材木，不亦難乎?’ 蓋坦家物也。坦依憑藉貫，求索土產，吏苦之。”】</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7월 6일 (임술)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우택(雨澤)이 흠족하니 술을 금하는 영을 폐지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雨澤周洽，罷酒禁。”</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7월 6일 (임술) 4번째기사</p>	<p>어서(御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내가 참으로 덕이 없어서 하늘의 꾸중을 가져왔으므로, 가뭄이 더욱 심하여 곡식이 말라 가니, 내 마음이 근심으로 조리는 것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을 불러 정원(政院)21188) 에 술을 내려서 내 기쁜 뜻을 보아라. 그러나 내 마음이 경계하고 두렵게 여기는 것을 어찌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겠는가? 술자리에 있는 모든 문신(文臣)에게 각각 《희우시(喜雨詩)》를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p>	<p>○御書下承政院曰： 予實不德以致天譴，旱暵滋熾，禾稼將枯，予心憂煎，曷可盡言？天不棄予，霑然貺澤，喜感可既耶？其召入直兵曹都摠府、弘文館、藝文館，賜酒于政院，以示予喜意。然予心警懼，何嘗以此而少懈？凡文臣在飲席者，令各製《喜雨詩》以進。</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7월 7일 (계해) 3번째기사</p>	<p>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올 가을 강무(講武)하는 군졸 2만 5천에 치중(輜重)21190) 을 아울러 헤아리면 그 수가 6, 7만이나 되니,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강원도는 산천이 험하고 막혀서 길이 좁으므로 행군(行軍)하고 포영(布營)하는 것을 거의 수용할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를 더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尹弼商、盧思愼議：“今秋講武軍卒二萬五千，若并計輜重，則其數至於六七萬，不爲少矣。況江原道山川險阻，道路狹隘，行軍、布營殆不能容。臣意以爲不須加數。” 洪應議：“今審軍數，臣意猶以爲多也。 丁未戊(甲)</p>

“이제 군사의 수를 살펴보건대, 신은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미년(21191)·무신년(21192) 사이에는 혹 3, 4만이 다 10여 일분의 양식을 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강무를 거행하지는 않았으나 노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산길이 험하고 좁아서 걸핏하면 막히니,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낫지 못합니다. 신이 평일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도의 군사를 다 징발할 것 없이, 올 봄에 혹 몇 도를 징발하고 가을에 혹 몇 도를 징발하고 내년에도 다시 그렇게 하여 갈마들여 쓰면, 군사도 서로 쉬고 산길에서 군사를 쓰기도 편할 것입니다. 또 날짜도 많습니다. 대비께서도 성상 계신 데서 너무 오래 멀리 떨어져 계시면 생각하시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니, 날짜도 되도록 줄여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강무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국가에 요즈음 일이 많기 때문에 군졸이 이미 모였다가 거행할 때에 임박하여 멈추었으나, 건량(乾糧)을 싸 가지고 갑옷과 병기를 지니고서 습진(習陣)하고 돌아갔으니, 전혀 그만둔 것과는 다릅니다. 또 강원도의 강무장(講武場)은 산길이 좁아서 큰 군사가 가기 어려우니, 신은 2만 5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2만 5천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니, 수를 더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근년에 오래 강무를 그만둔 것은 참으로 궤전(闕典)이 되므로, 큰 무리를 동원시켜 무사(武事)를 강습하고 짐승을 잡아서 종묘(宗廟)에 바치는 것은 좋지만, 정미년·무신년에 잇달아 큰 군사를 징발하여 대열(大閱)하고 과하였는데, 올해에 또 징발하는데다가 더구나 입거(入居)(21193) 를 전송(傳送)하느라 민간에 일이 많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병조(兵曹)를 시켜 세종(世宗)·세조(世祖) 때에 철원(鐵原) 등에서 강무한 군사의 수를 살펴서 짐작하여 정하는 것이 어

[申]年間, 或三四萬, 皆齋十餘日糧來京師, 雖不行講武, 不爲不勞。且山路險狹, 動輒阻礙, 多不如少之爲愈。臣平日以爲不必畢徵諸道之兵。今春或數道, 秋或數道, 明年亦復如是選用之, 軍亦相休, 用兵於山蹊亦便, 且日數亦多。大妃在上, 隔闕太久, 則必有思想之勞, 日數亦從約施行何如?” 孫舜孝議: “講武不可廢也。國家近因多故, 軍卒已聚, 臨行停之。然裹餼糧、載甲兵、習陣而還, 非全廢之例。且江原道講武場山間路狹, 大軍難行。臣意以爲二萬五千猶多也。” 李崇元議: “二萬五千不多不少, 不必加數。” 鄭文炯議: “近年久廢講武, 誠爲闕典, 宜動大衆以講武事, 獲禽獸以薦宗廟。但丁未戊申連徵大兵, 大闕而罷, 今年又徵? 況入居傳送, 民間多事。臣妄意令兵曹考世宗、世祖朝鐵原等處講武軍數, 酌定何如?” 許琮、柳洵、沈潁、元仲矩議: “上教允當。” 金克儉、曹克治、安瑚、朴楣議講武一爲閱兵, 一爲乾豆, 誠非細事。今一大徵軍卒, 以作惰士之氣, 上教允當。但地狹人多, 則暮夜行軍

	<p>떠할까 합니다.”</p> <p>하고, 허종(許琮)·유순(柳洵)·심인(沈潁)·원중거(元仲矩)는 의논하기를, “성상께서 하교하신 것이 마땅합니다.”</p> <p>하고, 김극검(金克儉)·조극치(曹克治)·안호(安瑚)·박미(朴楣)는 의논하기를, “강무는 한편으로 군사를 사열하고 한편으로 건두(乾豆)21194) 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니, 이제 한 번 크게 군졸을 징발하여 게으른 군사의 기상을 진작하는 것은 위에서 분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으면 밤에 행군할 즈음에 서로 짓밟는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p> <p>하였다.</p>	<p>之際, 恐有自相蹂躪之弊。”</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7월 8일 (갑자) 1번째기사</p>	<p>영둔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올해에 백성을 옮기는 것과 사삿집의 영선(營繕)을 금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滄)가 의논하기를, “하삼도(下三道)21195) 의 백성을 옮겨서 두 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또 올해에 멈추더라도 내년에 들여보낸다면 백성이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올해에 들여 보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사삿집을 짓는 것은 스스로 장만하는 일이니, 금할 수 없겠습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백성을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쉽사리 멈출 수 없으나, 근년에 전령(傳領)21196) 할 때 여러 고을의 사람과 말이 맞이하고 보내기에 지쳐서 지탱하지 못할 형세인데다가, 황해도·평안도 두 도는 사람이 적어서 요역(徭役)이 훨씬 무거운데 또 그 폐해를 받아 고달파서 스스로 보존하지 못합니다. 해마다 잇달아 하고 멈추지 않으면 아마도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할 것이며, 이제 가뭄의 재변도 있으니, 우선 멈추어 내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삿집의 일은 스스로 장만하여 하는 것이므로 공가(公家)에 관계되지 않으</p>	<p>○甲子/命領敦寧以上及議政府, 議今年徙民及禁私家營繕便否。 沈滄議: “移下三道民以實兩道, 不得已之事。 且今年雖停之, 明年入送, 則民之愁怨一也。 今年入送爲便。 私家造成, 自備之事, 不可禁也。” 尹弼商議: “徙民重事, 不可輕易停之。 然近年傳領之時, 諸邑人馬疲於迎送, 勢不能支。 況黃海、平安兩道人物鮮少, 徭役倍重, 又受其弊, 困不自存。 若連年不止, 竊恐民不聊生。 今有旱災, 姑停之, 以待來年何如? 私家之役, 自備爲之, 不關公家, 不必官爲禁之。” 洪應、李克培、盧思慎、李鐵堅、孫舜孝、李崇元、鄭文炯議: “徙民重事,</p>



	<p>니, 관에서 금할 것이 없겠습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이철견(李鐵堅)·손순효(孫舜孝)·이숭원(李崇元)·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p> <p>“백성을 옹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며, 화기(和氣)를 상하여 재변을 부르는 것은 이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니니, 국가에서 어찌 일이 없는데도 즐거이 하겠습니까? 부득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우선 들여보내지 말자고 하나, 뒷날에 백성을 옹기는 의논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올해에 다 들여 보내어 민심의 의구(疑懼)를 없애는 것만 못합니다. 또, 사삿집의 일은 한정된 재물로 때를 봐서 하는 것이므로, 일체 금하면 이것도 일을 버리고 때를 잃는 것이니, 국가에서는 해아릴 것이 없는 것으로 버려두고 간여하지 않는 것이 또한 옹편하겠습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백성을 옹기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올해의 농사는 풍흉(豐凶)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을 곡식이 성숙하거든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며, 또 사삿집의 일은 다 스스로 장만하는 일이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과연 대신(大臣)의 의논과 같이, 올해에 백성을 옹기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하겠다. 이 여러 의논을 헌부(憲府)에 보이라.”</p> <p>하였다.</p>	<p>傷和召災，靡不由此。 國家豈無事而樂爲之？不得已也。 人皆曰姑勿入送，然後日更起徙民之議， 不若今年畢入送，以除民心疑懼。 且私家之役，以有限財物，乘時爲之，若一切禁之，是亦廢事失時。 國家置之度外，勿預知亦便。” 尹壕議：“徙民重事，今年農事豐歉未決，待秋成後更議何如？ 且私家之役，皆自備事也，勿禁何如？” 傳曰：“果如大臣之議。 今年徙民不宜中止。 以此群議，示憲府。”</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8일 (갑자)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이제 전교를 받들건대 ‘환과(鰥寡)를 돌보고 처녀에게 자장(資裝)을 주는 등의 일을 더욱 밝혀 거행하라.’ 하셨습니다. 신(臣)들이 삼가 《대전(大典)》을 살피건대 ‘사족(士族)의 딸로서 나이가 서른에 가까와도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에게는 적당히 돕는 재물을 주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빌어먹되 친족이 없는 자와 늙은이로서 보호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적당히 옷과 양식</p>	<p>○禮曹啓：“今承傳敎：‘存恤鰥寡、處女給資裝等事，申明舉行。’ 臣等謹按《大典》：‘士族之女年近三十，貧乏未嫁者，量給資財； 飢寒丐乞無族親者、老人無比護者，量給衣料。’ 而諸邑守令及京中五部不用意訪問。 請自</p>

	<p>을 주라.’ 하였는데,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과 경중(京中)의 오부(五部)21204)가 마음을 써서 찾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더욱 밝혀서 거행하되, 환과가 있을 곳을 잃고 시집가는 시기를 잃은 일이 있어 뒤에 드러난 자가 있거든 과죄(科罪)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今申明舉行。若有鰥寡失所、婚嫁失時而後現者，科罪。”從之。</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9일 (을축) 4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백성을 옮기는 것이 온당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p> <p>“강무(講武)하는 군사가 수만에 이르더라도 각각 스스로 양식을 가져가고 관가에서 주는 것이 없으며, 백성을 옮기는 일은 인심이 이미 정하여졌고 여러 고을에서 전령(傳領)21209) 하니, 무슨 큰 폐단이 있겠습니까? 올해에는 멈출 수 없으니, 전에 의논한 대로 하는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강무와 백성을 옮기는 것은 모두 중대한 일인데 지응(支應)하고 전령할 즈음에 여러 도의 백성의 힘이 혹 지탱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 때문에 신이 전에 의논하기를, 우선 올해에는 멈추고 내년을 기다려야 하겠다고 하였습니</p> <p>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지난해의 일은 거울삼을 만한데 강무와 백성을 옮기는 것을 한꺼번에 거행하였습니다. 다만, 대비(大妃)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멈추었으나, 군사가 다 서울에 와서 거의 열흘 동안 머물렀으므로 대열(大閱)21210) 하고 과하였으니 그 실행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하삼도(下三道)에서 옮기는 백성들이 다 경기 일로(一路)에 모이므로 전령하는 폐해가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합니다. 옮기는 백성은 본디 들여보내야 마땅하겠으나, 이제 강무를 당하였는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옮기는 백성이 2백</p>	<p>○命領敦寧以上及議政府，議停徙民便否。沈澮議：“講武軍士雖至數萬，各自齎糧，無與於官家。徙民之事，人情已定，諸邑傳領有何巨弊？今年不可停寢，依前議何如？”尹弼商議：“講武、徙民俱是重事。其支應傳領之際，慮恐諸道人民，力或不支，以此臣之前議以爲姑停今年，以待來歲。”洪應議：“前年之事可鑑。講武、徙民一時並舉，只以大妃未寧停之。軍士皆來京師，幾留十日，大閱而罷，其實行之也。依前年施行何如？”李克培議：“下三道徙民等，皆萃於京畿一路，傳領之弊，比他道尤甚，徙民固當入送。然今當講武，犯罪徙民二百餘戶、勒令徙民亦六百餘戶，一時入送，厥數甚多，量減分運無弊。傳領節目，令都體察使商議啓稟，施行何如？”盧思愼議：“今年入送勒令徙民六百戶、犯罪徙民二百戶，皆由京畿而去。其徙民</p>

	<p>여 호이고 강제로 읍기게 하는 백성도 6백여 호이므로, 한꺼번에 들여보내면 그 수가 매우 많으니, 적당히 줄여 무리를 나누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전령 절목(傳領節目)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하여금 상의하여 여쭙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올해에 들여 보내는 강제로 읍기게 하는 백성 6백 호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읍기는 백성 2백 호는 다 경기를 거쳐서 가고, 그 백성을 읍기는 시일도 강무하는 때와 같으므로 날라 읍기는 일을 경기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강제로 읍기게 하는 백성은 내년이 되거든 들여보내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읍기는 백성은 관에서 나르는 물건이 많지 않으니 올해에 들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백성을 읍기는 일을 우선 멈추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p> <p>“지난 무신년(21211) 에 강무와 백성을 읍기는 일을 아울러 거행하였는데, 강무는 그 때에 임하여 편법으로 멈추었으나, 모든 일이 이미 장만되어 대열까지 하였으므로 강무한 것과 다를 것이 없었는데 백성을 읍기는 일은 이어서 하고 파하지 않았으니, 전년에 강무를 편법으로 멈춘 것은 백성을 읍기기 위한 것일 뿐이 아니라 마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더구나 무리를 나누어 전령하는 일은 환궁(還宮)한 뒤에 있을 것이니, 어찌 큰 폐단이 있겠습니까? 강무는 본디 해마다 있는 떳떳한 일인데, 내년에 강무하면 백성을 읍기는 일을 내년에도 그만두겠습니까? 또 백성을 읍기는 일은 풍년을 만나야 할 수 있으며, 풍년·흉년은 본디 미리 알 수 없는 것인데, 올해에는 마침 가을 곡식이 성숙할 희망이 있으니, 들여보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p> <p>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p>	<p>日時亦在講武之時，輸轉之事，京畿人民，恐不能堪。 勒令徙民待來年入送，犯罪徙民官輸之物不多， 今年入送何如?”尹壕議：“徙民姑停何如?”李鐵堅議：“去戊申年，講武與徙民並舉。 講武則雖臨時權停，然諸事已辦，以至大閱，無異講武，而徙民亦仍不罷。 前年講武權停，非爲徙民，適因事耳。 況分運傳領在還宮之後，則何有巨弊? 講武固年年常事，若明年講武，則徙民亦廢於明年乎? 且徙民須遇有年然後乃可，年之豐歉固未可必。 今年適有西成之望， 入送爲便。” 孫舜孝議：“徙民實邊，國家大計，不可廢也。 講武、徙民一時並舉之弊， 果如憲府所言，待來年何如?”李崇元議：“講武每年常行之，若待無講武之年，則終無徙民之日。 今年若不至失農，徙民不宜中止。 但入送日時，勿令與講武同時何如?” 鄭文燭議：“徙民，國家大事，不可輕爲之進退， 今年當徙， 人心已定，今若停之，其心以爲明年去就亦未可必。 於彼於此去留未定，愁嘆尤增，大事之成無期。 令預備安接諸事，待講武後，傳送何如?” 從克培議。</p>
--	--	---

	<p>“백성을 옹기켜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큰 계책이므로 그만둘 수는 없으나, 강무와 백성을 옹기키는 일을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하는 폐단은 과연 헌부(憲府)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내년이 되거든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p> <p>“강무는 해마다 늘 거행하므로, 강무가 없는 해를 기다린다면 끝내 백성을 옹기길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농사를 그르치기에 이르지는 않은 것 같으니 백성을 옹기키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들여보내는 시일은 강무와 같은 때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p> <p>“백성을 옹기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쉽사리 당기거나 물릴 수 없으니, 올해에 옹기켜야 마땅하겠습니다. 인심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이제 멈춘다면 그 마음에 ‘내년의 거취도 반드시 알 수 없으니, 여기서나 저기서나 거취가 정하여지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시름이 더욱 늘 것이고, 큰일을 이룩할 기약이 없을 것이니, 편안히 붙여 살게 하는 모든 일을 미리 갖추고 강무가 끝나거든 전송(傳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이극배의 의논을 따랐다.</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14일 (경오) 2번째기사</p>	<p>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와 하삼도(下三道)의 관찰사·절도사(節度使)에게 하교(下敎)하기를,</p> <p>“나라의 큰일은 사사(祀事)와 용사(戎事)에 있으므로 옛 임금들은 다 진려치병(振旅治兵)21230) 하여 수·묘·산·수(蒐苗獮狩)21231) 하는 것을 중하게 여겼다. 참으로 기(旗)를 세워 백성을 불러 모아 전진(戰陣)처럼 벌이고, 앉고 서고 물러나고 나아가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멀리 벌이고 가까이 다가가는 절도를 가르치는 까닭이 반드시 여기에 있으니, 고인(鼓人)이 세 번 북을 치면 매(枚)21232) 를 물고 나아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여, 한꺼번에 용병</p>	<p>○敎開城府留守、京畿觀察使、下三道觀察使・節度使曰：</p> <p>國之大事，在祀與戎。故古之帝王，咸以振旅治兵、蒐苗獮狩爲重。誠以旗致民如戰之陣，敎以坐作進退疾徐疏數之節者，必於斯焉。鼓人三鼓，御枚而進，獲禽以祭，一舉而詰戎兵、供祭祀之實，兩盡故也。我國講武之法，</p>

	<p>(戎兵)·공제(供祭)의 실속을 닦는 두 가지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우리 나라의 강무(講武)하는 법은 곧 이 수·묘·선·수의 뜻이라 조종 때에는 오래 거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기해년(21233) 이후로 국가에 일이 많아서 여기에 미칠 겨를이 없다가, 전에 두 해 동안 외방(外方)의 군사를 징발하여 근교(近郊)에 벌였으나, 또한 사고 때문에 문득 다 파하여 보냈으니, 건두(乾豆) (21234) 를 친히 바치는 예(禮)를 차리지 못하였을 뿐더러 게을러지기 쉬운 군졸이 오래 편안한 형세에 익숙하여, 귀는 금고(金鼓)로 신호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은 휘치(徽幟) (21235) 의 빛을 보지 못하므로, 갑자기 작은 적만 만나도 휩쓸려 기가 꺾일 형세가 되어 마침내 쓸 수 없게 되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p> <p>이제 다행히 일이 없고 곡식도 익어 가는데 이 큰 일을 강습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9월 28일에 교외에서 열병(閱兵)하고 10월 2일에 경기와 강원도에서 사냥하고자 한다. 이제 병부(兵符)를 보내니, 도내(道內)에 합험(合驗) (21236) 하여, 이미 하번(下番)하여 집에 있는 제색(諸色)·숙위(宿衛)의 군사를 모두 다 징발하여 왕래할 노비 외에 각각 15일의 양식을 가지고 9월 24일에 살곳이[箭串]에 진을 치고 대령하라. 유방(留防)하는 군사와 번(番)을 쉬는 숙위·제색의 군사 안에서 8월에 하번할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와 9월에 하번할 충순위(忠順衛) 등의 제색 군사와 11월에 입번(入番)할 충순위와 기보(騎步)의 정병(正兵)은 징발하는 수에 들지 않는다.”</p> <p>하였다.</p>	<p>卽此蒐獮之意，而在祖宗朝行之，未嘗久曠。己亥以後，國家多故，未遑及此。雖前兩年，徵發外兵陳於近郊，亦以事故輒皆罷遣。非徒久闕親供乾豆之禮，以易惰之卒，狃久安之勢，耳不聽金鼓之聲，目不視徽幟之色，使猝遇小敵，則勢將望風沮喪，終至於不可用，誠非細故也。今幸無事，歲亦垂稔，講此大事，庸可已乎？欲於九月二十八日閱兵于郊外，十月初二日狩于京畿、江原道。今送兵符，合驗道內。已曾下番在家諸色宿衛軍士，悉皆調發，除來往路費，各齎十五日糧，九月二十四日陣于箭串待令。留防軍士及番休宿衛諸色軍士內，八月下番別侍衛·甲士、九月下番忠順衛等諸色軍士、十一月入番忠順衛騎步正兵，不在徵發之數。</p>
<p>성종 230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17일 (계유) 5번째기사</p>	<p>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소사식(蘇斯軾)은 문과(文科) 출신으로 예조 좌랑(禮曹佐郎)·경기 도사(京畿都事)·공조 정랑(工曹正郎)이 되었었습니다. 아무리 하등(下等)을 차치하였더라도 이미 2년을 지냈으므로 규례에 따라 의망(擬望) (21243) 하였는데, 별로 소문은 없었습니다.”</p>	<p>○吏曹啓曰：“蘇斯軾文科出身，爲禮曹佐郎、京畿都事、工曹正郎。雖居下等，已經二年，故隨例擬望，別無所聞。”命示司憲府。掌令表沿沫來啓曰：“斯軾爲籍田判官，所管只穀物而</p>

	<p>하니, 명하여 사헌부(司憲府)에 보냈다. 장령(掌令) 표연말(表沿沫)이 와서 아뢰기를,  “소사식은 직전 판관(籍田判官)이 되어 맡은 것이 곡물(穀物)뿐인데, 고과(考課)에 하등을 차지하였으니, 어찌 말이 없겠습니까? 오진(五鎭)의 판관은 백성을 어루만지고 야인(野人)을 진복(鎭服)하므로 그 직임이 매우 중하니, 반드시 육조(六曹)의 낭관(郎官) 중에서 명망이 있는 자를 제수하여야 합니다. 소사식은 청렴하고 안정(安靜)한 선비가 아니므로 그 직임에 맞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已，考居下等，豈無謂歟？五鎭判官，撫摩民物，鎭服野人，其任甚重，必揀六曹郎官有名望者除之。斯軾非廉靜之士，不合其任。請改正。”不聽</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8월 1일  (병술) 2번째기사</p>	<p>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숙감(李淑城)이 치계(馳啓)하기를,  “남원(南原) 등지에 황충(蝗蟲)이 곡식을 해칩니다.”  하니, 글을 내려 말하기를,  “경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 잡아서, 백성의 근심을 제거하라.”  하였다.</p>	<p>○全羅道觀察使李淑城馳啓南原等處蝗蟲害穀。下書曰：  卿當盡心捕獲，以除民病。</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8월 12일  (정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건원릉(健元陵)과 현릉(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지내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어가(御駕)가 환궁(還宮)하다가 중량포(中良浦)의 대주정(大晝停)21300)에 이르러서, 전교하기를,  “하늘이 맑게 개어서 제사지내는 일이 어긋나지 않았으니, 심히 내 마음에 흐뭇하다.”  하고, 호가(扈駕)하는 재추(宰樞)와 제장(諸將)들을 불러서 술과 안주를 하사하도록 명하였는데, 위사(衛士)에게까지도 두루 미치게 하고, 연로(沿路)의 농부(農夫)에게도 또한 술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p>	<p>○丁酉/上詣健元陵、顯陵，親祭如儀。駕還至中良浦大晝停。傳曰：“天日開霽，祀事不愆，甚愜吾心。”命召扈駕宰樞及諸將，賜酒羞，遍及衛士。沿路農人亦命賜酒。</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8월 15일  (경자) 1번째기사</p>	<p>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옛사람이 추석(秋夕)에 달 구경을 한 것이, 어찌 황음(荒淫)하여 그러하였겠는가? 〈당(唐)나라〉 구양첨(歐陽詹)의 완월서(翫月序)에 이르기를, ‘가을의 시절(時節)은 여름의 뒤이고 겨울의 전이며, 가을의 8월은 계절의 끝에서는</p>	<p>○庚子/下御書于承政院曰：  古人秋夕翫月，豈荒淫而然也？歐陽詹《翫月序》云：“秋之時，後夏先冬；八月於秋，季始孟終；十五於夜，又月</p>

	<p>시작이고 계절의 시작에서는 끝이며, 15일의 밤은 한 달의 가운데이니, 천도(天道)에서 헤아려 보면 한서(寒暑)가 고르고, 한 달의 수에서 따져 보면 달[蟾兔]이 둥글며, 티끌이 흐르지 아니하고 대공(大空)이 유유(悠悠)하다.’ 하였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달 구경은 반드시 뜻이 있어 나무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본래 이 풍속이 없어서, 비록 상례(常例)로 삼을 수 없으나, 일시(一時)의 군은(軍恩)이고, 마침 가절(佳節)을 만났으니, 무슨 방해(防礙)됨이 있겠느냐? 답청(踏青)21301) 과登高(登高)21302) 도 일시의 일이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경연 당상(經筵堂上)과 출직(出直)한 승지(承旨)·주서(注書)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게 주악(酒樂)을 내려, 청량(淸涼)한 곳을 가려서 태평(太平)의 날을 즐기게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는 매우 성사(盛事)입니다. 상교(上敎)가 율당(允當)하십니다.” 하였다.</p>	<p>之中。稽於天道，則寒暑均；取於月數，則蟾兔圓。埃壒不流，大空悠悠。”然則古人之翫月，必有意而無可譏也。我國本無此風，雖不可例以爲常，一時君恩，適值佳節，則有何礙耶？踏青、登高，亦一時之事矣。今夕予欲賜酒樂於經筵堂上及出直承旨、注書、弘文館、藝文館，選淸涼之(之)地，樂太平之日，不亦美乎？政院啓曰：“此甚盛事，上敎允當。”</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8월 15일 (경자) 4번째기사</p>	<p>명하여 의정부(議政府)·육조 판서(六曹判書)와 경연 당상(經筵堂上)·승지(承旨)·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장악원(掌樂院)에서 달 구경을 하게 하고, 주악(酒樂)을 내려 주었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임금이 근신(近臣)을 우대(優待)하여, 은례(恩禮)가 심히 융성(隆盛)하였다. 이날 밤에 여러 신하가 회음(會飲)하였는데, 마침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어 어두컴컴하고 밝지 아니하니, 승지(承旨) 조극치(曹克治)가 기생을 데리고 청사(廳事)에서 음행(淫行)하였다. 무부(武夫)의 광망(狂妄)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p>	<p>○命議政府、六曹判書、經筵堂上、承旨、弘文館、藝文館，翫月于掌樂院，賜酒樂。 【史臣曰：“上優待近臣，恩禮甚隆。是夕諸臣會飲，適陰雲蔽月，暗昧不明。承旨曹克治携妓淫于廳事，武夫狂妄類此。”】</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8월 15일 (경자)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은 본조(本朝)에서 이웃 나라[隣國]로 대우하니, 그 사신(使臣)을 응접(應接)하는 예(禮)는 여러 거추(巨酋)에 비하여 마땅히 배나 더 후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국왕의 사신에게 지공(支供)하는 품수(品數)를 보니, 대수롭지 않은 사람과 다름이 없이 간략(簡略)함이 지나칩니다. 청컨대</p>	<p>○禮曹啓：“日本國王，本朝待以隣國，其使臣應接之禮，比諸巨酋當倍優厚。今觀國王使臣支供之品，與尋常人無異，過於簡略。請與戶曹商議，豐其館待之禮。”從之。</p>

	<p>호조(戶曹)와 상의하여 관대(館待)21306) 의 예(禮)를 풍성(豐盛)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8월 18일 (계묘) 2번째기사</p>	<p>이 앞서 연탁(宴卓)과 음식[膳羞]을 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에게 내려 주도 록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조들이 모두 장악원(掌樂院)에 모여 있었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김극검(金克儉)과 좌부승지(左副承旨) 안호(安瑚)에게 명하여 선운(宣醞)21319) 을 싸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김극검 등이 오래 머 무르며 가지 않으므로, 전교하기를, “무슨 까닭에 날이 저물도록 가지 않았느냐?” 하고,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추국(推鞠)하게 하였다.</p>	<p>○先是，以宴卓膳羞，命賜司饗院提調，至是提調俱會掌樂院。上命都承旨金克儉、左副承旨安瑚齋宣醞以往，克儉等久留不去。傳曰：“何故日暮猶不去？令司憲府推鞠。”</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8월 19일 (갑진) 4번째기사</p>	<p>성절사(聖節使) 조익정(趙益貞)이 보내어, 먼저 온 통사(通事)가 아뢰기를, “신이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서반(序班)21325) 이 호송(護送)하는 까닭을 탐문(探問)하였더니, 이르기를, ‘지난 신축년(21326) 에 한치형(韓致亨)이 경사 (京師)21327) 에 갔었을 때 양변역(陽樊驛)에 도착하여 구량(口糧)21328) 과 각력(脚力)21329) 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역승(驛丞)과 관부(館夫)에게 업신 여김과 꾸짖음[欺罵]을 당하였으므로, 예부(禮部)에서 이로 말미암아 &lt;황제 에게&gt; 주문(奏問)하여, 유히(允許)하였는데, 그 해당 절목[節該]에 이르기를, 「이것에 의거하면, 먼것번에 본국(本國)의 배신(陪臣) 윤필상(尹弼商) 등이 길에서 도적에게 약탈을 당한 것도, 반드시 서반(序班) 한 사람도 없이 요동 (遼東)에 보내어 군마(軍馬)를 지급[打撥]해 교부[交割]21330) 하고, &lt;이들 을&gt; 호송(護送)하여 출경(出境)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하였습니 다. 신이 통사(通事) 박효순(朴孝順)으로 하여금 예부(禮部)에 나아가 보단(報 單)21331) 을 드리게 하였더니, 상서(尙書) 경유(耿裕)가 말하기를, ‘의주(義 州)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보내지 않음이 어떻겠는가? 당신이 국왕(國王)에게 여쭙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여쭙지 않았다.’고 하니, 시랑(侍郎) 예악 (倪岳)이 말하기를, ‘호송(護送)하여 의주(義州)까지 간 것이 8, 9년이나 되어</p>	<p>○聖節使趙益貞遣先來通事啓曰：“臣到北京，探問序班護送之由，云：‘去辛丑年，韓致亨赴京，行到陽樊驛，口糧脚力既不得受，反被驛丞館夫欺罵。禮部因此奏準節該。據此，先該本國陪臣尹弼商等，路途被賊搶劫，合無序班，一人送至遼東，交割打撥軍馬，護送出境。’臣令通事朴孝順進禮部呈報單，尙書耿裕曰：‘不特義州，自京勿送何如？爾稟國王乎？’答曰：‘不稟。’侍郎倪岳曰：‘護送至義州，行之八九年，已成格例。今若遽改，則國王無奈以爲薄待乎？’對曰：‘今朝廷因俺等之請而爲之，則殿下豈謂朝廷薄待乎？俺等小臣猶慮王人跋涉之勞，況我殿下至誠事大之心，豈不深喜哉？’其後禮</p>



	<p>이미 격례(格例)가 되었는데, 지금 만약 갑자기 고친다면, 국왕(國王)이 박대(薄待)한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지금 조정(朝廷)21332)에서 우리의 청으로 인하여 한 것이면, 전하께서 어찌 조정에서 박대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소신(小臣)도 오히려 왕인(王人)21333)의 발섭(跋涉)21334)의 노고(勞苦)를 염려하는데, 하물며 우리 전하의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시는 마음에 어찌 매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뒤 예부(禮部)에서 주문(奏聞)하여 &lt;황제가&gt; 윤택하였는데, 그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통사(通事) 한 사람을 요동 도사(遼東都司)까지 함께 보내어 즉시 돌아오게 하고, 도사(都司)에서 &lt;다시&gt; 사람을 보내 호송(護送)하여 출경(出境)하라.’고 하였다 합니다.”</p> <p>하였다.</p>	<p>部奏準節該：‘通事一員，伴送至遼東都司，即便回還，都司差人護送出境。’”</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8월 23일 (무신) 3번째기사</p>	<p>지평(持平) 민이(閔頤)가 와서 아뢰기를, “오늘 경연(經筵) 뒤에 선온(宣醞)을 내려 주시어 손순효(孫舜孝)가 술을 돌릴 때에, 신에게 ‘자네’라고 칭하고, 혹은 소매를 잡고 ‘지평(持平), 지불평(持平)’이라고 칭하였으니, 신은 법관(法官)으로서 직임(職任)에 나아가기가 미안(未安)합니다. 청컨대 피험(避嫌)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취중(醉中)의 실언(失言)을 어찌 혐의(嫌疑)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持平閔頤來啓曰：“今日經筵後賜宣醞，孫舜孝行酒，與臣稱爾汝，或執手袂，或稱持平持不平。臣以法官，就職未安，請避嫌。”傳曰：“醉中之失，何可嫌也?”</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8월 24일 (기유) 4번째기사</p>	<p>임금이 명하여, 용봉장(龍鳳帳)을 후원(後苑)에 설치하고, 양전(兩殿)에게 잔치를 베풀어 올렸는데, 왕세자(王世子)와 내외 명부(內外命婦)가 모두 참여하였다. 또 종친(宗親) 1품과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육조 참판(六曹參判) 이상과 충훈부(忠勳府)·한성부(漢城府)·의빈부(儀賓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도총관(都總管)·제장(諸將)을 불러서, &lt;이들이&gt; 모두 북소(北所)에 모이니, 주악(酒樂)을 내려 주었다. 이어서 사후(射侯)하도록 명하여, 활을 쏘 줄 모르는 자는 투호(投壺)21350) 를 하며, 좌우</p>	<p>○上命設龍鳳帳於後苑，進宴兩殿。王世子暨內外命婦皆與焉。又召宗親一品、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參判以上、忠勳府、漢城府、儀賓府、承政院、弘文館、藝文館、都總管諸將，俱會北所，賜酒樂。仍命射侯，不能射者投壺，分左右較勝負。內賜</p>

	<p>(左右)로 나누어서 승부(勝負)를 겨루었다. 진수(珍羞)를 내려 주며 마음껏 즐기다가 과하도록 명하고, 또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때는 오직 9월이고 절서(節序)는 삼추(三秋)에 속하였는데, 두 분 자전(慈殿)21351)에게 연회(宴會)를 올렸으니, 어찌 즐거운 기쁨을 이기겠는가? 또 종실(宗室)과 재추(宰樞)를 불러 후원(後苑) 안에서 잔치를 내렸으니, 심히 아름답고 의젓한 거동에, 그 즐거움이 어떻겠는가? 이에 중관(中官)을 보내어 특별히 옥배(玉杯)를 내리니, 각기 사양하지 말라.”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김응기(金應箕)는 《성리대전(性理大典)》을 진강(進講)하는데, 직책(職責)이 홍문관(弘文館)이 아니므로 항상 사연(賜宴)에는 참여하지 못하니, 양주(羊酒)21352)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珍羞，命極歡乃罷。又下御書曰：時維九月，序屬三秋。進宴慈闈，曷勝欣喜？又召宗宰，錫宴苑中，孔嘉令儀，其樂如何？茲遣中官，別賜玉杯，各勿辭焉。  傳于承政院曰：“金應箕進講《性理大全》，而職非弘文館，常不與賜宴。其以羊酒就賜其家。”</p>
<p>성종 231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8월 29일 (갑인) 3번째기사</p>	<p>명하여 진연(進宴)의 여찬(餘饌)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한성부(漢城府)·육조(六曹)에 하사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지금 절서(節序)가 한창 좋으니, 재상(宰相)들로 하여금 한 번 기쁘게 하고자 한다. 파비(破費)21369) 하는 날 마땅히 주악(酒樂)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p>	<p>○命以進宴餘饌，賜領敦寧以上及政府、漢城府、六曹，仍傳曰：“今節序方好，欲令宰相一歡也。破費之日，當賜酒樂。”</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9월 3일 (무오) 2번째기사</p>	<p>임금이 환궁하다가 삼전포(三田浦)에 이르러 누선(樓船)을 타고 배 10여 척을 매어 방주(方舟)를 만들어 종재(宗宰)21373)를 불러 술자리를 차리고, 영인(伶人)이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때 강산(江山)이 맑고 아름다와 추경(秋景)이 그림과 같았으므로, 임금이 즐거워하며 사면을 둘러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즉석(卽席)에서 율시(律詩)를 지어 올리게 하고, ‘홍(紅)’자(字)로 운(韻)을 삼았는데, 박안성(朴安性)이 ‘홍’자를 달아,  “일신홍(一身紅)21374)”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어찌 ‘일신홍’이라 하는가?”</p>	<p>○上還至三田浦，御樓船。以十餘艘結爲方舟，召宗宰置酒，伶人奏樂。時江山明媚，秋景如畫。上乃怡然顧盼，命四座卽席製進律詩，以紅字爲韻。朴安性押紅字曰：“一身紅。”上曰：“雖飲酒，何以云一身紅？”命酌以罰之。李季全，武人也，亦製進，上嘉嘆再三，乃酌以賞之。李克增大醉，撫掌聳身，若將起舞者數矣。上顧而</p>

	<p>하고, 명하여 술을 따라 벌(罰)을 주게 하였다. 이계동(李季叄)은 무인(武人)인데도 시를 지어 올렸으므로, 임금이 기뻐하여 감탄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고 술을 따라 상(賞)을 주었다. 이극증(李克增)은 대취(大醉)하여 손뼉을 치며 몸을 으쓱거렸고,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려고 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임금이 돌아보고 웃으면서 도승지(都承旨) 한건(韓健)에게 명하기를,  “광천군(廣川君)21375) 이 취하였다. 넘어져서 다칠까 염려되니, 그 아우 이극균(李克均)으로 하여금 보호하여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술자리가 파하고 임금이 대주정(大晝停)21376) 에 이르자, 지평(持平) 권빈(權璘)이 아뢰기를,  “이극증이 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실례(失禮)하였사오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취한 사람을 죄줄 수 없다.”  하였다.</p>	<p>笑，命都承旨韓健曰：“廣川君醉矣，恐顛仆有傷，令其弟克均護歸。”酒罷，上至大晝停。持平權璘啓曰：“李克增於舟中醉酒失禮，請鞫之。”上曰：“醉人不可罪也。”</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9월 4일 (기미) 1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관원이 장악원(掌樂院)에 모이니, 비용을 내어서 음식을 하사하고, 임금이 명하여 주악(酒樂)을 내려주게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한건(韓健)과 우승지(右承旨) 홍흥(洪興)이 명령을 받고 가게 되었는데, 한건 등이 선운(宣醞)21377) 도 가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갔으므로, 임금이 주서(注書)를 보내어 한건 등에게 말하기를,  “선운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무엇하는가?”  하였다. 이에 앞서 승지(承旨) 김극검(金克儉)과 안호(安瑚)가 명령을 받고도 &lt;빨리 가지 아니하고&gt; 머뭇거렸는데 임금이 늦었다 하여 좌천(左遷)시켰으므로, 한건과 홍흥이 &lt;다시&gt; 돌아오기를 매우 급(急)히 하였다. 이와 같이 이르고 늦은 것이 모두 적당함을 잃었으므로, 이때 사람들이 이를 비웃었다.</p>	<p>○己未/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會掌樂院，破費賜膳。上命賜酒樂。都承旨韓健、右承旨洪興受命當往，健等不齋宣醞徑去。上遣注書語健等曰：“不齋宣醞，徒往何爲？先是，承旨金克儉、安瑚受命遲回，上以爲緩左遷，故健與興歸之太急。如此早晚，俱失其宜，時人笑之。</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근일에 마땅히 양로연(養老宴)을 행할 것이니, 도하(都下)21378) 의 기로(耆</p>	<p>○庚申/傳于承政院曰：“近日當行養老宴。令都下耆老竝赴，毋使一人脫</p>

<p>(弘治) 2년) 9월 5일 (경신) 1번째기사</p>	<p>老)들로 하여금 모두 나오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게 하고 모든 찬수(饌羞)는 되도록 풍성(豐盛)하게 하라.” 하였다.</p>	<p>遺。凡饌羞，務要豐腴。”</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6일 (신유) 1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녹숭(李祿崇)이 아뢰기를, “한건의 일을 재상(宰相)들이 전례(前例)를 끌어대어 무방(無妨)하다고 하였으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건대, 조종조(祖宗朝) 때의 《대전(大典)》에는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은 도승지(都承旨)가 겸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문신(文臣)이 아닌 자도 이를 삼을 수 있었으나, 새로 내린 《대전》에는 ‘도승지가 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에 어찌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의 한건 때문에 만세(萬世)의 상법(常法)을 무너뜨리십니까? 법이 한 번 흔들리면 사람들이 장차 믿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고쳐 임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진실로 마땅히 말을 하여야겠지만, 예종조(睿宗祖) 때의 권감(權臧) 등이 도승지가 되었으며, 한건의 사람됨을 의논한 여러 대신들도 모두 ‘가하다.’고 하였고, 또 한건이 생원(生員)에 합격하였으니, 문자(文字)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가령 삼공(三公)21384 을 두고 말한다 하더라도 도(道)를 놓가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陰陽)의 도를 조화시키는 것은 곧 문신의 직책이다. 그러나 삼공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삼아야지, 어찌 반드시 문신이어야 하겠는가? 인물(人物)됨에 있을 뿐이다. 도승지가 문신이라면 마땅히 직제학을 겸하여야 하지만, 문신이 아니면 반드시 겸할 필요가 없다. 《대전》에 어찌 ‘반드시 문신인 연후에야 도승지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겠는가? 이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이때 승전 환관(承傳宦官)21385 이 출납(出納)하려고 할 때에, 한건(韓健)은 자리에 있으면서 조금도 말씨가 겸손한 기색이 없이 환관(宦官)을 보고 말하기를,</p>	<p>○辛酉/司憲府掌令李祿崇來啓曰：“韓健事，宰相援引前例，以爲無妨。臣意以爲，祖宗朝《大典》無‘藝文直提學都承旨兼之’之語，故非文臣者，亦得爲之。新降《大典》有‘都承旨兼之’之語，今朝廷豈無人，而爲一韓健毀萬世之常法乎？法一撓，人將不信，請改差。”傳曰：“執法之官固當言之。然睿宗朝權臧等爲都承旨，健之爲人，諸議臣皆以爲可，且健中生員，非不識文字也。設言三公論道經邦，變理陰陽，乃文臣之職也。然有可爲三公之人，則當爲之，豈必文臣乎？在人物耳。都承旨文臣則當兼直提學，否則不必兼矣。《大典》豈曰必須文臣然後爲都承旨乎？此事不可聽。”方承傳宦官出納之時，健在座，略無辭遜之色，目宦官曰：“欲蒙上德，將好語速來。”及上不聰聽，猝起俯伏，謂宦官曰：“請獻一杯。”酬酢之際，(敬) [擎] 踞曲拳加於平日，歡喜溢於面目，見者笑之。</p>

	<p>“성상의 덕(德)을 입고자 하니, 좋은 말을 가지고 속히 오라.”  하고, 임금이 〈이녹승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함에 이르자 갑자기 일어나 부복(俯伏)하고 환관에게 이르기를,  “술 한 잔을 청하여 드리라.”  하고, 수작(酬酢)할 때에 몸을 굽신거리기를 평일(平日)보다 더하며 기뻐하고 좋아함이 얼굴에 가득하니, 이를 보는 자가 비웃었다.</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7일  (임술)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비록 경연(經筵)의 직(職)을 띠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기영회(耆英會)21386) 와 경연관(經筵官)을 제향(饋餉)하는 등의 일과 같은 데에는 모두 가서 참여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p>	<p>○壬戌/傳于承政院曰：“禮曹判書雖不職帶經筵，自今如耆英會及經筵官饋餉等事，皆許往參。”</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8일  (계해) 4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안윤손(安潤孫)이 와서 아뢰기를,  “3월 삼진날[上巳]과 9월 9일[重陽]에 기영회(耆英會)를 베풀고 주악(酒樂)을 내리시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이니, 곧 양로(養老)의 뜻입니다. 지금 또 주악을 홍문관(弘文館)과 경연관(經筵官)에 내리시어 몇몇함을 삼으시고 달 구경[玩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은 태평한 시대의 아름다운 일이오나, 풍속(風俗)은 사치(奢侈)한 데에서 검소(儉素)하게 되기가 어렵고 검소한 데에서 사치하게 되기가 쉬우니, 이를 인도하여 검소하게 하고자 하여도 오히려 사치한 데로 나아갈까 두려운데, 이를 인도하여 사치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옛날의 현신(賢臣)·석보(碩輔)21397) 가 혹은 궁궁업업(兢兢業業)21398) 으로, 혹은 삼풍 십건(三風十愆)21399) 으로 진언(進言)하여 경계(警戒)하였으니, 그 뜻이 심원합니다. 3월 삼진날과 9월 9일의 달 구경과 같은 일은 모두 유연(遊宴)에 관계되오니, 청컨대 재감(裁減)21400)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에 일이 있으면 그만이나, 일이 없을 때에 재상(宰相)들이 하루 즐길 수</p>	<p>○司憲府掌令安潤孫來啓曰：“上巳重陽設耆英會賜酒樂，祖宗朝故事，卽養老之意也。今又賜酒樂於弘文館、經筵官以爲常。且如玩月，是太平勝事，然風俗由奢入儉難，由儉入奢易。道之以儉，猶懼趨奢，道之奢靡，則其將何歸？古之賢臣碩輔，或以兢兢業業、或以三風十愆進戒，其慮深遠。如上巳、重陽、玩月等事，皆涉於遊宴，請裁減。”傳曰：“國家有事則已矣，無事時，則宰相得一日之歡，不亦可乎？況一歲之內，俗節不多，中原亦有大酺三日賀時等事。終歲勤苦，一日休閒，孔聖嘗有是言。上巳、重陽之遊，夫豈侈靡乎”</p>

	<p>있는 것도 가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한 해 동안에 속절(俗節)도 많지 아니하고, 중국에서도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주식을 내려 주고, 절기를 축하(祝賀)하는 등의 일도 있으며, ‘한 해를 마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루 한가히 쉬라.’고 공자(孔子)가 일찍이 말하였으니, 3월 삼진날과 9월 9일에 노는 것이 어찌 사치함이겠는가?” 하였다.</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9월 9일 (갑자) 3번째기사</p>	<p>좌승지(左承旨) 조극치(曹克治)와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종호(李宗顯)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기영회(耆英會)에 가게 하고, 검하여 야국(野菊) 1분(盆)을 내려 주었다.</p>	<p>○命左承旨曹克治、同副承旨李宗顯齎宣醞往赴耆英會，兼賜野菊一盆。</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9월 10일 (을축) 1번째기사</p>	<p>성절사 의원(聖節使醫員) 이맹손(李孟孫)이 산 전갈[生蝸] 1백 마리[枚]를 바쳤다. 이맹손이 연경(燕京)에서 전갈을 잡아 궤[櫃] 속에 넣고, 진흙으로 그 바깥을 발라서, 흙이 마르면 물을 뿌리고, 그 속에 먹을 것을 넣어주며 철망(鐵網)으로 그 바깥을 엮어서 빠져 나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서 올 수 있었다. 전교하기를, “전갈을 넣은 약제(藥劑)는 중국에 가는 길이 막히면 얻을 수 없으니, 그 40마리는 내의원(內醫院)에 나누어 기르고 60마리는 대내(大內)에 두고 번식시키라.” 하였다. 이어서 이맹손에게 전교하기를, “산 전갈을 기른 것은 무슨 물건이며, &lt;그것이&gt; 있는 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하여 살릴 수 있었는가?” 하니, 이맹손이 아뢰기를, “신이 전갈을 잡고자 하여 땅거미가 질 녘에 불을 가지고 헛간[空室]에 들어갔더니, 혹은 벽돌의 벽[甄壁] 위에 있었고, 혹은 담틈[墻隙] 사이에 있었으며, 먹인 것은 축축한 흙[濕土]과 계석[階石] 사이의 석회(石灰)뿐입니다.”</p>	<p>○乙丑/聖節使醫員李孟孫獻生蝸百枚。孟孫在燕京獲蝸，納之櫃中，以泥土塗其外，土乾則灑以水，又投食於其中，以鐵網籠其外，以防逸出，故得生全而來。傳曰：“全蝸入藥劑，幸中原路梗，則不可得矣。其以四十枚分養于內醫院，六十枚置大內孳養。”仍傳于孟孫曰：“生蝸所養何物，所處何地？何以則能使生息？”孟孫啓曰：“臣欲獲蝸，薄暮持火入空室，或甄壁上、或墻隙間有之。所食，濕土及階石間石灰耳。”傳于承政院曰：“初以生蝸不易得，故優論賞職。今聞孟孫之言議，賞太過。更議以啓。”</p>

	<p>하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처음에 산 전갈을 쉽게 얻을 수 없었으므로, 벼슬로 상(賞)을 줄까 하고 후하게 의논하였는데, 지금 이맹손의 말을 들으니, 상을 의논한 것이 너무 과(過)하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12일  (정묘) 1번째기사</p>	<p>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인 상관인(上官人) 중[僧] 혜인(惠仁)과 부관인(副官人) 편강(片剛)에게 연회(宴會)를 베풀었는데,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와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 등 여러 종재(宗宰)가 입시(入侍)하였다. 상관인과 부관인에게 명하여 모두 술잔을 올리게 하고 말하기를,  “오늘 그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대들은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도록 하라.”  하니, 혜인 등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이어서 물건을 내려 주기를 차등 있게 하였다.</p>	<p>○丁卯/御仁政殿，宴日本國王使上官人僧惠仁、副官人片剛。德源君曙、左議政洪應等諸宗宰入侍。命上副官人皆進爵，曰：“今日爲爾等設宴，爾可醉飽。”惠仁等頓首謝，仍賜物有差。</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14일  (기사)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오늘 비가 내리어 양로연(養老宴)의 행례(行禮)를 하기가 어려우니, 그 주육(酒肉)을 노인(老人)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다.</p>	<p>○己巳/傳于承政院曰：“今日下雨，養老宴行禮爲難。其以酒肉分賜老人。”</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19일  (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광릉(光陵)에 거둥하여 친히 제사지내고, 봉선전(奉先殿)에 나아가 세조(世祖)의 쉬용(睟容)을 배알(拜謁)하고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봉선사(奉先寺) 주지승(住持僧) 조징(祖澄)이 병과(餅果)와 미죽(糜粥)21434) 을 바치니, 명하여 호종(扈從)한 종재(宗宰)에게 내려 주도록 하여, 위사(衛士)에게까지 미쳤다. 환궁(還宮)하다가 토원(兔院)의 대주정(大晝停)에 이르러, 수가(隨駕)하는 종재(宗宰)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p>	<p>○甲戌/上詣光陵親祭，詣奉先殿謁世祖睟容行茶禮。奉先寺住持僧祖澄獻餅果糜粥，命賜扈從宗宰以及衛士。還至兔院大晝停，賜隨駕宗宰酒。</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p>	<p>명하여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와 여러 종재(宗宰)를 불러, 인정전(仁政殿) 뜰에다 주악(酒樂)을 내려 주었다.</p>	<p>○命召議政府、六曹及諸宗宰，賜酒樂于仁政殿庭。</p>

<p>(弘治) 2년 9월 20일 (을해) 3번째기사</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20일 (을해) 4번째기사</p>	<p>봉선사(奉先寺)에 미두(米豆) 합쳐 30석(碩)과 면포(綿布) 1백 필, 마포(麻布) 1백 필을 내려 주었다.</p>	<p>○賜奉先寺米豆并三十碩、綿布一百匹、麻布一百匹。</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21일 (병자) 1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딸의 혼가(婚嫁)로 인하여 명령을 받고 경사(京師)에 이르러 글로 아뢰기를, “밀양(密陽)의 수산제(守山堤)는 지난 정미년(21436) 부터 국둔전(國屯田)에 소속되었는데, 그 지세(地勢)가 매우 낮아서, 만약에 빗물이 있게 되면 곧 물에 잠깁니다. 지난 정미년과 무신년(21437)에는 빗물이 적당하였으므로, 정미년의 소출(所出)은 7천 5백여 석(碩)이었고 무신년의 소출은 4천 4백여 석이었는데, 올해에는 가을비가 과다(過多)하게 내려서 거의 수침(水沈)이 다 되었으므로, 소출이 반드시 지난해의 수(數)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수륙군(水陸軍) 5백 명으로 농군(農軍)을 삼아 한 해를 마치도록 복역(服役)하게 하니, 방어(防禦)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공(功)은 많이 들고 이(利)는 적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백성들에게 주어서 병작(并作)하여, 그 해의 풍흉(豐凶)에 따라 관(官)에서 그 반(半)을 거두고, 수륙군은 각각 본진(本鎭)으로 돌려보내어 방어하는 데 채우고, 수군(水軍)은 소금을 굽게 하여, 한 달[朔]의 구실[役]을 한 사람당 2석(碩)씩 하여, 이것을 가지고 곡식을 무역(貿易)하면, &lt;그 값이&gt; 혹은 배(倍)나 혹은 반(半)이 되더라도, 한 해 동안에 무역한 곡식은 둔전(屯田)의 1년 소출의 반보다도 낮고, 방어도 허술한 데에 이르지 않으며, 관(官)에 들어오는 곡식도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또 미조항(彌助項)은 요해지(要害地)로서 남해(南海)와의 거리가 80여 리(里)이고, 적량(赤梁)과의 거리가 40여 리이며, 평산포(平山浦)와의 거리가 60여 리이니, 상거(相距)가 매우 멀니다.</p>	<p>○丙子/慶尙道觀察使金礪石以嫁女承命至京師，書啓： 密陽守山堤，自丁未年始屬國屯田，其地勢卑下，若有雨水，輒沈沒。丁未、戊申年則雨水適中，故丁未年所出，七千五百餘碩，戊申年所出，四千四百餘碩。今則秋雨過多，水沈殆盡，所出必不及去年之數矣。以水陸軍五百名爲農軍，終年服役，非徒防禦疎虞，抑功多利少。臣意謂給民并耕，隨年豐歉，官收其半，而水陸軍各還本鎭，以實防禦。水軍則令煮鹽，一朔之役，人各二碩，以之貿穀，或倍或半，終年所貿之穀，優於屯田一年所出之半，防禦不至疎虞，而入官之穀亦數矣。且彌助項要害之地，而距南海八十餘里、赤梁四十餘里、平山浦六十餘里。相去遙遠，儻有賊變，勢不能救援。今雖築堡以陸軍防戍，然賊若來犯，難以禦之。須速置水軍，以備</p>



	<p>만약에 적변(賊變)이 있으면 형세가 능히 구원(救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보(堡)21438) 를 쌓고 육군(陸軍)으로 방수(防戍)하고 있으나, 적(賊)이 만약에 와서 침범한다면 이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속히 수군(水軍)을 두시어 불우(不虞)에 대비하시고, 만호(萬戶)를 두시어, 무간(武幹)이 있고 엄근(廉謹)한 사람을 택하여 임명해 보내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옳다. 수산제(守山堤)의 일을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라.”</p> <p>하였다.</p>	<p>不虞：設萬戶，擇有武幹廉謹人差遣。 傳曰：“所啓是矣。 守山堤事，令戶曹議啓。”</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24일 (기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창릉(昌陵)과 경릉(敬陵)에 거둥하여 친히 제사지냈다. 정인사(正因寺) 중[僧]이 떡[餅]을 바치니, 명하여 수가(隨駕)한 종재(宗宰)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p>	<p>○己卯/上幸昌陵、敬陵親祭。 正因寺僧獻餅，命分賜隨駕宗宰。</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24일 (기묘)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정인사는 다른 절에 비할 바가 아니니, 봉선사(奉先寺)의 예(例)에 따라 쌀과 포(布)를 주어라.”</p> <p>하였다.</p>	<p>○傳于戶曹曰： “正因寺非他寺之比，依奉先寺例，給米布 。”</p>
<p>성종 232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9월 25일 (경진) 1번째기사</p>	<p>좌상 대장(左廂大將) 이철건(李鐵堅)과 우상 대장(右廂大將) 이숙기(李淑琦)가 명령을 받고 살곶이[箭串]에 가서, 제도(諸道)에서 징발(徵發)하여 온 군사들을 나누어 거느리었는데,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조극치(曹克治)와 당양위(唐陽尉) 홍상(洪常)을 보내어 술을 가지고 가서 제장(諸將)들을 먹이게 하였다.</p>	<p>○庚辰/左廂大將李鐵堅、右廂大將李淑琦受命往箭串， 分領諸道徵來兵。上遣左承旨曹克治、唐陽尉洪常，齎酒餉諸將。</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1일 (을유) 2번째기사</p>	<p>임금이 채색(彩色) 주머니에 담은 후추[胡椒]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도총부(都摠府)·한성부(漢城府)·의빈부(儀賓府)의 당상(堂上)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관원에게 내려 주었다.</p>	<p>○上以彩囊盛胡椒，賜議政府·六曹·都摠府·漢城府·儀賓府堂上、承政院·弘文館·藝文館員。</p>
<p>성종 233권, 20년</p>	<p>대가(大駕)가 김화(金化) 현산(見山) 사장(射場)에 이르렀는데, 좌우상(左右廂)</p>	<p>○庚寅/大駕至金化見山射場。 命左</p>

<p>(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6일 (경인) 1번째기사</p>	<p>에게 삼신산(三神山)과 고송산(枯松山)에서 몰이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중묘(宗廟)에 천금(薦禽)21504) 하였으니 할 일을 이미 마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타워(打圍)해서 많이 잡았으니, 진실로 좋다.”  하고, 임금이 텅텅 비어 있는 땅을 바라보다가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여기 땅은 유독 경작(耕作)하여 살 수 없는 데인가? 어찌 이렇게 황량(荒涼)한 것인가?”  하매, 영의정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땅은 비록 경작할 만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였다.</p>	<p>右廂驅三神山、枯松山。上曰：“薦禽于廟，能事已畢。然既打圍，多獲固善。”上望見土地閑曠，顧謂左右曰：“此地獨不可耕且居耶？何荒涼如此？”領議政尹弼商曰：“地雖可耕，人民鮮少故耳。”</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8일 (임진) 1번째기사</p>	<p>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성세명(成世明)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그옥이 생각하건대, 열병(閱兵)하고 사냥하는 것은 국가의 큰 일로서 부득이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깊은 산과 텅 빈 들판에는 본디 장려(瘴癘)21514) 의 기운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더러는 날이 새지도 않아서 나가 사냥을 하고 더러는 밤을 무릅쓰고 자리를 옮기다시피 하며 험악한 지형을 가리지 않고 어두운 안개를 부딪히게 되니, 그옥이 옥체(玉體)를 위해 염려됩니다. 옛적에 행군(行軍)을 하루에 30리로 한 것은 진실로 초소(樵蘇)21515)가 시간을 얻어야 하고 사졸(士卒)들이 잠자고 배부르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타워(打圍) 자리가 더러는 널찍하여 미처 짐승을 몰게 되지도 못하여 해가 또한 어느새 저물게 되므로, 수만여 군중들이 서로 짐바리를 잃고서 아우성치다 밤을 새우게 되는 사람이 많으니 사졸들이 어떻게 잠자고 배부르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미 천금(薦禽)도 하고 열병(閱兵)도 하여 할 일을 끝냈습니다. 어찌 꼭 새벽에 나가고 밤에야 돌아와 옥체를 수고롭게 하고 사졸들을 지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조금 가까운 데에서 몰이하고 타</p>	<p>○壬辰/弘文館典翰成世明等上筓子曰：竊惟閱兵而狩，國之大事，所不得已。然深山曠野，固有瘴癘之氣。今乃或未曙出圍，或犯夜遷次，冒險阻觸昏霧，竊爲玉體慮焉。古者師行日三十里者，誠以樵蘇以時，士得宿飽耳。今打圍或廣，未及驅獸，日亦旋暮，數萬餘衆，相失輜重，叫呼徹夜者多，士卒豈得宿飽乎？今已薦禽閱兵，能事畢矣，何須晨出夜返，勤玉體、病士卒？伏願約近驅圍，且謹晨夜，不勝幸甚。傳曰：“弘文館之言，非講武本意也。”御筆抹未及驅獸四字，示政丞曰：“彼皆扈從目見之，而筆之於書若此，其誣何也？且欲約近驅圍，則當於帳外驅之</p>

	<p>위하며 또한 새벽에 나가고 밤이면 돌아오는 것을 삼간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의 말은 강무(講武)의 본뜻이 아닌 것이다.”</p> <p>하고, 어필(御筆)로 ‘미처 짐승을 몰이하지 못했다[未及驅獸]’란 네 글자를 지워 정승들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그들이 모두 호종(扈從)하며 눈으로 본 것인데 글에다 쓰기를 이처럼 속이게 된 것은 무슨 일이겠는가? 또한 조금 가까운 데에서 몰이하고 타위하려면 마땅히 장막(帳幕) 밖에서 몰이해야 할 것인가?”</p> <p>하니,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물정 모르는 유생(儒生)들이 어찌 무(武)에 관한 일을 알겠습니까?”</p> <p>하고, 노사신(盧思愼)·홍응(洪應)은 아뢰기를,  “차자의 뜻은 오로지 성상의 몸을 염려한 것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하였다.</p>	<p>乎?” 尹弼商曰：“迂闊儒生，安知武事?” 盧思愼、洪應曰：“筭子意專爲慮上體，非有他意也。”</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0월 8일 (임진) 3번째기사</p>	<p>대가(大駕)가 평강현(平康縣) 직두등(直豆等) 사장(射場)에 이르렀는데, 좌우상(左右廂)이 봉화산(烽火山)에서 몰이하였다. 종친(宗親)·재상(宰相) 및 승지(承旨)에게 작은 관혁(貫革)에 활쏘게 하되 은장도(銀粧刀) 한 건으로 상(賞)을 하도록 명하고, 또 한 활의 품질을 3등급으로 나누어 1등 활로는 세 번 맞으면 1점[分]을 주고, 2등 활로는 두 번을 맞으면 1점을 주고, 3등 활로는 한 번을 맞으면 1점을 주되 30차례를 한도로 쏘도록 명하였다가, 20차례에 이르러 과하고 뒷날 쏘기를 끝내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적산(積山)파오달(波吾達)로 돌아와 거가(車駕)를 수행한 종친과 재상 2품 이상 및 승지들을 인견(引見)하고 술과 음악을 차리어 대접하였다.</p>	<p>○大駕至平康縣直豆等射場。左右廂驅烽火山。命宗宰及承旨射小的，以銀粧刀子一事爲帑。又命以弓品分三等，一等三中給一分，二等二中給一分，三等一中給一分，限三十巡射，至二十巡而罷。命後日畢射。上還積山波吾達，引見隨駕宗宰二品以上及承旨等，設酒樂饋之。</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p>	<p>정승(政丞)들에게 전교하기를,  “거동[行幸]한 이후로 오래 양전(兩殿)의 음식 보살피기를 빠뜨렸다. 이번의</p>	<p>○傳于政丞等曰：“行幸以後，久闕兩殿視膳。今者講武閱兵將帥之失律者</p>

<p>(弘治) 2년 10월 8일 (임진) 4번째기사</p>	<p>강무(講武)와 열병(閱兵)에 군율(軍律)을 잃은 장수들을 벌주어 사졸(士卒)들이 모두 군령(軍令)이 엄함을 알게 되었다. 또 이 지역은 기후가 이상하여 호중(扈從)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끔 갑자기 아픈 자가 있었다. 이제는 큰 일이 이미 끝났으니 3일을 앞당겨 환궁(還宮)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를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p>	<p>罰之，士卒皆知軍令之嚴。且此地氣候異常，扈從諸人，往往有暴病者。今大事已畢，欲減三日還宮何如？”僉曰：“上教允當。”</p>
<p>성종 2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11 일(을미) 1번째기사</p>	<p>천둥했다.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종(許琮)이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요사이 본도(本道)의 사정이 어떠한가?” 하매, 허종이 아뢰기를, “오서(吳澁)가 마름쇠[蒺藜鐵]를 만들고 강원도(江原道)에서 전죽(箭竹)21520을 실어내자 이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선동(煽動)하여 농사하고 누에치는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으며 조석(朝夕) 사이에 변이 있을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소견 없음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인가? 마땅히 주창(主唱)한 자를 잡아 온 도에 조리돌려야 할 것이다.” 하매, 허종이 아뢰기를, “신도 역시 잡으려고 하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卿)이 이미 나가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서, 허종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고 약(藥) 및 채낭(彩囊)을 내렸으며, 허종에게 대가(大駕)를 호중(扈從)하고 사장(射場)으로 가기를 명하여 대가가 10여 리를 가다가 소낙비가 그치지 않으므로 소주정소(小晝停所)에서 머무르</p>	<p>○乙未/雷。永安道觀察使許琮至行在所。上引見，謂曰：“近日本道事如何？”琮啓曰：“吳澁作蒺藜鐵，江原道輸箭竹，以此民相煽動，業農蠶者皆竄匿，以爲變在朝夕。”上曰：“民之無意乃至是耶？當得首唱者，徇示一道。”琮曰：“臣亦欲得之，而未得也。”上曰：“卿已往釐，予何憂焉？”命琮進爵，賜藥及彩囊，遂命琮扈駕往射場。駕行十餘里，驟雨不止，次于小晝停。命停打圍，又命許琮還本道。大駕次大晝停，雨猶不止，風亦寒凜。上於中道累命兵曹、都總府郎廳，救軍士之凍傷者。命京畿觀察使朴崇質持酒往救之。上至車灘波吾達，命都總府堂上李克增等十餘人，閱視凍傷軍士。</p>

	<p>며 타위(打圍)를 정지하도록 명하고, 또한 허종에게 본도(本道)로 돌아갈 것을 명하였다. 대가가 대주정소(大晝停所)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가 그래도 그치지 않고 바람이 또한 차가와 떨리었다. 임금이 중도(中道)에서 여러 차례 병조(兵曹) 및 도총부(都摠府)의 낭청(郎廳)에게 군사들의 동상(凍傷)한 사람을 구료(救療)하도록 명하고,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박송질(朴崇質)에게 술을 가지고 가 구원하도록 명하였으며, 임금이 차탄(車灘) 파오달(波吾達)에 이르러서는 도총부(都摠府) 당상(堂上) 이극증(李克增) 등 10여 인에게 동상한 군사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명하였다.</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12 일(병신) 2번째기사</p>	<p>적성현(積城縣) 사람 검교(檢校)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계기(李啓基)가 길가에 엎드려 배알(拜謁)하고 가시(歌詩)를 올리니, 임금이 그가 노인인 것을 가엾게 여겨 의복 1령(領)과 쌀과 콩을 아울러 10석(碩)을 내리었다.</p>	<p>○積城縣人檢校工曹參議李啓基伏謁道傍，上歌詩。上憐其老，賜衣一領、米豆并十碩。</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12 일(병신) 4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상안(閔祥安)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형조 참판(刑曹參判) 김세적(金世勳)이 근친(覲親)을 주청(奏請)하니, 성상께서 윤희(允許)하시고 또한 음식물을 우약(優渥)하게 내리셨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여 서울[京師]로 돌아와다가 근친하러 가더라도 늦지 않다고 여깁니다. 바야흐로 대가가 초야(草野)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근친하러 가기를 청하는 것은 아버이를 내(內)로 여기고 임금은 외(外)로 여긴 것이어서 신자(臣子)의 도리가 아니니,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한위(韓偉)와 이필(李秘)도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대간(臺諫)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개만(箇滿)해야 전임(轉任)시키고 공로가 있어야 승진시키며 상피(相避)할 점이 있으면 관직을 제수(除授)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법도입니다. 이번에 상피해야 되는 데도 피하지 않았고 승진시킬 수 없는데도 승진시키고 전임시킬 수 없는데도 전임시킨 것은 모두 사정으로써 법을 교란한 것이니 법을 교란</p>	<p>○司憲府持平閔祥安來啓曰：“臣聞刑曹參判金世勳請覲其親，上許之，又優賜食物。臣以爲扈駕還京師，歸覲未晚也。方大駕駐草野，遽爾請歸覲，內親而外君，非臣子也。請鞫之。韓偉、李秘請皆改正。”上卽引見臺諫。大司憲李世佐啓曰：“仕滿而遷，賢勞而陞，有相避者不除職，國法也。今可避而不避，不可陞而陞，不可遷而遷，皆以私撓法也。願勿撓法。”上曰：“偉，予之表弟也。帝王用人，不以私害公，予敢私一弟耶？卿等當言偉終不可用，則予決取舍矣。”世佐啓曰：“偉年少不諳練。然監司趙益貞可</p>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위는 나의 외사촌 아우이다. 제왕(帝王)은 사람을 쓸 적에 사정을 가지고 공(公)을 해치지 않는 법인데, 내가 감히 아우 하나에게 사정을 썼겠는가? 경(卿)들이 마땅히 한위는 마침내 쓸 수 없다고 말을 한다면 내가 취사(取捨)를 결단하겠다.”  
 하매, 이세좌가 아뢰기를,  
 “한위는 나이 젊어 일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감사(監司) 조익정(趙益貞)은 교회(教誨)하여 일을 맡길 만합니다. 김세적(金世勳)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이어서 비록 책망할 것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가(大駕)가 돌아오지도 않아서 어떻게 근친(覲親)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윤희(允許)해 놓고 다시 뒤쫓아 허물잡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뒷날 알아 차리도록 하겠다.”  
 하였다. 민상안(閔祥安)·이수공(李守恭)이 뒤따라 탄핵하였지만, 역시 건악(謇諤)21521) 한 기골(氣骨)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드디어 모두 추창(趨踰)21522) 하여 나가버렸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이에 앞서 성준(成俊)이 자못 용사(用事)21523) 할 적에 성세명(成世明)은 성준의 당질(堂姪)이고 최옥순(崔玉筍)과 하한문(河漢文)도 또한 성준의 친족이었는데, 성세명이 지평(持平)에서 한 해 동안에 계급을 뛰어 승진하여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에 이르므로 물의(物議)가 자못 비등했었고, 이때 이르러서는 집의(執義)의 빈자리가 있게 되자 하한문과 최옥순을 주의(注擬)하여 하한문이 낙점(落點)21524) 을 받았었다. 한위(韓偉)는 나이 젊은 사람으로 본디 재주나 덕도 없었는데 척리(戚里)21525) 인 인

以教誨任其事矣。 金世勳不學無知，雖不足責。 然大駕未旋，豈可歸覲？當繩之以法。” 上曰：“業已許之，又追咎耶？當於後日使知之也。” 閔祥安、李守恭從而劾之，又無謇諤風骨，遂皆趨出。

【史臣曰：“先是，成俊頗用事。 成世明，俊之堂姪，崔玉筍、河漢文亦俊之親族也。 世明自持平，一歲超遷，至弘文館典翰，物論頗騰。 及是執義有闕，以漢文、玉筍注擬，而漢文受點。 韓偉以年少，素乏才德，因緣戚里，驟致高秩，已爲不可，況其堂兄健執政柄，可不辭遜以避賢路乎？李珣起自門蔭，碌碌庸流，其秩未滿，法不當遷，而擢授臨民之職，皆非公也。 方上之迎訪也，無一人面折廷諍深斥俊、健以彰吾君納諫之名，此獨何心乎？世佐逢迎佞諛，以偉爲可任其事，至於漢文之事，無一言及之。”】

	연(因緣)으로 갑자기 높은 품계(品階)에 이른 것도 이미 불가하거니와, 하물며 그의 종형(從兄) 한건(韓健)이 정권(政權)을 잡고 있으니 사양하고 물러나 현명한 사람에게 진출할 길을 피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필(李秘)은 문음(門蔭)21526) 으로 출신(出身)한 보잘것없는 용렬한 사람으로 임기(任期)가 차지도 않았으므로 법에 마땅히 전임할 수 없는데, 백성에게 임하는 직(職)으로 발탁(拔擢)하여 제수(除授)하였으니, 모두가 공정한 일이 아니다. 임금이 영방(迎訪)21527) 할 적에 당하여 한 사람도 면절 정쟁(面折廷爭)21528) 은 하지 않고 심각하게 성준과 한건만 배척하여, 임금이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명성만 나타냈으니, 이는 유독 무슨 마음이었겠는가? 이세좌는 영합(迎合)하고 아첨하여, 한위는 그 일을 맡을 만하다고 하였고, 하한문의 일에 있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하였다.	
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13 일(정유) 3번째기사	임금이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니, 두 대비(大妃)가 중관(中官)21530) 을 보내어 술을 가지고 가 호종(扈從)한 종친(宗親)과 재상을 대접하게 했고, 드디어 환궁(還宮)하자 백관이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上至晝停，兩大妃遣中官，齎酒享扈從宗宰。 遂還宮， 百官迎于興仁門外。
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15 일(기해) 2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강무(講武) 때 짐승을 쏘아 이긴 사람에게는 각각 별조궁(別造弓)21531) 1정(丁), 후추[胡椒] 5말, 소목(蘇木) 20근씩을 내리고, 대장(大將)들 중 이긴 사람에게는 별조궁 1정, 후추 3말씩을 내리라.” 하였다.	○傳于承政院曰： “講武時射獸勝者，各賜別造弓一丁、胡椒五斗、蘇木二十斤，大將勝者，賜別造弓一丁、胡椒三斗。”
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17 일(신축) 1번째기사	두 대비(大妃)가 술과 음악을 내려 강무(講武)할 때 호종(扈從)한 종재(宗宰)들을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대접하게 하였다.	○辛丑/兩大妃賜酒樂， 餉講武扈從宗宰于明政殿庭。
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에 나아가 의식(儀式)대로 친제(親祭)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乙巳/上詣文昭殿、延恩殿， 親祭如儀。 傳于承政院曰：“今日天氣清明，

<p>(弘治) 2년 10월 21일(을사) 1번째기사</p>	<p>“오늘 날씨가 청명(淸明)하고 제사 일도 실수한 것이 없어 마음이 매우 기쁘니, 헌관(獻官)과 모든 집사(執事)들에게 술을 내려 위로하라.” 하였다.</p>	<p>祀事無失，心甚喜焉。獻官、諸執事，賜酒慰之。”</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26일(경술) 7번째기사</p>	<p>야대(夜對)에 나아갔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講)하다가 ‘당 숙종(唐肅宗)이 장후(張后)와 함께 모의(謀議)하여 상황(上皇)을 서내(西內)로 옮겼다.’21571) 는 말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황계옥(黃啓沃)이 아뢰기를, “숙종은 비록 현명한 임금인 것이 아니기는 하였으나 또한 당초부터 용렬한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대저 임금의 덕은 강단(剛斷)과 총명(聰明)이 아주 큰 것이 되고 천도(天道)는 건건(乾健)21572) 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유구(悠久)토록 쉽습니다. 임금이 처음에는 비록 명철(明哲)하였지만, 그러나 만일 스스로 총명만 믿고서 소인(小人)을 임용(任用)하면서 ‘이것이 족히 나의 다스림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게 되면, 혼암(昏暗)해지지 않는 수가 적은 법입니다. 대순(大舜)은 성인이었지만 익(益)21573) 이 순을 경계하기를, ‘단주(丹朱)21574) 처럼 오만해지지 마소서.’ 한 것은, 대개 스스로 만가(滿暇)21575) 하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 요(堯)·순(舜)도 다스림을 보존하게 된 소이(所以)는 성인이면서도 스스로 성인인 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항상 경외(敬畏)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직 위태와 멸망이 장차 이르게 될까 싶어한 다음에야 참소하는 말이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게 되어 훌륭한 다스림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니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검토관(檢討官) 홍한(洪瀚)은 아뢰기를, “당 숙종이 영무(靈武)21576) 에서 회가(回駕)할 적에 수계(樹雞)21577) 로 투자(骰子)21578) 를 만든 것은 소리가 밖에서 들리게 될까 싶어한 것이니 곧 이필(李泌)21579) 이 들을까 두려워한 것인데, 이는 모두 장첩여(張婕妤)21580) 가 견제(牽制)를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御夜對。講至《大學衍義》唐肅宗與張后同謀遷上皇於西內之語。侍讀官黃啓沃啓曰：“肅宗雖非賢明之主，亦初非庸主也。大抵人主之德，剛明爲大，天道以乾健行之，故悠久而不息。人主初雖明哲，然若自恃聰明，任用小人，而曰是不足以害吾治，則鮮不至於昏暗矣。大舜，聖人也，益戒舜曰：‘毋若丹朱傲。’蓋欲其不自滿暇也。堯、舜之所以保治者，以其聖不自聖也。人主恒存敬畏之心，惟恐危亡之將至，然後讒說無自入，而盛治可以長保矣，可不敬哉？”檢討官洪瀚啓曰：“肅宗之回駕靈武也，以樹雞爲骰子，恐其聲聞于外，是懼李泌之聞也，是皆張婕妤爲之牽制也。”上曰：“肅宗柔懦無斷，在今觀之尚然，況當其時者乎？”</p>



	<p>“당 숙종이 부드럽고 나약하여 과단이 없었음은 오늘날에 있어서 보더라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그 때에 있어서이겠는가?” 하였다.</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27 일(신해) 4번째기사</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檢討官) 홍한(洪瀚)이 아뢰기를,  “경기(京畿)에서 물선(物膳)을 공진(供進)하게 하는 것은 모두 부득이한 일입니다. 요사이 연향(宴享)거리를 사옹원(司饗院)에서 미리 조치하지 않았다가 그 임시에야 독촉하여 마련하므로 계읍(諸邑)의 저주(邸主)들이 분주하게 쏘다니며 돈을 꾸어 사다가 공진하고, 이미 공진한 다음에는 백성에게 갑절이나 징수(徵收)하여 빚을 갚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생(民生)들이 날로 곤궁하고 지치게 되니, 사옹원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소민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다. 다만 사옹원으로 하여금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이에 앞서서 경기(京畿)의 진상(進上)이 한 달 동안에 단지 초하루와 보름날만 할 뿐이었는데, 심선(沈璿)이 관찰사(觀察使)가 되면서는 수륙(水陸)의 반찬거리를 징수(徵收)하기 시작하여 7일에 한 차례씩을 바치게 하며 이름을 ‘대일차(大日次)’라 하였고, 윤계겸(尹繼謙) 적에는 너무 뜨다 하여 대략 5일에 한 차례씩 바치게 하다가 그뒤에는 또한 대략 3일씩으로 하였고, 손순효(孫舜孝)가 이어받아서 또한 날마다 따로 바치게 하며 이름을 ‘소일차(小日次)’라고 하였다. 이에 소일차와 대일차를 아울러 시행하고 주선(晝膳)거리를 또한 때없이 취관(取辦)하게 되므로, 물건 값이 폭등하여 한</p>	<p>○御夕講。 講訖， 檢討官洪瀚啓曰：“京畿物膳供進， 皆所不得已也。 近日宴享之需， 司饗院不預爲措置， 臨時督辦， 諸邑邸主奔走假貸， 質換以進。 既進之後， 倍徵于民， 以償其債， 由是民生， 日至於困悴。 請令司饗院預爲之備， 毋貽小民之弊。” 上曰：“爾言是也。 予非不知之， 出於不得已也。 但令司饗院預定其期， 毋貽民瘼可也。”  【史臣曰：“先是， 京畿進上， 一月只有朔望而已。 沈璿爲觀察使， 始徵水陸之羞， 七日一獻， 名曰大日次。 尹繼謙以爲太疎， 約於五日一獻， 其後又約以三日。 孫舜孝繼之， 又逐日別獻， 名曰小日次。 於是小大日次並行， 而晝膳之需又取辦無時， 物價翔湧， 滿尺之魚或直綿布二匹， 貴則雖直十匹必買之， 他物類此。 畿輔之民始困。”】</p>

	자[尺]만 차는 생선이면 더러는 값이 면포(綿布) 2필씩이나 하고 품귀(品貴)해지면 비록 값이 10필씩이나 하여도 반드시 사게 되었으며, 다른 물건도 이와 유사하여 경기(京畿)의 백성들이 곤궁해지기 시작했다.” 하였다.	
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27 일(신해) 5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에 술을 내리며 ‘신설(新雪)’이란 제목으로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지어서 올리도록 명하였다.	○賜酒于承政院、弘文館。 命製進新雪七言律詩。
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28 일(임자) 5번째기사	병조(兵曹)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의주(義州) 성(城)을 쌓을 적에 먼 곳의 수군(水軍)들을 만일 본진(本鎭)에서 번(番)을 서듯이 서로 번들여 역사에 나아가게 한다면 가고오고 하는 동안에 걸핏하면 한 순(旬)이 되고 한 달이 되어버려 쉴 새가 없습니다. 하물며 성 쌓기를 한 해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세 번으로 나누어 역사를 시켜 백성들의 힘을 쉬어 주게 하기를 청합니다. 또 본도(本道)의 군사(軍士)는 노고(勞苦)가 다른 도보다 배가 되는데 절도사(節度使)가 또한 제사 포육(脯肉) 때문에 해마다 군사들을 동원하여 짐승을 사냥하므로, 한갓 군사들만 수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을들이 역시 폐해를 받게 되니, 관찰사로 하여금 그 제사 포육을 적당하게 요량하여 모든 고을에 배정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平安道觀察使李克墩啓本啓：“義州築城時， 遠處水軍若依本鎭立番相遞赴役， 則往還動經旬月， 無休息之時。 況築城非一年可畢， 請分三番役之， 以休民力。 且本道軍士勞苦倍他道， 而節度使又因祭脯， 每年發軍獵獸， 非徒軍士勞頓， 諸邑亦受弊。 請令觀察使， 其祭脯量宜分定諸邑。” 從之。
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0월 29 일(계축) 1번째기사	임금이 눈이 내리는 것 때문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진연(進宴)을 정지하도록 명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진교하기를, “종친(宗親) 1품, 의정부·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육조·한성부(漢城府)·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도총부(都摠府)·중추부(中樞府) 당상(堂上)들에게 충훈부에서 잔치를 내리고, 의정부·육조·한성부·도총부의 낭청(郎廳)들과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게 돈녕부(敦寧府)에서 잔치를 내리라.” 하고, 도승지(都承旨) 한건(韓健)·좌승지(左承旨) 조극치(曹克治)·우승지(右承	○癸丑/上以雨雪， 命停議政府、六曹進宴。 傳于承政院曰：“宗親一品、議政府·領敦寧以上、六曹·漢城府·忠勳府·儀賓府·都摠府·中樞府堂上， 賜宴于忠勳府； 議政府·六曹·漢城府·都摠府郎廳、弘文館·藝文館， 賜宴于敦寧府。” 命都承旨韓健、左

	<p>旨) 홍흥(洪興)에게 선온(宣醞)21585) 과 내수(內羞)21586) 를 가지고 충훈부에 가서 선위(宣慰)하도록 명하였다.</p>	<p>承旨曹克治、右承旨洪興齋宣醞內羞、宣慰于忠勳府。</p>
<p>성종 233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0월 30일(갑인) 2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의 능향(廩餉)21596) 이 매우 풍성하여 비록 조정 관원들의 공찬(公饌)이라 하더라도 또한 나올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유생들의 음식이 매우 박했어도 거관(居館)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풍성하고 후하여도 거관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성상(聖上)께서 배양(培養)하고 육성(育成)하는 방법이 이처럼 지극하셔도 생원(生員)·진사(進士)들이 조금 이루어진 것에 편안히 여겨 태만에 빠져 시골에 숨어 있고 전연 학업을 일삼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제도(諸道)의 감사(監司)들로 하여금 시골에 있는 생원·진사들을 늙은 어버이가 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려보내도록 하여 거관(居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옳은 말이다.” 하였다.</p>	<p>○御晝講。〔講〕訖，侍讀官趙之瑞啓曰：“成均館儒生廩餉極豐，雖朝官公饌，亦不能過。舊時儒生之饌甚薄，而居館者衆，今既豐腴而居館者甚少，眞可怪也。臣意以爲聖上養育作成之方，如此其至，而生員·進士安於小成，怠惰泊沒，隱伏鄉村，全不以學業爲事。令諸道監司，在鄉生員·進士除有老親疾病者外，皆令上送居館何如？”上曰：“此言甚是。”</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1일(을묘) 5번째기사</p>	<p>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숙감(李叔臧)이 장계(狀啓)하기를, “남원(南原) 사람 전(前) 목사(牧使) 윤효손(尹孝孫)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인(舍人)에 이르렀다가 두 아버지가 남원에 있기 때문에 사직하며 봉양하러 돌아가기를 청하자 조정 의논이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보임(補任)되었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자 애통한 나머지 거의 죽게 되었으며 상인(喪人)노릇하기를 한결같이 《가례(家禮)》대로 하였고, 복(復)을 벗자 참의(參議)가 되었으나 어미가 늙은 것 때문에 사직하기를 청했습니다.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제배(除拜)되어서는 어미를 싣고 부임하여 부부(夫婦)가 반드시 몸소 음식을 조리(調理)하여 봉양하였고, 개만(箇滿)하자 조정으로 돌</p>	<p>○全羅道觀察使李淑臧啓：“南原人前牧使尹孝孫登第，仕至舍人，以兩親居南原，請辭職歸養，廷議多之，補長興府使。及父死，哀毀幾滅性，喪制一依《家禮》。服闋爲參議，以母老請辭職，除全州府尹，昇母之任，夫婦必躬自調膳以進。秩滿還朝，又辭職歸養，朝夕之奉，必具甘旨。歲時伏臘，必置壽尊，大會鄉黨親戚以歡樂之。</p>

아갓다가 또한 사직하고 봉양하러 돌아가 조석 봉양에 반드시 맛진 음식을 갖추었습니다. 세시 복납(歲時伏臘)21599) 에는 반드시 송수(頌壽)하는 술을 마련해 놓고 크게 향당(鄉黨)의 친척들을 모아 즐겁게 되도록 하였고, 날마다 자제(子弟)들과 몸소 고기 잡고 사냥하여 맛진 것을 장만하였고, 언제나 아들과 조카 및 손자들과 이웃의 노파들로 하여금 즐겁게 좌우에서 모시며 취하고 배부르게 하여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아우 하나가 집이 가난하므로 어미가 항상 근심하므로 곡식 1백 곡(斛)을 주었고, 그 아우가 종 하나를 잃어 버리자 또 종 하나를 주니, 어미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효자라고 했습니다. 나주 목사(羅州牧使)에 제배되어서는 어미 봉양을 더욱 조심해서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어미가 죽자 상사 집행을 예(禮)대로 하였고, 장사 때를 당하여는 여러 고을에 잇달아 큰 비가 내렸었는데 유독 장사할 데까지 7, 8리 사이가 구름만 끼고 비가 내리지 않다가 장사가 끝나자 큰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효도에 감동된 것이라 했다 합니다. 여묘(廬墓)사는 3년 동안도 날마다 반드시 4차례씩 전(奠)하였고, 전할 때마다 반드시 곡(哭)을 하므로 향당(鄉黨)에서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여산(礪山) 사람 박치림(朴致林)의 아내 양녀(良女)인 막덕(莫德)은 지아버가 죽자 마을에도 나가지 않으며 집안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전(奠)드리기를 평생토록 한결같이 하였고 초하루·보름에는 반드시 묘소(墓所)에 올라가 제를 지냈으며,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경건하게 했습니다. 같은 고을 사람 김순복(金順福)이 장가들려 하자 막덕이 죽기로 맹세하고 듣지 않았으며 관(官)에 송사하므로 마침내 김순복을 죄주었습니다. 절개를 보존하고 의리를 지키는 근고(近古)에 드문 일이니, 청컨대 이 두 사람을 널리 권장하여 풍속과 교화(教化)를 힘쓰게 하소서.”

하니, 예조(禮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효우(孝友)와 절의(節義)를 포상하고 장려하는 특전은 교화를 일으키는

日與子弟躬親漁獵，以供滋味，常令子姪兒孫隣里老嫗侍左右，使之醉飽，以慰母心。一弟家貧，母常以爲憂，與之粟百斛，其弟亡一奴，又與一奴，母感泣曰孝子也。及拜羅州牧使，養母愈謹。未幾母死，執喪以禮。及葬連數郡，大雨，獨葬處七八里間雲陰不雨，葬畢大雨，人稱誠孝所感。廬墓三年，日必四尊，尊必哭泣，鄉黨稱其孝。礪山人朴致林妻良女莫德，夫亡不出鄉井，家內立神主，朝夕設奠，一如平生。朔望則必上塚設祭，至今二十年間，不懈益虔。同郡人金順福欲娶之，莫德誓死不從，訟于官，竟罪順福，全節守義，近古所罕。請崇獎二人，以礪風化。”禮曹據此啓：“凡孝友節義褒獎之典，最是興化重事。今孝孫等事，觀察使只據鄉人之言，不詳究其實。且孝孫所行雖是實行，有家法士大夫職分當爲，非甚絕異之事也。但莫德以田野愚婦，能全婦道，守信不變，誠可嘉尚。請令觀察使詳加覈實以啓。”從之。

	<p>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윤효손 등의 일은 관찰사가 단지 고을 사람들의 말에만 의거하고 상세하게 사실을 따져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한 윤효손의 소행은 비록 실지 행적이라 하더라도 가법(家法)이 있는 사대부(士大夫)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직분으로서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막덕은 시골의 우매한 부녀자로서 능히 부도(婦道)를 보존하고 신의(信義)를 변함 없이 지켜 진실로 가상(嘉尙)하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더 사실을 조사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1월 2일 (병진) 2번째기사</p>	<p>당양위(唐陽尉) 홍상(洪常)·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에게 응사(鷹師)21602) 를 데리고 기내(畿內)의 고을에 나누어 가서 꿩을 잡아 양전(兩殿)에 올리도록 명하였다.</p>	<p>○命唐陽尉洪常、豐川尉任光載率鷹師，分往畿縣，捕雉以進兩殿。</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1월 2일 (병진) 5번째기사</p>	<p>전라좌도 수군 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우현손(禹賢孫)이 장계(狀啓)하기를,</p> <p>“10월 23일에 왜인(倭人)들의 배 4척이 순천부(順天府) 다로포(多老浦)에 침입하여 주민(住民)들의 의복과 식량을 약탈하고 사노(私奴) 막금(莫金) 등 두 사람을 죽였는데, 부사(府使) 김수정(金守貞)과 돌산 만호(突山萬戶) 임채(任採)가 나가서 구원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p> <p>하니, 병조(兵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p> <p>“왜적(倭賊)들이 기탄없이 멋대로 다니기를 이처럼 하였으니, 그들이 살상(殺傷)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이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도사 우현손·우후(虞候) 조익문(曹益文)과 김수정·임채 등은 변장(邊將)으로서 수비(守備)하고 방어(防禦)하기를 조심해서 하지 않아 왜적들이 떴지어 다니며 노략질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어 자못 위임(委任)한 뜻을 잃었으니, 청컨대 잡아다가 추국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全羅左道水軍節度使禹賢孫啓：“十月二十三日倭船四隻寇順天府多老浦，搶奪居民衣糧，殺私奴莫金等二名，而府使金守貞、突山萬戶任採不赴援，請鞫之。”兵曹據此啓：“倭賊恣行不忌至於如此，其所殺傷，必不止此。節度使禹賢孫、虞候曹益文及守貞、採等，以邊將不謹守禦，致令倭賊群行攻劫，以至殺害人物，殊失委任之意。請拿來推鞫。”從之。</p>

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1월 3일  
(정사) 2번째기사

강무(講武)할 때의 제장(諸將)과 종사관(從事官) 1백 36인을 대궐 뜰에 모으고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근위(近衛)하는 군사들이 동쪽 지방으로 사냥 나갔을 적에 경(卿)들이 수고하며 힘을 다하여 높은 언덕바지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으니, 비록 기(旗)를 빼앗고 적(敵)을 베고 하는 공로와 비유할 수 없지만 어찌 험악한 데를 가고 위험한 데를 밟은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장들을 대궐 뜰로 불러 술과 풍악을 내려 위로하는 것이니, 제장들은 모두 나의 뜻을 체득하여 취하게 마시고 배부르게 먹으며 즐거움을 다하라.”  
 하고, 대장(大將)들에게는 각각 길든 말 1마리와 호초(胡椒) 5말씩을, 위장(衛將) 및 내금위 장(內禁衛將)·4위(衛)의 장수에게는 각각 망아지 1마리와 대진(大箭) 1부(部)씩을, 대장의 종사관(從事官)에게는 각각 망아지 1마리와 호초 2말씩을, 위장의 종사관에게는 각각 표피(豹皮) 1장씩을, 부장(部將) 유군장(遊軍將)에게는 각각 활 1정(丁)과 호초 2말씩을, 사복장(司僕將)에게는 별조궁(別造弓) 1정과 호초 2말씩을, 잡류장(雜類將)에게는 각각 표피 1장과 호초 1말씩을, 종사관 통장(從事官統將)에게는 각각 활 1정씩을, 치중장(輜重將)에게는 활 1정과 호피(虎皮) 1장을, 종사관에게는 각각 활 1정씩을, 가진 망자장(駕前綱子將)에게는 각각 활 1정과 호초 1말씩을, 전함인(前衛人)21605)을 서용(敍用)한 별군장(別軍將)에게는 별조궁 1정과 호초 1말을, 부장(部將)에게는 각각 활 1정씩을 내렸다. 이철건(李鐵堅)이 아뢰기를,  
 “듣자니, 이숙기(李淑琦)가 소갈증(消渴證)21606)을 얻어 매우 대단한데 병든 속에도 하는 말들이 모두 강무(講武)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청컨대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숙기가 병든 것을 내가 당초에 알지 못했었다. 필시 강무할 때에 마음을 씌이 너무 수고로워서일 것이니, 잘 다스릴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라.”

○會講武諸將、從事官一百三十六人于殿庭下。御書曰：  
 近詰兵戎，行狩于東，卿等勤勞竭力，上下峻坂。雖莫比乎擐旗斬敵之功，豈不思其履嶮蹈危之勞？故召諸將于庭，賜酒樂以勞之。諸將咸體予意，醉飽極歡。  
 賜大將各熟馬一匹、胡椒五斗，衛將及內禁衛將、四衛將各兒馬一匹，大箭一部，大將從事官各兒馬一匹、胡椒二斗，衛將從事官各豹皮一張，部將遊軍將各弓一丁、胡椒二斗，司僕將別造弓一丁、胡椒二斗，雜類將各豹皮一張、胡椒二斗，從事官統將各弓一丁，輜重將弓一丁、虎皮一張，從事官各弓一丁，駕前綱子將各弓一丁、胡椒一斗，部將各弓一丁。李鐵堅啓曰：  
 “聞李淑琦得消渴證甚劇，病中所言，皆是講武時事。請遣醫治療。”傳曰：  
 “淑琦之病，予初不知，必是講武之時用心太勞也。其遣良醫治療。”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1월 8일 (임술) 2번째기사</p>	<p>하였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구숙손(丘夙孫)이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는 수십여 고을의 올해 곡식이 여물지 않았고 의주(義州)에는 큰 수해가 있었는데 면포(綿布) 1필의 값이 쌀 3, 4말이므로 백성들이 바야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민(徙民)들이 옮기어 가느라 늙은이와 어린이까지 모두 수고로운데다, 이제는 또한 삼태기와 가래를 맞추어 장성(長城) 쌓는 역사에 가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곤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성쌓기를 정지하고 내년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고, 대사간(大司諫) 이평(李枰)은 아뢰기를,  “평안도 한 도는 방수(防戍)가 쉴 사이 없고, 사신(使臣) 길이 끊이지 않는데 다 이때는 바야흐로 사민(徙民)하느라 공사(公私)가 모두 수고롭고 피폐한데 다시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을 역사시켜 긴 성을 쌓게 되니, 신의 생각에는, 재물이 고갈되고 힘이 지쳐 큰 역사를 절반도 못하고 우리 백성들이 잔약해질까 싶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성쌓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이어서, 국가가 태평할 때에 당하여 마땅히 백성의 힘을 사용하여 국경을 든든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일이 있게 되어서야 험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들 될 일이겠는가? 한 도의 힘을 통틀어 큰 일을 해가는데 어찌 그만한 폐단이 없겠는가? 그러나 소소한 폐단 때문에 큰 일을 그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이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백성들이 곤궁하고 연사가 흉년이라면 지금은 우선 정지하여 백성의 힘이 펴이게 해야 하지만, 만일 연사가 흉년이 아니라면 큰 일이므로 마땅히</p>	<p>○御經筵。 講訖， 執義丘夙孫啓曰：“平安道數十餘郡年穀不稔， 義州大水， 綿布一匹直米三四斗， 民方艱食。 況徙民轉輸， 老稚皆勞。 今又稱畚鍤， 以赴長城之役， 民之困苦， 可勝言哉？ 請停築城， 以待來年。” 大司諫李枰啓曰：“平安一道， 防戍不休， 使輶不絕， 時方徙民， 公私勞敝。 更役飢困之民， 以築長城， 臣恐財盡力疲， 大役未半而吾民殘矣。” 上曰：“築城， 國之大事， 當國家昇平之時， 宜用民力以固疆圉。 及其有事， 欲設險得乎？ 舉一道之力， 以成大事， 豈無其弊？ 然未可以小弊沮大事也。” 因顧問左右， 領事盧思愼對曰：“苟民困歲凶， 則今姑停之， 以舒民力。 若非歲凶， 則大事宜以時成， 不可中止。” 特進官孫舜孝啓曰：“平安道民力已窘， 今又艱食， 不可更赴大功也。” 上曰：“此大事， 不可輕議。 其亟召築城體察使洪應、 安接使李鐵堅問之。”</p>
--	---	--

	<p>때에 맞추어 이루어야 하고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평안도 백성들의 힘이 이미 군속한데다 이제는 또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으니, 다시 큰 공사(工事)에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이는 큰 일(大事)이어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니, 시급히 축성 체찰사(築城體察使) 홍응(洪應)과 안접사(安接使) 이철건(李鐵堅)을 불러 묻겠다.”          하였다.</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11일(을축)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구숙손(丘夙孫)이 아뢰기를,          “김세적은 사헌부(司憲府)에서 자신을 논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행궁(行宮)21628)으로 달려가지 않았으나, 신하 된 사람으로서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청컨대 통렬(痛烈)하게 징계하여 뒷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고, 헌납(獻納) 윤궁(尹兢)은 아뢰기를,          “임금이 진실로 상벌(賞罰)에 대한 권한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장사(將士)를 모아 양성하는 것은 장차 쓰기 위해서입니다. 김세적이 비록 궁마(弓馬)21629)에 관한 재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불경(不敬)스러움이 이러하였으니,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단지 그의 교만하고 치사한 마음만 양성해 주게 될 것입니다. 어찌 뒷날에 쓰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김세적은 학문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는 특히 생각을 잘못된 것이니, 좌천만 해도 충분하다.”          하자,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p>	<p>○乙丑/御經筵。講訖，執義丘夙孫啓曰：“金世勣知憲府論己，而不馳詣行宮，人臣之罪孰大於此？請痛懲以戒後來？”獻納尹兢啓曰：“人君苟不明賞罰之權，則何以爲治？國家儲養將士者，將以爲用也。世勣雖有弓馬之能，然其心不敬如此，此厥不懲，祇釀成其驕侈之心耳，何以爲後日之用乎？”上曰：“世勣無學解，此特計料之錯耳，左遷足矣。”領事李克培、同知事李世佐啓曰：“計料錯誤耳，安有不敬之心乎？”夙孫啓曰：“閱永慕命還除順天府使，請依《大典》，準期不敘。方今士習日卑，貪競成風。前此，昌慶宮修理都監員皆超擢之，今永慕之心以爲：‘事畢則必有異數。’希望上恩，不欲捨去，故提調來啓耳。”上曰：“永</p>



	<p>“생각을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불경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구속손이 아뢰기를,      “민영모(閔永慕)를 도로 순천 부사(順天府使)를 제수하도록 명하셨는데, 《대전》대로 준기 불서(准期不敍)하기를 청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선비들의 풍습이 날로 비열해져 탐심 경쟁이 풍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창경궁(昌慶宮)의 수리 도감(修理都監) 관원들을 모두 계급을 뛰어 발탁했었는데, 이번에 민영모의 마음에도 일이 끝나면 반드시 특이한 은전(恩典)이 있으리라 여겨 성상(聖上)의 은덕을 바라느라 버리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므로 제조(提調)가 와서 아뢰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민영모가 어떻게 제조에게 청탁할 수 있고, 또 제조가 어찌 그의 말을 듣고 와서 아뢰려 하였겠는가? 이미 도로 제수하도록 해놓고 또 어떻게 죄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윤공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시골에 있었기에 민간의 폐해를 갖추 알고 있는데, 빚 준 것을 징수(徵收)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수사(內需司) 장리(長利)는 중간에 폐지했었는데 다시 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봄철에 당하면 민간들 중에 색깔이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답을 걸우느라 종일토록 일을 하게 하고 당초에는 두어 말씩의 색깔이를 주었다가 가을 수확할 때를 당하면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서 색깔이를 독촉하기 위해서라 하고 여염(閭閻)을 드나들면서 재물(財物)을 빼앗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니, 벼를 마당에 들여오지도 못하여 어느새 탈취당해버리고 빈집이 쓸쓸하게 되는 것이 이때문입니다. 옛적에 중휼(仲虺)이 성탕(成湯)21630) 을 찬양하기를 ‘오직 왕은 재물의 이식을 불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하(殿下)의 성덕(聖德)으로 사사 재물을 불리느라 거룩한 덕을 더럽히므로, 신은 그옥이 통탄스럽게 여기며 내수사의</p>	<p>慕何得請囑于提調? 提調又安肯聞其言而來啓乎? 已令還授, 又何罪之?”      兢又啓曰: “臣嘗在鄉村, 備諳民弊, 徵債是已。 內需寺長利中廢而復立, 何也? 當春時則使民之願受債者, 糞其田, 終日服勞, 始給數斗之債, 當秋斂時, 多領人徒, 稱爲督債, 出入閭閻, 奪其財物, 無所不至。 禾未登場, 旋被劫奪, 白屋蕭然由此也。 昔仲虺贊成湯曰: ‘惟王不殖貨利。’ 以殿下之聖德, 而殖私貨, 以累大德, 臣竊痛之。 請罷內需寺長利, 以便於民。”      上曰: “向者罷而其後復立, 其時與宰相商議可否爲之耳, 予豈不知民弊乎? 前此, 海州居奴有不法之事, 因牧使鄭誠謹之啓, 卽令治罪。 今復如是, 則令守令治罪可也, 又何罷爲?” 兢曰: “未知殿下爲何事而殖貨乎。 無乃爲佛耶?” 上曰: “何謂爲佛? 我無崇佛之事。”</p>
--	---	---

	<p>장리를 혁파하여 민간이 편리해지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중간에 혁파했다가 그뒤에 도로 두었는데, 그 때 재상들과 가부를 의논하여 한 것이다. 내가 어찌 민간의 폐단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보다 앞서 해주(海州)에 사는 종이 법에 어긋난 것이 있었는데, 목사(牧使) 정성근(鄭誠謹)이 계문(啓聞)한 것에 따라 즉시 죄를 다스리도록 했었으니, 이제 다시 그런 것을 한다면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어찌 혁파할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윤공이 아뢰기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 무슨 일 때문에 재물을 불리십니까? 부처 때문이 아니십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어찌하여 부처 때문이라 하느냐? 나는 부처를 숭상한 일이 없다.”  하였다.</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12일(병인) 3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가배량(加背梁)·미조항(彌助項) 두 곳에 진(鎭)을 두는 것이 편리한지를 널리 대신들에게 의논했지만, 모두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한갓 사람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 거개 억측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의논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신이 일찍이 일로 미조항에 갔다가 대략 지형을 살펴보았는데, 그곳 지형이 바다 가운데로 수십리쯤 쭉 들어갔기 때문에 동남(東南)쪽의 왜선(倭船)들이 여기서 뿔감도 채취(採取)하고 먹을 물도 길으며 틈을 타 넘겨다 보다가 멋대로 줌도독질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1여(旅)로 방수(防戍)하게 되면서부터는 왜인(倭人)들이 소굴(巢窟)을 잃게 되고 변방 백성들의 근심이 적어졌던 것입니다.</p>	<p>○御晝講。講訖，侍讀官趙之瑞啓曰：“加背梁、彌助項兩處置鎭便否，博議于大臣，而皆未能足涉目覩，徒取人口語，率以臆決，故議論不一。臣嘗以事抵彌助項，略驗形勢。其爲地控入海中數十里許，東南倭船採薪汲水於斯，乘間覬覦，恣爲鼠竊。自一旅防戍而後，倭人失其窟穴，而邊氓少患矣。曩者倭人乘戍卒無備，闖入斲殺，藉此以爲孤單絕遠，援兵不及救，是不然。臣察其道路，不甚相遠，萬無救</p>

지난날에 왜인들이 방비하는 수졸(戍卒)이 없는 것을 틈타 마구 들어와 사람들을 작살(斬殺)하게 되자, 이를 빙자하여 고단하게 동떨어져 있으므로 구원하는 군사가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그 곳의 도로를 살펴보니, 그다지 서로 멀지 않아 만에 하나도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지금 비록 진을 두더라도 방수할 만한 군사가 없고, 만일 다른 진의 군사를 나누어 한다면 힘이 분산되고 기세가 약해지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에는 조종(祖宗) 이래로 백여 년 동안을 휴양(休養)하고 생식(生息)하게 하여 인구가 매우 번성해졌다고 여깁니다.

진주(晉州) 한 고을로만 보더라도 비록 국가에서 숨은 장정(壯丁)을 검거하여 찾아내어 모두 군적(軍籍)에 올려 군사로 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숨은 장부의 빠진 장정이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비록 진주의 병정만 찾아낸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군사는 하루아침에 군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예로 본다면 다른 고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다른 진의 군사를 나누어 오지 않더라도 6백이나 7백이나 8백의 군사는 쉽게 조발(調發)할 수 있어 한 진의 방수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안전과 위태는 서로 따라다니고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은 서로 뒤집히게 되는 법이어서, 태평에만 익숙하여 변방의 방비를 허술하게 하다가 뒷날의 염려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두 지역에 시급히 진을 두고 군사로 방수하여 든든한 형세를 보여준다면 섬오랑캐들이 스스로 넘겨다보는 마음을 끊게 되어 변방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참으로 그와 같다면 진을 두는 것이 가하겠다. 그러나 이미 대신으로 하여금 직접 편리 여부를 살펴보도록 했으니,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차 의논하겠다.”

援不及之理。 議者又云：‘今雖置鎮，無兵可戍。 若分他鎮之兵，力分勢弱，不可爲也。’ 臣意以謂自祖宗以來百餘年，休養生息，民齒甚繁。 以晉州一邑觀之，國家雖檢括隱丁，悉籍爲兵，然隱夫漏丁，其麗不少。 雖索晉州之賦，數百之兵，一朝可籍。 舉此例之，他邑可知矣。 如此則雖不分他鎮之兵，六七八百之兵，率爾可調，而一鎮之戍有餘矣。 況安危倚伏，治亂相乘，不可狃於治平，使邊防疎虞，以致後日之患。 臣意此兩地須亟置鎮戍兵，以示形勢，則島夷自絕覬覦之心，邊圉益固矣。” 上曰：“審如此，則置鎮可也。 然既令大臣親審便否，俟其來而徐議之耳。” 之瑞又啓曰：“法令出一，則吏不煩而民不犯。 臣任刑曹正郎嘗試之，凡刑獄決案，既斷以《大明律》，又考前例。 夫《大明律》至詳至精，情法俱盡，大小刑罰，各適其用，何必又考前例乎？” 上曰：“考前例者，恐其罪一而罰有輕重故耳。 雖考前例，何妨於律？” 記事官權五福啓曰：“古人云：‘堂下遠於千里，君門邈於萬里。’ 遠方小民，雖困於貪殘之政，無由得達。

하였다. 조지서가 또 아뢰기를,  
 “법령(法令)이 한결같이 나온다면 관원들도 번거롭지 않고 백성들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형조 정랑(刑曹正郎)이었을 적에 일찍이 꺾어보았는데, 무릇 형옥(刑獄)의 결안(決案)을 이미 《대명률(大明律)》로 결단해놓고 또한 전례를 고찰했었습니다. 무릇 《대명률》은 지극히 자세하고 지극히 정밀하여 실정이나 법이 모두 극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소간의 형벌을 각각 맞추어 쓸 수 있는데, 하필 또 전례를 고찰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 “전례를 고찰하는 것은 아마도 죄는 같은데 벌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 있을 듯하기 때문이니, 비록 전례를 고찰해서 하더라도 어찌 율(律)에 방해롭게 되겠는가?”  
 하였다. 기사관(記事官) 권오복(權五福)이 아뢰기를,  
 “옛사람의 말이 ‘당(堂) 아래가 천 리나 되게 멀고 대궐 문이 만 리나 멀다.’고 했듯이, 먼 외방(外方)의 서민들이 탐오(貪汚)하고 잔학(殘虐)한 행정에 시달리면서도 주달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요사이 사책(史冊)을 거풍(擧風)하는 일로 성주(星州)에 갔다가 듣건대, 밀양 부사(密陽府使) 허혼(許混)이 창고(倉庫) 수리를 핑계하고 무릇 목재와 기와를 모두 민간의 가호(家戶)에서 거두며 독촉하여 받기를 몹시 엄하게 하므로 온 고을이 소란하여 주구(誅求)를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관미(官米)를 도둑질하여 배 3척에 싣고 강을 따라 운항하여 만호(萬戶)의 방수(防戍)하는 곳에 이르렀다가 만호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힐문(詰問)하게 되자, 한 척의 배는 모면하려는 계책으로 뱃머리를 파버리매 물속에 잠겨버렸고, 두 척의 배는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원이 되어 이처럼 탐오하고 잔학한 짓을 한 것을 신이 듣고 보니 스스로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臣近以曬史至星州，聞密陽府使許混憑倉庫修創，凡材瓦皆斂於民戶，徵督太嚴，闔郡騷然，不勝誅求。又盜官米，載三船沿流而運，至萬戶戍所，萬戶詰其所從來，一船則佯鑿鱸沈於水底，二船則不知去向。爲吏貪殘如此，臣聞之，不能自默。” 上曰：“民生休戚，專在守令，而朝廷既不遣擿發，又不令部民告訴，守令貪污，無由得知。向者博議于群臣，皆曰監司可以辨覈，然許多郡縣，監司見聞，勢所未周。若非爾言，予何得聞？宜遣朝官推劾可也。” 趙之瑞進曰：“奉公守法撫字心勞者，以爲迂鈍，毀言日至，厚斂剝民，憑公構私者，以爲敏達，譽言布聞。積習成風，恬不爲異，不可不懲也。”

	<p>“민생들의 고락은 오로지 수령(守令)들에게 달린 것인데, 조정에서 이미 어사(御史)를 보내어 적발하지도 않고 또한 부민 고소(部民告訴)도 못하게 하므로, 수령들의 탐오를 알아낼 길이 없다. 앞서 군신(群臣)들에게 널리 의논해 보았더니, 모두들 하는 말이, ‘감사(監司)가 가리어 핵실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고을들이 허다하므로 감사의 견문(見聞)이 사세가 두루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듣게 되었겠는가? 마땅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문(推問)하여 조사해야 한다.”</p> <p>하였다. 조지서가 진언(進言)하기를,</p> <p>“봉공(奉公)21636) 하고 법을 지키며 무자(撫字)21637) 하느라 마음이 수고로운 사람을 보고는 오활(迂闊)21638) 하고 둔하다 하여 훼방하는 말이 날마다 들어오고, 많이 거두어 모으느라 백성의 힘을 끊어내고 공(公)을 핑계하여 사사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보고는 민첩하고 유능하다 하여 칭찬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버릇이 쌓이고 풍속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12일(병인) 5번째기사</p>	<p>야대(夜對)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이르기를,</p> <p>“오늘은 마침 매우 춥기에 술을 내리도록 명하였으니, 그대들은 고금(古今) 제왕(帝王)들의 다스려졌다 어지러워졌다 흥했다 망했다 한 자취와, 민생(民生)들의 고락 및 정치의 득실(得失)을 논하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進達)하라.”</p> <p>하고, 이어 묻기를,</p> <p>“성탕(成湯)과 무왕(武王)은 우열(優劣)이 있는가?”</p> <p>하니, 설경(說經)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p> <p>“선유(先儒)들의 말이, ‘성탕은 겉(桀)의 죄목을 세기를 공손하게 하였고, 무왕은 주(紂)의 죄목을 세기를 오만하게 했다.’고 했으니, 우열이 있는 듯하기</p>	<p>○御夜對。 講訖， 上曰：“今日適寒甚， 命賜酒。 爾等論古今帝王治亂興亡之迹、民生利病政治得失， 且陳所蘊。” 因問曰：“湯、武有優劣乎？” 說經成希顔啓曰：“先儒云：‘湯之數桀也， 恭， 武之數紂也， 傲。’ 似有優劣。 然《泰誓》， 先儒云：‘非盡當時之言， 未可信。’ 臣意湯、武皆聖人， 未可議優劣也。” 上曰：“《晉書》郭璞傳：‘水至清則無魚， 人至察則衆乖。’ 人</p>

는 합니다. 그러나 《태서(泰誓)》 21639) 는 선유들이 말하기를, ‘모두 다 당시의 말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성탕이나 무왕은 모두 성인이라 우열을 논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진서(晉書)》 곽박전(郭璞傳)에, ‘물이 몹시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대중과 괴리(乖離)된다.’고 했다. 임금도 분명하게 살피면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하자, 기사관(記事官) 남궁찬(南宮璨)이 진언(進言)하기를,

“한 선제(漢宣帝)21640) 는 명실(名實)을 종합해서 핵실(核實)해 보아 명실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을 알아냈으나, 그의 공적을 논한다면 중흥(中興)한 임금이겠지만 그의 실수를 논한다면 화(禍)의 기초를 만든 임금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당 선종(唐宣宗)21641) 도 분명하게 밝힘이 지나쳤는데 쇠퇴하고 미약하여 떨치지 못했음이 진실로 이에서 조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서경》에 ‘원수(元首)21642) 가 잔달면 고굉(股肱)21643) 이 태만해져서 만사가 허물어진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스스로 분명히 살피야 한다고 여겨 아래의 신하들 직책까지 거행하게 되면 못 아랫사람들이 일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여 만사가 반드시 허물어지는 데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살피는 것은 임금의 아름다운 덕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임금의 이르기를,

“옛사람이 당시의 재상(宰相)에게 글을 올려 써주기를 바란 자가 있었으니, 옳은 일이겠는가 그른 일이겠는가?”

하자, 시독관(侍讀官)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당(唐)나라의 한유(韓愈)가 세 차례나 글을 올려 자천(自薦)했었는데, 선유(先儒)들이 모두 그르게 여겼습니다.”

하고,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君明察則果如是乎?” 記事官南宮璨進曰: “漢宣帝綜核名實, 有名實不相應者, 必知其所以然。 論其功則中興之主, 語其失則未免爲基禍之主。 唐宣宗過於明察, 而衰微不振, 實兆於此。 《書》曰: ‘元首叢脞哉, 股肱惰哉, 萬事隳哉!’ 人君自以爲明察, 下行臣職, 群下不肯任事, 則萬事必至於隳矣。 然則明察非人君之美德也。” 上曰: “古人有上書於時宰, 以求用者, 是歟非歟?” 侍讀官成世明啓曰: “唐韓愈三上書自薦, 先儒皆以爲非。” 希顔啓曰: “孔子云: ‘沽之哉, 沽之哉! 我待價者也。’ 上書自薦, 豈爲是哉?” 上曰: “此韓愈不是處。” 參贊官韓健啓曰: “臣乙巳年出補全羅都事, 沿海郡縣水賊恣行殺人, 命劫財物, 海路爲梗。 宜窮極追捕, 令水路復通。” 上曰: “此賊漸不可長, 設策捕之可也。” 世明又啓曰: “近日魚有沼家有男巫, 以人頭顱埋庭中, 爲鎮禳之術, 是專由都下巫覡盛行故也。 宜推覈遠斥, 使妖妄之術, 永絕根株。” 上曰: “憲府申明此法可也。” 璨啓曰: “古人云: ‘靡不有初, 鮮克有終。’ 人主之不能

	<p>“공자는 말하기를, ‘팔아야지 팔아야 하지만 나는 제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고 하였습니다. 글을 올려 자천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p> <p>“이는 한유의 옳지 못한 곳이다.”</p> <p>하였다. 참찬관(參贊官) 한건(韓健)이 아뢰기를,</p> <p>“신이 을사년(21644)에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로 나갔었는데, 연해(沿海)의 고을에 수적(水賊)들이 멋대로 다니며 사람들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므로 해안(海岸)의 길이 통하지 못했었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격하여 잡아내어 해안 길이 다시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p> <p>“그런 수적들의 조짐을 자라게 해서 안되니, 계책을 마련하여 잡도록 해야 한다.”</p> <p>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p> <p>“요사이 어유소(魚有沼)의 집에 남자 무당이 사람의 해골을 마당 가운데 묻어 놓고 재앙을 막는 주술(呪術)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는 오로지 도성(都城) 안에 무당들이 횡행(橫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 마땅히 추핵(推覈)해서 멀리 배척하여 요망한 주술들이 깊이 뿌리가 끊어지게 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p> <p>“사헌부(司憲府)에서 거듭 이에 관한 법을 밝혀야 한다.”</p> <p>하였다. 홍찬이 아뢰기를,</p> <p>“옛사람의 말이 ‘시작이 있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끝맺음이 있는 사람은 적다.’고 했는데, 임금들이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사 욕심이 끼어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해서입니다. 신이 보건대, 한(漢)나라로부터 송(宋)나라에 이르기까지 위아래로 수천년 동안에 능히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 처음에서 끝까지 덕을 온전하게 한 이가 적은데, 선(善)한 것은 선한 대</p>	<p>善終者, 私欲中之而心不正也。 臣觀自漢至宋上下數千載間, 能正心修身, 終始全德者少。 其善其惡流芳遺臭於後世, 而千載之下, 歷指而褒貶焉, 誠可畏也。 伏願聖上監前代之得失, 日新其德, 終始惟一, 使盛德大功, 垂諸青史, 而爲子孫萬世之法也。” 金叔響啓曰: “孝爲百行之源, 故古人云: ‘求忠臣於孝子之門。’ 今觀當世之人, 居憂而白晝大道之中, 有乘馬橫行者。 且古人率多廬墓三年, 而今世之人, 安然在家, 言笑無異平時。 或爭錐刀之末, 冒衰經就訟庭, 與人相詬, 傷風敗俗, 莫此爲甚。 置此不禁, 則臣恐累聖上清明之治矣。” 上曰: “憲府宜禁之。” 希顏啓曰: “南宮璨所啓 ‘靡不有初, 鮮克有終。’ 此言深中時事。 聖上卽位之初, 從諫如流, 唯恐群下不肯盡言, 虛懷竚聞。 自近年以來, 漸不如初, 如鄭允貞、徐坎元輩, 皆以言事至械係拷訊, 故大小之臣, 以言爲諱。 臣初入弘文館, 言及廢后尹氏事, 副提學柳允謙大駭曰: ‘蔡壽、權景祐得遭罷黜, 皆廢后事也。’ 痛禁止之。 允謙有文學識事體, 猶且如此, 其下畏</p>
--	--	--

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뒷세상에 명성을 전해오기도 하여,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하나 지적하며 찬양하거나 폄(貶)할 수 있으니,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 전대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시며 날마다 덕을 새롭게 하시기를 시종일관(始終一貫)하게 하여 훌륭한 덕과 큰 공적이 청사(靑史)에 남아 자손만대의 법이 되게 하소서.”

하고, 김숙향(金叔響)은 아뢰기를,

“효도는 온갖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말이 ‘충신(忠臣)을 효자의 가문(家門)에서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건대,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대낮에 한길의 복관을 말 타고 횡행(橫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옛사람들은 대부분 3년을 여묘(廬墓)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편안히 집에서 지내며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 하기를 평소와 다름없이 하고, 더러는 소소한 일을 다투느라 상복(喪服) 차림으로 송사하는 곳에 나아가 사람들과 서로 욕설(辱說)을 하고 있으니, 풍습(風習)을 해치고 세속을 망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놓아두고 금하지 않는다면 신은 성상의 청명(淸明)하신 다스림에 누가 될까 싶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사헌부(司憲府)에서 마땅히 금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남궁찬(南宮燦)이 아뢰 ‘시작이 있지 않는 수는 없어도 능히 마침이 있게 하는 수는 적다.’고 한 이말은 깊이 오늘의 사정에 맞는 말입니다. 성상께서 즉위(卽位)하신 처음에는 간하는 말을 들어주기를 마치 물 흐르듯이 하며 오직 여러 아랫사람들이 다 말해주지 않으려 할까 싶어 하시면서 허심 탄회(虛心坦懷)한 마음으로 들려주기를 기다리셨는데, 근년 이래로 점차로 처음과 같지 않으시어 정윤정(鄭允貞)·서감원(徐坎元) 같은 사람들을 모두 일을 말한 것 때문에 형구를 채우고 고신(拷訊)하게 하므로 대소(大小)의 신하들이 말하기

忌不言，不足數也。 臣於廢后尹氏之罪則已知之矣，如廢后母申氏及同產尹邁，不知何罪而流放乎？” 上曰：“申氏與尹邁之罪不宣布，故外間果不知矣。其罪可坐，故斥逐耳。” 世明又啓曰：“臣觀佐郎南世聘所藏《周禮集解》，釋義詳悉。請以是印頒中外。” 上曰：“可。”



	<p>를 기휘(忌諱)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처음으로 홍문관(弘文館)에 들어왔을 적에 폐출(廢黜)한 왕후(王后) 윤씨(尹氏)의 일을 언급(言及)하자, 부제학(副提學) 유윤겸(柳允謙)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채수(蔡壽)와 권경우(權景祐)가 파출(罷黜)당하게 된 것은 모두 폐출(廢黜)한 왕후에 관한 일 때문이었다.’ 하며, 몹시 금하여 제지했었습니다. 유윤겸은 문학(文學)이 있어 사체를 아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이러하였으니, 그 이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리어 말하지 않는 것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폐출한 왕후 윤씨의 죄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출한 왕후의 어머니 신씨(申氏)와 그의 동생 윤구(尹遘)는 무슨 죄로 귀양보냈는지 알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신씨와 윤구의 죄를 선포(宣布)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외간에서는 알지 못할 것이나, 그들의 죄가 벌을 줄 만하기 때문에 배척하여 내쫓은 것이다.”</p> <p>하였다. 성세명(成世明)이 또 아뢰기를,</p> <p>“신이 좌랑(佐郎) 남세담(南世聃)이 간직하고 있는 《주례집해(周禮集解)》를 보건대, 해석한 뜻이 상세하게 되어 있었으니, 이를 인출(印出)하여 중외(中外)에 반포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가하다.”</p> <p>하였다.</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13일(정묘)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올해는 생산된 배[梨]가 부족하니, 청컨대 모든 고을로 하여금 민간에서 거두지 말고 형편대로 마련해서 공납(貢納)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는 반드시 백성들을 침해하고 시끄럽게 만들 일이니, 공납하지 말도록 하라.”</p>	<p>○戶曹啓: “今年生梨不足, 請令諸邑不收於民間, 而隨宜備納。” 傳曰: “是必侵擾於民, 其令勿納。”</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1월 17 일(신미) 1번째기사</p>	<p>하였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숙감(李叔臧)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초이렛날 왜선(倭船) 6척이 흥양현(興陽縣) 축두리(築頭里) 등지에 침입하여 주민들의 의복과 양식을 약탈해 갔고, 초여드렛날은 녹도(鹿島)에 침입하여 만호(萬戶) 최맹원(崔孟源)과 종일토록 서로 싸웠는데, 선군(船軍) 김석이(金石伊)는 피살되고 강사동(姜思同) 등 세 사람은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최맹원을 형장 심문하여 그렇게 된 연유를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왜적(倭賊)들이 만호와 교전(交戰)하다가 김석이가 칼을 맞고 죽었다면 왜적들과 단병(短兵)21658) 으로 접전(接戰)을 한 것이 분명하며, 살해되고 사로잡히고 한 것이 반드시 한 사람만이 아닐 터인데, 만호 등이 감추어 덮어두고서 자신들의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경차관(敬差官) 이종윤(李從允)으로 하여금 형장 심문하여 사실을 알아내게 해야 합니다. 또 순월(旬月) 동안을 왜적들이 강도질을 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어 지극히 염려스러우니,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병선(兵船)을 정돈하여 끝까지 수색하여 잡게 하고 봉화(烽火)와 망보는 일들도 배나 더 근신하고 엄숙하게 하여 의외의 변을 방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辛未/全羅道觀察使李叔臧馳啓：“本月初七日，倭船六艘寇興陽縣築頭里等處，搶奪居民衣糧。初八日寇鹿島，與萬戶崔孟源終日相戰，船軍金石伊被殺，姜思同等三名不知所之。請刑訊崔孟源，以鞫其由。”兵曹據此啓：“倭賊與萬戶交戰，而金石伊受刃而死，則與賊短兵相接明矣。其所殺擄必不止一人，萬戶等謀欲掩覆，以免己罪。宜令敬差官李從允刑訊得實。且旬月之間，倭賊竊發恣行搶奪，至爲可慮。請令節度使整飭兵船，窮極搜捕，烽燧候望等事，倍加謹嚴，以防不虞。”從之。</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1월 17 일(신미)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를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전라도(全羅道)에 적변(賊變)이 있었다는데 과연 왜인(倭人)들이었는지 수적(水賊)들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당초에 순천(順天)에서부터 흥양(興陽)까지 와서 만호(萬戶)와 교전하였다니 어찌 왜적들인지 수적들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조정 관원을 보내 사실을 탐문해 보고 싶다. 전일에 왜인 조국차(助國次)가 와서 말하기를, ‘장차 깊은 고장의 왜인들이 틈을 노렸다 소란을 피우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깊은 고장의 왜인들인들 어찌 대마도(對馬島)를</p>	<p>○命召議政府、六曹、漢城府，傳曰：“全羅道有賊變，未知果是倭人歟，水賊歟？始自順天抵于興陽，至與萬戶相戰，豈不辨倭賊與水賊乎？欲遣朝官，探問其實。前日倭人助國次來言：‘將有深處倭人乘間作耗。’深處之倭，豈不由對馬島而來乎？彼國亦有古今傳</p>

거쳐서 오지 않겠는가? 저들의 나라에도 또한 고금(古今)의 전기(傳記)가 있을 터인데, 전조(前朝)21659) 말엽에 변방의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왜인들이 충돌(衝突)하고 들어와 노략질하기를 사람이 없는 지경을 밟듯이 했었으니, 바야흐로 지금의 사세도 전조의 쇠퇴한 말엽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장수의 방략(方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어 전라도·경상도 두 도에 나누어 보내, 요새지(要塞地)를 웅거하여 군졸(軍卒)들을 정돈해 놓고 있다가 만일 적들이 지경을 침범하게 된다면 기선(機先)을 노리다 추격하여 잡아 내어 위엄을 보이도록 하고 싶고, 만일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비록 죽여버리더라도 또한 안될 것이 없으니, 이런 뜻으로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심희(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장수를 보내 도적들을 잡는 것이나 도주에게 통유하는 일들은 관원을 보내 추감(推勘)21660) 해본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포구(浦口)의 만호(萬戶)들이 더러는 그 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리어 차임(差任)하도록 하소서.”

하고, 정괄(鄭恬)·정문형(鄭文炯)·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요사이 남쪽 지방에서의 해적들의 강도질은 한 번만이 아니니 진실로 마땅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좀도둑들이니 장수를 내보내 먼저 스스로 백성들을 시끄럽게 하거나 도주에게 통유할 것이 없고, 이번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바다나 육지의 진장(鎭將)들로 하여금 함께 조치할 계책을 의논하여 기회를 노렸다 잡아 내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모든 포구의 만호들은 대개 무예(武藝)로 취재(取才)하여 제수(除授)했으나 아마도 적재(適材)가 아닌 사람이 그 사이에 끼여 있어 변고에 잘 대응(對應)하지 못하는 듯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무략(武略)21661) 과 특이한 재질이 있는 사람들

記。前朝之季，邊防失守，倭人衝突劫掠，若蹈無人之境，無乃以方今之事，謂如前朝之衰季乎？予欲擇有將略者，分遣全羅、慶尙兩道，據要害整軍卒，賊若犯境，乘機追捕以示威。如不生擒，雖殺之亦無不可。以此意識于島主何如？”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議：“遣將擒賊，通諭島主等事，遣官推勘然後行之未晚。但諸浦萬戶間有不稱職者，令該曹擇差。”鄭恬、鄭文炯、李崇元議：“近者南方水賊竊發非一，固宜擒捕。然此特鼠竊耳，不宜遣將先自擾民，通諭島主。今令慶尙、全羅水陸鎭將同議措置，乘機捕獲爲便。但諸浦萬戶類以武藝，取才除授，恐非才者間於其間，無能應變。令該曹，精擇有武略異才者差遣。”韓致禮議：“對馬島通諭事，上教允當。前者多老浦作賊，今又與鹿島萬戶相戰，雖云鼠竊狗偷，其勢漸張。半日交戰，被中矢者四五人，豈無我人被殺傷者乎？宜遣官窮推。令水軍節度使朴巖整禦軍伍，嚴加搜捕，勿別遣將帥。”盧公弼、成健、沈潁、金悌臣、尹坦、申從漢議：

	<p>정밀하게 가리어 차임(差任)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고, 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대마도 도주에게 통유하자는 일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전번에는 다로포(多老浦)에서 강도질하였고, 이번에도 녹도(鹿島)의 만호와 교전하였으니, 비록 좀도적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기세가 점점 퍼지는 것입니다. 만나질 교전에 그들이 화살에 맞은 자가 4, 5명이었으니 어찌 우리편의 사람들은 살상(殺傷)당한 자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관원을 보내어 추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박암(朴巖)으로 하여금 무기와 군사를 정돈하여 엄중하게 수색하여 잡아내도록 하고, 따로 장수를 보낼 것은 없습니다.”      하고, 노공필(盧公弼)·성건(成健)·심인(沈潁)·김제신(金悌臣)·윤탄(尹坦)·신종호(申從濩)는 의논하기를,      “왜적(倭賊)들이 작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다만 이에 앞서서는 남쪽 지방의 장수나 군사들이 비록 왜적의 배를 만나게 되더라도 변방의 사단이 생기게 될까 싶어 침범해도 겨루지 않는 것이 상습(常習)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욱 가볍게 보며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 방자한 짓 하기를 기탄없이 하게 된 것이지만, 만호와 더불어 교전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만일 일찍 조치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반드시 제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따로 장수를 보내어 그런 기회마다 변통해서 대응하여 위엄과 무력을 보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큰 나라에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형세(形勢)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진실로 방비하는 좋은 계책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좀도적들 때문에 갑자기 판 장수를 보내게 된다면 민심이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대마 도주도 듣고서 또한 반드시 놀라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아직은 장수를 보내지 말고 연해변(沿海邊)의 진장(鎭將)들을 마땅히 먼저 가려서 차임(差任)하여 더욱 엄하게 방비하기를 항시 적을 만</p>	<p>“倭賊作耗，匪今伊始，其來已久。第以前此南方將卒，雖遇賊船，恐生邊釁，犯而不校，習以爲常。故彼人等益生輕侮之心，肆行無忌，至與萬戶交戰，此非細故。若不早爲措置，終必難制。今別遣將帥，臨機應變，以示威武，使彼知大國有截然不可犯之勢，實備禦之良策。但因此鼠竊，遽遣別將，則民心不無驚駭，而島主聞之，亦必驚惑。臣等意姑勿遣將，沿邊鎭將當先擇差，益嚴隄備，常如見敵，如遇賊變，毋或輕發，毋或退縮，隨機制勝，期必捕獲，則彼必知畏，自不犯邊矣。然若邊將，務於要功，其釣魚常行倭船，指以爲賊，輕動追捕，則因以生釁，亦甚可慮。此意亦宜敦諭邊將。又於島主處，諭以賊船禁戢之事與來犯我境者，不得不應變之意，亦無不可。且賞罰不明，人無勸懲，今後有能捕賊者，加以重賞。其或逗撓緩期，以致違誤者，嚴加重責，以礪將士爲便。”     李世佐議：“倭人竊發，匪自今始，其來已久。今來助國次所言：‘非本島倭人所爲者’，詐也。丙午年間對馬島倭人到禮曹言：‘倭賊百餘人，屯在本島</p>
--	--	--

난 것처럼 하다가, 만일 적변(賊變)을 만나게 된다면 경솔하게 발동하지도 말고 물러나 위축(萎縮)되지도 말고서 기회를 보아 이기도록 선제(先制)하여 기어코 반드시 잡아내게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두려워할 줄을 알고서 자연히 변방을 침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변장(邊將)들이 공을 자랑하려고 하여, 고기 잡으려고 늘 다니는 왜선(倭船)인데도 적선(賊船)이라고 지목하며 경솔하게 출동하여 쫓아가 잡는다면 이로 인하여 사단이 생기게 될 것도 역시 매우 염려스러우니, 이런 뜻을 또한 마땅히 변장들에게 돈독히 일러야 합니다.

또 도주(島主)에게도 적선(賊船)을 금지한다는 것과 우리 지경에 와서 침범하는 자는 부득불 변(邊)으로 대응한다는 뜻을 깨우치는 것이 또한 불가할 것입니다. 또 상벌(賞罰)이 분명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권장되지도 않고 징계되지도 않는 법이니, 이뒤로는 능히 적을 잡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중한 상을 내려 주고, 혹시라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치어 일을 망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엄중하게 무거운 벌책(罰責)을 내리어, 장수나 사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세좌(李世佐)는 의논하기를,

“왜인들의 도적질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니, 이번에 온 조국차(助國次)가 말한 ‘본도(本島) 왜인들의 소위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병오년(2166) 무렵에 대마도의 왜인들이 예조(禮曹)에 와서 하는 말이 ‘왜적(倭賊) 백여 명이 본도(本島)의 한 방면(方面)에 머물러 있으며 농사(農事)는 일삼지 않고 오로지 귀국(貴國)의 지경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업을 삼는다.’고 했었는데, 신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때에 변방 사람들의 말을 익히 들어 보건대, 해마다 3, 4월과 8, 9월 무렵이면 왜선(倭船) 6, 7척이 여러 섬에 몰래 정박하여 노략질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니, 과연 전일에 왜인들이 한 말과 합치했습니다. 이번에 도적들이 녹도(鹿島)에

一面, 不事農業, 專以作耗貴境爲業.’ 臣爲慶尙道觀察使時, 熟聞邊人之言。 每年三四月八九月間, 倭船六七隻, 隱泊諸島, 剽竊爲生, 果合前日倭人之言。 今賊犯鹿島, 此非水賊, 其爲倭賊明甚。 通諭島主, 責以不禁戢, 明示捕懲之責爲便。 若分遣將帥, 非惟騷擾, 事終無成, 亦恐三浦倭人胥動浮言, 又生邊釁耳。 擒賊之策, 言之易而行之難。 遣一諳練朝官, 廣問搜捉方略, 臨時處置爲便。” 柳洵、權健、李陸、成倬議: “近日多老浦、鹿島等處作耗賊船, 審是倭人。 然南方沿海之民, 採捕爲業者, 乘便作賊, 其來已久, 亦不可不爲之計。 令兵使水使及觀察使同議秘密措置捕捉爲便。 今此作賊者鼠竊狗偷, 匪今爲始, 守邊將士若能謹慎隄備, 則應變無難。 況賊變無時, 不必預遣將帥先自擾也。 但當擇遣萬戶, 且於對馬島主處通書, 諭以禁戢之意爲便。” 尹愨意: “近年南方諸島倭賊、水賊竝起, 此實小警, 不足慮也。 第恐水陸諸將, 撫馭乖方, 或不謹防禦, 以致生釁。 臣願別遣文武全材重臣, 使之處置得宜, 宣布朝廷

침범했는데 이는 수적(水賊)들이 아니라 왜적들인 것이 매우 분명하니, 도주에게 통유(通諭)하되, 금단하지 못한 것을 들어 문책하고 집어내어 징계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만일 장수들을 나누어 보낸다면 한갓 소란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또한 삼포(三浦)21663)의 왜인들이 서로 터무니 없는 말들을 하여 또한 변방의 사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도적을 잡는 계책은 말을 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일을 잘 아는 조정 관원 한 사람을 보내어 잡아내는 방략을 널리 물어 보아 때에 임하여 처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유순(柳洵)·권건(權健)·이육(李陸)·성숙(成俔)은 의논하기를, “요사이 다로포(多老浦)·녹도 등지에서 소란 피운 적선들은 틀림없이 왜인들의 배입니다. 그러나 남쪽 지방 연해(沿海)의 백성으로 해초(海草)를 캐고 고기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형편을 노리다가 도적질하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어서 또한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병사(兵使)·수사(水使) 및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비밀한 조치 방법을 함께 의논하여 잡아내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번에 도적질한 자들은 좀도둑들로서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니, 변방을 지키는 장수와 사졸들이 만일 근신하면서 방비를 잘한다면 번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도적들의 변은 일정한 때가 없으니, 미리 장수들을 보내어 앞질러 스스로 시끄럽게 할 것이 없고 다만 마땅히 만호(萬戶)들을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대마도 도주에게도 글을 보내어 금단하라는 뜻으로 깨우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윤민(尹愨)은 의논하기를, “근년에 남쪽 지방의 여러 섬에서 왜적(倭賊)과 수적(水賊)들이 마구 일어났지만, 이는 실로 소소한 경계이어서 염려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다나 육지에 있는 제장(諸將)들이 제어하는 방법을 잘못하거나 혹은 방비를 조심해서

恩威，以鎮服倭人之心，且宣諭島主，使之禁防。如或不悛，終不可示之以弱。其用兵當否，臨時取稟施行。”李諱議：“南方水賊，古所未聞。近來無賴之徒，相聚爲盜，隱泊諸島，竊伺商舶，乘時竊發，恣行劫掠，此乃邊將萬戶不得其人，而措置失宜故也。臣意擇有才智諳練者，爲兵水使，又擇強勇者爲萬戶，常以擒賊爲心，則必出奇謀異策，可以追捕而殄滅矣。且本道之人，現告水賊者，論賞優異，則自然弭絕矣。倭人往往竊發，無異狗盜，不可輕遣將帥，虧損威靈。若邊將得人，則何憂難制乎？通諭對馬島主事，待李從允之還，知其眞倭與否更議。”傳曰：“掌令閔孝曾以李昌臣爲小人不可用。其用與不用，其議以啓。”沈澹、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議：“臣等不曾與昌臣同事共處，其心固未可知，但於經筵往往發正大之論。至於李掄家財之事，不得無失，然不可以此，便指爲小人也。”韓致禮、鄭文炯議：“昌臣素號才士，然其心術之微，則臣等未嘗同處，未敢知也。但以近日之事觀之，臨財苟欲得，被劾欲苟

하지 않다가 사단을 만들게 될까 싶기는 합니다. 신은 따로 문무(文武)를 겸비(兼備)한 중신(重臣)을 보내어 처치하기를 합당하게 해가면서 조정(朝廷)의 은덕(恩德)과 위엄을 선양(宣揚)하여 왜인들의 마음을 진압하여 복종하게 하도록 하고, 또한 도주(島主)를 선유(宣諭)하여 금단하도록 하되, 만일 고쳐지지 않아 마침내 약하게만 보이고 있을 수 없게 된다면 군사 사용의 합당 여부를 때에 임하여 취품(取稟)하여 시행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집(李諶)은 의논하기를,  
 “남쪽 지방의 수적(水賊)은 예전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요사이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서로 모여 도둑떼가 되어 몰래 여러 섬에 정박하여 상선(商船)을 엿보다가 시기를 타 도적질을 하되 약탈을 자행한다니, 이는 곧 변장(邊將)과 만호(萬戶)가 책임자가 아니어서 조치를 합당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채주와 지혜가 있는 일에 익숙한 사람을 가리어 병사와 수사를 삼고 또한 굳세고 날랜 사람을 가리어 만호를 삼되 항시 도적을 잡기로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반드시 기묘한 꾀와 특이한 계책을 내어 쫓아가서 붙잡아 없애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도(本道)의 사람으로 수적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논상(論賞)을 우약(優渥)하고 특이하게 한다면 자연히 없어져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인들이 종종 도적질하는 짓은 좀도둑과 다름없는 것이니, 경솔하게 장수를 내보내어 위령(威靈)21664)을 손상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변장들을 책임자만 얻게 된다면 어찌 제어하기 어려움을 걱정하겠습니까? 대마 도주를 통유(通諭)하는 일은 이종윤(李從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참으로 왜인이었는지를 안 다음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장령(掌令) 민효증(閔孝曾)이 이창신(李昌臣)을 소인이어서 임용(任用)할 수 없다고 했었으니, 임용할 것인지 임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

免，無所不爲，不可謂之君子。不必犯罪未幾，旋即敍用，以毀《大典》之法。” 鄭佶、盧公弼、李世佐、李陸議：“昌臣才藝可尙，其心術之微，臣未敢知。但近日貪李掄之財，冒法越訴，非端人正士所爲。然豈可以一時之失，終身不用乎？” 成健、柳洵、權健、沈潐、尹坦、申從濩議：“昌臣占入李掄遺財，固非正人所爲。或以爲制於悍妻，不得自由之所致，然亦其過也。但以一時罪過，終棄不用，則全人幾何？昌臣有才藝，終爲難棄之人也。” 李諶議：“心術正直者爲君子，奸邪者爲小人。昌臣非臣之素與同事者，未知其用心何如，亦未聞顯顯之過。日者爭財之事敗露，欲免罪責，上書陳訴，未得辨明，終坐其罪。以此觀之，其非君子明矣。然其文藝漢學稍長於人，取其所長可也。” 尹愨議：“昌臣心術之微，臣不得知，以爭財之事觀之，其不爲君子明矣。然不可以一事之失，遽指爲小人而棄之也。” 金悌臣議：“君子小人之辨，古今所難。昌臣有才辯，遇事敢言，論議可觀，平日所爲，又無顯顯之過。

	<p>논하기를,  “신들은 이창신과 일찍이 일을 같이 해보거나 같이 있어 보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을 진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경연(經筵)에서 종종正大(正大)한 의논을 발설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윤(李掄)의 집 재물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바로 소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p> <p>하고, 한치례(韓致禮)·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이창신은 평소에 재사(才士)로 불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술(心術)의 은미한 데 있어서는 신들이 일찍이 함께 있어 보지 않았기에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요사이의 일로 본다면 재물에 있어서 구차하게 얻으려 하고 탄핵을 받자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여 하지 않는 짓이 없었으니, 군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도로 서용(敍用)하여 《대전(大典)》의 법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p> <p>하고, 정괄(鄭括)·노공필(盧公弼)·이세좌(李世佐)·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이창신은 재능(才能)과 기예(技藝)가 가상합니다마는, 그의 심술의 은미한 데 있어서는 신들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요사이 이윤의 재물을 탐하여 법을 무시하고 월소(越訴)를 하였으니, 단정한 사람이나 올바른 선비의 소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한때의 잘못 때문에 종신토록 서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성건(成健)·유순(柳洵)·권건(權健)·심인(沈潐)·윤탄(尹坦)·신종호(申從濩)는 의논하기를,  “이창신이 이윤이 남긴 재물을 차지하였으니, 진실로 올바른 사람의 소위는 아닙니다. 혹자는 사나운 아내에게 눌리어 자유(自由)로 하지 못하는 소치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그의 과오입니다. 다만 한때의 죄과(罪過) 때문에 종신토록 버려두고 서용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p>	<p>但貪李掄之財，上疏論辯，不知羞愧，此則甚非君子所爲也。然昌臣有可用之才，不可以一事之累而終棄不用。”</p>
--	--	---



	<p>니까? 이창신은 재능과 기예가 있으니 끝내 버려둘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집(李諱)은 의논하기를,  “심술이 정직한 사람은 군자이고 간사(奸邪)한 사람은 소인인 법입니다. 이창신은 신이 평소에 함께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에 그의 마음씀이 어떠한지를 알지도 못하겠고,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 과오를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재물을 다투던 일이 드러나게 되자 죄책(罪責)을 면하려고 하여 글을 올려 진소(陳訴)하였으나 변명되지 못하고 마침내 그의 죄에 걸렸었으니, 이로 본다면 군자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문예(文藝)와 한학(漢學)은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니, 그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윤민(尹愨)은 의논하기를,  “이창신의 세민한 심술은 신이 알지 못하지만, 재물을 다투는 일로 본다면 군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의 실수 때문에 그만 소인이라고 지목하여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김제신(金悌臣)은 의논하기를,  “군자와 소인을 가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창신은 재주와 언변(言辯)이 있어 일에 당하면 과감하게 말을 하여 의논이 불 만했고, 평소의 소위도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 과오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윤(李掄)의 재물을 탐하다가 상소하여 논변(論辯)하며 수치(羞恥)를 몰랐으니 이는 매우 군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창신은 임용(任用)할 만한 재주가 있으니 한 가지 일의 허물 때문에 끝내 버리고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18일(임신) 4번째기사</p>	<p>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장수를 보내어 변방 방비하는 것을 여러 대신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대신들의 의논대로 할 것은 없고 마땅히 장차 장수가 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특이한 사람을 가리어 남쪽 변방을 지휘하며 모든 포구(浦口)</p>	<p>○傳于承政院曰: “遣將備邊, 諸大臣皆云不可。 予意以爲不必大臣當擇將, 爲將帥智力卓異者, 仗鉞南邊, 號令諸浦, 如有賊變, 同心捕獲, 則可以無虞</p>

를 호령하다가 만일 적(賊)의 변(變)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잡도록 한다면 염려할 만한 일이 없게 되리라 여겨진다. 여러 대신들이 또한 말하기를, ‘모든 포구(浦口)의 만호(萬戶)가 지혜와 용맹이 모자라는데다가 겁이 많은 자질(資質)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혹시 적의 변이 있게 되면 바라만 보고도 두려워하고 몸을 움츠려 국가의 위엄을 손상시키니, 마땅히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어 체직해야 한다.’고 했다. 나의 생각에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만호들로 하여금 군사를 정돈하여 변방을 방비하다가 만일 왜노(倭奴)들이 틈을 타 침범해 온다면 끝까지 베거나 잡도록 하되, 만일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드러나게 그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가하고, 미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여기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홍흥(洪興)이 아뢰기를,  
 “이미 만호들로 하여금 각기 진(鎭)을 수비(守備)하여 왜구(倭寇)들을 막도록 해놓고 또한 만 장수를 보내어 모든 만호들로 하여금 그의 지휘를 받게 한다면, 비록 적변이 있게 되더라도 감히 먼저 출동하지 못하여 반드시 공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신의 생각에는 보내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 박성손(朴星孫)은 나이가 70이 넘었으므로 기력(氣力)이 쇠약하여 고달프고 정신이 흐리어 변소(便所)에 가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니, 적(敵)을 짐작해 보아 기발한 꾀를 내지도 못할 것이고 자신이 사졸(士卒)들의 앞장을 서지도 못할 것이고 요해지(要害地)를 보존하여 국경을 든든히 하지도 못할 것이 분명하니, 청컨대 그의 소임을 바꾸도록 하소서.”

하고, 도승지(都承旨) 한건(韓健)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경상도 병마 절도사(慶尙道兵馬節度使) 이흠석(李欽石)은 오랜 병이 한층 더해 약과 음식과 미음이나 죽으로 겨우 몸을 보존한다니, 변에 대

矣。諸大臣又云：‘諸浦萬戶，智勇淺短，資質怯懦者，廁於其間，若有賊變，觀望畏縮，虧損國威，當揀其不勝任者遞之。’予意不然。預令萬戶整軍備邊，若有倭奴乘間來犯，則窮極誅捕，如其不效，顯治其罪可也，不可預料其不勝任也。其議以啓。”右承旨洪興啓曰：“既使萬戶各守其鎭，以禦倭寇，而又遣別將，使諸萬戶聽其節度，則雖有賊變，莫敢先動，必至於無功矣。臣意不遣爲便。全羅道節度使朴星孫年踰七十，氣力衰憊，精神昏耗，至於如廁必待人扶持，其不能料敵出奇，身先士卒，保固疆圉明矣。請換其任。”都承旨韓健啓曰：“臣聞慶尙道兵馬節度使李欽石宿疾轉篤，以藥餌糜粥，僅保其軀，其能應變而擒賊乎？請罷其任。”傳曰：“右承旨之言是矣。萬戶各守其鎭，幸有賊變，令自爲戰可也。星孫，勇將也。昔者昌城爲野人所圍，幾不保，星孫以數騎，突入赴援，野人解去，非勇力特異者不能也。今既老矣，果扶持而行，則不稱邊將之任矣。然進退將帥，國之重事。星孫、欽石不合邊將與否，亟問于吏·兵曹可

	<p>응하고 도적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임을 그만두게 하기를 바랍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우승지의 말이 옳다. 만호는 각기 자기가 맡은 진을 지키는 것이니, 혹시 적의 변이 있게 된다면 자신이 싸움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박성손은 용맹스러운 장수였다. 지난날에 창성(昌城)이 야인(野人)들에게 포위당하여 거의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박성손이 두어 기병(騎兵)과 돌진(突進)하여 들어가 구원하자 야인들이 해산하여 갔었으니, 용맹과 힘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미 늙기는 하였지만 과연 부축하여야 다니게 된다면 변장(變將)의 소임에 맞지 않겠다. 그러나 장수를 진퇴(進退)함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박성손과 이흠석이 변장에 합당한지 않은지를 속히 이조와 병조에 물어보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也。”</p>
<p>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23일(정축)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윤공(尹兢)이 아뢰기를,</p> <p>“여러 도(道)의 수령(守令)들이 청렴하고 공평한 사람은 적고 대개 모두 탐오(貪汚)하여 턱없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이는데, 국고(國庫)의 곡식을 거두어 들고 내주고 할 때에 있어서도 두량(斗量)을 공평하게 하지 않아 남게 되는 곡식이 넘치지만, 백성은 광에 간직할 것이 없으니, 청컨대 어사(御史)를 보내어 법에 어긋나는 것을 규찰(糾察)하고 겸하여 민간의 폐해도 살피게 하소서.”</p> <p>하고, 집의(執義) 구숙손(丘夙孫)은 아뢰기를,</p> <p>“지난날에는 조관(朝官)을 보내어 불시(不時)에 규찰하고 검거(檢舉)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두려워하고 꺼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숨은 미미한 일을 적발하므로 자칫하면 완전한 사람이 없게 되어 가혹하게 살피는 것에 가까웠기</p>	<p>○御經筵。講訖，獻納尹兢啓曰：“諸道守令廉平者寡，率皆貪汚，厚斂於民，至於倉穀斂散之時，概量不平，羨餘充溢，而民無蓋藏。請遣御史，糾察非法，兼訪民瘼。”執義丘夙孫啓曰：“向者遣朝官不時糾舉，故守令畏憚，然發擿隱伏，動無全人，近於苛察，故不復舉行。今擇剛明朝臣，職帶御史，按行郡縣，糾劾貪殘，出入閭閻，問民疾(告) [苦]，則冤抑自伸，而貪墨者無所容矣。”領事李克培啓曰：“臣聞中朝常令御史，巡行天下，糾劾</p>

때문에 다시 거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직하고 분명한 조신을 가리어 어사의 직을 띠고서 고을을 순행(巡行)하며 탐오하고 잔인한 짓 하는 것을 규찰하고 탄핵하게 하여, 여염(閭閻)에 드나들며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묻도록 한다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자연히 펴이게 되고 탐오한 자들이 용납받을 데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는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중국에서는 항시 어사로 하여금 천하를 순행하며 비위(非違)를 규찰하고 탄핵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땅이 좁고 백성이 적어 상례로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어사를 보내어 고을들을 순행하게 하되 우연히 한 번씩 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추첨(抽籤) 적간(摘奸)을 지금은 이미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한 아전(衙前)들이나 백성들은 부민 고소(部民告訴)의 금법(禁法)에 얽매이므로, 비록 탐오하고 어긋나는 짓을 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조정에서 듣지 못하고 있다. 조정 의논이 모두들 ‘감사(監司)가 현명하면 어리석은 자는 내치고 현명한 사람은 등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사의 이목(耳目) 역시 두루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으니 이번에 어사를 차정(差定)하여 모든 도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일찍이 듣건대, 어사가 지경에 들어가기도 전에 앞질러 소식이 전파되어 서로가 알려 주므로 속된 관원들이 모두 간사한 짓을 엄폐하고 잘못된 것을 숨기어 간사하게 걸만 꾸미게 되는데, 어사는 역마(驛馬)를 타고 지나가므로 사세가 미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사가 그 도에 있노라면 온 도가 숙연(肅然)하여 봉공(奉公)하며 법을 지키게 될 것이니, 유익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였는데, 지사(知事) 이극중(李克中)이 아뢰기를,

非違。我國地窄民少，不可例以爲常，特遣御史巡行郡縣，可偶一爲之矣。”

上曰：“抽籤摘奸，今旣不行。又吏民拘於部民告訴之禁，雖有貪枉，無由得訴，故守令不法，朝廷未聞。朝議皆云：‘監司賢則可以黜陟幽明。’監司耳目亦有所未周，今差御史，分遣諸道可矣。然嘗聞御史未入境，先聲播聞，轉相告報，俗吏皆掩奸匿瑕，詐飾於外，而御史乘駟而過，勢未及知。然御史在道，則一道肅然奉公守法，不可謂無益也。”

知事李克培啓曰：“臣聞御史帶行書吏，假威藉勢，恐嚇郡縣，鈞取賂物，以利於己，其弊不小，不可不慮。”

上曰：“予亦聞此弊。然御史可以禁制之。”

尹兢又啓曰：“講武扈從將士，或賜兒馬，或賜弓矢。臣子侍衛從戎，皆職分所當爲，而如此濫賞，可乎？《詩》曰：‘彤弓昭兮，受言藏之。我有嘉賓，鍾鼓既設，一朝饗之。’是諸侯有四夷之功然後賜弓矢矣。今者沿路之民，講武時百役俱作，江原道年穀不稔，民戶鮮少，講武支應困敝尤甚。臣意以謂或減租，或蠲逋負，以償其勞可也。”

上顧問左右，克

“신이 듣건대, 어사가 데리고 다니는 서리(書吏)들이 위엄을 빌리고 권세를 빙자하여 고을에다 공갈하고 위협하여 뇌물을 낚아채어 자신을 이롭게 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다고 하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나도 역시 그런 폐단을 부린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어사가 금단하고 제재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윤공이 또 아뢰기를,

“강무(講武) 때에 호종(扈從)했던 장사(將士)들에게 아마(兒馬)를 내리기도 하고 활과 화살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신자(臣子)가 시위(侍衛)하면서 종군(從軍)하는 것은 모두 직분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인데, 것처럼 외람하게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새로 만든 붉은 활 받아서 간직해왔더니, 나의 좋은 손님 오자 마음속에 주고 싶도다. 어느새 종과 북 차려놓고 그만 잔치 대접하도다.’ 하였는데, 이는 제후(諸侯)가 사방 오랑캐들을 다스린 공이 있게 된 다음에 활과 화살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번의 강무 때는 연로(沿路)의 민간들이 온갖 사역(使役)을 다하였고, 강원도(江原道)는 울 곡식이 여물지도 않은데다 사는 민가(民家)가 희소하여 강무를 뒷바라지 하느라 곤란과 폐해가 더욱 심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더러는 조세(租稅)를 감해 주고 더러는 바치지 못한 구실을 감해 주어 그들의 노고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의 좌우를 돌아보며 묻자,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국가의 재정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한때의 소소한 노고 때문에 경솔하게 조세를 감할 수는 없습니다. 관(官)에 부채(負債)를 지고도 갚지 않는 자는 곤궁한 백성이 아니라 곧 그 마을의 드센 백성이 권세 있는 사람을 끼고 그의 위력을 믿으며 수령을 두려워하지 않아 해마다 갚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므로, 혜택이 곤궁한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培啓曰：“國家財用不裕，不可以一時微勞，輕易減租也。負官物不償者，非窮民，乃閭右之民，挾勢恃威，不畏守令，年年不償，以待國家之蠲免。惠不及窮民，而豪猾先蒙其利也。”上曰：“然。”

	드세고 교활한 사람들이 먼저 그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다.” 하였다.	
성종 234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1월 25 일(기묘) 4번째기사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박송질(朴崇質)이 와서 아뢰기를, “올해는 비록 흉년이 들지는 않았지만 역시 풍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사민(徙民)을 해야 하는데 강무(講武)마저 하게 되어 하고 있는 역사가 매우 수고로우니, 마땅히 조금 편케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신축년(21681)과 계묘년(21682)에 경창(京倉)의 환상(還上)을 한꺼번에 독촉하여 받았으므로 민간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정소(呈訴)하게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경창에서는 단지 신축년의 것만 받고 주창(州倉)의 것은 아직 정지하여 후년(後年)을 기다렸다 점차로 수납(收納)하게 하여 민간의 마음을 안정시켰으며 합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만일 감사의 말대로 하였다가 내년에도 역시 불행하게 흉년이 든다면 반드시 수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호조(戶曹)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京畿觀察使朴崇質來啓曰：“今年雖不至歉，亦不可謂豐也。今當徙民，加以講武，服役甚勞，宜可小康。去辛丑、癸卯年京倉還上，一時督納，民不堪其苦，至於呈訴。臣意以謂京倉則只徵辛丑年，州倉則姑停之，待後年漸令收納，以安民心。”傳于承政院曰：“若從監司之言，而明年亦不幸凶歉，則必不得收納矣。其議于戶曹以啓。”
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5일 (무자) 2번째기사	임금이 주서(注書) 최세걸(崔世傑)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재물을 훔쳐간 것을 듣고 관마(官馬) 한 필과 쌀 5석, 콩 3석을 내려 주었다.	○上聞注書崔世傑家有盜竊財而去，賜官馬一匹、米五碩、豆三碩。
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5일 (무자) 3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 전교하기를, “황해도에 강도(強盜)의 말에 연루된 자 40여 명이 어찌 모두 참도둑이겠는가? 서서히 국문하여 사실에 따라 자세히 분별할 것이며, 그 주장관(主掌官)으로서 공향(供餉)21705)을 제때에 못하였거나 의금부 관원으로서 검거하지 못한 자는 모두 죄를 주라.”	○傳于義禁府曰：“黃海道強盜辭連者四十餘人，豈皆眞盜耶？徐徐鞫問，從實詳辨。其主掌官供餉失時者與禁府官員不能檢舉者，皆罪之。”

<p>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7일 (경인) 1번째기사</p>	<p>하였다. 부림군(富林君) 이식(李湜)이 졸(卒)하였다. 식은 천성(天性)이 충담(沖淡)하고 의기(意氣)가 한가롭고 고요하며 시주(詩酒)로써 스스로 즐겼는데, 한 시대의 문인 재사(文人才士)가 더불어 노는 이가 많았다. 즐함에 미쳐 사람들이 많이 애석해 하였다.</p>	<p>○庚寅/富林君湜卒。湜天性沖淡，意氣間靜，以詩酒自娛，一時文人才士，多與之遊。及卒，人多惜之。</p>
<p>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12일(을미) 3번째기사</p>	<p>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봉(李封)이 상소하기를, “저번에 사헌부에서, 신이 법을 어기며 속전(贖錢)을 거두어, 기공(妓工)의 장복(粧服)·악기(樂器) 등을 갖춘 일을 탄핵하여 두세 번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는데, 신이 스스로 변명한 말이 사헌부의 추핵(推劾)한 문서에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사헌부(司憲府)에서, ‘장(杖)을 쳐야 마땅한 자에게 속(贖)을 거두었다.’고 범연히 일컫고 일찍이 그 사람을 낱낱이 들어 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 사헌부 관원이 어찌 들은 바가 없이 망령되게 억측(臆測)을 가지고 두세 번 아뢰어 청하였겠습니까? 이 일을 주장하는 자가 지금은 비록 외방(外方)에 있을지라도 동료(同僚)가 아직 있으니, 반드시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확정지으면서 아무아무 사람이 아무아무 죄가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 뒤에 같은 말로 추국(推鞫)하기를 아뢰어 청하였을 것입니다. 엇드려 빌건대 법을 어겨서 속(贖)을 거둔 자가 어떤 사람이며 또 이같은 자가 몇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친히 물어서, 속전을 낸 자의 범죄의 경중(輕重)으로써 신의 죄를 참작해 정하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가항(街巷)의 필부(匹夫)라 하더라도 오히려 억울함을 펴려고 하는데, 하물며 신은 비록 무상(無狀)할지라도 또한 대부(大夫)의 뒤에 있는데, 소외(疎外)를 당하면서까지 성조(聖朝)에서 끝까지 입을 다물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그 끝에 쓰기를, “내가 어린 임금의 아인데, 어찌 생각이 없겠는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대간(臺諫)에게 친히 물은 뒤에 이 일을 판단하게 하는가?” 하였다. 인하여 경연관(經筵官)·재상(宰相)·대간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심</p>	<p>○知中樞府事李封上疏曰： 頃者，憲府劾臣違法徵贖，辦妓工粧服樂器等事，再三請鞫。臣之自明之辭，於憲府推劾之章已具。但憲府泛稱‘應杖者收贖’，而不曾枚舉其人。其時憲官，豈無所聞而妄將臆意，以至再三啓請耶？主張此事者，今雖在外，同僚尙在，必與同議商確，的知某某人某某罪昭晰明白，而後同辭啓請推鞫。伏乞一一親詢，違法贖者何人，且如此者幾人，乃以見贖者罪犯輕重，酌定臣罪，不勝幸甚。雖街巷匹夫，尙欲伸冤，臣雖無狀，亦在大夫之後，不宜疎外終默於聖朝。 御書其尾曰： 予非幼君，寧不思之？何至教予親詢臺諫然後，乃判此事乎？ 仍命經筵宰相、臺諫議之。沈滄議：“李封妓工粧服過侈、有罪人收贖與否，遣朝官詳考啓聞後，定罪未晚。”李克培議：“臣意以爲妓工粧服係關野人瞻</p>

	<p>회(沈澹)는 의논하기를,  “이봉(李封)이 기공(妓工)의 장복(粧服)을 지나치게 사치하게 한 것과 죄가 있는 사람에게 속전(贖錢)을 거두었는지의 여부를 조관(朝官)을 보내어 자세히 상고하여 계문(啓聞)한 뒤에 죄를 정하여도 늦지 아니합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기공의 장복은 야인(野人)의 듣고 보는 데에 관계되므로 누추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사치함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속전을 받은 일에 있어서 만약 속전을 받아서는 안될 것을 받았다면 이는 진실로 죄가 있으나, 아직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마 사죄(私罪)가 아닐 듯합니다.”  하며,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이봉이 거행한 일이 모두 시의(時宜)에 적합하면 인심이 선동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공(妓工)과 금(琴)·고(鼓)의 장식은 이봉이 이미 자복하였고, 속전을 거둔 일을 자세히 핵실하지 아니하고서 갑자기 징수한 죄를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하고, 신준(申浚)은 의논하기를,  “영안도(永安道)는 인심이 완악(頑惡)한데, 이봉은 도(道)의주인으로서 편히 무마하지 못하였으니, 허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이병정(李秉正)은 의논하기를,  “양계(兩界)의 기공의 장식은 갖추지 아니할 수 없으나 속전을 징수한 것이 지나치게 많음은 부당할 듯합니다.”  “영안도는 인심이 완악하고 어리석은데, 이봉이 편히 무마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건대, 내가 물은 바와 같지 아니하다. 상소에 이르기를,</p>	<p>視, 不可麤陋。 但過侈則不可。 且收贖事, 若不應贖而贖, 則固爲有罪。 而今不閱實, 又恐非私罪。” 李克均議: “李封舉事皆合時宜, 則人心無由扇動。 其妓工琴鼓之粧, 李封既服。 至於徵贖之事, 不詳覈而遽加濫徵之罪, 似爲未穩。” 申浚議: “永安道人心頑惡, 然李封以道主不能安撫, 不可不罪。” 李秉正議: “兩界妓工之粧, 不可不備。 然徵贖過多, 似不當。” 金悰議: “永安道人心頑愚, 李封不能安撫, 其罪不可恕也。” 傳曰: “今觀群議, 舉予之所問不同。 疏云: ‘伏乞一一親詢。’ 又云: ‘不宜疎外終默於聖明。’ 予於大臣, 豈有親疎乎? 妓工粧服, 乃世祖朝特命修舉, 不可援以爲例也。 民心騷擾, 豈無所由? 而今所云如是, 於宰相意何如? 政院亦議啓。” 克均啓曰: “臣意以謂李封方被劾議罪之時, 不宜上疏自明也。 自古大臣被劾, 當含默自退, 反躬刻責。 今封之疏語, 不合大臣之道。” 悰啓曰: “焉有人臣輕發如此之語乎?” 時, 他宰相過飲宣醞, 或先出, 或醉困, 故克均與金悰啓之。</p>
--	--	--



‘엎드려 빌건대, 하나하나 친히 물으소서.’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소의(疎外)를 당하면서까지 성명(聖明)에게 끝내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대신들에게 어찌 친함과 소외함이 있겠는가? 기공(妓工)의 장복(粧服)은 바로 세조조(世祖朝)에서 특별히 수거(修擧)하기를 명하셨으나, 그것을 끌어서 예(例)로 삼을 수는 없다. 민심이 소요(騷擾)한 것은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른 바가 이와 같으니, 재상의 뜻은 어떠한가? 승정원(承政院)에서도 의논해 아뢰라.”

하니,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이봉이 바야흐로 탄핵을 입어 죄를 의논하는 때에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예로부터 대신이 탄핵을 입으면 마땅히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 물러나서 자신을 반성하고 꾸짖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봉이 상소한 말은 대신의 도리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김중(金棕)은 아뢰기를,

“어찌 신하로서 이와 같은 말을 가볍게 발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다른 재상은 선운(宣醜)21732) 을 지나치게 마시어 혹은 먼저 나가기도 하고 혹은 취해서 곤하였기 때문에, 이극균·김중만 아뢴 것이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김중(金棕)은 붓을 잡고 얼마동안 한 말도 내지 아니하다가 신준(申浚)의 의견을 취하려고 하여 그 이름을 쓰고는 다시 신준의 의논을 표절(剽竊)해서 썼고, 최호(崔浩)는 무릎으로 가서 이극배의 앞에 나아가 그 의논을 보고자 하니, 이극배가 눈을 부릅뜨고 흘겨 보면서 말하기를, ‘저런, 저런, 어찌하여 나의 의견을 취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니, 이극균이 곁에서 말하기를, ‘대형(大兄)은 어찌하여 대간(臺諫)을 대우하기를 이같이 합니까?’라고 하였다. 최호는 재주가 없고 지식이 어두워서 본래 사림(士林)에 끼이지 못하였는데, 대관(臺官)으로서 욕을 당하고도 예사로 여기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다.

【史臣曰：“金棕操筆移時不出一辭，欲取申浚之議，書其名，更剽竊申浚之議而書之。崔浩膝行就李克培之前，欲觀其議，克培瞋目疾視曰：‘彼哉彼哉！何爲取吾議也？’李克均從傍止之曰：‘大兄何待臺諫如是？’浩才乏識暗，素不爲士林所齒。以臺官逢辱，恬不知愧。”】

<p>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13 일(병신) 3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의 생일이므로 주악(酒樂)과 진수(珍羞)21734) 를 풍족하게 내려 주고 임금이 어제시(御製詩) 한 편(篇)을 손수 써서 비밀히 중관(中官)을 보내어 내려 주며 이르기를, “감히 시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경이 한 번 즐기고 웃는 데 이바지할 뿐이니, 외인에게 보이지 말 것이다.” 하였다.</p>	<p>○領敦寧尹壕生日。 賜酒樂珍羞甚豐。 上手書御製詩一篇，密遣中官賜之曰：“非敢作詩也，以資卿一戲笑耳。 其勿示外人。”</p>
<p>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15 일(무술) 4번째기사</p>	<p>내관(內官) 김현손(金賢孫)이 와서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 수복(守僕) 석시(石屎) 등이 어실(御室)에 들어가서 도박(賭博)을 하고 술을 마시며 인하여 서로 싸우다가 화로를 차 넘어뜨려서 지의(地衣)21743) 를 불살랐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회부시키라고 명하였다 입직(入直)한 종친(宗親) 안강정(安康正) 이양(李良)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석시(石屎) 등을 신이 곧 취초(取招)하여 사유를 갖추어 아뢰고자 하였는데,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가 말리기 때문에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제(躋)가 와서 아뢰기를, “말린 것은 신이 아니라 아들 검성정(劍城正)이 신의 말로써 말렸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옥산군(玉山君)이 아는 바가 아니다. 대죄하지 말 것이다. 내관(內官) 김현손(金賢孫)에게 쌀 7석과 황두(黃豆) 5석을 내려서 포상하라.” 하였다.</p>	<p>○內官金賢孫來啓曰：“文昭殿守僕石屎等入御室，賭博飲酒，因而相鬪，踢(到)〔倒〕火爐，以薰地衣，請罪之。” 命下義禁府。 召入直宗親安康正良問之，對曰：“石屎等臣即取招，具由欲啓，玉山君躋止之，故不啓之。” 躋來啓曰：“止之者，非臣也，子劍城正以臣之言止之。 請待罪。” 傳曰：“然則非玉山君所知也，勿待罪。 內官金賢孫，可賜米七碩、黃豆五石以賞之。”</p>
<p>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18 일(신축) 3번째기사</p>	<p>안접사(安接使) 이철견(李鐵堅)이 아뢰기를, “의주(義州)는 면포(綿布) 한 필 값이 쌀 입곱 말이고 용천(龍川)·철산(鐵山)은 면포 한 필 값이 벼 두 섬입니다.” 하므로, 명하여 집의(執義) 구숙손(丘夙孫)을 불러서 묻게 하니, 구숙손이 아뢰기를,</p>	<p>○安接使李鐵堅啓：“義州綿布一匹直米七斗， 龍川、鐵山綿布一匹直稻二碩。” 命召執義丘夙孫問之。 夙孫啓曰：“臣到平壤，與從事官姜居孝相話，語及義州築城事。 居孝云：‘今年義州</p>

	<p>“신이 평양(平壤)에 이르러 종사관(從事官) 강거효(姜居孝)와 서로 이야기하다가 말이 의주(義州)의 축성(築城)의 일에 미쳤는데, 강거효가 말하기를, ‘금년에 의주에 수재(水災)가 있어서 곡식이 잘되지 못하여 면포 한 필 값이 쌀 네 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이 아뢰는 것뿐입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 “알았다.”</p> <p>하였다.</p>	<p>有水災， 年穀未稔， 綿布一匹直米四斗。’ 故臣啓之耳。” 傳曰：“知之。”</p>
<p>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18 일(신축) 4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진약(進藥)21746) 을 그치지 않으시고, 날씨도 매우 추우니, 청컨대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정지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해 하겠다.”</p> <p>하였다.</p>	<p>○議政府啓：“近日進藥不輟， 日且苦寒， 請停常參、經筵。” 傳曰：“予當斟酌爲之。”</p>
<p>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21 일(갑진) 2번째기사</p>	<p>경차관(敬差官) 정석견(鄭錫堅)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밀양 부사(密陽府使) 허혼(許混)의 아내 박씨(朴氏)가 상언(上言)하기를, ‘가옹(家翁)이 수산 둔전(守山屯田)에 올벼[早稻]를 심고자 하여 피맥(皮麥) 3백 석을 배에 싣고 호장(戶長) 맹희(孟熙)를 시켜 양산(梁山) 등지에서 올벼와 바꾸게 하였는데, 맹희는 절후가 늦음으로 인하여 단지 올벼 한 섬만 바꾸었기 때문에 본부(本府)의 백성에 대해서는 청원에 따라 서로 바꾸게 하여 수산창(守山倉)에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은 모두 감사에게 신품(申稟)한 뒤에 행하였고 문안(文案)이 모두 있는데 경차관(敬差官)은 가옹(家翁)을 보고 두 배[船]의 곡식을 도둑질해 갔다고 하여 수금(囚禁)해 놓고 추국(推鞠)하니, 억울한 고민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상언(上言)한 말은 족히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고발한 자의 말도 어찌 모두 옳다고 하겠는가? 대저 옥사(獄辭)는 밝고 바르게 분간하여 범한 자로 하여금 그 죄를 달게 받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모름지기 자세히 상고하고 밝게 분변하여 억울</p>	<p>○下書敬差官鄭錫堅曰： 密陽府使許混妻朴氏上言：“家翁於守山屯田欲種早稻， 以皮麥三百碩載船， 令戶長孟熙換早稻于梁山等處。 孟熙因節晚， 只換早稻一碩， 故於本府人民， 從情願相換， 納于守山倉。 此事皆申稟監司然後乃行， 文案俱在。 而敬差官以家翁， 爲盜穀二船而去， 囚禁推鞠， 冤悶爲如何也?” 予以爲上言之辭， 雖不足信， 而告者之言亦豈皆是哉? 大抵獄辭明正分揀， 使犯者甘受其罪可矣。 須詳考明辨， 不至冤枉。</p>

	함에 이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25 일(무신) 2번째기사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서 여염(閭閻)에 불을 밝히는 자를 모두 화금(火禁)을 범하였다고 하여 아울러 기록해 아뢰니, 전교하기를, “여염 사람이 밤을 짓는 자가 낮에 미처 못하면 밤에 등불을 켜는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백공(百工)들이 기술을 연마하느라 낮에서 밤까지 계속하는 자가 많은데, 어찌 이로써 금화를 범하였다고 하겠는가? 어리석은 백성이 불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해사(該司)에서 길을 순행하면서 경계할 뿐인데, 이제 만약 이와 같이 하면 도리어 백성에게 해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금하지 말고 상례(常例)로 하라.” 하였다.	○修城禁火司，以閭閻明火者，皆以爲犯火禁，竝錄以啓。”傳曰：“閭閻人炊爨者，未及其晝，則當夜設燈，固也。況百工治藝，夜以繼日者多，安可以此爲犯禁乎？愚民不慎火，該司巡于路以警之而已。今若如此，反爲民害矣。自今勿禁，例以爲常。”
성종 235권,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 (弘治) 2년) 12월 26 일(기유) 1번째기사	임금이 두 대비(大妃)에게 진연(進宴)하였다. 명하여 종재(宗宰) 2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와 입직(入直)한 제장(諸將)과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승정원(承政院)을 불러서 명정전(明政殿) 뜰에 잔치를 내려 주고 흠뻑 취하도록 마시게 하였다.	○己酉/上進宴于兩大妃。命召宗宰二品以上、議政府、忠勳府、六曹、漢城府、入直諸將、臺諫、弘文館、藝文館、承政院，賜宴于明政殿庭，令極醉飲。
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월 1일 (갑인) 3번째기사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회례연(會禮宴)을 열었는데, 왜인(倭人) 성능(盛能) 등 39명과 야인(野人) 남라(南羅) 등 85명이 들어와서 참석하였다.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술을 내려 주게 하고, 인하여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御仁政殿，設會禮宴，倭人盛能等三十九人，野人南羅等八十五人，亦入參。命承旨，賜酒，仍賜物有差。
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월 4일 (정사) 2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신이 적발한 태안 군수(泰安郡守) 송걸(宋傑)의 불법(不法)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승삭(繩索) 등의 물건을 호(戶)를 계산하여 나누어 정하고 하나하나 징납(徵納)하게 하였는데, 이는 비록 모두 쓸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두는 것이 편맹(編氓)21770)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러 가지 물	○御經筵。講訖，侍讀官趙之瑞啓曰：“臣所摘泰安郡守宋傑，不法有九條。繩索等物，計戶分定，一一徵納，此雖皆有用處，不可斂及編氓也。多般物件，稱貢物未收，或一二斗。或三四斗，巧作名色以斂，至如生麻，亦頭會

건을 공물 미수(貢物未收)라고 일컫고는 혹은 한두 말, 혹은 서너 말을 교묘히 명목을 만들어 거두었고, 생마(生麻)와 같은 것까지도 두회(頭會)21771) 하여 거두었는데, 신이 송걸을 불러 생마를 쓸 곳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장차 그물을 엮겠다.’고 합니다. 군(郡)에는 어염(魚鹽)의 이(利)가 있으니, 한 사람의 향리(鄉吏)로 하여금 어염을 가지고 생마를 구하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해(荒蟹)는 바닷가에서 천하게 여기는 물건이므로, 비록 아사이졸(衙仕吏卒)21772) 을 시켜서 취하더라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온 고을 백성을 써서 십오(什伍)21773) 로 통(統)을 만들어 수량을 정하여 거두며, 혹은 창고 직숙(倉庫直宿)이나 아사(衙仕)를 여러 가지로 호령하여 조금이라도 지연됨이 있으면 궤도(闕到)21774) 라고 하며 호미·낫·도끼·자귀 등속을 모두 거두어 빼앗고 털끝만큼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을[郡]에 철장(鐵場)이 있어서 야련(冶鍊)21775) 에 할당이 있을 것인데 어찌 남는 것이 없겠습니까? 백성에게 사납게 거두지 아니하더라도 철을 쓰기에 넉넉합니다. 그리고 혹은 표피(豹皮) 값이라고 일컫고 혹은 말값[馬價]이라고 일컬으며 명목없이 거두는 것까지 모두 면포(綿布)로써 기한을 정해 거두는데, 조금이라도 수량에 차지 아니하면 가마솔이나 쟁기·보습·불이를 모두 다 거두어 취하니, 가난한 백성이 무슨 수로 밥을 지어 먹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면포 분투(分套)21776) 등의 물건을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의 처소에 법을 어기면서 보냈고, 또 흉년을 구제하는 과염(課鹽)의 수량을 갑절로 거두어 사사로이 쓰면서 기탄하는 바가 없으니, 그 방자하게 수탈함이 이처럼 심한데다, 또 청송(聽松)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지난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무릇 전택(田宅)·노비(奴婢)의 소송으로 의논하도록 접수하여 본군(本郡)에 송부한 것이 무려 30여 사건인데 단지 한 가지 일만 판결하였을 뿐입니다. 촌야(村野)의 농민이 억울함을 품고서 퍼기를 구하는데 관리의 태만함이 이와 같으니, 원통하고 억울함을 어느 때에 그치게 하겠습니까? 또 무신년(21777)·기유년(21778) 양년

以斂，臣召宋傑，問用麻處，答云：‘將以結網也。’郡有魚鹽之利，使一吏持魚鹽求麻，亦可以足用。荒蟹，海濱賤物，雖使衙仕吏卒取之，可以多得，今乃用闔郡之民，什伍爲統，定數以斂，或倉庫直宿，或衙仕，多般號令，少有稽緩，以爲闕到，鋤、鎌、斧、斤之屬，悉皆收奪，無絲毫假貸。郡有鐵場，冶鍊有課，豈無羨餘？雖不橫取於民，用鐵有裕。或稱豹皮價，或稱馬價，以至無名科斂，皆以綿布，刻期以收，小不準數，釜鼎耒耜之屬，悉皆收取，貧殘之民，何由火食而業農？絺布分套等物，於兵馬節度使處，違法送進，且救荒歲課鹽，倍數而斂，私自用之，無所忌憚，其橫斂掊克，如此其甚。而又不致意於聽訟，自前年夏至冬，凡田宅奴婢，相訟受議，送付本郡者，無慮三十餘事，只決一事而已。村野之民，抱冤求伸，而吏之懶慢如此，冤抑何時已耶？且戊申、己酉兩年，莞草一百三十餘斗，皆於民間斂之。請并推鞠。臣又見私倉三面，樓庫高峙，財廩充溢，非暴斂漁取於民，何以至此。”上曰：“朝廷雖加撫恤，

	<p>에 완초(莞草)21779) 1백 30여 두(斗)를 모두 민간에서 거두었습니다. 청컨대 모두 추곡(推鞠)하소서. 신이 또 보건대 사창(私倉)의 삼면(三面)에 누고(樓庫)가 높이 솟았고 재물과 곡식이 차서 넘쳤으니, 백성들에게 사납게 거두고 착취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이에 이르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조정에서 아무리 무휼(撫恤)을 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백성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은 이같은 수령(守令)이 그들을 침어(侵漁)21780) 하기 때문이다. 이미 행대(行臺)21781) 로 하여금 추곡하게 하였으니, 마침내는 마땅히 자복할 것이다.”</p> <p>하였다. 장령(掌令) 홍형(洪炯)이 아뢰기를,  “송결(宋傑)이 수탈(收奪)하여 백성을 해롭게 하였으니, 청컨대 그 직(職)을 파면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추핵(推覈)하기를 기다려서 죄를 결정한 뒤에 파직시켜도 늦지 아니하다.”</p> <p>하였다. 헌납(獻納) 이식(李湜)이 아뢰기를,  “도중(都中)에서 음사(淫祀)를 숭상하고 무격(巫覡)이 성행(盛行)하니, 청컨대 금령(禁令)을 다시 밝히소서.”</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금지하는 법령이 《대전(大典)》에 나타나 있는데 관리들이 잘 거행하지 않기 때문이다.”</p> <p>하였다. 홍형이 아뢰기를,  “본부(本府)21782) 에서 음사(淫祀)를 적발한 것은 모두 죄주었고 무녀(巫女)가 도중(都中)에 있는 자는 모두 성밖으로 내쳤으니, 금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p> <p>하였다. 이식이 또 아뢰기를,</p>	<p>而實惠不能及民者，此等守令，爲之侵漁也。已令行臺推鞠，終當自服矣。”</p> <p>掌令洪炯啓曰：“宋傑掊克害民，請罷其職。”上曰：“待推覈定罪後，罷職未晚。”獻納李湜啓曰：“都中崇尚淫祀，巫覡盛行，請申明禁令。”上曰：“禁止之令，著在《大典》，官吏不能舉行爾。”洪炯啓曰：“本府擿發淫祀者，悉皆罪之，巫女處都中者，悉出城外，非不禁也。”李湜又啓曰：“臣見昔時，關防固密，譏察詳明，故京外盜賊，不能相通，今者關防疎虞，無文引者，恣意往來，此不可不慮。”上曰：“令該司，依舊檢察可也。”</p> <p>【史臣曰：“之瑞爲御史，擿發宋傑事，欲擠陷之，吹毛覓疵，備陳衆醜。之瑞性頗險詖，好訐以爲己任，故屢爲御史，常星馳電邁，出入官府，如野鶴、趙，而不能言其名，令人畏怯，一至於此。巡按之時，服色無常，或爲官服，或爲微服，人莫測其所爲。”】</p>
--	--	---

	<p>“신이 보건대 예전에는 관방(關防)이 튼튼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서울과 외방의 도적이 서로 통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관방이 허술하여 문인(文引)21783) 이 없는 자도 마음대로 왕래하니, 이를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예전대로 검찰(檢察)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조지서(趙之瑞)가 어사(御史)가 되어 송결(宋傑)의 일을 적발하여 배척해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여 세밀하게 하자(瑕疵)를 찾아서 모든 잘못을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조지서의 성품이 매우 음험하고 치우쳐서 남의 잘못을 적발하는 것을 좋아하여 자기의 임무로 삼기 때문에 여러 번 어사가 되었고, 항상 성화(星火)처럼 달리고 번개처럼 다니면서 관부(官府)에 출입하기를 송골매[野鶻]처럼 하므로, 사람들이 맹호(猛虎)라고 이르고, 인리(人吏)가 갑자기 보아도 ‘조(趙), 조’ 하면서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였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겁내게 함이 일체 이와 같았다. 순안(巡按)21784) 할 때에 복색(服色)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관복(官服)을 입기도 하고 혹은 미복(微服)21785) 을 입기도 하여, 사람들이 그 하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였다.” 하였다.</p>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월 4일  (정사) 3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군현(郡縣)에 의창(義倉) 곡식의 수량이 원액(元額)만 있는데, 석전(釋奠)에 쓸 것과 교관(敎官)을 먹이는 데에 그 비용이 작지 아니하며, 또 경인년21786) 과 을사년21787) 에 흉년 구제로 나누어 주고 아직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해마다 줄고 달마다 감소되어 만약 수백 년이 지나면 그 남은 것이 얼마이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경주(慶州)의 14만 석과 평양(平壤)의 20여 만 석은 한갓 그 액수(額數)만 있다고 합니다.</p>	<p>○御晝講。講訖，趙之瑞啓曰：“諸道郡縣，義倉穀數，止有元額，而釋奠所需，敎官所饋，其費不貲，且於庚寅、乙巳年，救荒分給，未盡充數，以此歲耗月減，若復數百年，則其餘幾(問)〔何〕？臣聞慶州之十四萬，平壤之二十餘萬，徒存其額。在今聖時，國家</p>

	<p>지금 성시(聖時)21788) 에 있어서는 국가가 승평(昇平)하여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무력을 쓸 만한 지역이므로, 만일 불의의 사변이 있으면 군사와 식량을 먼저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손진(臧孫辰)21789) 이 제(齊)나라에서 곡식을 사들이자, 성인(聖人)21790) 이 경(經)21791) 에 써서 그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한(漢)나라 초기에 천하가 재력(財力)이 다하였는데, 가산(賈山)이 상서(上書)하여 축적(蓄積)할 계책을 말하자, 문제(文帝)가 백성들의 조세(租稅)를 경감하여 생활하게 하고 농상(農桑)을 권장하여 마침내 대창(大倉)의 곡식이 묵고 쌓여서 돈뎀미가 문드러지고 곡식이 썩는 데 이르렀습니다.</p> <p>옛사람이 이르기를, ‘3년을 경작하면 1년 먹을 것이 남는다.’고 하였는데, 중국[中原]은 토지가 기름져서 3년을 경작하더라도 1년 먹을 것이 남을 수 있으나, 우리 나라는 토지가 좁고 메말라서 곡식이 생산되는 〈일정한〉 수량이 있으니 그렇지 못할 것이 명백합니다. 마땅히 해마다 준비하고 달마다 쌓아서 점차로 축적하는 것이 가합니다. 나라에서 수령(守令)이 바뀔 때에 축적한 바를 상계(上計)하는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사사로운 뜻에 따르고 결코 준행하지 아니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수령은 이제부터 기한이 차서 갈리는 자와 죄를 입고 파면된 자는 그 축적의 다소(多少)를 헤아리지 말고 모두 상계(上計)하게 하여 감사(監司)가 그 허실(虛實)을 살피고 또 수령으로 하여금 서로 해유(解由)21792) 를 교부하도록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으면 의창(義倉)의 소비하는 바를 거의 채울 수 있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과연 이 말과 같이 하면 저축이 넉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지금 군자감(軍資監)의 수용(需用)과 의창의 축적이 과연 모두 넉넉하지 못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종조(祖宗朝)에 축적한 수량과 지금 축적한 액수(額數) 및 축적할 방법을 상의하여 아뢰라.”</p>	<p>昇平，固無可慮。然我國乃用武之地，脫有不虞，則兵食，不可不先備也。故臧孫辰告糴于齊，聖人筆之於經，譏其不備。漢初，天下財力竭，賈山上書，言蓄積之策，文帝休養生息，勸課農桑，終至大倉之米，陳陳相因，貫朽粟腐。古人云：‘三年耕，餘一年之食。’中原土地膏腴，雖三年之耕，可餘一年之食，我國土地褊薄，生穀有數，其不如此審矣。當歲備月儲，漸漸而蓄之可也。國家於守令遞時，以所蓄上計，法非不美。然皆徇於私情，絕不遵行。臣願守令，自今滿期而遞者，被罪而罷者，隨其所蓄，不計多少，皆以上計，而監司察其虛實，又令守令，交相解由，永爲恒式，則義倉所費，庶幾充矣。”上曰：“果如是言，儲時不可不裕，而今者軍資所需，義倉所蓄，果皆未裕，其令該曹，祖宗朝蓄積之數，與今所儲之額及儲時之術，商議以啓。”</p>
--	--	--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월 16일 (기사) 2번째기사</p>	<p>하였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월산 대군(月山大君) 묘소(墓所)에 동철(銅鐵)·채색(采色)·촉랍(燭蠟)을 많이 주었고, 전일 강무(講武)21851) 때에는 제장(諸將)들에게 모두 후추[胡椒]와 소목(蘇木)을 주었으며, 내관(內官) 김형손(金亨孫)에게는 쌀·콩[未豆]을 주었고, 주서(注書) 최세걸(崔世傑)에게는 말과 쌀·콩을 주었으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현명한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끼며, 심지어 헤어진 바지를 간직해 두었다가 공이 있는 자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내려 주는 것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문소전(文昭殿) 수복노(守僕奴)가 전(殿) 안에서 장난하며 술을 마시다가 화로를 차서 불을 흘뜨렸으니 이는 큰 일인데도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김형손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상(賞)을 준 것이고, 최세걸은 가난한 선비로 말을 잃었기 때문에 특별히 준 것이다. 월산 대군 묘소에 준 물건은 전일에 대간(臺諫)이 부인이 절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으로 금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좌우에게 물으니, 광릉군(廣陵君)21852) 이 말하기를, ‘비록 보통 사람의 분묘라도 모두 재궁(齋宮)이 있는데, 부인이 대군을 위해 작은 암자를 짓는 것은 무엇이 방해롭겠습니까? 다만 큰 절을 짓는 것은 마땅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반드시 대비전(大妃殿)에 취품(取稟)21853) 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대비전에 아뢰었다.”  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동철(銅鐵) 등의 물건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비하여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평(李枰)은 말하기를,</p>	<p>○御經筵。 講訖， 大司諫李枰啓曰：“月山大君墓所， 多給銅鐵、采色、燭蠟， 前日講武時， 諸將等， 皆給胡椒、蘇木， 內官金亨孫給米、豆， 注書崔世傑給馬與米、豆。 古人云：‘明主愛一嘖一笑， 至有藏弊袴， 以待有功者。’ 賜與， 不可輕也。” 上曰：“前者文昭殿守僕奴， 戲飲殿內， 乃至踢爐散火， 此大事， 而無有言者， 亨孫告之， 故賞之。 世傑， 寒儒而失馬， 故特給之。 大君墓所賜物， 前日臺諫， 以夫人欲建寺刹， 請止之， 予問左右， 廣陵云：‘雖常人墳墓， 皆有齋宮， 夫人爲大君建小菴何妨？ 但大建寺刹， 則當禁之。’ 然夫人必取稟於大妃殿而爲之， 故予已啓于大妃殿矣。” 領事洪應啓曰：“銅鐵等物， 非我國之產， 費用未便。” 李枰曰：“上不崇信佛教， 然賜銅鐵、采色， 使之建寺， 則恐殿下未免崇佛之名也。” 侍讀官趙之瑞啓曰：“大抵非其鬼而祭之， 未能獲福。 昔楚昭王有疾， 卜曰， ‘何爲崇’， 王不祭， 後世賢之。 今雖爲大君營建寺刹， 斷無獲福之理， 請納臺諫之言。” 上曰：“爾言甚善。”</p>
--	--	--

	<p>“성상께서 불교를 숭신(崇信)하지는 아니하시나, 동철과 채색을 주어서 절을 세우게 하시면 전하께서 부처를 숭상한다는 이름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p> <p>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p> <p>“대저 섬길 만한 귀신이 아닌데 제사하면, 능히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 초(楚)나라 소왕(昭王)이 병이 있어 점을 치니, 말하기를, 무엇이 병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왕이 제사하지 아니하므로, 후세에서 어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대군(大君)을 위하여 사찰(寺刹)을 세운다 하더라도 단정코 복을 얻을 이치가 없으니,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받아들이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대의 말이 매우 옳다. 하지만 동철과 채색은 이미 허락하였으니, 환수할 수 없다.”</p> <p>하였다. 장령(掌令) 민효증(閔孝曾)이 아뢰기를,</p> <p>“요동 질정관(遼東質正官)이 일찍이 주문(奏聞)21854) 하지 아니하고서 사사로이 소규(邵奎)에게 가서 질문하게 하였는데, 소규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사로이 서로 사귀어 통하다가 중국 조정에서 알고서 힐문(詰問)하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p> <p>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p> <p>“한어(漢語)에 널리 통하는 자가 의심스러운 곳이 있어서 나아가 질문하면, 과연 유익합니다. 지금 질정관(質正官)은 전혀 한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질정(質正)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질정관을 설치한 것이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갑자기 없앨 수 없다. 과연 주문(奏聞)하여 마음대로 출입하며 질정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민효증이 아뢰기를,</p> <p>“이번 질정관(質正官) 권오복(權五福)은 겨우 의주(義州)에 이르렀으니, 청컨</p>	<p>但銅鐵、采色，業已許之，不可還收。”掌令閔孝曾啓曰：“遼東質正官，曾未奏聞，而私自往質於邵奎，奎，作罪人也。而私相交通，朝廷若知而詰問，則將何以對之？上問左右。洪應對曰：“該通漢語者，如有疑處，就而質之，果有益矣。今之(資)〔質〕正官，專不解語，何以質正？”上曰：“設質正官已久，不可頓革。果若奏聞，隨意出入，質正可也。”孝曾曰：“今次質正官權五福，纔到義州，請召還。”從之。</p>
--	--	---

	<p>대 불러서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월 16일 (기사) 3번째기사</p>	<p>일본(日本)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직선(職宣)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머리를 조아리며 조선국(朝鮮國) 예조 대인 족하(禮曹大人足下)에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겨울에 대중신(大中臣) 향정 신우위문위 직선(饗廷新右衛門尉職宣)으로 하여금 무역(貿易)을 위하여 황금과 주홍(朱紅)을 가지고 내이포(乃而浦)에 보냈는데, 필방(畢方)21855)의 재앙을 만나 민가가 남은 것이 없고 서신 가운데에 적혀 있는 대로 보낸 주홍도 불에 타서 재가 되었고 오직 황금만 서울에 도달되어 서신의 내용과 같이 받았다고 하였고, 주홍은 비록 이미 불에 타고 없어졌는데도 면포(綿布) 백 필을 내려 주셨으니, 성은(聖恩)이 중한 데 대해 실로 더욱 감사드립니다. 내이포의 민속(民俗)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위로하심이 정녕(丁寧)하시니 은혜가 또 더함이 있습니다. 우리 삼포(三浦)21856) 백성은 모두 경박한 자들이라 일을 삼가지 못하여 걸핏하면 실화(失火)하여 매양 관리를 수고롭게 하고 관의 곡식을 허비하니, 무엇으로 사례할 바가 없습니다. 또 봄·여름 사이에 배를 사려고 귀국에 도착하여 폭풍을 만나 파손되었는데, 그 포(浦)의 관리가 가없이 여겨서 뱃사람[舟子]을 위로하고 서울에 아뢰어 높으신 명령이 이미 내려서 뱃사람에게 의복과 양식을 내려 주시니, 진실로 신의(信義)가 돈어(豚魚)21857)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신(臣)이 입은 은사(恩賜)이므로, 비록 사례하는 글을 아뢰더라도 감대(感戴)하는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매년 보내는 황금(黃金) 82정(挺)과 주홍(朱紅) 5백 24과(裹)에 대한 은사(恩賜)로 면포의 정호(精好)하고 세밀(細密)한 것을 특별히 바라며, 서울에서 내려 주시면 만 번 다행이겠습니다. 만약 포(浦)에서 내려 주도록 하면, 존명(尊名)이 아무리 엄하다 하더라도 일을 맡은 소리(小吏)의 행동이 간사하여 추악(麤惡)한 면포를 주게 되면 사</p>	<p>○日本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職宣，來獻土宜。其書曰： 頓首上書朝鮮國禮曹大人足下。去歲冬，令大中臣饗廷新右衛門尉職宣，爲貿易，持黃金、朱紅而遣之乃而浦，罹畢方之災，而民屋無所殘因，而書中所遣之朱紅，亦灰燼矣，唯黃金達之于洛，黃金如書中謹受之，朱紅雖已灰燼，而賜綿布百匹，聖恩之重，實謝加焉。爲(乃爾浦)[乃而浦]民俗，設饋餉勞慰丁寧也，恩數又有加。吾三浦之民，皆輕薄子，不能慎事，動至失火，每每勞苦官吏，費官穀，無所謝。又春夏之間，有買船而到貴國，逢(颶)[颶]風而破損，其浦之官吏，愍之而勞尉，舟子而奏之于洛，尊命已下，而爲舟子賜衣糧，實信及豚魚者也。是皆臣之所蒙之恩賜，雖陳謝詞，不堪感戴之至。每歲所遣黃金八十二挺、朱紅五百二十四裹，特希恩賜緜布精好細密者，賜之于洛者萬幸。若賜于浦，則尊命雖嚴，典事小吏，動容細奸，綿布麤惡，則使者(棟)[揀]之，若甚則</p>

	<p>자(使者)가 가려 내고 만약 심하면 서로 분(憤)을 내어 다투기도 하니, 매우 좋지 못합니다. 특별히 직선(職宣)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니, 굽어 용서하여 살피소서.” 하였다.</p>	<p>互忿爭，甚不好也。 特使職宣可啓之，俯賜恕察”</p>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월 16일 (기사) 6번째기사</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의 연풍현(延豐縣)은 본도(本道)와 경상도(慶尙道) 두 도의 사이에 있는데, 사면(四面)이 모두 산이고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이 겨우 8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모두 산전(山田)을 경작해 먹고 삽니다. 본현의 1년 공포(貢布)가 60필이고 기타 공부(貢賦)가 매우 중하며, 왜인(倭人)의 왕래도 이 고을을 경유하므로, 그 백성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몰래 이웃 지경으로 옮겨 가는 자가 잇따르니, 청컨대 공포를 감하여 다른 고을에 나누어 주고 혹은 이웃 고을의 땅을 분할(分割)해서 보태어 한 고을 백성의 생활을 회복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p>	<p>○御夕講。 講訖，侍讀官趙之瑞啓曰：“忠淸道延豐縣，在本道慶尙兩道之間，四面皆山，土地嶮薄，民居僅八十餘戶，皆耕山田而食。 本縣一年貢布六十四，其他貢賦至重，倭人往來，亦由此縣，其民未堪馱載轉輸之勞，潛徙隣境者相續。 請減貢布，分諸他邑，或割隣土益之，以蘇一縣民生。” 上曰：“令該曹議啓。”</p>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월 19일 (임신) 2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 수복노(守僕奴) 석시(石屎)가 전(殿) 안에서 쌍륙(雙六)을 던져서 술내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화로를 차서 불을 흘뜨려 지의(地衣)21873) 를 태운 죄는 율(律)이 사형(死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석시의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하다. 다만 인명(人命)은 매우 소중하므로 가볍게 처단할 수 없으니, 승지(承旨)들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모두 아뢰기를, “석시는 죄가 중하여 법으로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형을 면하</p>	<p>○義禁府三覆啓：“文昭殿守僕奴石屎，殿內擲雙陸賭酒，相鬪踢爐散火燒破地衣罪，律當死。” 傳曰：“石屎罪固當死。 但人命至重，不可輕斷，承旨等其議啓。” 僉曰：“石屎罪重，在法當死。 然特減死，以著好生之德何如?” 又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議：“石屎神御前醉酒戲謔，以至燒破地衣，擅便換排，罪甚重大，不可輕論。 依律科</p>

	<p>여 호생지덕(好生之德)21874) 을 나타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또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심회(沈澹)는 의논하기를,</p> <p>“석시가 신어(神御)21875) 앞에서 술에 취해 장난하다가 지의(地衣)를 불태우는데 이르렀고 마음대로 바꾸어서 배설(排設)하였으니, 죄가 심히 무겁고 크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율(律)에 의해 죄를 과(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석시의 범한 바는 마땅히 중전(重典)21876) 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하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율문(律文)에 큰 제사의 제기(祭器)·유장(帷帳)·옥백(玉帛)·생뢰(牲牢)·찬구(饌具)의 등속을 도둑질한 자는 모두 참(斬)한다고 하였는데, 초[燭]는 위의 물건에 비할 것이 아니고, 또 전내(殿內)의 지의(地衣)만 불태웠을 뿐이니, 정상이 혹시 용서할 만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특별히 사형을 감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罪何如?” 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議：“石屎所犯，宜置重典。然人命至重，減死何如?” 盧思愼議：“律文，盜大祀祭器、帷帳、玉帛、牲牢、饌具之屬者，皆斬。燭非右物之比，且燒殿內地衣而已，情或可恕。” 傳曰：“特減死。”</p>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월 23일 (병자)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p> <p>“우리 나라 사족(士族)은 노비(奴婢)와 전지(田地)로써 문호(門戶)21878) 를 보존하기 때문에, 한 구(口)의 종과 한 이랑의 땅을 얻으면 생활하고 잃으면 굶주리고 헐벗기 때문에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다. 근래에 유사(有司)가 혹은 재리에 유혹되고 혹은 권세에 겁을 내어 강하면 이치에 굶은 것이라도 도와 주고 약하면 이치에 곤은 것이라도 누르며, 혹은 위촉되고 매우 두려워하여 오래 끌면서 판결하지 아니하고서 자칫 몇 해를 경과하니, 먼 지방에서 양식</p>	<p>○傳旨議政府曰： 我國士族，以奴婢、田地，保門戶，故一口臧獲，一畝土田，得之則生活，失之則饑寒，所係甚大。近來有司，或牽於利誘，或怵於權勢，強而理屈者右之，弱而理直者抑之，或有畏首畏尾，淹留不決，動經年紀，(目)[自]遠方</p>

	<p>을 싸가지고 와서 여숙(旅宿)하며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자손에 미치도록 곧은 것을 가졌으면서 억울함을 안고 펼 길이 없으니, 이는 모두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측은(惻然)하지 아니하겠는가? 중외(中外)의 청송 관리(聽訟官吏)로 하여금 이 뜻을 아울러 알게 하여, 사사로운 뜻에 끌리지 말고 위세(威勢)에 겁내지 말며 빨리 판결하기를 힘쓰게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p>	<p>來，羸糧旅宿，自少至老，暨于子孫，抱冤積直，無路可伸，此皆足以傷和召災。爲民父母，而使至於此，寧不惻然？其令中外聽訟官吏，並悉此意，毋牽於私意，毋怵於威勢，務速剖決，俾無冤抑。</p>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월 24일 (정축)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종호(李宗顥)가 형조(刑曹)의 삼복(三覆)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정읍(井邑)의 죄수 고동(古同)이 간부(奸夫) 허귀형(許貴亨)과 더불어 본 남편인 이시중(李時中)을 모살(謀殺)한 죄는, 고동은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고, 허귀형은 참대시(斬待時)21879) 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실이 명백하니, 율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권정(權挺)이 아뢰기를,  “척수(尺數)에 준(准)하지 아니한 면포를 금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백성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로지 면포를 매매하는 것을 그 의식(衣食)의 밀천으로 삼는데, 척수의 길고 짧음은 값의 높고 낮음이 따르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기는 데 따르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범금(犯禁)한 자가 과연 많아서 백성들이 몹시 괴롭게 여깁니다. 청컨대 기한을 물려서 민간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날 광릉(廣陵)21880) 도 이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처</p>	<p>○丁丑/受常參視事。左副承旨李宗顥，將刑曹三覆啓本啓：“井邑囚古同，與奸夫許貴亨，謀殺本夫李時中罪，古同律該凌遲處死，許貴亨斬待時。”上曰：“事狀明白，依律施行。”大司憲權挺啓曰：“尺不準綿布，禁不得買賣，民多苦之。貪乏之人，專以買賣綿布，資其衣食。尺之長短而價之高低隨之，聽從民便何如？”上顧問左右。左議政洪應對曰：“犯禁者果多，民甚苦之。請退限，使民間周知爲便。”上曰：“前日廣陵亦言之。然憲府初以緜布紙地，皆濫惡不用，啓請立法，載諸《大典》，不可輕易紛更也。”刑曹判書李崇元曰：“如不改其法，則尺不準綿布，連尺行用，以便民何如？”禮曹判書愼承善曰：“綿布紙地，麤惡太甚，不可不禁也。”上曰：“綿布紙地，漸</p>

	<p>음에 면포와 지지(紙地)를 모두 함부로 만들어 품질이 나빠서 쓸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아뢰어 청하였으므로, 법을 세워서 《대전(大典)》에 실었는데, 가볍게 자주 고칠 수 없다.”</p> <p>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승원(李崇元)이 말하기를, “만일 그 법을 고치지 아니하거든 척수에 준하지 아니하는 면포는 척수를 붙여서 쓰게 하여 백성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신승선(愼承善)이 말하기를, “면포와 종이 거칠고 품질이 나쁜 것이 너무 심하니,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포와 종이 점점 품질이 거칠고 나빠지니, 매우 작은 문제가 아니다.”</p> <p>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기한을 물려서 중외(中外)에 널리 알린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p> <p>하였다.</p>	<p>至麤惡，甚非細故。” 洪應曰：“須退限，廣喻中外以後，行之可矣。” 上曰：“可。”</p>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월 24일 (정축) 6번째기사</p>	<p>가야령(伽倻令) 천종(千終)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우리 국가에서 종지(宗枝)21881) 를 특별히 생각하여, 만일 파(派)21882) 가 선원(璿源)21883) 에 연하였으면 천출(賤出)인 신과 같은 자도 작록(爵祿)을 얻어서 종이 되는 욕됨을 면하게 하였으니, 이는 바로 요(堯)임금이 구족(九族)을 화목하게 하는 뜻입니다. 이제 아들은 중친이 되었는데도 어머니는 오히려 천역(賤役)을 한다면, 그 아들이 된 자가 비록 날마다 만중(萬鍾)의 녹(祿)을 받는다 하더라도 봉양(奉養)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으니, 조정의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외람되게 성은(聖恩)을 입어서 관대(冠帶)를</p>	<p>○伽倻令千終上書，略曰： 我國家特念宗枝，苟派連璿源，則雖賤出如臣者，亦得爵祿，俾免奴辱，此即帝堯睦九族之意也。今有子爲宗親而母猶賤役，則爲其子者，雖日受萬鍾之祿，奉養則有之矣，於朝廷事體何？臣則濫蒙聖恩，得冠帶，與士大夫齒朝列，而臣母女妓勝千金，猶未免妓役。</p>

갖추고 사대부(士大夫)와 더불어 조정의 반열(班列)에 끼였는데, 신의 어미인 여기(女妓) 승천금(勝千金)은 오히려 기억(妓役)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연(內宴) 때는 그만두더라도 객인(客人)의 궤향(饋餉)21884) 과 여러 곳의 사악(賜樂)21885) 과 사가(私家)의 헌수(獻壽)에까지 분주하지 아니함이 없고, 조금만 늦으면 해당 관리가 묶어 놓고 매질하니, 신이 아무리 울면서 구제하기를 구하더라도 누가 즐겨서 신의 어미라고 하여 너그럽게 풀어주겠습니까? 대저 서울의 기녀(妓女)는 나이가 50에 차면 역(役)을 면하는데, 신의 어미는 금년 43세이니, 남은 해가 또한 멀지 아니합니다. 앞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아버지를 위하는 심정을 어여뻐 여기시고 특별히 기억(妓役)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이제 상서를 보니, 정리(情理)가 절박하다. 하지만 종친(宗親)의 첩기(妾妓)로서 아들을 둔 자는 일체 모두 역(役)을 면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대저 종친은 기생을 첩으로 삼는 자가 많은데, 자식을 둔 자에게 으레 어미의 역을 면하게 하면 반드시 뒤에 폐단이 있을 것이니, 가볍게 역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벼슬을 받아 종반(宗班)에 끼였으면, 그 어미가 천역(賤役)을 하는 것은 대체(大體)에 미안할 듯합니다. 그 아들이 벼슬을 받은 자에게는 신공(身貢)21886) 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천역은 주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종친은 기녀(妓女)를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은 자가 많은데, 이제 만약 종친이라는 까닭으로 일체 모두 역(役)을 면하게 하면 폐단이 또한 적지 아닐 것이다. 대저 기녀는 자색(姿色)과 재예(才藝)가 있는 자를 골라서 뽑아 올렸

如內宴時則已矣， 客人饋餉， 諸處賜樂， 至於私家獻壽， 無不奔走， 少緩則該官縛束之箠楚之， 臣雖呼泣求救， 誰肯以臣母而寬釋之乎？ 凡京妓年滿五十則免役， 臣母今年四十有三， 則餘年亦不遠矣。 伏願殿下， 憐臣爲親之情， 特免妓役， 不勝至願。

御書下承政院曰：  
 今觀上書， 情理切迫。 但宗親妾妓而有子者， 固不可一皆免役。 其議以啓。

承旨等啓曰：“大抵宗親， 多作妓妾， 有子者例免母役， 則必有後弊， 不可輕易免役。 然其子授職， 齒於宗班， 則其母爲賤役， 於大體似乎未安。 其子授職者， 則許收身貢， 勿與賤役何如？”

傳曰：“宗親以妓爲妾而生子者多， 今若以爲宗親之故， 一皆免役， 則弊亦不少矣。 大抵妓有姿色、才藝者， 揀擇選上， 宗親卽作妾生子者， 載《璿源錄》， 因免母役， 則有姿色者， 盡脫妓案矣。 內宴則已矣， 其餘賜樂及客人燕享， 一應諸處， 勿役何如？ 其議于領敦寧以上。” 沈澹、尹弼商、盧思愼、李克培議：“上教允當。” 洪應、



	<p>는데, 종친이 곧 첩을 삼아 아들을 낳은 자를 《선원록(璿源錄)》에 올리고 인하여 어미의 역을 면하게 하면 자색이 있는 자는 모두 기안(妓案)에서 빠져 나갈 것이다. 내연(內宴)에는 그만두더라도 그 나머지 사악(賜樂) 및 객인(客人)의 연향(燕享)과 일체 여러 곳에는 역을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p> <p>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p> <p>하고, 홍응(洪應)·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어미는 아들로써 귀해지는 것인데, 소생(所生)이 종친이 되면 마땅히 그 역을 면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또한 많으므로, 그 법을 다 행할 수 없으니, 내연(內宴) 외의 여러 곳에는 역을 주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p> <p>하였는데, 심회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尹壕議：“母以子貴，所生爲宗親，則宜免其役。然厥類亦多，不可盡行其法，內宴外諸處，勿與則可也。”從沈澮等議。</p>
<p>성종 23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월 24일 (정축) 10번째기사</p>	<p>전(前) 장악원 정(掌樂院正) 임중(林重)이 상서(上書)하기를,</p> <p>“신이 일찍이 포영사 종사관(布營使從事官)이 되어 무릇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것과 평일에 아뢰고자 한 바를 삼가 조목별로 열거하여 올립니다.</p> <p>첫째는, 대가(大駕)를 가볍게 움직이지 말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예전에 길행(吉行)21892) 에는 하루에 50리를 가고 사행(師行)21893) 에는 30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파오달(波吾達)21894) 은 상거(相距)가 거의 4, 50리가 되고 혹은 8, 90리에 이르는데, 그것은 지리(地利)와 수초(水草)를 관찰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일은 예전을 본받지 않으시니, 신은 그 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산길 사이에 친히 안개와 이슬을 무릅쓰고 밤을 타서 행차하시니, 군사와 말의 피곤함은 족히 논할 것이 없으나 함꺠지변(銜櫪之變)21895) 또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p>	<p>○前掌樂院正林重上書曰： 臣嘗爲布營使從事官，凡耳目所觀記者，與夫平日之所欲陳者，謹條列以獻。一曰，大駕不宜輕動。臣聞古者，吉行日五十里，師行三十里。今之波吾達，相距幾四五十里，或至八九十里，相其地利與水草而然也。然事不師古，臣不知其可也。殿下於山蹊之間，親犯霧露，乘夜而行，士馬困敝，不足論也，銜櫪之變，亦難測也。昔晉宮中失火，皇孫遙，五歲童子也，猶</p>

예전에 진(晉)나라 궁중에 불이 났는데, 황손(皇孫) 흘(通)이 다섯 살 난 아이인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어두운 밤의 창졸간이라도 마땅히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니, 인주(人主)를 불꽃에 비추어 보이게 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한(漢)나라 광무 황제(光武皇帝)는 일찍이 나가서 사냥하고 밤에 돌아오다가 동문(東門)에 올라가자 문지기 질운(郅憚)이 관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대개 밝은 사람은 아직 싹트지 아니하였는데도 멀리 내다보고, 지혜로운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험을 피하니, 화(禍)는 진실로 은미(隱微)한 데에 감추어졌다가 사람의 소홀한 곳에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새벽과 어두울 때에 다니는 것은 신이 그옥이 의혹됩니다.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그 때가 아닌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은 양(陽)이 절후(節候)를 잃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이번의 변고(變故)는 까닭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 듯합니다. 임금은 하늘이 아버지이고 땅이 어머니인데, 부모가 노여워하여 소리와 빛이 이상하면 아들은 마땅히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그 노여움을 풀게 할 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노여움이 성정(性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그만두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바야흐로 그 덕을 힘쓰니 천재(天災)가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드나들고 생활함에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앞드려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마음에 두소서.

둘째는, 공봉(供奉)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전야(田野)의 백성도 오히려 정성을 바치려고 하는데, 더구나 신하의 의리로서 마땅히 받들어 올려야 할 찬물(饌物)의 준비를 어찌 정수(定數)에 구애되었겠습니까? 널리 구하여 얻기를 힘쓰면서 이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치로 따져서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수가(隨駕)하는 말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모두 초대(草蓐)21896) 에 싸더라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데 목조(木槽)21897) 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낮참에 잠시 지나가는 곳에도 설치한 것이 많은데, 하물며

云：“暮夜倉卒，宜備非常，不可令照見人主。”漢光武嘗出獵夜還，上東門候郅憚，閉關不納，豈無深意也？蓋明者，遠見於未萌，智者，避危於無形，禍固多藏於隱微，而發於人之所忽者。在今晨昏之行，臣竊惑焉。《春秋傳》曰：“非其時而雷電，陽失節也。”臣恐今者之變，有所自而然也。人君，父天母地，父母震怒，聲色異常，人子當祇栗恐懼，思所以霽其怒，不當指謂性情所發而遂已也。《書》曰：“方懋厥德，罔有天災。”又曰：“出入起居，罔有不欽。”伏願聖上留神焉。二曰，供奉不宜過多。臣竊謂田野之民，尚欲獻芹，況乎臣子，義當奉上物饌之備，何拘於定數乎？旁求務得，無所不至，理則然矣。至如隨駕之馬，皆齋草蓐，足以喂養矣，不須木槽也。晝停暫經之處，又多設焉，況治道路造橋梁等事，不可廢也，而功役太重，民力殘敝。至於長抹木、地排草、郊草、杻炬之類，雖云微物，皆非神運鬼輸，盡出乎民力，郡縣猶恐臨時不裕，什倍備之，其間豈無其弊？《詩》云：“樂只君子，民之父母。”《書》曰：“先

도로를 닦고 교량을 만드는 등의 일은 없앨 수 없지만 공역(功役)이 너무 무거워서 민력(民力)이 잔폐(殘弊)합니다. 장말목(長抹木)21898) ·지배초(地排草)21899) ·교초(郊草)21900) ·축거(柎炬)21901) 따위에 이르러서는 비록 작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귀신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인데, 고을에서는 때에 임하여 넘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십 배(什倍)를 준비하니, 그 사이에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군자(君子)여 백성의 부모로다.’고 하였고,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선왕(先王)이 곤궁(困窮)한 이를 아들처럼 보살폈다.’고 하였으니, 어찌 아들이 곤궁한데 부모가 알지 못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또 할말이 있습니다.

제향(祭享)에 공상(供上)하는 생건육(生乾肉)의 수(數)는 모두 참작하고 헤아려서 상정(詳定)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쇠잔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달마다 갖추어 바치므로 힘이 지탱하지 못하여, 간혹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 그 이웃에서 빌려도 오히려 수량을 채우지 못하여, 마침내 중한 견책(譴責)을 받습니다. 지금 강무(講武) 때에 아무리 대군(大軍)을 쓰더라도 잡은 새와 짐승이 많지 아니한데, 하물며 한 고을 아전(衙前)·재인(才人)·백정(白丁)이 어찌 하나하나 잡아서 그 수량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경내의 백성을 모두 몰아서 아무리 한겨울과 한여름에라도 오래도록 산야(山野)에 있으면서 살림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생활이 날마다 더욱 쇠잔해지니,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량을 적당히 줄여서 민력(民力)을 넘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세째는, 진문(陣門)을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합니다. 대저 행재소(行在所)21902) 의 내진(內陣)·외진(外陣)은 바로 국도(國都)의 내성(內城)·외성(外城)과 같습니다. 두 진문은 국도에 비하여 더욱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할 것인데, 내진의 문은 아침저녁으로 열고 닫는 때가 있고 출입을 금하고 막는 절차

王子惠困窮。”豈有人子困窮，而父母不知者乎？抑有說焉。祭享供上生乾肉之數，非不酌量詳定也。然而雖殘邑，厥數猥多，逐月備納，力不能支，間或買之於市，乞諸其隣，猶未充數，終受重譴。今於講武，雖用大軍，所獲禽獸不多，況以一邑衙前、才、白丁，安得一一獵獲，以充其數乎？不得已盡驅境內之民，雖隆冬盛夏，長在山野，不顧產業，生理日益凋殘，誠非細故也。莫若量減其數，以寬民力。三曰，陣門當固守。蓋行在所內外陣，是猶國都內外城也。二陣之門，視國都尤當固守也，而內陣門則晨昏開閉之有時，出入禁防之有節，至於外陣之門，何獨不守而出入無防乎？軍士之相失在後者，絡繹而至，號召之聲，徹夜不止，不可閉門而不納也。《車攻》之詩，美宣王之行狩也。其詩曰：“蕭蕭馬鳴，悠悠旆旌。徒御不驚。”又曰：“之子于征，有聞無聲。”則兵貴乎肅也。何必日行過遠，使士馬失伍離次乎？伏願殿下留心焉。四曰，兵器當鍊。臣聞徒手遇賊，雖責、育，無如之何，甚矣兵器之於禦敵也。有

가 있으나, 외진의 문에 이르러서는 어찌하여 지키지 아니하고서 출입하는 데 방비가 없습니까? 군사로 제자리를 잃고 뒤에 떨어진 자가 연달아 이르러 부르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는데,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공(車攻)》 21903) 의 시(詩)는 〈주(周)나라〉 선왕(宣王)의 행수(行狩) 21904) 를 찬미한 것인데, 그 시에 ‘소소(蕭蕭)한 말의 울음이며, 유유(悠悠)한 깃발이로다. 보졸[徒]과 거어(車御)가 놀라지 아니하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임이 가니 소문은 있어도 소리는 없도다.’라고 하였으니, 군사는 엄숙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날마다 지나치게 멀리 행군하여 군사와 말로 하여금 항오(行伍)를 잃고 차례를 떠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옳드려 원하건대 전하게서는 마음에 두소서.

네째는, 병기(兵器)를 마땅히 연마(鍊磨)하여야 합니다. 신은 듣건대 ‘맨손으로 도적을 만나면 비록 분(賁)·육(育) 21905) 이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병기가 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대단한 것입니다. 준비가 있으면 기운이 뛰어나고 준비가 없으면 기운이 꺾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공사(公私) 병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지극함을 쓰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며 점검(點檢)하는 법이 지극히 엄하고 밝습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도총부 낭청(都摠府郎廳)이 되어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점검해보지 아니한 것이 없었는 바, 비록 금위(禁衛)하는 군사라 하더라도 간혹 당기지 못할 활과 쏘지 못할 화살이 있었는데, 더구나 다른 군사들이겠습니까? 튼튼하고 치밀한 것은 대개 적고 빌려서 점검받는 자도 더러 있었는데, 가령한 여(旅)의 군사로 하여금 각각 그 활과 화살로써 시험하게 하여 활을 한도에 차게 당겨서 화살을 쏘면, 부러지고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겨우 열에 한 둘입니다. 크게 사열(查閱)할 때에 혹은 말은 있는데 안장이 없는 것도 있고 혹은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는 것도 있으며, 혹은 잡목(雜木)으로 활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가짜로 두구(頭具)를 만들어 쓴 것도 있었습니다. 친열(親

備則氣勝， 無備則氣沮， 理勢(非) [然] 也。 國朝於公私軍器之備， 無所不用其極， 而點檢之法， 至爲嚴明。 然臣曾爲都摠府郎廳， 甲冑弓矢， 靡不點視， 雖禁衛之士， 間有不可彎之弓， 不可射之矢， 況其他乎？ 堅緻者蓋寡， 借點者容或有之。 假令一旅之士， 各以弓矢試之， 則引滿發矢而無折毀者， 僅什之一二。 於大閱時， 或有馬而無鞍， 或有弓而無箭， 或以雜木而爲弓， 或假作頭具而着之者。 親閱之日， 尚且如此， 況他時乎？ 以此觀之， 營鎮兵器， 有名無實， 蓋可知矣。 況武庫甲兵， 每年作之不已， 積而不試， 銷耗蠹敝， 歸於無用， 與其歸於無用， 曷若授諸宿衛之士， 鍛之穀之， 以壯軍容乎？ 晁錯曰：“軍械不利， 以其卒與敵。” 伏願殿下留心焉。 五曰， 戍邊當謹嚴， 蓋島夷山戎， 外修朝聘之儀， 內懷剽竊之謀， 伺隙乘便， 侵軼邊鄙， 無世無之。 縱有水營陸陣之兵， 一無執訊獲醜之時， 臣竊痛心。 以水卒一事言之， 或赴土木之役， 或運租稅之入， 以至海錯陸物之備， 造艦改槩之役， 猶恐不及， 奚暇執弓矢治舟楫乎？ 至若軍官，

關)21906) 하는 날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때이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영(營)과 진(鎭)의 병기는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음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고(武庫)21907) 의 갑옷과 병기를 매년 만들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쌓아두고 시험하지 아니하므로, 소모되고 좀먹어서 쓸모가 없는 데로 돌아가니, 쓸모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는 숙위(宿衛)하는 군사에게 주어서 연습하게 하여 군용(軍容)을 장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조조(晁錯)21908) 가 말하기를, ‘군계(軍械)가 예리(銳利)하지 못하면 그 군사를 적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옳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에 두소서. 다섯째는, 변경의 수위(戍衛)를 마땅히 삼가고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개 도이(島夷)21909) 와 산용(山戎)21910) 은 밖으로는 조빙(朝聘)의 의식을 닦으면서 안으로는 도둑질할 꾀를 품고서, 틈을 엿보고 이로울 때를 타서 변경을 침략하는 일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비록 수영(水營)과 육진(陸陣)의 군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잡아 신문(訊問)하거나 도적을 잡은 때가 없으니, 신은 그욕이 마음이 아픕니다. 수졸(水卒)21911) 의 한 가지 일로써 말하건대, 혹은 토목(土木)의 일에 부역(赴役)하고 혹은 조세(租稅)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운반하며, 바다와 육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준비하는 것과 배를 만들고 배를 수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어느 겨를에 활을 잡고 배를 가다듬겠습니까? 군관(軍官)에 이르러서는 으레 모두 시정(市井)의 무리인데, 이름은 갑사(甲士)라고 하나 군사 일을 익히지 아니한 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망(擬望)21912) 하게 하였으나, 인연으로 청탁하여 폐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수졸(戍卒)과 군관이 이와 같은데 적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장수(將帥)가 적합한 사람이 못되므로 요즈음 변경에 여러 번 침략을 당하여 한갓 국위(國威)만 손상시켰으니, 탄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수군(水軍)의 잡역(雜役)을 적당히 감하고 오로지 방어하는 기계(器械)에 힘쓰게

則例皆市井之徒，名爲甲士，不閑兵事者頗多，故令邊將自望，然因緣託托，弊復如前。其戍卒軍官如此，其能禦敵乎？況又將帥非其人，近者沿邊，屢被侵竊，徒損國威，足爲太息。臣愚以謂，量減水軍之雜役，專務防禦器械，且革軍官自望之法，內禁衛新取才者，皆差軍官，滿一年後，方許入屬，如其不足，則以都試入格下番軍士補之，且令取才軍士，於其下番，換道輪次，限朔留防，則庶乎防戍實矣。大凡兵之勝敗，在將之能否，今者才品庸劣者，試一二矢，錄於武藝，而授邊將之任，是以人皆賤之，國不重之。間或以內禁衛除授萬戶，則莫不蹙額而寒心，指以爲謫宦，多方規免，不肯就職，其心以爲：“本圖宦達，而何遽至於是耶？況沿邊守令萬戶，同一戍禦之臣，而守令則既有一邑之奉，又有半祿之科，我雖黽勉於從事，口腹之養，猶不贍焉，遑恤妻子之奉乎？及其還也，不過司勇而止耳。”甚者，憑公營私，日以爲事，防戍之事，謾不致意，此非細故也。臣意以謂，巨鎭將既稱僉節制使矣，願自今改萬戶，稱同僉節制使，

하며, 또 군관(軍官)을 스스로 의망(擬望)하는 법을 개혁하여 내금위(內禁衛)에 새로 취재(取才)한 자를 모두 군관으로 정하고 만 1년 후에야 <내금위에> 들어와 소속되게 하되 만일 부족하면 도시(都試)21913)에 합격한 하번군사(下番軍士)로써 보충하게 하고 또 취재 군사(取才軍士)로 하여금 그 하번(下番) 때에 도(道)를 바꾸어 차례로 달[朔]을 기한하여 머물면서 방위하게 하면, 거의 방수(防戍)가 충실할 듯합니다.

대저 군사의 승패는 장수가 능력이 있고 없는 데 달려 있는데, 이번에 재품(才品)이 용렬(庸劣)한 자를 한두 개의 화살로 시험하여 무예(武藝)가 있다고 기록하여 변장(邊將)의 임무를 맡기셨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고 나라에서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간혹 내금위(內禁衛)를 만호(萬戶)로 제수하면, 이마를 찡그리고 한심스러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고, 귀양살이하는 벼슬이라고 가리키면서 여러 방법으로 면하기를 꾀하며, 직책에 취임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본래 벼슬이 높아지기를 도모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여기 이르렀는가? 더구나 변경의 수령과 만호는 동일하게 수어(戍禦)하는 신하인데, 수령은 한 고을의 받드는 것이 있고 또 반록(半祿)의 과(科)가 있는데, 나는 아무리 힘써 직무에 종사하더라도 구복(口腹)21914)을 기르기에 넉넉지 못한데 어느 겨를에 처자(妻子)의 부양을 생각하겠는가? 돌아옴에 미처서는 사용(司勇)에 그칠 뿐이다.’라고 하고는, 심한 자는 공무(公務)를 병자하여 사무(私務)를 경영하기에 날마다 힘쓰고 방수(防戍)의 일은 태만히 하여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거진(巨鎭)의 장수는 이미 첨절제사(僉節制使)라고 일컬으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만호(萬戶)를 고쳐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라고 일컬어서 그 벼슬을 아름답게 하여 내금위(內禁衛)나 무과(武科)에 합격한 4품 이상으로 병사(兵事)를 익힌 자를 예대로 모두 제수(除授)하고 또 반록(半祿)을 주

以華其秩，內禁衛與中武科四品以上鍊習兵事者，例皆除授，又給半祿，以厚其家，如其防禦有辦者，東班用之，則何患邊將之不得其人乎？ 臣曾受漕運舟楫之用，靡不商度。 各官既有有軍三等船，又有無軍三等船，其所以備患至矣。 然體制過大，力不能進退，隨潮乘風而行，倭船則價利，惟意所適，在我無追捕之理。 莫若依造船式例，造鼻居刀之爲便也。 有軍船猶不能行用，掛諸高岸，何必勞民，又造無軍之船乎？ 伏願特命曾經水軍之將者，熟議施行。 六曰，強盜捕獲守令當賞。 臣謹按《大典》內，捕虎十口守令，賞加階，則是欲除害而安民也。 《書》曰：“殺越人于貨， 啓不畏死， 凡民罔不慙。” 則強盜捕獲守令， 亦不可不賞也， 而刑典內不錄， 臣竊怪焉。 捕虎捕盜， 皆守令分內事也， 不賞則已， 何必捕虎者獨賞， 而捕盜者不賞乎？ 臣恐議法者， 偶末之思爾。 伏惟上裁。 七曰， 徙民當急。 古人言：“吳、蜀有可耕之人， 而無其地， 荆、楊有可耕之地， 而無其人。” 天下之民， 亦有偏聚而不均者矣。 以我國家之地觀之， 忠

어 그 집안을 후하게 하며, 또 방어에 힘을 쓴 것이 있는 자는 동반(東班)에 기용한다면 변장(邊將)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할 것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배[舟楫]를 조운(漕運)하는 일을 받아서 헤아리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각 고을에 이미 유군 삼등선(有軍三等船)이 있고 또 무군 삼등선(無軍三等船)이 있으니, 그 사변에 대비하는 바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체제(體制)가 지나치게 커서 힘이 능히 마음대로 진퇴(進退)하지 못하고 조수(潮水)를 따르거나 바람을 타고 가는데, 왜선(倭船)은 가볍고 빨라서 마음대로 가니, 우리가 좇아 잡을 이치가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 식례(式例)에 의하여 비거도선(鼻居刀船)21915) 을 만들어 편리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군사가 있는 배도 운행할 수 없어서 높은 언덕에 걸어 놓았는데, 어찌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군사 없는 배를 또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일찍이 수군(水軍)의 장수를 지낸 자에게 특별히 명하여 잘 의논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여섯째는, 강도(強盜)를 잡은 수령(守令)에게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합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대전(大典)》에, 호랑이 열 마리를 잡은 수령에게는 상으로 계급을 더하였으니, 이는 해(害)를 없애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이면서 타락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모든 백성이 미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강도를 잡은 수령 역시 상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데, 형전(刑典) 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그욕이 괴이하게 여깁니다. 호랑이를 잡는 것과 도둑을 잡는 것은 모두 수령의 직분 안의 일인데, 상을 주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어찌하여 반드시 호랑이를 잡은 자에게만 상을 주고 강도를 잡은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아니합니까? 신은 아마도 법을 의논한 자가 우연히 생각지 못한 것인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일곱째는, 사민(徙民)21916) 은 마땅히 급하게 하여야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

淸、全羅、慶尙道，猶古之吳、蜀也，兩界、江原、黃海道，猶古之荊、楊也。勢不得不使去狹而就廣，哀多而益寡也。今大駕所經永、鐵、平、漣之間，人烟鮮少，萑葦蔽野，扈從之士，莫不慘目而寒心。況經殿下之重瞳乎？舉一隅，可知其餘矣。脫有邊塵起而一城失守，則直入無人之境，非細故也。國家近年，富實之戶，全家入送，以實空虛，然空虛之地，不止數千里也，徙民之數，誠大倉稊米也。臣愚以爲，無罪者猶且勒令徙邊，況所犯，若關國家，若係綱常，則當勿論輕重而徙之，其餘雜犯內，犯徒者則依犯流者，竊窩者則依強窩者，皆徙遠道，此一策也。各邑之殘盛，由於人物之多寡也。兩界各官，凋殘者甚多，而下三道則鄉吏奴婢定數外，亦有什倍處，擇其丁多且實者以徙之，亦一策也。臣於庚子年，以許琮從事官，留防關西，熟閱防守之事。各鎮冬節赴防者，內地之人居多，而闕到者逃亡者四五百名，鎮將傳報主將，主將命囚家僮，使退留。然道途遼遠，關文一至，守令謾不捉送，鎮將又報主將，往復之

기를, ‘오(吳)·촉(蜀)에는 경작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땅이 없고, 형(荊)·양(楊)은 경작할 만한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천하의 백성도 한쪽에 모여서 고르지 못함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땅을 보면 충청도·전라도·경상도는 옛 오·촉과 같고 양계(兩界)21917) 와 강원도·황해도는 옛 형·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세가 좁은 것을 없애서 넓게 만들 수 없고,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것에 보탬 수 없습니다. 이제 대가(大駕)가 지나가는 영평(永平)·철원(鐵原)·평강(平康)·연천(漣川) 사이에는 인연(人煙)21918) 이 드물고 억새풀 [萑葦]이 들을 덮었으니, 호종(扈從)하는 군사가 모두 눈이 참담하고 마음이 선뜻합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친히 지나가며 보시는 것이겠습니까? 한 모퉁이를 보면 그 나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에 사변이 일어나서 한 성(城)이 함락되면 바로 무인지경(無人之境)으로 들어올 것이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근년에 부실(富實)한 집안의 전가족을 들여보내어 빈 곳을 채우게 하였으나 빈 땅이 수천 리에 그치지 아니하니, 사민(徙民)의 수는 진실로 큰 창고에 한 개의 쌀날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도 강제로 변경에 옮기게 하는데, 하물며 범한 바가 만약 국가에 관계된 것이나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은 마땅히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옮기게 하며, 그 나머지 잡범(雜犯) 안에 도형(徒刑)을 범한 자는 유형(流刑)을 범한 자에 의하고 절도(竊盜)의 와주(窩主)는 강도의 와주에 의하여 모두 먼 도(道)에 옮기면, 이것이 하나의 계책입니다. 각 고을의 쇠잔함과 번성함은 사람의 많고 적은 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양계의 각 고을은 조잔(凋殘)한 것이 매우 많은데, 하삼도(下三道)는 향리(鄉吏)와 노비(奴婢)가 정수(定數) 외에도 십 배가 되는 곳이 있으니, 그 정(丁)이 많고 또 부실(富實)한 자를 골라서 옮기는 것도 하나의 계책입니다.

신이 경자년21919) 에 허중(許琮)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관서(關西)에 머물러 방위하면서 방수(防戍)의 일을 익숙하게 겪었습니다. 각진(各鎭)의 겨울철에

間, 春氷已泮, 戍亦罷矣。 以此觀之, 他道亦可知矣。 若不痛繩, 此弊難革。 臣謹按兵律內: “從征戍禦官軍逃者, 初犯杖八十, 仍發本衛充軍, 再犯杖一百, 俱發邊遠充軍, 三犯者絞。” 願自今(關) [闕] 防者, 據律文, 各於其陣, 全家入送, 亦一策也。 田民相訟者, 類皆兄弟叔姪也。 曲直是非, 非不自知也, 而凌弱恃勢, 變亂黑白, 爭訟不已, 相殘骨肉, 瀆亂天常, 莫此爲甚。 自今聽斷之後, 理屈詐現者, 全家徙邊, 則爭訟息而風俗厚矣, 此亦一策也。 伏願聖上留心焉。 八曰, 水利當興。 國朝特設堤堰司, 專掌其事, 每當農隙, 分遣郎廳, 或築堤堰, 或防川流, 水利之興, 於斯爲盛。 然其間用大衆起大役, 動經旬月之久, 有績用不成之處, 其所以然, 則徒聞農夫之言, 不復致察故耳。 臣愚以爲, 堤堰則儲氷於冬月, 用之於春耕, 蒙利不甚多矣, 至於川防, 則水利無窮, 而鑿渠必有其要。 莫若相其水之淺深, 岸之高下, 水中岸上, 各立一木, 引繩於其間, 因水中之木, 繩下之長, 又加尺數, 以爲鑿渠之深, 如是而次量之, 則雖



부방(赴防)21920) 하는 자는 내지(內地)의 사람이 많아서 궐도자(闕到者)21921) 와 도망자가 4, 5백 명인데, 진장(鎭將)이 주장(主將)에게 보고하면 주장이 가동(家僮)을 가두도록[家僮囚禁]21922) 명하고 퇴류(退留)합니다. 그러나 길이 멀어서 관문(關文)이 한 번 이르러도 수령이 태만하여 잡아 보내지 아니하므로 진장(鎭將)이 주장에게 보고하지만, 왕복하는 사이에 봄의 열음이 이미 풀리고 방수도 끝납니다. 이것으로 관찰하면 다른 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엄히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폐단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대명률(大明律)》 병율(兵律) 안에, ‘종정 수어 관군(從征戍禦官軍)이 도망한 자는, 초범은 장(杖) 80대에 인하여 본위(本衛)에 징발하여 충군(充軍)하고 재범은 장 1백 대에 인해서 변원(邊遠)21923) 에 징발하여 충군하며 삼범은 교형(絞刑)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궐방자(闕防者)21924) 는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각각 그 진(陣)에 전가족을 들여보내는 것도 한 계책입니다. 전민(田民)21925) 을 서로 소송하는 자는 거개 모두 형제·숙질(叔姪)입니다. 그 굵고 곧은 것과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세력을 믿고 흑백을 변경시키고 어지럽게 하여 다투어 소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골육(骨肉)을 서로 해치니, 천상(天常)21926) 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청단(聽斷)한 뒤에 이치에 굽고 간사함이 드러난 자는 전가족을 변경에 옮긴다면 소송이 그치고 풍속이 후해질 것이니, 이것도 하나의 계책입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마음에 두소서.

여덟째는, 수리(水利)를 마땅히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조정에서 특별히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여 그 일을 오로지 맡게 하고 농한기에 낭청(郎廳)을 나누어 보내어 방죽[提堰]을 쌓기도 하고 혹은 냇물을 막기도 하여 수리를 일으킨 것이 이에 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을 써서 큰 역사(役事)를 일으켜 자칫 열흘에서 한달까지 오랜 시일을 지나면서 잇달아 사람

數百里之遠，可知引流之便否，行其所無事而已。況我國之地，水道窄深，兩岸高大之處，猶多有之，引流爲難，豈無他術乎？孟子曰：“今夫水，激而行之，可使在山。”則日者崔溥所獻水車，匪今伊始，必用之久矣。若試之於一二處，則知其可用與否矣。或曰：“水車之行，功重而難成。”是殊不知。凡鄉閭田野之夫，尙能興一方之利，豈有朝廷因民之利利之，而有不成者乎？伏願殿下留心焉。九曰，冤抑當伸。國家徒流、付處、安置、充軍、定屬，各當其罪，宜無冤枉矣。然其間甲乙同受一罪，而甲者別無立功，特蒙赦宥，乙者則終身未免，上言陳訴，則命下該司，該司不辨是非，一皆防之，其間豈無天日之照，未及覆盆之內，井底之鳴，未達九天之上乎？此冤抑之未伸而傷和召災者乎？臣竊謂法不自明，因人而明，法不自行，待人而行。願自今有上言者，必命該司，備錄罪狀首尾，與同罪而免放者，辨其曲直，只取聖裁，則庶乎冤抑絕矣。伏願聖上留心焉。十曰，異姓親當優待。臣竊惟宗親府，待同姓也，敦寧

을 써도 성공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농부의 말만 듣고 다시 살펴지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방죽은 겨울에 얼음을 모아 두었다가 봄농사 때에 활용하므로 이익을 보는 것이 매우 많지는 않지만 천방(川防)은 수리(水利)가 무궁하되 도량을 파는 데에 반드시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 물의 깊고 얕음과 언덕의 높고 낮음을 잘 살펴보아서 물 가운데와 언덕 위에다 한 개의 나무를 세우고 그 사이에 노끈을 매어 당겨서 물 가운데 나무를 인하여 노끈이 내려가는 길이에 또 척수(尺數)를 더하여 도량을 파는 깊이를 삼고,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측량하면 아무리 수백리의 먼 곳이라도 물을 끌어 흐르게 하는 데에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땅은 물길[水道]이 좁고 깊으며 양쪽의 언덕이 높은 곳이 많이 있어서 물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우니, 어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지금 물을 부딪치게 하면 산에도 있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요사이 최부(崔溥)가 바친 수차(水車)는 지금 비롯된 것이 아니라 쓴 지가 오래입니다. 만약 한두 곳에 시험해 보면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수차를 운행하는 것은 공력(功力)이 많이 들어서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는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대저 시골 농민도 오히려 한 곳의 이익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찌 조정에서 백성의 이로움을 인하여 이롭게 하는 것인데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옳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에 두소서.

아홉째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마땅히 펴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도(徒)·유(流)·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정속(定屬)하는 것이 각각 그 죄에 적당하여 마땅히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갑(甲)과 을(乙)이 같은 죄를 같이 받았는데도 갑은 별로 공을 세운 것이 없으면서 특별히 사유(赦宥)를 입고, 을은 종신토록 면치 못하며, 상언(上言)하여 진소(陳訴)하면 해사(該司)에 내리기를 명하고 해사에서는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아

府, 待異姓也。然敦寧府則員數有限, 而異姓之親寔繁, 未盡除授, 勢之常也。況乎不任以事, 則既無賢愚之別, 安有黜陟之理? 故一得則無失之之時, 雖在寸數之內, 有終身不得立朝而死者, 是亦情抑之未伸者也。大抵婦人, 從夫而生, 夫亡則從子, 故其夫其子, 得祿則其生也榮, 不得祿, 則其生也苦。其夫其子之不得祿者, 保生無路, 或早孀無子而迫於飢寒, 或遺兒滿前而啼呼不已, 纔傳一世而遂與編民同飢寒, 雖先王之外孫, 反不如當路者之子孫, 足爲太息。臣愚以爲, 敦寧府僉正、判官、主簿各二員內, 各革一員, 則一等之祿, 可至四十碩矣, 以此祿而可以給直長、奉事、參奉各二員矣。莫若增其員廣其仕路, 階至七品則試其有才者, 如四館例遷可矣。不爾則爲遞兒, 輸次受祿, 使派連天潢者, 均霑聖澤, 有何不可? 儻曰: “敦寧府, 先王之制, 不可輕變。” 則臣竊惑焉。帝王之政, 因時損益, 務合乎中耳。伏願上裁施行。命示領敦寧以上與政府。沈澹、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慎、尹壕議:

니하고 일체 모두 거절하니, 그 사이에 어찌 하늘의 햇별이 엮어진 항아리 안에는 비치지 못하고 우물 밑에서 우는 소리는 하늘 위에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는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앙(災殃)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법은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밝혀지고, 법은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려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상언(上言)하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해사(該司)에 명하여 죄상(罪狀)의 시말과 동일한 죄로 방면된 자를 갖추어 기록하여, 그 굵고 곧음을 분변하게 하여 성상의 재결만 취하게 하면, 거의 억울함이 끊어질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마음에 두소서.

열째는, 이성(異姓) 친척을 마땅히 우대하여야 합니다.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종친부(宗親府)는 동성(同姓)을 대우하는 곳이고 돈녕부(敦寧府)는 이성(異姓)을 대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돈녕부는 원수(員數)가 정한(定限)이 있고 이성의 친척은 많으므로 모두 제수(除授)하지 못하는 것은 형세의 몇몇한 것입니다. 더구나 일을 맡기지 아니하면 어질고 어리석은 분별이 이미 없는데, 어찌 올리고 내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한 번 얻으면 잃을 때가 없으니, 비록 촌수(寸數) 안에 있더라도 증신토록 조정에 서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으니, 이것도 억울한 심정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부인은 남편을 따라 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남편과 그 아들이 녹(祿)을 얻으면 그 사는 것이 영화롭고 녹을 얻지 못하면 그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인데, 그 남편이나 그 아들이 녹을 얻지 못하는 자는 생활을 보호할 길이 없고, 혹은 일찍 과부가 되어 아들이 없고 가난에 절박하며, 혹은 유아(遺兒)21927)가 앞에 가득하여 울부짖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겨우 1세(世)를 전하여 드디어 편민(編民)21928) 과 같이 굶주리고 헐벗어서, 아무리 선왕(先王)의 외손(外孫)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당로자(當路者)21929)의 자손만 못하

“林重條陳，似有理，令該司商議便否以啓後，更議如何？”孫舜孝議：“林重所獻十條，多有可採者，令該司商度事之可行者以啓何如？”李崇元議：“第二條進上量減事，第三條行在時外陣門嚴守事，第四條武庫甲兵分授禁衛軍士事，第五條水軍完護軍官、萬戶揀擇差遣，造鼻居刀船等事，第六條捕強盜守令論賞事，第七條入居事，第八條川防等事，各令該司議啓後，更議施行爲便。第九條伸冤抑事，凡上言陳訴者，命下該司，該司具罪名竝錄，免放當否以啓後裁斷，此常行例事，不必更立新法。第十條敦寧府僉正、判官、主簿減革，直長、奉事、參奉加設事，凡官職額數，載在《大典》，不宜紛更。但敦寧府應授者輸(流)〔次〕敍用節目，令該司商議施行何如？”鄭文炯議：“陳言內條件，似或有理，令該司商議啓聞後，更議施行。但第二條供奉不宜過多事，講武時支應諸事，則支應使，據前規從簡布置，受教行移，若依移文支(對)〔待〕，則必無弊也。今以林重之言考之，或有作弊處，令該司相考何如？”命下其疏于兵曹。

게 되어 탄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돈녕부(敦寧府)의 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 각 2원(員) 가운데 각 1원을 없애면 1등의 녹(祿)이 40석에 이르게 되니, 이 녹으로써 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 각 2원의 녹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인원(人員)을 더하고 그 벼슬길을 넓혀서 계급이 7품에 이르면 그 재주 있는 자를 시험하여 4관(四館)의 예(例)와 같이 옮기는 것이 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거든 체아직(遞兒職)을 만들어서 윤차(輪次)로 녹을 받게 하여, 파(派)21930)가 천황(天潢)21931)에 연한 자로 하여금 성상의 은택을 고르게 입게 하면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돈녕부는 선왕(先王)의 제도인데 가볍게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은 그욕이 의혹됩니다. 제왕(帝王)의 정치는 때에 따라 줄이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여 적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보이게 하였다.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임중(林重)이 조목(條目)별로 진술한 것은 이치가 있는 듯하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상의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임중이 올린 열 가지 조목은 채택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해사로 하여금 일이 행할 만한 것을 헤아려서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송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제 2조(條)의 진상(進上)을 적당히 감하는 일과, 제 3조의 행재(行在) 때 외진문(外陣門)을 엄히 지킬 일과, 제 4조의 무고(武庫)의 갑옷과 병기를 금위군사(禁衛軍士)에게 나누어 주는 일과, 제 5조의 수군(水軍)을 완호(完護)하고

	<p>군관(軍官)·만호(萬戶)를 골라서 임명하여 보내고 비거도선(鼻居刀船)을 만드는 등의 일과, 제 6조의 강도를 잡은 수령에게 논상(論賞)하는 일과, 제 7조의 변경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일과, 제 8조의 천방(川防) 등의 일은 각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제 9조의 억울한 일을 펴게 하는 일은, 무릇 상언(上言)하여 진소(陳訴)하는 것은 명하여 해사에 내려서 해사에게 죄명(罪名)을 갖추어 기록하고 아울러 방면(放免)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아뢰게 한 뒤에 재단(裁斷)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통 행하는 예사 일이므로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 10조의 돈녕부(敦寧府)에 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注簿)를 감하고 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을 더 두는 일은 모든 관직(官職)의 액수(額數)는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므로 번거롭게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돈녕부의 마땅히 제수(除授)해야 할 자는 윤차(輪次)로 서용(敍用)하는 절목(節目)을 해사로 하여금 상의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진술한 말 가운데 있는 조건(條件)은 혹시 이치가 있는 듯하니, 해사로 하여금 상의해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제 2조의 공봉(供奉)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일과 강무(講武) 때 지응(支應)하는 모든 일은 지응사(支應使)가 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포치(布置)하기를 수교(受敎)하여 행이(行移)하였으니, 만약 이문(移文)에 의하여 지대(支待)하면 반드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임종의 말을 상고하건대 혹시 폐단을 일으킬 곳이 있으니, 해사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였는데, 명하여 그 상소를 병조(兵曹)에 회부하게 하였다.</p>	
<p>성종 23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2월 13일</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오늘 이조 참판(吏曹參判) 윤은로(尹殷老)가 아버지 영돈녕(領敦寧)21971)에게 헌수(獻壽)한다고 하므로, 이미 풍악을 하사(下賜)하도록 명</p>	<p>○傳于承政院曰: “予聞今日吏曹參判尹殷老, 獻壽于其父領敦寧, 故已命賜樂, 其令今日入番弘文館直提學許琛、</p>

<p>(을미) 3번째기사</p>	<p>하고, 오늘 입번(入番)한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허침(許琛)과 수찬(修撰) 허집(許輯)으로 하여금 선온(宣醞)21972) 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윤은로가 중궁(中宮)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다.”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윤은로는 초방(椒房)의 혈족인 것을 칭탁하고 총행(寵幸)을 빙자(憑藉)하여 탐오(貪汚)한 마음으로 권세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뇌물[賄賂]을 불러들이다가, 마침내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였다.</p>	<p>修撰許輯，齎宣醞往焉。 殷(殷)老稟中宮設宴，故予得聞之耳。”</p> <p>【史臣曰：“殷老托屬椒房，憑藉寵幸，以貪汚處權(熱) [勢]，招納賄賂，竟敗官。”】</p>
<p>성종 23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2월 15일 (정유) 4번째기사</p>	<p>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 신용개(申用溉)가 본관(本館)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p> <p>“오늘 이조 참판(吏曹參判) 윤은로(尹殷老)가 본관(本館)의 관원들을 그의 사제(私第)에서 먹이기를 청하고, 또 이 뜻을 성상께 이미 아뢰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분경(奔競)21974) 을 금(禁)하고 있으니,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윤은로가 헌수(獻壽)하던 날에 내가 따로 경연관(經筵官)을 보내어 선온(宣醞)을 내렸기 때문에, 윤은로가 은혜에 감동하여 다시 먹이고자 하는 것이다. 홍문관은 온 관사(官司)가 가도 좋다.”</p> <p>하였다.</p>	<p>○弘文館著作申用溉，將本館議來啓曰：“今日吏曹參判尹殷老，請饋本館員于其第，且云此意已啓上前。 但有奔競之禁，何以處之?” 傳曰：“殷老獻壽日，予別遣經筵官，賜宣醞，故殷老感恩，(恩)更欲饋之。 弘文館，可闔司往赴。”</p>
<p>성종 23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2월 22일 (갑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양전(兩殿)21979) 에게 후원(後苑)에서 곡연(曲宴)을 올리고, 종묘 난장 도감 제조(宗廟欄墻都監提調)와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의 여러 장수,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감선(監膳),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및 승지(承旨)를 불러, 북소(北所)에 모이게 하여 연악(宴樂)을 내리고, 이어 매우 즐긴 뒤에 과(罷)하도록 명하였다.</p>	<p>○甲辰/上，進兩殿曲宴于後苑，召宗廟欄墻都監提調，入直兵曹·都摠府諸將、弘文館·藝文館監膳、司饗院提調及承旨，會北所，賜宴樂，仍命極歡乃罷。</p>
<p>성종 237권, 21년</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종(許琮)이 치계(馳啓)하기를,</p>	<p>○丙午/永安道觀察使許琮馳啓：“慶興</p>

<p>(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2월 24일 (병오) 1번째기사</p>	<p>“경흥(慶興)의 무이보(武夷堡)에 머물러 사는 양인(良人) 김귀산(金貴山)과 정병(正兵) 김중산(金中山) 등이 이번 2월 9일에 곡장(穀場)에 묻어 두었던 곡식을 실어들일 때에 피적(彼賊) 1백여 명이 변경을 넘어와 둔취(屯聚)했다가, 10여 명이 넘어 들어와서 김귀산을 죽이고, 민계(閔界) 등 6명과 소와 말 각 1필씩을 사로 잡아갔는데, 무이 만호(武夷萬戶) 최사(崔汜)가 척후(斥候)를 삼가하지 아니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게 하였으니, 청컨대 추국(推鞠)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최사가 척후를 삼가하지 아니하여 적인(賊人)이 왔다가 가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또 김귀산의 곡장은 보(堡)가 있는 데에서 서로 멀지 아니하여 쫓아가서 잡을 만한데도 두려워하여 몸을 움츠리고 즉시 출전(出戰)하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청컨대 강직하고 명민한 조관(朝官)을 보내어 절도사(節度使) 윤말손(尹末孫)·우후(虞候) 최진하(崔進河)·평사(評事) 신건(辛鍵) 및 경흥 부사(慶興府使) 나사중(羅嗣宗)을 끝까지 추국(推鞠)하고, 무이보에 특별히 부방(赴防)하게 했던 내금위(內禁衛) 김세준(金世俊)도 아울러 국문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武夷堡接良人金貴山、正兵金中山等，今二月初九日，穀場埋置穀食輸入時，彼賊百餘名越邊屯聚，十餘名越入，殺害貴山，擄閔界等六名，牛馬各一。武夷萬戶崔汜，不謹斥候，致令人畜殺擄，請推鞠科罪。”兵曹據此啓：“崔汜，不謹斥候，不知賊人來去，且金貴山穀場，與所在堡，相距不遠，可以追捕，而畏縮不卽出戰，甚不當。請遣剛明朝官，窮極推鞠節度使尹末孫、虞候崔進河、評事辛鍵及慶興府使羅嗣宗，武夷堡別赴防內禁衛金世俊，并鞠何如？”從之。</p>
<p>성종 23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2월 26일 (무신) 6번째기사</p>	<p>올랑합(兀良哈) 노목합(奴木哈)·자력답(刺力答) 등이 그 동류인(同類人)의 고신(告身)21994 을 사서 가지고 왔다가, 일이 발각되어 예조(禮曹)에서 그 고신을 거두니, 배사(拜辭)하는 날에 노목합이 절하지 않고, 또 선운(宣醞)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자력답은 절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주서(注書)를 시켜서 노목합 등에게 개유(開諭)하기를,  “무엇 때문에 대궐 뜰에서 무례(無禮)하여 선운(宣醞)을 마시지 않기에 이르렀는가? 만약 너의 소행[所爲]을 아된다면 국가(國家)에서 마땅히 처치(處置)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너의 무례(無禮)함은 마땅히 국법(國法)으로 다스릴</p>	<p>○兀良哈奴木哈、刺力答等，買其同類人告身而來，事覺，禮曹收其告身，於拜辭日，奴木哈不拜，又不飲宣醞，刺力答拜而不飲。上使注書，諭奴木哈等曰：“何以無禮於闕庭，至不飲宣醞歟？若啓爾所爲，則國家當有所處置，爾之無禮，當以國法治之。”奴木哈等，稽顙俯伏曰：“臣等豈敢無禮乎？”</p>

	<p>것이다.”</p> <p>하니, 노목합 등이 이마를 조아려 부복(俯伏)한 채 말하기를,</p> <p>“신(臣) 등이 어찌 감히 무례하겠습니까? 다만 전일에 초무사(招撫使)를 따라서 인물(人物)을 쇄환(刷還)시킬 때에 자못 공로가 있었으므로, 마음에 승직(陞職)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지금 이와 같기 때문에 통분(痛憤)할 뿐입니다.”</p> <p>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p> <p>“이 사람들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적당한지 못한지를 예조에 물어보도록 하라.”</p> <p>하였는데, 예조에서 와서 아뢰기를,</p> <p>“노목합 등이 다른 사람의 고신을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만 사맹(四猛)의 직을 제수했을 뿐입니다. 노목합이 전일 본조(本曹)에 무례하자,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가두고 국문하여 국위(國威)를 보이도록 명하셨는데, 지금 또 대궐 뜰에서 무례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야인(野人)을 우리 나라 사람의 예로써 대접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심회(沈澹)·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저들 야인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모르는 자들이니, 법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귀순(歸順)한 야인들을 오진(五鎭)에서 편맹(編氓)21995) 과 같이 대우하고 있는데, 지금 노목합 등이 대궐 뜰에서 무례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록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한다 하더라도 또한 두려워하여 복종</p>	<p>但前日隨招撫使，刷還人物，頗有功勞，意謂陞職，而今乃如此，故痛憤耳。”傳曰：“此人等除職便否，問于禮曹。”禮曹來啓曰：“奴木哈等，買他人告身來，故只授司猛職耳。奴木哈前日無禮於本曹，命下義禁府囚鞫，以示國威，今又無禮於闕庭，請依前例治罪。”傳曰：“野人，不可以我國人例待之也。其議于領敦寧以上。”沈澹、尹弼商、盧思愼、尹壕議：“彼野人，狼子野心，不可繩之以法。置之度外何如?”洪應議：“歸順野人等，在五鎭，待之如編氓，今奴木哈等，無禮於闕庭，不可不懲。但恐雖下義禁府鞫之，亦不畏服，特赦之何如?”李克培議：“奴木哈前日見囚義禁府，已知國威，不須再囚。今雖無禮於闕庭，旋即自服，臣意以謂，使禮曹郎廳到館，宣敎云：‘汝等居會寧鎭，與吾民無異，前日詐持告身，欺罔朝廷。以此囚禁鞫之，汝等本不知禮義，故置之度外，特赦其罪。今又於闕庭無禮，禮曹請置重典，以示同類。然汝自服罪，故又特有之。’以此意，宣諭何如?”從克培等議。</p>
--	--	---



	<p>하지 아니할 듯하니,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노목함은 전일에 의금부에 갇혔으므로, 이미 국위(國威)를 알았을 것이니, 모름지기 다시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대궐 뜰에서 무례했다 하더라도 돌이켜서 곧 자복(自服)하였으니, 신은 생각건대, 예조의 낭청(郎廳)을 시켜서 관(館)에 이르러 선교(宣敎)하기를, ‘너희들이 회령진(會寧鎭)에 살면서 우리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데, 전일에 고신을 속여서 지참하여 조정(朝廷)을 기망(欺罔)하였다. 이 때문에 의금부에 가두어 추국(推鞠)하려 했으나, 너희들이 본래부터 예의(禮義)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하였던 것이다. 이제 또 대궐 뜰에서 무례하였으므로, 예조에서 중전(重典)으로 다스려 동류(同類)에게 보이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네가 죄를 자복하였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용서한다.’라고 하여 이 뜻으로 선유(宣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극배의 의논을 따랐다.</p>	
<p>성종 23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2월 27일          (기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조형문(趙亨門)이 아뢰기를,          “소세안(蘇世安)은 노친(老親)이 전라도(全羅道) 담양(潭陽)에 있는데, 이번에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제수되자, 귀양(歸養)21996 을 청하니, 정상께서 그도(道)의 수령(守令)으로 제수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소세안이 과연 아버지가 늙었으면, 관직을 사임하고 가서 감지(甘指)21997 로써 봉양해야 하는데, 녹(祿)과 지위(地位)에 마음이 끌려 지체[淹留]하고 가지 않다가 잔읍(殘邑)의 수령에 제수되자, 이를 꺼려서 직(職)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하고, 헌납(獻納) 최인(崔潏)은 아뢰기를,          “집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습</p>	<p>○御經筵。 講訖， 掌令趙亨門啓曰：          “蘇世安老親， 在全羅道潭陽， 今除鳳山郡守， 乃請歸養， 命除其道守令。 世安果親老， 則宜解官而去， 以奉甘旨， 乃貪戀祿位， 淹留不去， 及除殘邑守令， 憚不就職。 請罷其職。” 獻納崔潏啓曰：“居家孝故忠可移於君。 世安忘親懷祿， 其爲人可知矣。 請罷職治罪。” 上顧問左右。 領事洪應對曰：“臺諫論啓果是。 親老歸養之法， 著在《大典》。 世安仕于朝， 曾不求去，</p>

	<p>니다. 소세안은 아버이를 기피하고 녹(祿)만을 생각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 만한 것입니다. 청컨대 파직하고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p> <p>“대간(臺諫)의 논계(論啓)가 과연 옳습니다. 친로귀양(親老歸養)의 법은 《대전(大典)》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세안이 조정에 벼슬하면서 일찍이 가기를 구하지 아니 하다가 잔음에 제수되자 귀양(歸養)할 것을 청했으니, 국문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及除殘邑，乃請歸養，當鞫之。” 上曰：“可。”</p>
--	--	--------------------------------